

자료

제8편

1장 _ 역사관련 자료

조선왕조실록 평택 관련 자료
고종·순종실록 평택 관련 자료
진위현 관련 자료
평택현 관련 자료
수원부 관련 자료
양성현 관련 자료
부역실총 관련 자료
진위현령 명단
평택현감 명단
조선시대 평택 거주 소과 합격자
역대 군수·시장
역대 국회의원
역대 도의원·교육위원·시의원

2장 _ 문화유적 목록

3장 _ 공장등록 현황

여 백

1장 역사관련 자료

平澤



여 백

『朝鮮王朝實錄』 평택 관련 자료

(진위현·평택현·수원·양성 일부, 괴태길곶, 청호역, 경양창 등)

1. 『태조실록』

『태조실록』 권10 5년 11월 2일 병진

충청도 시진(市津)·덕은(德恩)·채운(彩雲)을 합하여 덕은감무(德恩監務)를 두고, 경양현(慶陽縣)을 없애고 대신 경양장(慶陽庄)으로 바꾸어 직산군(稷山郡)에 예속시켰다.

2. 『태종실록』

『태종실록』 권11 6년 6월 26일 갑신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박자안(朴子安)과 총제(摠制) 윤곤(尹坤) 등 9명의 직임을 파면시키고, 전이성도병마사(前泥城都兵馬使) 신유현(辛有賢)을 평택현(平澤縣)으로 유배시켰다. 예전에 혜경(惠敬)이라는 중이 그 노비를 귀암사(龜巖寺)에 시주하였는데, 그 수가 불어서 수천 명에 이르렀다. 나라에서 절의 수를 제한하게 되자 귀암사가 혁파당하니, 박자안 등이 그 노비를 조상이 시주한 물건이라고 하여 무인년(1398, 태조 7년) 이래 일찍이 관에 소송하여서, 이때에 이르러 차지하였다. 허응(許應)이 대사헌이 되어 귀암사 노비를 다시 나라에 속하게 하도록 건의하니, 박자안 등이 분을 품고 의정부에 소송하였다. 또 말하기를 “허응도 또한 사손(使孫)인데, 다만 같이 소송하지 못하여 노비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원망하여 속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했다. 사간원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박자안 등이 문득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수교(受敎)한 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고소를 행하여 사헌부를 헐뜯었을 뿐 아니라, 도당(都堂)도 능멸하였습니다. 또 없애버린 사사(寺社)의 노비는 비록 그 자손이라 하더라도 다시 다투지 못할 터입니다. 하물며 세대가 오래고 멀어서 계통을 밝히기 어려운 것을, 다만 지금 대변하는 자가 없다고 하여 감히 소송하여 차지했습니다. 허응도 또한 풍헌(風憲·사헌부)의 우두머리로 의를 핑계하고 사정(私情)을 껴오니 아울러 부당합니다.” 이에 박자안·윤곤·신유현 및 신유정(辛有定)·문계

종(文繼宗)·송득거(宋得珪)·배금(裵錦)·배한(裵澣)·김자온(金自溫) 등은 모두 죄를 얻고, 오직 허응은 특별히 면했다.

『태종실록』 권17 9년 3월 3일 병오

전 형조참의 이지직(李之直)을 **평택**에 유배시켰다. 처음에 이지직을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삼았었는데, 이지직이 아내의 병을 핑계하여 면직을 청했으므로 임금이 사헌부로 하여금 연고를 핑계하여 사임한 죄를 핵문(劾問)하게 했다.

『태종실록』 권18 9년 8월 6일 을사

충청도 문의(文義)·청주·**평택**에 우박이 내렸다.

『태종실록』 권21 11년 5월 10일 경오

우박이 내렸다. 경기도 인주(仁州)·부평에 우박이 내려 하루 종일 녹지 않았으며, 충청도 청주·**평택**·청안(淸安)과 강원도 평창·정선 등지에 우박이 내려 삼과 보리를 상하게 하였고, 전라도 장성·진원(珍原)·복순(福順)·창평(昌平)에 모두 우박이 내렸다.

『태종실록』 권25 13년 5월 25일 계묘

비가 내렸다. **진위**(振威) 사람 조용(曹龍)과 말 2필이 벼락에 맞았다.

『태종실록』 권26 13년 12월 1일 병오

순금사(巡禁司)에서 아뢰었다. “전왕조 익성군(益城君)의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김영부(金英富)·임전(任磚)·김철(金哲)·신가구지(申加究之)·용안(龍安) 등에게 물으니, 그 진술서에서 모두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모두 석방하라고 명했다. 순금사에서 또 아뢰었다. “전조 왕씨의 후손에 대하여 정상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았던 자들 가운데 이실(李實) 등 21인은 처인현(處仁縣)에 가두었고, 약비(藥婢)는 **진위현**에 가두었습니다.” 임금이 2등을 감하여 시행하라고 명했다.

『태종실록』 권29 15년 2월 4일 임신

경상도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 이지강(李之剛)과 충청도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 안등(安騰) 두 사람의 직책을 맞바꾸라고 명했다. 안등의 노모는 상주에 있고 이지강의 처부모는 **평택**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권31 16년 3월 9일 신축

충청도 영산(寧山) 등 4군의 호저화(戶楮貨)를 면제하고 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도관찰사 신개(申槩)가 보고하기를, “영산·온창(溫昌)·직산·**평택**이 모두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했던 까닭이었다.

3. 『세종실록』

『세종실록』 권9 2년 8월 12일 무신

형조에서 여러 역의 전운(轉運)하는 노비에 대해 아뢰기를 “경기의 양재(良才)·낙생(樂生)·구흥(駒興)·영서(迎曙)·벽제(碧蹄)·마산(馬山)·동파(東坡)·초현(招賢)·청교(靑郊) 등 9역에는 각 역에 10호를 주는데 정역(正役)이 한 명이요 봉족(奉足)이 두 명이니 합계 2백 70명인데 쌍수역(雙守驛)만은 12호입니다. 녹양(綠楊)·안기(安奇)·양문(梁文)·전원(田原)·**청호(淸好)**·가천(加川)·금령(金嶺)과 강원도 생안(生安)과 충청도 좌찬(佐贊)·분행(分行)·무극(無極)·용안(用安)·성환(成歡)·신은(新恩) 등 14역은 각 역에 8호씩으로, 정역이 10명이요 봉족이 2명이니, 합계 3백 96명입니다. 충청도 단월(丹月)·안부(安富)·연원(連原)·황강(黃江)·수산(守山)·장림(長林)·장양(長楊)·태랑(台郎)·울봉(栗峯)·쌍수(雙樹)·덕류(德留)·증약(增若)·금제(金蹄)·광정(廣程)·일신(日新)·경천(敬天)·평천(平川) 등 17역은 각 역에 6호씩인데, 정역이 1명이요, 봉족이 2명이니 합계 3백 6명입니다. 황해도 초면(初面)·잔참(殘站)·금교(金郊) 및 신설된 검수참(劍水站)도 또한 위에 정한 예에 의하여 노비를 마련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24 6년 4월 21일 병인

경기 감사가 장계하기를 “**진위현**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적은 쇠잔한 고을인데, 한길 옆이어서 그 폐가 매우 많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 관내의 송장(松莊) 87호, 부산(釜山)과 **청호역(淸好驛)**을 아울러서 59호, 용인현·의신현(義信縣) 6호를 떼어서 **진위**에 붙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같이 의논하고 장계대로 시행하도록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28 7년 6월 27일 을축

충청도 감사가 아뢰기를 “도내 각 고을에서 녹전(祿轉)과 상납을 선납으로 바치는 법은 전일에는 길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도내 면천(沔川)은 범근천(犯斤川)으로, 아산은 공세곶(貢稅串)으로, 직산은 **경양포(慶陽浦)**로, 충주는 금천(金遷)·양암(仰

巖)으로, 경기도 여흥(驪興)은 우음안(塢音安)·천녕(川寧)·이포(梨浦) 등지로 각기 내왕하기 가까운 곳에다 나누어 정하여 출포(出浦)하게 하였습니다. 녹전은 2월에 상납하기 시작하여 해빙한 뒤 3월에 배에 싣게 하고, 선납미는 7월에 상납하기 시작하여 8월에 들어선 뒤에 배에 싣습니다. 그 처음 수납할 때는 각 고을 수령이 몸소 포구 있는 곳에 가서 친히 감독하여, 다 받기를 마치면 싣기를 감시하여 차사원(差使員)에게 넘겨 맡기어 상납하게 하는 것은 이미 격식으로 전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의 녹전 상납은 그 수량이 지극히 많사온대, 수령이 포구에 나오지 아니하고 차사원 한 사람이 홀로 금천에 와서 각 고을의 감고(監考)와 색리(色吏)를 불러다가 수납할 뿐입니다. 본도에서는 쌀·보리의 수량이 적사오나 매양 수령들로 1년에 두 번씩 여러 날 길에 양식을 싸가지고 오고가게 하니, 폐단이 진실로 여러가지오며, 더구나 농삿달을 당하여 수령이 농사를 독려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불편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각 고을 수령이 포구에 나가지 말고 다만 차사원 한 사람을 정하여 보내서 살펴 거두어 받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33 8년 8월 26일 정해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예조참판 이명덕이 일찍이 병조참판이 되어, 전 판관(判官) 김효지(金孝知)에게 큰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작은 말과 교환하고, 그 가치가 서로 비등하지 못하여 다시 작은 말을 더 주었으며, 또 김효지의 산호영자(珊瑚纓子)를 빌려 착용한 바 있었습니다. 김효지가 죽고 그 아내 심씨(沈氏)가 사람을 시켜 반환을 청구하니 명덕이 말하기를 ‘앞서 보낸 말이 곧 영자의 값이다.’ 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정(司正) 소회(蘇會)는 본직을 받은 지 7개월 만에 사직(司直)에 발탁 제수되었고, 전 산원(散員) 조무(趙務)는 1년 동안에 누차 천전하여 선략장군(宣略將軍)에 이르렀으며, 김맹보(金孟甫)는 사정으로 있는 지 2년 만에 부사직(副司直)에 제수되었고, 이겸선(李兼善)은 부사정으로 있는 지 2년에 사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조무와 소회는 이명덕의 **평택** 농장 이웃에 사는 자요, 김맹보는 그의 장인 남적(南績)이 이명덕과 더불어 이웃에 살면서 사귀어 친한 자이며, 이겸선은 이명덕 아내의 조카사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명덕이 공로의 유무도 헤아리지 않고 사정을 두어 함부로 준 것인데, 본부에서 탄핵 신문하던 날 여러가지로 변명하는 궤변이 몹시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또 병조참판으로서 각색(各色) 군장(軍匠)을 동원하여 그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사명(救命) 전에 있던 일이므로 비록 드러내어 놓고 탄핵하여 그 죄를 폭로하지는 못하오나 이와 같이 재물을 탐하고 관직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체면을 무릅쓰고 조정에 서게 하여, 재추의 반열에 자리하게 한다면, 진실로 밝은 시대에 누가 될 것입니다. 청하건대 관직을 파면하여 외방으로 추

방하시어 선비들의 기풍을 바로잡고 뒷날을 경계하십시오. 또한 조무 등에게 함부로 준 직첩(職牒)도 또한 모두 거두시어 마구 진출하는 무리들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아뢴 바와 같이 하되 이명덕은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33 8년 9월 3일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헌부에서 이명덕에게 **평택현** 농장의 유무를 물으니, 이명덕이 권도와 서로 아는 사이인 임인수(任仁壽)와 조카 권담(權聃)의 종 무지(無知) 등으로 증인을 삼았다. 그의 의도는 권도가 사감을 끼고 한다 하여 권도를 꺾고 욕하려 한 것이오니 청하건대 율에 따라 과죄하소서.” 하였고, 드디어 이명덕의 직임을 파면하였다. 처음에 권도의 아버지 권근(權近)이 **평택현**의 해택(海澤)을 받아 방축을 쌓고 밭을 만들고 이명덕의 처가의 전지와 서로 경계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권도가 일찍이 임인수의 집 주인하고 전지를 다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덕이 이에 언급하여 권도로 하여금 혐의를 피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묻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세종실록』 권38 9년 12월 15일 무진

진위현감 민승서(閔承序) · 덕산현감(德山縣監) 신이강(辛以剛)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각각 너희 고을에 가서 백성을 잘 돌보라. 금년은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비와 눈이 많지 못하니, 나는 내년의 밀 · 보리가 잘 되지 못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까 걱정스럽다. 그러니 환상곡(還上穀)을 때맞추어 나누어 주어 구제하여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 하니, 민승서가 대답하기를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실록』 권48 12년 6월 11일 경진

공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본조에 명하여 공선(貢船)과 참선(站船)의 수를 적당하게 감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각도 공선의 수를 상고하건대, 1년에 12척에 불과한바 경상도 공선은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많기 때문에 지난 정미년 수교(受敎)에 ‘5척을 감하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며 좌도(左道)의 참선의 수는 우도(右道)의 4배가 되므로 각 고을에 분정하는 수가 너무 많아서 소나무를 많이 허비하게 되오니 그 폐단이 큼니다. 우도는 배 15척에 수부(水夫) 88명을 정하였사오니, 수부의 수가 배 수의 배가 되므로 구실치르기가 어렵지 아니하나, 좌도는 배 90척에 수부 1백 9명을 정하여 수부의 수가 배 수의 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농삿달을 따지지 않고 번의 순에 따라 구실을 치르게 되며, 그 받은 바 선척

(船隻)도 잘 간수하지 못하여 썩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청컨대 좌도에 소속된 배에서 광주·양주·수원 등 고을에 각각 한 척씩, 충주에 한 척, 원주에 한 척, 양근(陽根)·포천에 각 한 척씩, 금천(衿川)과 과천에 아울러 한 척, 양지(陽智)·진위도 아울러 한 척을 감하여 백성의 폐를 덜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51 13년 3월 28일 임진

병조에서 아뢰기를 “소는 국가에 있어 그 용도가 심히 큰 것이온데, 관에서 이를 길러 번식하지 않는 것은 실로 결전(闕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생곡초(生穀草)를 납부하는 경기의 각 고을을 제외하고 유수·대도호부·목 등의 고을에는 암소 6두와 황소 3두를, 도호부와 지군사 등 고을에는 암소 4두와 황소 2두를, 현령·현감 등의 고을에는 암소 2두와 황소 1두를 배정하여 국고의 비용으로 길러 번식하게 하고 회계에 실려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 및 제조(諸曹)와 같이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관이나 민이나 번식시키는 데는 다를 것이 없사온데,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되면 기르는 사이에 백성들이 반드시 그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각도의 목장(牧場)을 설치할 만한 곳을 물색해 놓고 소를 교역하여 놓아 길러서 국가 수용에도 충당하고 혹은 민간과의 교환도 들어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이내 본조와 사복시 제조에게 명하기를 “목장으로 할 만한 곳을 의논해 찾으라.” 하였다. 지난 정미년에 혁파한 목장을 상고한 바, 경기 양성현(陽城縣)의 **괴태길곶(槐台吉串)**, 수원부의 홍원곶(弘原串), 인천군의 용류도(龍流島)·무의도(無衣島), 남양부(南陽府)의 선감미도(仙甘彌島), 강화부의 주문도(注文島)와 황해도 해주(海州)의 수압도(睡鴨島)와 충청도 당진현의 맹관(孟串), 태안군의 다리관(多利串), 남포현(藍浦縣)의 진관(津串)과 오래 전에 혁파한 바 있는 함길도 안변부(安邊府)의 압융(押戎)과 용진현(龍津縣)의 반상사늘(反上四訥), 홍원현(洪原縣)의 마랑이도(馬郎耳島), 북청부(北靑府)의 나만북도(羅萬北島) 등은 모두 놓아 기를 만한 곳입니다. 또 경상·전라도에서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여 방목할 만한 곳을 찾아서 목장으로 만들게 하고, 소를 구입하는 데는 각도에서 생산되는 어염(魚鹽)과 각영의 공물(公物)로서 이를 바꾸게 하자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52 13년 5월 2일 을축

진위현감 정송(鄭棟)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에 인견하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경기에는 밀·보리가 좀 잘되었다고 하던데, 가뭄이 지금 시작되니 매우 염려된다. 하늘의 뜻을 사람이 돌이킬 수는 없으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라.” 했다.

『세종실록』 권54 13년 11월 5일 병인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부 판관을 다시 두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상정소에 의논하니, 제조 맹사성은 말하기를 ‘더 설치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허조는 말하기를 ‘만약 판관을 더 설치한다면 관원 한 사람의 아록(衙祿)이 반드시 더 들 것이며, 이웃 고을 진위 같은 데는 민호가 매우 적어서 장차 자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원 관내의 영신을 떼어 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고 도리어 청호역리(菁好驛里)를 얻었는데, 또 과객을 접대하는 폐해가 첨가되었으므로 이후로 진위는 더욱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지나치게 많은 민호를 떼어서 진위로 옮겨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황희는 말하기를, ‘수원의 사무가 번잡한 것은 옛날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판관을 혁파한 것은 나라를 세운 이후로 거의 40년이나 되었는 데도, 능히 서무를 처리하여 기한을 어긴 책망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다시 설치하여 한갓 녹봉만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릇 제도를 세워 곧 폐지했다가, 곧 회복하여 일정한 제도가 없으면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오니, 원컨대, 조종의 성헌에 의거하여 회복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수원은 속현이 상당히 많아서 땅이 크고 백성이 많으니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어찌 유독 수원에만 치우쳐서 후하게 하고, 땅이 협착한 옆 고을에는 박하게 하여, 가난한 고을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고을은 더욱 부유하게 만들겠습니까. 만약 그 백성이 많아서 사무가 번잡한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부근의 땅을 좁고 작은 옆 고을에 떼어 붙이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원이 감사의 본영이므로 더욱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옆 고을도 이미 오랑캐의 땅이 아니고 또한 한 도 안의 하루 길의 노정에 있을 뿐입니다. 신이 지난 해에 강원감사로 봉직했을 때에 춘천의 해안과 회양의 문등·방산·서화를 그 부근의 협소한 양구·인제 등 현에서 떼어 붙여서, 도리(道里)의 멀고 가까운 것과 사무의 번잡하고 간략한 것이 거의 적중하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편하게 여겼습니다.” 하니 호조에 내리어 황희와 허조 등의 의논을 경기감사에게 이문하여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점을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권56 14년 5월 20일 정축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용이 어느 곳에 보이는가. 태종 때에 용이 발 가운

데서 솟아나온 일이 있었다지만 용도 금수의 일종이니 께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고 하였다. 대언들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아는 것으로는 충청도의 평택·아산, 전라도의 만경(萬頃)·임피(臨陂)·용담(龍潭) 등지에 간혹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널리 물어 보신다면 본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권59 15년 3월 26일 기묘

임금이 수원 지경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였다. 용인현감 정면(鄭冕)이 맞이해 뵈었다. 진위 전평에서 차소를 정하니, 수원부사 조극관(趙克寬)·진위현감 정송(鄭棟) 등이 맞이해 뵈었다.

『세종실록』 권59 15년 3월 27일 경진

임금이 진위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였다. 경기감사 남지와 경력 황수신은 하직을 고하고, 충청감사 조종생(趙從生)·경력 이중(李重)·직산현감 유형(柳衡)이 경계에서 받들어 맞이하고, 직산현 수혈원(愁歇院) 앞 평지에 차소를 정하였다. 조종생이 이어 토산물을 올리고 또 술과 안주를 올리니, 대소신료들과 군사들까지 나누어 내려 주었다.

『세종실록』 권60 15년 4월 21일 갑진

경기감사 남지(南智)·경력 황수신(黃守身)·양성현감(陽城縣監) 김효례(金孝禮)·정역찰방(程驛察訪) 신기(愼機) 등이 경계에 와서 마중하였다. 진위 장호원(長好院) 앞 들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세종실록』 권60 15년 6월 23일 갑진

경기 수원부의 속현 영신을 진위에 이속하였다. 이보다 앞서 수원부 판관을 다시 설치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혹은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면 관직이 증설되고 아록(衙祿)이 증가될 것이니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웃 고을 진위는 호수가 대단히 적어 자립할 수 없으므로 전자에 수원 관내의 영신을 떼어 주자는 청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청호역리(菁好驛里)를 얻어 과객을 접대하는 폐단만 증가하여 이로부터 더욱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니 수원의 민호를 떼어서 진위로 붙이게 하소서.” 하였다. 혹은 “수원의 사무가 이제 와서 복잡할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같으며 판관을 없앤 지 거의 40년이 되었으나 모든 사무를 잘 처리하여 기한을 놓친 일이 없었는데, 하필 판관을 다시 두어 국고만 소비하렵니까. 제도를 세우는 데 금방 없었다가 금방 다시 세워 일정한 제도가 없으면 신의를 보일 수 없는

것이니 회복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어떤 이는 “수원은 속현이 많고, 땅이 크고 백성이 많아서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찌 홀로 수원만 후하게 하고, 결의 고을을 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수원의 백성이 많고 일의 번거로운 폐단을 구제하려면 속현을 떼어서 땅이 작은 결의 고을에 붙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감사의 본영(本營)이기 때문에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결의 고을은 오랑개의 땅이란 말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호조로 하여금 본도에 문서를 보내 가부를 묻도록 하였더니, 감사가 회보하기를 “영신은 진위와의 거리가 10리이고 수원과는 60리이며, 또 큰 내가 가로막혀, 비가 와서 물이 많으면 건너지 못하여 부역과 환곡을 기한에 미치지 못하여 폐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진위는 호수가 심히 적고 사객(使客)이 많아서 자립할 수 없으니, 영신을 떼어서 진위에 붙이고, 수원 판관은 혁파한 후에도 별로 폐되는 일이 없으니 회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여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이때 수원사람이 그 땅이 깎이는 것을 싫어하여 본도에 진정하여 이속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자, 또 진정하기를 “영신 서면(西面) 세 마을은 다른 속현과 더불어 개 어금니처럼 지형이 들쭉날쭉한데, 이제 이것을 분변하지 아니하고 모두 진위로 붙이면, 후일에 나오고 들어간 땅을 개정하는 소송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한길 동쪽 여섯 마을은 진위에 붙이고 한길 서쪽 세 마을은 그대로 본읍에 붙이게 하소서.” 하므로 감사가 그 말에 따르기를 청하였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같이 논의하기를 “개 어금니처럼 서로 나오고 들어간 논의는 거행할 수 없는 것이며 죄 없는 영신을 두 고을에 나누어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하여 모두 진위로 붙인 것이었다.

『세종실록』 권66 16년 11월 2일 을해

진위현령 우전(禹傳)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부역을 고르게 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여 백성들을 은혜로써 사랑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6년 12월 1일 갑진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화도(同化道)에 속해 있는 가천(加川)·청호·강북(康福) 등의 역은 경기좌도(京畿左道)로 옮겨 붙이고, 충청도 칠방도인 중립도의 소속인 석곡(石谷)·반유(盤乳) 등 역은 동화도에 옮겨 붙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는 경기 감사의 역로(驛路)의 폐단을 구제하자는 계획으로 인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권69 17년 7월 15일 갑신

충청도의 평택·예산·당진·면천(沔川)·덕산(德山)·홍주(洪州) 임내(任內) 합

덕(合德) 등의 각 고을에 해충이 발생하여 곡식을 해쳤다.

『세종실록』 권70 17년 10월 12일 경술

임금이 수원부 동쪽 들에서 사냥하다가 마침내 진위현 치암(鷓巖) 들에 이르니, 현감 우전(禹傳)이 경계에 마중 나와 배알하였다.

『세종실록』 권74 18년 7월 5일 무술

수원부 평택현에 매뚜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세종실록』 권80 20년 3월 15일 기해

경기도 청호역(菁好驛)은 도로 수원에 붙이고, 또 분행(分行) 좌찬(佐贊) 두 역은 더욱 쇠잔함이 심하므로 노비를 더 주었다.

『세종실록』 권82 20년 9월 14일 을미

좌참찬 조계생(趙啓生)이 졸하였다. 조계생의 자는 경부(敬夫)이니, 본관은 양주였다. 무진년(138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檢閱), 춘추관 수찬(修撰)을 거쳐, 삼사(三司)의 도사(都事)에 승진하였고, 이천현 수령으로 천녕(川寧)을 겸임한 바 있으며, 사헌부감찰에 임명되었다가 평택현 수령으로 나갔고, 다시 계림판관(鷄林判官)이 되었었다. 이어 좌정언, 지평, 의정부 사인(舍人), 예문관직제학,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역임하였고, 사간(司諫), 참의를 거쳐 판원주사(判原州事)로 나갔다가 인수부윤(仁壽府尹)에 임명되었다. 다시 외임으로 나가 황해·충청·전라 3도의 감사를 지내고는, 또 예조참판·대사헌과 병조·이조·공조 등 3조 판서를 역임하고, 을묘년에 의정부참찬이 된 것이다. 조계생은 그 마음가짐이 항상 경외로 일관하였고, 또 행실이 엄결(廉潔) 간정(簡整)하였으며, 소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비록 복잡하거나 급거(急遽)함을 당하여도 일찍이 질언(疾言)함이 없었다. 이에 이르러 졸하니, 조시(朝市)를 정지하였고, 시호를 정평(靖平)이라 하였다. 몸을 공손히 가지고 말이 드문 것을 정(靖)이라 이르고, 일을 잡고 절제 있음을 평(平)이라 이른다. 아들 둘이 있으니 극관(克寬)과 수량(遂良)이었다.

『세종실록』 권84 21년 2월 6일 을묘

예조에서 아뢰기를 “진구서(典廐署)에서 1년 동안 소용되는 제수로 종묘제 때의 검은 송아지 5두, 영녕전제(永寧殿祭) 때의 검은 송아지 5두, 사직제 때의 검은 큰

소 3두, 문선왕석전제(文宣王釋奠祭) 때의 큰 황소 2두, 문소전별제(文昭殿別祭) 때의 누런 송아지 2두를 매양 봄·가을에 점우별감(點牛別監)이 선택해 올렸습니다. 이제 점우별감을 혁파하였사오니, 수원부 홍원곶(弘原串)과 양성현 **괴태길곶(槐台吉串)**에 방목하는 소에서 수에 따라 골라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84 21년 2월 11일 기축

사헌부지평 정효강(鄭孝康)이 아뢰기를 “각도에 행대(行臺)를 나누어 파견하는 것은 이미 의논이 결정되었사오나 이제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이 가게 되면 각 고을에 소요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먼 도의 행대는 우선 정지하게 하시고 경기와 우도의 봄·가을 행대는 이미 일찍이 입법하였으니, 좌우도의 행대로 하여금 충주 금천강(金遷江)·아산 공세곶(貢稅串)·면천(沔川) 벌근내(伐斤乃)·**평택** 오미곶(吾未串)·여흥(驪興) 앙암(仰岩) 등 곳을 겸임하게 하시와 수세의 잘잘못을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87 21년 11월 5일 기유

충청도 관찰사가 치계(馳啓)하기를 “엎드려 지난 9월에 흉년을 구휼할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조치하여 아뢰라는 내전(內傳)을 받자왔으므로 신은 구황하는 사의를 삼가 아래와 같이 기록하옵니다. 천안·아산·**평택**·직산 등의 고을은 비록 완전히 농사에 실패하였습디만, 밭농사가 조금 실패한 것뿐이옵고 민간에서는 구황의 물건으로 준비한 것이 전보다 몇 배나 됩니다. 따라서 세전(歲前)에는 진휼하여 구할 수 있지만, 명년 봄에 이르게 되면 군자(軍資)·의창(義倉)에 저축된 미곡으로 병진년의 예에 의하여 호구를 계산하여 진급(賑給)해야 합니다. 만약 또 부족하게 되면 또한 본도의 각 고을에서 저축하였던 묵은 곡식을 옮겨다 진휼하면 가히 기근을 면할 것입니다. 그 곡종(穀種)은 도관서(導官署)에 바치는 전세(田稅)를 제외하고는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 등 각사(各司)나 사사(寺社)의 전세를 모두 곡식으로 바치게 하오면 명년의 종자는 여유가 있을 것이오며, 그 외의 실농한 고을도 역시 이에 의하여 진구하겠나이다. 완전히 흉작한 각 고을의 감할 만한 공물(貢物)은 형편을 요량하여 감면하옵고, 각사의 노비가 경작하는 50집[리] 이하의 것들은 금년의 공(貢)을 면제하게 하옵되, 양맥(兩麥)이 성숙할 때까지는 선상노자(選上奴子)의 신역(身役)을 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를 호조로 내렸다.

『세종실록』 권87 21년 12월 21일 을미

부평부사(富平府使) 이사맹(李師孟)이 아뢰기를 “신이 양근(陽根)·**진위** 등 군현에

서 온천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사오는데 오는 봄을 기다려 다시 찾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권92 23년 정월 24일 임술

평택현감 최흥우(崔興雨)·임실현감(任實縣監) 안맹의(安孟毅)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農桑)을 권장 독려하고 요역을 가볍게 하며, 부렴(賦斂)을 적게 받고 형벌을 신중히 하며, 백성을 구휼하고 의창을 출납하는 것이 너희들의 직임이니 가거든 힘쓰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100 25년 4월 4일 기축

임금이 **진위현** 장호원(長好院) 서쪽 들녘에 머물렀다.

『세종실록』 권109 27년 7월 13일 을유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이제 전제를 고쳐 상정(詳定)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고사(考査) 연구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출임) 공수위전(公須位田)은 지금 대·중·소로 나누어 유수부(留守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의 대로는 30결, 중로는 25결,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의 대로는 25결, 중로는 15결, 소로는 10결을 절급(折給)하고, 각 고을 안의 공수전(公須田)은 모두 다 혁파하여 없앨 것. 함길도(咸吉道)·평안도를 제외하고 6도의 주·부·군·현을 대·중·소로 나누는데, 전주·청주·충주·공주·상주·황주·수원·원평(原平)·회양(淮陽)·선산(善山)·양주·천안·여산(礪山)·봉산(鳳山)·용인·죽산·**진위**·금성(金城)·금화(金化)·함창(咸昌)·문경·개령(開寧)·포천은 대로(大路)로 합니다. 경주·광주·홍주(洪州)·나주·해주·원주·강릉·안동·진주·남원·평산(平山)·서흥(瑞興)·춘천·창원·김해·밀양·담양·고부(古阜)·단양·온양·옥천·순창·무진(茂珍)·재령(載寧)·합천·청도·영천(榮川)·영천(永川)·울산·양산·함안·금산(金山)·대구·괴산·영암·영평(永平)·과천·금천(衿川)·음성·진천·신창(新昌)·예산·전의·연기·영동·황간(黃澗)·문의(文義)·해미(海美)·강진·남평(南平)·장성·임실·해남·금구(金溝)·창평(昌平)·태인(泰仁)·정읍·경산(慶山)·동래·의성·기천(基川)·삼가(三嘉)·언양(彦陽)·고령·군위·의흥(義興)·신령(新寧)·진원(珍原)·고양·영산(靈山)·양지(陽智)·직산·연풍(延豐)·은진(恩津)·이산(尼山)은 중로로 하고, 남양(南陽)·강화·여흥(驪興)·이천·순천·연안(延安)·삼척·양양·철원·영해·순흥(順興)·장흥·풍덕(豐德)·안산·인천·안성·삭녕(朔寧)·양근(楊根)·임천(林川)·청풍(淸風)·태안(泰安)·한산(韓山)·서천·면천(沔川)·서산·익산·진도·금산·진산(珍山)·

김제 · 곡산 · 안악 · 수안 · 풍천(豊川) · 배천(白川) · 평해(平海) · 통천(通川) · 정선 · 고성 · 간성(杆城) · 영월 · 평창 · 함양 · 초계(草溪) · 예천 · 흥해(興海) · 청송 · 곤양(昆陽) · 보성 · 낙안 · 영광 · 부평 · 양천(陽川) · 김포 · 장단 · 지평(砥平) · 적성(積城) · 연천 · 천녕(川寧) · 교동 · 임진 · 교하(交河) · 임강(臨江) · 마전(麻田) · 음죽(陰竹) · 양성 · 가평 · 통진(通津) · 홍산(鴻山) · 제천 · **평택** · 회인(懷仁) · 정산(定山) · 청양(靑陽) · 청안(淸安) · 회덕(懷德) · 진잠(鎭岑) · 부여 · 석성(石成) · 비인(庇仁) · 남포(藍浦) · 결성(結城) · 보령 · 당진 · 영춘(永春) · 보은 · 청산(靑山) · 목천(木川) · 용담(龍潭) · 연산(連山) · 임피(臨陂) · 만경(萬頃) · 능성(綾城) · 광양 · 용안(龍安) · 함열(咸悅) · 부안 · 함평 · 옥과(玉果) · 고산(高山) · 옥구 · 흥덕(興德) · 고창(高敞) · 무장(茂長) · 무안 · 구례 · 곡성 · 운봉(雲峰) · 장수 · 진안 · 무주 · 동복(同福) · 화순 · 흥양(興陽) · 신은(新恩) · 웅진(甕津) · 문화(文化) · 우봉(牛峰) · 장련(長連) · 신천(信川) · 송화(松禾) · 장연(長淵) · 강령(康翎) · 강음(江陰) · 토산(兔山) · 은율(殷栗) · 울진(蔚珍) · 흙곡(鬢谷) · 이천(伊川) · 평강(平康) · 흥천 · 횡성 · 양구 · 인제 · 안협(安峽) · 영덕 · 고성(固城) · 거제 · 남해 · 거창 · 의령 · 하양(河陽) · 용궁(龍宮) · 봉화 · 청하(淸河) · 칠원(漆原) · 진해 · 하동(河東) · 인동(仁同) · 진보(眞寶) · 지례(知禮) · 안음(安陰) · 현풍(玄風) · 산음(山陰) · 단성(丹城) · 비안(比安) · 예안(禮安) · 영일(迎日) · 장기(長鬢) · 창녕 · 사천(泗川) · 기장(機長) · 대흥(大興) · 낭천(狼川) · 덕산(德山) · 아산(牙山)은 소로(小路)로 할 것. (줄임) 경기의 수원 · 양주 · **진위**의 약점위전(藥店位田) 8결 78복 1속은 이것은 다른 도에 없는 것이니 또한 아울러 혁파할 것.(줄임)”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121 30년 7월 27일 신해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경기와 하삼도 목장의 망아지와 제주의 공마(貢馬) 중에서 매년 악선(惡旋)이 없고 훌륭한 재주가 있는 것 1백 필을 가리어 수원부 **홍원곶**(弘原串)에 목양(牧養)하고, 사복겸관(司僕兼官) 2인을 시켜 목축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121 30년 8월 27일 경진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병선(兵船)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 베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을 하였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가만히 서로 작벌(斫伐)하여 혹은 사사 배를 짓고, 혹은 짐재목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연해 주현의 여러 섬과 각 곳의 소나무가 잘되는 땅을 방문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경기 남양부

(南陽府)의 선감미(仙甘彌)·대부(大部)·연흥(鸞興) 세 섬과 거재곶(巨才串), 인천군의 자연도(紫燕島)와 용류도(龍流島), 부평부(富平府)의 문지도(文知島)와 보지곶(浦知串), 안산군(安山郡)의 오질이도(吾叱耳島), 강화부의 금음북(今音北)·미법도(彌法島)·말도(末島)·정포(井浦) 이북의 망산(網山)·남건동을산(南巾冬乙山)·사도(蛇島), 교동현(喬桐縣)의 서빙장곶(西憑將串), 수원부(水原府)의 독삼곶(蠶三串)·형두산(荊頭山)·**홍원곶(弘原串)**·광덕성산(廣德城山)·통진현(通津縣)의 고리곶(古里串)·대명곶(大明串)·어모로(於毛老)…… 등 상항(上項) 주현의 섬과 곶에 전부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하는 짓을 엄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 감사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심게 하고서 옆 근처에 있는 수령·만호로 하여금 감독 관리하고 배양하여 용도가 있을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1인, 수령관(首領官) 1인, 의학교유(醫學教諭)·검률(檢律) 각각 1인. 다른 도(道)도 이와 같다.

본래 고구려의 땅이다. 고려 성종 14년 을미에 개주(開州)를 개성부(開城府)로 승격시켜 적현(赤縣) 6, 기현(畿縣) 7을 관할하게 하다가, 고사(古史)에 다만 현의 수만 기록하고 이름을 적지 아니해서 자세히 상고할 수 없다. 현종 9년 무오에 개성부를 파하고 개성현령(開城縣令)으로써 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의 3현을 관할하게 하고, 장단현령(長湍縣令)으로써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兔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하게 하고,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라 일렀다. 문종 16년 임인에 다시 개성부로 승격시켜 도성에서 관장하던 11현을 모두 붙이고, 또 서해도(西海道)의 평주(平州) 임내(任內)인 우봉군(牛峯郡)을 떼어 이에 붙였으며, 그 후 다시 개성현령을 두어 개성부에 붙였었다. 연대는 알 수 없다. 공양왕 2년 경오에 경기를 갈라 좌·우도로 하여,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현을 좌도로, 개성·강음·해풍·덕수·우봉을 우도로 하고, 또 경기를 더 넓혀서 양광도(楊廣道)의 한양·남양부(南陽府)·인주(仁州)·안산군(安山郡)·교하(交河)·양천(陽川)·금천(衿川)·과주(果州)·포주(抱州)·서원(瑞原)·고봉현(高峯縣)과 교주도(交州道)의 철원부(鐵原府)·영평(永平)·이천(伊川)·안협(安峽)·연주(漣州)·삭녕(朔寧)으로써 좌도에 붙이고, 양광도의 부평·강화부·교동(喬桐)·김포·통진현(通津縣)과 서해도(西海道)의 연안부(延安府)·평주(平州)·백주(白州)·곡주(谷州)·수안군(遂安郡)·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현(俠溪縣)으로써 우도에 붙이고, 각기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두고 수령관(首領官)으로써 돕게 하였다. 4품 이상은 경력(經歷)을 삼고, 5품

이하는 도사(都事)를 삼았다. 우리 태조 3년 갑술에 도읍을 한양부에 정하게 되자, 그 이듬해 을해에 평주·수안·곡주·재령·서흥·신은·협계는 새 서울에 가는 길이 멀므로 도로 서해도에 붙이고, 양광도의 광주·수원부·양근군(楊根郡)·쌍부(雙阜)·용구(龍駒)·처인(處仁)·이천·천녕(川寧)·지평현(砥平縣)을 갖다 이에 붙이고, 광주·수원의 관할인 군·현을 갈라서 좌도로 하고, 양주·부평·철원·연안의 관할인 군·현을 우도로 하였다. 7년에 또 충청도의 진위현을 떼어서 좌도에 붙였다가, 태종 2년 임오에 두 도를 합하여 경기 좌·우도라 하고, 관찰사·수령관(首領官)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3년 계사에 사방길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연안·배주(白州)·우봉·강음·토산을 도로 풍해도(豐海道)에, 이천(伊川)을 도로 강원도에 붙이고, 충청도의 여흥부(驪興府)·안성군·양지·양성·음죽현(陰竹縣)과 강원도의 가평현을 떼어다가 이에 붙이고, 좌·우도로 나누지 않고 다만 경기도관찰사라 일컫고 관청을 수원에 두었다. 동쪽은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 이르고, 서쪽은 황해도 강음(江陰)과 배천(白川)에 이르며, 남쪽은 충청도 죽산과 직산에 이르고, 북쪽은 황해도의 토산(兔山)과 강원도 이천(伊川)에 이르러서, 동서가 2백 64리요, 남북이 3백 64리가 된다.

목이 1이요, 도호부가 8이요, 군이 6이요, 현이 26이다.

명산으로 말하면, 삼각산은 도성(都城)의 진산이 되며, 백악(白岳) 북쪽에 있고, 성거산(聖居山)은 옛 서울의 송악 동북쪽에 있으며, 화악(花岳)은 가평현 북쪽에 있고, 갑악(鉗岳)은 적성현(積城縣) 동쪽에 있으며, 용호산(龍虎山)은 임강현(臨江縣) 남쪽에 있고, 오관산(五冠山)은 임강현의 임내(任內)인 송림(松林) 북쪽에 있으며, 마리산(摩利山)은 강화부 남쪽에 있다.

대천으로 말하면, 한강은 그 근원이 강원도 오대산(五臺山)으로부터 나와 영월군 서쪽에 이르러 여러 내를 합하여 가근동진(加斤同津)이 되고, 충청도 충주의 연천(淵遷)을 지나서 한결같이 서쪽으로 흘러 여흥(驪興)을 지나 여강(驪江)이 되고, 천녕(川寧)에서 이포(梨浦)가 되며, 양근(楊根)에서 대탄(大灘)이 되고, 또 사포(蛇浦)와 용진(龍津)이 되었으며, 한 줄기는 인제현 이포소(伊布所)로부터 나와 춘천에 이르러 소양강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가평현 동쪽에서 안판탄(按板灘)이 되고, 양근 북쪽에서 입석진(立石津)이 되며, 또 양근 남쪽에서 용진도(龍津渡)가 되고, 사포(蛇浦)로 들어가서 두 물이 합하여 흘러 광주 경계에 이르러서 도미진(渡迷津)이 되고, 이어 광나루가 되었으며, 서울 남쪽에 이르러 한강도(漢江渡)가 되고, 서쪽에서 노도진(露渡津)이 되며, 서쪽에서 용산강(龍山江)이 되었는데, 경상·충청·강원도 및 경기 상류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쳐 서울에 다다른다. 강물이 도성 남쪽을 지나 금천(衿川) 북쪽에 이르러 양화도(楊花渡)가 되고, 양천(陽川) 북쪽에서

공암진(孔岩津)이 되며, 교하 서쪽 오도성(烏島城)에 이르러 임진강과 합하고, 통진(通津) 북쪽에 이르러 조강(祖江)이 되며, 포구곶이(浦口串)에 이르러서 나뉘어 들어 되었으니, 하나는 곧장 서쪽으로 흘러 강화부 북쪽을 지나 하원도(河源渡)가 되고, 교동현 북쪽 인식진(寅石津)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황해도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쳐 서울에 다다른다.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 강화부 동쪽 갑곶이나루(甲串津)를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니, 전라·충청도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쳐 서울에 다다른다. 임진강은 그 근원이 함길도(咸吉道) 안변(安邊)의 임내인 영풍현(永豐縣) 방장동(防牆洞)으로부터 와서 이천(伊川)·안협(安峽)·삭녕(朔寧) 경계를 지나 연천에 이르러, 물이 비로소 커져서 징파도(澄波渡)가 되고, 마전(麻田)을 지나 적성(積城)에 이르러 이포진(梨浦津)이 되며, 장단(長湍)에서 두지진(豆只津)이 되고, 임진현 동쪽에 이르러 임진도(臨津渡)가 되며, 서쪽으로 흘러 임진현 동남쪽에 이르러서 덕진(德津)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교하현 서쪽에 이르러서 낙하도(洛河渡)가 되며, 봉황바위(鳳凰岩)를 지나 오도성(烏島城)에 이르러 한강과 합하여 함께 바다로 들어간다.

호수가 2만 8백 82호, 인구가 5만 3백 52명 본조(本朝)는 인구의 범이 밝지 못하여, 문적에 적힌 것이 겨우 열의 한둘이 되므로 나라에서 매양 바로잡으려 하나, 너무 인심을 잃게 되어 그럭저럭 이제까지 이르렀으므로 각도 각 고을의 인구수가 이렇게 되었고, 다른 도들도 모두 이렇다.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천 7백 13명, 선군(船軍)이 3천 8백 92명이다.

간전(墾田)은 20만 3백 47결(結)이다. 밭이 12만 4천 1백 73결 남짓하고, 논이 7만 6천 1백 73결 남짓하다. 그 부세(賦稅)는 쌀(稻米) 맵쌀(粳米)·흰쌀(白米)·세경미(細粳米)·점경미(粘粳米)·조미(糙米)가 있다. 직미(稷米)·콩(豆) 콩·팥·녹두가 있다 보리 보리·밀·메밀이 있다. 지마(芝麻) 속명 참깨 꿀(蜂蜜)·밀(黃蠟)·지마유(芝麻油) 속명 참기름 소자유(蘇子油) 속명 법유(法油)·가루장(末糲)·겨재(芥子)·모시(白苧布)·다섯새베(正五升布) 대개 군읍(郡邑)의 구실(田賦)이 머나 가까우나 모두 같으므로 다시 고을 밑에 적지 아니한다 등이다.

토공(土貢)은 모과(木瓜)·개암씨(榛實)·상수리(橡實)·밤(栗)·감(柑)·대추(棗)·느타리(眞茸)·싸리버섯(鳥足茸)·황각(黃角)·산삼(山蔘)·도라지(桔梗)·마른 멧돼지 고기(乾猪)·토끼젓(兔醢)·물고기젓(魚醢)·송어(水魚)·민어(民魚)·젓(醢)·질그릇[陶器]·사기그릇[磁器]·목기(木器)·버들그릇(柳器)·갈소쿠리(蘆簞)·참빗(省持)·왕골속(莞心)·노화지(蘆花紙)·잡깃(雜羽)·갓(常笠)·새(草)·마의(馬衣)·짚(藁草)·꿀(芻藁)·새끼(藁索)·삼노(麻索)·소나무그늘음(松煙)·송진(松脂)·주토(朱土)·갈탄(葛炭)·향나무(香木) 백단향(白檀香)·자단향(紫檀響)·역목(樑木)이 있다 굴가루

[蠣灰]·명아주재[藜灰]·황희(黃灰)·지초(芝草)·단풍나무잎[楓葉]·영선잡목(營繕雜木)·자작나무[自作木]·은행나무[杏木]·피나무·뽕나무[黃桑木]·앵도나무[櫻木]·장작[燒木]이다.

약재는 쇠슬개[牛膽]·범의 정강이뼈[黃虎脛骨]·곰의 쓸개[熊膽]·돼지쓸개[豬膽]·수달피쓸개[獺膽]·고슴도치쓸개[猬膽]·선달토끼머리[臘兔頭]·고슴도치가죽[猬皮]·아교(阿膠)·말벌집[露蜂房]·지네[蜈蚣]·누에나비[元蠶蛾]·누에허물[馬鳴退]·가뢰[斑貓]·매미허물[蟬退皮]·뱀허물[蛇退皮]·두꺼비·청개구리·자라껍데기[鼈甲]·뽕나무벌레·마른잉어[乾鯉魚]·잉어쓸개[鯉魚膽]·굴조개껍질[牡蠣]·누에똥[蠶沙]·오가피(五加皮)·황경나무껍질[黃蘗皮]·뽕나무뿌리껍질[桑白皮]·느릅나무속껍질[榆白皮]·산이스랏씨[郁李仁]·복숭아씨[桃仁]·살구씨[杏仁]·탱자[枳殼]·회화나무열매[槐實]·회화나무꽃[槐花]·송진[松脂]·연밥[蓮子]·조피나무열매[川椒]·오배자(五倍子)·복령 붉은 것과 흰 것 두 종류가 있다. 복신(茯神)·안식향(安息香)·산골[自然銅]·돌고름[禹餘糧]·하늘타리[天圓子]·새삼씨[兔絲子]·고무딸기열매[覆盆子]·오미자(五味子)·나팔꽃씨[牽牛子] 흰 것과 검은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질경이씨[車前子]·절레씨·백부자(白附子)·백출(白朮)·창출(蒼朮)·창포말(菖蒲末)·석창포(石菖蒲)·쥐방울·쇠비름·붓꽃[馬薊]·부들꽃[蒲黃]·택사(澤瀉)·도라지[桔梗]·탱알[紫葳] 삼주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가 있다. 수자해줄뿌리[天麻]·수자해줄삭[赤箭]·가희톱·삿갓풀뿌리[蚤休]·검산풀뿌리[續斷]·질국대뿌리[漏蘆]·박새[藜蘆]·족도리풀뿌리[細辛]·칠힌뿌리[葛根]·석죽화[瞿麥]·외나무뿌리[地榆]·승검초뿌리[當歸]·마뿌리[山藥]·하늘타리뿌리[括樓根]·버들웃[大戟]·자리공뿌리[商陸]·검화뿌리껍질[白蘇皮]·매자기뿌리[京三稜]·여우오줌풀뿌리·나리뿌리[百合]·감대뿌리[虎杖根]·두릅뿌리[獨活]·두여미조자기[天南星]·쇠무릎[牛膝]·사자발쑉[獅子足艾]·도꼬마리[蒼耳]·시호(柴胡)·끼질가리뿌리[升麻]·함박꽃뿌리[芍藥] 붉은 것과 흰 것 두 가지가 있다·호본(蒿本)·구리대뿌리[白朮]·끼무릇뿌리[半夏]·현삼(玄蔘)·쓴너삼뿌리[苦蔘]·더위지기[茵陳]·진봉(秦)·현호색(玄胡索)·부처손[卷柏]·참외뿌리[土瓜根]·속서근풀[黃芩]·단너삼뿌리[黃耆]·으름덩굴[木通]·으름[林下夫人]·낙석(絡石)·지모(知母)·회초미뿌리[貫衆]·수뿔나무뿌리·바곳[草烏頭]·방장초(放杖草)·살남람(殺男藍)·들쑉[漆]·며래뿌리[鍊]·이리어금니[狼牙]·하국[旋覆花]·겨우살이꽃[金銀花]·금등화[金燈花]이다. 이상의 잡공(雜貢) 및 약재(藥材)를, 이제 토산의 회귀한 것은 각기 그 고을 밑에 기록하고, 그 각 고을마다 나는 것으로서, 다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다시 기록하지 아니한다.

재배하는 약재는 백변두(白扁豆)·양귀비[粟]·차조기[紫蘇]·영생이[薄荷]·소야기·악실(惡實)·겨자[芥子]·삼씨[麻子]·회향(回香)·생지황(生地黃)·장군풀[大

黃]·청목향(靑木香)·정가荊芥·해바라기씨[葵子]·무우씨·순무우씨(蔓菁子)·참외꼭지[眞菘帶]·맨드라미꽃[鷄冠花] 붉은 것과 흰 것 두 종류가 있다. 감국(甘菊)·잇[紅花]·울무[薏苡]이다. 이상의 약재는 각 고을의 풍토에 맞는 것을 따라 의원(醫院)으로 하여금 심어 기르게 한다. 본래 산이나 들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각 고을 밑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무릇 한 물건이 밭구실(田賦)·토공(土貢)·약재 따위에 거둬 나온 것이 많이 있으나, 이제 그 거둬진 것을 좃고, 오직 꿀[蜂蜜]·밀[黃蠟] 따위는 다만 토공에 기록하고, 인삼·오미자(五味子) 따위는 다만 약재난에 기록하여, 다시 거둬 나오지 않게 하였다.

좌도수군첨절제사영(左道水軍僉節制使營)은 남양부(南陽府) 서쪽 화지량(花之梁)에 있고, 항상 중대선(中大船) 3척과 쾌선(快船) 10척, 무군선(無軍船) 13척을 거느리고 강화를 수어(守禦)하는데, 장번수군(長番水軍)이 69명이요, 각관(各官)의 좌·우령(左右領) 선군이 총 1천 5백 97명이다. 대개 배 1척에 각기 댈나무와 물을 실어 나르는 삼판소선(三板小船)이 있으며, 그 무군선은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영선군(領船軍)을 모두 징발하여 태우는 것이니, 뒤의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영종포만호(永宗浦萬戶)는 남양부(南陽府)의 서쪽에 있고 중대선 3척, 맹선 1척, 무군선(無軍船) 3척이요, 각관의 좌·우령(左右領) 선군(船軍)이 총 5백 10명이다. 초지량만호(草芝梁萬戶)는 안산 서남쪽 모래곶(沙串)에 있고, 중대선 5척, 무군선 4척이요, 장번수군(長番水軍)이 8명이며,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총 6백 15명이다. 제물량만호(濟物梁萬戶)는 인천군(仁川郡) 서쪽 성창포(城倉浦)에 있다. 병선 4척, 무군선 4척이며,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총 5백 10명이다.

우도수군첨절제사영(右道水軍僉節制使營)은 교동현(喬桐縣) 서쪽 응암량(鷹岩梁)에 있고, 항상 쾌선(快船) 9척과 맹선(孟船) 3척과 왜별선(倭別船) 1척을 거느리고 교동(喬桐)을 수어하는데, 장번수군이 2백 95명이요,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1천 18명이다. 정포만호(井浦萬戶)는 강화부 서쪽에 있다. 쾌선 11척, 무군선 10척이요, 강화 장번수군이 2백 46명이며, 각관 좌·우령 선군이 9백 24명이다.

좌도충청도(左道忠淸道) 정역찰방(程驛察訪)의 관할 역이 7이요 양재(良才)·낙생(樂生)·구흥(駒興)·김녕(金寧)·좌찬(佐贊)·분행(分行)·무극(無極) 우도 정역찰방의 관할 역이 8이며, 영서(迎曙)·벽계(碧蹄)·마산(馬山)·동파(東坡)·초현(招賢)·청교(靑郊)·교예(狡猊)·중련(中連). 경기·강원도 정역찰방의 관할 역이 22이다. 녹양(綠楊)·안기(安奇)·양문(梁文)·풍전(豐田), 그 나머지 18역은 모두 강원도 지경에 있다.

좌도수참전운판관(左道水站轉運判官) 광진승(廣津丞)을 겸한다. 우도수참전운판관(右道水站轉運判官) 벽란도승(碧瀾渡丞)을 겸한다. 감목관(監牧官) 1인, 의학교유(醫學教諭) 1인, 검률(檢律) 1인, 역승(驛丞) 5인이다.

중림도(重林道)의 관할 역이 6이요 경신(慶申)·석곡(石谷)·반유(盤乳)·남산(南山)·금수(金輪)·종생(種生) 동화도(同化道)의 관할 역이 5이며 장족(長足)·해문(海門)·**청호**

(善好) · 가천(加川) · 강복(康福) 평구도(平丘道)의 관할 역이 8이요, 구곡(仇谷) · 쌍수(雙樹) · 봉안(奉安) · 오빈(娛賓) · 전곡(田谷) · 동백(冬白) · 감천(甘泉) · 연동(連洞). 경안도(慶安道)의 관할 역이 7이며, 덕풍(德豐) · 아천(阿川) · 오천(吾川) · 유춘(留春) · 양화(楊花) · 신진(新津) · 안평(安平) 도원도(桃源道)의 관할 역이 6이다. 구화(仇和) · 백령(白嶺) · 옥계(玉溪) 용담(龍潭) · 단금(丹金) · 상수(相水)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매홀현(買忽縣)인데, 신라가 수성군(水城郡)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남정할 때, 고을 사람 김칠(金七) · 최승규(崔承珪) 등 2백여 사람이 귀순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수주(水州)로 승격시켰다. 성종 14년 을미에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8년 을사에 이를 파하고, 현종 9년 무오에 다시 지수주사(知水州事)로 삼았다. 원종 12년 신미에 몽고 군사가 대부도에 침입하여 백성을 노략질하니, 섬 사람들이 분함을 못 이겨 몽고 군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매, 주관(州官)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쳐서 평정하였으므로 그 공으로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그 뒤에 또 목으로 승격시켰다가, 충선왕 2년 경술에 모든 목을 없앰에 따라 수원부(水原府)로 강등시켰다. 공민왕 11년 임인에 홍건적이 선봉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청하매, 양광도의 주군 가운데서 수원이 맨먼저 항복하여 적을 맞아들였으므로 적의 형세가 더욱 퍼졌기 때문에, 군으로 강등시켰는데, 고을 사람들이 채상 김용(金鏞)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서 얼마 안 되어 다시 부(府)로 되었다. 조선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가 되었다. 별호는 한남(漢南)이니, 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혹은 수성(隋城)이라고도 한다 속현이 5이니, 쌍부(雙阜) 옛날의 육포(六浦)임. **영신** 혹은 영풍(永豐)이라고도 함 정송(貞松) 옛날의 송산부곡(松山部曲)임 용성(龍城) 본래 고구려의 상홀현(上忽縣)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차성(車城)으로 고쳐서 당은군(唐恩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위의 4현은 현종 9년에 모두 수주 임내에 붙였다. 광덕(廣德)이다. 현종 9년 고을을 분속(分屬)시켰을 때에는 이 이름이 없다. 향(鄉)이 3이니, 공이(工二) · 주석(柱石) · 분촌(盆村)이요, 부곡(部曲)이 4이니, 육내미(陸內彌) · 포내미(浦內彌) · 사량(沙梁) · 쟁홀(爭忽)이요, 처(處)가 5이니, 사정(奢井) · 금물촌(金勿村) · 유계(楡梯) · 양간(楊干) 본래 인천(仁川)에 속하였는데, 태종 무술에 내속되었다. · 심곡(深谷)이며, 장(莊)이 3이니, **오타(五朶) · 종덕(宗德) · 신영(新永)**이다. 처음에 양성에 속하였는데, 태조(太祖) 7년 무인에 지형이 개의 이빨처럼 어긋나게 들어왔으므로 내속시켰다. 위의 향 · 부곡 · 처 · 장은 다만 옛 이름만 있으므로 모두 본부에 붙여서 직촌(直村)으로 삼았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용인에 이르기 17리, 서쪽으로 쌍부(雙阜) 바라곳이

[八羅串]에 이르기 55리, 남쪽으로 충청도 **평택현**의 유지두(酉只頭)에 이르기 65리, 북쪽으로 과천(果川)에 이르기 21리이다.

호수가 1천 8백 42호, 인구가 4천 9백 26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백 97명, 선군(船軍)이 4백 5명이다.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4이니, 최·김·이·서(徐)요, 서울에서 온 성(京來姓)이 1이니, 백(白)이요, 촌락성(村落姓)이 1이니, 하(河)이며, 망성(亡姓)이 4이니, 백(白)·최(崔)·이(李)·방(方)이다. 쌍부(雙阜)의 토성이 2이니, 서·심(沈)이요, 망성이 3이니, 송·이·신(愼)이며, **영신**의 토성이 1이니 김이요, 망성이 4이니 이·최·오·황이다. 정송(貞松)의 토성이 1이니 김이요, 망성이 2이니 이·최이며, 속성(續姓)이 1이니 윤이다. 용성의 토성이 2이니 차·송이요, 망성이 2이니, 임(任)·장이며, 속성이 1이니 김이다. 광덕(廣德)의 속성이 1이니, 박(朴)이요, 공이(工二)의 토성이 1이니 송이며, 망성이 1이니, 공(公)이다. 주석(柱石)의 망성이 4이니 송·최·차요, 분촌(盆村)의 토성이 1이니 백이며, 망성이 1이니 전(田)이다. 내미(內彌)의 토성이 1이니, 이요, 망성이 1이니 백이며, 속성이 1이니 이이다. 망사량(亡沙梁)의 토성이 1이니 견(堅)이요, 망성이 2이니 주(周)·김이며, 쟁홀(爭忽)의 토성이 1이니 이요, 망성이 1이니 김이며, 속성이 1이니 박(朴)이다. 사정(奢井)의 속성이 1이니 도(都)요, 금물촌(金勿村)의 토성이 1이니 여(呂)이며, 망성이 1이니 이이다. 유제(楡梯)의 속성(續姓)이 1이니 차요, 양간(楊干)의 속성이 2이니, 박·김이며, 심곡(深谷)의 망성이 1이니 차이다. **오타(五朶)**의 망성이 1이니 여(呂)요, 속성이 1이니 김이며, **종덕(宗德)**의 토성이 1이니 유(柳)요, 속성이 3이니 서·이·차이며, **신영(新永)**의 속성이 1이니 유(柳)이다. 인물은 한림학사·국자궤주(翰林學士·國子祭酒) 최루백(崔婁伯)이다. 고려 인종(仁宗) 때 사람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간전(墾田)이 1만 9천 1백 54결이다. 논이 조금 적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참깨·뽕나무·삼(麻)이요, 토공(土貢)은 지초(芝草)이며, 약재(藥材)는 사자발쑉·연밥·속서근풀(黃芩)이다. 염소(鹽所)가 6이요, 어량(魚梁)이 2이다. 하나는 쌍부(雙阜)에 있고, 하나는 용성(龍城) 유지두(酉只頭)에 있다. 주로 송어(蘇魚)가 나며, 또는 송어(首魚)·민어·참치(眞魚)·농어(鱸魚)·뱅어(白魚)·상어(沙魚)·쌀새우(白蝦)·중새우·큰새우·굴(石花)·낙지·모시조개(黃蛤)가 난다. 읍토성(邑土城) 둘레가 2백 70보요, 안에 우물 2개가 있다. 역이 2이니, 장족(長足)·동화(同化)요, 목장이 2이니, 양야궤(陽也串)과 부(府) 서쪽 30리에 있다. 토장(土場)의 둘레가 15리인데, 나라의 말 75필을 놓아 먹인다. 홍원궤(洪原串)이며 용성현 서쪽에 있는데, 소를 놓아 먹인다. 봉화가 1곳이니, 흥천산(興天山)이다. 부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양성 **괴태길궤(槐台吉串)**에 응하고 서쪽으로 남양(南陽)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

관할은 도호부가 1이니 남양(南陽)이요, 군이 2이니 안산과 안성이며, 현이 4이니 진위·용인·양성·양지이다.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 도호부 진위현

영(令) 1인.

본래 고구려의 부산현(釜山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수성군(水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가 그대로 따라 수주(水州) 임내에 붙였다가, 명종 임진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는데, 뒤에 영으로 승격시켰다.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송장(松莊)은 예전에 수원부에 속하였었는데, 세종 6년 갑진에 본현에 내속(來屬)시켰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성에 이르기 4리, 서쪽으로 수원(水原) 바안내(所內川)에 이르기 7리, 남쪽으로 수원 임내 영신현(永新縣)에 이르기 7리, 북쪽으로 수원 송죽(松足)에 이르기 6리이다.

호수가 2백 21호, 인구가 5백 35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0명, 선군(船軍)이 51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이·김·최요, 망성이 2이니 유(柳)·송이며, 속성이 1이니 조(趙)요, 직산에서 왔다. 송장의 토성이 1이니, 유(柳)이다.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2천 8백 41결이다. 논과 밭이 반반이다. 토의(土宜)는 옥곡과 조·팥·메밀·녹두·참깨·뽕나무·삼(麻)이요, 약재는 황금(黃芩)이다.

역이 1이니, 청호(菁好)이다. 본래 수원에 속하였는데, 세종 6년 갑진에 땅이 가깝다 하여 본현에 내속시켰다.

『세종실록』 148 지리지 경기 수원도호부 양성현

본래 고구려의 사복홀(沙伏忽)인데, 신라가 적성(赤城)으로 고쳐서 백성군(白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가 양성현으로 고쳐, 현종 무오에 수주(水州) 임내에 붙였다가, 명종 5년 을미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으며, 조선 태종 계사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안성에 이르기 9리, 서쪽으로 진위에 이르기 11리, 남쪽으로는 충청도 직산에 이르기 30리, 북쪽으로 용인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가 4백 25호, 인구가 1천 2백 10명이요, 군정은 시위군이 76명, 선군이 68명이다.

토성이 4이니, 하(河)·유(柳)·이(李)·갈(葛)이요, 망성이 3이니, 임(任)·강(康)·송(宋)이다.

땅이 매마르며, 간전이 4천 7백 42결이다. 논이 좀 적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메밀·참깨·삼·뽕나무요, 토공(土貢)은 물고기젓·민어·건송어(乾水魚)·지초(芝草)요, 약재는 황금(黃芩)이다. 염소(鹽所)가 1이다.

역이 1이니 가천(加川)이요, 목장이 1이다. 현 서쪽 **괴태길곶(槐台吉串)**에 있으니, 수원(水原) 남쪽 지경으로 쭉 들어갔고, 둘레가 7리이다. 세종 11년 기유에 비로소 전구서(典廩署)의 소를 놓아 먹이는데, 수초(水草)가 넉넉하고 좋다. 봉화가 1곳이니, **괴태길곶(槐台吉串)**이다. 남쪽으로 면천(沔川) 명해산(明海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수원 흥천산(興天山)에 응한다.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줄임) **경양포(慶陽浦)**는 직산현(稷山縣) 서쪽 1리에 있고, 본주 및 **평택**의 구실은 이곳에 바쳐서 배로 공세곶(貢稅串)을 지나 서해를 거쳐서 서강(西江)에 다닫는데, 물길이 5백 40리이다. (줄임)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줄임) 관할은 군이 2이니, 천안·옥천(沃川)이요, 현이 17이니, 문의(文義)·청안·진천·죽산(竹山)·직산(稷山)·**평택**·아산·신창(新昌)·온수(溫水)·전의(全義)·연기·목천(木川)·회인(懷仁)·청산(靑山)·황간(黃澗)·영동·보은이다.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직산현

본래 위례성(慰禮城)이다. 백제 시조 온조왕이 도읍을 만들고 나라를 세웠는데, 고구려가 차지하여 사산현(蛇山縣)으로 고쳤고, 신라 때에도 그대로 따라 백성군(白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가,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 9년에 천안 임내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는데, 조선 태조 2년 계유에 고을 사람 환자(宦者) 김연(金淵)이 명나라에 들어가 황제를 모시고 있다가, 사신이 되어 와서 청하므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켰다. 태종 원년 신사에 다시 감무(監務)로 강등하였고,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고려 때에 하양창(河陽倉)을 고쳐 **경양현**으로 삼아 영(令)을 두고 감장관(監場官)을 겸임하게 하다가, 조선 태조 5년 병자에 현을 혁파하여 직촌(直村)으로 삼았다. (줄임)

토성이 4이니 최·유(兪)·백(白)·조(趙)요, 촌성(村姓)이 1이니 전(全)이요, **경양**의 속성이 3이니 김·조·백이다. (줄임)

백제 시조 온조왕 사당 현의 동·북쪽 사이 5리에 있다. 세종 11년 기유 7월에 비로소 사당을 세우고,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전하여 제사를 지내게 한다 역이 1이니 성환이요,

봉화가 1곳이니, 현의 서쪽 **경양산(慶陽山)**에 있다. 서쪽으로 아산 갯바위[笠巖]에, 북쪽으로 양성(陽城) **괴태길곶(槐台吉串)**에 응한다.

『세종실록』 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아산현

(줄임)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천안에 이르기 30리, 서쪽으로 면천(沔川)에 이르기 30리, 남쪽으로 신창(新昌)에 이르기 15리, 북쪽으로 **평택**에 이르기 25리이다.

(줄임) 봉화가 1곳이니 입암산(笠巖山)이 현의 서쪽에 있다. 서쪽으로, 면천(沔川) 명해(明海)에, 북쪽으로 양성 **괴태길곶**에 응한다.(줄임)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평택현

고려 때에 감무를 두었고, 조선 태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직산에 이르기 6리, 서쪽으로 직산에 이르기 8리, 남쪽으로 아산에 이르기 10리, 북쪽으로 수원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가 1백 79호요, 인구가 7백 4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8명이요, 진군(鎭軍)이 3이요, 선군이 78명이다.

토성(土姓)이 4이니, 이·임(林)·박·전(田)이요, 망성(亡姓)이 2이니, 손(孫)·전(全)이요, 촌성(村姓)이 1이니, 박이다.

땅이 기름지고 매마른 것이 반반이며, 기후가 차다. 간전(墾田)이 2천 2백 34결이요 논이 5분의 3에 좀 넘는다. 토의(土宜)는 벼·피·콩·보리·밀이다. 토공(土貢)은 죽제비털[黃毛]이요, 약재(藥材)는 속서근풀[黃芩]이다.

역이 1이니 화천(花川)이다.

『세종실록』 권155 지리지 함길도 함흥부 정평 도호부

(줄임) 본부(本府)의 입성(入姓)이 48이니 (줄임) 이(李) 안성·**진위**에서 왔다.(줄임)

『세종실록』 권155 지리지 함길도 영흥대도호부(永興大都護府)

(줄임) 본부(本府)의 토성이 22이니, 한(韓) **진위**에서 왔다. (줄임) 장평진(長平鎭)의 망입성(亡入姓)이 16이니, (줄임) 황(黃) **평택**에서 왔다. (줄임)

4. 『문종실록』

『문종실록』 권3 즉위년 9월 19일 경신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를 구워 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에서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로 정하였으니, 다만 도회의 읍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잡물을 수송 운반하는 즈음에는 온 경내가 소요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많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 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 하도록 하소서. 경기는 양천(陽川)·김포·통진(通津)·강화·교동은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하고, 과천·금천·인천·고양·부평·안산은 길이 멀지 않으니 모두 사표국(司豹局)에 흙을 운반하게 하고, 수원부를 1도회로 삼아서 남양(南陽)·진위·양성·축산·용인·양지(陽智)·음죽(陰竹)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광주를 1도회로 삼아서 여흥(驪興)·양근(楊根)·가평·천녕(川寧)·지평(砥平)·이천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양주부(楊州府)를 1도회로 삼아서 포천·영평(永平)·연천·삭녕(朔寧)·임강(臨江)과 강원도의 철원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원평부(原平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교하(交河)·임진(臨津)·장단(長湍)·적성(積城)·마전(麻田)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개성부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염초를 구워 내게 하고, 부근에 있는 풍덕군(豐德郡)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줄임) 충청도에서는 공주를 1도회로 삼아서 이산(尼山)·은진(恩津)·진잠(鎭岑)·연산(連山)·부여·석성(石城)·임천(林川)·서천·한산(韓山)·홍산(鴻山)·청양(靑陽)·비인(庇仁)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충주를 1도회로 삼아서 괴산·연풍(延豐)·음성·영춘(永春)·단양·진천·제천·청풍(淸風)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청주를 1도회로 삼아서 문의(文義)·회덕(懷德)·청안(靑安)·연기·전의(全義)·목천(木川)·옥천·영동·황간(黃澗)·청산(靑山)·회인(懷仁)·보은·직산·천안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남포현(藍浦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보령(保寧)·태안·면천(沔川)·서산·당진·덕산(德山)·평택·온양·아산·정산(定山)·대흥(大興)·결성(結城)·해미(海美)·신창(新昌)·예산·홍주(洪州)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줄임). 흙을 가져올 적엔 공해(公廩)와 사사(寺社)·원관(院館)을 제외하고는 민호에게서 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며, 그 소목(燒木)은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여 갑자기 준비하여 운반해 바치게 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군기감(軍器監)에서 미리 병조에 보고하고는 차례를 맞은 도회에 공문을 보내어

농한기에 소속된 각 고을로 하여금 수량에 의하여 운반해 바치도록 하고, 만약 도회소의 수량이 미리 먼저 조치하지 못하여도 또한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취토장(取土匠)이 선물을 받고자 공무를 핑계하고서 백성을 침해하여 다양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백성들도 또한 흙을 운반하는 일을 꺼려서 염초에 소용되는 흙을 던져 버리고는 도회소에 와서 쓸모가 없는 잡토를 가지고 속여서 바치려고 꾀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청컨대 각 고을에서 일찍이 높은 직임을 지낸 강직하고 명민한 품관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친히 취토를 감독하여 봉함(封緘)해서 도회소로 압송하도록 하고, 그 작폐한 장인과 능히 고찰하지 못한 품관도 또한 모두 죄주게 하소서. 역사의 기한은 봄에는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고, 가을에는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회일에 마치도록 하며, 염초의 많고 적은 것은 각도에서 구운 것과 이보다 먼저 구운 수량을 비교 징협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품계를 올려 권장 격려해 주고, 가장 적은 사람은 핵문하여 죄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5. 『단종실록』

『단종실록』 권6 1년 6월 9일 갑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경상도·충청도·강원도 등 여러 도의 도회소(都會所)에서 만드는 군기(軍器)가 일정한 액수가 없어서 감련관(監鍊官)의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므로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폐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매1년에 (줄임) 충청도는 충주도회소에서 충주와 진천·단양·청풍·괴산·제천·영춘(永春)·음성(陰城)·연풍(延豐) 등 9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冑)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袋)·나도통아(羅縵筒兒) 각각 20부(部)요, 옥천도회소(沃川都會所)에서 옥천과 청주·보은·문의(文義)·영동·회덕·전의(全義)·목천(木川)·청안(淸安)·연기·황간(黃澗)·청산(靑山)·회인(懷仁) 등 13개 고을이 갑 4부, 주 4정, 각궁 20장, 장편전, 궁대·나도통아 각각 20부요, 공주도회소에서 공주와 임천(林川)·은진(恩津)·부여·연산(連山)·석성(石城)·이산(尼山)·진잠(鎭岑) 등 8개 고을이 갑 3부, 주 3정, 각궁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요, 남포도회소(藍浦都會所)에서 남포와 서천·보령·한산·홍산(鴻山)·비인(庇仁)·청양(淸陽) 등 7개 고을이 갑 3부, 주 3정, 각궁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요, 태안도회소에서 태안과 서산·면천(沔川)·당진 등 4개 고을이 갑 2부, 주 2정, 각궁 1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0부요, 내상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홍주·덕

산·아산·해미(海美)·대흥(大興)·정산(定山)·신창(新昌)·평택·결성(結城)·예산·온양·직산·천안 등 13개 고을이 갑 5부, 주 5정, 각궁 2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5부입니다. (줄임) 이로써 상액(常額)을 정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군기감에서 상정한 식례(式例)를 상고하여 여러 고을과 도회소에 나누어 정하고, 법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소서, 만약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공장(工匠)과 해당 관리와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수령과 감련관(監鍊官)을 아울러 율에 의하여 죄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권7 1년 7월 6일 신유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의 응사(鷹師)가 옛날에는 3패(牌)로 나누어 패마다 실차(實差) 30인과 예차(豫差) 5, 60인이 번갈아 번상하였는데, 지난 임신년에 예차를 모두 제하니, 무릇 어주(御廚)와 제사·연향(宴享)에 쓰이는 짐승은 모두 본시(本寺)에서 사냥하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응사 30인에서 날마다 승정원 및 송골방(松鶴坊)과 병조에 차송(差送)되는 자가 모두 10인인데, 또 사고가 있는 사람을 제하면 지금 있는 자가 10여인에 불과하여 매번 사냥할 때가 되어서는 응사가 모자랍니다. 청컨대 패마다 각각 10인을 더하되, 본읍(本邑)에 역이 있고 없는 문빙(文憑)을 상고하여서 취재(取才)하여 차정(差定)하소서.” 하였다.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 여러 고을에 소 2백 5두를 나누어 기르고 있으나, 젖소는 없고 또 희생으로도 합당하지 않으니 풀과 콩만 헛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가을철 점마별감(點馬別監)으로 하여금 살찌고 튼튼하여 수레를 끌 만한 것은 뽑아 사복시(司僕寺)에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관찰사에게 주어서 빈민으로 농우가 없는 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게 하소서. 사복시의 젖소는 모두 경기의 민호에서 색출한 것이나, 모두 오래지 아니하여 병으로 죽고 혹은 젖이 나지 않는 까닭에 다시 민간에서 구하니 그 폐단이 무궁합니다. 청컨대 여러 목장의 어린 말로써 암소 60우와 황소 10두를 사서 경기 양성의 괴태길곶(槐台吉串) 목장에 놓아 기르고, 젖소를 골라 본사에서 길러 민폐를 덜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6. 『세조실록』

『세조실록』 권2 1년 9월 11일 계미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연해의 요해지에는 진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邊鎭)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을 설치하고, 근방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경기의 광주도(廣州道)는 그 중익을 광주·이천·양근(楊根)·양지(陽智)로 하고, 좌익은 여흥(驪興)·천녕(川寧)·지평(砥平)·음죽(陰竹)으로 하며, 우익은 안성·진위·양성·용인·죽산으로 합니다. 다음 양주도(楊州道)는 그 중익을 양주·원평(原平)·포천·적성(積城)·가평으로 하고, 좌익은 삭녕(朔寧)·마전(麻田)·영평(永平)·연천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豐德)·장단·임진(臨津)·임강(臨江)으로 합니다. 다음 부평도(富平道)는 그 중익을 부평·인천·양천·금천·고양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남양·안산·과천으로 하며, 우익은 김포·교하(交河)·통진독진(通津獨鎭)·교동·강화·개성부로 합니다. 충청도의 충주도(忠州道)는 그 중익을 충주·청풍(淸風)·연풍(延豐)으로 하고, 좌익은 단양·영춘(永春)·제천으로 하며, 우익은 괴산·음성으로 합니다.

다음 청주도는 그 중익을 청주·진천·문의(文義)·연기·회인(懷仁)·보은·청안(淸安)으로 하고, 좌익은 옥천·황간(黃澗)·영동·청산(靑山)으로 하며, 우익은 천안·온양·전의·평택·아산·목천(木川)·직산으로 합니다. 다음 홍주도(洪州道)는 그 중익을 홍주·청양·대홍으로 하고, 좌익은 신창(新昌)·예산으로 하며, 우익은 면천(沔川)·덕산(德山)으로 합니다. 다음 공주도(公州道)는 그 중익을 공주·정산(定山)·이산(尼山)으로 하고, 좌익은 회덕(懷德)·진잠(鎭岑)·연산(連山)으로 하며, 우익은 부여·석성(石城)·은진(恩津)으로 합니다. 다음 태안진(泰安鎭)은 그 중익을 태안으로 하고, 좌익은 서산·해미(海美)로 하며, 우익은 당진으로 합니다. 다음 남포진(藍浦鎭)은 그 중익을 남포·비인(庇仁)·홍산(鴻山)으로 하고, 좌익은 한산(韓山)·서천·임천(林川)으로 하며, 우익은 보령·결성(結城)으로 합니다. (출입)

중익수령(中翼守令)의 직함은 모도모진중익병마절제사(某道某鎭中翼兵馬節制使)라 일컫고, 당상관이 아니면 첨절제사(僉節制使)라고 일컬으며, 그 나머지의 좌·우익수령의 직함은 모도모진모익병마단련사(某道某鎭某翼兵馬團鍊使)·부사(副使)·판관(判官)이라고 일컫습니다.

갑사·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근장(近仗)·섭육십(攝六十)·방패(防牌)·별군(別軍)의 시위와 제영(諸營)·제진(諸鎭)·제포(諸浦)의 군사와 사옹원(司饗院)·사복시(司僕寺)·충호위(忠扈衛)·상의원(尙衣院) 등의 제원(諸員)과 응사(鷹

師)는 모두 익에 속하여 당번이면 번을 서며 속산(屬散)된 사람과 이미 초모(抄募)한 여러 고을의 효용향리(驍勇鄉吏)와 수성군(守城軍)·잡색군(雜色軍)도 역시 익에 속하게 하고, 긴급한 사변을 제외하고는 사옹(司饗) 이하의 군사는 습진(習陣)을 면제합니다.

도성위(都城衛)에는 시골에 살고 있는 자가 거의 반이나 되니, 감사의 예에 의하여 번상(番上)하고, 춘추로 행하는 의갑(衣甲)의 점열(點閱)도 역시 구례에 의하여 서울에 올라와 점검을 받습니다.

제색군사(諸色軍士)의 번상은 중익 절제사(中翼節制使)가 점열(點閱)하여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보고하면, 도절제사는 다시 점열하지 말고, 이를 병조에 이첩합니다.

익속군사(翼屬軍士)의 군안(軍案)은 3건을 성적(成籍)하여 1건은 중익절제사(中翼節制使)가 보관하고 1건은 도절제사(都節制使)가, 1건은 병조에서 보관합니다.

제과(諸科)의 이업(肄業)을 제외하고, 성중관(成衆官)으로 들어가려는 자 및 감사·별시위·총통위·근장(近仗)·방패·섭육십(攝六十)·사옹원(司饗院)·사복시(司僕寺)·충호위(忠扈衛)·상의원(上衣院) 등의 제원(諸員)과, 봉상시재랑(奉常寺齋郎)·악생(樂生)·무공(舞工)과, 여러 관사의 이전(史典)·조례(皂隸)는 의금부의 나장(螺匠)·백호(百戶)·도부(都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에 속하게 하고, 으레 취재할 만한 자는 모두 중익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관장케 하여, 입격(入格)한 자는 도절제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조에 이첩하여 다시 시험하여 서용하게 합니다. 그 총통위·방패·섭육십·사옹원·사복시·충호위·상위원 등의 제원으로 들어간 자는 중익절제사의 문첩을 받아서 병조에 바치고, 그 이전으로 들어간 자도 역시 중익절제사의 문첩을 받아서 이를 이조에 바칩니다.

무릇 취재하여 입격(入格)하였으나 빈자리가 없어 아직 서용하지 않은 자와 일단 거관(去官)되어 산관(散官)에 귀속된 자는, 모두 그 고을의 익에 예속케 하였다가 빈자리를 기다려서 서용하게 합니다.

매년 2월 18일과 10월 18일에 중익을 모아 습진(習陣)하며, 겸하여서 의갑을 점열하고, 11월 22일과 정월 22일에는 각각 그 익에서 수관(首官)이 되어 습진합니다.

양계(兩界) 연해의 여러 고을은 그 수비와 방어가 가장 중요하므로 군사들이 가볍게 본읍을 이탈하지 못하며, 중익장(中翼將)은 각기 그 중익에서 습진할 때 친히 여러 고을로 가서 습진하고, 겸하여서 의갑을 점열하며, 좌·우익이 습진할 때에도 좌·우익장이 역시 각각 친히 그 고을로 가서 습진합니다.

무릇 모든 호령은 중익병마절제사가 도절제사의 호령을 듣고, 모든 익은 중익 병마절제사의 호령을 듣되, 만약 연해의 여러 진에 사변이 있을 경우, 그 익의 군병을 징집하며, 또 도절제사에게 보고하여 시기에 맞추어 사변에 대응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4 2년 7월 20일 정해

이조에서 아뢰기를 “역승(驛丞)들이 폐단을 일으켜 역로(驛路)가 날로 더욱 쇠잔해집니다. 전의 경기좌도와 충청도의 정역찰방(程驛察訪)은 경기충청좌도정역찰방(京畿忠淸左道程驛察訪)이라 칭하고, 곧은 길로 충청도 성환역에서 평천역(平川驛)까지는 경기충청우도(京畿忠淸右道)라 칭하여 정역찰방을 두십시요. 성환과 일신(日新)양도(兩道)의 역승을 혁파하고, 또 종전의 경기좌도 찰방의 소관이던 **청호(靑好)**·가천(加川)·강복(康福) 등 3개의 역은 지역이 우도에 가까우니, 청컨대 이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5 2년 8월 10일 정미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충청도의 직산(稷山) 선군(船軍) 정춘(鄭春)이 아산 부자 정우(鄭宇)에게 쌀을 내라고 고하니 정우가 듣지 않았습니다. 정춘이 원한을 품고 고을 사람 이처(李處)·우맹손(禹孟孫) 등과 도모하여 정춘은 의금부백호(義禁府百戶)라 자칭하고 이처는 가천역자(加川驛子)라 칭하여, **평택**으로 달려가서 읍의 수령 방강(方綱)에게 재촉하여 포도군(捕盜軍) 16인을 조발(調發)하고 **화천역마(花川驛馬)**를 발하였습니다. 곧장 정우의 집에 가서 ‘왕지(王旨)가 있다.’고 칭하고, 정우와 그 아들 중 지인(智印)을 잡아 결박하고 위협하니 정우가 정춘에게 면포(綿布)를, 데리고 간 역자에게는 면포 및 백저포(白苧布)를 뇌물로 주었습니다. 드디어 함께 온양군에 이르러 길에서 정춘의 아우 정지(鄭知)를 만났습니다. 정춘이 거짓 정지를 정의(鄭儀)라 칭하고 정우에게 곡식을 주기를 청하니, 정우가 문권(文券)을 작성하여 그 아들 정춘생(鄭春生)에게 주어 집으로 보냈습니다. 정지가 정우의 집에 가서 곡식을 받으려 하니, 집 사람이 거짓인 것을 깨닫고 잡아서 관가로 보냈습니다. 정우가 목천(木川)에 이르러 노상에서 애걸하니, 정춘이 그 신(簞)을 벗기고 놓아 보냈습니다. 율에 의하면 정춘의 죄는 응당 베어야 하고, 방강은 장(杖) 1백 대를 때려 변방 먼 곳에 보내어 충군(充軍)하고, 이처·정지·우맹손은 아울러 장 1백 대를 때려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고, 꺾박하여 취한 장물은 본주인에게 돌려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정춘은 사형을 감하여 장류(杖流)하고, 이처·정지·우맹손은 각각 1등을 감하고, 방강은 다만 파직하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권9 3년 10월 20일 경술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중익·좌익·우익을 혁파하고, 헤아려 살핀 후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계문(啓聞)합니다. (줄임)

충청도의 공주진에는 연기·회덕(懷德)·진잠(鎭岑)·연산(連山)·은진(恩津)·이산(尼山)·석성(石城)·임천(林川)·한산(韓山)·부여·정산(定山)을 속하게 하고, 홍주진(洪州鎭)에는 서천·비인(庇仁)·남포(藍浦)·홍산(鴻山)·보령(保寧)·청양(靑陽)·대흥(大興)·덕산(德山)·결성(結城)을 속하게 하며, 태안진에는 서산·해미(海美)·당진·면천(沔川)을 속하게 하며, 천안진에는 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新昌)·예산·목천(木川)·전의(全義)를 속하게 하며, 청주진에는 진천·문의(文義)·회인(懷仁)·보은·청산(靑山)·황간(黃澗)·영동·옥천·청안(靑安)을 속하게 하며, 충주진에는 영춘(永春)·제천·단양·청풍(靑風)·음성·괴산·연풍(延豐)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경기의 수원진에는 부평·인천·금천·안산·남양(南陽)·**진위**·안성·양성을 속하게 하고, 광주진에는 양근(陽根)·지평(砥平)·천녕(川寧)·여흥(驪興)·음죽(陰竹)·죽산·이천(利川)·양지(陽智)·용인을 속하게 하며, 양주진에는 연천·마전(麻田)·적성(積城)·원평(原平)·교하(交河)·고양(高陽)·수평(水平)·포천(抱川)·가평(加平)을 속하게 하며, 강화진에는 김포·양천(陽川)·통진(通津)·교동(喬桐)을 속하게 하며, 개성진(開城鎭)에는 삭녕(朔寧)·임진(臨津)·풍덕(豐德)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15 5년 1월 23일 병오

충청도관찰사 황효원(黃孝源)이 도내 아산의 유향품관(留鄕品官)·인리(人吏)와 시흥(時興)·창덕(昌德)·장시(長時)·일흥(日興)·광시(光時)·**화천** 역자(驛子) 등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신이 아산의 아전을 보건대, 모두 속임수를 써서 수령을 모해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관사가 허물어지고 좁고 더러운데도 재목의 산지에서 멀어 영건(營建)할 길이 없고, 그 기지가 큰 물에 세차게 충격하여 장차 가라앉을 형세입니다. 더구나 역리들의 장고에 수령이 사망한다는 말은 매우 괴탄(怪誕)합니다. 일찍이 수령을 지내고 살아 있는 자는 적고 죽은 자가 많으니, 역리의 말이 빈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의 항목 여섯 역은 아전이 본래 적고 또 흉년으로 인하여 유망(流亡)한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산은 동쪽으로 온양군과의 거리가 12리이고, 북쪽으로 **평택현**과의 거리와 남쪽으로 신창현(新昌縣)과의 거리가 각각 10리이니, 청컨대 아

산현을 혁파하고 그 토지와 인민은 세 고을에 나누어 붙이고, 향리는 온양에 붙이고, 노비는 여섯 역에 나누어 붙여서 그 악한 풍속을 징계하고 피폐한 고을을 도와 주어 역로(驛路)를 충실하게 하소서.” 하니 이조에 계하(啓下)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군·현을 폐지하거나 설치한다는 그 일은 매우 중대합니다. 청컨대 도순문진홀사(都巡問賑恤使) 황수신(黃守身)으로 하여금 다시 편부(便否)를 살펴서 계문하게 한 뒤에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황효원(黃孝源)의 계문에 따라서 이를 혁파하고 그 토지와 인민을 온양 등 세 고을에 나누어 붙이고, 노비와 향리는 적당히 인근 고을에 붙였다.

『세조실록』 권19 6년 2월 5일 임자

병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의 여러 역에 역승(驛丞)을 없애고 찰방(察訪)을 두어서 혹은 한 도, 두 도, 세 도, 네 도를 아울러서 하나의 도로 하였으나 역로가 너무 멀어서 때때로 순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마를 타고 왕래하는 자가 한 도라고 생각하여 원근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수일정(數日程)을 달려서 지나가다가 인마가 함께 피폐해지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청컨대 경기도와 하삼도 여러 역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도를 나누소서. 경기의 중림도(重林道) 소관인 인천부의 중림역(重林驛)·경신역(慶新驛), 금천현(衿川縣)의 반유역(盤乳驛), 양천현(陽川縣)의 남산역(南山驛), 통진현(通津縣)의 종생역(種生驛), 부평부(富平府)의 금륜역(金輪驛), 안산군의 석곡역(石谷驛)과, 동화도(同化道)의 소관인 수원부의 동화역·**청호역**·장족역(長足驛), 남양부(南陽府)의 해문역(海門驛), 양성현의 가천역(加川驛), 안성군의 강복역(康福驛)과, 양재도(良才道)의 소관인 금천현(衿川縣)의 양재역(良才驛), 광주의 낙생역(樂生驛), 용인현의 구흥역(駒興驛)·금령역(金嶺驛), 죽산현의 좌찬역(佐贊驛)·분행역(分行驛), 이천부의 아천역(阿川驛)·오천역(吾川驛), 음죽현(陰竹縣)의 유춘역(留春驛)·무극역(無極驛) 총 23역을 합하여 한 도로 하고 경기좌도라고 칭하여 경기좌도 찰방으로써 이를 맡아 보게 하소서.(줄임)”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20 6년 4월 1일 정미

병조에서 점마별감(點馬別監) 최윤(崔潤)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양성현 **피대길곶**에서 먹여 기르는 소 가운데 죽은 것은 가축과 고기를 목자(牧者)에게 주고, 매 1두에 1두씩 징수하게 하여 겸감목관(兼監牧官)이 그 번식한 숫자를 고찰하되, 목장의 말을 번식시킨 예에 의하여 포핍(褒貶)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21 6년 7월 9일 계미

경상도·전라도·충청도·황해도의 관찰사에게 유지하기를 “초계(草溪)의 이양재(李良材), 고령의 주욱(周郁)·홍즙(洪楫), 진주의 강상보(姜尙甫), 함안의 박경원(朴景元), 전주의 차중의(車仲義), 덕산(德山)의 인근(印瑾), 청주의 이승명(李承命), 진천의 이운의(李云猗), **평택**의 장맹창(張孟昌), 신계(新溪)의 하소의(河紹義), 평산(平山)의 김임(金任) 등을 평안도에 순행할 때에 시위하도록 하려고 하니 역마를 주어 올려 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권25 7년 8월 11일 무인

병조에서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도순찰사(都巡察使) 윤자운(尹子雲)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함길도 사민 2천 5백 호를 들여보낼 때에, 연도(沿道)의 여러 고을이 그 공궤(供饋)하는 것만 아니라 교초(菱草)·시탄(柴炭) 등의 물건을 준비하는 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청컨대 여러 길로 나누어서 연도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소서. 평해·울진·삼척·강릉·양양·간성(杆城)·고성·통천(通川)·흡곡(歙谷)으로 한길로 삼고, 원주·황성·홍천·춘천·낭천(狼川)·금성(金城)·회양(淮陽)으로 한 길을 삼고, **진위**·용인·광주·양주·포천·영평(永平)·철원·김화(金化)·금성(金城)·회양으로 한 길을 삼아서 세 길로 나누어 들여보내고, 하삼도의 길은 도순찰사로 하여금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권27 8년 정월 28일 계해

처음에 좌찬성 황수신이 아산의 전지를 모람(冒濫)되게 받았다고 하여 사헌부에 내려서 이를 핵문하게 하였는데, 황수신이 헌부(憲府)에서 핵문한 6가지 조목을 두루 진술하고 상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출임) 글이 올라가자, 사헌부장령(司憲掌令) 유계번(柳季潘)을 불러들여 되풀이 하여 힐문(詰問)하니 유계번이 조목에 따라 변명하였다. 이어서 좌승지 홍응(洪應)을 불러서 다시 의논하고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황수신이 하사받기 전에 아산의 관노 도자를 사역시켰고, 온양군사(溫陽郡事) 조원지(趙元祉)는 황수신의 종이 청하는 말을 듣고 화리(花利)를 전부 주었으니, 그 아산차사원(牙山差使員)인 **평택현감** 김득경(金得敬)과 조원지를 핵문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세조실록』 권28 8년 3월 6일 신축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아산 관노 화만(禾萬)은 비록 어리석어 미혹되고 무지하다

고 하더라도 김구(金鉤)와 조규(趙珪)의 사주를 받아 대신을 고소하였고, **평택현감** 김득경·온양군사 조원지는 대신에게 아부하여 법을 굽혀서 청에 따랐으며, 조규·김구는 본현을 회복할 것을 도모하여 대신의 허물을 갖추 기록하였다가 비밀히 부추겨서 화만에게 고소하게 하였으니 모두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유(敎宥) 전이라 하여 전부 석방하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죄를 주십시오.” 하니 명하여 조규·김구의 고신(告身)을 거두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론하지 말게 하였다.

『세조실록』 권28 8년 5월 23일 정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황수신은 나라 일을 맡아 보는 대신으로서 **평택현감**에게 청하여, 미리 관노 도자(道者)를 점유하고 하사를 받은 것이 아닌데도 집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또 관노비를 부려 아산의 채전(菜田)을 경작하게 하여 그 이익을 거두었으며, 또 원접사(遠接使)로서 친히 평산부(平山府)에 이르러, 윤산(尹山)의 역을 면제해 주기를 청하여 가사에 전속시켰으니 특히 대신의 공명정대한 체모가 없습니다. 청컨대 성상의 재결로 시행하시되 도자는 본역(本役)에 도로 정하고, 윤산은 충군하며, 아산의 채전의 소출은 호조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대로 따랐으나 황수신은 거론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권33 10년 4월 22일 갑진

사정전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니,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순(鄭昌孫)·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滄)·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호조판서 김국광(金國光)·동지중추원사 양성지(梁誠之), 행상호군(行上護軍) 이운손(李允孫)·임원준(任元濬), 예조참판 김길통(金吉通)·공조참판 강희맹(姜希孟)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재상들로 하여금 교대로 일어나서 상수(上壽)를 드리게 하였다. 도승지 노사신(盧思愼)이 아산군을 다시 설치할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의 의논은 무어라고 하던가?” 하였다.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혹자는 말하기를 ‘이미 혁파하였으니 다시 설치할 수 없다.’ 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마땅히 본군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만약 다시 설치하고자 한다면 다시 설치하자.’ 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로 정부에 내려 주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아산을 혁파하여 온양·**평택**·신창(新昌)에 나누어 붙였는데, 황수신(黃守身)이 충청도진휼사(忠淸道賑恤使)로서 돌아와서, 본도의 관찰사 황효원(黃孝源)의 현명하고 유능함을 지극히 칭찬하고, 이어서 아산의 공해(公廩)의 터 북쪽에다 자기 처의 무덤을 이장하겠다고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사헌부에서 항소하여 정쟁(庭諍)하고,

고을 사람들이 상언하여 호소하였었다. 그때 내섭판사(內瞻判事) 김숙(金瀾)이 사민경차관(徙民敬差官)으로서 먼저 충청도에 갔는데, 임금이 명하여 그 일을 김숙에게 맡겨서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하도록 하였다.(줄임)

『세조실록』 권36 11년 8월 18일 기사
임금의 행차가 진위에서 머물렀다.

『세조실록』 권37 11년 9월 11일 을묘
운수부령(雲水副令) 이효성(李孝誠)이 서울에서 와서 천안에서 왔는데 도적이 의복을 훔쳐갔다. 군사(郡事) 강흡(姜洽)이 방수(房守)와 직속하는 사람을 국문하여 아뢰었으나 착오가 많으므로 과직을 명하였다. 저녁에 진위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권37 11년 12월 28일 신축
형조에서 아뢰기를 “양지현감(陽智縣監) 남지(南芝)가 백정(白丁) 은동(銀同)·황거(黃巨) 등을 잘못 죽이고는 병들어 죽었다고 속이어 문안을 조작하였으니, 죄가 법을 어기어 구타하여 죽게 한 율에 적용되므로 장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합당합니다. 용인현령 민순(閔諄)·진위현령 김순선(金純善)·죽산현감(竹山縣監) 우공로(禹恭老) 등은 황거(黃巨) 등의 시체를 검험(檢驗)하여 장살(杖殺)한 것은 덮어 숨기고 거짓 병사로 만들었으니, 죄가 출입인죄(出入人罪)의 5등을 감한 율에 적용됩니다. 비록 모두 사유(敎宥)를 지났으나 유지(宥旨)에 ‘남형(濫刑)한 각 사람은 예가 고살(故殺)과 같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무리는 방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남지는 장 90대에 도 2년 반에 처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않게 하고, 민순·김순선·우공로는 모두 파출하였다.

『세조실록』 권39 12년 7월 12일 신사
병조에서 군기를 상정하여 아뢰기를 “군기시에는 향각궁(鄉角弓) 7백 40장(張), 녹각궁(鹿角弓) 5백 장, 착전(錯箭) 8백 80부(部), 마전(磨箭) 1천 5백 부, 통전(筒箭) 5백 부, 신기전(神機箭) 1천 4백 부, 중전(中箭) 7천 2백, 세전(細箭) 4천 8백, 궁현(弓弦) 6천 개, 철갑(鐵甲) 두구(頭具)도 갖췄다. 16령(嶺), 대쟁(大鎗) 망치(槌)도 갖췄다. 12개, 중쟁(中鎗)·소쟁(少鎗) 망치도 갖췄다. 각 20개, 대장휘(大將麾) 5개, 위장휘(衛將麾) 25개, 고(鼓) 20개, 대각(大角) 20개, 소각(小角) 10개, 대장표기(大將標旗) 1개, 위장표기(衛將標旗) 5개, 부장표기(部將標旗) 25개, 통장표기(統將標旗) 1백 개, 여수표기(旅帥標旗) 1백 50개, 대정표기(隊正標旗) 2백 5개, 장표기(長標旗) 2백 50개,

유군장표기(遊軍將標旗) 5개, 영장표기(領將標旗) 25개, 만강표기(彎強標旗) · 장용표기(壯勇標旗) · 파적표기(破敵標旗) · 공현표기(控弦標旗) · 잡류표기(雜類標旗) · 사자표기(獅子標旗) · 사대표기(射隊標旗) 각 1개, 잡류통장표기(雜類統將標旗) 5개, 대장초요기(大將招搖旗) 1개, 위장초요기(衛將招搖旗) 5개, 부장초요기(部將招搖旗) 25개, 유군장초요기(遊軍將招搖旗) 5개, 부장영하기(部將令下旗) 1백 개, 통장영하기(統將令下旗) 1백 50개, 여수영하기(旅帥令下旗) 2백 개, 대정영하기(隊正令下旗) 2백 50개, 유군장영하기(遊軍將令下旗) · 영장영하기(領將令下旗) 각 25개, 대발화(大發火) 4백 80개, 중발화(中發火) 1천 2백 개, 소발화(小發火) 6천 개, 지화(地火) 1천 2백 개이고 (줄임) 장단 · 교동 · 부평 · 인천 · 이천 · 양근(楊根) · 풍덕(豐德) · 안산 · 안성 · 괴산 · 홍산(鴻山) · 제천 · 덕산(德山) · 평택 · 직산 · 은진(恩津) · 부여 · 비인(庇仁) · 결성(結城) · 보령 · 남포(藍浦) · 영동(永同) · 온양 · 단양 · 청풍(淸風) · 경산(慶山) · 개령(開寧) · 삼가(三嘉) · 하양(河陽) · 칠원 · 인동(仁同) · 지례(知禮) · 안음(安陰) · 고령 · 현풍(玄風) · 군위 · 비안(比安) · 의흥(義興) · 영산(靈山) · 기장(機張) · 능성(綾城) · 용안(龍安) · 함열(咸悅) · 고산(高山) · 태인(泰仁) · 흥덕(興德) · 정읍 · 고창 · 구례 · 곡성 · 장성 · 임실 · 장수 · 진안 · 무주 · 동복(同福) · 대정(大靜) · 정의(旌義) · 담양 · 익산 · 강진 · 신계(新溪) · 신천(信川) · 봉산 · 재령 · 강령(康翎) · 칠원 · 통천(通川) · 영월 · 회양(淮陽) · 춘천 · 울진 · 홍원(洪原) · 이성(利城) · 고원(高原) · 강서(江西) · 용강(龍岡) · 삼수(三水) · 함중(咸從) · 영유(永柔) · 증산(甑山) · 삼등(三登) · 은산(殷山) · 상원(祥原) · 중화(中和) · 덕천(德川) · 가산(嘉山) · 괘산(郭山) · 철산(鐵山) · 용천(龍川) · 벽동(碧潼) · 이산(理山) · 귀성(龜城)에는 각기 향각궁 26장, 마전(磨箭) · 통전(筒箭) · 각 13부, 장창 8자루, 중창 18자루, 환도 26과, 궁현(弓絃) 52개이고, 파주 · 고양 · 교하(交河) · 통진(通津) · 김포 · 양지(陽智) · 삭녕(朔寧) · 마전(麻田) · 영평(永平) · 용인 · 진위 · 양천(陽川) · 지평(砥平) · 포천 · 적성(積城) · 금천(衿川) · 천녕(川寧) · 연천 · 음죽(陰竹) · 음성(陰城) · 가평 · 죽산 · 과천 · 문의(文義) · 회인(懷仁) · 정산(定山) · 청양 · 연풍(延豐) · 음성 · 청안(淸安) · 회덕(懷德) · 진잠(鎭岑) · 연산(連山) · 이산(尼山) · 대흥(大興) · 석성(石城) · 해미(海美) · 강진 · 신창(新昌) · 예산 · 목천(木川) · 전의 · 연기 · 영춘(永春) · 황간(黃澗) · 청산(靑山) · 아산 · 함창(咸昌) · 문경 · 예안(禮安) · 청하(淸河) · 봉화 · 진해 · 진보(眞寶) · 단성(丹城) · 용궁(龍宮) · 산음(山陰) · 신녕(新寧) · 임피(臨陂) · 만경(萬頃) · 금구(金溝) · 용담(龍潭) · 옥과(玉果) · 여산(礪山) · 남평(南平) · 진산(珍山) · 창평(昌平) · 진원(珍原) · 운봉(雲峯) · 화순 · 토산(兔山) · 문화(文化) · 우봉(牛峯) · 장련(長連) · 송화(松禾) · 은율(殷栗) · 강음(江陰) · 이천(伊川) · 평강(平康) · 김화(金化) · 낭천(狼川) · 홍천 · 양구 · 인제 · 안협(安峽) · 고성 · 평창 · 금성(金城) · 흡곡(歙谷) ·

정선·횡성·삼수(三水)·갑산(甲山)·박천(博川)·운산(雲山)·위원(渭原)·순안(順安)·맹산(孟山)·양덕(陽德)에는 각각 향각궁 17장, 마전(磨箭) 9부, 통전(筒箭) 8부, 장창 7자루, 중창 10자루, 환도(環刀) 17과(把), 궁현(弓絃) 34개입니다. 이상의 군기는 1년에 한 번 제조하는데, 기모(旗髦)는 2년 만에 한 번 제조합니다. 상공(上貢)하는 수량 외에는 모두 거진에 간수해 두고, 갑주(甲冑)와 쟁(鎗)과 고각(鼓角)은 다만 거진에서만 제조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권40 12년 10월 6일 갑진

침지중추부사 이병정(李秉正)·훈원원판관 이영희(李永禧)·시강원사경(侍講院司經) 권계희(權季禧)·해미현감(海美縣監) 이계희(李季禧)·사헌부감찰 김극이(金克倪)·풍저창봉사(豐儲倉奉事) 정겸(鄭謙)·선공직장(繕工直長) 김극련(金克鍊)·**진위현령** 양원(梁瑗) 등 1백여 인의 자급(資級)을 회수하도록 명했으나, 모두 외람되게 도둑을 잡은 공으로 상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나라의 법으로써 조율한다면 마땅히 종신토록 서용하지 않고서 선비의 기풍을 면려(勉勵)시켜야 할 것인데, 다만 그 자급만 회수한 것은, 이영희는 한계희(韓繼禧)의 사위이고, 권계희는 권개(權愷)의 아들이고, 김극이는 김국광(金國光)의 아들이고, 양원은 양성지(梁誠之)의 아들이므로 모두 중요한 지위에 있는 세력가의 자제이기 때문이었다. 권계희(權季禧)는 유가의 자제로서 시서를 조금 알고 있는데도 엄치가 없는 것이 이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나머지 무식한 무리들은 어찌 죽히 헤아리겠는가?

『세조실록』 권45 14년 1월 28일 기축

임금의 행차가 용인의 가질동(加叱洞)에 이르러 사냥하고, 사람을 서울에 보내어 효령대군·임영대군(臨瀛大君)·정의공주(貞懿公主)와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엄(李琰)의 딸에게 각각 사슴 1마리씩, 유도장상소(留都將相所)에 각각 노루 1마리씩을 주게 하고, 저녁에 **진위**의 장호원(長好院) 들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권45 14년 3월 3일 계해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기관찰사 이계전(李季專)에게 치서하기를 “수원 수인(囚人) 최경지(崔敬之), **진위** 수인 최경손(崔敬孫), 용인 수인 최유림(崔宥霖), 남양 수인 최옥천(崔玉泉)·이무작(李無作), 안산 수인 북간(北間) 등은 환궁을 기다린 뒤에 사람을 임명해서 서울에 압송하게 하라.” 하였다. 충청도관찰사 안철손(安哲孫)에게 치서하기를 “공주 수인 백정(白丁) 불단(佛丹) 등 6명은 사람을 임명해서 행재소(行在所)에 압송하게 하라.” 하였다.

7. 『예종실록』

『예종실록』 권1 즉위년 10월 25일 신해

(줄임: 남이의 죄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이침(李琛)·이부(李溥)·신숙주·한명회·조석문(曹錫文)·박원형(朴元亨)·이극증(李克增) 및 형조판서 강희맹(姜希孟)이 의금부(義禁府)·대간과 같이 죄를 조사하였으나, 남이 등이 그래도 승복하지 아니하였다. 겸사복(兼司僕) 향화인(向化人) 동청주(童淸周)가 계달하기를 “신정보(辛井保)가 **홍원곶**에 가는데 남이가 말하기를 ‘산릉(山陵)에 나아갈 때에 미쳐서 돌아오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신정보가 대답하기를 ‘미쳐서 올 수 있습니다.’ 고 하자 남이가 ‘속히 돌아오라.’ 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향화인(向化人) 이거을가개(李巨乙加介)가 또 아뢰기를 “김계종(金繼宗)이 홍주에 가는데 남이가 말하기를, ‘산릉에 나아갈 때에 미쳐서 돌아오겠느냐?’ 라고 하니, 김계종이, ‘미쳐서 올 수 있습니다.’ 고 하자 남이가, ‘속히 돌아오라.’ 고 말하였습니다.” 하므로 곧 의정부에 명하여 신정보·김계종을 잡아오도록 하였다.

8. 『성종실록』

『성종실록』 권2 1년 1월 4일 계미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지금 여러 도의 점마별감(點馬別監)의 우마적(牛馬籍)을 상고해 보니, 경기 양성의 **괴태길곶**에는 본래 방목한 소가 1백 1두였는데 고실(故失)이 23두이고, 장단의 호곶(壺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40두였는데 죽은 것이 30두, 없어진 것이 8두이며, 강화의 북일곶(北一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31두였는데 죽은 것이 49이고, 없어진 것이 6두이며, 진강장(鎭江場)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천 3백 2두였는데 죽은 것이 1백 22두이며, 충청도 태안의 대소산(大小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4백 58두였는데 죽은 것이 1백 17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19두이며, 신평곶(薪串)에는 본래 방목한 소가 77두였는데 죽은 것이 9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14두이며, 지령산(知靈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두였는데 고실이 24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7두이며, 이산곶(梨山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22두였는데, 죽은 것이 25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44두이며, 서산의 안면곶(安眠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54두였는데 죽은 것이 39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8두이며, 홍주(洪州)의 원산도(元山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22두였는데 없어진 것이 10두입니다. (줄임) 대체로 마정(馬政)은 군국의 중대한 일인데도 겸감목관(兼監牧官)이 점검하는 일에 태만하여 많은 망실(亡失)을 초래하였으니 위임하

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담당 관서로 하여금 이를 추국(推鞠)하게 하여 그 망실이 많은 사람은 파출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3 1년 2월 30일 기묘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를 받들건대, ‘국가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니, 군액이 점점 줄어 들었다. 세조께서 국가 대계를 위하여 대신을 보내어 한산(閑散)한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군액을 보충하게 하였으나 초쇄(抄刷)할 때에 너무 상세한 것을 면치 못하였고, 백성들도 안일한 데에 습관이 되어 혹 도피하는 자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군보(軍保)가 충실하지 못하고, 번상이 매우 잦아 농사에 힘쓸 틈이 없어서 백성이 매우 괴롭게 여긴다. 쓸데 없는 군사는 도태하여 버리고, 번차를 다시 정하여 군사와 백성을 유족하게 함으로써 세조의 군사를 족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제색(諸色)의 군사가 정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액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고, 아울러 4년으로 서로 교대하게 하니, 쉬는 날이 많지 않아서 점점 피폐하게 됩니다. 또 을유년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군사를 병적에 올릴 때에 토지 5결로 한 정부(丁夫)에 준하고, 고공(雇工)·백정을 아울러 계산하여 보(保)를 만들었으므로, 그 액수는 비록 많으나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고쳐서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강원도·황해도·평안도·영안도(永安道) 등의 도는 그때 군안을 미처 만들지 못하였는데, 전정(田丁)·고공·백정을 아울러 계산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 액수의 많고 적은 것이 알맞으니, 마땅히 예전 그대로 하소서. 다만 위의 항목에 제도·제읍의 군사는 정한 액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번상(番上)이 가지런하지 못합니다. 지금 군액 및 분번할 수와 3도 군정(軍丁)의 감액할 수와 아울러 응당 행해야 할 사건을 가지고 개록(開錄)하여 아뢰입니다.

별시위(別侍衛)는 2천 4백인데, 지금 1천 5백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3백으로 하여 10달에 서로 교대하고, 갑사는 2만인데, 지금 1만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2천으로 하여 10달에 서로 교대하고, 파적위(破敵衛)는 3천인데, 지금 2천 5백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5백으로 하여 10달에 서로 교대하고, 대졸(隊卒)은 3천 4백 40인데, 지금 3천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6백으로 하여 10달에 서로 교대하고, 팽배(彭排)는 6천인데, 지금 5천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1천으로 하여 10달에 서로 교대하고, 내금위는 2백인데, 지금 1백으로 정하여 장번으로 하고, 응양위(鷹揚衛)는 2백인데, 지금 1백으로 정하여 장번으로 하고 친군위(親軍衛)는 40인데, 전 수에 의하여 2번으로 나누고, 매번에 20으로 하여 1년에 서로 교대하고, 충찬위(忠贊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지금 5번으

로 나누어 녀달에 서로 교대하고, 충순위(忠順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지금 5번으로 나누어 녀달에 서로 교대하고, 족친위(族親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장번으로 하고, 충의위(忠義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장번으로 하고, 만강대(彎強隊)·장용대(壯勇隊)는 아울러 6백인데, 장번으로 하고, 이미 일찍이 입속(入屬)한 자 외에는 이후로 천인이 입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정병(正兵)은 8만 60인데, 지금 7만 4천 2백으로 정하고, 7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1만 6백으로 하여 두 달에 서로 교대하고, 외방(外方) 각진(各鎭)의 유방군(留防軍)은 5천 5백이고, 번상(番上)하는 군사는 5천 1백인데,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마련하여 전례에 의하여 성적(成籍)하게 하고, 총수를 아뢰도록하게 하소서.

갑사는 전에는 4번이었는데, 지금 5번으로 나누어 16달 만에 휴식하고, 정병(正兵)은 전에는 4번이었는데, 지금 7번으로 나누어 12달 만에 휴식하고, 두 달에 서로 교대하여 모두 신역을 가볍게 하여 쉬게 하며, 갑사의 봉족(奉足)은 7정 가운데에서 2정을 줄이고, 기정병(騎正兵)의 봉족은 5정 가운데 2정을 줄이고, 보정병(步正兵)의 봉족은 3정 가운데 1정을 줄이소서.

전정·고공·재백정 및 제색장인(諸色匠人)은 아울러 계산하여 보를 만들지 마소서.

번상하는 군사를 점고(點考)할 때에 호수(戶首)·봉족(奉足)이 혹 튼튼하고 실하지 못하거나, 용기(戎器)가 혹 정련(精練)되지 못하였거나, 번상하는 군사와 유방군(留防軍)이 혹 당번이 아니거나, 혹 도(到)를 꺾하였거나, 혹 대신 세웠거나, 혹 말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혹 활쏘고 말타는 것이 능하지 못하면 범한 것의 경중에 따라 본인은 장 1백 대를 때리고, 집리(執吏)도 장 1백 대를 때리고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고, 여수(旅帥)·대정(隊正)은 결장(決杖)하여 먼 변방에 충군시키고, 수령은 과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절도사(節度使)·평사(評事)는 논죄하여 파출하소서.

충청도에 있어서 충주는 제색군사(諸色軍士)가 본래는 2천 1백 87인데 지금 2천 1백 47로 정하고, 괴산은 3백 30인데 지금 3백으로 정하고, 연풍은 82인데 지금 40으로 정하고, 청풍(淸風)은 2백 32인데 지금 1백 90으로 정하고, (줄임) 홍주는 1천 5백 80인데 지금 1천 5백 45로 정하고, 청양은 3백 55인데 지금 3백 10으로 정하고, **평택**은 89인데 지금 40으로 정하고, 비인(庇仁)은 1백 14인데 지금 80으로 정하고, 온양은 5백 15인데 지금 4백 60으로 정하고, 신창(新昌)은 2백 74인데 지금 2백 30으로 정하고, 면천(沔川)은 3백 85인데 지금 3백 50으로 정하고, 결성(結城)은 4백 16인데 지금 3백 80으로 정하고, 보령은 3백 83인데 지금 3백 50으로 정하고, 서산은 5백 63인데 지금 5백 30으로 정하고, 남포(藍浦)는 2백 96인데 지금 2백 60으로 정하고, 서천은 2백인데 지금 1백 80으로 정하고, 홍산(鴻山)은 95인데 지금 60으로

정하고, 예산은 2백 85인데 지금 2백 40으로 정하고, 아산은 4백 54인데 지금 4백으로 정하고, 덕산(德山)은 4백 71인데 지금 4백 31로 정하고, 당진은 2백 90인데 지금 2백 55로 정하고, 대흥(大興)은 4백 26인데 지금 3백 80으로 정하고, 태안(泰安)은 2백 67인데 지금 2백 37로 정하고, 해미(海美)는 2백 75인데 지금 2백 30으로 정하였습니다. 총계가 예전에는 2만 3천 3백 84인데, 1천 9백 54를 줄이고, 지금 정한 것이 2만 1천 4백 31입니다.(줄임)

경기에 있어서, 지평(砥平)은 제색군사가 25이고, 양천(陽川)은 21이고, 영평(永平)은 21이고, 김포는 21이고, 부평은 2백 7이고, 가평은 51이고, 진위는 1백 36이고, 파주는 1백 7이고, 죽산은 1백 84이고, 교동(喬桐)은 36이고, 과천은 55이고, 마천(麻田)은 10이고, 용인은 1백 72이고, 양주는 2백 62이고, 삭녕(朔寧)은 93이고, 양성은 2백 18이고, 포천은 89이고, 인천은 89이고, 안성은 1백 91이고, 양근(陽根)은 59이고, 안산은 55이고, 수원(水原)은 1천 2백 49이고, 양지(陽智)는 92이고, 적성(積城)은 25이고, 강화는 2백 50이고, 음죽(陰竹)은 1백 47이고, 연천은 55이고, 광주는 2백 45이고, 풍덕은 1백 17이고, 남양은 1백 98이고, 여주는 2백 31이고, 이천은 2백 57이고, 통진(通津)은 1백 1이고, 교하(交河)는 1백 27이고, 개성은 7백 28이고, 고양은 1백 67이고, 금천(衿川)은 55이고, 장단(長湍)은 1백 38인데, 아울러 예전대로 하여 총계가 6천 3백 73입니다.(줄임)"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총계가 11만 4백 68이었다.

『성종실록』 권6 1년 6월 11일 무오

호조에서 아뢰기를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니, 반드시 실농(失農)하기에 이를 것이나 여러 고을에서 저축한 곡식의 숫자가 적으니, 진흙할 길이 없으므로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구황하는 데 시행할 만한 조건과 백성들을 너그럽게 하고 비용을 줄일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여, 뒤에 기록합니다. (줄임)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말과 호곶(壺串)·**홍원곶**에 머물러 두고 기르는 말의 먹이는 황두(黃豆)가 1년에 4천 1백 58석인데,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 (줄임)” 하니 임금이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어승마(御乘馬)의 먹이는 풀이 자랄 때는 5승으로 하였는데 지금 1승을 줄이고, 좌우변(左右邊)의 큰 말은 4승이었는데 지금 2승을 줄이며, 마료를 수송하여 들이는 일은 계목(啓目)대로 하며, 거우(車牛)는 적당히 남겨두고, 없앨 것은 모두 팔아버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8 1년 10월 25일 기사

원상(院相)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고(故) 봉교(奉敎) 방귀원(房貴元)의 아내 윤씨가 그의 아산 전장(田莊)으로부터 수원의 오미곶(吾未串)에 이르렀는데, 나무를 지나 중류에서 배가 파선되어 죽은 자가 19인이었으며, 홀로 사공만이 죽지 않고 배를 몰아 언덕에 대어 놓고서 사람이 모래 가운데 서서 있는 것을 보고는 구원해 줄 것을 소리쳐 불러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필시 배 가운데 도둑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컨대 조정의 관리를 보내어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강명(剛明)한 자를 가려 보내어, 저 교동행대(喬桐行臺)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감찰 허황(許篈)에게 교동현감(喬桐縣監) 탁신지(卓愼志)의 탐묵(貪墨)한 것을 국문하게 하였는데 실상을 캐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하교가 있는 것이었다.

『성종실록』 권13 2년 12월 23일 경인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 이인규(李仁圭)가 글을 올리기를 “신은 미천한 몸으로 세조의 정난(靖難)을 좇아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참여하게 되고, 내직·외직을 10여 년 동안 역임하였습니다. 두터운 성을 입으니 신은 충절을 다하여 보답하기를 도모했는데, 무자년에 신민(臣民)이 복이 없어 세조께서 불쌍히 여겨 신으로 천릉낭청(遷陵郎廳)을 삼은 지 얼마 안되어, 헌사에서 신이 국상에 비첩(婢妾)을 통간하였다고 아뢰어 진위현에 귀양갔다가, 우리 성조(聖朝)에 이르러 특별히 방면하시어 신을 탁용하여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을 삼으셨습니다. 장령(掌令) 홍귀달(洪貴達)은 신이 능소(陵所)에서 노유신(盧由愼)의 첩을 간통하였다고 무함하여, 본직을 파할 것을 청하였으니, 신이 만약 범한 것이 있다면 천릉제조(遷陵提調)·낭청(郎廳)이 곁에 있었는데, 수만인의 눈을 어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죄상은 모두 의금부의 국안(鞠案)에 있습니다. 이제 신의 곡직을 한 번 상고할 것 같으면, 분명하여 그 정상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홍귀달이 아뢰는 것과 같다면, 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불충한 악을 범하였으니, 정조(政曹)에서 그것을 즐겨서 천용(薦用)하겠습니까? 옳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살피옵소서.” 하니 원상 등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원상 등이 의논하기를 “이제 그때의 국안을 상고하니, 실로 영구히 서용하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하므로 즉시 명하여 허통(許通)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권15 3년 2월 1일 무진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에 전지를 받으니 '제도의 군역이 너무 많다. 병사는 많은 것보다 정예한 것이 귀중하니 재주를 시험하지 않은 군사는 그 수를 적

당히 감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지난 경인년에 정한 제도 정병(正兵)의 원액을 자세히 참고하여 보니, 총인원 8만 60가운데에서 하삼도에는 5천 8백 60을 줄이고, 또 제진의 유방군(留防軍) 1만 6천 5백을 제하고, 나머지 5만 7천 7백을 가지고 7번으로 나누어 번마다 8천 2백 40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인을 정함에 있어서 전정(田丁)·고공(雇工)·재인(才人)·백정(白丁)과 각종 장인을 아울러 계산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감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위 항목의 5만 7천 7백 가운데에서 전정·고공 등 9천 7백을 감하고, 하삼도 각 고을의 인물의 쇠잔하고 성함을 따라 골고루 줄여서 기록하여 아뢰니, 청컨대 제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하여금 자세히 상고하여 보인을 개정하고 군적을 만들게 하소서. 그런데 지난 번에 각종 군사의 거느리고 있는 인정을 보인으로 삼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역사를 정한 까닭에 한 집안에 부자 형제가 각각 신역이 있어 서로 구원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불쌍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군사가 동거하는 아들·사위·아우는 비록 보인의 수보다 많다 하더라도 2정(丁)에 한하고, 나머지는 다른 역사를 정하지 말게 하소서. 또 『대전 大典』에는 원주(院主)와 동거하는 족친(族親) 2인은 다른 역사를 정하지 못하도록 되었지만, 그 소임이 매우 괴로우니, 청컨대 1인을 더하여 다른 역사를 정하지 말게 하소서. 각진의 유방군은 옛날에는 3번으로 나누어 한 달만에서 교대하게 되어 다른 군인보다 힘들고 괴로우니, 이제 번상하는 정병 4만 8천 가운데에서 5천 5백명을 덜어서 유진군(留鎭軍)에 이속시켜 4번으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쉬게 하고, 그 나머지 정병 4만 2천 5백 명은 8번으로 나누어 번마다 5천 3백 10명씩 번상하여 숙위하게 하소서.

태평소(太平簫)는 마상병(馬上兵)인데 보정병(步正兵)의 예에 의하여 보를 주는 것은 불편합니다. 청컨대, 기정병(騎正兵)의 예에 의하여 보를 주되, 충청도에 있어서 충주는 각종 군사 2천 1백 87 가운데에서 전에는 정병 40을 줄여 2천 1백 47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정병 67을 줄여 2천 80으로 합니다. 괴산은 3백 30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3백으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2백 50으로 합니다. 연풍은 82 가운데에서 전에는 42를 줄여 40으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15를 줄여 25로 합니다. 청풍(淸風)은 2백 32 가운데에서 전에는 42를 줄여 1백 90으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1백 40으로 합니다. 영춘(永春)은 98 가운데에서 전에는 38을 줄여 60으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25를 줄여 35로 합니다. 음성은 1백 44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1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35를 줄여 75로 합니다. 단양은 55 가운데에서 전에는 20을 줄여 35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15를 줄여 20으로 합니다. 제천은 2백 7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2백 40으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1백 90으로 합니다. 청주는 1천 9백 9 가운데에서 전에는 40을 줄여 1천 8백

69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69를 줄여 1천 8백으로 합니다. 진천은 4백 60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4백 30으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3백 70으로 합니다. (줄임) **평택**은 89 가운데에서 전에는 49를 줄여 40으로 정하였는데 이제는 10을 줄여 30으로 합니다. (줄임)

『성종실록』 권18 3년 5월 24일 경신

의금부에 전지하여 부여에 영속(永屬)한 난신(亂臣) 이명민(李命敏)의 아우 이미민(李靡敏), 영동에 안치(安置)한 난신 박계남(朴季男)의 형 박맹우(朴孟愚), 광주에 안치한 난신 탁계연(卓繼然)의 조카 탁윤신(卓閔新), 여주에 부처(付處)한 난신 윤처공(尹處恭)의 아우 윤처신(尹處信), 의성에 부처한 난신 박이녕(朴以寧)의 열제(孽弟) 박춘길(朴春吉), 이천에 부처한 난신 김상충(金尙忠)의 형 김막동(金莫同), 여주에 부처한 난신 고덕칭(高德稱)의 형 고덕수(高德守)를 외방종편(外方從便)하게 하고, 신계(新溪)에 영속한 난신 조번(趙番)의 아우 조한(趙翰), **평택**에 영속한 난신 김연(金衍)의 아우 김말을지(金末乙知)·김오을미(金吾乙未)·김우지(金羽之)…… 등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안치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권24 3년 11월 13일 을사

형조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진주의 죄수 사노 박말생(朴末生)이 고 김사언(金思彦)의 아내 고화이(古火伊)를 강간한 죄는 율에 때를 기다려 교형하는 것에 해당하고, **진위**의 죄수 백정(白丁) 황막동(黃莫同)과 백정 김갯동(金介叱同)·이거을우미(李巨乙耒) 등이 강도질한 죄는 율에 즉시 참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의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31 4년 6월 26일 을유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날 이시애를 토벌할 때 정벌에 참여한 향리로서 1등은 광주의 이계의(李啓義)·이은손(李銀孫)·이지(李枝)·이돈(李敦), 간성(杆城)의 최연수(崔延壽)·윤경신(尹耕莘), 이천의 서수손(徐首孫), 평산(平山)의 김처중(金處中), 통천(通川)의 김건중(金建中)이고, 2등은 강릉의 함유문(咸有文), 양양의 이을산(李乙山), 거제의 박생로(朴生老), 경주의 김귀일(金貴一), 영광의 조부(曹溥), 광주(廣州)의 이정손(李貞孫), 면천(沔川)의 한희적(韓希積), 안악(安岳)의 이치례(李治禮)·양자성(楊自成)·원경신(元庚申)·양선지(楊善智), 풍천(豐川)의 김윤정(金允精)·김득정(金得精)·노득생(盧得生), 토산(兎山)의 김계생(金繼生), 평산(平山)의 김약(金鑰), 재령(載寧)의 임무(林茂), 신주(信州)의 이개(李開), 상주의 윤원생(尹元生)이며, 3등은 신

계(新溪)의 배맹순(裴孟順), 신천(信川)의 김득산(金得山), 수안(遂安)의 이중달(李仲達), 진위의 조서(趙瑞)·이자지(李自知) 등 33인데, 이들은 다 스스로 모집에 응한 사람이니 청컨대 사패(賜牌)하여 영원토록 향역을 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44 5년 윤6월 23일 병오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이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의 말을 홍원꽃에 나누어 기르게 하고 겸사복(兼司僕) 한 사람을 배치하여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하니, 제읍에서 공역(供億)하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제읍에 저장된 황두(黃豆)는 이로 인하여 허갈이 되었습니다. 세조조에 호곶(壺串)에서 말을 분양하는 것을 과하였으니,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과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신숙주는 아뢰기를 “홍원꽃에 분양한 것은 폐단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경기에서 사복시(司僕寺)에 납부하는 고초(藁草)를 감하였으나 기르는 데는 또한 폐단이 있으니, 아울러 본시에서 기르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임금에 전지하기를 “수원 홍원꽃에 분양하는 말은 여름이면 예전대로 방양(放養)하고 겨울이면 도로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48 5년 10월 3일 을유

석강(夕講)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시강관(侍講官) 유순(柳洵)에게 이르기를 “이제 전라도로부터 왔으니 무슨 민폐나 있지 않더냐?” 하였다. 유순이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부지런히 살피시어 혜정(惠政)이 매우 많으므로 큰 폐단은 없었습니다. 비록 혹 작은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수령이 아직 봉행을 다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다만 각 포구에서 병선(兵船)을 조운에 사용하고 있으니, 만일 풍진(風塵)의 경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이미 조선(漕船)을 많이 마련하였으니, 청컨대 병선을 사용하지 말고 방어에만 전력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동부승지 현석규(玄碩圭)에게 이르기를 “전날에도 이런 일을 말하는 자가 많았기에 이미 원상(院相)에게 의논하게 하였으니 속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현석규가 아뢰기를 “고려 말기에 교동·강화가 모두 적의 소굴이 되었던 것을 우리 태조께서 황교(黃橋)에서 큰 승리를 한 것은 천고에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는 방어가 조금 갖추어졌으나, 경기·충청도·황해도는 소우(疏虞)하기가 막심합니다. 모든 포구의 만호(萬戶)들이 군사를 놓아 주고 군포(軍布)를 거두어 자기의 이익을 삼고 있으니, 청컨대 관원을 보내어 규적(糾擿)하게 하소서.” 하였다. 유순이 또 아뢰기를 “각 포

구의 병선은 조수가 물러나면 항상 육지에 놓아두어 도무지 연습과 시험을 아니하니 급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모든 포구에 명령하여 항상 행선(行船)을 익히고, 양포(兩浦) 사이에 서로서로 왕래하게 하소서. 또 금년에 전라도는 가뭄이 심하였는데, 오직 전주만이 풍년이 든 것은 천방(川防)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진위의 앞 들판이 본래부터 비옥하다고 일컫는 것도 또한 천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의 아래 쪽에 물을 댈 만한 농지가 있는데도 물을 끌어대지 아니한 탓으로 이득을 잃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다른 고을에서도 가히 천방을 만들 만한 곳이 있는데도 이득을 잃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현석규가 아뢰기를 “비록 가히 천방이나 제언을 만들 만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들이 게을러서 마음을 먹지 아니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되니, 청컨대 모든 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려, 몸소 살펴서 아뢰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권61 6년 11월 7일 임자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진위 죄수인 백정 조옥련(趙玉連)이 절도를 제범한 죄는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61 6년 11월 19일 갑자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진위 죄수인 백정 조옥련이 절도를 삼범한 죄는 율이 때를 기다려 교형에 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63 7년 1월 29일 갑술

황해도의 신계(新溪)에 안치된 조한(趙澣)과 경기의 진위에 부처된 권각(權恪)을 놓아보냈다.

『성종실록』 권63 7년 1월 29일 갑술

경상도의 상주에 부처된 노수강(盧守強)을 경외(京外)에 편리한대로 따르도록 명하고, 충청도의 평택에 부처된 조구서(曹九叙)를 남아서 아버이를 봉양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권69 7년 7월 20일 신유

사헌부대사헌 윤계겸(尹繼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김수온은 본래 사물에 어두운 선비로서 성명(聖明)을 만나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훈(策勳)되고, 지위가 최고의 품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일찍이 만족을 모르고서 탐득(貪得)할 마음을 품고 널

리 전원(田園)을 점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양(南陽)에는 ‘공한(空閒)의 땅이다.’ 일컫고, 부평에는 ‘금전(禁田)의 대가이다.’ 일컫고, **평택**에는 ‘절수(折受)이다.’ 칭탁을 하면서 주민들의 토지를 강탈하여 이익을 취하는데도 그를 논죄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야 되겠습니까? 또 의금부에서 교지를 받들어 추국하는데, 김수온이 바로 승복하지 않고 온갖 말로 기만하면서 그의 간악함을 숨기려고 하였으나, 끝내 숨기지는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안율저죄(按律抵罪)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권69 7년 7월 23일 갑자

사헌부대사헌 윤계겸 등이 상소를 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황효원이 조그마한 공로를 믿고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분격하여 대간에게 옥을 보여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없었으며, 국문하도록 명하기에 이르러서도 뉘우칠 줄을 모르고 궤변하고 거짓을 꾸며 더욱 마구 오만을 부렸습니다. 황준경은 그 아버가 하는 짓을 익히 보고서 송정(訟庭)에 나아갈 즈음에 사납게 분을 내고서 드디어 나장(羅將)을 구타하여 법사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강을 떨치지 못하고 예법이 무너진 것인데 용서하여 징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수온은 한낱 썩은 선비로 본래부터 좋은 명망도 없었는데, 한갓 문필(文筆)만 가지고 작위를 도둑질하였습니다. 그의 용모를 보면 겸허하고 안정되어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실로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불교를 믿어 우매하게 현혹되어, 선비로서 중의 행동을 하며 국속(國俗)을 변란(變亂)하기까지 하였고, 지금은 남양(南陽)의 전지를 제멋대로 점거하면서 ‘이것은 한광(閑曠)한 땅이다.’ 하고 부평의 전지를 차지하고서, ‘이것은 나의 절수(折受)한 땅이다.’ 하고, **평택** 주민의 전지를 약탈하여 경작하면서 ‘이것은 공릉(恭陵)의 금전(禁田)의 대가이다.’ 하니 그의 간교하고 탐욕스러움은 실로 송희헌(宋希獻)과 같은 부류입니다. 청컨대 황효원 부자의 죄를 법대로 논하고, 김수온의 직사를 파면하여 먼 변방으로 내쫓아 기강을 진작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산군(永山君)과 상산군(商山君)의 일을 들어줄 수 없고 황준경은 고신을 회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박효원(朴孝元)이 김씨의 적첩 분변을 의논한 것을 보여 주기를 청하였는데,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신들과 같이 의논한 것은 널리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 것인데, 대간이 곧 보기를 청하니, 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늘 의의(擬議)할 일이 있으면 곧 보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자, 박효원이 대답하기를 “이미 의논을 모았으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이 보고자 한 것입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권72 7년 10월 26일 병신

사노인 목년(木年)이 상언하기를 “영산부원군(永山府院君) 김수온이 공릉(恭陵)에 편입된 목은 밭의 당직이라고 사칭하고 **평택** 삼기언(三岐堰)의 논을 점령한 것이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돌려주라는 판정이 내렸는데, 또 곡식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승정원에 명하여 그 내용을 묻게 하고, 이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영산의 일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하였다.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김수온이 크게 잘못했으니, 유사(攸司)에 명하여 추국(推鞠)케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호조에서 입안(立案)을 늦게 주었으므로 김수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사헌부로 하여금 추국케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81 8년 6월 2일 정유

사헌부대사헌 김영유(金永濡)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홍흔(洪忻)은 예종조에 중추부경력이 되어서는, 승여(乘輿)가 본부를 지나는데 홍흔이 호상(胡床)에 태연자약하게 기대어 있으므로 즉시 잡아서 의금부에 회부하였으니, 그 어리석어 무상(無狀)함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위장(衛將)의 직임을 어찌 다른 사람이 없어서 반드시 이 사람이라야 하겠습니까? 송호(宋瑠)는 연소하여 호방하며 또 학식이 없습니다. 전에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가 되어서는 대만하여 직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병으로 30일을 채우고는 **평택현감**이 되었다가 몇 달을 지나지 못하고서 파출되었으니, 그가 동반에 합당하지 못함은 이것을 들어도 알 것입니다. 이영(李榮)은 본디 호협(豪俠)하다고 일컬으나 별로 쓸 만한 것이 없는 재목입니다. 서사(筮仕)하는 처음에 즉시 부장(部將)을 제수한 것이 벌써 분수를 넘은 것이었는데, 상피로 인연하여 또 선전관(宣傳官)으로 천전(遷轉)하였으니, 요행의 문을 갑자기 여는 것은 불가합니다. 홍흔이 위장(衛將)이 됨은 인원을 갖추어 수행하는 것이니 크게 해로운 데에 이르지 않는으나, 송호와 이영이 요행으로 나아가는 단서는 진실로 대체에 관계됩니다. 병방승지(兵房承旨)가 비록 출납만을 관장하는 것 같으나 주의할 때에는 함께 듣지 않음이 없어, 곁에서 청탁을 인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분경(奔競)을 금하는 것은 이조·병조와 같으니, 어찌 정조의 당상이 아니라 하여 서로 상피하지 않겠습니까? 엿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자세히 살피소서. 또 병조는, 전하께서 홍흔이 쓸 만한 자인가의 여부를 물으실 때에 단지 홍흔이 사복시(司僕寺)·전농시(典農寺)·군기시(軍器寺)의 3사(三司)를 역임한 것만을 들고 별로 여기고 그릇된 일은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중추부에서 과실을 범한 연유는 듣지 않았으니 이미 전서(銓敍)를 잘못하였는데, 다시 비호하여 자못 아첨하고 잘못된 데에 관여되었으니, 청컨대 그 정실을 국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권106 10년 7월 3일 정사

명하여 대사헌 박숙진(朴叔蓁) 등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경 등은 내가 심회(沈滄)가 노비의 일을 처결한 것을 가지고 그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온양의 정안(正案)에 올린 자는 심회에게 줄 수가 없고, 심회의 문기(文記)에 올린 자는 온양에 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경 등이 마땅함을 헤아려서 아뢰라.” 하였다. 박숙진 등이 대답하기를 “심회의 문기가 불명하니, 예대로 나라에 속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아뢴 바는 마땅하지 못하니 각각 물러가라. 내가 정승 등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하였다. 박숙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정유년에 처음으로 송사하였을 때 강희맹(姜希孟)·박중선(朴仲善)은 사람을 온양에 보내어, 현재 입역하는 노비를 몰래 불러 냈는데, 그 노비가 읍리에게 체포되어 전이(轉移)하면서 추핵(推劾)하기를 수읍(數邑)에 이르렀다가, 마침내는 모두 도망하여 숨어서 죄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평홍흥(洪興)이 **평택**에 부임했을 때에도 국문하였었습니다. 무릇 소송하는 노비는 반드시 관의 판결을 기다린 연후에야 역사시킬 수가 있는데, 심회·강희맹 등은 미결 전인데도 사람으로 하여금 몰래 부르게 하고, 또 그 아들 심한(沈澣)·강귀손(姜龜孫)으로 하여금 통서(通書)하여 몰래 청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이미 알았다.” 하고 이어서 승지에게 명하여 다시 문안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종실록』 권110 10년 윤10월 1일 계속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관찰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전주에 거주하는 김경(金岡)과 홍양(興陽)에 거주하는 유희지(柳好池)와 여산(礪山)에 부처된 이영분(李永賁)과 영광에 부처된 송호(宋瑠)와 홍양에 부처된 황생(黃生)과 연산(連山)에 거주하는 양인백(楊仁伯)과 천안에 부처된 박숙선(朴叔善)과 청주에 거주하는 권자선(權子善)과 보은에 거주하는 김조양(金朝陽)과 **진위**에 부처된 홍이로(洪利老)와 광주에 거주하는 이소(李昭)와 진주에 거주하는 하숙부(河叔溥)와 영산(靈山)에 거주하는 신주(辛柱)는 군장(軍裝)과 마필을 정제시켜 빨리 역마를 주어서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109 10년 10월 5일 정해

왕이 밤에 거동할 때에 햇불이 밝았다가 꺼졌다가 하니, 임금이 경기관찰사 윤호(尹壕)에게 묻기를 “햇불이 어찌하여 부족한가? 경이 살피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윤호가 대답하기를 “신이 이미 풍덕군수(豐德郡守) 박임종(朴林宗)과 **진위현령**

이숙규(李叔圭)로 하여금 햇불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박임종과 이숙규를 의금부에 회부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권109 10년 10월 6일 무자

임금이 거동하였는데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였으므로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여 호종하는 군사들이 혼미하여 길을 잃고 향오(行伍)를 이탈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임금이 노여워하여 거화좌사원(炬火左使員)인 용인현령 안요경(安堯卿)·교하현감(交河縣監) 송선충(宋宣忠)·연천현감 원양보(元良輔)에게 장 1백 대를 쳐서 외방에 부처하도록 명하고, 승지로 하여금 매 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박임종·이숙규의 죄도 이와 같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였다. 전교하기 “박임종·이숙규는 이처럼 심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파직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대사헌 김양경(金良瓚) 등이 아뢰기를 “안요경 등의 죄가 큰데 매만 치게 하였으니, 그 은혜가 지극히 중합니다. 다만 감사와 도사(都事)는 한 지방의 임무를 받았으므로 이바지하는 모든 일을 모두 맡았고, 또 강무(講武)의 지대(支持)는 역시 지응사(支應使)가 하는 것이니, 청컨대 아울러 죄를 주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감사·지응사는 대강을 통치할 뿐인데, 어찌 하나하나 자세히 살필 수 있는가?” 하였다. 김양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가(大駕)가 밤에 행차하는데, 신하가 햇불을 빠뜨렸으니 누가 통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 대신이라고 하여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며 재차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응사 이극증(李克增)이 울면서 아뢰기를 “대간의 말한 바가 매우 적당하니, 청컨대 신의 벼슬을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하니하였다. 오시(午時)에 유현(踰峴)을 넘어 사장(射場)에 이르니, 이조판서 박중선(朴仲善)을 불러서 정승들과 의논하게 하여 이계남(李季男)을 풍덕군수로, 윤수천(尹壽泉)은 용인현령으로, 황사충(黃事忠)은 진위현령으로, 조호지(曹好智)를 교하현감(交河縣監)으로, 홍제(洪梯)를 연천현감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권109 10년 10월 30일 임자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김양경(金良瓚)이 아뢰기를 “신 등이 어제 김서형(金瑞衡)이 절도사에 합당하지 못함을 논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김서형은 전에 충청도병사(忠淸道兵使)가 되어 화렵(火獵)으로 인하여 큰 절을 연소시켜서 파면당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통솔하는 방법이 어긋나서 사졸이 복종하지 아니하여 그 도의 수령으로 비평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령(掌令) 홍흥(洪興)도 이때 평택의 수령으로 있었고, 지평 복승정(卜承貞)은 이때 홍주(洪州)의

사제(私第)에 있었는데, 김서형의 일을 익히 듣고 모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먼저 임천군수(林川郡守) 김지(金濟)는 공사가 아닌 일로써 김서형에게 욕을 당하고, 벼슬을 버리고서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장수가 되는 도는 한갓 활쏘기에 능한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서형은 화전죄(火田罪)로 인하여 파면되었다가 복직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깨달았을 것인데, 어찌 몇 가지 일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버리겠는가? 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같이 있지 아니하면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이제 이것으로써 절도사를 삼을 수 없다면 이는 폐고(廢錮)하는 것이다.” 하였다. 인하여 좌우에게 묻기를, “어떤가?” 하니, 영사(領事) 윤사흔(尹士昕)이 대답하기를 “김서형은 강무 때에 모든 행사를 모두 허술하게 하지 않았고, 또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신이 자세히 다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줄임)

『성종실록』 권141 13년 5월 22일 경인

경기관찰사 손순효(孫舜孝)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진위현 영신리(永新里)** 및 과천의 광교산(光敎山) 등지에 종적이 수상한 자가 있다고 하니, 이는 대도(大盜)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청컨대 사람을 보내어 사로잡게 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승정원에서 조치토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변포(卞袍)·조지주(趙之周)로써 각각 군관 및 장용위(壯勇衛)를 거느리고, 광교산과 **영신리**·홍경(弘慶) 등지에 가서, 지나가는 여러 고을 수령과 더불어 힘을 한가지로 하여,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142 13년 6월 14일 신해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 강자평(姜子平)이 형조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진위의** 죄수 안성 사람 안일(安逸)은 비록 그 선조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 어미에게 효도하지 아니했다고 하나, 사당이 불탄 뒤에 종이와 돈을 써서 제사지내고, 또 어미 집에 왕래하였으므로 불효한 정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갓 원망하는 집안의 소송만 가지고 불효로써 논하여 극형으로 처치하기에는 정실이 애매합니다.”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권156 14년 7월 14일 갑진

이조·병조에 전지하기를 “(줄임) 사헌부집의 김학기(金學起)·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허계(許誡)·통례원봉례(通禮院奉禮) 허황(許篈)·(줄임)·**진위현령** 윤귀령(尹龜齡)·직산현감 임담(任湛)·사도시첨정(司樂寺僉正) 홍석보(洪碩輔)·천안군수

최지(崔漬)·단양군수 우연(禹堧)·사옹원첨정(司饗院僉正) 이문병(李文炳)·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박찬조(朴繼祖)·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 강형(姜訥)은 벼슬을 올리도록 하라. (줄임) 이에 앞서 삼전(三殿)이 온양에 거둥하였을 때와 재궁(梓宮)이 서울로 돌아오고 산릉에 갔을 때에 공로가 있던 인원과 삼도감(三都監)의 당상·낭청에 대하여 공로를 등제(等第)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2명이 있었다.

『성종실록』 권157 14년 8월 20일 경진

도승지 이세좌(李世佐)를 보내어 어린 환관 21명을 거느리고 태평관에 가게 하였는데, 두 사신이 친히 열 아홉 명을 뽑았다. 용인의 이공(李公)은 홍(弘)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청산(靑山)의 김대용(金大用)은 용(鎔)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열 한 살이었다. 평택의 전중산(全仲山)은 중(重)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여덟 살이었다. 면천(沔川)의 복치형(卜致亨)은 형(亨)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천안의 김동(金同)은 동(侗)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해남의 박은손(朴殷孫)은 은(殷)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 이숙청(李淑淸)은 청(淸)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함평의 김승서(金承瑞)는 경(經)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나주의 진효의(陳孝義)는 호(浩)로 고쳤는데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 개령(開寧)의 김산(金山)은 나이가 여덟 살이었다. 숙천(肅川)의 한석문(韓石文)은 석(錫)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여덟 살이었다. 함종(咸從)의 송중(宋中)은 충(忠)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여덟 살이었다. 평해(平海)의 신산(申山)은 송(嵩)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연기의 심말손(沈末孫)은 손(遜)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정주(定州)의 김의손(金義孫)은 의(義)로 고쳤는데 나이는 여덟 살이었다. 안주(安州)의 이제복(李諧福)은 복(福)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여섯 살이었다. 박천(博川)의 장금(張金)은 흙(欽)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여덟 살이었다. 강서(江西)의 김우형(金遇亨)은 옥(玉)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 서흥(瑞興)의 임연(林連)은 연(璉)으로 고쳤는데 나이는 열 세 살이었다. 중국 사신이 태평관에 머무르게 하고 관에서 준비한 의복을 입혀 떠날 채비를 하게 하였다. 사신이 이세좌에게 말하기를 “두목 등이 천산(千山) 만수(萬水)를 넘고 건너 고생하면서 온 것은 조그마한 이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제 만일 가지고 온 물건을 모두 판매하지 못하고 도로 싣고 돌아가게 된다면 어찌 가련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토표피(土豹皮)·호피(狐皮)·호초(胡椒)·황백랍(黃白蠟)·산달피(山獺皮)·인삼 등 물건은 관에서 무역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므로 이세좌가 그로써 아뢰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토록 하였다.

『성종실록』 158 14년 9년 5일 을미

평택현감 변징원(卞澄源)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접견하고 묻기를 “출신이 어느 곳이나?”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충순위에 속하였다가 거관한 뒤에 흡곡현령이 되었고, 다시 갈려서 부장(部將)이 되었다가 이제 이 벼슬에 제수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수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 하였다.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칠사(七事)를 먼저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농상(農桑)을 성(盛)하게 하고, 학교를 일으키며, 사송(詞訟)을 간략하게 하고, 간활(奸猾)을 없애며, 군정(軍政)을 닦고, 호구를 늘게 하며,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칠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농상을 성하게 하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농사 때를 빼앗지 아니하고, 갈고 심기를 때에 맞추어서 하면 농상이 성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학교를 일으키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때때로 유생들을 모아 경의를 강하고 제술(製述)을 시험하여, 학업에 부지런하게 하면 학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사송(詞訟)을 간략하게 하는 데에는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소신이 외람함을 범하는 일이 없고 백성에게 바른 것을 보이면 사송이 간략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외람함을 범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수령이 법을 지키고 잘못이 없으면 외람함을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간활을 없애려면, 어떻게 간활함을 알고 그치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혹은 밀봉(密封)을 받거나, 혹은 그 용모를 살피면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밀봉은 자못 애매한 일이 있으니, 이것을 오로지 믿고 다스릴 수 없다.” 하고는 또 묻기를 “군정을 닦으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때때로 진법을 익혀서 기율을 밝히면, 군정이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호구가 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고 쉬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 거주하고 있는 자가 도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자가 스스로 올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백성들의 잘 살고 못사는 것이 달렸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가 거든 네 직무를 삼가서 혹시라도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권235 20년 12월 15일 무술

홍문관교리 조지서(趙之瑞)가 충청도에서 돌아와서 태안·서천·석성(石城)·평

택·연산(連山)·문의(文義)·신창(新昌)·정산(定山)·해미(海美) 수령의 불법한 일을 아뢰니, 사헌부에 회부하기를 명하였다.

『성종실록』 권235 20년 12월 17일 경자

전한(典翰) 성세명(成世明)이 경기에서 돌아와서 광주·남양·과천·금천(衿川)·교하(交河)·음죽(陰竹)·풍덕·고양·지평(砥平)·양성·진위·김포·장단(長湍)·마전(麻田)·양근(陽根)·삭녕(朔寧) 17고을의 불법한 일을 아뢰니 사헌부에 회부하기를 명하였다.

『성종실록』 권255 22년 7월 4일 무인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유순(柳詢)과 경기관찰사 김제신(金悌臣)과 강원도관찰사 김여석(金礪石)과 충청도관찰사 홍흥(洪興)과 병마절도사 조숙기(曹淑沂)와 전라도관찰사 김극검(金克儉)과 병마절도사 신주(辛鑄)와 경상도관찰사 정승조(鄭崇祖)와 좌도병마절도사 하숙부(河叔溥)와 우도병마절도사 조극치(曹克治)와 영안남도절도사 변종인(卞宗仁)과 북도절도사 성준(成俊)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무기를 창고에 넣어 두고 학문을 닦아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은 비록 제왕의 성덕(盛德)이기는 하나, 포악을 금지시키고 난당(亂黨)을 제거하는 것은 곧 성인의 의병이니 지난 시대의 계책을 상고한다면 간책(簡策)에서 증거할 수가 있다. 만형(蠻荊)이 원수가 되니 주나라 선왕(宣王)에게 채기(采芻)의 군대가 있었고 힐리(頡利)가 업신여기니 당나라 태종에게 막북(漠北)의 토벌이 있었다. 우리 조종께서도 또한 무공(武功)을 힘 쓰셨으니, 기해년에는 동방 정벌이 있었고, 계축년에는 서방 정벌이 있었으며, 경진년에도 정벌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무력을 남용한 것이었겠는가? 모두가 백성에게 해독이 되고 사직에 근심이 되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다. 내가 기업을 계승함으로부터 문교를 크게 밝혔으니, 어찌 군사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하여 오로지 무위(武威)만을 과시하려고 하겠는가? 교린하고 사대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오랑캐가 우리 국경에 인접해 있는 것에 있어서도 피차의 차별이 없이 은혜와 신의로써 무마했는데도 도리어 이 북쪽 오랑캐는 악한 일을 쌓아서 은혜를 저버리고서 지난해에 우리의 무이보(撫夷堡)를 침범하였다. 그러나 좁도독은 대적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내버려 두고 문죄(問罪)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또 조산보(造山堡)를 침범하여 우리의 진장(鎭將)을 살해하고, 우리의 백성을 죽이고 우리의 가축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변성(邊城)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를 갈면서 모두가 한 번 군사를 일으켜 나라의 위광(威光)을 잠시 보이기를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이같이 하는데도 토벌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 하는 것이다. 우리의 당당한 군대의 위세로써 어찌 보잘것 없는 오랑캐에게 굴욕받

는 것을 건드릴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죄를 묻는 군대를 일으켜 법을 범한 자에게 대한 형벌을 빨리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허종(許琮)을 도원수로 삼고, 성준과 이계동을 부원수로 삼아, 금년 10월에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바로 그 소굴을 공격하여 무찔러 없애버리고야 말겠다.

지금 병부를 보내니, 합해 조사하여 경기의 남양·수원·양성·진위·용인·안산·음죽(陰竹)·여주·이천·지평(砥平)·양근(楊根)·가평·영평(永平)·포천·양주·광주·과천·금천(衿川)·죽산·양지(陽智)·마전(麻田)·연천·인천 등의 고을의 군사는 9월 초 2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4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개성부(開城府)의 군사는 9월 초 3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4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한다. 충청도의 서천·임천·한산(韓山)·홍산(鴻山)·은진(恩津)·이산(尼山)·연산(連山)·부여·석성(石城)·진잠(鎭岑)·정산(定山)·남포(藍浦)·태안(泰安)·서산·면천(沔川)·당진·아산·평택·직산·천안·신창(新昌)·전의(全義)·목천(木川)·보령·결성(結成)·홍주(洪州)·대흥(大興)·덕산(德山)·예산·해미(海美)·온양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23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3일 길성에 도착하도록 한다. 공주·회덕(懷德)·황간(黃澗)·영동·청산(靑山)·옥천·연기·청주·문의(文義)·연풍·괴산·청안(淸安)·보은·회인(懷仁)·진천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20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2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한다. 단양·제천·영춘(永春)·청풍(淸風)·충주·음성 등의 고을의 군사는 8월 22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3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한다.

아아! 군사가 이미 나가는데 명분이 있고 군대가 마땅히 정직하매 웅장하게 된다. 죄인을 잡아 신문하고 오랑캐를 잡는 것이 목적이니, 내 한사람이 어찌 이오로(伊吾廬)에 분심(憤心)을 풀려고 하겠는가? 말을 쉬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변방 백성을 북방 들에서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78 24년 윤5월 1일 갑오

사헌부대사헌 이세좌(李世佐)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 본부에서 총관(摠管)들을 추국(推鞠)함에 사정을 쓴 것이 있다 하여 그 사유를 물으려 하셨으나, 대신의 의논으로 말미암아 그치고 다시 직에 나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부는 다른 관사와 달라서, 스스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직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제 임금께 의심받고도 뻔뻔스레 취직하는 것은 마음에 참으로 미안하니, 신들의 벼슬을 해직하여 주소서. 또 정성근(鄭誠謹)이 전에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이었을 때 이철건(李鐵堅)의 진위에 있는 전지에 대하여 여물은 것을 재상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아뢰었는데, 이철건이 여러 번 정원(政院)에 가서 피혐(避嫌)하였으므로, 본

부에서 묵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사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임광재(任光載)·이철건(李鐵堅)은 다 척리(戚里)인 대신으로서 함께 정성근의 일을 의논하고 또 구수영(具壽永)을 시켜서 아뢰었으므로, 본부에서도 '함께 폐부(肺腑)의 권세를 믿고 함께 정족(鼎足)의 형세를 이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이세좌가 또 홀로 아뢰기를 "신은 정성근과 평소에 교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일 경연에서 수령의 일을 논함으로 인하여 신이 정성근이 고을을 맡았을 때 법을 준수한 것을 아뢰었고, 또 경연에서 정성근이 왕자군(王子君)의 집이 제도보다 지나친 것을 아뢰고 집 값을 주기를 청하였을 때에 신이 아뢰기를 '값을 주는 것은 인정에 맞지 않으나, 정성근은 보고 들은 바에 따라 지극한 정성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신은 아마도 전하께서 이 때문에 신이 평소에 정성근과 서로 친하므로 감싸기를 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황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경의 이 말은 총관을 추국하는 데에 관계되지 않는 일이니, 아뢰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세좌가 아뢰기를 "전일 도총관(都總管)을 죄주기를 청하였을 때에 정성근을 돕는다 하여 신들의 벼슬을 갈려 하였고, 이제 또 '정성근 때문에 대신을 죄주기를 청한다.'고 하교하셨으나 신은 단연코 다른 뜻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므로 이것을 거론하여 다른 뜻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권287 25년 2월 7일 병인

충청도 관찰사 조위(曹偉)가 치계(馳啓)하기를 "지난 정월 14일에 도내의 온양·평택·천안·신창(新昌)·예산·전의(全義)·목천(木川) 등 고을에 흠비가 내렸습니다." 하였다.

9. 『연산군일기』

『연산군일기』 권18 2년 10월 15일 무자

수설부정(水雪副正)의 처 장씨의 옥사를 다시 의논하게 명하였다. 어세겸(魚世謙)이 의논드리기를 "신이 전에 따로 찰리사(察理使)를 보내어 다시 국문하게 한 것은 다시 형장을 더하여 장씨를 억지로 자복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중한 일인데, 반드시 그 말 꼬투리가 당초 곽시(郭愷)의 입에서 나왔을 것이므로, 만일 자세히 핵실한다면, 장씨의 애매한 죄가 석연하여 의심 없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정언에서 아뢰는 것을 보면, 과연 갑인년의 대사(大赦)가 경과한 것으로, 시비 간에 모두 추론함이 불가하니, 버려 두는 것이 대체에 합당할까 합

니다.” 하였다. 한치형(韓致亨)·윤효손(尹孝孫)은 의논드리기를 “장씨의 일이 의옥(疑獄)인 것은 정원에서 아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족의 부녀로 이런 추악한 누명을 쓰고 끝내 원한을 갚지 못했습니다. 전의 의논대로 찰리사를 내 보내어서 끝까지 말의 출처를 캐어 분명히 가려서, 과연 괘시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장씨는 버려 두어야 하겠지만, 괘시의 죄는 역시 결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극돈(李克墩)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옥사는 억울함이 많습니다. 더구나 장씨의 일은 규문(閨門) 안에서의 범행이요, 또 친히 본 것도 아니니, 정확하게 논단할 수 없음은 과연 정원에서 아뢰 바와 같습니다. 그 중 매읍동(每邑同)의 처음 자복에는 16세 때에 간통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로 하여 수설부정이 서울에서 동거할 때인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뒤에 기록한 연월이 혹 착오를 가져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으로서, 혹 **평택** 있을 때 간통하고서 망령되게 16세 때라고 한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추안(推案)을 상고하면 과연 갑인년의 사면이 있기 전이었는데, 그후에 연이어 두 종을 간통한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또 내은금(內隱金)이 지금 지어낸 말이라고 하지만,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역시 모두 내은금이 교사하여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장씨는 이미 매투를 건더 내면서 불복하고, 매읍동은 이미 죽었으며, 괘시 역시 자복하였으므로 저들이 모두 스스로 생각하기를 형장을 받더라도 끝내 증거를 세우기가 어려우리라고 본 것이며, 또 자기에게 절실히 해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족 부녀의 실행은 크게 풍속과 교화에 관계되는 일인데, 하물며 종친(宗親)의 아내이겠습니까. 이 일은 도내에서 떠들은 지 이미 오래였고, 감사가 풍문으로 핵실하였으니 가벼이 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전의 의논대로 찰리사를 보내어 다시 말의 출처를 국문해서, 그 말이 다 괘시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를 가린 후 버려두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율문(律文)에 이른바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논하지 말라.’는 법은, 이런 일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찰리사가 지금 가서 국문하게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장씨에게 형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력만을 묻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어세겸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일기』 권31 4년 9월 6일 신축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盧思愼)이 줄 하였다. 사신의 자는 자반(子胖)이요, 재호(齋號)는 보진(葆眞)이다. 교하(交河) 사람인데,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물재(物載)의 아들이며, 우의정 한(閔)의 손자이다. 젊어서 글을 읽으매, 하루에 수백 단어를 기억했으며, 경태(景泰) 계유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학사에 제수되었다가 수찬(修撰)으로 승진하였다. 을해년에 어머니 상을 만났으며, 복을 벗고 사헌

부감찰에 제수되어, 군자감(軍資監)에 분대(分臺)되었는데, 말귀를 되느라고 분요하여 먼지와 티끌이 눈을 가리니, 공은 책상에 쓰기를 '장부의 뇌락한 평생 뜻이 어찌 한 말 한 되 출납하는 속에 있을까 보냐.' 하였다. 무인년에 사간원좌정언에 제수되었고 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를 거쳐 세자문학(世子文學)으로 전임되었다. 휴가를 얻어 진위현을 지나다가 투숙하고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출발하여 두어 마장을 갔는데, 소리(小吏)가 달려오며 불러댔다. 사신은 멈추고 기다리니, 소리가 말하기를 '갑 속에 둔 붓을 잃어버려 원님이 나를 시켜 찾아오라 했다.' 고 하니, 사신은 웃고 차고 있던 주머니 속에서 붓을 내어 주었다. (출임)

『연산군일기』 권37 6년 3월 17일 신미

충청도 온양·신창(新昌)·아산·**평택**에 지진이 있었다.

『연산군일기』 권40 7년 6월 9일 을유

의정부가 아뢰기를 "**평택** 저수지는 그 이해와 가부를 이미 경기·충청도 관찰사로 하여금 보고 조사하게 하였고, 또 그 일에 익숙한 조정 관리를 보내어 조사했으며, 또 따로 대신을 보내어 다시 조사했던 바,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였사오니, 결단코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지시키고 또한 김만수(金萬壽)를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김만수를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권50 9년 6월 12일 정미

서울과 경기의 강화·안성·안산·양천·김포·죽산과 충청도의 홍주(洪州)·청주·충주·공주·면천(沔川)·천안·온양·태안(泰安)·문의(文義)·당진·진천·목천(木川)·**평택**·직산·신창(新昌)·전의(全義)·연기(燕岐)·해미(海美)·회인(懷仁)·보은·예산·음성·청안(淸安)·진잠(鎭岑)·회덕(懷德)·제천에 지진이 있었다.

『연산군일기』 권50 9년 8월 23일 정사

서울과 충청도 충주·제천·정산(定山)·진천·청안(淸安)·아산·괴산·결성(結城)·태안·이산(尼山)·회인·면천(沔川)·임천(林川)·직산·보령(保寧)·보은·공주·연산·진잠·회덕·문의(文義)·천안·홍주·예산·덕산·음성·남포(藍浦)·신창(新昌)·청주·연기·**평택**·서산·청풍(淸風)·당진·옥천·해미(海美)·전의·목천(木川)·청산(靑山), 경상도 금산(金山)·개령·인동(仁同)·용궁(龍宮)·예천(醴泉), 경기의 광주·과천·양근(楊根)·지평(砥平)·여주·이천·양지

(陽智)·용인·음죽(陰竹)·금천(衿川)·안산·남양·수원·진위·양성(陽城)·안성·양천(陽川)·인천·부평·금포·통진(通津)·강화·과주·양주·포천·영평(永平), 전라도 익산·용안(龍安)·함열(咸悅)에 지진이 있었다.

『연산군일기』 권56 10년 11월 초하루 정해

승정원이 아뢰기를 “내관 김새(金璽)가 진공하는 물품을 영솔하여 갈원(葛院)에 이르렀는데, 그 지고 오던 직산군(稷山軍)이 모두 도망하고 단지 4인이 남았다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고을 현감과 군사를 영솔하던 아전을 중한 벌에 처하여 역로에 전시(傳示)하여 뒷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할 줄을 알게 하고자 하는데 어찌한가? 사관으로 하여금 정승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순(柳詢) 등이 의논드리기를 “현감과 군사 영솔한 아전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된다면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이 될 것이니, 중한 벌을 처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권58 11년 6월 29일 임오

명하여 충청도의 평택·직산·진천·아산 4현을 경기에 옮겨 붙였다.

『연산군일기』 권60 11년 10월 14일 을축

전교하기를 “경기에 이속하였던 진천·직산·아산·평택 등 5역을 성환도(成歡道)라 부르고, 역승(驛丞) 1원을 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권60 11년 12월 5일 을묘

명하여 천안·진위·직산·과천 등 고을의 수령을 밀위청에 가두게 하였으니, 이는 선전관(宣傳官)이 명을 받들고 충공도(忠公道)에 가서 산 짐승을 잡아 보냈으나, 곧 실어 올리지 않아 가둔 것이다.

10. 『중종실록』

『중종실록』 권1 원년 9월 5일 신사

(줄임) 아뢰기를 “충공도(忠公道)는 다시 충청도라 일컫기를 청하며, 경기에 입속(入屬)된 아산·평택·직산·진천 등 고을은 아울러 본도에 다시 예속시키고, 신설한 신은도(新恩道)를 혁파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줄임)

『중종실록』 권7 4년 정월 22일 을묘

사헌부가 아뢰었다. (줄임) **진위현령** 정삼산(丁三山)은 전에 전주 판관을 맡아 형과 법을 준엄하게 하고 또 사람을 잘 섬겼습니다. 전주는 부성하다고 칭하는 곳이나 한번 정삼산을 겪은 후로는 탕진하여 남은 것이 없다 하니, 청컨대 조속히 체임 하소서.” 하였다. (줄임)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권8 4년 5월 25일 병진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최숙생·지평 유운이 앞의 일을 아뢰었다. 최숙생이 또 아뢰기를 “기전(畿田) 백성은 생곡초(生穀草)를 납품하느라 매우 괴로와합니다. 사복시(司僕寺)의 말 및 **홍원꽃** 말을, 청컨대 그 수를 헤아려 감하게 하소서. 각관(各官)에서 기르는 수우(水牛)도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만 있으니, 또한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 도의 각 목장 말은 군사에게 내어 주어 조습(調習)하게 하여 길이 잘 든 것이 있으면 나라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주어 위급할 때 쓰게 하소서.” 하였다.

『중종실록』 권8 4년 5월 25일 병진

정원에서 최숙생이 아뢰, 사복시의 말 및 **홍원꽃** 말을 헤아려 감할 것과, 여러 목장의 말을 군사에게 나누어 주어 조습할 것, 수우를 버려야 할 것 등의 일을 가지고 취품(取粟)하니, 전교하기를 “해당 관서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13 6년 5월 13일 임술

명하여, 박영(朴寧)의 문을 정표(旌表)하고 이어 복호(復戶)하게 하였다. 박영은 **평택현** 이속으로 아버이를 섬기는 데 효성을 다하여, 양지(養志)의 정성이 오래도록 더욱 돈독하며 소행이 훌륭하였다. 관찰사가 향리의 공론을 채택하여 계문(啓聞)하고, 예조가 포장하는 전례(典禮) 거행하기를 청하니, 이 명이 있었다.

『중종실록』 권15 7년 5월 5일 무신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이 (줄임) 아뢰기를 “연전에 **진위** 땅 노변에 어떤 시체가 버려져 있었는데, 목이 즐리고 머리가 잘려졌으며 수행하던 종까지 죽여 발가벗겨서 버렸으니 이는 큰 변고입니다. 수소문해보니 그 집에 호노(豪奴)가 있다 하는데 또한 의심가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직하고 총명한 조사(朝士)를 보내 추국(推鞠)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몹시 놀랄 일이다. 급히 관리를 보내 추국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16 7년 8월 8일 기유

대간이 고안정(高安正)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용담현령(龍潭縣令) 안서봉(安瑞鳳)은 처음에 진위현령을 제수했다가, 처부(妻父)의 전민(田民)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용담으로 바꾸어 제수하였습니다. 대체로 수령들이 전민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서로 바꿀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의 것이 있는 곳이라야 바꾸는 것이 준례인데, 안서봉은 길가의 조잔한 고을임을 싫어하여 처부의 전민이 있는 곳이라고 핑계하였으니 그 정상이 매우 틀렸습니다. 더구나 새로 제수한 진위현령 최칭(崔稱)은 늙어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안서봉을 그대로 임명하소서. 단양군수 신영철(申永徹)도 온양군수였다가 지금 단양군수로 바꾸었습니다. 대체로 온양은 근래에 잔폐하던 끝에 전 군수가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합니다. 신영철이 당초 온양에 제수되자, 피할 길을 피하려고 아들의 처가 및 전민이 있는 곳임을 핑계하여 이조에 소를 올렸으나, 이조에서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할수없이 부임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몹시 잔폐함을 자세히 알고서 다시 이조에 정소하니, 이조에서 유여림(兪汝霖)과 바꾸었습니다. 이조에서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다가 이제는 들어주어 바꾸었으니, 신영철만 속인 것이 아니라 이조에서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하니, 이조를 추문하고 신영철을 온양에 임명하소서. 이렇게 조잔한 고을을 피하려는 것을 한번 그 단서를 열어 놓으면, 뒷날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고안정의 일은 윤택하지 않는다. 안서봉·신영철의 일은, 바꾸는 것이 부당한데 바꾸었다면 이조가 과연 잘못이다. 계품하여 바꾸는 것이 무슨 속임이 있어서 그랬겠는가마는 서로 바꿈이 마땅한지의 여부는 상고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중종실록』 권24 11년 4월 27일 무인

충청도 아산·평택·문의(文義)·목천(木川) 등 고을에 폭풍이 불고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이 달걀만하여 벼를 해치고 사람과 가축이 또한 상했으며 큰 나무가 뽑히기도 하였다.

『중종실록』 권33 13년 6월 19일 정해

홍문관 응교 한충(韓忠)이 청주로부터 돌아올 때 직산현 지경에 이르러, 길가에서 어떤 선비를 만나 함께 이야기하면서 진위현까지 와서 같이 갔다. 그 선비가 종이 한 장을 주었는데 시폐(時弊)를 대강 이야기한 것이었다. 한충이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와서 위에 올리니 ‘친히 아뢰라.’고 명하므로, 한충이 그 글을 가지고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직산 지경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 길가에 섰다가 신과 이야기를 하

자 하므로 신이 말에서 내려 예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본시 유생인데 초야에 있으면서 조정의 잘못을 좀 들었다. 그러나 감히 진달(陳達)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이제 시종인(侍從人)이 이 지경을 지난다는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하고자 하여 이렇게 온 것이다.' 하면서 이 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명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그후에 충청감사가 수소문해서 찾아보니, 그는 곧 유학 권탁(權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본시 음사(淫邪)한 사람으로 학술은 조금도 볼 것이 없는 위인이었다. 폐조(廢朝) 때에 숙원(淑媛) 장녹수(張綠水)의 집에 출입하면서 그 집의 뒤를 돌봐주는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유생들에게도 용납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한 지도 오래되었었다. 평범한 사람이 보아도 눈에 차지 않는 위인이요, 한층도 들은 얘기가 없지도 않았을 터인데, 망령되게 상께 아뢰어 이리저리 찾게 하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으니, 당세와 후인에게 죄를 면할 수 있을까?】

〈한층의 말을 듣고〉 임금이 웃으면서 그 글을 받아 곧 펴보고 이르기를 "뜻이 있는 선비는 반드시 그의 회포를 말하는 것이다. 글 가운데에 있는 제향(祭享)·환관·부부에 관한 일은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이라 졸연히 고칠 수 없다 하매, 참찬관 권벌이 아뢰기를 "그가 지은 문자를 보니 그는 글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일전(太一殿)에 관한 일은 전조(前朝) 때의 폐습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지 조종조(祖宗朝)에서 창설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니 임금께서 결단하심이 옳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대지 않았으니 매우 취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줄임)

『중종실록』 권37 14년 12월 18일 무인

금부(禁府)가 한층을 형신(刑訊)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에는 다만 권벌이 수방을 청한 죄를 추고하고, 다른 승지는 익명서를 아뢰된 죄만을 추고하였다. 이제 한층의 초사(招辭)를 보면 정원이 다들 '성명이 없기는 하나 이는 뜻이 있는 선비일 것이니 아뢰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 뜻을 승지들에게 추문(推問)하라. 또 권벌은 한층이 속인 말을 듣고 따라서 찬양하고 수방을 계청(啓請)하였으니, 상세하게 한층이 한말에 의거하여 추문하라." 하였다. 한층이 옥중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신이 지난 무인년 여름에 청주로 병든 어미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직산을 지나는데,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신의 이름을 불러 얘기하자고 하기에 신이 이상히 여겨 말에서 내려서 그의 이름을 물으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소매 안에서 글을 내어 신에게 보이므로 신이 더욱 이상히 여겨 다시 이름을 물

있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말에 태워 동행해서 진위에 이르러 현령 권옥(權沃)과 함께 얘기하고 그 이름을 애써 물었으나 그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이제 그대의 말을 듣고 아울러 그대의 글을 보니 참으로 뜻이 있는 선비인데 어찌하여 궤하(闕下)에 가서 이 소(疏)를 친히 올리지 않는가? 이름을 숨기는 것은 좁 기괴하여 바르지 않다.' 하니, 답하기를 '이 글의 뜻을 그대가 성대(聖代)에서 아뢰어 배풀면, 먼 곳의 한미한 선비가 친히 올릴 것 없고 내 이름도 따라서 알 수 있다.' 하였으며, 날이 밝기 전에 드디어 글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신이 혼자 마음에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인데, 포부는 있으나 명예를 기피하느라고 퍼지 않으며, 그 글에 언급한 것이 현시의 시조(施措)에 거슬리지 않는 듯하다.'고 생각되므로 가지고 예궐하여 정원에 가서 승지에게 보이고 그 일을 죄다 말하고 또 '이 글에는 성명이 없고 마구 흘려 썼는데 위에 이뢰기에 괜찮겠느냐.'고 물었는데, 승지가 퍼 보고는 그 기특함을 일컫고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도 선비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아뢰니, 임금께서 곧 승지와 신으로 하여금 면대하여 아뢰게 하셨으므로 신과 권벌이 함께 들어가 그 수미(首尾)를 아뢰고 권벌이 따라서 그 사람을 찾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뒤에 유생 정원(鄭源)이 신의 집에 와서 묻기를 '길에서 만난 사람의 형색이 어떻더냐?' 하기에 신이 낱낱이 말했더니, 정원이 말하기를 '이는 나와 친한 사람으로 이름은 권탁인데 어제 시골에서 올라왔다.' 하였습니다. 신이 곧 찾아 보고 묻기를 '어째서 올라왔느냐?' 하니, 답하기를 '나를 찾으라는 분부가 계셨다는 말을 듣고 놀랍고 송구하여 할 바를 몰라 올라와서 듣고 보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사람됨을 살펴보고 널리 질문해 보니 과연 고인(高人)이 아니었으므로 곧 정원에 가서 권벌을 만나 그 이름과 그 사람됨을 분명히 말하여 위에 아뢰게 하였습니다. 신이 당초에 망령되게 생각하기를 '대간·시종은 임금의 눈과 귀가 되므로 조야에 드나들며 듣고 본 모든 것은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다 아뢰야. 임금의 은택이 내리고 백성의 고통이 아뢰어지며 언로가 환히 열려서 상하에 막히는 것이 없게 되어, 아마도 성명(聖明)이 부지런히 대우하시는 기대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직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또 그 글에 불례를 꾀하거나 살인을 꾀하거나 함인(陷人)을 꾀하는 따위 부도(不道)한 일이 있어서 스스로 이름을 숨겼다면 과연 끊어버리고 전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거기에 말한 것은 다 현시의 폐단이고 도리어 부도한 말이 없었습니다. 부도한 일이 있다면 권탁이 어떻게 면대하여 말할 수 있겠으며, 신도 어찌 의심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정원은 더욱 전개(轉啓)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명께서 재량하여 살피셔도 쉽게 밝힐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성지에 '어진 사람으로 비껴서 속여 아뢰었다.'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는 신이 권탁과 전에 사통한 것이 있어서 짐짓 이름을 말하

지 않고 천거한 듯하여 드디어 속인 것이 된 것입니다. 신이 참으로 그러하였다면 용납될 수 없겠으나, 신이 권탁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은 성환역(成歡驛)의 역자(驛子)가 알고, 그 이름을 알게 된 때에는 신급제(新及第) 정원이 있었으니, 그 사람과 권탁을 나오게 하여 뜻밖에 서로 면대시켜 그 사실을 따져 밝히면 정상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종실록』 권39 15년 4월 11일 무진

경기의 광주·진위와 전라도의 전주 등 34읍에 서리가 내렸다.

『중종실록』 권39 15년 4월 23일 경진

승선정(嵩善正) 이충(李滂)의 공사(供辭)에 이르기를, “지난 기묘년 11월 18일께에 김식(金湜)이 귀양간다는 말을 듣고 남대문 밖으로 보러 갔더니, 사위 김덕순(金德純)이 이미 먼저 와 있었는데, 그날로 제 아버지를 따라 내려갔다가 25~26일께 김덕순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진위에 이르러 한밤에 형 김덕수(金德粹)를 데리고 도망하였는데, 나는 간 곳을 모르므로 돌아왔다.’ 하기에, 내가 망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쪽지에 적어 주어 이튿날 도로 보내어 김식에게 전해 주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들으니 김식 부자가 달아났다 하는데 그들이 가서 사는 곳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금년 2월에 개령(開寧)에 있는 농사(農舍)에 가 있었는데, 26일 밤에 이신(李信)이 보러 와서 말하기를 ‘내가 김식을 오희안(吳希顔)의 집에서 이중(李中)의 집으로 옮겨 두고 일이 있어 다른 곳에 다녀왔더니 김식은 이미 나가고 찾을 수 없으므로 최운(崔濼)에게 가보려 한다.’ 하고는 4일 동안 머물렀다가 갔습니다. 3월 16일에 개령으로부터 돌아올 때 선산의 안곡역(安谷驛)에 이르러 점심 밥을 짓는데 이신이 보러왔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묻지 않고 그날 상주에 있는 종의 집에서 함께 잤으며, 이튿날 헤어졌으나 또 가는 곳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한 차례 형신(刑訊)하라고 명하였다. 오희안(吳希顔)의 공사에 이르기를 “지난 병인년 서울에 와서 과거 볼 때에 비로소 김식을 알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께 김식이 우리 집에서 한 마장쯤 되는 곳에 와서 먼저 김덕순을 보내어 나에게 말 전하기를 ‘망명하여 왔는데 네 집에 붙여 있고자 한다.’ 하기에, 내가 사랑방에서 자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다음날 그의 두 아들과 종을 떠나보냈는데 간 곳을 모릅니다. 김식은 늘 바깥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10일 있더니 나에게 말하기를 ‘남이 알까 염려된다.’ 하기에 곧 문안 방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김식이 말하기를 ‘내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서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오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하더니, 정월 초엿흘날께 이신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식이 묻기를 ‘이 사

람은 누구냐?’ 하니, 이신이 ‘중도에서 만났으며 스스로 선상(選上)이라 말하는데 성품이 자못 순직(醇直)하기에 함께 왔다.’ 하였습니다. 13일께 김식이 이신 등 세사람과 기마(騎馬) 한 필을 거느리고 또 나에게서 태마(馱馬)를 구하여 새벽녘에 떠났는데, 내가 가는 곳을 물었으나 ‘알 것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43 16년 10월 14일 임진

전교하기를 “대간이 안당(安塘)에게 물어보자고 하는데 어찌할 것인가?” 하였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안당이 그런 기미를 알고도 고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간 것은 오로지 자식의 악을 막으려 한 것이어서 그의 심정이 가극한 일인데, 그것이 어찌 당의 죄이겠습니까? 또한 이미 대신을 지낸 사람이어서 반드시 바른대로 아뢰는 것이니, 승정원으로 불러 하문하심이 어떠하리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안당이 정원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봄에 풍습병(風濕病)이 생겨 남의 집에 피접하고 있을 때, 자식 처겸(處謙)· 처함(處咸)· 처근(處謹)이 어미의 상사를 만나 늘 광주(廣州)의 여막에 있으며 때때로 보러 왔다가 곧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급년 8월 18일 탈상한 뒤에는 처함은 본래부터 병이 많으므로 신이 데리고 있으며 약을 먹여 치료하느라고 문 밖을 나다니지 않았고, 처겸은 소격서동(昭格署洞) 본가에 있었으며, 처근은 장흥고동(長興庫洞)의 처가에 있었습니다. 9월 무렵에 처겸은 충청도 평택 등지의 농사짓는 곳에서 타작을 감독하고 처근은 황해도 배천(白川)지역에서 타작을 감독하다 처겸은 그달 그믐께, 처근은 이번 10월 초승에 도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신이 자식들을 데리고 항시 말하기를 ‘너희들은 파방(罷榜)되고 나도 고신(告身)을 회수당하였으니, 친구들에게 가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조심하라.’ 고 했는데, 처겸이 시키는 말대로 듣지 않고 더러 옳지 못한 데를 횡행하며 술을 마시고 조심하지 않기에 신이 날마다 꾸짖어 단속하다가, 신이 충청도 음성 땅으로 물러가 살려고 이달 초엿새날 처함을 데리고 문 밖 청과동 집으로 나가 있었고, 처근은 처모가 아프므로 약시종을 하다가 처모가 죽어 그 때문에 문 밖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함이, 자기 형 처겸이 옳지 못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신들을 모해하려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말했고, 사촌 아우 안형(安珩)이 문 밖 집에 와 또 그와 같은 말을 하기에 신이 놀라고 당혹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종을 시켜 처겸을 불러다 여러모로 꾸짖어 단속하며 구타하다가 초아흐렛날 처겸을 데리고 낙생역(樂生驛)에서 자고 초열흘날 구흥역(駒興驛)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본래 병이 있는 사람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에 이역에 머무르면서, 신과 처함은 동쪽 뒷방 온돌에서 자고 처겸은 방이 좁아 서쪽 뒷방에서 자는데, 밤중에 의금부 도사가 왔기에 신이 처함과 정신없이 마당으로 나가

보니, 처검이 이미 도망했었습니다.” 하였다. (졸임)

『중종실록』 권43 16년 10월 16일 갑오

영의정 김전(金詮)·좌의정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신 등이 전일에 최세절(崔世節)에게 듣건대 그가 ‘최수성(崔壽誠)·신잠(申潛)이 장차 대신들을 모해(謀害)하려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달(啓達)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건대, 안처검의 문건 속에 심잠의 이름이 또한 끼어 있으니 아울러 추문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최세절을 불러다 추문하라.” 하였다. 최세절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해에 신의 매부 유세경(柳世經)이 가만히 신에게 말하기를 ‘자네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네도 알고 있는가?’ 하기에, 신이 괴이하여 묻기를 ‘이는 필시 최수성에게서 들은 것이 아닌가?’ 하니, 그렇다고 했었고, 그뒤에 최수성이 술을 가지고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아저씨는 어찌하여 괴롭게 승지를 하십니까? 외방에 보임(補任)되어 처자를 편히 살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최세절의 말을 들어보건대, 단지 유세경만 말한 것이 아니고 곧 최수성이 면대하여 말한 것이니, 시급히 최수성을 잡아다가 추문함이 옳다.” 하매, 조옥곤(趙玉坤)이 아뢰기를 “듣건대 최수성이 진위 지방에 있다고 하니, 지금 낭관을 보내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영부사 정광필(鄭光弼)이 이약수(李若水)·안정(安珽)·송호례(宋好禮)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신 등이 평소 이 사람들의 소위를 듣고 있으니, 또한 잡아다가 추문함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안처검을 네 차례 심문하니 공술하기를, “지난 9월 초승에 시산정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강목(綱目)』에서 적인걸(狄仁傑)·장간지(張柬之)의 일을 보건대, 중종(中宗)의 정치가 아름답지 못했으니 어찌 폐립하지 않겠는가?’ 하기에, 신이 ‘우리들이 거사한 뒤에 조정이 만일 죄를 다스리게 된다면 마땅히 종실을 가려서 세워야 한다. 그러나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니 그때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했습니다. 초야흐렛날 거사하려 한 것은 대신들이 모두 거기에 있게 되고, 또한 재궁(齋宮)이 구중 궁궐처럼 깊숙하지 않아 범상(犯上)하기가 매우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권43 16년 11월 4일 임자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안처검의 문건에 기록되어 있는 김광원(金光遠)은 독서하노라고 회암(檜巖)에 가 있고, 이이복(李以復)은 독서하는 일로 진위에 가 있으니, 나장(羅將)을 보내 잡아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권44 17년 4월 7일(계미)

충청도 임천(林川)·홍산(鴻山)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새 알, 작은 것은 개암만하여 땅에 두세 치씩이나 쌓였고, 정산(定山)·부여·석성(石城)·홍주·공주·온양·직산·천안·은진(恩津)·전의·목천·아산·**평택** 및 전라도 장수현에도 우박이 내렸다.

『중종실록』 권44 17년 5월 3일 무신

경기의 이천·삭녕(朔寧)·양근(楊根)·지평(砥平)·용인·연천·**진위**·여주와 황해도의 신천(信川)·배천(白川)·문화(文化)·송화(松禾)에 우박이 내리고, 강원도의 원주·정선·영월·횡성에 비바람이 불며 천둥하고 번개쳤으며, 경상도의 안동·장기·언양·울산에 우박이 내렸는데 주먹만씩 하기도 하고 계란만씩 하기도 하여 벼와 보리를 크게 해쳤고, 사람들이 밭에 있다가 우박을 맞아 죽은 자도 있었다.

『중종실록』 권44 17년 5월 6일 신해

경기관찰사 김당(金瑯)이 장계하기를 “5월 초하룻날 **진위**에 우박이 내렸는데 벼와 곡식 및 채소와 삼(麻)이 손상되지는 않았고, 초사흘날 양지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새알만하기도 하고 콩알만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아 채소와 삼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였다. 진교하기를 “충청도에는 4월에 우박이 내리고 경기에는 5월에 우박이 내려, 바로 순전한 양기(陽氣)의 달인데도 이런 이변이 있어 매우 경악스럽다. 그러나 다만 채소와 삼이 모두 상했다고 했으니, 벼와 곡식은 어찌 유독 상하지 않았겠는가? 글을 내려 물어보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47 18년 윤4월 4일 갑진

전라도의 남원·금산, 경상도의 고령·비안(比安)·대구·인동(仁同)·양산·청하(淸河)·신녕·청송·풍기(豊基)·영천·의성, 경기도의 수원·죽산·양성·음죽(陰竹)·**진위**에 우박이 내렸다. 풍기에 떨어진 우박은 혹 오리알이나 돌맹이만큼 썩었다. 잠시 후 그쳤지만, 채마(菜麻)와 서숙(黍粟)이 모두 상했다. 다른 고을은 곡식의 피해가 심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권47 18년 4월 9일 기유

계복(啓覆)을 들었다. 북청의 죄수 판노 김질지(金叱知)가 서울 사는 한계손(韓戒孫)을 타살한 사건은 울대로 하고, 상주의 죄수 고 현감 홍영호(洪永孝)의 칩수덕

(水德)이 그의 종 아들 김이동(金伊同)과 간통한 사건도 올대로 하고, 해주의 죄수 이천산(李千山)이 아홉살 된 여아 검주리(檢注里)를 강간한 사건도 올대로 하고, **진위**의 죄수 막실(莫實)이 수군(水軍) 권숙(權淑)을 타살한 사건도 올대로 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권50 19년 4월 7일 신축

충청도 청주·공주·괴산·서천·한산(韓山)·옥천·연기·**평택**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중종실록』 권50 19년 5월 17일 신사

충청도 **평택**·아산 등 고을에 들판 가득 차서 화곡을 손상하는 벌레가 있는데 그 바탕이 푸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였다.

『중종실록』 권52 19년 10월 초하루 임진

황해도 문화현(文化縣)에 천둥 번개가 치고, 충청도 아산·평택에 천둥이 있었다.

『중종실록』 권52 19년 10월 20일 신해

장령(掌令) 이환(李荊)이 아뢰기를 “신이 **진위** 지경 안의 **갈원리(葛院里)**에 이르니, 주민 남녀 노소가 모두 길을 막고 울기도 하고 손 모아 빌기도 하며 말하기를 ‘예전에는 이처럼 어진 원【이경(李經)이다.】이 없었다. 부임한 뒤로 백성이 아전을 보지 못하고 잡된 요역도 없으며 진상하는 것도 다 고르게 두루 돌아가므로 서로 쉴 수 있어 모두들 힘입어서 편안하여 부모와 같았는데, 불행히 4결에서 역부(役夫)를 낸 일로 죄를 입어 파직되었으므로 마치 부모를 잃은 듯하니, 어떻게 생활하겠는가? 또 이 일은 이 원이 한 일이 아니라 전 태수(太守)가 백성이 원하는 데에 따라 쉬게 할 생각에서 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원은 올해 5월에 도임하여 겨우 8개월을 지내는 동안 지금까지 역부를 낸 일이 없는데 잘못되어 파직당하여 갔으니, 작은 백성들의 뜻을 임금께 전달하여 잉임(仍任)하여 백성을 살리게 하여 달라.’ 하였습니다. 신이 그 고을에 들어가니, 향리·관노비 등도 마당에 마구 들어와 슬피 부르짖고, 또 길가의 백성이 글에 쓰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것을 보니, **다 갈원리** 사람들의 말과 같았습니다. 이제 이경은 이미 죄를 입었으나, 백성의 뜻을 들은 바에 따라 감히 아웁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일 경기 어사 황효현(黃孝獻)이 아뢰기를 ‘수령이 8결에서 한 역부를 내는 것이 법인데, 이경은 4결마다 한 역부를 내어 요역이 갑절 무겁습니다.’ 하였으므로 파직시켰는데, 이제 아전과 백성이 다 애

석히 여긴다 하니, 이는 매우 가상하다. 대저 수령을 승출(陞黜)할 때에는 자혜(慈惠)한지를 보아야 한다. 이제 이미 파직하고 그 대신을 이미 냈으나 내 생각으로는 영임시키고자 하니, 삼공에게 의논하라. 또 간원이, 유홍(柳泓)이 빨리 서용되는 것을 온편치 못하다고 하는데, 같아야 할 것인지도 아울러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권52 19년 12월 26일 병진

충청도 아산·평택·신창(新昌)·전의 등의 고을에 천둥이 있었다.

『중종실록』 권57 21년 6월 21일 임신

경기 수원·진위·양성에 폭풍우가 몰아쳐 곡식의 피해가 있었다. 고양등 7고을에는 황충이 발생하였다.

『중종실록』 권57 21년 10월 8일 무오

충청도 괴산·평택 등 고을에 천둥치며 비가 내렸다.

『중종실록』 권58 22년 3월 28일 을사

충청도 진천에는 눈이 뿌렸고, 평택·괴산·청주·목천에는 눈비가 내렸다.

『중종실록』 권59 22년 10월 14일 무오

충청도의 공주·전의(全義)·문의(文義)·연기·평택·이산(尼山)·목천(木川)·연산(連山)과 평안도의 상원(祥原)·자산(慈山)·영변(寧邊)·덕천(德川)·은산(殷山)·벽동(碧潼)과 경상도의 단성(丹城)·산음(山陰) 등의 고을에 우레가 진동하였다.

『중종실록』 권59 22년 11월 13일 정해

사인(舍人) 박소(朴紹)가 정승의 뜻으로 아뢰기를 “평택현감 조영걸(趙英傑)이 도적을 잡았다고 하여 상으로 가자(加資)한 일은 신들이 전에 이미 의심하였는데, 이제 그도 감사의 계본(啓本)을 보니 그 상으로 품계를 올린 것은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인물이 야인에게 사로잡힌 때에는 변장(邊將)이 야인을 사로잡은 것이 비록 많을지라도 공과 허물이 상쇄되어, 그 죄를 논하지 않으면 또한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평택 경내에 도적이 일어나서 사람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 조영걸이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각에는 구원하지 못하고 후일에야 찾아내어 잡았으니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그는 파면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더구나 상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자에 김사(金禔)가 용인현령이 되었을 때에 도적 잡은 상으로 가
 자하여 통정대부가 되었고, 이형신(李亨臣) 연풍현감이 되었을 때에도 도적 잡은 것
 을 상직(賞職)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영걸의 일은 이것과는 같지 않은 것으로 전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체포하느라 수고한 인리(人吏) 등에게 상을 주는 것은 좋으나
 조영걸에게는 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조영걸에게 가자한 일은
 특지로 가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다. 해당 관서에서 『경국대전』과
 전례를 인용하여 인사 때에 계품하여 재가를 받은 이다. 그뒤에 대간이 바로잡아
 고칠 것을 아뢰어 왔으므로 마땅히 이조에 물어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즉시
 이조로 하여금 그 사유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이조가 지금까지 회계(回啓)하
 지 않으므로 대간에게 답하지 못하였다. 지금 대신이 아뢰는 것을 들으니 지당하다.
 영걸에 대한 상가는 바로잡아 고쳐야 하겠다. 또 이조가 즉시 살펴 아뢰지 않은 것
 도 따져야 할 것이다.”

『중종실록』 권60 23년 3월 19일 경인

황해도 신천(信川)·안악(安岳)·장단에 우박이 내렸고, 송화(松禾)·문화(文化)·
 수안(遂安)에도 우박이 내렸다. 충청도 직산·평택·예산·보령(保寧)에도 우박이
 내렸다.

『중종실록』 권60 23년 3월 28일 기해

경기 진위에 연일 서리가 내렸다.

『중종실록』 권61 23년 6월 26일 병인

이조가 황주(黃州)·장단(長湍)·평택 등의 고을을 잔약한 고을이라고 글로써 아
 뵈었다. 전교하기를 “수령을 가려서 차임해야 한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행(南
 行)의 무록관(無祿官) 및 녹사(錄事) 등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임시키라고 전교
 하셨는데, 다만 남행은 비록 도목정(都目政) 때가 아니더라도 만일 빈 데가 생기면
 때없이 전임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녹사는 한 차례의 도목정 때 단지 한 사람만 거
 관(去官)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두 사람이 거관하게 되니, 만일 한 차례의 도목
 정 때 두 사람이 거관한다면 한 해 동안에 거관하는 사람이 네 명이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남행의 무록관은 과연 아뢴 말과 같지만, 녹사는 수가 매우 많
 으니 한 차례의 도목정 때 만일 한 사람만 거관한다면 침체되는 사람이 많을까 싶
 기 때문에 전일에 말을 한 것이니, 이는 이조가 짐작해서 해야 한다.”

『중종실록』 권65 24년 7월 14일 정미

경기 관찰사 이수동(李壽童)이 계본으로 아뢰기를 “**진위** 죄수 양녀 성금(成金)이 간부(姦夫) 박석을월이(朴石乙月伊)와 동모하여 그 아버지 박봉(朴奉)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는 인륜의 큰 변고입니다. 차사원(差使員)에게 추고(推考)하게 하는 것은 가벼운 처사인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런 일은 비단 죄지은 자만 추고할 것이 아니다. 교화가 밝지 못한 탓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겠지만, 또한 감사와 수령이 교화를 잘 펴지 못한 소치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성금이 그 아버지를 살해한 일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단서가 이미 드러났으니, 이는 인륜의 큰 변고로 지극히 중대한 일이다. 강명(剛明)하고 품계가 높은 사람을 파견하여 속히 추고하게 하라.”

『중종실록』 권67 25년 2월 7일 정묘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심언광(沈彦光)이 아뢰기를 “신이 경기의 간활한 무리를 찾아낼 때에 보니, 양성과 **진위**의 백성들은 집에 한 되의 곡식도 없었음은 물론 도토리도 저축해 놓은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에 모두 부황이 들어 있었고, 들 가운데는 나물캐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이 아직 일러서 나물이 돋지 않았었습니다. 모름지기 수령들에게 굶주린 백성을 뽑아서 사람을 헤아려 진구(賑救)하게 해야 됩니다. 파주의 백성들은 1석 내지 몇 말의 곡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진위**나 양성에 견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대체적인 상황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양재역(良才驛)과 낙생역(樂生驛) 등은 바로 남도의 대로이고 영서역(迎曙驛)과 벽제역(碧蹄驛)은 서방의 대로인데도, 식량과 여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말을 사육할 수 없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 특별히 조치하여야 정상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 역졸들에게 듣기로는 각 고을의 수령들이 사적으로 출입할 때와 승차(承差)가 지날 적에 수행하는 아랫 것들도 모두 역말을 탄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승차수령(承差守令)이라도 3일에 갈 수 있는 길이면 역말을 못타게 했었는데 이 법이 폐기된 지가 오래니, 감사에게 철저히 밝혀 규찰하게 하소서. 경기뿐만이 아니라 팔도가 모두 그렇습니다. 각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이 폐단을 없애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역로가 정상을 되찾게 하는 일은 유사가 살피서 조치해야 한다.” 하였다. (출입)

『중종실록』 권67 25년 3월 7일 정유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봉남령(鳳南令) 이영(李榮)은 곧 중실로 **평택**에서 살다가

강도에게 살해당했으니, 지극히 잔혹한 일이었다. 만약 실지 도적이 한 것이라면 반드시 재화를 훔쳐갔을 터인데 이들은 재화는 가져가지 않고 집만 분탕질하여 처자를 모조리 죽였는가 하면 또 봉남령의 낮가죽을 벗기고 살을 베어내기까지 하였으니 종들이 서로 남몰래 사주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다. 종 소재(小才)가 도적들이 분탕질할 때를 당하여 다른 곳에 숨고 구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맹고석(孟高石) 등과 혐의가 있었다 하니, 아울러 속히 잡아다가 삼성교좌(三省交坐)로 추국(推鞠)하라. **평택현감** 노한우(盧漢佑)가 김검쇠(金檢錐)의 신고(進劄)를 받고 읍내의 군사를 거느리고 즉시 달려 갔으나 밤이 깊었기 때문에 쫓아가 잡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즉시 나가서 구제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보통 때에도 도둑을 체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늘 엄한 경계를 가중하여 불우의 변에 대비하고 있어야 옳은 일인데 엄히 방지하지 못하여 도적들이 이와 같은 흉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만들었으니, 노한우 역시 잡아다가 추국해야 한다. 그리고 봉남령이 전함(前衛)으로 **평택**에 간 것이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종부시(宗簿寺)가 마땅히 전함이었는지의 여부를 규찰해야 하니, 종부시에 물어서 아울러 조사하라.

『중종실록』 권67 25년 3월 8일 무술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이 책에 수령의 교화를 말한 것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조정이겠는가. 요즈음 조정에 자못 교화의 효력이 없어서 인심이 날로 완악(頑惡)해진다. 지금 충청감사의 계본을 보니, 종실 봉남령이 **평택** 땅에 살았는데 강도가 그 집을 분탕질하여 불을 지르고 처자를 살해하였으며, 봉남령도 달아나려다 또한 살해를 당하여 그 정경이 지극히 참혹하다고 하였다. 만약 도적이란면 반드시 재물을 훔쳐갔을 것인데 재물은 전혀 훔쳐가지 않고 사람만 죽인 것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혐의를 품은 사람이 한 것이다. 그래서 이미 조옥(詔獄)에 잡아다 삼성교좌로 추국하게 하였다. 인심의 완악함이 모두 이 지경으로 극도에 이르고 있다.” 하였다. 영사 심정이 아뢰기를 “반드시 혐의를 품은 자의 소행입니다. 만약 진실로 도적이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참혹하게 살해하고 어찌 재산을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잡아다가 추국을 하였으니 그간의 초사(招辭)에 연루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역로에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분명히 추국한 다음에야 사건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령들 가운데 순리(循吏)다운 자는 진실로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일에 있어서는 적발하여 죄주기는 쉬우나, 현능(賢能)한 사람이 있으면 별로 권장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이 뒤섞이게 되어 권장하고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줄임)

『중종실록』 권69 25년 11월 10일 병신

충청도 목천현에 천둥쳤고, 천안·전의·평택 등 고을에는 지진이 일어나 집이 조금 흔들렸다.

『중종실록』 권71 26년 8월 27일 무신

강원도 삼척·낭천(狼川)·간성·춘천·양구·인제·평창·평강·안협(安峽)·이천(伊川)·고성·회양(淮陽)·철원·원주·횡성·홍천과, 황해도 서흥(瑞興)·연안(延安)·곡산·토산(兔山)·신계(新溪)·배천(白川)·우봉(牛峰)·강음(江陰)과, 충청도 진천·음성·평택 등 고을에 지진이 일어났다.

『중종실록』 권74 28년 3월 12일 을묘

경기 양주·지평(砥平)·적성(積城)·풍덕(豐德)·수원·진위·양지(陽智)·음죽(陰竹), 충청도 보령(保寧)·당진·면천(沔川)·태안(泰安), 강원도 정선(旌善)·금성·금화(金化)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또 영월군에는 푸른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공중에 가로질러 있었는데, 그 사이에 유기 주발만한 붉은 빛이 산허리에 떨어지자 소리가 산악을 진동시켜 사람들이 모두 해피하게 여겼다. 그 빛은 곧 불로 변하여 숲을 불태웠는데 마침 큰비가 내려 저절로 꺼졌으나 나뭇잎과 잡초는 모두 불에 탔다.

『중종실록』 권82 31년 8월 5일 무자

지중추부사 이사균(李思鈞)이 졸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사균은 기개가 높고 조그만 절차에 구애받지 않았다. 지난 무인년에 전주부윤으로 진출된 것은 시배(時輩)에게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승지로 임명되어 돌아오다가 박훈(朴薰)과 기준(奇遵)이 남쪽 지방으로 귀양가는 도중 갈원에서 서로 만났다. 서로 다정하게 대화를 하다가 시사에 언급되었을 때 이사균이 '자네들이 조정에 있을 때 눈이 너무 높아 남을 매우 알아보았으며, 남을 이기려고만 힘쓰고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 이것이 화를 부른 원인이었다. 그러나 자네들에게는 진정 간사한 마음은 없었고 나이가 어려 경험이 부족한 탓일 뿐이다. 오늘 자네들을 귀양보냈다가 지혜와 능력을 양성시켜 후일에 크게 쓰려고 한다면 독이 되겠지만, 모조리 잡아들여 벌주고 내쫓고 해서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으니, 자네들이 비록 죄를 졌더라도 조정이 사대부를 대하는 도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 (줄임)

『중종실록』 권94 35년 10월 24일 임오

(줄임) 헌부가 조사한 서계(書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에 사는 감사 이수량(李守良)의 정장(呈狀)에 ‘경중에 사는 내수사 관원이라고 하는 최천손(崔千孫)이 덕산(德山)에 사는 윤기정(尹起貞) 등의 전지를 탈취하여 들째 공주의 집에 기상(記上)하였다. 아산에 사는 종이 일산(一山)의 땅을 탈취하여 들째 공주의 집에 기상하였고, 신윤(申倫)의 땅을 탈취하여 세째 공주의 집에 기상하였다. 예산에 사는 본인 이수량 등 15인의 땅을 탈취하여 덕양군의 집에 기상하였고, 또 봉성군(鳳城君)의 종 효림(孝林)과 사노 종동(終同)·옥동(玉同) 등이 평택의 땅 굴포(掘浦)를 서로 다툰다.’ 고 되어 있습니다.”

『중종실록』 권96 36년 11월 29일 신해

조강에 나아갔다. (줄임) 사간 민세량(閔世良)이 다시 아뢰기를 “금년은 극심한 흉년이라 백성이 흩어져 유랑하게 되자 상계서 진념(軫念)하시어 각종 세금을 줄여 주었으나 매(鷹)기만은 경기 지방 외에는 모두 진상하게 하면서, 각 패두(牌頭)에게 매를 나누어 주고는 꿩을 사냥해서 진상하게 하여 제향(祭享)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도 중에서 충청·전라·경상도는 본래 매가 생산되는 곳이 아니어서 백성들이 곡식으로 매를 사서 진상하는데, 매 한 마리 값이 2동(二同)까지 한다니 이 같은 흉년에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또 진상한 매를 가릴 적에 여유있는 수를 준비 하도록 해서 진상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부정으로 개인의 소용으로 귀속됩니다. 양계와 황해도·강원도는 매를 잡을 곳이 있어 봉진(封進)하는데 폐단이 없지만, 생산되지 않는 하삼도에 대해서는 의논하여 감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합당하다. 부정한 일이 많이 있다면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양연(梁淵)이 아뢰기를 “신이 진흥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조치한 일이 없습니다.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은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굶주린 많은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경기·충청·황해·강원·전라·경상도가 극심한 흉작인데 그 중에서도 경상도가 더욱 심하여 구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도는 본래 전라도와는 달리 곡식이 적은데다 상·하의 도에 실농한 곳이 매우 많아 조정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지방도 한강 이남의 15개 이상의 고을인 과천·이천·안산·인천·양성·음죽·안성·광주·수원·용인·양지(陽智)·진위·남양·여주·부평 등이 경상도처럼 실농이 매우 심하고 충청도가 그 다음입니다. 황해도 연해의 각 고을은 실농이 그다지 심하지 않고 산간 고을은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니 그 다음입니다. 경상·충청·황해도는 내년 봄에 경관(京官)을 보내어 직접 구황(救荒)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경관을 보내면 폐단은 있지만 경관이 내려가게 되면 조정의 의논과 성상의 염려하심을 모두 직접 알게 되어 구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계획을 세워 공문을 보내 이첩하지만 각도의 관찰사 중에 진심으로 받들어 시행하는 자가 없으며 혹 있더라도 받들어 시행하는 수령이 없습니다.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시종이나 대간 중에서 부지런하고 일에 능숙하며 건강한 자를 선발하여 보내 간단하게 구제할 물자를 가지고 민간에 출입하면서 굶주린 백성이 있으면 먹여서 구제하게 해야 수령도 두려워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글로만 공문을 보내 이첩하여 먼 지방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전에 경상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심연원(沈連源)과 황헌(黃憲)을 경차관(敬差官)으로 임명하여 두 곳으로 나누어 내려보내 구황하게 했었는데, 그 당시의 절도사나 수령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내려갔을 때에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힘써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더러 수령이 죄책이 두려워서 굶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골짜기에다 감추기도 하였다 하나 그 당시에는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였고 경차관이 올라온 뒤에는 기민(飢民)이 많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사목을 각도에 공문으로 이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에 이언적(李彦迪)이 '각 관청에 전한 수 외의 곡식이 많으니 그것으로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아뢰었는데, 신이 그 말을 들었지만 마침 병이 나서 즉시 계달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국법(國法)에 공채(公債)를 출납할 때에 으레 소모될 것을 감안하여 3~4되 정도는 더 봉납(捧納)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수령들이 많이 봉납하는 것이 준례가 되었기 때문에 회계한 원수(元數) 외에 소모를 대비한 곡식이 많은 곳은 1만여 석(石)이나 됩니다. 원곡(元穀)은 모두 백성에게 배급하거나 혹은 종자(種子)로 지급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저축이라 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내어서 구제하지 않으며, 혹은 아양(衙養)을 하고 혹은 인정(人情)으로 사영하고 혹은 술을 빚어 손님 접대나 합니다. 이같은 원곡 이외의 곡식에 대해서 신은 공사(公事)를 만들어 계하하려고 했으나 수령이 반드시 사실대로 첩보(牒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사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감사와 같이 조처하여 창고를 열어 기민(飢民)을 구제하면 수령이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합당하다. 원곡 이외의 곡식에 대해서 수령이 곧이 곧대로 보고하지 않을 것이니 설사 폐단이 있더라도 반드시 경관(京官)이 내려가야 수령이 두려워하고 조심할 것이다." 하였다. (줄임)

『중종실록』 권97 37년 2월 26일 정축

진휼청(賑恤廳)이 충청도 진휼 경차관 임호신(任虎臣)의 계본에 의하여 회계하였다. 그 대략에 “이 도는 실농이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하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 이제는 바야흐로 고갈되게 되었으니, 미리 조치하지 않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버린다면 온 지경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계본 내용의 사연을 가지고 과연 호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상확(商確)해서 마련해 보건대, 도내의 가흥(可興)·아산 두 창고에다 올해에 받아들인 세입의 수가 겨우 5만여 석이 되는데, 충주 등 여섯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할 4천 석을 호조가 이미 계품(啓稟)하여 내주었습니다. 국가에서 쓸 것은 더욱 긴요하니 이제 또 더 주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한 도의 굶어 죽은 시체가 장차 구렁에 텅굴 형편인데 보고만 있고 구제하지 않는 것은 차마 못할 일입니다. 충주·괴산·제천·진천·청안(淸安)·음성 등 여섯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가흥창(可興倉)에 받아 놓은 군자(軍資)인 조미(糙米) 1천 석을 더 주고, 직산·천안·온양·평택 등 네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아산창에 받아 놓은 풍저창(豐儲倉)의 조미 2천 석을 제급(題給)합니다. 그 나머지의 전라도 부근의 실농한 각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각각 그 근방의 금산·여산(礪山)·용안(龍安)·함열(咸悅)·고산(高山)·옥구·임피(臨陂) 등 고을의 쌀과 콩을 원래 저축하고 있는 양의 다소에 따라 차등 있게 감하여 마련한 것이 도합 쌀이 9천 석이고 콩이 2천 석이니, 이것들을 호조로 하여금 옮겨다가 나누어 주게 합니다. 도로가 조금 먼 각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들 중 직접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각각 부근의 같은 도의 각 고을 쌀과 콩을 차례차례로 옮겨다 줍니다. 전라도에서 옮겨다 주는 쌀과 콩은 각각 그 부근 고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역시 차례차례로 옮겨다 주어, 굶주리는 백성들이 먼 길을 가서 받아오는 폐해를 제거합니다. 또, 두 도의 경계가 비록 강 하나로 막히어 서로의 거리가 지극히 가깝기는 하지만, 반드시 배에 의하여 건너야 하므로 쌀을 받아야 할 수많은 백성들이 적은 수의 나룻배로는 건너기가 쉽지 않아 반드시 서로 건너려다 빠져 죽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두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배를 조치하여 편리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할 것을 아울러 이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중종실록』 권100 38년 정월 26일 신미

햇무리가 졌다. 양이(兩珥)·관(冠)·이(履)가 있었고 흰 무지개가 해를 꺾었다. 지진이 발생했다. 황해도 해주·연안·배천 등지에 흰 무지개가 해를 꺾었고 또 동남쪽에 흰 운기가 서로 연하여 해를 꺾었는데 모양은 둥근 무지개와 같았다. 양결

에 둥근 고리가 있었는데 그 크기는 태양만 했으며 홍자색 빛깔이었다. 얼마 있다가 사라졌다. 또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흔들렸고 창문이 모두 울렸다. 충청도 **평택현** 및 경기 양주·양천(陽川)·부평·남양·진위·장단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했다.

『중종실록』 권101 38년 11월 21일 신유

충청도 면천(沔川)·서산·덕산(德山)·온양·태안·해미·예산·홍주(洪州)·**평택**에 천둥이 쳤다.

『중종실록』 권104 39년 8월 초이틀 무진

승정원이 이장의 글을 아뢰니 전교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물길로 돌아가고 자 하는데, 그 진소한 것에 답하지 않을 수 없다. 낭관을 시켜 말하기를 ‘너희들이 큰 배를 탔어도 표류하는 고난을 면치 못하였는데, 더구나 우리 나라의 작은 배를 어떻게 타고 가겠는가. 전하께 아뢰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이 글을 되돌려 준다.’ 하여 예조가 스스로 답하는 것처럼 하게 하라.” 하였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천성이 총명하여 신기(神機)를 잡아서 홀로 결단하고, 계책이 공고하여 영예(英譽)를 쌓아서 덕을 거듭 빛내시며, 정사에 바쁘게도 늘 백성이 무사하기를 염려하고, 온갖 일이 모여드는 데도 늘 한 사람이라도 있을 곳을 잃을까 애태우시며, 효우(孝友)는 천성으로 타고났고 근공(謹恭)은 일찍이 생성(生成)으로 잡으셨으며, 위세는 스스로 높이지 않되 국도(國都)에 처하여 높고, 지혜는 무사(無事)를 행하되 금성탕지(金城湯池)를 끼고서 스스로 안락하시니, 참으로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백성의 주인이 되고 만세의 이익이 되어 국가를 위하여 태평을 열게 한 분이십니다. 이제 신 이장은 중국의 궁벽한 곳에 살아 문풍(文風)이 고무하는 은택을 입기는 하나 집은 메마른 땅에 있어 번번이 흉년의 기근을 만나면 수확이 적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일흔 다섯이라 목숨이 아침저녁에 달려 있고,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서 정성을 드리지 못하였으며, 아이는 울며 먹여 주기를 기다리고, 아내는 쓸쓸하여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품팔아서 조석 거리를 장만하려 하여도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명을 따라 외국에서의 이익을 찾아 어려움을 꺼리지 않았습시다. 기울에 있어서는 참으로 손상이 있으나, 인정에 있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들로서 효도하다가 죽고 신하로서 충성하다가 죽는 것은 하늘의 도리이니, 신에게 다시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천도(天道)가 밝디 밝아서 배가 순풍을 만나 해안에 도착하였고 길인(吉人)이 묵묵히 도와 못사람이 해안에 올랐습시다. 태안에서 치보(馳報)하니 성지(聖旨)를 내려 명

나라의 백성을 곧 조선의 백성처럼 염려하며 형제의 화목을 생각하고 적자(赤子)의 무고함을 슬퍼하여, 붙여 있을만한 관사(館舍)를 마련해 주라고 명하여 음식이 정갈하고 넉넉하였으며, 마중하는 사람을 번갈아 보내 말을 타고 따르는 사람이 구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덕이 천지와 짝하며 은혜가 산보다 후하시니, 신이 무슨 행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신이 평택을 지날 때에 효자비가 있었으니, 전하께서 능히 한 사람의 효도로 만인의 효도를 만드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신들은 아직 살아 남은 하찮은 몸으로 개미같이 짧은 목숨이지만, 또한 효도로 어버이를 섬기고자 하다가 표류하여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라건대 만리 밖을 환히 보아 어진 마음을 미루어 가슴에 두시고 널리 못사람의 뜻에 비추어 못사람의 의심을 대면하여 말하듯이 풀어 주시며, 백성의 곤궁을 슬퍼하고 집안이 헤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특별히 명하여 저희 배를 순풍에 따라 보내어 돌아가게 하고, 못사람의 뜻을 살피 바다로 해서 마음대로 가게 하시며, 문서를 내려 주어 본현(本縣)으로 가져가서 경도(京都)에 전보(轉報)하여 왕명으로 살아난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면 선처하는 데에는 양전(兩全)의 방법이 되고, 임시 변통에는 소통(疏通)의 마땅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들은 은혜를 느껴 보답을 피하여 살아서는 하늘에 빌고 땅에 빌며 죽어서는 결초(結草)하고 함환(啣環)하겠습니다. 만약에 험난한 만리길로 황경(皇京)에 보내신다면, 아긴다는 것이 실로 해치는 것이 되고, 사랑한다는 것이 실로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개 신들은 왕명이 없이 왔는데 왕명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오로지 왕사(王師)만을 수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법을 어긴 것도 염려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신들은 차라리 머리를 옥계(玉階)에 부딪쳐 죽을지 언정 만리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죽지는 않겠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살리는 은혜를 내려 위로 천심을 살피고 아래로 인정을 따르시어 지나치게 염려하여 수십 인의 목숨을 잘못 해치지 말소소서. 또 숙특(淑慝)을 가리지 않으면 백성에게 권장될 것이 없거니와, 선악이 혼동되면 교화가 어떻게 밝혀지겠습니까. 삼가 표문을 바쳐 아뢰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장은 어버이를 위하여 배를 타고 장사하려다가 표류하여 우리 나라에 이르렀는데, 그 얼굴이 옥과 같고 그 재주가 물 흐르듯 하였다. 뜰 아래 앉아서 공초(供招)하는 거를에 진정하는 표문을 지어 냈는데 사연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고, 태평관(太平館)에서 해가 기울 때에 기둥에 기대어 서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어버이를 사모하는 생각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염려가 참으로 가여웠다. 이장이 바라는 것은 바다를 거쳐 곧바로 돌아가서 금령(禁令)을 어기고 바다로 나간 벌을 면하려는 것 뿐이다. 그 바라는 것을 따라서 중국을 속이는 것은 진정 옳지 않은 줄 알지만 바라는 대로 따라 주고 싶어하는 이가 있었다. 이는 그 재주를 아까와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사군자(士君子)가 재주

를 아까와하는 마음은 또한 금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11. 『명종실록』

『명종실록』 권2 즉위년 12월 초하루 경인

전 첨정 윤원로(尹元老)와 윤원필(尹元弼)의 아들이며 윤원로의 조카로서 **평택현** **간**이 박하다 하여 칭병하고 부임하지 않아 파면된 윤위(尹緯), 전 헌납 백인걸(白仁傑), 전 집의 송희규(宋希奎), 전 장령 이언침(李彦忱), 지평 민기문(閔起文), 전 정언 김난상(金鸞祥)·유희춘(柳希春), 전 검열 조박(趙璞)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명종실록』 권3 원년 5월 23일 무인

황해도 우봉(牛峯)·토산(兔山)과 경기 파주·광주·양주·연천·가평·삭녕(朔寧)·장단·마전(麻田)·인천·고양·강화·통진·양천(陽川)·죽산·진위·금천(衿川)·적성(積城)·부평·이천·수원·안성·영평(永平)·포천·음죽(陰竹)·김포·교하(交河)와 충청도 직산·홍주·진천·면천(沔川)·**평택**·충주에 지진이 일어났다. (출입)

『명종실록』 권4 원년 10월 14일 무술

경기 고양·이천·부평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크게 쳤고, 안성에서도 번개가 쳤다. 평안도 함종(咸從)·증산(甞山)·맹산(孟山)에서는 천둥이 쳤고, 평양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렸다. 황해도 장연(長連)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다. 함경도 함흥(咸興)·홍원(洪原)에서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고, 정평(定平)·안변(安邊)·덕원(德源)·북청(北靑)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쳤고, 안변에는 두견화와 해당화가 일시에 난만하게 피었다. 충청도 직산·**평택**에는 천둥이 쳤고, 진천에서는 무지개가 뜨고 천둥이 쳤다.

『명종실록』 권5 2년 3월 8일 기미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경국대전』의 포도논상조(捕盜論賞條)에 ‘원유직(元有職)’ 이라고 한 것이 8~9품직과 산직(散職)까지를 아울러 가리킨 것인지 신들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찬(具贊)을 비록 이것으로써 가계(加階)하였으나 【대신이 예를 들어 아뢰었다. 초4일 기사에 보인다.】 물론이 모두 이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구찬의 일 이전에는 이와 같은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시임수령(時任守令)일지라도 품계를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

닭에 전에 첨지(僉知)를 칭호하고 다니던 강도를 붙잡은 **평택현감** 조영걸(趙英傑)과 새재의 대당(大黨)을 포획한 연풍현감 이형신(李亨臣) 등을 다 친수(親授)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수령으로서 강도를 잡은 자를 가계하는 일은 각별히 수교하였는데, 시·산직과 직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 아울러 가계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교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춘동은 상인이니 비록 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으레 천례로 논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정옥(頂玉)과 은장(銀章) 같은 천한 자이겠습니까. 노세필(盧世弼)도 또한 자기가 잡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 터럭만한 공로도 없으면서 분경(奔競)하여 여러 사람이 힘을 같이하여 포획한 것을 자기 홀로 포획한 것처럼 하였으니, 사람들이 다 놀라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더구나 전 내금위(內禁衛)의 산직에게 어찌 당상의 품계가 합당하겠습니까. 신들이 계청하여 고치라는 성명(成命)을 이미 내리었는데, 구차하게 구찬의 전례에 따라 곧 도로 주셨으니 더욱 온당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당나라의 신하 육지(陸贄)가 그의 임금에게 간하여 말하기를 '청주(靑朱)가 서리들에게까지 수다하게 주어지고 금자(金紫)가 널리 가마군과 조례에게 베풀어지니, 지금의 병폐는 바야흐로 관작을 가볍게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무겁게 하여도 오히려 무겁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스스로 가볍게 버리니 어떻게 남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지금의 병폐에 들어맞습니다. 식자들이 한심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모두를 전과 같이 개정하시고, 이 뒤로는 산류(散類)에게는 『대전』에 의하여 상포(賞布)하고 상직(賞職)하여 조정의 관작을 중하게 하소서. (줄임)

『명종실록』 권8 3년 10월 15일 병진

임금이 조하(朝賀)를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정언각(鄭彦燾)이 아뢰기를 "근래에 들으니 용인·진위에 도적이 치성하여 도로가 통하지 못하고 한낮에도 쳐들어와 겁탈을 하는데 종친 한 사람이 잡혀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그 무리가 매우 많아서 말을 탄 이가 50여 명이므로 사람들이 막지를 못하니 방자하게 굴어 기탄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를기를 '도적을 금지시키는 것은 도적을 위무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나 이제 이미 제대로 위무하지 못했으니 금지책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언각이 도적이 치성하다고 아뢴 바는 매우 경악스럽다. 좌·우 포도 대장을 패초(牌招)하여 잡을 일을 비밀히 말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9 4년 5월 6일 을해

청운령(靑雲令) 이수신(李守信)을 잡아다 신문하였는데 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홍현의 공사에 ‘신이 이홍윤·최대관의 모의책에 이름을 쓰고 같이 모의하였다.’ 고 하였으나, 신은 기해년에 아들을 잃고 상심한 나머지 풍병(風病)을 얻어 다년간 병을 앓았으므로 몸이 날로 야위어 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홍윤·홍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최대관은 신의 집 근처에 살았으나 5~6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고향으로 내려간 뒤에는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으며, 신은 경상도와 충주 지방을 평생 왕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홍현·이홍윤 등의 모의책에 이름을 쓰고 같이 모의하였다 하니, 이는 그럴 리가 없는 일입니다. 모의한 때와 신이 동참한 곳 및 날짜를 홍현에게 빙문(憑問)하여 보고, 신이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이웃 사람과 왕래한 의원에게 물어보소서.” 이후정의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8월 15일 최대관·최대수·최대림·최대립·배광의·이홍윤이 같이 의논하여 책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모두 33명인데, 그 책은 연백재(延百載)가 쓰고 군사는 이홍윤이 썼습니다. 이름이 쓰여진 사람은 최대관·최대수·최대림·배광의·연애·연백재·김의순·배몽석·최흡·홍현·홍윤·변복·강유선·유제춘·차한지·우수평·손수검·손수양·안관·안희봉·안희우·안매·우연·이휘·모산수·무송수·이홍윤·이무정·이인정·이후정인데, 지웠다 다시 쓴 사람은 손수양·최흡·유제춘·연의·안매·안관·배몽석·손수검이고,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연애·손수양·유제춘입니다. 충주 군사는 2백 명, 음죽 군사는 1백 50명, 음성 군사는 1백 명인데, 음죽의 군수(軍帥)는 김춘정(金春貞), 충주의 군수는 지칠동(池七同)·지역년(池億年)·서운정(徐允丁)·서돌선(徐突先)·김필손(金弼孫), 음성의 군수는 황개동(黃介同)·최세만(崔世萬)·최만령(崔萬齡)입니다. 충주 군사는 3월이 당번이고 음죽과 음성 군사는 4월이 당번인데 김필손은 지난해 8월 15일에 만나보았습니다. 이 달 25일 사경(四更)에 거사하기 위해 장수 최대관은 4월 25일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 달 11일에 상경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군기는 홍현이 병조의 관자(關子)를 위조하여 각 고을에서 철퇴 30여 개를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하양(河陽)·영천(永川)·신령(新寧)에서는 벌써 왔고, 용인·진위·공주·청주·홍주·음성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철퇴는 최대관과 충주 군수(軍帥)의 집에 묻어 두었습니다. 모의책은 원래 한 벌이었습니다.”

『명종실록』 권10 5년 10월 12일 임신

사간원이 아뢰기를 “형조정랑 윤위(尹緯)는 인물이 경망하고 교만 방자합니다. 전에 청단찰방(靑丹察訪)으로 있을 때는 역졸을 침략하며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었으므로 지금껏 원망하고 있으며, 평택현감에 제수되자 잔폐한 고을임을 싫어하여 병을 칭탁하고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하에서 아버지의 상중에 있을 때는 백성

들의 토지를 강제로 사들여 마을 사람을 위협하여 경작케 했으며, 또 서로 다투는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고 문기 빼앗았기 때문에 교하의 백성들이 모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소원로(小元老)로 지목하였습니다. 지금 본직을 제수받자 그 관직의 위세로 더욱 교만 방자하여 오로지 사감(私憾)을 보복하는 것만을 일삼고 있으니 하루도 조정의 반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직을 파하소서.” 하였다. 답하기를 “파직은 과중하므로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뒤에 여러 번 아뢰니 그대로 윤택하였다.

『명종실록』 권12 6년 8월 17일 임신

청흥도 감사 이몽필(李夢弼)이 부여·**평택**·홍산(鴻山)·공주·연산(連山) 등지의 홍수로 인해 곡식이 잠긴 일로 장계하니, 전교하였다. “지금 장계를 보았는데, 어찌 이와 같이 참담한 재앙이 있단 말인가.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제때에 보고하게 하라.”

『명종실록』 권12 6년 12월 30일 계미

경기의 남양·**진위**·과천 등지에 천둥이 쳤고, 부평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 안산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소리와 같고 가옥이 흔들렸으며 못 찌꺼기가 놀라서 울기도 하였다.

『명종실록』 권17 9년 9월 29일 정묘

경기관찰사 성세장(成世章)이 장계하기를 “**진위**에 사는 사노 억손(億孫)이 그의 아버지가 무리들에게 맞게 되자 가지고 있던 낫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버지를 구출하여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하니, 상이 호조로 하여금 물품을 내리고 표창하도록 했다.

『명종실록』 권22 12년 3월 13일 병인

청흥도 청주·연기·진천·천안·**평택**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이 흔들렸다. 전의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온양·신창(新昌)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희미한 천둥소리 같았고 집이 흔들렸다. 경상도 고령·개령(開寧)·초계(草溪)에는 눈이 내렸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녹지 않았다.

『명종실록』 권23 12년 11월 19일 무진

경기감사 이몽량(李夢亮)이 순심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와 숙배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고을 백성들의 사정이 어떠하더냐?” 하였다. 아뢰기를 “신이 안산·남양(南

陽)·수원·진위·양성·양지 등지를 돌아보니, 금년에는 해변이 한층 더 심하게 실농하였고, 안산·남양·수원 등지의 백성은 장차 정처없이 떠돌게까지 되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나올 날이 박두하여 더욱 염려됩니다. 케군(柁軍)의 역사에는 이전부터 기전(畿甸)의 백성들을 차출했었는데, 기전의 기근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으로는 청홍도의 가까운 고을 중 약간 풍년이 든 지역에서도 케군을 차출하여 그 역사를 돕게 한다면 기내의 백성들이 조금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대신들과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28 17년 5월 20일 계묘

청홍도 평택에 우박이 내렸다.

『명종실록』 권28 17년 9월 12일 계사

천둥 번개가 쳤다. 청홍도 진천·평택에 천둥이 쳤다.

『명종실록』 권29 18년 10월 30일 을해

진라도 진도·강진·임피(臨陂)에 천둥이 쳤고, 청홍도 홍주·직산·태안·남포(藍浦)에 천둥이 치며 우박이 내렸고, 면천(沔川)·아산·덕산(德山)·평택·서산·부여에 천둥이 쳤다.

『명종실록』 권30 19년 9월 8일 정미

청홍도(淸洪道)의 평택·직산·신창(新昌)·예산·천안·온양에 우박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 경상도의 김해·기장(機張)에 천둥이 쳤다.

『명종실록』 권30 19년 11월 28일 정묘

청홍도의 평택에 해가 뜬 뒤에, 해 곁의 남·서·북·세 편에 단홍(斷虹)이 함께 나타났는데 안은 청색이고 밖은 적색이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다.

『명종실록』 권33 21년 10월 28일 을유

경기 안산에는 맑은 하늘에 천둥이 쳤고, 과천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천둥이 쳤다. 청홍도 해미(海美)·예산·면천(沔川)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천둥이 쳤고, 평택에는 구름도 없이 천둥이 쳤으며, 직산·결성(結城)·서산·당진에는 비가 내리면서 천둥이 쳤다.

12. 『선조수정실록』

『선조실록』 권12 11년 2월 18일 기해

의금부의 계목에 “전응정을 잡아올 때에 수원에서는 압송해 올 군인을 정하여 보내지 않았고 진위에서는 군인들이 교대를 기다리지도 않고 흩어져 간 탓으로 사간(事干) 임천건(林天健)이 어둠을 타 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고을의 관리를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계목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임천건은 곧 체포되었다.

『선조실록』 권25 24년 4월 4일 기해

경기감사의 서장에 “진위·수원 등지에 지난 윤 3월 16일 밤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는데 작은 것은 밤알만하고 큰 것은 계란만하였으므로 보리와 밀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하였는데, 예조에 내렸다.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28일 병진

윤선각이 또 치계하였다. “신이 5월 4일에 수원에서 전라도 군사와 길을 나누어 신은 안산을 경유하고 이광(李洸)은 금천(衿川)을 경유하여 양천(陽川)의 북포(北浦)에서 회합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전라도 선봉장 백광언(白光彦)은 이미 용인에서 적과 서로 대치하였습니다. 신은 행군하여 수원부 앞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유숙하였습니다. 5일 아침에 병사(兵使) 신익(申翊), 방어사 이옥(李沃) 등으로 하여금 각각 병마를 거느리고 나아가 전투하도록 하고, 신 및 이광·김수 등은 모두 전쟁터에서 10리쯤의 거리로 진을 옮겨 계속 응원할 계획이었는데, 신익·이옥 등이 비보를 보내 위급함을 알리기에 신이 정예병 2백 명을 뽑아 계속 달려가 응원하게 하여 3위(衛)가 협력해 싸워 10여 급을 배었습니다. 그런데 곽영(郭嶸)의 진영이 적의 침입을 받아 황망히 달아나자, 또 한 부대의 적이 동쪽에서 쫓아와서 갑자기 신익을 압박하니 모든 군졸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신의 진중에 상하가 아직 아침 밥도 먹지 않고 군사들도 미처 정돈하지 못했는데 양진의 패전하여 흩어진 병졸들이 토봉와 해되어 진영 앞으로 달아나 지나가기에 신이 경악을 금치 못하여 즉시 군관 10여 명으로 하여금 칼을 휘둘러 6~7명을 참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중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다만 군졸 두어 사람들과 진중에 외로이 남아 있을 뿐이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적의 예봉을 피해 행군하여 갈원(葛院)에 이르렀습니다. 김수(金晔)가 뒤이어 도착하기에 신이 김수와 평택현에 이르니 이옥(李沃)이 어둠을 틈타 뒤따라 왔습니다. 신들이 처사를 잘못하여 이렇게 무너져 패전하게 되었으니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으므로 행재소(行在所)에서 거적을 깔고 앉아 주책(誅責)

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승세를 탄 적들이 만약 직산의 길로 곧장 내려가면 우도가 패망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이에 신은 병사 신익, 방어사 이옥, 조방장 이세호 등과 서울에 가까운 고을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흩어져 도망한 병졸들을 소집하여 뒷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28일 병진

김수가 치계하였다. “영덕현령 안진(安璉)이 성을 지킨 상황을 보고하는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이 산길로 밤에만 걸어서 20일 만에 신의 처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좌도의 승패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니, 동해 일대 장기 이상으로 안동·청송·진보(眞寶)·봉화·예안(禮安)·영천·예천·풍기 이외의 언양(彦陽) 일로와 울산·경주·영천(永川)·신령(新寧)·의흥(義興)·의성·군위·비안(比安) 등도 이미 분탕되어 왜적들이 횡행하며 우마로 실어 나르는 짐바리가 도로에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감사·병사·수사·방어사·조방장 등은 역시 간 곳을 알 수 없으며, 각처의 수령들도 모두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우도는 거창·안음(安陰)·함양·산음(山陰)·단성(丹城)·하동·곤양(昆陽)·사천·진주 이외에는 모두 적의 침략을 꺾었으며, 남해의 섬들은 비록 왜적의 난을 겪지는 않았으나 군량과 군기를 전라좌수사가【이 사실은 김성일의 서장 중에도 있다. 좌수사는 바로 이순신이다.】 먼저 스스로 불태워버려 이미 빈 성이 되었습니다. 성주의 적은 그 수가 많지 아니하여 조대곤(曹大坤)이 전력하여 잡았으며, 남쪽 변방을 침범한 왜적은 수사 원균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서 힘을 합해 잡았습니다. 신은 비록 거느린 군졸은 없으나 의리상 차마 물러가 본도만 지킬 수는 없기에 군관과 수령 등 80여 명만을 거느리고 전라감사 이광(李洸)과 합세하여 함께 서울로 가기로 약속하고서, 달려 함양에 이르러 이광이 통보한 성교(聖敎)를 보니 ‘왜적이 경기 지역에 가득하므로 부득이 송도(松都)에 주차(駐紮)하여 사방을 호령하여 기어이 왜적들을 무찔러 섬멸하려고 하니 경은 경상우도에 비밀히 통보하여 급급히 경내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와서 응원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삼가 성유(聖諭)를 읽고서 오장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아 모르는 사이에 울음과 눈물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달 18일에 곧장 전주에 이르러 지금 진위로 가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28일 병진

충청도관찰사·검순찰사 윤선각(尹先覺)이 치계하였다. “신과 병사 신익(申翬), 방어사 이옥(李沃) 등이 근왕병들을 나누어 거느리고서 이달 22일에 온양군에서 점열(點閱)하였습니다. 전일의 하유(下諭)에 따라 전라도 도순찰사 이광, 경상도 도순찰

사 김수 등이 24일에 도착하여 26일에 행군하였는데 연일 큰비가 내려 시냇물이 불어 수만 병마가 쉽사리 건널 수 없었으므로 28일에야 비로소 **진위**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본도의 군사가 2만 5천 명이었으나 세 차례의 패전으로 흩어진 뒤에 거두어 조발하니 겨우 1만 5천 명을 얻었습니다. 청주 이동의 고을들은 적의 길이 막혀 나올 수가 없기에 그 본 고을의 수령들로 하여금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방비하도록 하고, 신은 이광·김수와 함께 직산에 도착하여 13고을의 군사는 조방장(助防將) 이세호(李世灏), 수사(水使) 변양준(邊良俊) 등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고서 매복(埋伏)하였다가 합동 공격하여 마구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도록 하고, 다만 우도의 군사만으로 근왕병을 삼았는데 그 수가 8천여 명입니다. 신이 이미 경기에 도착하였으니 시일을 정해서 강을 건너 경성에 웅거하고 있는 적을 섬멸하여야 되겠지만, 수원의 도로가 현재 적에 의하여 막혀 있으니 이곳의 왜적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광·김수 등과 함께 의논하여 좌우에서 협공한 뒤에 달려가 경성을 구원하겠습니다.”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8월 초하루 무자

의병장 조헌(趙憲)이 청주성을 회복하였다. 조헌이 처음에 수십 명의 유생과 뜻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뒤 공주와 청주 사이에 가서 장정을 불러 모으니 응하는 자가 날마다 모여들었다. 그러자 순찰사와 수령이 관군에게 불리하다고 여겨 갖가지 방법으로 저지하고 방해하였다. 이에 조헌이 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을 찾아가 거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극력 말하자 순찰사가 그대로 따랐다. 청양현감 임순(任純)이 백여 명의 군사로 조헌을 돕자 윤국형이 그가 절도(節度)를 어겼다고 하여 잡아 옥에 가두고 죄를 다스리니, 조헌이 또 편지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고 바로 우도(右道)로 가서 1천 6백 명을 모집하였다. 공주목사 허욱(許頊)이 의승(義僧) 영규(靈圭)를 얻어 그로 하여금 승군을 거느리고 조헌을 돕게 하니, 조헌이 군사를 합쳐 곧장 청주 서문에 육박하였다. 적이 나와서 싸우다가 패하여 도로 들어가니, 조헌이 군사를 지휘하여 성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서북쪽에서부터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 천지가 캄캄해지고 사졸들이 추워서 떨자 조헌이 탄식하기를 ‘옛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하고 마침내 맞은편 산봉으로 진을 퇴각시켜 성 안을 내려다 보았다. 이날 밤 적이 화뿔불을 피우고 기(旗)를 세워 군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진영을 비우고 달아났다. 조헌이 성에 들어가니 창고의 곡식이 그대로 있었다. 방어사 이욱(李沃)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이것을 남겨두어 적이 다시 점거하게 할 수 없다.’ 하고 모두 태워버렸다. 조헌은 군사를 먹일 양식이 없었으므로 여러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각기 흩어져 취식(就食)

한 뒤 의장(衣裝)을 갖춰 다시 모여 복상하도록 하고는, 인하여 상소하기를 “국가가 화패(禍敗)를 당한 것은 계미년 이후로 이 도에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용사들은 원한을 품고 남방의 부유한 백성들은 생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언신(鄭彦信)은 대궐에서 내려준 물품을 사사로이 허비하면서 간민(姦民)에게 은혜를 베풀어 환심을 샀으며 문인(文人)으로 임금의 이목이 된 자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수·이광이 자급을 뛰어넘어 승진하는가 하면, 무리(武吏)로서 일을 만들어 공을 바란 자들이 재물을 모아 적의 머리를 사들여 중죄를 면하고 있습니다. 김수는 영남에서 잔학한 행동을 하다가 적이 이르자 겁을 먹고 물러났으며, 이광은 호남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주에 이르렀다가 먼저 퇴각하였는데, 이어 근왕병을 거느리고 **진위**에 도착하여서는 어물거리며 나가지 않아 삼도의 군사를 흠어지게 하여 다시 수습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간당들이 흔히 하는 짓이지만 국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군대를 패배시킨 큰 죄를 짓고도 아직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데, 근왕하던 신각(申恪)은 홀로 주륙을 당하였습니다. 국가가 빛나는 업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데 있는 것인데 지금은 상과 벌이 이토록 어긋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려 하는데도 의리를 다하는 자가 없게 된 것은 진실로 소인을 신용한 화가 이토록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옛날의 기업을 회복시키려고 하면서 상벌을 분명히 하는 방법을 버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였다.

『선조실록』 권34 26년 정월 11일 병인

답보(答報)하면서 헤아려 개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강화부(江華府)에 주차(駐節)한 전라도절도사 최원(崔遠)의 군사 4천 명, 경기도순찰사 권징(權徵)의 군사 4백 명,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군사 3천 명, 의병장 우성전(禹性傳)의 군사 2천 명, 수원부에 주차한 전라도순찰사 권율(權慄)의 군사 4천 명,【이상은 왕경의 서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1일 정(程)이다.】 양주에 주차한 방어사 고언백(高彦伯)의 군사 2천 명, 양근군(楊根郡)에 주차한 의병장 이일(李鎰)의 군사 6백 명,【이상은 왕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1일 정이다.】 여주에 주차한 경기순찰사 성영의 군사 3천 명, 안성군에 주차한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의 군사 3백 명【이상은 왕경에 있으며 1일 반 정이다.】 충청도 직산현에 주차한 본도절도사 이욱(李沃)의 군사 2천 8백 명, **평택현** 등처의 장관(將官)들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3천여 명, 각처의 의병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5천여 명이다. 이상은 왕경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2~3일 거리이나 4~5일 거리이다.】

을 겪었고 또한 접거된 일도 있었으며, 강화·교동(喬桐) 등의 부현은 아직 적이 지경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줄임) 충청도 충주·청주 등 진과 청풍(淸風)·단양·괴산 등 군과 문의(文義)·제천·회덕(懷德)·연풍·음성·청안(淸安)·진천·영춘(永春)·보은·영동·황간(黃澗)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고 또한 접거당하였던 곳도 있으며, 공주·홍주 등 진과 임천(林川)·태안·한산·서천·면천·천안·서산·옥천·온양 등의 군과 홍산(鴻山)·덕산(德山)·**평택**·직산·정산(定山)·청양·은진(恩津)·회인(懷仁)·진잠(鎭岑)·연산(連山)·이산(尼山)·대흥(大興)·부여·석성(石城)·비인(庇仁)·남포(藍浦)·결성(結城)·보령(保寧)·해미(海美)·당진·신창(新昌)·예산·목천(木川)·전의(全義)·연기·청산(靑山)·아산 등 현은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줄임)” 하였다.

『선조실록』 권42 26년 9월 초이틀 계축

사간원이 아뢰기를 “죄인 황정옥과 황혁을 속히 울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경기의 여러 고을은 난리를 겪은 이후로 탕패됨이 더욱 극심합니다. 이들을 잘 어루만져 안집시킬 책임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위현령 민곤서(閔鵬瑞)는 성품이 본래 탐욕스러운 데다가 오로지 착취만을 일삼고 있고, 지평현감(砥平縣監) 임수형(林秀衡)은 김포의 임시 수령으로 있을 적에 관가의 기물(器物)을 공공연히 가져갔었고, 지금 본고을의 현령이 되어서는 족속(族屬)들을 외람되어 데리고 와서 관가의 곡식을 많이 허비하였으니,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옥 등의 일은 현부에 답한 것과 같다. 수령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44 26년 11월 12일 임술

사간원이 아뢰기를 “부호군(副護軍) 윤담(尹湛)은 앞서 강화부사로 있을 적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공공연히 훔쳐내어 본부의 지경에다 수전 7~8섬지기를 사들였고, 전 진위현령 민곤서도 관곡을 훔쳐내어 지경 안에다 집을 사들였으니, 잡아다가 국문하도록 하소서. 각사(各司)의 상직(上直)은 법령이 매우 엄한데 미면을 말아보는 곳은 더욱 비워서 안 됩니다. 그런데 내섬시(內瞻寺) 관원들은 전연 수직하지 않아 관장하고 있는 물건을 다수 도둑맞았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45 26년 11월 23일 계묘

왕세자가 **진위현**을 지나가다 저녁에 민가에 머물렀다.

『선조수정실록』 권28 27년 정월 초하루 경진

역적 송유진(宋儒眞)이 복주(伏誅)되었다. 당시 굶주린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군사는 도망해 숨어 서로들 모여서 도적이 되어 곳곳마다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와 호서가 더욱 심하였다. 한강 이남에서 조령까지의 지역과 호서의 험조(險阻)한 곳에도 적도들이 많이 잠복해 있어 마을을 노략질하였으므로 행인들이 두절되었다. 주군에서 수색하고 토벌하면 일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곤 하여 소탕할 수가 없었다. 송유진은 본래 경성 서족(庶族) 출신의 무뢰배로서 천안과 직산 사이에 출몰하며 도적질을 하였는데, 점점 방자해져 경성의 수비가 허술한 것을 보고는 결국 역모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 도적들을 속여 유인하고 자칭 의병 대장이라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직 군량과 기계를 모을 뿐이다.” 하였다. 그를 따르는 자가 매우 많아 지리산·속리산·광덕산(廣德山)·청계산 등 여러 산골짜기에 분포된 자가 2천여 인이었다. 송유진은 여러 적과 더불어 1월 10일에 군사를 동원하여 아산·평택 지방의 병기를 빼앗아 가지고 경성에 쳐들어가기로 약속한 다음, 먼저 전주의 분조(分朝)에 글을 보내었는데, 임금을 모욕하는 말이 매우 흉참하였다. 충청병사 변양걸(邊良傑)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양에 머물러서 토포하려고 하였으나 적의 피수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마침 진천의 무사 김응룡(金應龍)을 포섭하여 그의 계략을 쓰게 되었다. 대개 김응룡의 족자(族子) 홍각이란 자는 적의 심복이었는데, 종사관이라고 호칭하였다. 김응룡이 그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이해 관계를 가지고 위협해서 그 실상을 다 파악한 다음, 그를 협박하여 송유진을 초치하게 하니, 송유진이 수십 인을 거느리고 왔다. 이에 김응룡이 역사 홍우(洪瑀) 등과 함께 그를 포박하였는데 충청병사가 그를 수금(囚禁)하고 조정에 알렸다. 적들을 대궐 뜰에 끌어다가 국문하니 송유진 및 모든 도당들이 다 자복하였으므로 그들을 처형하고, 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베풀었다. 김응룡 등에게는 관직을 제수하고, 변양걸에게는 자급을 올리고, 국청(鞠廳)의 여러 신하들에게는 차등 있게 상으로 자급을 내렸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에 교서를 내려 사면을 베풀었다. (줄임)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6일 을묘

진시에 상이 행궁의 편전에 나아가 죄인을 친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먼저 이산겸(李山謙)을 국문하라.” 하였다. 이산겸이 공초(供招)하였는데, 초사(招辭)의 대략에 “보령에 사는 서얼로서 임진년 6월에 스스로 의병장 조현에게 들어가 진중에서 종사하다가 조현이 패하여 죽자, 그의 휘하 병사들이 내가 일찍이 막하였다고 하여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게 하였으므로 군사를 평택·진위 사이에 주둔시켜 놓고

건의대장(建義大將) 심수경(沈守慶)에게 절제를 받았습시다. 이듬해 계사년 5월에는 중국군의 패문(牌文)에 의거하여 파병(罷兵)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건의부장(建義副將)이 전지를 받들고 전령(傳令)하며 영남으로 내려가라 하기에 곧 25명을 거느리고 경상도로 내려갔습시다. 그후 파병하고 돌아왔다가 충청감사의 공문에 의하여 공주 마곡사(麻谷寺)에 결진(結陣)하였으며, 11월에 상소하고 파병하면서 군량(軍糧)과 군기(軍器)를 감사에게 바쳤습시다. 도원수(都元帥)가 전령하기를 '모든 의병은 이미 파했건 아직 파하지 않았건 간에 싸우는 곳으로 뽑아 보내라.' 하기에 나도 50명을 정밀히 뽑아 먼저 보내고 저 또한 은진(恩津)으로 가서 봉점(逢點)하고자 하였습시다. 그런데 다른 의병이 하나도 모이지 않았기에 나의 생각에 혼자 내려가서는 당해내지 못할까 염려되었으므로 동궁을 호위하려 하다가 전라도의 병사를 모집하는 곳에 자원해볼까 하여 전주·담양(潭陽)을 거쳐 김덕령(金德齡)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시다. (줄임)" 하였다. (줄임)

『선조실록』 권54 27년 8월 22일 정묘
왕세자가 저녁에 진위현에 머물렀다.

『선조실록』 권70 28년 12월 11일 기유
충청도 아산현에 진달래꽃·살구꽃이 곳곳에 피고, 보은·평택·남포(藍浦)에 천둥 번개가 크게 쳐 여름철과 같다고 관찰사 박홍로(朴弘老)가 아뢰었다.

『선조실록』 권77 29년 7월 26일 신묘
유희서(柳熙緒)가 아뢰기를 "신이 부여와 임천 등 고을을 순회하며 여러 인민들을 모아 놓고 조정의 은혜로운 뜻을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안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하는 말이 '역적의 변이 난 뒤부터 더러는 감사·병사·수사의 군관이라고 하며 역적을 잡는다는 핑계로 촌의 집에 돌입하여 남정(男丁)들을 결박하므로 노약자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산골짜기로 숨게 되었고, 집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역적의 장물이라 하며 있는 대로 모두 거두어 가므로 마을이 쓸쓸해지게 되었다……' 하였습시다. 그 지역의 인부와 말을 마련하는 폐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청양(靑陽)·평택·진위·수원의 백성들은 길을 막으며 신에게 호소하기를 '은 지경 사람들이 농사 일을 전폐하고 관아 문앞에 모인지 지금 반 달이 지났는데도 도사(都事)와 선전관(宣傳官)들이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인마를 책임지우며 멋대로 매질을 하므로, 차라리 도망하여 흩어져 버릴 지언정 다시는 지탱하여 감당할 길이 없다. 임금께 아뢰어 만분의 일의 혜택이라도

받게 해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제는 굶직한 적당들이 거의 모두 잡혔으니, 본도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잡는 대로 즉시 칼을 썬워 올려 보내도록 하고, 도사와 선전관을 요란하게 자주 내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지역이 소란스럽게 되는 폐단이 행여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신이 들은 바가 이와 같았기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추국청(推鞠廳)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85 30년 2월 25일 병술

(줄임) 임금이 이르기를 “경기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거의 1만여 명에 이르는데 1백 인 중 활을 쓸 수 있는 자가 거의 50~60명 꼴이 되므로 이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들은 한 사람이 오만가지 일을 담당 하니 그 고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수군은 더욱 고생이 많으니 1년에 4교대로 번을 서는데 당사자와 봉족(奉足) 3인이 번갈아 가면서 역을 맡으므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80세가 되어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군역을 면제시키지 않고 죽으면 자손으로 배정하는데 병조에서도 분간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정(閑丁)으로 충원한다면 늙은이들을 면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이 수군 대장의 직임에 제수되었으나 선박과 군정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군사는 강변 사람들을 권유하여 잠정적으로 부대를 편성하고, 선박은 개인의 배를 모아 그 숫자를 장부에 적어 놓았으나 이것으로 위급한 사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강화군졸로 격군(格軍)을 삼으려 하는데 바다로 나가면 수군이 되고 육지에 오르면 방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중원(中原) 통주(通州)의 강 어구에 있는 각 관아에서는 각각 배를 갖추고 있다가 위급한 경우에는 각기 자기 물건들을 싣고 갑니다. 우리 나라의 물자와 인력으로는 두루 제작하기는 어렵겠으나 육조 아문의 경우에는 각각 1척씩 준비하여 위급한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파사성(婆娑城)과 용진(龍津) 사이에 부용성(芙蓉城)이 있는데 흙으로 쌓아서 망대(望臺)로 삼으려 합니다. 사궁성(舍弓城)이 또 양근군(楊根郡)에 있는데, 서쪽 성이 매우 험준하므로 사람들이 들어가 지키면서 피란의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군 남쪽에 남산이 있고, 산에는 모래가 깔린 여울이 있는데 이곳을 높이 막으면 여주와 충주에서 오는 적이 반드시 마음대로 파사·용진 밖으로 침투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이 궁핍하기 때문에 미처 수축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은 어느 고을을 순찰하고 돌아왔는가?”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신이 도체찰사와 광주·용진·양주·여주·파사성을 지나 신은 먼저 이천·죽산·안성·양성으로 향했다가 수원의 습진처(習陣處)로 모였고 체찰사는 여주로부터 양지·용인·진위

를 경유했는데 신은 수군의 일 때문에 먼저 경성으로 돌아오고, 체찰사는 그대로 남양·안산으로 향했다가 입성했습니다.” 하였다. (줄임)

『선조실록』 권91 30년 8월 27일 을유

헌부가 아뢰기를 “(줄임) **진위현령** 정응탁(鄭應鐸)은 정무를 아래의 아전에게 맡기고 자기는 오로지 재물 모으는 데에만 급급하여 백성의 소송을 처리할 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혹한 형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지 못하게 하므로 온 경내가 떠들썩하게 비난하고 결국엔 흩어져 도망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머무르게 하여 더 이상 민폐를 끼치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충청 감사에 대한 문제는 서서히 결정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91 30년 8월 29일 정해

사간원이 아뢰기를 “진유격(陳遊擊) 집반관 이흠(李愼)의 서계를 보건대, 헛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흩어져 떠날 뿐 아니라 도피한 수령도 많아 **진위** 이남에는 밥 짓는 연기가 끊어졌으며 중국 군사가 관아의 창고를 부수고 침탈을 자행하는 것이 병란을 겪은 것보다 더 참혹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을 지키는 관원으로서 직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의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목숨만을 구차하게 보존하려는 계책을 생각하여 적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곧바로 관아의 창고를 버리고 다시는 돌볼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경기와 충청 두 도의 감사로 하여금 각별히 단속하고 보호하게 하는 한편, 고을마다 식견이 있는 품관을 선정하여 향소(鄕所)로 삼아 수령을 보좌하고 아전과 백성을 통솔케 하여 관부를 마음대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중에 혹 감독을 소홀히 하여 패물케 한 자가 있으면 도피죄로 다스리되 수령과 향소를 똑같이 처벌하소서. 흉적이 재침한 뒤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과감히 용기를 내어 적에게 대항하지 못했는데 호남의 경우는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영남의 여러 장수들은 누차 적의 머리를 베어 바치는 등 비록 크게 이긴 일은 없다 하더라도 적을 토벌하는 뜻이 있는 것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을 따지지 말고 첩보가 도착되는 대로 총독과 경리의 아문에 외교문서를 보냈어야 했는데도 근래에 자못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마침내는 경리로부터 외교문서를 속히 보내라는 독촉까지 받았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승첩을 올릴 때마다 적의 귀를 베었거나 목을 베었거나를 막론하고 일일이 외교문서로 급히 보고함으로써 여러 장수들이 계속해서 적을 토벌하고 있다는 뜻을 알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31 30년 9월 1일 기축

경리 양호(楊鎬)가 부총병 해생(解生) 등을 시켜 적병을 직산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이보다 앞서 적이 남원을 함락시키고부터 승승장구하여 경기를 압박하였다. 경리 양호가 평양에서 그 소식을 듣고 경성으로 달려와 제독을 불러 싸우지 않은 상황을 꾸짖고, 제독과 함께 계책을 정해 용맹하고 정예한 기사를 몰래 뽑아 해생·우백영(牛伯英)·양등산(楊登山)·파귀(頗貴)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직산에서 맞아 치게 하였는데 제군(諸軍)과 우리 나라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하였다. 해생 등은 직산의 소사평(素沙坪)에 복병해 있다가 적병이 미처 대오를 정렬하기 전에 돌격하니 적이 흩어져 도망하였는데,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또 유격 파새(擺賽)를 보내어 2천 기병을 이끌고 따르게 하여 네 장수와 합세하여 추격하여 또 격파하였다. 이날에 경리와 제독이 상에게 강가로 나아가 보기를 청하여 상이 부득이하여 행차 하니 인심이 흥흥하고 놀라 백성들이 짐을 꾸려놓고 대기하고, 왕비는 전쟁을 피해서 쪽으로 행차하였는데, 첩보가 이르러서야 서울이 조금 진정되었다.

『선조실록』 권92 30년 9월 9일 병신

접반관(接伴官) 신충일(申忠一)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이 달 7일에 흉적의 선봉이 천안에서 올라오자 해부총(解副摠)·양참장(楊參將)·파유격(頗遊擊)·우유격(牛遊擊) 등 네 장수가 정예병 2천 명과 장관(將官) 15명을 뽑아 거느리고서, 직산으로부터 15리쯤 되는 곳에서 왜적을 맞아 싸워 31급을 베었는데 사상자는 이루 셀 수 없었다. 장수들도 직접 왜적을 베었는데 해부총은 2급, 양참장은 1급, 파유격은 3급을 베었으며, 노획한 마필과 기계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날 회군할 적에 진위를 통과하여 초저녁에 수원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먹은 뒤에 바로 말을 타고 출발했는데 그때가 겨우 밤 2경이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권122 33년 2월 16일 경인

좌승지 이상의가 아뢰기를 “분부할 일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사를 소환하였더니 도사 김지남(金止男)이 과거시험장에서 쫓겨난 뒤로 병 때문에 진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아문이 잇따라 남하하는 때를 당하여 태연히 물러가 있으면서 서울로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큰 아문의 행차에 담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였으니, 일이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런 때에 도사가 어떻게 시골로 물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잡아다가 조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권128 33년 8월 20일 경인

사헌부가 아뢰기를 “각 고을의 관둔전은 자연 그 수가 있고 또 그 장소도 있는 것인데, 난리를 겪은 뒤로 수령들이 고을의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래의 둔전 외에 피난간 백성이 묵혀둔 땅을 백성들에게 농사지어 거두도록 하고서 관둔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으며 혹 땅 주인이 옛 고향을 찾아 돌아온 자가 있어도 돌려주지 않아 생업을 되찾을 수가 없게 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땅 주인과 한마음이 되어 기름진 민전을 관둔전에 배속시켜 부역을 면제해 주고 그 땅주인이 낸 세금은 모두 사사로이 쓰고 재해를 조사할 때는 모두 빼버리므로 농사짓는 곳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도 세입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만 지나치게 온갖 역사의 고초를 받고 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앞으로는 각 고을 본래의 둔전 외에 그 나머지 둔전에 대해서 각도의 감사와 경차관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적발하여 세금을 거두게 하소서. 양지현감 유효원(柳好元)은 부임한 이후로 오로지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봄갈이할 때 고을 백성들이 종자 대출을 청하면 관가의 저축이 넉넉하지 못하여 나누어 줄 수가 없다고 해놓고 철이 늦어져 백성이 모두 애타게 희망하도록 한 다음, 백성에게 병작(並作)하겠느냐고 물어보아 병작을 원하는 자에게 비로소 나누어 주고 있으므로 온 고을에서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고을인 진위 땅에 농토를 많이 점유하는 등 비루한 일을 자행하고 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권135 34년 3월 21일 기미

전라도 암행어사 홍문관부교리 이정협(李廷謙)이 아뢰었다. “(줄임) 신은 외람되이 임금님의 가까이 있으면서 분에 넘치게도 어사의 임무를 받았으므로 듣고 본 것을 감히 올리지 않을 수 없어 아울러 글로 아뢰입니다. 신이 직산의 **소사평**에 도착했을 때 한 수령을 만났는데, 10여 바리의 많은 짐을 싣고 곧장 달려오다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신의 말을 떠밀치고 지나가기에 신이 역졸을 시켜 그 하인을 잡아오도록 하니 무리지어 달려들어 난타하고 어떤 자는 쇠꼬챙이로 찌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침 뒤에 떨어진 자가 한 명 있어 따져 물으니, 해주관판 박명부(朴明搏)가 벼슬을 버리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타도의 수령이지만 임금의 명령을 받은 신하를 멸시하였으니, 그의 교만하고 거친 정상이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이 모두 신이 용렬한 소치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였으니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조실록』 권145 35년 정월 17일 경술

간원이 아뢰기를 “**진위현령** **최준**(崔浚)은 관리 노릇을 잘못하여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습니다. 지난해 토지를 감정할 때에 그 일을 전적으로 간교한 아전에게 맡겨 그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므로 부유하고 교활한 자는 그 세금을 면제받고 가난하고 잔약한 자는 지나치게 고통을 받게 하였으니 그것만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련한 뒤에 또 손수 더 보태거나 줄여서 부역이 고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이 많은 때에 하루라도 수령의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부안현은 물산이 많고 지역이 커서 본디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군에 소속되어 봄이 이미 다가왔으니 번다한 일을 처결하고 돕는데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신임 현감 **한경갑**(韓景甲)은 위인이 졸렬한 데다가 현재 접반관으로서 관서에 가 있으니 반드시 기일에 맞추어 부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를 교체하라 명하시고 그 대임자를 잘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권146 35년 2월 26일 기축

사헌부가 아뢰기를 “**진위현**은 남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서 경기의 고을 중에도 탕진됨이 더욱 심합니다. 신임 현령 **김새**(金騫)는 인물이 용렬합니다. 전에 용인 현령으로 있을 때에 아전에게 정무를 맡겨 아전이 그로 인해 농간을 부렸으므로 온 경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잔폐됨을 소생시키는 책무를 결코 이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으니 파직하고, 그 대임을 일찍이 명성과 치적이 있는 사람으로 파견하소서. **대흥현감**(大興縣監) **심우단**(沈友端)은 부임한 뒤로 부세의 징수가 한이 없어 오로지 자기를 살찌우는 일만 힘쓰며, 또 그의 친한 사람을 시켜 중국 사신이 왔을 때 할당된 물품을 방납(防納)하게 하여 관아에 쌓아두는 등 갖은 방법으로 작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하소서.” 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권196 39년 2월 4일 계묘

사헌부가 아뢰기를 “**음죽현감**(陰竹縣監) **남빈**(南賓)은 정사를 잘못 보므로 부역을 차출함이 고르지 못하여 백성들이 몹시 원망을 하며 거의 다 떠나버려서 앞으로 고을이 텅 빌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머물러 있게 해서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 **진위현령** **윤기빙**(尹起聘)은 인물이 용렬하여 부임한 뒤로 음주를 일삼고 정사는 아전들에게 다 맡겼다고 합니다. 조사가 나오는 이러한 때에 그런 사람을 하루라도 관직에 머물러 두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게 해서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 무릇 임금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해당 도에서 평가를 시행해야 될 자가 그 도의 수령 중 서로 피해야 될 수령이 있다면 일의 체모로 헤아려보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운판관(海運判官) 심광세(沈光世)는 아산현감 심정세(沈挺世)와는 동복형제이고 또 정산현감(定山縣監) 구인기(具仁基)와는 이성 사촌 형제입니다. 한 도에 같이 있다 보면 전세(田稅)를 독촉하거나 조졸(漕卒)을 차출하는 즈음에 반드시 구애 받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담당 부서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한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권196 39년 2월 6일 을사

정인(鄭寅)을 예조좌랑으로, 유색(柳穡)을 배천군수로, 민우경(閔宇慶)을 사헌부감찰로, 이승(李昇)을 **진위현령**으로, 이정신(李廷紳)을 음죽현감(陰竹縣監)으로, 이양(李壤)을 웅천현감(熊川縣監)으로, 차은로(車殷輅)를 벽단첨사(碧團僉使)로 삼았다.

『선조실록』 권215 40년 8월 1일 신유

박홍로(朴弘老)를 동지경연으로, 박승종(朴承宗)을 우부빈객으로, 정기룡(鄭起龍)을 도총부 부총관으로, 한백겸(韓百謙)을 음관(蔭官)이다. 서리(胥吏)를 잘 다스리기로 이름이 났다. 호조참의로, 이순경(李順慶)을 성균관사성으로, 민덕남(閔德男)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정호관(丁好寬)을 성균관사예로 일본을 왕래한 공로에 보답한 것이다. 최기남(崔起南)을 병조정랑으로, 강침(姜愼)을 장례원판결사로, 홍명원(洪命元)을 예조정랑으로, 소광진(蘇光震)을 예조정랑으로, 이구경(李龜慶)을 도총부경력으로, 김내를 **진위현령**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김내는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梯男)의 아들이다. 관직에 나간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갑자기 5품의 품계에 올랐고, 지금 또 인사조치로 경기지방의 고을에 교체되어 임명되었다. 어느 직책을 막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감히 논박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 관직이 사친(私親)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경계한 말이다

13. 『광해군 일기』

『광해군일기』 권22 1년 11월 25일 임인

영의정 이덕형이 그의 처부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 이산해(李山海)의 장례에 참여하는 일로 예산에 갔다가 이날 조정으로 돌아와 인사한 뒤 이 아뢰미 있었다. 아뢰기를 “신이 정세가 절박하여 멀리 떠날 것을 아뢰고 휴가를 청원하였는데, 성상의 은혜로 후하게 허락을 해주셨으며, 또 추위를 막는 물품까지 내려주셨으므로,

신은 매우 황송하고 감격스러워 이틀 길을 하루 만에 달려 갔다가 하루를 지내고 즉시 돌아왔습니다. 지나던 **평택**·직산·아산·신창·예산 등의 길에서 주민들이 길을 막으며 호소하였는데, 흉년에 굶주리는 민망하고 절박한 상황은 경기의 고을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 고을의 경우는 급재(給災)¹⁾·급진(給陳)²⁾ 해 주었지만 그곳에는 지난 해에 거둬들인 세금에 의거 거두게 하였고, 경기 고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부역을 감해 주었는데 그곳에는 쌀을 거두는 일과 일체의 잡역이 몰려들었으니, 주민들이 원통하다고 부르짖는 것은 진실로 그럴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각 고을에 조금 남아있는 곡식마저도 경기 고을을 구제하는 밑거리로 삼으려고 하니, 내년 봄에 이르러 그곳의 주민들이 굶주린다고 호소하며 먹여주기를 바란다면 또 앞으로 어느 곳의 곡식을 옮겨다 구제하겠습니까. 그곳의 곡식을 빼앗아다 이곳에 주는 것은 치우친 처사인 듯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당초 하삼도를 총괄하여 논의하면서 경기와 연결한 지역의 흉년이 심하게 든 것을 헤아리지 못해 이와 같이 마련하게 된 것이었으니, 지금 고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신이 직접 들판이 황폐해진 상황을 보았고, 또 백성들이 호소하는 글을 접수했는데 모두들 '궁궐이 이미 완성되었는데도 은가(銀價)로 포를 거둔다. 포는 억지로라도 내놓을 수 있지만, 쌀로 환산하는 데 이르러서는 운반하여 바치는 즈음에 할당한 숫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민간의 곡식이 금과 같은 시기에 강제로 쌀을 거두니, 참으로 큰 염려이다.' 하였다. (줄임) 임금이 답하기를 "경이 추위를 무릅쓰고 탈없이 빨리 다녀 왔으니, 참으로 매우 위로가 된다. 지난날의 조그마한 하사품에 대하여 어찌 그리도 사례를 하는가. 아뢴 내용을 살펴 보고서 가없고 측은함을 견딜 수 없었다. 경들이 해당 관서에 분부하여 좋은 쪽으로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라." 하고, 인해서 승정원에 전교하여 해당 관서로 하여금 빨리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 (줄임)

『광해군일기』 권23 1년 12월 16일 계해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청도 초면 각 고을의 흉년이 든 상황은 간혹 경기보다 심한데, 당초에 그곳의 상태가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른 줄을 모르고서 담당 부서가 세공(稅貢)을 마련할 적에 하삼도라 하여 똑같이 마련하였으며, 진출하는 일에 이르러서도 역시 일찍이 민간에 자못 시름하고 탄식함이 있는 줄 알지 못했으니, 미안한 듯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은 이미 마련되었으므로 지금 소급하여 고치기는 어렵겠고, 면포를 거두는 것은 해조에서 또한 쌀로 환산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금년의

1) 급재: 재난을 입은 토지로 인정해주는 것. 조세 등이 면제된다.

2) 급진: 목은 토지로 인정해주는 것. 조세가 면제된다.

목화 역시 영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는 것은 진흙하지 않고서 도리어 쌀과 면포를 징수한다면 저 곤궁한 백성들이 조정을 어찌하다고 여기겠습니까. 본도에서 흉년이 더욱 심한 **평택**·직산·아산·온양·신창·예산·당진·면천·연기 등 고을의 공물 내에 각 관청에 관계되지 않는 공물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참작하여 덜어주게 하여, 조정이 진흙을 내리는 뜻을 보여줌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광해군일기』 권38 3년 2월 9일 기묘

충청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회인(懷仁)과 **평택** 두 현을 다시 설치하였는데, 백성의 소원을 따른 것이다.

『광해군일기』 권49 4년 1월 10일 을사

이조가 충홍감사(忠洪監司) 박이서(朴彝敘)의 장계에 대해 심의하여 아뢰기를 “임천군수(林川郡守) 홍사효(洪思敷)는 간략하고 올곧아 백성들이 편안히 여기고 아전들이 두려워서 치적이 한 도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충주목사 이호의(李好義)는 부지런히 공무를 수행하였고, 은진현감(恩津縣監) 정효성(鄭孝成)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아전을 단속하여 모두 법제를 따르게 했습니다. **평택현감** 조수륜(趙守倫)은 인자하게 백성을 어루만지고, 면천군수(沔川郡守) 김응성(金應成)은 관청을 집안처럼 다스려 분위기가 일신되어 여러 고을에 으뜸이었으며, 서산군수 유민(柳旻)은 염초를 많이 굶고 군량을 넉넉히 준비했으니 마땅히 포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이 전에 관계되니, 상께서 재량하여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홍사효·이호의에게는 각기 옷감 한 벌을 하사하고, 정효성·조수륜·김응성·유민은 모두 승진시켜 임용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아, 한나라가 끝나도록 모범적인 관리로 일컬어진 자는 공수(龔遂)와 황패(黃覇) 등 몇 명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지역을 맡은 자로 치적이 있다고 성대히 일컫는 자가 고을마다 거의 이와 같으니, 말세에 이르러 어찌면 이렇게도 한결같이 공수와 황패와 같은 사람이 많단 말인가. 사사로움을 따라 공을 해치는 폐단과 아름다운 이름을 흠치고 은혜를 사는 습성이 이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으니, 아! 한탄스럽다.

『광해군일기』 권49 4년 1월 28일 계해

이호신(李好信)을 우승지로, 조정립(趙正立)을 용감히 물러나 나오지 않자 선비의 여론이 고상하게 여겼다 집의로, 신경락(申景洛)·한찬남(韓纘男)을 장령으로, 유헌(柳活)을 지평으로, 남탁(南卓)을 직강으로 스승의 직임을 이런 사람이 한단 말인가.

남탁은 선대 조정 때 장죄(贓罪)를 지은 대관이다. 조광벽(趙光璧)을 진위현령으로 삼았다.

『광해군일기』 권52 4년 4월 1일 을축

이덕수가 진술하기를 “저의 장인 조수륜이 평택현감으로 있을 적에 서울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저에게 물어왔으므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주워모았는데 경중을 모르고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단지 대북·소북이란 이야기만 있었는데, 대북이 기용한 사람을 소북이 번번이 공박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조참판 송순(宋諄)이 기용한 정립(鄭昱)이 대간이 되자 곧 공박했던 것과 같은 유입입니다.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도 모르고 망령되어 서찰에다 그런 내용을 전하였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줄임)

『광해군일기』 권75 6년 2월 13일 을미

사간원이 또 아뢰기를 “박정기(朴廷琦)에 대한 포상을 개정하고, 포도 대장과 형조 당상을 모두 징계하소서. 진위현령 황치중(黃致中)은 사람됨이 범람하여 관직에 있으면서 신중하지 못하니, 파직하소서.” 하였다. 답하기를 “박정기는 이미 상세히 살펴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였으니, 우선 기다리도록 하라. 포도 대장과 형조 당상에 대한 일은 천천히 결정하겠다. 황치중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 권130 10년 7월 2일 무자

오시에 왕이 선정전에 나아가 검찰사 심돈(沈惇)을 인견하였다. 우부승지 정규(鄭逵), 가주서 정양필(鄭良弼), 기사관 안응로(安應魯)가 입시하였다. (줄임) 왕이 이르기를 “강화도를 유사시의 피난처로 삼고자 하여 이미 요량해두었는데 강화도 외에 피난처로서 합당한 곳이 어디인가?” 하였다. 심돈이 아뢰기를 “강화도는 땅이 넓고 수륙으로 길이 통하였고 종사(宗社) 판적(版籍)과 예악 문물도 갖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청 수영이 지세가 가장 좋고, 호남은 부안이 강화와 맥로가 서로 통하여 있으니 또한 예비할 만한 곳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강화도는 수륙로 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 강화도로부터 수영(水營)으로 가려면 어느 길을 경유하는가?” 하였다. 심돈이 아뢰기를 “강화도로 가는 육로 길은 양천(陽川)에서 출발하여 통진(通津)을 거쳐 갑곶(甲串)에 이르며, 배를 타면 한강을 따라 김포·양천·통진을 지나서 연미정(燕尾亭)에 이릅니다. 강화도에서 호서로 향하는 육로 길은 진위·수원·평택·덕산(德山)을 경유하여 수영에 이르며, 뱃길로는 안흥량(安興梁)

을 지나서 면천에 이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강화도는 이미 헤아려 처리하였고 강화도로부터 바다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심돈이 아뢰기를 “일이 만약 이같은 데 이르면 항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사의 어려움과 위태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줄임)

『광해군일기』 권162 13년 2월 7일 기묘

호조가 아뢰기를 “작년 가을에 경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경신년(1620년, 광해군 12)의 전세와 삼수량(三手糧)의 추가 징수분을 올해 안으로 정하여 상납하라고 여러 차례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의 수령들이 태만한 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까지도 다 바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주·음죽·이천·양성·용인·진위·적성·김포·통진·교동·포천·영평 등 열두 고을은 전세와 삼수량의 추가 징수분을 전혀 바치지 않았는데, 본도의 감사도 살피지 않고 있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와 여주 등 고을의 수령을 모두 되도록 중하게 징계하고, 이달 안으로 본도의 도사가 엄하게 독촉하여 상납하게 하되 기한 내에 다 바치지 못하면 감사와 도사는 녹봉을 감액하고 수령은 파직한다는 것을 다시 타일러 하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광해군일기』 권177 14년 5월 9일 갑진

수운판관(水運判官) 이정홍(李廷弘)은 충주에서, 교검(校檢) 이정명(李廷明)과 그의 아우 이정식(李廷植)은 진위에서 체포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그의 형인 이정신(李廷臣)의 이름이 관서(關西)의 변란사건 신고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광해군일기』 권178 14년 6월 15일 기묘

양사가 함께하였다. “요즈음 수령들은 거의 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로서 최잔한 고을에서 좋은 자리로 옮기려는 자가 비일비재한데, 그 중 첫 번째는 평택현감 신용휴(申用休)입니다. 평택읍은 땅이 두(斗)처럼 작고 백성도 적은데, 그나마 지금은 거의 다 유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용휴의 노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찌 조그마한 한 고을에 30여 명이나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본도의 감사에게 신용휴의 노비가 얼마나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도록 하여 만일 사실이 아니면 임금을 속인 죄로 다스리소서.”

14. 『인조실록』

『인조실록』 권2 1년 6월 26일 을유

경기관찰사 심열(沈悅)이 급히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지세가 험하여 수레를 이용하기 어려우나 평탄한 도로에서는 그런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충청·전라의 군사들이 진위의 도로에 나아왔으니 진위로부터 한강까지는 막힌 도로가 없어 수레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도감에 분양된 소를 한 달 기한으로 빌려주도록 허락하여 수레를 끄는 용도로 삼으면 수송하는 데 조금은 백성의 힘을 늦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그 의논은 시행되지 않았다.

『인조실록』 권4 2년 1월 17일 임신

전 교수 문회(文晦), 허통(許通) 이우(李佑), 전 참봉 정방열(鄭邦說), 충의위(忠義衛) 윤안형(尹安亨) 허통 한흔(韓訥) 등이 대궐에 나아가 변란을 아뢰니 곧 궐내에서 조사하였다. 정방열이 진술하기를 “평소 이우와 서로 친했는데, 이우는 신에게 잇달아 우환이 있어 가사가 탕진한 것을 보고 매우 후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신과 함께 선친의 묘소 아래에서 같이 잘 때에 이우가 말하기를 ‘요즈음 들으니 영남·호서에 큰 변이 있을 것이라 하는데, 청주 사람 박동명(朴東明)·유대명(柳大鳴)과 진위의 무인 김제정(金濟鼎) 등이 고을 군사로 남쪽 군사를 응원하려 하니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도 서울과 백운산(白雲山)의 중 수백 인을 불러 모아 서로 응원하겠으나 외롭고 약한 것이 한탄스럽다. 정찬 형제는 한명련과 혼인한 집안이고 또 이전과 서로 친하니 만약 정씨 두 사람으로 하여금 동지를 불러 모으게 하면 일이 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하였으나, 신이 허락하지 않고 이어 반역을 따라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타일렀습니다. 신이 정찬을 만나 이우의 반역을 꾀하는 정상을 말하였더니, 정찬이 말하기를 ‘오합지중은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다른 한 곳에서 하는 일은, 철기(鐵騎) 10만이라도 못 당할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그들과 합세해야 큰 일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우의 말을 이미 김자점(金自點)에게 고하였습니다.” 하였다.

『인조실록』 권4 2년 2월 10일 갑오

진위현에 당도하여 현령 김준(金俊)을 곤장으로 다스렸다. 김준은 갑작스런 사이에 조치를 제대로 못하여 맞이하지 못하였으므로 군문(軍門)이 곤장 치기를 아뢰어 칭한 것이다.

『인조실록』 권4 2년 2월 11일 을미

해뜰 무렵에 임금의 행차가 갈원(葛院)에 이르니 장수현감(長水縣監) 장우한(張遇漢)이 군사 수백을 거느리고 길가에서 맞이하여 뵈었다. 상이 말을 멈추어 위로하고 한남도원수(漢南都元帥)에게 예속시키라고 명하였다.

『인조실록』 권16 5년 7월 14일 무인

경기의 인천·부평·안산·광주·파주·여주·양근·가평·삭녕·고양·영평·진위·마천·연천·교하·과천 등지에 사나운 바람과 심한 비가 밤낮으로 번갈아 일어나서 곡식이 모두 쓰러졌다. 인천·부평·안산 등 세 고을에는 해일의 변까지 겹쳤다.

『인조실록』 권18 6년 2월 13일 을사

비국이 아뢰기를 “진위현에서 첩보하여온 것을 보건대 진도에 귀양가 있던 오랑캐 6명이 도망하여 나온 것을 본현 사람이 체포하였는데 이들은 병인년에 오랑캐 땅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당초에 조처하기가 곤란하여 이곳에다 귀양보냈던 것인데 바다를 건너 도망하여 나오기까지 하였으니, 그들의 심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귀양지로 되돌려 보내더라도 이들이 북쪽으로 오랑캐에게 도주하거나 서쪽으로 모문룡(毛文龍)의 진영에 들어간다면 필시 뜻밖의 환란을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도망쳤던 자들이니 법으로 따지면 사형에 해당되는데, 선전관을 보내어 모두 처형하게 하소서. 그리고 귀양간 사람을 잘 간수하지 못하여 도주하게 한 것이야말로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진도군수는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진위현령과 체포한 사람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논상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실록』 권21 7년 7월 18일 신축

경기 지역의 수원·남양·교동 등지에 해일이 일어나고, 인천·진위·이천 등지에는 풍재(風災)가 발생해 곡식이 피해를 입었으며, 광주(廣州)에는 메뚜기가 온 들판을 덮었다.

『인조실록』 권25 9년 10월 11일 신해

남양과 진위 두 고을에 우박이 크게 내렸다.

『인조실록』 권28 11년 11월 3일 신묘

호조가 아뢰기를 “**평택** 등 10개 고을에 완전히 재해를 입은 곳이 무려 1천 5백여 결에 이르고 부분적으로 재해를 입은 곳이 4백여 결이나 되어 금년 세입의 수량 감축이 이렇게까지 심합니다. 1개 도만 하여도 이와 같고 보면 다른 도도 예상할 수 있으니, 앞으로 써야 할 경비를 생각할 때 몹시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조정에서 만일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서 면세해 주라는 조치를 내리면 수량이 전혀 착실하게 조사하지 않아서 허와 실이 분명치 않은 걱정을 끼쳐 몹시 가증스러웠는데, 관찰사가 이미 감면해 줄 것을 아뢰어 청하였으니 호조로서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재해를 입은 고을은 세미(稅米)·수미(收米)와 서량(西糧) 분의 5결포(結布)를 전액 모두 감면해 주고 부분적으로 입은 재해에 대해 감면할 경우에는 마땅히 경중을 구분하고 계산하여 감면해 주되, 각 관아의 공물(貢物)에 있어서는 이미 공안(貢案)에 원래 정한 수량이 있으니 비록 흉년을 당하였더라도 임시로 감면해 주는 규례는 무시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인조실록』 권31 13년 2월 27일 무신

헌부가 직강 정두경(鄭斗卿)을 파직시키자고 논하였다. 정두경은 문장에는 능하지만 사정에 어둡고 성격이 또 오활하고 영성하였다. **진위**의 유생들이 그 고을의 향교가 지은 지 오래되어 재목이 썩어서 장차 쓰러질 지경이라며 조정에 청하여 다시 짓고자 하므로 정두경이 당시 경기도사로서 심사를 나갔는데, 술이 하도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말이 너무 조리가 없었다. 유생들이 모두 “도사가 성인을 능멸하여 심지어는 ‘집이 무너지면 산 사람도 압사를 면키 어려운데, 위판(位版)이야 깔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탄핵을 받은 것이다.

『인조실록』 권35 15년 6월 12일 기유

공청도(公淸道) 한산(韓山)에 큰비가 내려 산이 무너져서 산 밑에 사는 사람 중에 깔려 죽은 자가 있었다. 임천·공주·홍주·**평택**·회인·석성·덕산·대흥·은진·홍산·직산·당진·이산 등 여러 고을에도 큰물이 졌다.

『인조실록』 권39 17년 8월 2일 정해

충청도 평택 등 25개 고을에 큰물이 저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다.

『인조실록』 권40 18년 6월 12일 임술

경상도 다대포(多大浦)에 크게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어 전선이 부수어졌다. 경기 안성·진위 등에 우박이 내렸다.

『인조실록』 권41 18년 9월 16일 갑오

호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윤집 등의 죽음을 특별히 살피시어 은혜가 그들의 가족에게 미치니, 그 말을 들은 자가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윤집·오달제·정뇌경(鄭雷卿) 등의 어머니와 아내에게는 각각 쌀 12두, 콩 2두씩 주는 것을 일정한 규식으로 삼았습니다. 홍익한에게는 처음부터 주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 듣건대, 그의 늙은 어머니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손녀를 데리고 현재 평택에 있다고 하니, 그에게도 윤집 등의 관례에 따라 똑같이 급료를 지급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따랐다.

『인조실록』 권47 24년 4월 1일 정축

김자점(金自點)과 구인후(具仁垆)가 뵈기를 청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경상감사를 문경으로 와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장수를 임명하여 가서 진압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전라 병사를 서울과 가까운 지방으로 조금 나오게 하고, 외방의 어영군도 모두 서울로 집결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총융사를 호남과 가까운 경기 고을로 나가 주둔하게 하여 위아래에서 맞이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하자, 두 사람이 모두 옳다고 대답하였다. 즉시 총융사 이시백을 불러들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신의 아병(牙兵)이 5백여 인이고 또 군영의 포수를 불러 모으면 1천여 인은 될 것인데, 얼마나 거느리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군대를 출동시키게 되었는데, 군량 조달이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뺏길로 운송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신이 먼저 단기(單騎)로 달려 가고 군졸들은 약속 날짜에 진위로 모이게 하며, 편의대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줄임)

『인조실록』 권47 24년 4월 1일 정축

총융사 이시백이 군사 5백 인을 거느리고 경기 진위현에 출진하자, 내구마 1필을 하사하고 보냈다.

『인조실록』 권47 24년 5월 3일 무신

(줄임) 임금이 낮빛이 안정된 다음에 이르기를 “이시백은 참으로 군신의 의리를 아는 사람이다. 지난번 변란이 발발하였을 때 충용사로서 **진위**로 나가 진영을 차렸는데, 적병이 만일 짓쳐 들어왔다면 그 곳은 꼭 죽을 자리였다. 그런데도 이시백은 마치 즐거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으니 참으로 충신이다. 지난번 심기원(沈器遠)의 변란에 비록 운운하는 얘기들이 있었으나, 내 생각에 이귀(李貴)의 아들은 반드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 따지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당시에 혹 의심을 하였더라면 나의 충신을 잘못 해칠 뻔하였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당시에 혹시라도 의심을 해서 죄를 내렸더라면 전하께서 오늘 누우쳐도 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줄임)

『인조실록』 권48 25년 7월 13일 임자

홍청도에 큰물이 저 금강이 크게 넘쳐 집 수십여 채가 침수되었다. 임천·충원·청풍·단양·영춘 등 고을에서는 침수된 민가가 1백 40여 채였고, 진천현에서는 물에 빠져 죽은 자가 4인이었으며, **평택현**에서는 들판의 여염집이 거의 다 침수되었다. 강원도 또한 큰물이 졌다. 두 도의 감사가 아뢰었다. 이 해에 경기의 수재가 팔도에서 가장 심하여 강화도와 남한산성의 쌀을 내어 진휼토록 명하였다.

『인조실록』 권48 25년 9월 11일 무신

충청도 서천·**평택**·아산·신창·직산 등 고을에 큰물이 지고 해일이 일어났다.

『인조실록』 권49 26년 8월 4일 병신

홍청도 아산·신창·덕산·천안·**평택** 등의 고을에 해일이 있어 바닷가의 제언이 무너져 모두 침몰되었다. 임천·한산·청주·보은·옥천 등의 고을에는 태풍과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갔다. 영호남의 풍재와 같은 날의 일이다. 옥천의 화인진(化仁津)에는 나무의 물이 크게 불어나서 과거에 응시하러 가던 유생 박희태(朴希泰) 등 같은 배에 타고 있던 12인이 모두 익사했다. 감사가 아뢰니 임금이 본도로 하여금 구휼하는 은전을 거행하게 하였다.

15. 『효종실록』

『효종실록』 권4 원년 6월 초하루 계미

(줄임) 승지 이일상(李一相)이 나아가 아뢰기를 “고 장령 홍익한(洪翼漢)의 노모가

평택에서 병사했다 하는데, 진흙하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넉넉히 주도록 하라.” 하였다.

『효종실록』 권21 10년 3월 초하루 신유

충흥도(忠興道) 면천(沔川)·평택 등 고을에 지진이 일어났다.

16. 『현종개수실록』

『현종개수실록』 권5 2년 6월 5일 임오

(줄임) 평택현감 심익선(沈益善), 이산현감(尼山縣監) 이관하(李觀夏), 흥덕현감(興德縣監) 오정언(吳挺彦), 무장현감(茂長縣監) 정시대(鄭始大), 만경현령(萬頃縣令) 도거원(都舉元), 경산현감(慶山縣監) 이희년(李喜年)에게는 모두 포상을 베풀었는데, 3도 암행어사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현종실록』 권4 2년 6월 6일 계미

어사 이민적(李敏迪)의 보고에 따라 서산군수 윤격(尹檄), 당진현감 윤세교(尹世喬), 태안군수 민진량(閔晋亮), 아산현감 이정악(李挺岳), 평택현감 심익선, 이산현감 이관하(李觀夏) 등을 모두 포상하고, 신창현감(新昌縣監) 박용부(朴隆阜), 덕산현감(德山縣監) 황봉조(黃奉祖) 등을 의금부로 보냈다.

『현종실록』 권6 4년 2월 22일 신유

경기좌도균전사(京畿左道均田使) 민정중(閔鼎重)이 매우 심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수령으로 금천현감(衿川縣監) 유익삼(柳益三)·광주부윤(廣州府尹) 김수흥(金壽興)·용인현령 유탁연(柳卓然)·진위현령 송단(宋搏) 및 양근(楊根) 겸임 지평현감(砥平縣監) 이인석(李仁碩) 등 6읍의 수령을 가려 뽑고, 우도 균전사 김시진(金始振)은 양주목사(楊州牧使) 정박(鄭樸)·장단부사(長湍府使) 이시정(李時挺) 및 부평과 통진의 수령을 가려 뽑았는데, 임금이 일렀다. “양근·과천·양주 3읍의 수령을 잡아들여 죄상을 신문하라. 금천·광주·용인·장단 등 4읍의 수령은 본청에 잡아들여 경중에 따라 결장(決杖)한 뒤 정직하게 조사 업무를 행하게 하라. 수원·진위의 수령은 우선 추고하라.” <사신은 논한다. 토지를 측량하는 목적은 백성의 부역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지금 원두표(元斗杓)가 등수를 너무 느슨하게 매겨 결부(結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달하여 등수의 다과에 따라 수령의 수행 능력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였다. 이에 수령된 자들이 명령대로 수행하여 죄벌을 면해

보려는 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토지의 품질이 어떠한지는 묻지도 않고 오로지 등수를 올려 결부를 많이 늘리는 것만 일삼고 있으니,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과 비슷하게 되지 않겠는가. 원두표는 입만 열면 백성에게 재앙을 끼치는 일만 골라서 말하는데, 사람이 어찌면 이토록 한결같이 모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경기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며 말하기를 “이 정승이 언제나 망하려내고. 이 정승이 망해야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고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12 5년 11월 28일 을묘

수원부사 이정기(李廷夔), 이천부사 이휘조(李徽祚), 양성현감 윤진(尹搏), 죽산부사 김익후(金益厚), 안산현감 최효건(崔孝鶯), 양지현감(陽智縣監) 이지원(李志遠), **진위현령** 성희주(成熙胄)는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중에 따라 죄를 받았으며, 안성군수 이명담(李命聃), 남양부사 정석(鄭哲)은 옷 안감과 걸감을 하사받았는데, 경기좌도어사 신후재(申厚載)의 보고 때문이었다.

『현종개수실록』 권13 6년 4월 15일 신미

임금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 보았다. (줄임) 유혁연이 아뢰기를 “정리사 김좌명이 신에게 통보하기를 ‘충청도 군병은 접경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소사(素沙)**의 앞 들이 모두 백성들의 밭이어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경기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물러서 진을 쳐야 할 듯하다.’ 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몇 리를 물리더라도 반드시 밭이 없는 넓은 곳을 택하여 진을 치라는 뜻으로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줄임)

『현종실록』 권10 6년 4월 18일 갑술

임금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들고 땀을 뺐다. 약방이 임금의 행차를 머물러 병세를 보아가며 떠나기를 여러번 청하였으나 임금이 폐를 끼친다고 듣지 않았다. 약방이 또 군령(軍令) 시각을 조금 늦추어 **진위**에서 묵다가 느즈막하게 출발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현종개수실록』 권13 6년 4월 18일 갑술

임금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들고 땀을 뺐다. 약방이, 행차를 머물러 병세를 보아가며 떠나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임금이 폐를 끼친다고 듣지 않자, 약방이 또 군령 시각을 조금 늦추어 **진위**에서 묵다가 느즈막하게 출발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현종실록』 권10 6년 4월 20일 병자

임금이 묘시에 진위를 떠나 진시 말에 소사의 주정소에 머물렀다.

『현종실록』 권10 6년 4월 20일 병자

임금이 막사를 떠나 소사 다리 근처에 이르러서, 금군·선전관 3인으로 하여금 다리 위에서 말을 타고 달려 보게 하고는 행차를 멈추고 구경하였다.

『현종실록』 권10 6년 4월 20일 병자

(줄임) 대사간 이경억(李慶億)이 아뢰기를 “오늘 소사 다리 위에서 금군에게 말을 달려보라고까지 하셨는데 이 일은 비록 사소한 것이나, 경기·충청 양도의 백성들이 보는 사이에 반드시 구경하려고 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성상의 덕에 적지 않게 흠이 될 것이니 환궁하실 때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줄임)

『현종개수실록』 권13 6년 4월 20일 병자

묘시에 진위를 떠나 진시에 소사의 주정소에 머물렀다. 어영 대장 유혁연을 불러 묻기를 “충청도 군사는 어디에 진을 쳤느냐?” 하였다. 유혁연이 아뢰기를 “들 한가운데다 진을 쳤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였다. 유혁연이 아뢰기를 “보병 4천여 인과 마병 4백여 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영군이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니 충청도 군사로 하여금 어영군과 앞에서 인도하는 의장대를 내보낸 후에 다시 진문을 닫고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13 6년 4월 20일 병자

임금이 막사를 떠나 소사 다리 근처에 이르러서, 금군·선전관 등으로 하여금 다리 위에서 말을 타고 달려 보게 하고는 행차를 멈추고 지켜보았다. 충청병사 민진익(閔震益)과 영장 이간(李杆)이 마병과 보병 5천을 이끌고 충청도 접경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임금이 진문에 이르자 민진익이 대장기를 세우고 군악을 울리며 마중 나왔다. 임금이 행차를 세우고 군대의 모습을 사열하다가 병조판서 홍중보에게 이르기를 “이 군대는 수원의 군대보다 나은 듯하다.” 하였다. 이어 민진익과 이간 등을 앞으로 불러 이르기를 “이 군대는 대열이 꽤 정연하고 깃발들이 활기에 차 있는데, 그대들이 맡은 일에 착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이어 말을 하사하라고 명하고 그 군사들을 이끌고 뒷 대열에 서도록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13 6년 4월 20일 병자

대사간 이경억과 정언 이규령이 뱃기를 청하니 행궁에서 불러 보았다. (죽임) 이경억이 아뢰기를 “소사 다리 위에서 금군에게 말을 달려보라고까지 하셨는데 이 일은 비록 사소한 것이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반드시 구경거리에서 나온 것으로 여길 터이니 어찌 성상의 덕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현종실록』 권10 6년 4월 23일 기묘

용안(龍安)의 13세 여자아이와 평택현의 한 여인이 모두 벼락을 맞아 죽었다.

『현종개수실록』 권13 6년 4월 23일 기묘

용안에 사는 13세 난 여자아이와 평택현에 사는 여인이 모두 벼락을 맞아 죽었다.

『현종실록』 권10 6년 5월 10일 을미

승정원에 분부하였다. “행차가 돌아갈 때 음식물 등을 숙소에만 올리도록 하고 주정소(晝停所)에서는 진위에서 말고는 모두 올리지 말도록 하라.”

『현종개수실록』 권13 6년 5월 10일 을미

승정원에 분부하였다. “행차가 돌아갈 때 음식물 등을 숙소에만 올리도록 하고 주정소에서는 진위에서 말고는 모두 올리지 말도록 하라.”

『현종개수실록』 권15 7년 3월 28일 무신

오시에 임금의 행차가 진위의 숙소에 머물렀는데, 대비의 수레가 뒤따라 도착하였다.

『현종실록』 권12 7년 3월 28일 무신

임금이 청호(靑湖) 앞의 들녘에 도착하니 수원의 군병이 결진(結陣)하고서 대기하였다. 임금이 군중에 들어가 구인기에게 이르기를 “이 기치로 호령해서 방진(方陣)으로 바꾸어 보라.” 하니, 구인기가 분부대로 하였고, 임금이 또 원진(圓陣)으로 만들라고 명하니 다시 분부대로 하였다. 임금이 또 육화진(六花陣)을 만들라고 명하니 구인기가 아뢰기를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보군(步軍)은 좌·우로 빼내 양방진(兩方陣)을 만들고 마병(馬兵)은 별도로 하나의 진을 만들라.” 하니, 구인기가 분부를 받들어 대열을 헤쳐 진을 만들어 냈다. 임금이 기치를 물러

나게 하고서 자세히 살펴본 뒤 이르기를 “이 군대는 진법이 생소하지가 않으니 근래에 제법 조련을 쌓은 모양이구나.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말하고는, 구인기와 중군(中軍) 이중신(李重信)에게 사복마(司僕馬) 각 1필씩을 내려주도록 명하고 그대로 후대(後隊)가 되도록 명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15 7년 3월 28일 무신

진시에 임금이 행차가 수원을 떠나 청호의 앞 들에 도착하였는데 수원의 군대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임금이 군중에 들어가 구인기에게 명하여 다시 방진과 원진을 치게 한 다음, 임금이 기치를 치우게 하고는 보면서 이르기를 “이 군대의 진법은 그리 생소하지 않아 지난해보다 상당히 낫다.” 하고, 구인기와 중군 이중신에게 사복의 말 한 필씩을 주라고 명하였다.

『현종실록』 권12 7년 3월 29일 기유

묘시에 임금이 진위를 출발하여 소사에서 잠시 휴식하면서 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에게 앞들판이 넓으냐고 묻자 “이 들판은 비록 넓기는 해도 왼쪽과 오른쪽 모두가 백성들의 토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마병 및 금군(禁軍)을 관병(觀兵)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진을 펼칠 데가 없구나. 건너편 길 왼쪽은 모두가 농사짓지 아니한 농토이고 들판도 널찍하니 관병할 만하다.” 하고는, 마병은 남아서 대기하라고 명했다. 홍중보가 아뢰기를 “군사들로 하여금 점심을 먹도록 하고 말도 여물을 먹인 다음에 저곳에 가서 진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러라고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15 7년 3월 29일 기유

묘시에 임금이 진위를 출발하여 사시에 소사의 주정소에 머물렀다. 임금이 막차에 나아가 병조판서 홍중보를 불러 앞 들판이 넓으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이 들판은 비록 넓기는 하나 왼쪽과 오른쪽 모두가 백성들의 토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도감의 마병 및 금군(禁軍)의 위용을 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진을 칠 데가 없구나. 건너편 길 왼쪽은 모두 농사짓지 않는 농토이고 들판도 널찍하니 군사를 사열할 만하다.” 하고는 마병은 남아서 대기하라고 명했다. 홍중보가 아뢰기를 “군사들이 점심을 먹고 말에 여물을 먹인 다음에 저 곳에 가서 진을 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러라고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15 7년 3월 29일 기유

사헌부와 사간원이 빚기를 청하니 임금의 막차에서 인견하였다. 대사헌 조복양(趙復陽)과 대사간 정만화(鄭萬和) 등이 아뢰기를 “이번에 대비를 모시고서 거동을 하시니, 작년의 거동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제 청호(靑湖)의 노상에서 임금의 행차를 멈추고 군사를 사열하시는 바람에 대비의 수레가 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 어찌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충청도 군병을 앞 들판에서 교체해야 되는데 혹시 어제 같은 일이 다시 있게 될까 염려되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니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줄임)

『현종실록』 권12 7년 4월 28일 무인

소사에 머물렀다. 송준길이 천안에 도착하여 뒤쳐졌다.

『현종실록』 권13 8년 4월 13일 정사

임금이 진위에 머물렀다.

『현종개수실록』 권17 8년 4월 28일 임인

행지중추 허적이 진위에 이르러 상소를 올려 면직을 청하니, 임금이 사관을 보내어 타일렀다. “지금 이 상소를 보고 마음을 아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더욱 탄식한다. 이제 막 의정에 임명했으니 굳이 사직하지 말고 즉시 올라와서 시대의 어려움을 구제해야 한다.”

『현종실록』 권13 8년 4월 29일 계묘

관중추부사 허적이 소사로부터 진위에 이르러 뒤에 남아 상소를 올리고 면직을 청했는데, 임금이 사관을 보내어 타일렀다. “지금 이 상소를 보고, 마음을 아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더욱 탄식한다. 이제 막 의정에 임명했으니 굳이 사직하지 말고 즉시 올라와서 시대의 어려움을 구제해야 한다.”

『현종실록』 권15 9년 8월 18일 갑신

사시에 수원을 출발하여 오시에 진위 행궁에 머물렀다.

『현종개수실록』 권19 9년 8월 18일 갑신.

사시에 수원을 출발하여 진위현에 머물렀다.

『현종실록』 권15 9년 8월 19일 을유

임금이 진위를 출발하여 소사에서 낮수라를 들고 미시에 직산 행궁에 머물렀다.

『현종실록』 권15 9년 9월 3일 기해

이조판서 송준길(宋浚吉)과 진선(進善) 이상(李翔)이 부름을 받고 오니 임금이 만나보았다. (줄임) 송준길이 아뢰기를 “들으니 내일 출발하여 수원에서 묵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원까지의 거리는 5참(站)입니다. 임금의 행차는 빠르게 진행해서는 안 되며, 또 목욕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먼 길을 가게 되면 병을 삼가는 도리에 해로움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요즈음 세자의 병으로 대비께서 밤낮으로 깊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속히 돌아가서 대비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이것은 대비의 걱정을 위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세자의 병을 염려하시어 속히 돌아가려 하시나, 어찌 대비께서 전하를 염려하시는 것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꼭 수원을 묵어갈 참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진위에 도착하여 형세를 보아가며 할 것이다.” 하였다. (줄임)

『현종개수실록』 권19 9년 9월 3일 기해

이조판서 송준길이 또 상소하여 해직을 빈 후에 산관(散官)으로 들어와 사례하고 물러갔다. (줄임) 송준길이 아뢰기를 “들으니, 내일 출발하여 수원에서 묵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원까지의 거리는 5참입니다. 임금의 행차는 빠르게 진행해서는 안되며, 또 목욕을 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먼 길을 가게 되면 병을 삼가는 도리에 해로움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요즈음 세자의 병으로 대비께서 밤낮으로 깊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속히 돌아가서 대비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이것은 대비의 걱정을 위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세자의 병을 염려하여 속히 돌아가려 하시나, 어찌 대비께서 전하를 염려하시는 것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꼭 수원을 묵어갈 참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진위에 도착하여 형세를 보아가며 할 것이다.” 하였다. (줄임)

『현종실록』 권15 9년 9월 4일 경자

진시에 임금이 행궁에서 출발하여, 모토(茅土)에서 낮수라를 들고 또 소사에서 낮수라를 들고, 저녁에 진위현에 머물렀다.

『현종개수실록』 권19 9년 9월 4일 경자

진시에 임금이 행궁에서 나와 출발하여 요로원(要路院) 지름길을 경유하여 모산(茅山)에서 낮수라를 들었다. 또 소사에서 낮수라를 들었으며 저녁에 진위현에서 머물렀다.

『현종개수실록』 권19 9년 9월 4일 경자

임금이 모산에 도착해서 송시열과 송준길 등이 말을 달려 행차를 쫓아오기 어려울까 염려해서 사관을 보내어 조금 뒤쳐져서 따라오라고 일렀다. 송시열은 그대로 임금의 행차를 따라왔으며 송준길은 조금 뒤쳐져서 따라왔는데, 소사에 도착해서 이어 물러나 돌아갔다. 승정원이 계달하니 임금이 또 승지를 보내어 올라오라는 뜻을 전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19 9년 9월 12일 무신

이조판서 송준길이 소사에 이르러 뒤에 남아 있다가 남쪽으로 돌아갔는데, 임금이 승지와 사관을 보내어 뜻을 전하면서 힘껏 불렀으나 소장을 올리고 오지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세자의 병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성밖에 도착하여 상소하여 스스로 사실을 들추어내어 늘어 놓으면서 본직을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어저께 경의 상소를 보고 마음에 매우 놀랐었는데, 오늘 경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근심하는 가운데 얻은 바가 있는 듯하다. 행궁에서 간곡하게 나눈 이야기를 경은 기억하고 있는가? 상소 끝에 한 말이 또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안심하고 들어와서 나의 소망에 부응하라.” 하고 이르기를 “이조판서가 성밖에 와 있다고 하니, 담당 부서로 하여금 쌀과 고기를 잇대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19 9년 11월 23일 무오

충청도의 토지를 측량하되 4곳의 큰 고을부터 시작하도록 명했다. <홍주(洪州)·공주·청주·충주이다> 황해도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측량 하라고 명했다. 이때 영의정 정태화는 한꺼번에 변통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지만, 호조판서 민정중이 힘껏 주장하고, 판중추 송시열도 행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이때 충청감사 민유중이 다른 고을까지 차례로 거행하기를 아뢰어 청하자, 이에 모두 따랐다. 다음해에 이르러서 끝냈는데, 충청도는 4곳의 큰 고을 외에 천안 등 17고을의 토지를 측량했으며 <목천·보령·청안(淸安)·은진(恩津)·평택·이산(尼山)·온양·부여·제천·임천(林川)·청양·결성(結城)·정산(定山)·비인(庇仁)·연풍(延

豊)·전의(全義)이다) 황해도는 네 고을의 토지만 측량하고 그쳤다. <황주·안악(安岳)·해주·평산(平山)이다)

『현종실록』 권16 10년 3월 16일 기유

임금이 저녁 때 진위현에 머물렀다. 묘시에 임금이 수레로 과천현을 출발하니 대비와 중전도 동시에 움직였다. 진시에 사근(沙斤)의 주정소에 도착하여 오시에 출발하였다. 미시에 안령(安寧)의 주정소에 도착하니 비가 매우 심하게 내렸다. 미시에 출발하여 신시에 진위현에 도착하였다. 수레가 노상에서 빨리 달리는 바람에 호위하던 군사가 넘어지고 의장이 흐트러지니 승지가 천천히 행차할 것을 말로 아뢰었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현종개수실록』 권20 10년 3월 16일 기유

임금이 저녁 때 진위현에 머물렀다. 수레가 노상에서 빨리 달리는 바람에 호위하던 군사가 넘어지고 의장이 흐트러졌는데 승지가 천천히 행차할 것을 아뢰어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현종실록』 권16 10년 3월 17일 경술

진시에 수레가 소사의 주정소에 멈추고, 사시에 출발하여 모산의 주정소에 멈추었다.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허적이 말로 아뢰기를 “임금의 행차가 겨우 막차에 들어간 후 신 허적이 후반(後班)에 있었는데, 말미에서 총쏘는 소리가 들리므로 사람을 시켜 조사해 보게 하였더니 어영군 한 명이 들녘에 있는 기러기를 잡으려고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무지한 소치이며 사건이 중대합니다. 평소예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죄를 캐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 유혁연(柳赫然)을 추고하고 그 부대의 초관(哨官)을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장은 뒤에 있었으므로 어찌면 모를 수도 있겠지마는 장교가 어찌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대장은 추고하고 초관은 조사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줄임)

『현종실록』 권16 10년 4월 16일 무인.

임금이 대비를 모시고 온천으로부터 행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중전도 같이 출발했다. 묘시에 행차가 온천 행궁을 떠나 진시에 모산 주정소에서 머물고, 오시에 소사 주정소에서 머물었다. 미시에 출발하였는데 임금이 행차를 길가에 멈추게 하고는 군령을 전하는 화살로 마병 별장 이간을 불러 진을 치도록 했다. 삼사가 임금 앞에 나아가 그치기를 청했지만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관진(觀陣)을 끝내고 난 뒤

출발하여 신시에 진위에서 머물었다.

『현종개수실록』 권21 10년 4월 16일 무인

임금이 왕대비를 모시고 온천으로부터 행차를 돌렸는데 중전도 같이 출발했다. 모산과 소사 주정소를 지나 저녁에 진위에서 머물었다. 임금이 행차를 길가에 멈추게 하고는 군령을 전하는 화살로 마병 별장 이간을 불러 진을 치도록 했다. 삼사가 임금 앞에 나아가 그치기를 청했지만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현종실록』 권20 12년 11월 초하루 무신

충청도 어사 조위봉(趙威鳳)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목천현감 황휘(黃暉)는 유임한 뒤로 점점 처음과 같지 않았고, 평택현감 이행하(李行夏)는 진흥의 정사에 마음을 다하고 제물을 스스로 봉양하는 것은 간소하게 하였으며, 전 감사 이홍연(李弘淵)은 집이 청주에 있는데 왕래하면서 폐단을 끼쳤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휘는 국가에서 유임시킨 뜻을 전혀 무시하였다 하여 특별히 붙잡아다 조사하게 하고 이홍연은 추고하게 하고 이행하에게는 표리(表裏) 한 벌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25 12년 11월 초하루 무신

충청도 어사 조위봉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목천현감 황휘는 유임한 뒤로 점점 처음보다 못하고, 평택현감 이행하는 진흥의 정사에 마음을 다하고 제물을 스스로 봉양하는 것은 간소하게 하였으며, 전 감사 이홍연은 집이 청주에 있는데 왕래하면서 폐단을 끼쳤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휘는 국가에서 유임시킨 뜻을 전혀 무시하였다 하여 특별히 붙잡아다 조사하게 하고 이홍연은 추고하게 하고 이행하에게는 표리 한 벌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17. 『숙종실록』

『숙종실록』 권4 원년 6월 20일 정축

충청도에서 보고하기를 “평택·직산·아산에는 한 방울의 비도 오지를 아니하여, 논밭의 이랑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하였다.

『숙종실록』 권9 6년 2월 13일 계유

대신과 비변사 당상관을 불러보았다. 우의정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신이 성묘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길에 호서 지방의 농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아산·평

택·서산·태안의 몇 고을이 재해를 입은 것이 심해서 전세 대동미를 본고을에 거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안과 직산의 흉년도 **평택**·아산과 다름이 없는데도 유독 구휼을 받지 못하니, 공평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이미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는 것이니, 천안·직산의 대동미 전세도 아산·**평택**의 예에 따라 본고을에 거두어 두었다가 구호에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줄임)

『속종실록』 권14 9년 12월 9일 병오

밤에 천둥과 번개가 쳤다. **진위** 지방의 인가에 화기(火氣)가 있어 마치 큰 햇불과 같았는데, 빛이 실숙(室宿) 가운데까지 뻗었으며 악취가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속종실록』 권22 16년 4월 23일 갑신

대신과 비변사 재신들을 불러 보았다. 호조참판 이의징(李義徵)이 말하기를 “봉화를 삼가고 척후(斥候)를 멀게 하는 것은 변사(邊事)에 대비하는 장책(長策)인데, 수원은 경기의 중진(重鎭)인데도 봉수가 허술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양성의 **괴태봉수**(槐台烽燧)는 수원의 천주봉수(天柱烽燧)와 서로 응하고 천주봉수는 남양(南陽)의 염불봉수(念佛烽燧)와 서로 응하는데, 천주봉수는 수원에서 거의 50리나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겹겹이 봉우리가 있어서 봉화를 올려 위급함을 알리는 일이 있더라도 볼 수 없고, 반드시 봉군(烽軍)이 와서 알리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그 급한 일이 있는 것을 아니, 어찌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부(本府)에서 남으로 5리 떨어진 안에 독성산성(秃城山城)이 있고 그 봉우리가 가장 높운데, 연대(煙臺)를 설치하면 남으로 **괴태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천주봉수에 맞추어 삼남에서 위급함을 알리는 일이 잠깐 사이에 바로 이르므로, 50리 떨어진 곳에서 천주 봉수의 봉군이 와서 알리는 것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위급함을 아는 것보다 훨씬 낫기만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독성에 연대를 더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줄임)

『속종실록』 권22 16년 11월 24일 신해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이 병 때문에 입시하지 못하였다. 이날에 삼복(三覆)이 있으므로 차자(箚子)를 올려 사면을 청하면서 계복(啓覆)하는 죄인들을 사형에 처하여야 할 것인지를 부론(附論)한 데에 이르기를 “**진위**에 간혀 있는 옥단(玉丹)과 화순(和順)에 간혀 있는 정철(鄭哲)은 정상으로 보나 법으로 보나 다 죽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조문에 이른바 간부(奸夫)라는 것은 사대부 집에서 부리는 종이 아침·저녁으로 지아비를 바꾸는 따위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근년에 형조(刑曹)에서는 창

녀의 간부가 본부(本夫)를 시기하여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창녀는 여러 차례 맞아 가며 심문을 받고서 마침내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옥단의 정상과 죄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철이 범한 것으로 말하면 참으로 죽어야 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죄이니 법에 확실한 조문이 있는데, 어찌 마땅한 법을 버리고서 목숨으로 값는 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내가 헤아려 처치하겠다.” 하였다.

『속종실록』 권24 18년 10월 23일 무술

대신들과 비변사의 여러 재상들을 불러 보았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전 영장(營將) 손여의(孫汝義)는 경주 사람인데 일찍이 큰 도둑들을 많이 잡아서 상(賞)을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바야흐로 어떤 일 때문에 갇혀 있는 중인데, 듣건대 그 도적 패거리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손여의의 서모(庶母)와 처자를 위협하고 해쳤다고 전파되는 말이 낭자한데도 경주부윤 및 영장과 병사가 즉시 급히 달려와 알리지 않았고, 오래 되어서야 보고하면서 평범하게 사람을 다치게 한 것만 말하여 보고한 것이 분명하지 않았으니 직책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여타의 사람들을 가라앉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경기의 진위현에도 도둑떼가 횡행하고 있으니 본현의 현령 및 수원토포사(水原討捕使) 또한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놀랐다. 드디어 경상좌병사 유덕삼(柳德三)·경주영장 윤우진(尹遇進)·경주부윤 허경을 모두 우선 엄중하게 추고(推考)하되, 마침내 변란을 일으킨 도둑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잡아다가 조사하여 처벌하고, 수원토포사 조위수와 진위현령 허승의 처벌도 똑같이 하도록 명하였다.

『속종실록』 권26 20년 5월 11일 정축

처음 기사년에 임금이 송시열에게 효종의 편지를 올리라고 명령하자, 송시열이 한 소문(疏文)을 써서 이르기를 “지난 정유년 신이 모친의 상복을 막 벗고 난 뒤에 효종의 은밀한 교지가 이따금 내려왔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꼭 즉시 불태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안타깝기는 했으나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였습니다. 무술년 7월에 명을 받고 조정에 나아가려고 직산에 당도했을 적에 임금님께서 편찮으시던 말을 얼핏 듣고 진위의 회도원(希道院)에 이르자, 경기감사 신 이일상(李一相)을 시켜서 신에게 빨리 조정에 들어오라 하셨으므로 신이 황급히 말을 재촉하여 성 밖에 이르렀으니, 도승지 신 김좌명(金佐明)을 시켜서 임금님께서 몸이 괴로우시기 때문에 즉시 불러 볼 수 없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그 뒤에 여러 신하들을 따라 올라와 뵈도록 하셨지만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몸을 보살피는데 방해될까 싶어 시

각을 지체하지 않고 물러나왔습니다. (줄임)” 하였다.

『속종실록』 권30 22년 12월 19일 신축

각도의 진흙을 끝낸 장계에 따라 이조에서 처리 사실을 아뢰니, 광주목사 임홍망(任弘望)·평해군수(平海郡守) 신대관(辛大觀)·안악군수(安岳郡守) 이익주(李翊周)·청주목사 정시선(鄭是先)·경성판관(鏡城判官) 송정규(宋廷奎)·가산군수(嘉山郡守) 이규성(李奎成)·순천군수(順天郡守) 이순곤(李順坤)·진위현령 이해주(李惠疇)는 다 잘 다스리고 잘 진흙하였다 하여 품계를 올려주고, 그 나머지는 승진시키기도 하고 차등을 두어 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속종실록』 권31 23년 8월 8일 을묘

대사간 민진후(閔鎭厚)가 상소하기를 “현재 급히 서둘러야 할 업무는 도둑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진위와 천안에는 도적 패거리가 가장 많은데, 무관(武官) 출신의 수령을 가려 뽑아 보낸다면 자못 그 성과가 있을 터이니, 어찌 사내종은 발을 갈고 계집종은 길쌈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전공하는 업무가 저절로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주는 도둑이 진위와 천안보다 더 심하니, 만약 직급이 높은 무신을 가려서 보낸다면 조금의 보탬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줄임)”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의견을 진달한 정성을 내가 가상하게 여기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정에서 견책(譴責)을 보인 것은 게을리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례대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불가한 줄 몰라서이다. 양주에다 무신을 가려 뽑아 보내라는 일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줄임)

『속종실록』 권31 23년 11월 22일 무술

평택현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둘, 눈이 넷, 코가 둘, 입이 둘이었으며, 두 개의 머리에는 각각 귀가 한 개씩 달려 있었다.

『속종실록』 권32 24년 2월 19일 갑자

진위 등지에 지진이 있었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속종실록』 권35 27년 5월 18일 갑진

평택 유생 허호(許鎬) 등이 상소하기를 “고 장령 홍익한의 서원이 본현에 있는데 은총의 편액을 내려주시고, 또 윤집의 예에 따라 그 묘를 수호하는 이에게 호역(戶

役)을 면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해당 관청에 내려서 시행하게 하였다.

『속증실록』 권36 28년 5월 25일 병오

연잉군(延仍君)의 궁에서 **평택**·직산 등의 현에 개(浦)를 파서 근방의 민전과 인가가 모두 피해를 당하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많았다. 충청도에서 장계를 올려 그 폐단을 아뢰고 그 역사를 그만두기를 청하였다. 비변사에서 그에 따라 시행할 것을 검토하여 아뢰기를 “궁차(宮差)가 거짓으로 꾸며 여쭙어 알린 죄를 청컨대 그 관청으로 하여금 각별히 다스려 별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속증실록』 권38 29년 10월 5일 정축

선정신(先正臣) 이이·김장생·김집(金集)을 모신 봉산서원(鳳山書院)을 문정(文井)으로, 성삼문 등 6신을 모신 영월사우(寧越祠宇)를 창절(彰節)로, 처사 김시습의 홍산사우(鴻山祠宇)를 청일(淸逸)로, 홍익한 등 3신의 **평택사우**를 포의(褒義)로 사액하였는데, 여러 유생들의 소청에 따른 것이다. 이 때 서원의 겹쳐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예조에서 말하기를 “봉산에 서원이 창건된 뒤로 문교가 크게 발전하여, 옛날 활쏘고 말달리기를 숭상하던 시골이 지금은 거문고 소리와 글 읽는 소리로 가득한 유학을 힘쓰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이 금제(禁制)에 구애되어 학문을 진작하고 일으키는 길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속증실록』 권39 30년 6월 5일 계유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불러 보았다. 지평 이동언(李東彦)이 말하기를 “임오년 사이에 **진위**에 이성근(李聖根)이 아내를 죽인 변이 있었는데 시체를 둔 곳을 몰랐습니다. 그 처의 형제인 손중임(孫重任)이 솟장을 올려 옥사가 이루어졌는데, 손중임은 말하기를 ‘이성근이 두 첩에게 빠져 그의 처를 때려죽이고, 시체를 숨기어 흔적을 없앨 계책을 삼았다.’ 하였습니다. 이성근은 말하기를 ‘처가 밤을 틈타 몰래 도망하여 간 곳을 모르는데 손중임이 그 집안의 누를 덮고자 하여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고 무고한다.’ 하였습니다. 옥사가 일어난 처음에는 이성근의 처를 살해한 실상이 거의 다 관련된 여러 사람의 진술에서 나왔는데, 중간에 도신(道臣)과 옥관(獄官)이 여러 번 교체됨에 따라 간사한 정이 더욱 심해지고 의심스런 단서가 겹쳐 생겼으며, 죄인의 진술이 전의 말을 많이 바꾸어 옥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만약 이성근의 말대로라면 이성근을 3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며, 만약 손중임의 말대로라면 손씨는 이미 사족의 딸로 사나운 첩의 모함을 입어 비명에 죽어서, 부모 형제로 하여금 아직까지 유해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더구나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후에 악명까지 입었으니, 어찌 끝이 없는 원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이성근의 옥사를 경옥(京獄)으로 옮기어 분명히 조사해서 처단하여 저승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속종실록』 권50 37년 5월 15일 계묘

경기 진위 땅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 귀가 둘, 눈이 넷, 코가 넷, 입이 둘이었다.

『속종실록』 권52 38년 11월 20일 기해

진위 지방에 뇌성이 진동하였다.

『속종실록』 권53 39년 3월 28일 을사

장령 조명봉(趙鳴鳳)이 소를 올려 논하기를 (줄임) “광주부윤 황일하(黃一夏)는 나이가 들어 노쇠함이 너무나도 심하고, 안주목사 성숙(成瑞)과 진위현령 이노성(李老成)도 또한 늙고 병들어 정신이 어두워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춘천부사 오중주(吳重周)는 오로지 탐욕만 부려 주택이 굉장히 사치스럽다고 하니, 청컨대 이 네 고을의 수령들을 교체하든지 또는 파직주소서.” 하였다.(줄임)

『속종실록』 권59 43년 2월 12일 정유

약방에서 임금을 진찰하였는데, 우의정 이이명(李爾命)도 함께 들어와 보았다. 도제조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왕세자는 임금의 행차를 따라가지 못하고 대궐 밖에서 전송만 해야 하므로 인정과 도리가 매우 서운할 것이니, 임금의 행차를 배웅하고 맞이 하는 것을 전보다 조금 먼 곳에서 하는 것이 정리와 예절에 맞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진두(津頭)에서 행하라고 명하였다.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거동하신 뒤에 왕세자가 궁관(宮官)을 보내어 문안하는 것을 과친 한 곳에서만 행하는 것은 정리와 예절이 혹 너무 간략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온천에 막 도착한 때와 목욕한 뒤에 두 번 더 행하라고 명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전의 임금님께서 거동하셨을 때에는 충청병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소사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비록 지방의 군사를 징발하지는 않으나, 수신(帥臣)은 경계 위에서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줄임)

『속종실록』 권59 43년 3월 5일 경신

사시에 임금의 행차가 수원을 떠나 미시에 진위행궁에 이르러 묵었다.

『속종실록』 권59 43년 3월 6일 신유

진시에 임금의 행차가 진위를 떠나 직산 소사에서 낮수라를 들고 저녁에 직산의 행궁에서 묵었다.

『속종실록』 권59 43년 3월 8일 계해

임금이 충청감사 윤헌주(尹憲柱)와 차원(差員)으로 와서 기다리는 도내의 수령을 불러 보았다. (줄임) 임금이 또 조태채(趙泰采)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묻기를 “지난번 대관(臺官)의 상소로 인하여 하교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알려고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하였다. 조태채가 말하기를 “경성의 굶주리는 백성이 5천여 명이나 되고, 이 뒤에 또한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지방도 알 만합니다. 일전에 진위의 작문(作門)밖에 모여 온 걸인이 매우 많으므로, 신이 본현의 진흙미 수십 두를 가져다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을사년 선조(先朝)에서 온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행궁 근처에 모여 온 굶주린 백성에게 죽미(粥米)를 나누어 준 일이 있으므로 미처 분부를 내리기 전에 온양 인근이 네댓 고을에서 받아들인 대동미를 이미 받아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교를 받고서 경청(京廳)의 쌀을 바야흐로 배로 청주별창(淸州別倉)으로 나르는 쌀 1천여 석을 본도에서 가져다 쓰고자 하였으나 조정에서 이 염려 때문에 또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호서 여러 고을의 기근은 어느 곳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에서 태안·보령 같은 고을이 더욱 참혹하니 이것은 감사와 상의하여 참작해서 옮겨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윽게 여겼다. (줄임)

『속종실록』 권59 43년 3월 29일 갑신

사시에 임금의 행차가 직산을 떠나 소사에서 낮수라를 들고, 저녁에 진위행궁에서 묵었다.

『속종실록』 권59 43년 4월 초하루 을유

미시에 임금의 행차가 진위를 떠나 저녁에 수원행궁에서 묵었다.

『속종실록』 권62 44년 12월 23일 병인

장씨의 옮겨 묻는 곳을 광주 진해촌(眞海村)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함일

해(咸一海)가 글을 올려 인장리(仁章里)의 묘지는 불길하다고 논하고, 여러 사람의 의논 또한 결점이 많다고 여겼으나 임금의 이미 옮겨 묻도록 명하였었다. 예조참의가 지사(地師)로 이름이 드러난 자 10여 인을 거느리고 길지를 경기도에서 두루 구한 것이 1년이나 되었는데, 처음으로 수원의 **청호촌(靑好村)**과 광주의 진해촌 두 곳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은 비방과 칭찬이 여러 갈래로 많았으므로 마침내 여러 지사의 산에 대한 평론을 갖추어 아뢰자, 임금이 진해촌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예조에서 초상(初喪) 때의 예에 의거하여 예식을 갖추어 장례를 행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숙종실록』 권64 45년 11월 10일 무인

효행과 절의가 뛰어난 사람들을 정포(旌褒)하였다. **평택**의 사비 천금(千岑), 면천(沔川)의 학생 이성일(李性一), 청주의 사인 이명환(李命煥)의 처 신씨(申氏), 목천(木川)의 사인 김천규(金天揆), **평택**의 사비 천생(賤生), 진천의 사인 이희(李熹), 순천(順天)의 군인 김금선(金今先)의 처 김씨, 청양(靑陽)의 백성 한도동(韓道東)의 처 최씨, 보은의 유학 구이극(具爾極), 평산의 사인 홍만창(洪萬昌)의 처 김씨 등 10인을 효행과 정절로 정려(旌閭)하였다. (줄임)

18. 『경종실록』

『경종실록』 권8 2년 5월 12일 병신

(줄임)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에 아뢰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수원 **홍원** 등의 목장은 원래 남양(南陽)의 목관(牧官)에 소속된 것인데, 별도로 목관을 설치한 이후부터 폐단이 특별히 몹시 많아졌습니다. 목장 안에 염분(鹽盆)을 많이 설치하여 우마를 몰아내고 그 풀을 길러 소금을 굽는 재료로 쓰니, 수백 마리의 우마가 이미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목장을 빠져 나와 백성의 토지를 짓밟고 버를 뜯어먹어 목장 주위의 여덟 개 면의 수십 리나 되는 땅이 그 해를 참혹하게 입었습니다. 전 감목관(監牧官) 정치(鄭治)는 역적 김창집(金昌集)의 사주를 받고 목장에 있는 수초지(水草地)를 떼내어 태반을 역적 김창집을 위해 논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도 역시 이익을 같이 얻으므로 역사를 엄중하고 급하게 독촉하여 매질이 낭자하니 둔민(屯民)과 목자(牧子)들이 모두 생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세부리던 흉한 자에게 아첨하여 불쫓아 백성을 학대하며 이익을 노린 죄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홍원**의 목장을 전처럼 남양의 목관에 소속시키고, 전 감목관 정치는 잡아 조사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말단의 일은 그대

로 따르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다. (줄임)

『경종실록』 권12 3년 6월 초하루 무신

사헌부에서 전에 아뢰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대부(大阜)의 목관을 첩사(僉使)로 바꾼 뒤 불법으로 재물을 착취하여 열 집중에 아홉 집이 비었습니다. **홍원**의 목장도 한 번 각각 설치한 뒤로 크고 작은 비용을 터무니없이 갖추어 내니, 비단 목졸(牧卒)이 흠어질 뿐 아니라 말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짓밟습니다. 청컨대 첩사를 혁파하고 전과 같이 목관을 가려서 임명하며, **홍원** 또한 대부에 붙여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 청주도포사(淸州討捕使) 이경지(李慶祉)는 조송(趙松)의 처조카인데, 역적 김창집에게 연줄을 대어 교제하려고 수백 금의 값으로 이름난 노새를 사서 김제겸(金濟謙)에게 보냈다고 소문이 낭자합니다. 청컨대 파직하여 기용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의 모두 따르지 않았다.

19. 『영조실록』

『영조실록』 권7 원년 9월 20일 갑인

충청도 유생 이덕함(李德涵) 등이 상소하기를 “청컨대 고 충신 홍익한의 **평택사원**(平澤祠院)에 토지를 마련하여 주시고 겸하여 비를 세우는 공사를 도와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비답을 내려 칭찬하고 권장하여 그 청을 따랐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2일 임신

박상순(朴尙淳)을 문초하니, 박상순이 진술하기를 “적이 군사를 양성에 모아 소를 잡아먹고 군사를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진위**로 가고, 한 패는 **평택**으로 가서 두 고을 수령을 죽이고, 곧이어 청주로 향하였는데, 그 숫자는 불과 안성 장터 사람만 큼 되었습니다. 적장은 권서룡(權瑞龍)·권서봉(權瑞鳳)·박태제(朴泰齊)였습니다. 박태무(朴泰武)란 자가 말하기를 ‘적의 무리가 영남의 군사를 기다리는데 용인 직곡(直谷)의 안씨 성을 가진 양반이 그 일을 주관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또 들으니, 죽산 사람 윤취상(尹取商)·서문석(徐文錫)이 적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고는, 또 적의 명단을 바쳤다(줄임).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4일 갑자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가 급변을 올리니 임금이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좌의정 조태억(趙泰億)·이조판서 이태좌(李台佐)·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 등을

희정당(熙政堂)에서 불러보았다. (출임) 이광좌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소란은 본래 근거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으나 수일 사이에 양반의 아낙네가 나루터를 메워 사람들이 많이 괴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흠(張欽)은 송전(松田)에 사는데 안박과 함께 흉역(凶逆)을 같이 모의하여 13일에 군사를 모으고 14일에 소사로 가서 15일에 거사를 한다고 하여 원로 대신이 급히 올라온 것이니 이는 근거 없는 소란과는 다릅니다. 또 소사는 거리가 멀지 않으니, 조정에서 환란을 방지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문이 적실하다면 죄인을 체포하는 일이 긴급한데, 14일에 모이고 15일에 군사를 일으킨다는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장흠 등이 집에 있지는 않을 듯하다.” 하였다.(출임) 이광좌가 말하기를 “장흠이 비록 도망하였지만 적의 피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사(都事)를 곧바로 그 집에 보내 수색해 잡은 후에 소사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출임). 임금이 말하기를 “적의 거병은 어느 날로 기약했는가?” 하였다. 최규서가 말하기를 “안박이 말한 바를 들으면 13일부터 14일 4경까지 군사를 모아 소사에서 호궤(犒饋)하고 15일 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안박의 입에서 나왔는가?” 하였다. 최규서가 말하기를 “비단 안박의 말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시골의 모든 사람이 모두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이 이미 봉조하의 말을 들었으니 각기 의견을 아뢰라.” 하였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정월 초이튿날, 서울에서 소란이 갑자기 일어났고 연달아 궤서의 변이 있었습니다. 듣자오니, 4, 5일 전에는 진위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 놀라 움직여 산 위로 피란했다고 하니 이는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출임) 임금이 말하기를 “원로 대신이 마음에 놀라서 올라왔으니, 평소 우국하는 정상을 볼 수 있다. 만약 13일날 모여서 15일에 거행한다면, 병(兵)이란 속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법이니 마땅히 숨기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찌 먼저 일의 기미를 누설하겠는가? 이는 반드시 떠도는 말을 선동하여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려는 것이니 조정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영의정의 계엄하자는 말은 혹 놀라 움직이는 데 가깝고 여러 신하들이 아뢴 바는 분수에 지나치다. 죄인을 잡아다가 조사하면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니 천천히 의논해 조치해도 늦지 않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진위·용인·양성·직산 등의 고을은 모두 요충지인지라, 이럴 때 음관(蔭官)에게 맡겨 둘 수 없으니, 무신으로 가려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주는 호서지방의 목구멍과 같은데 영장(營將) 김구령(金九齡)은 떨쳐 격려하는 기력이 없으며, 청주는 이미 변란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는데 영장 남연년(南延年)은 노쇠하여 말기기가 어려우니, 아울러 우선 교체하고 극진히 가려서 내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6일 병인

어영기찰장교(御營譏察將校)가 의심스런 사람인 출신 이징관(李徵觀) 및 아노(兒奴) 귀금(貴金)을 성밖에서 잡아 대궐로 올려보냈다. 조사하여 한 차례 고문했으나 자백하지 않았다. 귀금을 문초하니 진술하기를 “상전은 직산에 사는데 전립(甌笠)을 쓰고 환도(環刀)를 차고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적은 변산 정도령(鄭都令)과 **갈원** 권진사(權進士) 등으로서 건장한 군사를 모집하여 군복을 만들었으며, 박창급(朴昌偁)은 그 일족이 매우 많은데 모두 도적의 무리에 들었습니다. 이번 15일에 경성을 포위하고자 하여 이른바 정도령이 구만리(九萬里) 권생원 집에와 상의하였는데, 능히 둔갑(遁甲)·부작(符作) 등을 잘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6일 병인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안호(安鑰)를 친히 조사하니, 안호가 진술하기를 “이달 초5일 아우 안박이 언문으로 말하기를 ‘장흠이 충청도에 적변이 일어났다고 전해주어 장차 피란하고자 서울을 떠나려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장흠의 매부 안세최(安世最)를 대정동(大貞洞)으로 가 만나 보았더니, 안세최가 물기를 ‘그대에게도 역시 시골에서 편지가 있었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왔다.’고 하였습니다. 안세최가 말하기를, ‘나에게도 역시 장흠의 글이 왔다.’ 하고는, 장흠의 서간 사연을 전해 말하기를, ‘이번 13일에 피란해 골짜기로 들어가니 모름지기 내 누이와 함께 와 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다 하고는, 함께 피이한 장흠의 말을 웃었습니다. 신의 종 막실(莫實)이 용인에서 와 말을 전하기를 ‘봉조하가 금방 들어왔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장흠의 종이 저에게 전하기를, 우리 상전(上典)이 나갈 때 그의 아들과 종들에게 「너희들은 피란하지 말고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나는 죽지 않는다. 이번 15일 **소사**에서 군사를 모으겠다.’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봉조하를 전생서(典牲署)에 나가 맞아 막실의 말을 고하였더니, 봉조하가 신을 따라오라 하기에 이미 비변사에 가서 진술한 것입니다.” 하였다. 막실을 문초하니 막실은 진술하기를 “13일에 용인에 이르니 송전리(松田里)에 사는 백성으로서 농사철을 당해 곡물을 묻고 장흠을 따르는 자가 12명이었는데, 장흠이 각자에게 돈 1냥씩을 주어 술과 고기를 준비해 먹게 하고는 같은 현의 기패관(旗牌官) 이순망(李順望) 등 20여 명과 함께 양성으로 향했는데, 장흠은 구만리로 향하고, 그 나머지는 가천역(加川驛)을 향하였습니다. 들으니, 12일 저녁에 모여 13일에 **진위**·양성 등지의 군사와 합쳐 **소사**에서 조련하고, 15일, 16일 사이에는 충청도 병영에 이르러 병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고, 그 군사를 빼앗아 금산(金山)의 적 7만 명과 합세하여 서울로 들어가되, 세 길로 나누어 혹은 수로로 혹은 육로로 간다고 하

였습니다.” 하였다. 안박을 문초하니, 안박은 진술하기를 “신이 사는 곳이 장흥의 집과 몇 리 떨어져 있는데, 이번 11일에야 비로소 장흥이 무리를 모으고 돈을 갖고 술과 고기를 준비해 먹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신의 행랑처에 사는 상놈 5인도 있었는데, 12일 밤 이들이 장흥의 집에 모여 장흥이 거느리고 양성으로 향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해 봉조하의 아들 홍천군수 최상복(崔尙復)에게 가 말하고 신은 즉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봉조하가 이 일로 상경하자 장흥의 동생 장전(張鎭)이 그 말을 듣고는 신을 원망하므로 신은 깜짝 놀라 산골짜기로 숨었습니다. 적당 가운데 또 **진위**의 정계윤(鄭季允)과 이천의 정종윤(鄭宗允)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나, 이는 모두 풍문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6일 병인

김옥성(金玉成)을 문초하니, 김옥성이 진술하기를 “초 10일에 **진위 갈원** 외향(外鄕)에 도착하니, 외숙 최정룡(崔廷龍)이 말하기를 ‘이곳 근처에서 군사를 모아 12일 밤에 부락이 일시에 모두 비었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는 도망하여 중미(中彌) 주막에 이르러 상을 당한 성탁(成琢)을 만났더니, 상인이 말하기를 ‘**갈원**에 사는 양반 김정현(金廷賢)과 그 매부 박영동(朴寧東) 등이 1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적이 군사 일으키기를 기다려 함께 서울을 범하려고 하였다. **갈원** 주막 사람들은 모두 김정현의 노속(奴屬)이어서 김정현이 백색 군복을 만들게 하였는데, 기일에 미처 주막 사람들이 모두 김정현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김정현이 그 무리를 잃고 있는 겁이 나 도망하였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상인과 함께 서울로 들어와 남문 밖 팔패(八牌)에 숨어 있었는데, 상인이 동네 담당자를 불러 신을 붙잡아 인계하였습니다. 지금 삼남은 이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속히 평안병사에게 일러서 성안 창고의 군기(軍器)를 굳게 지키게 해야만 비로소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할 약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미 성안으로 들어와 각고(各庫)의 군기를 하룻밤에 불태운다는 설이 성안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 취할 방도로는 멀리 강원·황해·평안·함경도의 군사를 징발해야만 위급함을 구제할 수 있는데, 양서 지방이 모두 저들 무리에게 들어가서 그 군사가 이미 어느 지점에 도달하였는지 모르오니, 임금님께서서는 강화·남한(南漢)으로 들어가시면 거의 무사할 것입니다. 신이 **진위**에 있을 때 여론이 이와 같았고, 우협(禹俠)·유시무(柳時茂) 등도 역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감히 고합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7일 정묘.

(줄임) 안박을 문초하니, 안박이 진술하기를 “(줄임) 장흥이 또 말하기를, ‘이 달

16일, 17일 사이에 상소하는 자가 있게 되면 마땅히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고 서울 안에서조차 역시 호응할 자가 있을 것이니, 상소가 들어가기로 기다려서 상경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흠은 적의 줄개에 불과한데도 그가 말하기를, ‘경상도에 대군을 거느릴 만한 자가 있고 우리는 대장(隊將)에 불과하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장흠에게 묻기를 ‘네가 비록 장수의 지략이 있다 하더라도 좀스러운 유생에 불과하고, 또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장흠이 말하기를 ‘어찌 시골뿐이었겠는가? 서울에 있는 자 또한 많다. 영남의 7만 명이 2월 보름날 청주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는데 진위의 정계운(鄭季胤)이 이를 알고 있고 또 그 사촌 정종윤(鄭宗胤)과 함께 중간에서 주선하고 있는데 양성과 직산 두 고을 사이에 있는 염통리(念通里)에서 서로 모여 영남의 군사가 넘어오기를 기다려야 하고 호남 군사도 오면 길을 나누어 상경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흠이 또 말하기를, ‘영은문(迎恩門) 쇠뿔줄을 꺾은 8장사(將士) 가운데 4장사와의 약속을 얻어냈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7일 정묘

수원부사 송진명(宋眞明)이 급히 아뢰기를 “성환찰방(成歡察訪) 강백(姜栢)이 임소(任所)에서 달려와 고하기를 ‘16일 밤 3경에 어떤 사람이 관문(關文) 한 장을 전해 주면서 모조리 역마(驛馬)로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도적 패거리가 돌입하여 역졸들이 모두 두려워 겁을 먹고 투항했기 때문에 단신으로 도망해 나왔는데, 소사교가에 흰 옷을 입은 자 수십 명이 모여 있다가 잡고서 보내 주지 않아 말을 돌려대어 빠져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측근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도적에 대한 보고가 이러한데도 순토사(巡討使)가 아직 진에 이르지 못했으니, 아마도 이 노장이 일을 그르칠 염려가 있을 것 같다.” 하였다. (줄임)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8일 무진

가도사(假都事)가 진위 땅에서 적을 붙잡았다. 도적 패거리 이문저(李文著)가 굴속에 숨어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온 것이다. 이문저를 문초하니, 이문저가 진술하기를 “12일에 소요를 듣고 굴을 파서 가족들을 숨겨 두고, 신은 말을 타고 나가 오중주(吳重周)를 만나 보고자 하였는데, 도적이 곳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적이 신의 말을 빼앗으려 하였으므로 신이 도주하여 평택의 궁촌(宮村)에 이르렀는데, 1백여 명의 적을 보고는 드디어 양성 염통촌(念通村) 길을 따라 직산으로 향했습니다. 들으니, 진위의 양반 원·권·어·이 네 성씨는 적 가운데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적이 죽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인년 권서봉(權瑞鳳)이 상소할 때에

전문(錢文) 3전(錢)으로 함께 상소할 사람을 모집하기에 신이 일찍이 '3전유생(三錢儒生)'이라고 지목해 권서봉의 무리가 신을 원망해 왔는데, 지금 권서봉이 적의 모주(謀主)가 되었기 때문에 신이 적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했다가 또 적의 형세가 매우 성하지는 않은 것을 보고 14일에 집으로 돌아와 굴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였는데 한 차례 몽둥이로 때리며 캐어 물었지만, 자백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0일 경오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의 군사가 진위로 행군하여 현의 남쪽 들판에 진을 쳤다. 날이 처음 어두워질 무렵에 나졸이 보고하기를 “활과 칼을 찬 장교가 와서 말하기를 ‘가도사가 평택에서 죄인을 잡아가지고 진 밖에 와서 머물러 있는데, 거느린 기마병과 보병이 반초(半哨)가 넘어 밤에 지나가면 놀라고 의심을 받게 될까 두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오명항이 군중에 명하여 그 장교를 잡아 묶게 하고 경계를 엄중히 하여 기다리게 했다. (줄임) 얼마후 군사가 조금 진정되어 김성옥 등 정탐하러 온 10여 인을 모두 효수하고는 다시 항오를 정돈하고 수색을 계속하여 또 몇 명의 적을 찾아 죽였다. 어떤 적이 막 묶이면서 갑자기 몸을 솟구쳐 진을 뛰어넘어 도망했는데 잡지 못했으니, 이는 바로 적장 이배(李培)였다. 이배는 후에 심문하는 자리에 나와 스스로 말하기를 “자객이 되어 진위의 도순무 진영에 들어갔으나 묶였다가 도망하였다.” 라고 했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1일 신미

적이 청주로부터 군사를 동원해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면서 먼저 글을 죽산에 보내니, 부사 최필번(崔必蕃)이 놀라서 고을을 버리고 백의를 입고 인신(印信)을 지고서 걸어서 도순무사 오명항의 군중으로 달아나 와서 말하기를 “관리들이 모두 도망하여 각 고을의 군사가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하였다. 오명항이 글을 올려 급히 아뢰기를 “최필번으로 하여금 진위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산으로 돌아가 군민을 거두어 모아 후일에 공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2일 임신

도순무군관(道巡撫軍官) 신진숙에게 가선(嘉善)의 품계를 더해주고 동지(同知)의 벼슬에 임명하였다. 좌의정 조태억이 진위의 변란 때 신진숙이 칼을 무릅쓰고 적을 배어 주장을 구원했다 하여 포상을 청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2일 임신

사로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 오명항이 글로 아뢰기를 “수령들이 대부분 겁이 많아 어쩔 줄을 모르는데, 유독 안성군수 민제장(閔濟章)과 진위현령 조동빈(趙東彬)만은 약간의 군사를 불러 모아 신의 군영으로 왔습니다. 양호(兩湖) 지방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이들이 아니면 결단코 서로 통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동빈은 본읍에 남아 지키게 하고, 민제장은 본군으로 돌아가 촌백성들을 불러 안집시켜 조정의 영을 전하여 통하게 했습니다. 듣건대, 남한에서 징병한다고 하니, 두 고을은 거느리고 오지 말게 할 것을 급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3일 계유

이번 싸움에서 사로잡힌 적이 말하기를 “서울의 군사들이 진위에 있던 밤에 적이 먼저 첩자를 보내 각 고을의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는 군속에 섞이어 진중에 들여보내고, 이어 마군과 보군 4, 5초(哨)를 보내 안에서 응하고 밖에서 습격할 계획이었는데, 관군이 이미 계엄하고 포와 화살을 동시에 일제히 쏘아 놀라 도망해 숨었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3일 계유

남한순무사(南漢巡撫使) 김동필(金東弼)이 글로 아뢰기를 “흉적의 질로가 바야흐로 죽산을 지났다고 하는데, 도순무의 대군은 소사로 전진하여 용인과 이천 두 길이 비어 있습니다. 양주목사 유척기(兪拓基)가 바야흐로 동로진어사(東路鎮禦使)로 누원(樓院)에 주둔해 지키고 있으니, 바라건대, 유척기에게 명하여 미음강(溪陰江)으로 옮겨 방어하게 하고, 춘천방어사(春川防禦使) 정도원(鄭道元), 여주목사(驪州牧使) 이행검(李行儉)도 모두 신의 절제를 받도록 명하여 유척기와 함께 협력해 방어하게 하소서.” 하였다. 회유하기를 “다시 정병을 뽑아 요충지에 나누어 차지하고 지키게 하고는 산골짜기를 두루 수색하여 오는 길을 끊어 도순무와 앞뒤로 협공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3일 계유

성탁을 문초하니, 성탁이 진술하기를 “3월 13일 신이 중미(中彌) 주막에 이르니, 김옥성이 뒤쫓아 이르러 주막 사람과 서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신이 옆에서 그 말을 들으니 김옥성이 말하기를, ‘어제 아침 소사·갈원 사람들이 흩어져 달아났기에 나 역시 그곳에서 도망해 돌아온 것이다. 이는 바로 이곳 의병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 이름 역시 적의 성책 가운데 들어 있다.’ 라고 하

였습니다. 신이 김옥성에게 말하기를, '의병장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니, 김옥성이 말하기를, '이곳의 20명이 변산(邊山)·지리산의 적과 화응(和應)하여 이번 3월 16일에 한 사람마다 1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일이 점차 임박하자 **갈원**과 **소사** 백성으로 적의 성책에 들어 있는 자들이 모두 스스로 놀라 흩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적장들 역시 모두 도주해 적의 소굴로 갔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김옥성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는 바로 적병인데 의병'이라고 말하니 너무 무식하다. 하였더니, 김옥성이 말하기를 '적병이나 의병이나를 논할 것이 없이 일의 낱새가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이어 스스로 적중의 사정을 분명하게 안다고 칭하기 때문에 신이 즉시 붙잡아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강하고 약함이 같지 못하고, 그곳이 적도들이 출몰하는 곳 같기 때문에 계책을 써서 유치하여 청파(靑坡)에 이르러 붙잡아 고한 것입니다. 강도와 남한에 대한 이야기는 금시 초문이며, 원래 지휘하거나 모의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3일 계유

이보다 앞서 도순무사 오명항이 **진위** 땅에 있으면서 종사관 등과 더불어 진군할 것을 의논하여 각기 그 이해를 개진하였다. 오명항은 단지 말하기를 "시험삼아 직산으로 진군하고, 다시 의논해도 늦지 않다." 하고, 드디어 진군해서 **소사**에 이르러 점심밥을 먹고 나니 전군은 이미 직산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오명항이 갑자기 말에 기대어 두 종사관을 불러 귀에다 대고 명령하기를 "안성군수 민제장으로 하여금 본군으로 돌아가 군량과 마초를 정돈해 기다리게 하라." 하고, 큰소리로 말하기를 "직산으로 운반하라." 하였다. 당보초관(塘報哨官)을 불러들여 귀를 잡고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서 몰래 깃발을 흔들도록 명하여 지레 안성으로 가게 하였다. 이는 대개 오명항이 처음 행군하여 과천에 이르러 기졸(旗卒) 방득규(方得規)가 날래고 용감하여 부릴만한 것을 보고는 별무사(別武士)로 울리어 그의 환심을 사고 수원에 이르러 밀령(密令)으로 간첩을 만들어 청주의 적진에 투입시켜 적이 가는 방향을 탐지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방득규가 과연 적의 정세를 탐지하고, 또 소금 장수 차림을 한 적의 간첩을 잡아 바쳐 비로소 적이 진천에서부터 군사를 나누어 한 부대는 죽산으로 향하고, 한 부대는 안성으로 향하여 민제장을 습격하여 죽이고자 함을 알게 되었다. 오명항이 이미 안성으로 향하기를 결심하고 남보다 앞서 빼앗는 계책을 쓰고서 그 모책의 비밀이 누설될까 염려해 발표하지 아니한 채 직산의 큰 길로 향한다고 소리쳐 말했던 것이었다. **소사**에 이르니, 정탐하는 자 4, 5명의 말 역시 서로 부합하는지라 중도에서 길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승리를 얻었으니 이는 하늘이 실로 도운 것이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3일 계유

처음에 대군이 소사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한 시골 아이를 끌어다가 적의 정세를 살피게 했는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지난번 적의 무리가 마을가에 진을 쳤는데, 그 가운데 한 적장은 얼굴이 검고 눈이 둥근 것이 생김새가 아주 흉악했으며, 야채를 날 것으로 몇 광주리나 씹어 먹었습니다.” 하여 듣는 자들이 매우 악독하게 여겼었다. 이번 싸움에서 민제만(閔濟萬)이 적장 설동린(薛同麟)을 잡아 바쳤는데, 설동린은 본래 순창 사람으로 생김새가 흉악하고 추하였으며, 목의 크기가 작은 아이의 머리만 하였다. 혹은 맨손으로 이봉상(李鳳祥)을 죽였다고 하니 아이가 말한 자는 대개 설동린을 가리킨 것이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6일 병자

총융사(摠戎使) 장봉익(張鵬翼)이 도망한 적의 괴수 이배를 붙잡아 보냈다. 이배는 진위의 진에서 망명한 후로 변복하고 섬으로 들어가고자 수원 해촌(海村)에 들어갔다. 총융천총(摠戎千摠) 오성재(吳盛載) 등이 기찰(譏察)하여 군사를 이끌고 해변으로 향하다가 길에서 이 배를 만났는데, 평소 얼굴을 알고 있었으므로 드디어 묶인 것이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7일 정축

동부승지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죽산부사 최필번(崔必蕃)은 적의 관문(關文)을 보고 도망하여 양성으로 숨었고, 현감 한일운(韓日運)은 적을 보기도 전에 크게 놀라 밤중에 도주하였으니, 아울러 마땅히 별도로 논죄하여야 합니다. 양성의 좌수는 관병을 이끌고 소사에 와서 기다렸으니 마땅히 장려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조정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여 최필번은 군역에 충당하고, 한일운은 귀양 보내고, 양성의 좌수 이사(李蕙)는 상당한 직임에 임명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7일 정축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직접 심문하였다. 이배를 문초하니, 이배가 진술하기를 “신이 전년 10월에 평안병영(平安兵營)에 갔으나 병사는 보지 못하고 단지 군관 안추(安樞)만 만나보고 자산(慈山)에 이르러 겨울을 나고 3월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11일에 갈원 사는 김정현(金廷賢)이 와서 보고는 양성의 가천(加川) 최경우(崔擎宇)의 집에 함께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김정현과 최경우가 백기에다 ‘의’자를 써가지고 가서 변산의 적을 격파하자고 청하였으므로 신이 말하기를 변산의 적은 국가에서 마땅히 토벌할 것이고 우리들이 토벌할 것이 아니다.’ 하고는 그대

로 도망해 오고 말았는데, 장사 두 사람이 갈원 뒷고개에 모여 있다가 신을 붙잡아 권서룡(權瑞龍)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는 바야흐로 군사 3초(哨)가 모여 있었고, 적당은 권서봉 3형제와 박영동(朴寧東)·김정현·최경우였습니다. 전라도 나주에 방을 건 자인 나가(羅哥)가 3천 명을 거느리고 변산으로 들어갔는데, 태인의 수령 박필현(朴弼顯)이 그 패거리어서 모든 적이 박필현에게 가서 의논하고 왔습니다. (줄임)" 하였다. 2차 몽둥이로 때리고 कै어 물었으나 전과 같이 진술하여 참형에 처하고, 법대로 가족을 노비로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8일 무인

임금이 인정문에 나아가 직접 심문하였다. 목함경(睦涵敬)을 문초하니, 목함경이 진술하기를 "전 참봉 이동형(李東馨)의 조카 이호·김중만(金重萬)과 함께 모의하였으나 신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윤몽징(尹夢徵)이 신에게 말하기를, '이호가 양성 사람과 모의하고 있다.' 하기에 초아흐렛날에 신이 가서 이호를 만나 보았더니 김중만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김중만이 간 후에 신이 물었더니, 이호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권서린(權瑞麟)의 집으로 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권서린의 집으로 갔더니 바야흐로 소를 잡고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데 도검(刀劍)이 무서웠습니다. 대개 도둑떼를 모은 것으로서 최경우가 상을 당한 사람으로 변복하고 수백 명을 모아온 것인데 장수는 이인좌였습니다. 김중만이 80명을 거느리고 와서 모인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온 자가 없었고, 이배(李培)가 1백여 명을 거느리고 와 군사들을 차려 먹이고 사사로이 훈련하였습니다. 좌장군은 이호, 우장군은 최경우이고, 신은 진용도위(進勇都尉)가 되었으며, 군사를 정돈하여 장차 평택을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집으로 돌아와 김만중을 찾아 갔으나 간 곳을 몰랐고, 3월 13일에 정세윤(鄭世胤)의 아들 정일화(鄭一華)가 신을 데리고 이호의 종의 집으로 가서 협박하므로 신이 부득이 따라갔습니다. 15일에 비를 맞으며 청주로 들어가 길을 나누어 안성으로 향하였는데, 신이 적도들에게 말하기를, '들으니 안성의 군사가 모두 도망하였다고 한다. 만약 금위군(禁衛軍)을 나에게 주면 내가 마땅히 가서 안성을 깨뜨리겠다.' 하니, 허락하였기 때문에 거짓으로 군사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대로 흩어져 도망하다가 진천에 이르러 관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줄임)" 하였으므로 참형에 처하고 법대로 가족을 노비로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임금이 목함경은 병사를 죽였다 하여 처형한 후 팔다리라 몸뚱이를 원수의 집에 주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9일 기묘

남한순무사(南漢巡撫使) 김동필(金東弼)이 글로 아뢰기를 “붙잡은 적 윤희경(尹熙慶)의 진술과 윤희경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하였는데, 그 진술서에 이르기를 “이 적의 가까운 원인은 당초 나주의 나두동(羅斗冬)·나승대(羅崇大)·나만치(羅晩致) 세 사람에게서 비롯되어 양병(養兵)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양지 사람 이호(李戶)는 그들 사이에서 이인좌 등과 서로 통하게 하였고, 이번 군사를 낼 때에는 정세윤이 나두동에게 군사를 청하자, 나두동이 허락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 역시 군사를 일으킨다.’ 고 하였습니다. 영남의 적의 형세는 상주의 한세홍(韓世弘) 형제가 알고 있으며, 서울 안에서의 내응은 이유익(李有翼)·남태징(南泰徵)·민관효(閔觀孝)가 하기로 하고, 이사성(李思晟)은 근왕병을 칭탁해 올라오고, 전 도사 조상(趙鏞)은 적도 중에 와 모였다가 이내 이인좌에게로 갔습니다. 이인좌는 14초(哨)를 거느리고 정세윤은 16초를 거느렸습니다. 양성의 설동린(薛東麟)·이의형(李儀亨), 진위의 이배·최호서도 그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니 군문에 넘겨 효시하였다.

『영조실록』 권17 4년 4월 2일 임오

경기감사 이정제(李廷濟)가 글로 아뢰어 말하기를 “(줄임) 지금의 이른바 주막은 곧 옛날의 관정(關亭)으로서 적도가 밤에는 주막에서 자고 낮에는 장터에서 모이니 착실하게 엿보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西路)의 검암점(黔巖店)과 동로(東路)의 누원점(樓院店)은 모두 별장(別將)이 있으니, 이제 마땅히 살피 잡아내는 일이 보통이 아닐 것이오며, 과천에서 소사에 이르는 길, 판교(板橋)에서 죽산에 이르는 길, 경안(慶安)에서 충주에 이르는 길, 평구(平丘)에서 수원에 이르는 길은 신의 병영에서 합당한 사람 각 한 사람씩을 가려 보내어 별장으로 이르게 하여 환곡으로 거두어 들인 이자로 급료를 주고 각로(各路)의 여러 점을 관할케 하여, 수상하게 오가는 자를 살피고 금지케 하여 혹은 본관에 고하도록 하고 혹은 영문에 고하도록 하면 마땅함을 얻게 될 듯합니다. 각 영문, 각 고을의 파수 중에 혹 연줄을 타고 폐단을 만드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니, 모두 조사해 내어 군율로 논죄하겠으며, 각 군문 각 나루터와 관문의 파수(把守)하는 곳에도 약속을 더욱 엄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7 4년 4월 9일 기축

임금이 인정문에 나가서 직접 심문하였다. 한세홍(韓世弘)을 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으므로 한 차례 형벌하니, 진술하기를 “지난해부터 이유익(李有翼)·박필현(朴弼顯)·이인좌가 군사를 모집하였으며, 심유현(沈維賢)이 영천군수가 되었을 때, 박필현이 그 젊고 사리에 밝음을 일컬었습니다. 신이 들으니, 그 이름난 도적은 박

에서는 양성·진위·용인 사이에서 매우 대단하였고 안에서는 남태징이 이를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줄임) 하니, 목을 베어 죽이고 법대로 가족을 노비로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영조실록』 권18 4년 5월 7일 정사

호서안무사(湖西安撫使) 김재로(金在魯)가 글로 아뢰기를 “역적 위천총(僞千摠) 조백(趙柏) 등을 잡아 효시하였습니다. 적 민백효(閔百孝)의 종 춘흥(春興)·순봉(順奉) 등이 진술하기를, 3월 13일에 민백효가 과거 보러 간다고 서울로 올라가 이조겸(李祖謙)의 집에서 잤는데, 이조겸이 당상이 되고 싶다 하니, 민백효가 말하기를 ‘일이 이루어지면 당상이 될 뿐이 아닐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죽산에 있는 정진사의 집에 갔더니 대여섯 양반이 모여 밤새워 모의하였는데, 다 은밀한 말이었습니다. 정가가 민백효에게 말하기를 ‘청주 군사가 올라오자면 용인의 금량(金梁) 길을 거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사 길을 거칠 것이니, 그러면 내가 의당 급히 알려서 약속대로 나와 군진에 나아가도록 하겠다.’ 하니, 민백효가 허락하고 용인에 있는 조보은(趙報恩)의 집에 가서 적병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7일 날이 밝기 전에 정가가 민백효에게 와서 자세히 말한 뒤에 민백효의 행장 가운데에 감추었던 군복 두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어 줄 때에 보았는데, 두 보에 싼 크기는 다 안석(案席)만 한데 자못 길었고, 보 틈으로 보니 다 흰 군복이었으며, 철편(鐵鞭) 따위 물건을 싼 듯하여 들기에 자못 무거웠습니다. 21일에 안성의 패전 소식을 듣고 문득 복판에 자빠져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망하게 하는 때이니 내 가족이 죄다 멸망할 것이다.’ 하고는 인하여 음식을 끊었다 합니다.” 하였다. 모두 엄중히 가두었다.

『영조실록』 권18 4년 5월 12일 임술

김장(金璋)을 네 차례 몽둥이로 때리며 캐어물으니, 김장이 진술하기를 “3월 초에 안엽(安燧)이 신과 엄악발(嚴惡發)에게 같이 서울에 올라가기를 청하므로 따라서 용산에 있는 이생원의 집에 갔더니 주인은 없었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안으로부터 돈 1백 냥을 내어 보냈고, 첫 새벽에 주인이 나왔는데 신이 보니 몸집이 커서 한 아름쭙 되었습니다. 신과 엄악발을 시켜 돈을 가지고 서울에 들어가 명주와 전립(戰笠)을 사서 판교에 와 모이도록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전립을 사서 무엇에 쓰는가?’ 하니 안엽이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서 병란이 있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쓰고 피란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최봉조하(崔奉朝賀)가 서울에 올라오니, 안엽이 자못 놀라고 겁내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 역적질하려는데 너

도 나와 함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그대가 군사를 일으키면 어느 곳으로 가려 하는가?’ 하니, 안엽이 말하기를 ‘양성에서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대로 따라서 양성에 갔더니, 적의 형세가 크게 떨쳤습니다. 안엽이 파총(把總)이 되고 신이 군량차지(軍糧次知)가 되었으며 대장은 이 인좌이고 부장은 정세윤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얼굴을 아는 자는 진위에 사는 김정현이었습니다. 이어서 행군하여 청주로 향하였는데, 비바람이 크게 일어 군사의 태반이 달아나 흩어졌고, 신과 엄약발도 달아났습니다. 반역을 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니, 법대로 목을 베어 죽이고 가족을 노비로 만들고 재산은 몰수하였다.

『영조실록』 권18 4년 5월 13일 계해

임금이 인정문에 나아가 직접 심문하였다. 한대명(韓大命)을 추궁하여 따져 물었으나 승복하지 않으므로 한 차례 몽둥이로 때리며 캐어물으니, 진술하기를 “3월 12일에 민원해(閔元楷)가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관서·영동의 여러 곳에서 군사를 많이 일으켰으니 같이 가서 거사하기 바란다.’ 하기에, 신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민원해가 말하기를 ‘좋은 곳이 있으니 소사로 같이 가자.’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 가겠는가?’ 하니 민원해가 말하기를 ‘17일에 포수를 데리고 진친 곳에 가서 곧바로 경성을 침범하면, 너희 같은 무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같이 가려 하였으나 16일에 신의 아내가 마침 낙태하였으므로 적진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줄임)” 하였다. 법대로 목을 베어 죽이고, 가족을 노비로 만들고 재산은 몰수하였다.

『영조실록』 권18 4년 5월 16일 병인

박필상(朴弼祥)을 다시 추궁하여 따져 물었다. 한 차례 몽둥이로 때리고 캐어물으니, 박필상이 진술하기를 “3월 10일에 정조윤이 신에게 말하기를 ‘청룡대장은 곧 정팔룡(鄭八龍)이고 정세윤이 제6장이 되고 박필현(朴弼顯)이 제2장이 되어 장차 역적을 하려 한다. 내가 바야흐로 서기인데 앞으로 대장이 될 것이니 너는 내 군관이 되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성공하면 반드시 목사나 부사가 될 것이다.’ 하고 칼로 겁주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 소사에 갈 것인데 네가 만약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하므로 신이 마지못하여 따라갔습니다. 적장 이인좌가 소사에 장막을 설치하였고 보병이 거의 7초였으며, 정세윤의 군관으로 치부(置簿)하였는데, 그때가 3월 11일이었습니다. 군사를 차려 먹일 때에는 화살통을 차고 정조윤의 뒤로 네 번째에 섰는데, 첫째는 곽중휘(郭重暉)이고 둘째는 서홍섭(徐弘涉)이며 셋째는 최백(崔栢)이었습니다. 정조윤이 신에게 말하기를, ‘남수언(南壽彦)이 와서 모이기로 약속하였는

데 제때에 미처 오지 않으므로 곧 군관을 보내어 남수언을 불러 와서 모이게 하려 하였으나 군관도 미처 오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정조윤이 말하기를 '군관은 필연코 달아났을 것이다. 목중형(睦重衡)이 15일까지 판교에 와서 모여야 할 것인데 오지 않았다. 두 사람이 약속하였는데 다 오지 않으니 우리들은 청주로 가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11일 밤에 적들이 청주로 가려 하는데, 신은 그 꾀를 알고 달아나 여주로 돌아왔습니다. 반역을 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였다. 법대로 목을 베어 죽이고, 가족을 노비로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영조실록』 권18 4년 6월 24일 계묘

경상감사 박문수(朴文秀)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3월 17일 밤에 오명항이 수백 명의 기병(騎兵)으로 빨리 역적을 묻어 죽이기를 청하매 임금님께서 홀로 결단하여 허락하셨으나 건너갈 즈음에 절로 지체하게 되어 수원에 가까이 가면 반드시 밤이 깊어질 것이므로 신이 생각하기를 '지금 적의 소식이 별로 없고 군사는 오래 지쳤는데, 땀을 흘리고 발이 부르뜨며 밤에 50리를 달려가 힘이 다하면 아무리 적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싸우겠는가?' 하여 신이 곧 대장을 보고 말하였더니 오명항이 똑바로 보며 말하기를 '출병하는 날에 도리어 지체할 것을 의논하는가? 군사를 재촉하여 밤이라도 반드시 수원에 이르러야 한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주장이 임금님께 하직인사하고 곧 떠났으므로 무기·군장이 많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는데, 이제 두세 시 동안 기다리면 미처 올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서로 짧은 시간동안 버티다가 오명항이 애써 참아서 떠나는 것을 멈추었는데, 이튿날 **진위현**에 이르러 밤에 자객의 변이 있었습니다. 포성이 잇달아 들리고 일군이 경계를 엄중히 하였으나 장사가 피로하여 북을 쳐서 일어나지 않으므로 신이 또 그대로 하루 동안 머무르자는 의논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오명항·조현명(趙顯命)은 다 망설였는데, 신이 저항하여 다투기를 '오늘 떠나면 가서 멈출 곳이 바로 적지이므로 또 어제 밤처럼 밤에 놀랄 것이고, 내일 청주에 이르면 적을 만나지 않아도 사기가 이미 다 떨어질 것이니 국가의 존망을 어찌하겠는가?' 하니, 신의 말을 따라 그대로 군사를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아침에 행군하여 **소사**에 이르렀는데, 오명항이 은밀히 신을 불러 말하기를, '정당한 말을 들으니 적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안성에 이를 것이라 한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정당한 것은 믿기 어렵다. 만약 지레 안성으로 가고, 적은 직산 길을 거쳐 이 곳을 지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종사(從事)는 다만 정도만 알고 기계를 모른다. 나는 내 계획을 행하겠다.' 하고 곧 군중에 호령하여 빨리 안성으로 향하였는데, 비바람이 불고 밤이 어두우며 포성이 갑자기 일어나서 군중이 밤에 놀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교련관(敎鍊官) 권희학

(權喜學)이 적군이 10리 안에 진을 쳤다고 비밀히 고하니, 오명항이 곧 중군을 시켜 가서 토벌하게 하여 장수를 베고 군졸을 격파하였습니다. 또 적이 죽산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 이튿날 아침에 군사를 정돈하여 앞다투어 가니, 적은 바람에 쓸리듯이 다 흩어지므로 치고 쏘아 섬멸하였습니다. 과천에서 한나절 동안 지체하고 진위에서 하루 동안 지체한 것은 신 때문입니다. 오직 저 번갈아 공박하는 말이 오명항만을 배척하니, 신이 어찌 차마 제 죄를 스스로 숨길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신의 죄를 명백히 바로잡으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따뜻하게 비답하였다.

『영조실록』 권22 5년 4월 25일 기해

임금이 이르기를 “소정(蘇鼎)·소면(蘇冕)이 육장사에 들었는가?” 하니 대사성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진위의 소가·권가와 안음(安陰)의 정가와 용인의 장가가 바로 역적의 장본이기 때문에 무거운 쪽으로 협의해 결정했습니다. 조백(趙栢)은 곧 진천(鎭川)의 파총(把總)인데, 적군들이 형을 받을 적에 모두들 말하기를 ‘파총 조백의 전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갔었다.’ 했습니다. 이 태발(李泰發)은 곧 영남의 역적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포수(砲手)를 거느리고 고령 현감 유언철(兪彦哲)을 거느릴 때에 살해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다.’ 고 하였습니다. 고몽량(高夢良)은 팔장사에 든 사람이고 이수익(李壽益)은 종실의 후예로서 동서로 뛰어다니면서 한 곳에 이르러 역적들을 따르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기어이 역적이 되기를 기약한 자입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30 7년 11월 17일 병자

경기별견어사(京畿別遣御史) 이종성(李宗城)이 돌아와 보고하였다. 임금이 불러보고 민간의 일과 수령의 진제(賑濟)의 잘하고 잘못함을 물으니, 이종성이 매우 상세하게 대답하였다. 또 말하기를 “굶주린 백성들이 이따금 도둑질을 하고 진위의 사이에서는 올려메어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아 일어나서 사대부로서 칼에 맞아 상처를 입은 자가 두 사람이나 됩니다. 마땅히 실질적인 혜택을 펼쳐서 용사(龍蛇)로 하여금 적자(赤子)가 되게 하고 토포사(討捕使)를 엄중하게 타일러 살피고 잡는 방도를 다하게 하고, 봄철 대동미의 상납하는 것을 감면하여 백성의 힘을 피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허락하였다.

『영조실록』 권31 8년 윤5월 13일 무술

진위현령 윤세관(尹世觀)을 이조로 하여금 정3품 당하관으로 하니 하고, 인천 부사(仁川府使) 조재박(趙載博)에게는 옷감을 내려 주고, 교동수사(喬桐水使) 구성익(具

聖益)에게는 말을 내려 주게 하였는데, 어사가 칭찬하였기 때문에서이다.

『영조실록』 권32 8년 9월 19일 계묘

헌납 박규문(朴奎文)이 상소하여 여러 신하들에 대한 처분이 정도에 지나침과 김상신(金相紳)을 삭출(削黜)시킨 것이 잘못임을 논하면서 아울러 도로 정지할 것을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순창군수 이형수(李衡秀)는 날마다 술마시는 것을 일삼아 정치가 잘못되었습니다. **평택현감** 심화(沈樞)는 선발한 장정들을 문초하여 은밀히 뇌물을 받는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으레 바치는 어염세를 억지로 돈으로 바치게 하고 있으니, 아울러 파직시킴이 마땅합니다. (줄임) 사리와 체면에 있어 견책과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비답하기를 “첫머리 아뢰는 일은 극히 무엄하며 두 고을의 수령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그 의도가 실로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심화는 의금부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겠다. (줄임)” 하였다.

『영조실록』 권34 9년 5월 19일 기해

경기감영의 죄인 조석관(趙錫觀)과 우춘(遇春)·해룡(海龍) 등을 석방하라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통영(統營)의 관노 우춘·해룡이 걸어서 천안에 이르러 조석관의 행동이 수상한 것을 보고 시험삼아 문기를 ‘근래 남원에 글을 내건 변고가 있었는데 그대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하니, 조석관이 놀라고 당황하며 안색이 변하자, 우춘 등이 이것으로써 **진위현**에 알려 왔으므로, 감사가 글을 올려 아뢰었는데, 여러 번 캐어 조사하였으나 끝내 단서가 없으므로 임금이 조석관은 특별히 석방하고 우춘·해룡 등은 정강이를 때리며 캐어물고는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영조실록』 권39 10년 9월 28일 경자

대신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불러보았다. 공조참판 조현명이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오명항은 국가에 큰 공훈이 있었으나 몸이 죽은 후에 의심하고 험뜯음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가운데에는 또한 신의 망령된 행동으로 인하여 덧붙여 말을 만들어 낸 자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오명항이 신축년·임인년 사이에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과 서로 맞서서 김일경이 이조에 들어가는 길을 막았고, 이 중환(李重煥)이 병조낭관(兵曹郎官)에 제수되는 것도 엄중히 배척하였습니다. 무신년 변란이 일어남에 미쳐 먼저 병판(兵判)에 제수했다는 말이 적도의 진술에서 나왔고 또 진중에 자객의 변고가 있었으니, 그가 흉적(凶賊)과 서로 버티고 있던 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위**에 당도하여 가도사(假都事) 김성옥(金聲玉)이 데리고 있는 **평택**의 장교가 차고 있는 화살통을 보니 병영의 표지가 분명히 있기에 신이 오

명항에게 청하기를 '장교를 짐짓 놓아주어 지나가게 하고 요로에 포수를 잠복시켜 죽이는 것이 가하다.' 고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깜깜한 밤에 군병을 동원시킬 수가 없으니, 그들이 공격하기를 기다려 방어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군중에 암호를 내려 경계를 엄중히 하고 기다렸습니다. 변란이 일어남에 미쳐 신이 장검을 쥐고 대장의 장막 안에 들어가 오명항을 대면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과연 어떠한가?' 하였는데, 또 보니 갑옷과 투구가 그 앞에 있으므로 신이 칼로 땅을 치며 말하기를 '공이 이 갑옷과 투구를 입고 싸우려 하는가, 아니면 도망치려 하는가?'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도망치겠는가? 군대의 문관들이 겁을 먹고 내어놓은 것이다.' 하고, 그 갑옷과 투구를 치우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또 신이 데리고 있는 서리(書吏)가 신에게 말하기를 '타고 온 역마(驛馬)가 포성을 듣고 놀라 달아났습니다.' 하였는데, 새벽에 보니, 말은 실제 달아난 것이 아니고 원수의 장막 앞에 매어 있었으므로 군중에 전해져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적을 평정하고 돌아옴에 미쳐 오명항이 말하기를 '내가 이 훈공과 명성으로써 만약 또 사졸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내가 몸둘 곳이 없을 것이다.' 하고 공격을 평가하기를 심히 간략하게 하니, 이에 사졸들이 원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어 혈뜰음을 만들어 말하기를 '진위에서 야경(夜警)할 때에 도순무사가 갑옷을 입고 말을 대기시켜 장차 도망치려 하였는데 조현명이 칼을 뽑아 다투었다.' 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의혹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오명항에게 의심을 둔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신의 마음이 이 일로써 가슴이 막혀 답답한 까닭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오명항을 의심하였겠는가마는, 이제 경의 말을 들으니 더욱 미심쩍은 것이 확 풀린다." 하였다.(줄임)

『영조실록』 권47 14년 정월 11일 갑자

전광도(全光道)를 다시 전라도로, 강춘도(江春道)를 다시 강원도로 하고, 충원(忠原)·금성(錦城)·원성(原城)·남원·이천·장흥·담양·예천·풍기·용인·진위 등의 고을을 모두 다시 본래의 명칭으로 승격해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대개 역적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명칭을 낮추었던 것인데, 이제 이미 10년의 시한을 채웠기 때문이었다.

『영조실록』 권52 16년 8월 5일 계묘

수원부사 이정보(李鼎報)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본부는 평원의 넓은 들만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면으로 적을 받는 지역이니, 마땅히 부성(府城)을 쌓아 적을 막는 방어 시설로 삼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의 마군(馬軍)은 각자

말을 갖추게 하고 있는데, 말이 있는 사람은 열에 한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경군문(京軍門)의 예에 의거하여 홍원·대부(大阜) 두 목장의 말을 내려 준다면 일이 편 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군 1인마다 보인(保人) 2인씩 획급하여 말을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게 하소서.” 하였다. (줄임) 비답하기를 “조정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54 17년 7월 18일 경진

충청도의 비인·평택·직산·서천 등 네 고을에서 해일이 발생하였다.

『영조실록』 권54 17년 9월 16일 무인

공홍도(公洪道) 평택 등지에 해일이 발생하여 평지에 수심이 한 길 남짓이나 되었다.

『영조실록』 권72 26년 9월 13일 임자

충청도 사대부와 평민으로 80세 이상인 사람에게 품계를 올려주고 과천·광주·수원·진위·양성도 일체로 거행하게 하였는데, 정유년의 예를 쓴 것이었다.

『영조실록』 권72 26년 9월 14일 계축

임금의 행차가 진위현에서 머물렀다. 수찬 이유수(李惟秀)에게 명하여 군중의 폐단을 올래 살피게 하였다.

『영조실록』 권72 26년 9월 15일 갑인

임금이 소사를 지나면서 교남(橋南) 들판의 풀을 바라보며 전교하기를 “이곳이 명나라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왜적을 격파한 곳인가?” 하였다. 승지 황경원(黃景源)이 대답하기를 “경리가 몰래 우백영(牛伯英)·양등산(楊登山)·해생(解生)·파귀(頗貴) 등을 보내 이곳에서 왜놈을 격파하고, 또 파새(擺賽)에게 2천 기병을 거느려 보내 잇달아 후원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을 세우고 오랫동안 감격해 하였다.

『영조실록』 권87 32년 2월 16일 갑인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 경기 암행어사 정상순(鄭尙淳)과 비국 당상 이성중(李成中)·김치인(金致仁)을 불러보았다. 임금이 방납(防納)과 양호(養戶)의 폐단을 물으니, 정상순이 말하기를 “이 일은 고을마다 모두 있었습니다.” 하였다. (줄임)

임금이 방납에 폐해가 있다 하여 통진·진위·금천(衿川)·부평·양천·김포 등 여섯 고을의 수령을 아울러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진위는 환곡 곡식에 빈껍질이 많다 하여 먼저 파직하고, 감사는 능히 양호를 살피지 못하였다 하여 더욱 무겁게 하였다.

『영조실록』 권91 34년 3월 27일 계축

임금이 공묵합(恭默閣)에 나아가서 호서암행어사 이경옥(李敬玉)을 불러보았다. 월성위(月城尉)의 장례 때에 예산의 군정(軍丁) 12명이 우연히 죽게 되었었는데, 그 고을 수령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지 아니한 까닭으로 해당 현감을 잡아들여 조치하고, 그 12명은 본도로 하여금 훈전(恤典)을 거행하게 하며, 그 처자에게는 1년을 복호(復戶)하고 도사를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다. 평택과 수원에서는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말을 주라고 명하였다.

『영조실록』 권92 34년 12월 17일 기사

임금이 공묵합(恭默閣)에 나아가니, 승지들이 각도의 고과 심사를 가지고 임금을 뵈었는데, 이천·마전·진위·창성·위원(渭源)·진잠(鎭岑)·평릉(平陵)의 등급을 최하로 하였다.

『영조실록』 권96 36년 7월 20일 임술

왕세자가 진위에 이르러 묵었다. 밤에 천총으로 하여금 군병을 점검하고 민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임시척(任時儻) 등이 피리를 불어 군대를 점호하였는데, 모시고 따라온 여러 신하가 만나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숙직하여 지키는 사리와 체면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환위군(環衛軍)을 피리를 불어 부르니 일이 지극히 놀랄 만합니다. 군율(軍律)으로써 처단할 것이니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명하기를 “군율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나 신칙함이 없을 수 없으니 잡아들여 각각 곤장을 쳐라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96 36년 8월 2일 계유

왕세자가 진위에서 묵었다.

『영조실록』 권98 37년 11월 20일 갑인

홍낙순(洪樂純)을 진위사진어사(振威查陳御史)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영조실록』 권99 38년 2월 29일 기사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진찰하였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불러 보았다. (줄임) 우의정 윤동도(尹東度)가 경기감사의 보고로 인하여 우러러 청하기를 “진위와 부평의 토지를 고쳐 측량할 때에 드는 비용은 해당 고을의 결전(結錢)을 계산해 제하여 주고 부족한 숫자는 해당 고을에 있는 상진미(常賑米)를 계산해 감하여 주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줄임)

『영조실록』 권99 38년 5월 19일 임자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진위 양전어사(量田御史) 홍낙순을 불러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전의 등급이 높은 것을 낮추어 주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으나 낮은 것을 높이면 백성들이 반드시 원망하게 된다. 『주역』에 이르기를, ‘위의 것을 덜어서 아래에 더하는 것을 익(益)이라 하고 아래 것을 덜어서 위에다 보태는 것을 손(損)이라 한다.’ 라고 하였다. 지금 진위의 전부(田賦)를 6등에서 5등으로 하였으니,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홍낙순이 대답하기를 “모두 부모(父老)들의 공언(公言)을 따라서 등급을 정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는 비록 나라를 위해서 등급을 더했으나 내 뜻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00 38년 11월 8일 병인

특별히 부수찬 김재순(金載順)을 평택현감에 임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평택은 사람을 얻었다.” 하였다.

『영조실록』 권124 51년 정월 9일 정사

평택현감 유한장(兪漢章)을 남해현에 귀향보내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조사충(趙思忠)이 아뢴 바로 인하여 유의양(柳義養)에게 몰래 살피도록 명하였는데, 어린아이로 장정을 채운 것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20. 『정조실록』

『정조실록』 권1 즉위년 7월 8일 정축

(줄임) 집의 이일증(李一增)이 또 아뢰기를 “평택현감 홍빈(洪彬)은 노상 역적 정후겸의 곁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의 앉는 자리가 거의 모두 헤어지게 되었었고, 또한 일찍이 그의 효시(嚆矢)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사한 무리를 비록 책하질것

도 없기는 합니다마는 시종의 반열에 들 수는 없으니, 양사(兩司)의 천망(薦望)에서 고치기 바랍니다.” 하였다. (줄임)

『정조실록』 권5 2년 5월 5일 갑자

경기·호서·영남·관동 4도의 진제(賑濟)를 정월부터 시작하여 베풀다가 이에 이르러 진휼을 마쳤다.【호서(湖西)의 대흥(大興)·한산(韓山)·**평택**·면천 등의 고을과 성환(成歡)·울봉(栗峰) 등의 역(驛)과 마량(馬梁)·안흥(安興)·평신(平薪)·서천포(舒川浦)·소근(所斤) 등의 진(鎭)은 기민이 2만 9천 5백 31구이고 진곡이 2만 3천 3백 97석이었다(줄임).]

『정조실록』 권7 3년 5월 29일 임자

경기·관동·영남·관북·관서·호서에 진구(賑救)를 베풀었는데, 정월부터 진구를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구를 끝마쳤다. (줄임) 충청도는 단양·충주·청산(靑山)·영동·**평택**·청풍·영춘(永春)·황간(黃澗)·보은·제천·청안(淸安)·옥천·회인(懷仁)·음성·서원(西原)·연풍·괴산·회덕(懷德) 등 고을과 울봉(栗峯)·연원(連源) 등 역인데 기민의 총수는 1만 2천 38구(口)이고 진곡(賑穀)은 8천 9백 30석이다.

『정조실록』 권7 3년 3월 27일 신해

차대(次對)하였다. 호서암행어사 박우원(朴祐源)이 돌아와 보고하면서 보고서를 올려 병마절도사 이정병(李鼎炳), 병마우후(兵馬虞侯) 이윤원(李潤元), 청양현감 이용중(李龍中), 제천현감 송계상(宋繼相), 면천군수 정동현(鄭東顯), 보은현감(報恩縣監) 서퇴수(徐退修), 서산현감 박지홍(朴志泓), **평택현감** 유한응(兪漢膺)·**진위현령** 박좌원(朴左源), 서원영장(西原營將) 이형묵(李亨默)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정과 형편에 대해 잘못을 따져 캐물었다. 이정병·이윤원·이용중·송계상은 잡아와 신문하고 정동현 등 9인은 파직시켰는데 이조와 병조의 복주(覆奏)를 따른 것이다.

『정조실록』 권8 3년 8월 3일 갑인

임금이 장차 영릉(寧陵)에 절하여 뵈려고 이날 남한행궁(南漢行宮)에 머물렀다. (줄임) 임금이 말하기를 “본영의 둔전은 얼마인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광주에 있는 둔전이 여섯 곳이고 과천에 있는 것이 한 곳이고 용인에 있는 것이 세 곳이고 양지·영평(永平)·이천·지평·원주·홍천·**평택**·충주·김해·창원·부안·

장흥·해주·정주·직산·진위·영동·재령·횡성에 있는 것이 각각 한 곳이니, 합하여 스물아홉 곳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병신년 즉위한 처음에 명하여 여러 궁방(宮房)에서 질수(折受)하는 것을 폐지하고, 재령의 둔전을 궁방과 서로 다투는 폐단을 깊이 알기 때문에 특별히 명하여 본청에 도로 붙이게 하였는데, 참으로 군항(軍餉)은 체모가 증대하여 궁장과 서로 대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였다. 서명응이 말하기를 “신의 아우인 좌상(左相)이 본청에 있을 때에 임금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 이 둔을 다시 본청에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잇달아 교련관(敎鍊官)·군관 가운데에서 둔감(屯監)을 차출하여 보내어 해마다 쌀로 세를 거두었는데 거두는 것이 거의 1천 금에 가깝고, 그 밖에 독을 막고 배를 바다에 띄우는 비용은 이 가운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본영에 이 돈이 없었으면 손댈 데가 없었다 할 것인데, 다행히 특별한 은혜를 입어 이처럼 도로 붙이는 일이 있었으니, 본영에 유익한 것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하였다.

『정조실록』 권15 7년 5월 23일 계속

경기·호서·영남에 진휼청을 설치하였다. 1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휼을 끝마쳤다. 경기의 관청이 진휼한 곳은, 광주·여주·파주·수원·진위·용인·이천·양성·양지·포천 등의 고을과, 화량(花梁)·덕포(德浦)·덕적(德積)·주문(注文)·장봉(長峰) 등의 진이었다. 총 굶주린 백성은 55만 52명이었고, 진휼로 들어간 곡물은 2만 5천 2백 석이었다. 호서의 관청에서 진휼한 곳은 수군절도영, 평택·천안·직산·보령 등의 고을과 소천(所千), 평신(平薪), 마량(馬梁), 서천포(舒川浦) 등의 진과 성환, 울봉, 연원, 이인(利仁) 등의 역참이었다. 총 굶주린 백성이 40만 6천 8백 89명이었고 진휼에 들어간 곡물은 2만 3천 9백 석이었다. (줄임)

『정조실록』 권17 8년 5월 22일 병자

호서에 진휼을 베풀었는데, 2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진휼을 마쳤다. 공진(公賑)에는 태안·평택·서산·아산·서천·직산·비인·전의(全義)·덕산(德山) 등의 고을과 병영·수영·행영과 평신(平薪)·소근(所斤)·마량(馬梁)·서천포(舒川浦) 등의 진과 성환·이인(利仁)·울봉 등의 역에 총 기민 65만 6천 2백 91구이고, 진곡 4만 9천 6백 38석이었다. 사진(私賑)으로, 청양(靑陽)·이성(尼城)·연산(連山)·진잠(鎭岑) 등의 고을의 총 기민 2만 3천 9백 15구, 진곡 1천 7백 46석이다.(줄임).

『정조실록』 권19 9년 2월 29일 기유

숙장문(肅章門)에 나아가 직접 심문하였다. 김이용(金履容)에게 묻기를 “오늘 연석

(筵席)에서 판의금부사가 보고한 가운데 첫째 사건을 비록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라 하더라도,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네가 고발한 것이다. 옥사를 국문하는 것은 사제
가 중하므로, 먼저 고발한 사람을 국문하는 것이 응당 시행해야 하는 관례이다. 일
일이 다시 고발하여 증거를 세우며 신문하는 데에 증거가 될 자료로 삼게 하라.” 하
였다. 진술하기를 “신이 경연의 자리에서 이미 아뢰 바 있지만, 신의 이성(異性) 4촌
이경륜(李敬倫)이 이율과 서로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신도 이경륜의 집에서 서로 만
났으나, 한결같이 병신년에 이율이 상소를 주도한 다음부터는 신은 이경륜과 **진위
현령** 조익현(趙翼鉉)과 모두 서로 교제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심술이
너무나 교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줄임)” 하였다. (줄임).

『정조실록』 권23 11년 4월 19일 병진

이때 기호 사이에 갑자기 유언비어가 떠돌았는데 하루 사이에 전해지며 인심이
동요하였다. 혹 ‘오랑캐의 기병이 갑자기 이르렀다.’ 고 일컫기도 하고, 혹은 ‘해적이
가까운 곳에 정박하였다.’ 라고 하기도 하여 주민들이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애는 끌
고서 도망하여 마을이 거의 비게 되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되었
다. 충청도관찰사 김광묵(金光默)이 아뢰기를 “이달 14일에 길에서 전하는 말을 듣
건대 수원과 **평택**의 경계가 접한 곳에서 갑자기 유언비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소요
하여 온양·아산·천안·직산 등의 고을에까지 전해진 말이 파다하였습니다. 신이
진실로 한때의 근거없는 말이므로 놀라거나 의심할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와 같은 농사철을 당해서 민간이 동요하는 것이 또한 매우 민망스러워 한편으로는
부근의 여덟 고을에 공문을 보내 알아듣게 타일러 진정시키게 하고, 한편으로는 믿
을 수 있는 심부름꾼을 파견하여 수령의 조치를 물어가며 찾게 하였더니, **평택현
감** 이형필(李衡弼)이 갑자기 겁을 내어 이노(吏奴)들로 부대를 만들고 각을 불어 불
러들인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비록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 소리에도 미혹됨이 있게 마련이니 관장(官長)인 지는 마땅히 진중하게
단속하여 진안시킬 방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런 조치를 취
하여 더욱 인심을 경동케 하였으니 아주 망령되고 경솔합니다. 청컨대 해당 현감을
파직하소서.” 하였다. 하교하기를 “해당 수령의 일은 비록 매우 놀라우나 잘 다스린
다는 명성이 있는 사람을 지레 교체하는 것은 애석하다. 파직하지 말고 먼저 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라.” 하였는데 오래지 않아서 김동철(金東喆)의
변고가 있게 되었다.

『정조실록』 권23 11년 5월 23일 기축

경기·영남·호남·호서·관동·관북 여섯 도의 설진(設賑)을 정월부터 베풀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휼을 마쳤다. (줄임) 호서는 태안·온양·**평택**·아산·직산·석성·홍산·정산·부여·음성·신창(新昌)·비인·청양·공주·서천·보령·홍주·결성(結城)·천안·전의·예산·한산·남포(藍浦) 등의 고을과 수영·행영·마량(馬梁)·서천포(舒川浦)·소근(所斤) 등의 진, 성환·이인 등의 역의 총기민이 27만 9천 8백 77구이고, 진곡이 1만 7천 75석 영이며, 사진(私賑)은 임천(林川)·은진(恩津)·연산(連山)·진잠(鎭岑) 등의 고을과 금정역(金井驛)의 총 기민이 3만 2천 6백 57구이고, 진곡은 2천 3백 38석이다. (줄임)

『정조실록』 권25 12년 4월 23일 을묘

특명으로 송민재(宋民載)·박서원(朴瑞源)을 귀향 보내고 정만시(鄭萬始)를 삭직하였다. 전교하기를 “세상에 어찌 두 하적이 있겠느냐는 그때의 하교가 분명하게 기주(記注)에 실려 있다. 그 뒤로 들어와서 아뢰고 나가서 상소하는 신하들이 모두 천지 고금에 책이 있는 이래로 일찍이 없던 포악한 도적 말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거사(擧似)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하여, 저 만세토록 있을 수 없는 임금의 원수와 나라의 적을 여느 주토(誅討)의 죄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난번 송민재가 이노춘을 논죄한 데에는 두 하적이 나왔다고 하였고, 박서원이 오익환을 논죄한 데에는 한 하적이 나왔다고 하였다. 저 이노춘과 오익환이 진실로 죄가 있으나, 그 죄에는 따로 감정(勘定)할 죄안과 적용할 죄목이 있다. 까마귀와 솔개가 올빼미와 부엉이에 대해서와, 여우와 너구리가 이리와 승냥이에 대해서 비류(比類)가 될 수 없는데, 이것으로 저것에 비교하는 것은 어찌 한 치의 나무를 큰 기둥에 비교하는 정도뿐이겠는가. 가령 송민재와 박서원의 말대로라면 극적이 어찌서 이리 많다는 말인가. 이로 미루어 볼 때 극적 운운한 말은 단지 생각없이 함부로 지껄인 말에 불과할 뿐이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앞뒤를 생각지 않고 붓 가는 대로 써내려가 윤강(倫綱)과 의리가 스스로 쇠퇴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버릇을 조기에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전 교리 송민재와 전 정언 박서원을 모두 **평택현**으로 귀양보내라. (줄임).” 하였다.

『정조실록』 권29 14년 2월 26일 정축

차대(次對)가 있었다. 문·무과에 새로 합격한 자들을 불러 보았다. (줄임)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신이 작년에 호서 지방에 내려갔을 때 **평택**을 지나는

길에 한 여인이 땅을 치며 하늘에 울부짖으면서 원통한 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신이 사람을 시켜 물어보았더니 그는 바로 성태주(成泰柱)의 처였습니다. 듣건대, 그는 시집간 지 사흘 만에 곧 자기의 지아비가 먼곳에 귀양을 갔는데 지금까지 14년이 되도록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혹시 위에 보고되는 일이 있을까 하여 서울에까지 따라와서 여러 날이 지나도록 신의 집에 대고 애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비록 좋은 말로 위로하여 보내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그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번에 들으니, 그가 과연 글을 올린 결과 적당하게 처분하였다고 하니 그에게 있어 실로 매우 감격스러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을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 성태주는 병신년에 홍계희(洪啓禧)를 문묘에 배향하자고 소를 올려 청하였는데, 그때 이의철(李宜哲)·조중희(趙重晦)와 같은 사람들은 소를 올려 홍계희를 공격하여 배척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홍계희는 고 판서 이재(李緯)의 문생으로서, 이재의 문집 가운데 자기를 비난한 것이 있으면 모조리 삭제해버렸다. 이 때문에 이재의 문도들에게 크게 공격을 받았고, 그후 홍계희의 집안은 드디어 악역으로 낙인 찍히고 성태주 또한 귀양가는 처벌을 받았다. 이제 와서 그의 처가 비록 이처럼 원통하다고 호소를 하지만, 홍계희를 위해 서원에 배향하자고 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변에 석방할 수 있겠는가. 그 처를 그 지아비의 배소에 함께 유배하려고 하였으나 만약 너무 오래도록 귀양살이를 시키면 그의 늙은 시어미를 봉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까닭에, 단지 도형(徒刑) 2년으로 참작하여 처벌하였다. 지난번에 홍섭(弘燮)의 제부(弟婦)가 호소하였을 때에도 특별히 그 지아비의 유배지에 함께 유배하였으니, 이 또한 화기(和氣)를 인도하는 방도이다.” 하였다.

『정조실록』 권30 14년 7월 10일 무자

충청도관찰사 정존중(鄭存中)이 장계하였다. “지난달 16, 7일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서 바닷물이 넘쳐난 것이 평택·직산·서산·태안 등 4개 고을은 비교적 많았고, 천안·홍주·해미·결성·신창·면천·보령·비인·당진·남포(藍浦) 등 10개 고을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신은 삼가 전교한 뜻을 공문으로 알린 후 피해가 극심한 민호에 대해서는 당년 신역과 환자곡을 감면해주고 균역청의 납세도 탕감하였으며, 돌보아 구제하면서 안정시키는 데 관심을 두어 살피며 신칙하고 있습니다.”

『정조실록』 권31 14년 11월 12일 무자

남양·안산·진위·용인 4개 고을 수령을 현룡원(顯隆園) 제관으로 번갈아 임명할 것을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33 15년 11월 3일 갑술.

평택현감 이승훈(李承薰)과 양근(楊根) 사람 권일신(權日身)을 잡아다 문초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전 거주서 홍낙안(洪樂安)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신이 무신년 궁궐 뜰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 사학(邪學)을 크게 배척한 뒤에 서학(西學)을 하는 자들이 신을 원수처럼 질시하여 서로 교류가 끊어진 것이 마치 다른 나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책을 간행하고 베낀 것을 어찌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즈음 들으니 이 학술이 다시 성해져서 활자로 간행됐다는 말이 역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달포 전에 전 승지 이수하(李秀夏)가 호서에서 상경하여 신의 집에 머물렀는데, 서학에 말이 미치자 신에게 근심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 고향에는 이런 근심이 더욱 심하다. 베낀 책들을 집집마다 감추어 두었을 뿐 아니라 간간히 활자로 인쇄한 책도 있다 한다. 내가 비록 목격하지 못하여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우나, 매우 성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도 형세를 보아 상소를 올리려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종전에 전해 들은 것은 비록 하천배나 아녀자들의 근거없는 말이었지만, 이것으로 참고해보면 반드시 근거의 뿌리가 있는 것임을 알겠기 때문에 대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사롭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만약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심지어 백간(白簡)에까지 오를 줄 미리 짐작했다면, 어찌 한 글자 반 구절이라도 신중히 하지 않았겠으며, 또 어찌 감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 이외에까지 언급했겠습니까. 신이 대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단지 서로 흉허물없는 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어렴풋이 들은 말까지 빼놓지 않고 낱낱이 말하였으며, 편지를 보낼 때 또 작은 서찰을 마련해 본 뒤에는 즉시 돌려주기를 요청하였고, 신 역시 감히 한 사람에게도 전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이 답서를 보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자 와서 보여달라는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혹 말하기를 「대신의 집에서 이미 대략은 보았다.」 하였기에 신도 역시 굳이 피하지를 못하고 비로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에 두루 유행된 것을 신의 허물로 돌리니, 신은 역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또 일전에 대신이 그 아들을 신에게 보내 책을 간행했다는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온 곳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설령 간행한 자가 있더라도 금령(禁令)이 나온 뒤에는 반드시 자취를 숨길 것이니, 내가 담당자가 아닌 바에야 어떻게 탐지해 내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잇따라 대간이 소장을 올려 신문하기를 청하면서 기필코 신에게 거짓으로 속였다는의 죄를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을 살핌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 학술을 전문으로 공부한 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니, 그러면 간행 여부를 한번의 조사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간은 성스러운 조정의 이목을 담당할 관원인데, 어찌 이

학문을 한 사람의 이름 하나를 전혀 모른 채 반드시 신처럼 귀멀고 눈먼 사람에게 얻어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간의 신하가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신이 그것을 진술해 볼까 합니다. 간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개 그 아버지의 사행(使行)에 따라가 수백 권의 사악한 책을 널리 가져와 젊고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가르친 자가 있으니, 바로 **평택 현감 이승훈**이 그 사람입니다. 신은 이승훈과 본래 사이가 좋았지만, 이 일이 있는 뒤로는 사사로운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분명히 이승훈은 을사년 봄에 스스로 형조에 가서 변명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누우칠 줄 모른 채 정미년 겨울에 몰래 성균관 근처 마을에 들어가 젊은이들을 속여 유혹하면서 그 가르침을 널리 폈습니다. 신의 친구인 전 지평 이기경(李基慶)이 직접 보고 돌아와 신에게 걱정을 하며 탄식을 하기에, 신은 「성균관이 어떤 곳인데, 어찌 이런 무리들이 이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며 곧바로 동지(同志)들을 불러모아 글을 올려 엄히 죄를 들추어 꾸짖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훈이 곧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신이 미처 글을 올리지 못하고 이어 임금님의 물음에 답하는 글에서 진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학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모두 이승훈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책을 간행했는지의 여부를 이승훈이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줄임)

『정조실록』 권33 15년 11월 8일 기묘

이승훈을 삭직하고, 권일신은 사형을 감해서 위리안치(圍籬安置)하도록 명하였다. (줄임) 또 진술하기를 '이단을 물리치는 글은 을사년 봄에 지었는데, 원래의 초고는 **평택** 부임소에 가지고 가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술을 드리자니 정신이 혼미해서 전편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을 말한다면 「천하의 학문은 정사(正邪)를 가릴 것 없이 이해 관계가 있는 뒤에야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여 따르게 마련이다. 만약 서학에 천당·지옥의 설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어찌 꽤관잡설(裨官雜說) 보다도 못하게 여겼겠는가.」라고 한 것이 있고, 「서양에서 온 학술은 반드시 천당과 지옥으로 주를 삼아 천하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한다.」 한 것이 있고 「서학에 가짜 천주가 횡행한다는 말이 있으니, 요사스럽고 허망하기가 이와 같은 것이 없다. 이미 하늘이라 말하면서 가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반드시 그 학설로 그 학설을 깨겠다.」 한 것이 있습니다. 일찍이 을사년에 형조에서 서학을 다스릴 때 이 글을 지어 그때 형조판서였던 김화진(金華鎭)에게 보내 보여주었고, 또 책을 태운 뒤에 시를 짓기를 「천지의 경위(經緯) 동서를 갈랐는데, 무덤 골짜기 무지개 다리 아지랭이 속에 가렸어라. 한 줄기 심향(心香) 책

과 함께 타는데, 멀리 조주묘(潮州廟) 바라보며 문공(文公)을 제사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 글과 시야말로 더욱 제가 이단을 물리친 뚜렷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헤아려 결정하소서.” 하였다. (줄임)

『정조실록』 권34 16년 2월 28일 정묘

김희채(金熙采)를 **평택** 안핵어사로 삼았다. 당초 이동욱(李東郁)의 아들 이승훈이 서양의 천주교에 물들어 **평택** 고을에 사는 3년 동안 공자의 사당에 참배하지 않았다. 권위(權瑋)라는 자가 태학생(太學生)에게 이것을 말하니, 태학생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이름을 청금록(靑衿錄)에서 지워버렸다. 이때에 이르러 그 아우 이치훈(李致薰)이 임금의 행차 앞에서 상언하여, 태학생이 권위와 더불어 자기 형을 거짓으로 모함한 원통한 일을 풀어 신원해 줄 것을 청하였다. 형조가 회계(回啓)하기를 “사람 사이의 논의가 위로 조정에까지 번거롭게 하는 일이 원래 없으니 그대로 두소서.” 하였다. 임금님께서 결정하기를 “이미 그 내용을 들었는데, 처결도 부결도 아닌 채로 놔두어 범법한 자를 심리하지 않고 범법하지 않은 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마땅히 조사할 사람을 특별히 보내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하였다. 마침내 김희채에게 명하여 가서 조사하게 하였다. 명령하기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이니, 그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금수이다. 스승 또한 그러한데 더구나 만대의 스승인 공자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도적이 후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른바 이승훈이란 자는 간담이 얼마나 크길래 참으로 절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가. 사민들의 수많은 시선 속에 누구를 속이겠는가. 결코 모든 백성들의 수많은 눈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니 공자의 사당에 절하지 않았다는 말은 평상적인 이치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이 일이 근래에 와서 시끄러운 단서가 될 줄 일찍 알았다면 어찌 지금까지 즉시 엄격하게 조사하고 끝까지 밝혀내지 않았겠는가. 지금 형조가 상언에 대해 회계(回啓)한 것으로 인하여 겨우 결정을 내렸으나 본 사건은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니, 잠시라도 방치해 둘 수가 없다. 이승훈이 향교에 배알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을의 유생이나 향교의 생도나 하인이나 백성들 중 그 실제의 상황을 듣고 본 자가 있을 것이니, 이 한 조목을 마땅히 먼저 조사하라. 그리고 향교를 수리하여 복원할 때 고을의 전례가 옛부터 예를 거행했는지 거행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또 마땅히 소급하여 상세히 조사하면 고을의 선비나 향교 선비의 공론이 즉시 하나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권위가 한 짓이 과연 상언한 내용과 같은지, 승보시(陞補試)에 뽑히지 않자 억지를 부리는 무리에 섞여 들어가 마치 사적인 감정을 멋대로 부리는 자와 같았는지의 곡절을 낱낱이 조사한 뒤라야 이승훈의 죄를 다스리고 벌을 주는 것

이 당연한지 부당한지를 비로소 참작해 결정할 수 있다. 이 일은 한 명의 감사와 한
 들의 조사 관원이 개인적으로 거행할 일이 아니므로 전 교리 김희채를 충청도 평
택 고을의 안핵어사로 임명한다.” 하였다.

『정조실록』 권34 16년 3월 14일 계미

평택 안핵어사 김희채가 명령을 수행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기를 “평택의 전 현감
 이승훈이 사당을 보살피고 공자의 신위에 참배할 때에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권위·조상본(趙常本)·정상훈(鄭尙勳) 등이 거짓으로 모함했는지 거짓으로 모함하
 지 않았는지를 신이 끝까지 조사하고 세밀히 탐문하였습니다. 이승훈이 공자의 사
 당을 참배할 때에 향을 피우고 절하는 예를 의식대로 행한 것은, 재실의 선비들과
 향교의 생도들이 홀기 부르는 반열에 동참하였고 고을의 아전과 지키는 노복들이
 절할 때에 함께 보았으니, 알성할 때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헛말입니다. 사당
 을 보살필 때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한 조목에 대해서는 비록 오래 되어서 상고할
 만한 문적이 없으나 이미 향교 선비들의 증거할 만한 말이 있으니, 이는 바로 본읍
 에 유래해온 전례입니다. 대저 평택은 신유향(新儒鄉)과 구유향(舊儒鄉)이 서로 다
 투어 원수간이 되었는데, 이승훈이 부임한 뒤에 신유(新儒)로서 왕래하는 자를 하나
 도 영접하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게 송사하는 것도 간혹 금지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유들과 원한을 맺게 되었는데, 그중 권위는 자취가 본래 동에 번
 짝 서에 번쩍하고 수완 또한 몹시 음흉한 것이 바로 익로(翼魯)와 더불어 조금도 다
 를 것이 없었으므로 세상의 지목을 받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방의 세금
 을 함부로 받아들여 쇠잔한 백성들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이미 전 관리의 배척을
 받았으며, 소요를 일으켜 자리를 다두고 향교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 또 전 관리 때
 문에 꾀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백방으로 독기를 품고 반드시 유감을 풀려고 하였
 습니다. 이에 이승훈이 죄를 당한 뒤에 그의 동류들과 함께 황당한 말을 지어내어
 시골에서는 흥병원이, 서울에서는 조상본이 기꺼이 동조하여 이르는 곳마다 거짓
 말을 퍼뜨렸으니, 그 주범과 종범을 논한다면 권위가 바로 괴수이고 흥병원·조상
 본·정언택(鄭彦宅)은 추종자들입니다. 권위는 흉악하기 짝이 없고 간사하기가 더
 욱 심하여 여러 가지의 죄악을 줄곧 승복하지 않다가 심문할 때에 그대로 형장 아
 래에서 죽었으니, 비록 몹시 분하지만 지금 따질 수 없습니다. 흥병원은 권위의 사
 주를 받아 시키는 대로 따라 하여 80세에 가까운 그 아비를 통문을 발한 주모자로
 만들어 보고 듣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니, 그의 심보를 추구해 보면 마디마다 헤아
 릴 수 없고 윤리로 논하더라도 참으로 통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조상본(趙常本)은
 본래 교활한 성품으로 남모르게 고을의 권력을 잡고 어리석은 백성의 소장(訴狀)을

대신 지어 전 수령을 모함하였고, 관리를 모욕하는 토착민을 편들어 멋대로 통문을 돌렸습니다. 아전 한 명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이로 인해 노여움을 품고 권위에게 붙어 서로 동조하여 서울과 지방 각지에 전파하였으니, 지극히 음흉합니다. 정언택(鄭彦宅)은, 말을 바꾸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비록 권위의 지시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말을 지어낸 근본은 이미 정언택에게 있으니,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상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훈은 갑자기 풍문을 듣고는 남을 모함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작정하고 거짓 이름을 함부로 기록하여 성균관에 통문을 보냈으며, 말을 지어내고 소요를 일으키며 과거 시험장에 함부로 들어가 기필코 남을 해아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본 고을의 향교가 돌린 틀림없는 진짜 통문은 믿지 않고, 다만 사가의 애매모호한 짧은 편지를 빙자하여 정론이라 일컬으며 계속 다투어 왔으니, 그가 한 짓을 논한다면 지극히 망령됩니다. 홍병원·조상본·정상훈 등은 비록 모사를 꾸민 권위와는 차이가 있으나 추종하며 남을 모함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3명의 죄인은 엄한 형장을 두 차례 친 후에 본도의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한 차례 형장을 더한 후에 법률에 의해 멀리 귀양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정언택은 엄한 형장을 한 차례 친 후에 똑같이 관문을 보내 법률에 의해 귀양보내게 하였습니다. 구윤중(具允中)은 비록 말을 지어낸 죄는 벗어났으나 본래 간사한 짓을 했다는 죄목이 있으니, 한 차례 정강이를 때리며 케어 묻고 놓아보냈습니다. 이성(李城)과 신상오(申尙五) 등은 공자의 신위에 참배할 때의 재임(齎任)으로서 이전에 신유(新儒)들의 모함을 당하였는데, 조사함에 미처서 이 일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용서하여 놓아보냈습니다. 고을 아전 이정길(李貞吉)의 편지 내용 중 비록 '절하지 않았다. [不拜禮]는 3자가 변환하여 모함을 꾸민 화근이 되었으나 '저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는 한 구절에서 지극히 분개하는 뜻을 경험에 비추어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내놓은 답서는 실로 변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에 조사한 뒤에 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중순(金重淳)은 권위를 초청하여 술을 권하며 문답하였고, 조기홍(趙基泓)은 앞서 편지 내용을 끄집어내어 듣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뒤에는 변명하는 답장으로 근거를 만들게 하였으며, 조덕함(趙德涵)은 처음에는 조기홍을 탐문하여 선비들의 공론을 격동시키고 끝내는 또 정상훈을 충동시켜 소요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상 3명은 이미 죄인의 진술에서 나왔고 상세히 원안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그 자리에서 속속들이 캐물어야해야 될 것이었으나, 혹은 조정의 관리이고 혹은 서울에 있어 상세히 캐물어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해당 관서에 명하여 처리한후 보고하라고 하였다.

『정조실록』 권34 16년 3월 15일 갑신

차대하였다. 임금에 이르기를 “권위에 관한 일은 지난번에 명백히 말한 바가 있다. 이른바 익노(翼魯) 무리들은 다만 조정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원수이다. 만약 이 무리들의 속임수가 아니었다면 어찌 연전에 강교(江郊)에서 밤을 새우며 대소가 소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겠으며 현재의 일이 어찌 형제가 서로 보전해주지 못해 백성의 놀림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겠는가. 홍국영(洪國榮)이 축출당한 것은 바로 정유년에 그가 인성군(仁城君)의 옛 일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말을 구한 적이 없었는데 고 정승 정홍순(鄭弘淳)이 상세히 알고는 일찍이 연석에서 아뢰기를 ‘사실을 신도 또한 기록해 두었습니다.’ 고 하였다. 권위같은 자가 역모에 동참한 것이 비록 역적 구선복(具善復)처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익만을 노리고 교제한 비루하고 종잡을 수 없는 자취는 죄상이 형조의 문안에 명백하게 실려 있다. 그가 어찌 감히 성균관에 출입하며 선비들의 공문을 간섭하는가. 설령 이승훈이 누명을 벗어나지 못해 그를 범으로 다스리게 된다 하여도 권위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 금일 신하된 자는 마땅히 가차없이 엄하게 토죄해야 한다. 그런데 김문순(金文淳)은 자신이 형조판서가 되어 지난날 임금의 명령을 듣고도 심상한 일로 보고 공자의 사당에 관계된 일이라 핑계하였으며, 지금 이 회계(回啓) 중에도 아예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어찌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주야로 보는 바는 오직 경서 뿐이고 성인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나의 고심이라는 것을 조정 신하들은 거의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도를 붙잡을 곳에서는 정도를 붙잡고 엄히 막아야 할 곳에서는 엄히 막은 후에야 국가가 국가 노릇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홍낙안(洪樂安)의 일 또한 몹시 놀랍고 통탄스럽다. 겉으로는 정도를 호위한다는 이름을 칭탁하고 남몰래 시험해 볼 계획을 이루려고 하였으니, 그가 어찌 감히 오늘날 이런 작태를 부리는가. 태아(太阿)가 내 손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 무리들에게 한 번 시험해 보겠다. 김문순(金文淳)으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김중순(金重淳)을 두둔하기에 여력이 없더니 지난번 하교한 뒤로는 갑자기 김중순이 권위와 더불어 술잔을 나누며 친밀하였다는 등의 말로 회계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첫번째 회계의 말끝에 어찌하여 ‘벌을 주어야 한다. [施罰]’는 2자로 소략하게 하였는가? 바로 이 한 가지 일은 한 당파에 치우치는 습관일 뿐만이 아니다. 이는 대개 세 당상관이 남의 말만 회피하려 하고 국가의 기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김문순은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떠하였으며, 심환지(沈煥之)와 이면응(李冕膺)은 내가 구해준 것이 또한 어떠하였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는가. 처음에는 법대로 직접 신문하려고 했으나, 다시 생각해본즉 지금 만물과 함께 봄을 맞이하고 있으니 굳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또

효종조에 김홍욱(金弘郁)을 처결한 뒤에 정명도(程明道)의 말을 취하여 '이치를 관찰한다. [觀理]' 는 두 글자로 현판을 달았는데, 내가 이 훈계에 대해 마음으로 유념해 두고 있었으므로 금일의 처결에도 또한 반복해 생각하여 다음가는 법률을 적용하고자 하니, 경들은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하였다. **평택** 안핵어사 김희채가 아뢰기를 "권위의 교활함과 흉악함에 대해서는 지난날 하교하였을 때에 신이 이미 원수라고 하신 전교를 받았으니, 그로 하여금 한 시각이라도 생존토록 할 수 없었으므로 한 차례 엄하게 심문하면서 날날이 모질게 형장을 찢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였다.

『정조실록』 권34 16년 3월 15일 갑신

형조판서 김문순, 형조참판 심환지, 형조참의 이면응(李冕膺)을 금갑도(金甲島)에 귀양보내고 주위에 가시올타리를 치게 하였다. 김문순이 **평택** 안핵어사의 보고서를 가지고 검토 후 아뢰기를 "권위는 흉악한 역적의 집에 붙은 것이 익로와 다를 것이 없었고, 원한을 양갓음할 뜻으로 감히 말을 꾸며내는 피를 내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려 전 관리를 모함하고 원근에 전파하며 남모르게 규합하고 끝내는 성균관에 통문을 보내서 남을 해아릴 수 없는 죄과에 몰아넣고는 끝내 승복하지 않다가 곧바로 형장 아래에서 죽어 법으로 캐히 바로잡지 못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김중순(金重淳)은 태학(太學)의 장의(掌議)에 재직하면서 못된 무리들을 불러 술을 나누면서 정성껏 대하였고 마침내는 모함하는 말을 진실한 증거로 인정하였으니, 그의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은 성균관에 수치를 끼쳤습니다. 조덕함은 말의 근거를 탐문하여 발론(發論)하도록 충동질하였고 정상훈이 과거 시험장에 난입하여 소요를 야기시키게 하였으니, 더욱 해괴하고 요망스럽습니다. 아울러 성균관으로 하여금 중한 벌을 주게 하소서." 하니 검토 후 아뢰는 것을 내주고 다시 회계하라고 명하였다. 김문순 등이 다시 김중순은 엄한 형장을 쳐서 외딴 섬으로 멀리 귀양보내고 조덕함과 정상훈은 아울러 성균관으로 하여금 엄한 형벌을 주게 할 것을 청하니, 또 되돌려 주고 다시 살펴 아뢰도록 명하였다. 김문순 등이 또 조덕함과 정상훈도 또한 엄한 형장을 쳐서 섬으로 귀양보내자고 아뢰니, 또 되돌려 주라고 명하고 인하여 국청(鞠廳) 죄수의 준례대로 형틀을 씌워 잡아오라고 하였다. 문순 등이 이르자 당직청(當直廳) 안에 구속하였다. 이윽고 명령하기를 "만약 익로와 같은 자가 흉칙한 사단을 야기하지 않았다면 어찌 지극히 난처하고 차마 못할 일이 있었겠으며, 또 어찌 지난해 강가에서 밤을 새우고 온 나라가 몹시 소란한 일이 있었겠는가. 대저 외조(外朝)는 외조 대로 있는 것이고 종반(宗班)은 전연 상관하지 않는 법이니, 나쁜 징조와 좋지 못한 단서가 되는 습관을 통렬하게 개혁한 뒤라야 비

로소 끝내 사적인 은혜를 펴고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전에 한편으로는 손을 잡아 막힌 것을 풀고 한편으로는 엄하게 익로를 다스렸던 것이다. 이처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간사한 폐단을 막고 사적인 은혜를 펼 수 있었겠는가. 이른바 권위는 미천한 모리배의 무리에 불과하니 여기저기서 교류한 죄는 입에 담을 것도 못 되지만, 그의 이름이 공교롭게 **평택**의 조사에서 나왔고 그가 종전에 범한 죄 때문에 일찍이 담당 부서가 조사한 전술서가 있었다. 그제서야 조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숨기려고 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무리들은 죄의 경중과 자취의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대로 용서하지 않아서 온전히 보전해야 할 곳에는 진정으로 온전히 보전하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다. 저 김문순이란 자는 정경(正卿)의 지위에 올라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떠하였는가. 그런즉 당초의 회계는 비록 미처 듣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다 하더라도 금일의 끝말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하겠다. 만약 공자의 사당에 절하지 않은 데 관계된 일이라 하여 쥐를 잡으려다가 그릇이 깨질까 혐의스럽다고 여겨서 감히 다른 죄의 유무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한다면, 또한 크게 잘못된 것이다. 설령 이승훈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승훈의 죄는 이승훈의 죄이고 엄하게 막는 일은 엄하게 막는 일이다. 이승훈에게 비록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본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더구나 이승훈의 이 일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 명백히 계목(啓目)에 논했으면서 유독 그 일의 근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엄하게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없었다. 법관이 된 자가 행동거지가 이와 같으면 장차 온전히 보전하려는 고심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른바 판서는 비록 이와 같으나 참견한 참판과 참의도 바로 동일하게 죄를 진 것이다. 처음에는 몸소 신문한 뒤에 처결하려고 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죄인을 가두고 형틀을 씌워 대궐 뜰을 더럽히는 것은 너무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죄인 김문순·심환지·이면응을 금갑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34 16년 3월 27일 병신

부사직 김희채(金熙采)가 상소하기를,

“신이 일전에 호서(湖西) 고을을 조사했었는데, 겨우 명령 받은 일을 처리하고 나서 들은 바로는, 호서의 감사가 해당 현에 공문을 보내어 신상오(申尙五)와 이성(李城) 등을 감영의 옥으로 옮겨 가두고 다시 조사하려 한다고 합니다. 대저 상오 등은 바로 **평택현** 교임(校任)으로서 조사할 때 그가 진술한 바는 또렷하고 명백하였으며 참관한 각 사람들의 진술과 함께 명백히 문안(文案)에 실려 있는데, 저 감사는 이 명령받은 일을 보고하고 올린 문서의 허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굳이 다시 조사하려

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 저 김문순(金文淳)과 김중순(金重淳)은 역적 권위(權璫)와 체결하여 터무니없이 모함하려는 계책을 끝내 이루지 못했으니, 독기가 미치는 바와 기세를 부릴 수 있는 바에 다시 죄안(罪案)을 번복하기를 도모한 것은 실로 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찌 공문을 보내고 체포해서 다스리는 일을 이처럼 급하게 하면서 조금도 꺼림이 없을 줄 짐작하였겠습니까. 조사하는 사리와 체면을 지극히 엄중한 것이니, 일개 감사가 마음대로 다시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신의 불초함으로 인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한 것이 크고 수치를 끼친 것이 지극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충청도 감사에 대한 일은 품문인가, 확실하게 들은 것인가? 비록 사건이 교묘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도 어사의 보고는 사리와 체면이 지극히 엄중하다. 더구나 조정에서 체결한 뒤에 일개 감사가 감히 사적으로 체포하여 죄안을 번복시킬 수 없다. 상소한 말이 혹시라도 실제와 틀림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왕부(王府)에 법이 엄연히 있으니, 그 법으로 죄를 결정하는 것이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관계된 바가 매우 중대하여 또한 경솔히 억측으로 결단할 수 없다. 즉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엄한 공문으로 조사하여 자수하게 하고 심문에 응한 감영의 관속들을 잡아올리고 진술한 바를 거두어오게 하여 즉시 세밀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네가 조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약 소상하게 의논해 정 하였다면 누가 감히 다른 말을 하겠는가. 네가 왕명을 욕되게 한 것이 실로 한둘이 아닌데, 이것은 더욱 드러나 숨기기 어려운 것이다. 조사하는 일의 결말을 기다려 먼저 너부터 엄하게 심리하여 처분함으로써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삼가하지 않는 자들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정조실록』 권34 16년 4월 4일 임인

형조가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 박천형(朴天衡)이 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어사가 **평택**을 조사할 때에 옥사를 엄격히 하고 비밀리에 거행하였으므로 비록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사가 조정에 돌아갈 때에 압송한 3명의 죄수는 즉시 법에 의해 곤장을 쳐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범법한 정상이 용서해 주기 어려운 무리들도 또한 가벼운 쪽을 따라 참작해 놓아준 자도 많았습니다. 권후는 역적 권위의 형으로서 서로 도우며 악한 짓을 하고 수령을 모함하는 일에 찬성하지 않음이 없었는데도 곤장을 쳐 귀양보내는 별을 면하였습니다. 구윤중과 정언택(鄭彦宅)은 사람을 꺾어 통문을 띄우면서 신상오(申尙五)와 이성(李城)의 말로 증거를 세웠으니 죄가 다름이 없는데, 언택은 곤장을 쳐 귀양보내고 윤중은 무죄로 드러나 놓아주었습니다. 신상오(申尙五)와 이성에 이르러서는 구윤중과 정언택이 입증한 말을 저들이 비록 변명했지만 만약 당초부터 간섭함이 없었다면 어찌 증거로 인용

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논한다면 일의 허실과 말의 진위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은 투의 향전(鄉戰)에 귀결됨이 의심할 바 없이 명확했기 때문에 4 명의 죄수는 향전의 죄로 한 차례 곤장을 쳐 신문하고 놓아 보냈습니다. 이것이 어사의 신문 조서와 어찌 상반되는 것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대저 신상오와 이성 등을 징계하여 치죄한 이 일은 실로 놀랍고 의혹스럽습니다. 저들이 비록 전부터 시골에서 싸우는 무리들이지만 어사가 조사할 때에 이미 모두 죄 없이 놓아주었는데, 어사의 보고서에 대한 재가를 기다리지 않고 급히 감영의 옥에 가두고 아울러 곤장을 쳐 신문하였으니, 실로 죄를 잡으려다 그릇을 깨뜨리는 혐의가 있습니다. 사리와 체면으로 헤아려보건대 마땅히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겠으니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재가하기를 “조사한 일의 요점은 항거하고 판결을 번복하려 하였는가 하는 한 조목에 있는데, 감사가 밝힌 말을 보건대 곤장을 쳐 다스린 자는 바로 권위의 형인 권후와 같은 무리인 구윤중이다. 그 밖에 신상오와 이성은 향교의 유생으로서 자진하여 증인을 서지 않고 도리어 윤중의 무리에게 이용을 당하였으므로 이 죄로 또한 곤장을 쳐 신문하였다고 하니, 비록 어사가 가볍게 다스린 자를 감사가 다시 혹독하게 다스렸다 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다. 만약 권후 등 4명을 형장을 쳐 신문한 것을 가지고 항거하고 판결을 번복하려 했다고 한다면 너무 판결과 맞지 않는다. 더구나 어사가 명령을 받들고 간 길에 능히 스스로 결단하여 귀양보내지 못하고 이미 조사한 자를 감사의 입을 빌려 처결하였으니, 이 일은 어사가 시켜서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에 이르러 감사는 터럭만큼도 처벌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즉시 임무를 살피게 하라. 어사 김희채가 조사하러 간 것은 암행어사와는 다르니, 조사한 문안을 수정하고 보고서를 정서하는 것은 마땅히 본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널리 의논하고 채집할 일이 있기에 7일에 돌아와 근 10일이나 성 밖에 머물렀는가. 이는 안핵어사가 있는 이래로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또 일전에 올린 그의 상소는 군색한 말을 뽐내어 마치 자기의 잘못을 빼버리고 자기의 잘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하여 일일이 왕명을 욕되게 하고 건건이 수치를 끼쳤으니, 거짓으로 죄를 덮어 씌울 자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는 김희채에게 시행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는가. 희채를 의금부에 내려 해당한 법으로 처결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35 16년 9월 25일 신유

고 부사(府使) 이장옥(李章玉)의 아내 김씨가 상언하기를 “연호궁(延祐宮)을 봉원(封園)하기 전에는 본궁에서 도와주는 제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이 없어졌고 약간의 전토가 진위·통진(通津) 등지에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매매되어 제사에 이

바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 바라는 바는 이미 매각된 전토를 도로 물려서 제사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뿐입니다.” 하였다. 이때 이르러 호조가 검토후 아뢰기를 “본가의 궁색하고 가난한 상황은 이미 보고한 바 있거니와 돌보아 생각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연호궁을 봉원한 뒤로 전결에서 나오는 세금을 본조로 옮긴 것이 꽤 많으니 이 중에서 해마다 쌀 20석을 지급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재가하기를 “쌀을 지급하는 것이 체모에 어떨지 모르겠다. 그곳에서 나오는 결세(結稅) 중에서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적당량을 지급하게 하고, 그 봉사손(奉祀孫)이 성장하거든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요미(料米)를 주고 무예를 익히게 한 다음 수용하게 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37 17년 정월 12일 병오

임인년에 명하여 무예출신과 무예 별감으로 장교를 지낸 사람 30명을 가려서 —숙묘(肅廟) 을축년에 무예별감 30명을 훈련도감의 국출신(局出身)의 3개 번에 번갈아 임명한 제도를 따른 것이다. —번을 나누어 명정전(明政殿) 남쪽 회랑에 입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을사년에 장용위라 호칭하고 20명을 늘리니 이것이 장용영이 설치된 시초이다. 이때부터 해마다 인원을 늘려 왔는데, 척씨(戚氏)의 남군(南軍) 제도를 본받아 5사(司)에 각기 5초(哨)를 두는 것으로 규례를 삼고 3초는 초마다 1백 15명으로 하였다.【정규 군인 90명, 기총(旗總) 3명, 대장(隊長) 9명, 서자적(書字的) 1명, 패두(牌頭) 1명, 고수(鼓手) 1명, 인기수(認旗手) 1명, 화병(火兵) 9명이다.】 정미년에 처음으로 27명을 두기 시작해서 무신년에 88명을 증원하여 좌초(左哨)를 만들었고, 신해년에 우초(右哨)를 늘렸으며, 계축년에 중초(中哨)를 늘렸다.

5초는 서울에 있었으니 초마다 1백 23명이었다.【정규 군인·기총·대장은 위와 같고, 북마군(卜馬軍) 9명이 많았다.】 정미년에 전초(前哨)를 처음으로 두고 무신년에 중초와 후초를 늘렸으며 계축년에 좌초와 우초를 늘렸다. 5초는 수원에 있었는데, 기유년에 5초를 처음으로 창설하였는바 전초는 진위에 있고, 좌초는 양성(陽城)에 있고, 중초는 용인(龍仁)에 있고, 우초와 후초는 광주(廣州)에 있다.】

『정조실록』 권37 17년 3월 22일 을묘

비변사 당상들을 불러 보고 남양부(南陽府)에 방어사 진영을 두기로 한 의논을 중지시켰다. 이에 앞서 왕이 수원에 있던 방어사 진영을 남양으로 옮기고 나서 어영대장 조심태를 보내 형편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조심태가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남양에 달려가서 두루 형편을 살펴보니 대부(大阜)와 영흥(靈興) 두 섬이 바닷길의 요충에 걸터앉아 있어 해상 방어의 일로 논한다면 실로 요해지라 할

수 있으나, 남양은 본시 육군의 영장(營將)을 두는 고을이었으므로 해상 방어의 일은 의논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육로에 대해서는 호서의 여러 길에서 양성·평택으로 나갈 적에 궁포(宮浦) 아래쪽 및 당진·면천·대진(大津)의 윗쪽을 경유하는 길은 수원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남양의 사잇길로 질러가며 안산(安山)·금천(衿川)을 모두 지나가게 되는데, 지역이 매우 평탄하고 모두 막힌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부터 고을 소재지를 동쪽으로 10리쯤 되는 저팔리(楮八里)의 구포(鳩浦) 근처로 옮겨 방어의 요새로 삼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어영을 새로 두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방어사의 직책이란 본시 한쪽 지방을 방어하는 것인데, 본 남양부는 이미 충융청 전영(前營)의 보병과 기병에 의지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급한 때를 만나면 당연히 충융사의 절제를 받아야 하므로 이 점이 걸리는 단서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료들에게 물었는데, 모두가 수원이 지금 장용영의 외영(外營)이 되어 있어 요새지로서의 소중함이 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어 있으므로 다시 방어영을 남양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다.

『정조실록』 권37 17년 5월 24일 을묘

호서에 진흥을 베풀었는데, 정월부터 시작하여 이 때에 이르러 진흥의 일을 끝마쳤다.【공진으로는 수군절도영 관할인 온양·석성(石城)·직산·홍산(鴻山)·연기·평택·아산·신창(新昌)·은진(恩津)·청산(靑山)·부여·정산(定山)·보령·비인(庇仁)·남포(藍浦) 등의 고을과, 마량(馬梁)·서천 등의 진과, 성환역(成歡驛)의 기민 총 20만 1천 4백 97명에 진흥곡은 1만 5천 9백 84석 남짓이었다. (출임)

『정조실록』 권38 17년 10월 18일 무인

기한을 물려주었던 광주·남양·안성·안산·용인·진위·시흥·과천 등의 고을과 수원부의 임자년 묵 환곡을 탕감하였다. 명령하기를 “경기의 여덟 고을에서 나무를 심는 일로 해마다 백성들을 부렸는데 수령에게는 수고에 보답하는 일을 대략 베풀었으나 백성들은 동일하게 보는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 소중한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부렸으니 당연히 감사하게 여기는 뜻을 보여주는 정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올해 조금 풍년이 들었다 하여 작년에 기한을 물려준 환곡을 독촉하여 받아들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시기에 은혜를 베풀면 실정에 맞는 정사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8개 고을의 임자년 묵 환곡으로 민간에 있는 것들을 특별히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또 수원부에도 광주 등지의 고을에 적용한 예에 따라 하도록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41 18년 11월 4일 무자

호서 위유사 홍대협(洪大協)을 불러 보았다. 이어서 사사로운 편지를 내려 이르기를 “호서 일대는 천 리나 되는 경기 지역과 접하고 있으므로 내 크게 근심하는 바이다. 비록 풍년이 든 해라도 그 돌보아주는 바가 다른 지역보다 배나 되는데 하물며 근래에 드문 올해 같은 흉년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내가 국사에 부지런히 힘쓰는 가운데서도 호서 지역을 가장 근심하며 잊지 못해 왔다. 대개 가까운 이들이 능히 편안한 뒤에야 멀리 있는 이들이 감싸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이 있는 자가 기뻐한 뒤에야 멀리 있는 자가 그리워하는 법이다. 만일 건감해주고 돌보아주는 정사와 구제해주는 방도가 도리어 양남만 못하다면 이는 가까운 이를 버리고 멀리 있는 이를 취하며 소원한 이를 귀히 여기고 가까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상례에서 벗어난 특별한 거조를 두어 지차의 고을에까지 아울러 미치게 한 것이다. 더욱 심한 곳은 태안·석성(石城)·평택·연기·서산 등 24개 고을과 진 한 곳이다. (줄임) 더욱 심한 읍은 궁벽한 먼 마을까지 일일이 다녀보고, 그 다음 읍은 연로가 아닌 곳에는 비장과 편장을 나누어 보내 위로하고 타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41 18년 11월 16일 경자

경기 각읍의 암행어사와 적간사관(摘奸史官)에게 별도로 타이르기를【광주·죽산·양성의 어사는 박윤수(朴崙壽)이고, 고양·파주·장단·풍덕(豐德)의 어사는 홍낙유(洪樂游)이고, 이천·여주·음죽(陰竹)의 어사는 정내백(鄭來百)이고, 적성(積城)·마전(麻田)·연천·삭녕(朔寧)의 어사는 정약용(丁若鏞)이고, 양천·김포·부평·통진·교하의 어사는 채홍원(蔡弘遠)이고, 영평(永平)·포천의 어사는 정이수(鄭履綬)이고, 금천·안산·남양·인천의 어사는 유사모(柳師模)이고, 과천·용인·진위의 어사는 이조원(李肇源)이고, 양지·안성의 어사는 정동관(鄭東觀)이다 (줄임).】 “수령의 잘잘못을 규찰하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피는 것이 어사의 직임이다. 비단옷을 입는 것은 그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요, 도끼를 지니는 것은 그 권위를 높히려는 것이다. 근래 혹 각도에 보낸 사람들이 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어찌 전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책할 수 있겠는가. 조정이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파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중궁궐에서 어떻게 세세히 살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천리나 되는 경기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혜택이 아래로 미치지 않고 폐단이 위로 보고되지 않는지라, 고을이 황폐해져서 마을 개가 꼬리치지 않으며 못에 기러기가 모여든다 하니,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어사뿐이며, 관리들이 눈짓하며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어사일 뿐이다. 조정이 예를 갖추어 방문하여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도 오직 어사의 말을 믿고 징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명하는 거조가 있는 것이니, 보고 듣기에 전심하고 그 종적을 비밀스럽게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몇 고을을 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찌를 뽑아 아래 사정을 구별하면 자연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말은바 직분을 삼가하여 관부와 시장, 촌락을 드나들면서 세세히 조사해 모아서 조정에 돌아올 때에 일일이 조목별로 나열해 아뢰도록 하라. 인(印)과 장부를 현장에서 잡은 경우가 아니면 혹시라도 경솔하게 먼저 창고를 봉하지 말라. 무릇 황정(荒政)에 도움이 되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한 것들도 찾아 물어서 아뢰고, 특별히 뽑은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여러 어사와 사관이 명령을 받들어 처리하였다.

『정조실록』 권42 19년 2월 7일 기축

용인·안산·진위 등 3읍을 화성의 속읍으로 삼았다. 총리사(摠理使)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본부(本府)는 평소 경기 지방 중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초창기일 뿐더러 당초부터 성원을 받을 만한 의지처가 없어 요새지로 삼는 측면에서 논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부와 경계를 나란히하여 땅을 맞대고 있는 곳으로는 바로 용인과 안산이 있고 진위 역시 40리의 거리 안에 있으니 이를 속읍으로 삼아 성을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리와 체면으로 보아도 원만해지고 절제(節制)하는 면에서도 편해질텐데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장차 남한산성과 서로 구원하는 형세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의지하는 관계를 맺게 한다면 엄연히 억만 년토록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니 그 계책이 어찌 대단찮은 것이겠습니까. 군제를 짐작해서 절충하는 일같은 것은 삼가 임금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차례로 절목을 만든 뒤 거행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명령을 내리기를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토록 하라. 경이 묘당의 신하들과 함께 절목을 만들고 별단(別單)을 갖추어서 논리적으로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42 19년 4월 22일 임인

이조판서 윤시동(尹蓄東)과 참판 황승원(黃昇源)과 호서암행어사 박종순(朴鍾淳)을 회정당(熙政堂)에서 불러모았다. 박종순이 보고서를 올리면서 충주목사 김이계(金履鉉)와 평택현감 성정주(成鼎柱)가 모두 불법을 행했다고 하니, 잡아다 심문하도록 명하였다.

『정조실록』 권42 19년 4월 28일 무신.

명령하였다. “이번에 암행어사 4인을 뽑아보낼 때 그들이 연소하고 경험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억지로 몇 개 도에서 고을을 골라 조사해 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명색이 암행어사이면서 출도(出道)하지 않았던 때가 옛날에 있었던가. 대체로 남몰래 갔다가 남몰래 돌아오는 경우는 그 예가 매우 희귀하다. 특별히 분부한 특별한 예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감히 아랫사람들 멋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만도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데, 그 중에서도 호남 암행어사의 경우를 보면 더욱 놀랍기만 할 뿐이다. 이들 모두 결말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처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충주와 평택 두 고을 수령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어떤 암행어사는 잘한다고 하고 어떤 암행어사는 못한다고 하는 등 그 평가가 하늘과 땅처럼 판이하였다. 한 고을의 공론을 제대로 취합했다면 어찌 혹시라도 것처럼 상반될 수가 있겠는가. 충주와 평택 두 고을의 수령이 비록 진흙하는 일을 다 끝냈다 하더라도 우선은 잡아오지 말고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분부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정조실록』 권42 19년 5월 21일 신미

경모궁을 참배하였다. 호남에서 진흙을 행하였는데 1월부터 시작해서 이 때에 이르러 끝마쳤다. (줄임) 호서에서 진흙을 행하였는데 1월부터 시작해서 이 때에 이르러 끝마쳤다.【공곡으로 진흙한 지역은 수영·태안·석성(石城)·평택·연기·서산·비인(庇仁)·서천·직산·신창(新昌)·은진·노성(魯城)·영동·당진·면천·한산·천안·아산·예산·남포·해미·부여·임천(林川)·홍산(鴻山)·보령·결성(結城)·덕산(德山)·청주·회덕(懷德)·청풍(靑風)·대흥·홍주·목천 등 고을과 안흥(安興)·소근(所斤)·마량(馬梁)·서천포(舒川浦) 등 진과 성환·울봉 등 역으로 기민이 총 62만 6천 4백 70구였으며 진흙한 곡물은 4만 5천 3백 40석이었다.(줄임)

『정조실록』 권42 19년 5월 25일 을해

비변사가 화성(華城) 협수군(協守軍)의 제도에 관한 절목을 올렸다. 절목은 다음과 같다. “성지(城池)에는 반드시 협수군을 두어야 하니, 이는 대체로 앞뒤에서 적을 몰아칠 수 있는 태세를 이루어 성원해야 하고 힘을 합쳐서 방어해야 하기 때문인데,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그리고 송도와 강화에서의 예를 상고할 만합니다. 이번에 화성의 행궁이 낙성되고 성곽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상께서 삼군의 조련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완전한 요새지로서의 형세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위의 가까운 지역에서 협수하는 제도가 아직까지 구비되지 못했으니, 이는 보장을 중히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뜻이 전혀 못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부와 접경하고 있는 용인·안산·진위 등 3개 고을은 소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고 개 이빨처럼 맞물린 형세를 이루고 있으며 관장(官長)과 병민(兵民)이 서로 왕래하며 친숙한 처지인 만큼 절제하기 편리하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보다 나은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 세 고을의 수령들을 협수장으로 정하고 또 각각 그 경내에 있는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의 속오군을 타졸(操卒)로 정하여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힘을 합쳐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절목으로 만들어 다음과 같이 조목별로 진달드립니다.

1. 용인현령을 동성협수초관(東城協守哨官)으로 정하고, 진위현령을 남성협수초관으로 정하고, 안산군수를 서성협수초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1. 세 고을을 일단 협수하는 속읍(屬邑)으로 정한 이상에는 초관이 전령을 차출한 뒤 즉시 갖추어 보내 와서 보고토록 할 것이며, 세 고을 수령이 새로 도임(到任)한 경우에는 도임장(到任狀)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전령을 보내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협수군졸을 용인에 있는 수어청의 속오군 5초와 진위에 있는 수어청의 속오군 3초와 안산에 있는 총융청의 속오군 4초를 화성으로 옮겨 소속시켜서 타부로 정하고, 출동시켜야 할 때가 오면 신지(信地)에 따라 성에 오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줄임) 1. 세 고을의 속오군으로서 전적으로 타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보통의 성정군(城丁軍)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으니, 군안(軍案)을 작성하여 1건은 군영에 놔두고 1건은 되돌려 준 뒤 궐원(闕員)이 생기는데로 채워넣도록 함으로써 빈 장부만 안고 있는 폐단이 없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장용영(壯勇營)이 향군(鄉軍)을 추가로 뽑아 정하는 절목을 올리니, 10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줄임) “군병은 물론 정예를 위주로 해야지 수효만 많아지게 힘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는 인원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위영(禁衛營)의 향군(鄉軍) 1백 25초(哨)에서 각초마다 정군(正軍) 및 관보(官保)와 자보(資保)를 각각 약간 명씩 덜어내어 본영에 떼어 보내도록 하는 동시에 또 정군 1천 2백 70명을 엄선하여 10초를 만들었습니다. 대개 이 향군의 경우는 사리와 체면이 자별한 만큼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기강과 군율도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강 남쪽과 한강 북쪽을 막론하고 옛 대오와 새 대오를 골고루 배치해서 전후 좌우로 고기 비늘 형태로 초(哨)를 만들고 경군(京軍) 중사(中司)와 합쳐 5사(司)의 편제에 맞추므로써 규율을 엄히 하고 지휘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뽑아 정하고 사용하는 규례를 사목(事目)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임) 1. 떼어받은 정군은 1천 2백 50명이요 관보는 1천 2백 50명이요 자보는 1천 2백 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떼어받은 것을 소중히 관리

해야 할텐데 6도에 산재해 있는 만큼 어떻게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군의 경우에는 한강 남쪽으로 과천에 1초, 시흥에 1초, 광주에 2초, 용인에 1초, 양성에 1초, 진위에 1초, 안산에 1초를, 한강 북쪽으로 양주와 장단에 각각 1초를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마련해서 각각 그 고을의 소재지에다 군포를 납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군(良軍) 가운데 내력과 주소가 확실하고 힘이 센 자를 가려 융통해서 서로 바꾼 다음 고기 비늘 형태로 초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 사·초의 단속이 일단 완료되면 군사를 기르는 일을 우선 행해야 합니다. 보군(保軍)에게서 예전대로 군포를 거두어 정군에게 지급하는 자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신군과 구군으로 이미 1영(營) 5사(司)의 군제를 편성하였으니, 소재지의 5초는 전사(前司)에 소속시키고, 광주·용인·진위·양성의 5초는 좌사에 소속시키고, 경군의 5초는 중사(中司)에 소속시키고, 시흥·과천·안산·고양·파주의 5초는 우사에 소속시키고, 양근·가평·지평(砥平)·양주·장단의 5초는 후사에 소속시켜서 고리처럼 연결해 에워싸게 함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돕는 형세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줄임)”

『정조실록』 권44 20년 4월 16일 신묘

안산·용인·진위 세 고을의 수령을 장용외영(壯勇外營)의 별좌부(別左部)·중부(中部)·우부(右部) 세 부서의 파총(把摠)으로 삼고 아울러 협수장(協守將)을 겸임하게 하였다.

『정조실록』 권44 20년 5월 12일 병진

호서에 기근을 진휼하는 일을 개설하였는데, 정월에 시작하여 4월에 끝마쳤다. 국가의 진휼은 신창(新倉)·아산·평택·직산·천안·면천·해미(海美)·대흥(大興)·예산·덕산·당진 등의 고을과 성환역에서 실시하였는데, 기민은 총 11만 8천 1백 71명이었고 소요된 곡식은 5천 3백 11섬이었다. 사적인 진휼은 목천(木川)에서 실시하였는데, 기민은 6천 3백 21명이었고 소요된 곡식은 4백 18섬이었다. 다급한 구제는 서산, 태안, 서천, 온양 등의 고을과 안흥의 소근포(所斤浦)와 서천포 등의 진영에서 실시하였는데, 기민은 총 1만 9천 8백 97명이었고 소요된 곡식은 1천 3백 73석이었다.

『정조실록』 권47 21년 9월 24일 경인

시흥과 과천을 수원부에 예속시켰다. 수원부 유수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수원은 안산·용인·진위·시흥·과천의 사이에 위치해 있으니, 사면으로 감싸 호위하는 방도로 볼 때 오직 안산·용인·진위만 소속시키고 시흥·과천을 소속시키지

않는 것은 이미 빙 둘러싸서 협수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총융청에 소속된 시흥·과천을 수원을 건너뛰어 남양에 예속시키는 것도 불편한 일입니다. 시흥·과천을 수원에 소속시켜 하나는 북성협수장으로 삼고 하나는 통유병장(通衢遊兵將)으로 삼으소서. 그 군총(軍摠)으로 말하면, 남양은 그대로 총융청에 소속시키되, 본읍(本邑)의 속오군(東伍軍) 10초(哨)와 양천(陽川)의 속오군 1초(哨)를 합하여 11초로 만들고, 또 남양의 장초군(壯抄軍) 1초를 보충하여 파주(坡州)·장단(長湍)과 동일하게 12초를 만들며, 수어청(守禦廳)의 친아병(親牙兵)은 곧 대장이 친히 거느리고 성첩(城堞)에 배치하는 대열에 소속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러면 그 숫자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만큼 비록 5초를 감하더라도 아직 8초는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내의 군정으로 5초를 더 배정하면 납미군(納米軍)이 또한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장 수효를 감한 이후로 좌우부(左右部)에 소속된 아병(牙兵)이 3초이고 파하(把下)가 20여 명인데, 이들은 5명의 호위군에 입속된 자들이어서 형세상 대오를 비워두기가 어려우니, 삼전도진(三田渡鎭)의 군관 2백 50인과 진의 아병 2초 중 성첩(城堞)의 배치 군사로 포함되지 않고 신미(身米)만 납입하는 자들을 아병(牙兵)과 파하군(把下軍)으로 나누어 만들어서 좌우부에 소속시키고 미곡 수납은 그대로 본진에 소속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까.(줄임).” 하니 따랐다.

『정조실록』 권47 21년 12월 30일 을축

화성에서 군제(軍制)와 협수군(協守軍)에 관한 추가 절목 및 수성절목(守城節目)을 올렸다. 군제에 관한 추가 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영군제(外營軍制)에 대한 조건은 이미 계축년에 재가를 받은 절목(節目) 안에 갖추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사(外使) 서유린(徐有隣)이 임금 앞에서 아뢰어 전에 부쳐준 속읍(屬邑)인 용인·진위·안산 이외에 시흥·과천 두 고을도 떼어서 소속시키도록 결정하였으니, 이는 대개 지형이 둘러싸고 있어 군제상으로 원만하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줄임) 이번에 군제를 개정하는 날에 미쳐서 입방(入防)·사초(司哨)의 규식과 협수(協守)·겸과(兼把)의 제도를 다시 더 나누어 배정하되 치밀하게 되도록 하여 한 가지 일도 엉성하고 빠뜨림이 없게 한 뒤에야 에워싸고 보호하여 막아 지키는 방도가 앞뒤에서 적을 몰아칠 수 있는 태세를 이루어 위급할 때에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속읍의 군사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장정을 뽑아내어 고기 비늘 형태로 초를 만들어 입방군(入防軍)에 소속시키고 혹은 사면의 거리의 가깝고 먼 것을 취하여 남은 인원을 단속하여 개 이빨 모양으로 파정(派定)하여 협수군(協守軍)에 부쳐주어야 하겠습니까. 사초(司哨)의 분배(分排)와 거행할 사항들을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줄임) 1. 장정을 뽑아낼 적에는 형세상 장차 그 각읍

에 있는 군사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배하여야 합니다. 용인은 10초 안에 2초 1기(旛)를 뽑아내고 진위는 5초 안에 1초 2기를 뽑아내고 안산은 5초 안에 1초 1기를 뽑아내고 시흥은 4초 안에 1초를 뽑아내고, 과천은 3초 안에 2기를 뽑아냅니다. 도합 7초를 입방군(入防軍)에 소속시켜 부근으로부터 사(司)를 합병하여 단속(團束)하는 소지로 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방군에 대한 법제의 뜻은 다른 군사와는 자별하니 반드시 양정(良丁)으로 뽑아 정하고 감히 사천을 뒤섞어 구차하게 충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본부의 경내 남쪽에 있는 5초는 전사(前司)에 소속시키며, 용인의 2초 1기, 진위의 1초 2기와 본부 경내로서 진위·용인의 접계(接界)에 있는 2초 등 합계 5초는 우사에 소속시키며, 본부 경내로서 북쪽에 있는 5초는 후사에 소속시킵니다.” 협수군에 관한 추가 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수의 제도는 이미 원절목 안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지금 지세가 겹겹으로 둘러싸이고 고루 알맞아졌을 뿐 아니라 또 과천과 시흥을 소속시켜 한편으로는 북성을 방비하고 한편으로는 유병(遊兵)을 책임지었으니, 이로부터 안팎이 공고해지고 국면이 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변경시키는 조목을 아래에 기록합니다. (줄임) 1. 동성협수장은 용인현령으로, 남성협수장은 진위현령으로, 서성협수장은 안산군수로, 북성협수장은 시흥현령으로, 유병장은 과천현감으로 호칭을 정하여 4성 및 큰 길가에 나누어 소속시켜 협수를 오로지 책임지우는 소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협수 초관은 그 군의 수효에 따라 해당 고을의 전적 관원 및 출신으로 융통성 있게 후보자를 추천하여 외영에 보고하고 전령을 작성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춘등(春等)과 추등(秋等)의 포폄(褒貶)은 협수장이 일체 마감하여 계를 작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용인현은 속오군 5초 아병 4초 친아병(親牙兵) 1초 가운데 2초 1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7초 2기이며, 진위현은 속오군 3초 아병 2초 가운데 1초 2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3초 1기이며, 안산군은 속오군 4초 장초군(壯抄軍) 1초 가운데 1초 1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3초 2기이며, 시흥현은 속오군 3초 장초군 1초 가운데 장정 1초를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3초이며, 과천현은 속오군 2초 장초군 1초 가운데 2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2초 1기입니다. 입방군 7초와 외사(外使)의 난후아병 5초를 제하면 실지로 남은 군사는 15초인데, 10초는 4성의 협수군으로 만들고 5초는 주대(駐隊)와 유병(遊兵)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현의 남은 군사 7초 2기 안에서 3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2초는 주대병(駐隊兵)으로 삼고 2초 2기는 아병으로 삼으며, 진위현의 남은 군사 3초 1기 안에서 2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1초 1기는 아병으로 삼고 1기는 용인현의 2기와 초를 합병하며, 안산군의 남은 군사 3초 2기 안에서 3초는 협수군으

로 삼고 2기는 아병으로 삼으며, 시흥현의 남은 군사 3초 안에서 2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1초는 유병으로 삼으며, 과천현의 남은 군사 2초 1기 안에서 2초는 유병으로 삼고 1기는 아병으로 삼아 안산군의 2기와 초를 합병시켜야 할 것입니다.” (줄임)

『정조실록』 권48 22년 5월 12일 을해

호서에도 진흥을 시행했는데, 정월부터 진흥하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마쳤다. 은진(恩津)·한산(韓山)·임천(林川)·서천·석성(石城)·노성(魯城)·부여·**평택**·황간(黃澗) 등의 읍과 서천진인데, 기민 총 2만 8천 3백 8명에 진곡은 2천 1백 15석 남짓 들었다.

『정조실록』 권49 22년 9월 4일 갑자

경모궁(景慕宮)을 참배하고 재실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장용대장(壯勇大將)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화성부(華城府)를 외영(外營)으로 승격시킨 뒤에 군제(軍制)에 있어 아직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사초(司哨)에 있어서도 끝내 일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올 봄 원(園)에 행행하셨을 때 묘당에서 의논하여 속읍을 배정함으로써 관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만, 만약 과천·시흥·용인·안산·**진위**의 다섯 고을을 두 외영에 소속되게만 해 준다면 그런 이름을 빌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섯 고을에 있는 군정(軍丁)들은 서울의 각영이나 각사에 소속된 자들을 막론하고 일체 외영에 떼어 준 다음에야 절제할 방도가 생기고 호령도 전일하게 되어 쓸모있는 군사로 예비해 둘 수가 있을 것인데, 더구나 지금 한창 군정을 뽑고 있으니 떼어서 소속시켜 주는 일을 더더욱 조금이라도 완만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고을에 있는 군정 가운데 가령 훈련도감의 포보(砲保)나 향보(餉保)는 그 비중이 남다르고 또 잔악한 관아나 그 밖의 모처(某處) 역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훈련도감 및 각 담당부서를 왕복하면서 편한 쪽으로 대체해 주도록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정조실록』 권49 22년 10월 19일 기유

장용위 외사에게 유시하였다. “(줄임) 이에 몸소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례(殿拜禮)를 행하면서 일이 있으면 보고드리는 뜻을 부친 다음 이어 재전(齋殿)에 가서 빈대(賓對)한 결과 의논들이 합치되기에 대략 그 제도를 정하였다. 첫째,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등 5읍의 군총(軍摠)은 모두 외영에 소속시킨다. 보군(步軍) 12초(哨)를 뽑아내어 옛날 주나라 군대가 미봉(彌縫)하던 방식이나 제(齊)나라

군대의 편오(編伍) 제도와 대략 비슷하게 하고 이를 외영의 13초와 합쳐 25초로 만들며 여정(餘丁)은 수성(守城)하는 군제(軍制)에 부친다. 둘째, 상기 속읍이 군정(軍丁)에게서 받아내어 경사(京師)의 각영(各營)과 제사(諸司)에 납부하던 것들 또한 모두 외영에 부쳐주어 군수로 쓰게 하고, 정채(情債)를 감해 주어 백성의 힘을 덜어주며, 경사에 납부하던 것들은 대신 지급하게 하되 병조와 균역청(均役廳)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다. (출입)”

『정조실록』 권49 22년 10월 19일 기유

비변사가 장용위 외영 5읍 군병의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출입) 대체로 이 외영(外營)은 평소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훈련도감의 예를 본따 사초(司哨)의 편제를 두었으며 정강(精強)한 병마(兵馬)에 절제 또한 엄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점차 폐단이 늘어나 허오(虛伍)가 많이 생기는 등 군사행정이 어설피게 되어 다시 옛날의 규모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축년에 영으로 승격시키던 초기에 군제를 강구하여 정하면서 임금님께서 먼저 이 점에 관심을 기울이시어, 보군 26초 가운데 반절은 정병으로 뽑아 행궁에 입방(入防)케 하고 반절은 보군으로 강등시킨 뒤 그들에게 미곡을 거두어 비용을 충당케 함으로써, 정에 위주로 해야 한다는 뜻과 호보법(戶保法) 모두가 어긋남이 없이 병행되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때 시설했던 대략입니다. 그리고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등 5읍의 군병을 차례로 이속시키는 한편, 5읍의 속오군 가운데 정장한 자들을 추려내 12초를 더 늘린 다음 앞의 13초와 합쳐 25초의 기준에 맞게 함으로써 1영 5사의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또 본부 및 속읍의 민병으로 성을 지키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 서로 분속되게 함으로써 옛날 위의 법제에 자연히 맞게끔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초를 바꾸어 위·부로 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영을 전·좌·중·우·후의 5위로 나누어 통칭 장락(長樂)이라 하는 한편, 위는 5부를 관할하고 부는 3통을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수성과 관련된 군제를 보건대, 각각 신지(信地) 내의 성문 이름을 가지고 위의 명칭을 삼아, 동쪽은 창룡위(蒼龍衛) 남쪽은 팔달위(八達衛) 서쪽은 화서위(華西衛) 북쪽은 장안위(長安衛)라고 하였으며, 위에서 부로 나뉘어지고 부는 통을 관할하며 통은 타장과 타부를 이끌게 하였습니다. 또 통구유병(通衢遊兵)을 중앙에 위치시켜 신평위(新豐衛)라고 칭한 뒤 이것 역시 장락(長樂) 5위에 분속되게 하여 그 절제(節制)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내영과 외영의 군총(軍摠)을 합산하면 족히 5천이나 되는데 안과 밖에서 서로 응하고 형세가 상호 연결되어 겹겹으로 호위하며 급할 때 의지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지금 이대로 변통시키는 것이 실로 사의에 맞겠습니다. 1. 장락전위(長樂前衛). 정병은,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長樂隊)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城丁)은, 남성(南城)의 팔달위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팔달대 1천 1백 4명에 대해서는 전·좌·중 3부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진위의 팔달대 7백 20명에 대해서는 우·후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팔달대 2백 45명과 진위의 팔달대 2백 65명을 정문 및 남쪽 암문(暗門)·서남쪽 암문·각루(角樓)·수문·치성(雉城)·적대(敵臺)·봉돈(烽墩)·포루(砲樓)·포루(舖樓) 등 13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팔달대 39명으로 통장(統長) 12명과 타장 27명을 마련하고, 진위의 팔달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진위의 팔달대 1백 84명으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長)의 각색(各色) 표하(標下) 및 화부(火夫)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5백 83명입니다. 1. 장락좌위(長樂左衛). 정병은, 용인에 있는 장락대 3백 81명과 진위에 있는 장락대 2백 54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동성(東城)의 창룡위(蒼龍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동쪽 경내에 있는 창룡대(蒼龍隊) 7백 36명에 대해서는 전·좌 2부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용인의 창룡대 1천 96명에 대해서는 중부가 3백 76명 우·후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40명과 용인의 창룡대 1백 50명을 정문 및 포루·포루·치성·노대·공심돈 등 7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39명으로 통장 12명과 타장 27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1백 84명으로 위장·부장·통장의 각색 표하 및 화부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2백 71명입니다. 1. 장락중위(長樂中衛). 정병은, 본부의 물가 각면에 있는 장락대 3백 89명과 용인의 장락대 1백 23명과 진위의 장락대 1백 23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유병(遊兵)은, 신평위(新豐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용인의 신평대(新豐隊) 2백 75명과 안산의 신평대 2백 50명과 시흥의 신평대 2백 13명과 진위의 신평대 1백 70명과 과천의 신평대 52명 등 도합 9백 60명을 네 곳 성(城)의 통구부장(通衢部將) 8인이 각각 1백 2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과천의 신평대 56명으로 위장·부장의 표하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1천 16명입니다. (줄임) 1. 장락 5위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3·대정(隊正) 9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대를 호령하게 합니다. 속5위(屬五衛)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20·타장 45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타장을 호령하고 타장은 타부를 호령하게 합니다. 이렇듯 상호 통제받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계별로 호령이 전달되게 합니다.

『정조실록』 권49 22년 10월 19일 기유

4 성의 위장(衛將)을 일단 용인·진위·안산·과천 등 네 고을의 수령으로 정했고 보면 부장 이하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례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인데, 각성의 신지(信地)별로 하되 가령 본부군(本府軍)을 마련한 곳에는 본부 경내의 당하 조관이나 출신으로서 선부수천(宣部守薦)을 받은 자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은 평상시 각리에 정해 두었던 통장 중에서 풍력(風力)이 있어 감당할 만한 자를 골라 차출하고, 타장은 통 안에서 군관을 수행하는 자 중 조금 사무를 처리할 줄 아는 자를 차출하여 각각 타부를 이끌게 함으로써 신지(信地)에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장내(牆內) 및 중포사의 장관(將官)과 각처 돈대의 장관은 장교 중에 이력이 있고 감당할 만한 자를 특별히 골라 사무를 맡게하고, 속읍의 부장 이하를 차출하는 규정도 이상의 예에 따라 마련해서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조실록』 권49 22년 10월 19일 기유

5읍 군액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줄임) 진위 전제 군액 : 무포 양군 92명(병조 상번 기병 26명·금영 정군 40명·어영 정군 26명), 남포 양군 9백 37명(병조 기병 2백 36명·기병 자보 78명·보병 7명·제색보 30명·역보(驛保) 57명·보충대(補充隊) 1명·유청군관(有廳軍官) 2인·훈국 포보 51명·향보 23명·금영 관보 57명·자보 43명·어영 관보 60명·자보 28명·총청둔아병(摠廳屯牙兵) 20명·수청 아병(守廳牙兵) 34명·과하군(把下軍) 6명·군수보(軍需保) 1명·별과진 73명·충훈부 충익위 24인·군청 선무 군관 76인·공조 장보(工曹匠保) 30명, 무포 사군 3백 80명(속오군 3백 54명·과하군 26명), 남포 사군 6백 11명(병조 역보 66명·총청 둔아병 77명·군수보 88명·과정군(罷定軍) 64명·장초군(壯抄軍) 6명·수청 군수보(守廳軍需保) 49명·아병 2백 1명·과하군 21명·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20명·여정보(餘丁保) 19명, 이상 2천 20명 가운데 2백 30명을【남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7백 90명임.

시제 군액 : 무포 양군 92명【금영 정군·어영 정군 및 병조 기병으로서 장략대로 단속되었음.】, 남포 양군 7백 97명에 속한 1백 71명【각종 자보 및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략대로 단속하였음.】·6백 26명【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무포 사군 2백 90명에 속한 72명【수어청과 충융청의 둔아병과 속오군 중에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략대로 단속하였음.】·1백 70명【신풍대로 단속하였음.】·48명【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남포 사군 6백 11명에 속한 42명【수어청과 충융청의 아병 및 속오군 중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

락대로 단속하였음.】· 5백 69명【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이상 1천 7백 90명임. 이 가운데 장락대가 3백 77명【양정(良丁)임.】, 신평대가 1백 70명【사정(私丁)임.】, 팔달대가 1천 1백 95명【통장 8명과 타장 18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난후 아병이 48명【사정임.】임.(줄임)

『정조실록』 권49 22년 10월 19일 기유

5 읍에 소속된 각 명색(名色)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용인은 교원생(校院生) 및 각종 보솔(保率)이 1천 1백 47명【본읍에서 살살이 조사해 안건을 만든 것임.】이고, **진위**는 교원생 및 각종 보솔이 1백 75명【본읍에서 살살이 조사해 안건을 만든 것임.】이고, 안산은 교원생 및 각종 보솔이 4백 85명【본읍에서 살살이 조사해 안건을 만든 것임.】이고, 시흥은 교원생 및 각종 보솔이 2백 5명【본읍에서 살살이 조사해 안건을 만든 것임.】이고, 과천(果川)은 교원생 및 각종 보솔이 1백 75명【본읍에서 살살이 조사해 안건을 만든 것임.】이다.

『정조실록』 권49 22년 10월 19일 기유

5 읍에서 납부하던 각 아문전(各衙門錢)을 급대(給代)하게 한 총수는 다음과 같다. (줄임) **진위** 무급 대질:병조 기병자보 78명【1명당 2냥.】· 유청 군관 2인【1인당 2냥.】· 금영 관보 57명【1명당 2냥이며 감액된 초(哨)는 급대하지 않음.】· 자보 43명【1명당 2냥.】· 어영 관보 58명【1명당 2냥이며 다른 읍 금영군의 자격으로 급대함.】· 자보 28명【1명당 2냥.】· 별파진보 2명【1명당 2냥.】· 충훈부 충익위 8인【1인당 2냥.】· 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20명【1명당 1냥.】임. 급대질:병조 기병 2백 36명【1명당 2냥.】· 보병 7명【1명당 2냥.】· 제색보 30명【1명당 2냥.】· 역보 57명【1명당 2냥.】· 또 66명【1명당 1냥.】· 훈국 포보 51명【1명당 2냥.】· 향보 23명【1명당 2냥.】· 충청둔아병(摠廳屯牙兵) 20명【1명당 2냥.】· 또 77명【1명당 1냥.】· 군수보 1명【2냥.】· 또 88명【1명당 1냥.】· 파정군(罷定軍) 64명【1명당 1냥.】· 장초군(壯抄軍) 6명【1명당 1냥.】· 수어 군수보 49명【1명당 1냥.】· 별파진 73명【1명당 2냥.】· 공조 장보(工曹匠保) 30명【1명당 2냥.】 이상 합계 2천 1백 30냥 중에서 무급대 5백 72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대되는 돈은 1천 5백 58냥임. (줄임)

『정조실록』 권49 22년 10월 19일 기유

5 읍에서 화성에 납부하는 돈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줄임) **진위**: 남포 양군 6백 26명이 내는 돈【1명당 2냥씩으로 합계 1천 2백 52냥 중에서, 80냥을 수청둔아병(守廳屯牙兵)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으므로 실제 액수는 1천 1백 72냥

임.】납포 사군 5백 69명이 내는 돈【1명당 1냥씩으로 합계 5백 69냥이나, 이 가운데 2백 22냥을 수둔아병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고, 19냥을 여정보(餘丁保) 신역으로 내영에 납부하므로 실제 액수는 3백 28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1천 5백냥임. (출임)

『정조실록』 권49 22년 10월 19일 기유

어영청이 아뢰었다. “경기의 안산·시흥·진위·용인·과천 등 5 읍에 있는 본청의 정군 2백 18명·자보(資保) 2백 34명·관보 1백 42명·별파진(別破陣) 12명 등 도합 6백 6명을 화성에 소속시키는 대신 기내에 다른 읍에 있는 위영군(衛營軍)을 어영군으로 옮겨 주는 일과 관련, 임금의 재가를 받은 절목에 따라 금위영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기내의 금위군 가운데에서 이 숫자에 맞추어 삭녕(朔寧)의 정군 1백 27명·자보 1백 27명·복마보(卜馬保) 9명과 풍덕(豐德)의 정군 82명·자보 82명·복마보 7명과 지평의 정군 9명·자보 9명과 장단(長湍)의 관보 1백 42명·별파진보 12명 등을 지금을 기점으로 하여 모두 본청에 옮겨 소속시키라고 본도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띄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정조실록』 권51 23년 5월 9일 병인

차대하였다. 충청도 암행 어사 신현(申絢)이 명령을 처리하고 보고서를 올렸다. 서계를 올려 **평택현감** 유상문(柳相文), 아산현감 홍장보(洪章輔), 태안현감 이종해(李宗海), 남포현감(藍浦縣監) 이항(李潢), 공주판관 김기응(金箕應), 중군(中軍) 유진엽(柳鎭燁) 등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상을 논하여 차등있게 죄를 논했다.

『정조실록』 권51 23년 5월 9일 병인

호서의 기민 구제는 1월부터 실시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진휼을 끝냈다. 공적으로 진휼한 곳은 홍주(洪州), 청주, 은진(恩津), 석성(石城), 부여, 한산, 연기, 태안, 서천, 임천(林川), 회덕(懷德), 서산, 정산(定山), 직산, 아산, **평택**, 진잠, 보령, 결성(結城), 당진, 전의(全義), 천안, 덕산(德山), 해미 등의 읍, 수군절도사 영, 성환, 울봉(栗峯) 등의 역참, 평신(平薪), 안흥(安興), 소군(所斤), 마량(馬梁), 서천포(舒川浦) 등의 진(鎭)이었다. (출임)

21. 『순조실록』

『순조실록』 권4 2년 정월 4일 병자

전 승지 채홍원(蔡弘遠)을 은성부(穩城府)에, 전 포장(捕將) 조규진(趙圭鎭)을 낙안군(樂安郡)에 귀양보내고, 전 교리 김희채(金熙采)를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깎아내 버릴 것을 명하였다. 비변사에서 대사간 유한녕(兪漢寧)의 상소에 대한 처리사실을 보고하기를 “채홍원은 품성이 본래 어리석고 전법(傳法)은 내력이 있어 사악한 도적의 남은 무리들의 의지하는 바가 되니 서울 근처에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포도대장의 일은 은밀하게 부탁한 괴수(怪手)가 이미 추율(追律)을 당하였으니 사주를 받은 포도대장이 어찌 그 죄를 도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고(現告)를 받고 채홍원과 함께 찬배의 울을 베풀어야 합니다. 김희채가 **평택**의 안핵사로 나갔을 적에 그때 전하는 이야기가 파다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공문이 험하게 일어났으니 그대로 둘 수가 없으며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조실록』 권4 2년 6월 8일 정미

충청도 암행어사 신귀조(申龜朝)가 보고서를 올려 **평택** 사람 권위(權瓚)가 사학(邪學)을 배척하다가 원통하게 죽은 일, 아전의 정원을 재량하여 줄이는 일 등에 대해 아뢰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좋은 방도를 따라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순조실록』 권4 2년 9월 12일 경진

비변사에서 말하기를 “장용영(壯勇營)을 철폐한 뒤에 돈·곡식·무명·베, 둔토·군기·공해를 변통·처리하여 이속(移屬)하고 군병(軍兵)을 운영하는 것과 호조·내수사 각 아문(衙門)의 노비공(奴婢貢) 급대(給代)를 조처하는 방도를 각각 별단(別單)을 갖추어서 올립니다.” 하였다.【돈·곡식·무명·베의 변통·처리 별단 각항 쌀의 합계 2만 3백 62석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항 쌀의 합계 6천 8백 23석은 호조에 소속시킨다. (줄임) 둔토를 구처하는 질, 부안·고부·고성·김해·창원·횡성·홍주의 둔토는 광주에 소속시키고, 어지(於支)의 둔토는 어영청에 소속시키고, **진위**·음죽·연천·시흥의 둔토는 균역청에 소속시키고, 봉산·황주·용진·안주·박천·장흥·정주(定州)·**진위**·고양·김포·지평(砥平)·양근(陽根)·가평의 둔토와 전곡(箭串)의 내전세(萊田稅), 흥덕동(興德洞)의 포전세(圃田稅), 도저동(桃渚洞)의 포전세, 연곡사(鵞谷寺) 백지(白紙)는 내수사에 소속시키고, 수원·안산·시흥·용인의 둔토는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장연(長淵)·광주(廣州)·가산(嘉

山)·고성·영유(永柔)·공주·이천(伊川)·용강(龍岡)·음죽·파주의 둔토는 군역청에 소속시키고, 과천의 둔토는 노량진(鷺梁鎭)에 소속시키고, 배봉의 둔토는 해당목관(牧官)에 소속시킨다.(줄임)

『순조실록』 권9 6년 8월 21일 을미

형조에서 아뢰기를 “**진위현**의 동몽(童蒙) 김유악(金維岳)이 글을 올려 사정을 하소연하기를 ‘제 아버지 김여(金鋹)와 숙부 김선은 신유년 봄에 국옥(鞠獄)에 잡혀 가서 맞아가며 신문을 여러 번 당하고 제 아버지는 진해현에 정배(定配)되었으며 제 숙부는 초산부(楚山府)에 정배되었는데, 제 아버지의 죄안은 곧 숙부에게 보낸 서찰 가운데 강이천(姜彝天)을 칭찬한 일이고 제 숙부의 죄안은 곧 강이천의 집에서 하룻밤 만나서 이야기한 일입니다. 강이천이 일찍이 스스로 이르기를 「존사(尊師)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도 삼례(三禮)의 글에 공부하여 공령(功令)의 글을 잘하였다.」고 하였는데, 제 아버지는 실지로 강이천의 천만 가지 요사하고 간악한 정상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 평일의 가식(假飾)을 믿고서 과연 칭찬한 말이 있었으나, 또한 그의 평생에 울곡(粟谷)을 높이 우러러 사모하여 삼례를 독실히 믿은 것을 말한 데에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일 과연 진짜 간섭하여 마음을 같이한 것이라면 그 서찰 가운데에 어찌 한마디 말도 귀양을 가게 된 본래의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겠습니까? 국정(鞠庭)에서 그 사람과 대질하기까지 했으나 끝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같이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제 숙부가 밤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몹시 술에 취하여 그들이 수작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강이천·김건淳(金建淳)의 진술에도 역시 다 실상을 토하여 제 숙부는 건(件)마다 억울한 죄명에서 벗어났으니, 옥사가 끝난 뒤에 공론도 역시 억울함을 일컬음이 많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아울러 대신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대신이 모두 말하기를 “김여의 형제는 하나도 범한 바가 없고 하나도 의심할 것이 없으니, 지금에 이르러 너그럽게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줄임)” 하였다.(줄임)

『순조실록』 권10 7년 2월 17일 기축

큰 바람이 불었다. 경기·해서·호서 3도의 바닷가 고을에 해일이 일어났다. 통계해 보니, 경기 교하(交河) 등 15읍진의 물에 떠내려간 민가가 4백 20호, 익사한 사람이 10명, 침수된 전답이 7천 2백 79석 영락(零落), 파손된 염분(鹽盆)이 3백 72좌(坐), 배가 29척, 어전(漁箭)이 19곳이었다. 호서는 **평택** 등 19읍진의 물에 떠내려간 민가가 4천 6백 90호, 익사한 사람이 13명, 침수된 전답이 5천 7백 33석 영락, 파손된 염분이 68좌, 배가 43척, 어전이 36곳이었다. 해서는 김천(金川) 등 4읍의 침수된

전답이 68석 영락, 파손된 배가 6척, 어전이 5곳이었다. 곳곳에 터진 제언은 이루다 셀 수가 없었다.

『순조실록』 권10 7년 3월 13일 을묘

선전관 윤수임(尹守任)이 평택 등의 고을을 위로하여 타이른 사실의 전말을 급히 아뢰었다. 하교하기를 “연변에서 해일이 일어난 이후 각도의 도신 및 선전관의 장계가 모두 도착했는데, 재해를 입은 것에 비록 알고 깊음은 있을지라도 봄을 당해 궁한 백성들이 살 곳과 생업을 잃었으니, 지극히 불쌍하고 측은하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법을 조정으로 하여금 강구해 뒷날 차대할 때 아뢰어 처리하라.” 하였다.

『순조실록』 권11 8년 12월 17일 무신

경기 암행어사 홍의영(洪儀泳)이 보고하여, 양주목사 송면재(宋冕載), 장단부사 유상엽(柳相燁)·진위현령 박영수(朴榮壽), 양성현감 정재중(鄭在中)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경중에 따라 죄를 심리하여 처분하게 하였다. (줄임)

『순조실록』 권13 10년 5월 27일 경진

수원·광주·경기·삼남의 진휼을 마쳤다고 아뢰었다. (줄임) 호서의 평택 등 50읍진과 역의 기민은 1백 31만 1천 9백 59구이었는데, 분진한 각곡은 10만 5천 3백 24석 8두이었다. (줄임)

『순조실록』 권14 11년 3월 30일 무인

(줄임) 아뢰기를 “공충도(公忠道)의 폐단을 아뢴 책자에 대한 임금의 결정 내에 ‘홍주 등 14고을에서 더러는 진전을 청하기도 하고 더러는 다시 측정할 것들을 청하기도 하였으니, 전정의 문란함을 알 만하며, 왕정에는 경계(經界)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는데, 이 고을이 이와 같다면 다른 고을도 알 만하며 이 도가 이와 같다면 다른 도도 알 만하다. 전정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민부(民賦)를 고르게 하겠는가? 지금 만약 일시에 행하려고 한다면 함께 거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폐단이 될 듯하니, 만약 각도의 도신과 수령으로 하여금 가장 문란한 곳부터 금년에 몇 고을을 다시 측량해 나가게 한다면 10년이 못되어 거의 다시 측량을 마치게 될 것이며, 번거롭지도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묘당에서 널리 의논하고 강구한 뒤에 품처하게 하라.’ 하시고, 군정과 환곡 등 절실하고 고질화된 병폐 외에 여러 가지 잡폐 또한 많이 있으니, 일체로 장점을 따라 품처할 일을

명령하였습니다. (줄임) **평택** 등 다섯 고을에 바닷물이 넘쳤을 때인 정묘년과 무진년 두 해의 신포(身布)와 환포(還布)를 받지 않거나 덜어주도록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갑자기 의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대로 두게 하소서”. (줄임)

『순조실록』 권18 15년 7월 29일 임자

관동·삼남·광주·강화에서 진흙을 마쳤다. (줄임) 수령 및 진흙을 도운 백성들에게 모두 상을 주는 격식을 베풀었다. (줄임) 울산부사 박종민(朴宗民)·함양군수 김지순(金芝淳)·삼가현감 홍정섭(洪鼎燮)·비안현감 현인복(玄仁福)·운봉현감 민종혁(閔宗赫)·영암군수 이종영(李鍾英)·임천 전 군수 조진선(趙鎭宣)·정산현감 김민순(金民淳)·부여현감 오정수(吳鼎秀)·면천군수 이면심(李勉心)·**평택현감** 박인수(朴寅秀)·평강현감 김철순(金徹淳)은 모두 벼슬을 올려주었다.

『순조실록』 권27 25년 10월 9일 임술

공청감사(公淸監司) 김학순(金學淳)의 장계에 이르기를 “한산(韓山)·비인(庇仁)·직산·신창(新昌)·천안·**평택**·서천 등 일곱 고을에 지난달 초2일과 초3일에 바닷물이 크게 넘쳐 포구 연안의 평야가 대부분 침몰되어 배어서 두렁에 깔아 놓은 벼곡식이 많이 떠내려 갔고, 바닷물이 휩쓸어 패인 곳에 잔물이 오래 남아 있어 장차 황폐한 땅이 될 염려가 있으며, 직산의 언리(堰里) 한 면은 바다와 가장 가까워서 피해가 더욱 혹심합니다.” 하였다.

『순조실록』 권30 29년 10월 29일 경인

전라좌도 암행어사 유성환(兪星煥)의 보고에, 순천 전 부사 윤명규(尹命圭)·**진위현령** 유영근(柳英根) 등의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심리하여 처단하고, 또 담양부사(潭陽府使) 심존지(沈存之)의 잘 다스린 정상을 진달하니, 옥새를 찍은 글과 관복감을 두필을 내려 주었다. (줄임)

『순조실록』 권30 29년 11월 30일 경신

공청도 암행어사 홍원모(洪遠謨)가 보고하여, 충주목사 조제인·**평택현감** 조진문(趙鎭文) 등의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였는데, 모두 경중에 따라 심리하여 처단하도록 하령하였다. 덧붙인 문서로 군정·전부·조직 등 삼정의 폐단과 전비(戰備)의 소홀함과 역참(驛站)의 퇴락, 아전 숫자의 점증(漸增), 송금(松禁)이 오래동안 해이된 것 및 조창(漕倉)에서 함부로 거두는 것, 관결(官結)의 편중(偏重) 등의 문제를 아뢰었는데, 조정으로 하여금 좋은 방도를 채택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순조실록』 권32 31년 7월 14일 갑자

예조에서 여러 도의 유생의 상언으로써 복계(覆啓)하였는데, 광주(廣州)의 통덕랑(通德郎) 이희범(李僖範)과 김포의 선비 이지화(李至和)와 과천의 선비 이명해(李命海)와 통진의 선비 박종륜(朴宗倫)과 수원의 선비 신사하(辛師夏)·최정린(崔廷麟)·장용현(張龍見)과 충주의 선비 권국화(權國華)와 서원(西原)의 통덕랑 박세미(朴世美)와 부여의 통덕랑 유한승(兪漢昇)과 황간(黃澗)의 생원 남치형(南致亨)과 광주의 사인 임일기(任日箕)와 통천(通川)의 선비 조상린(趙相蘭)과 **평택**의 선비 장준(張濬)과 서산의 선비 최만징(崔萬澄)에 대해서는 효행으로써 아울러 증직하였다. (줄임)

『순조실록』 권33 33년 6월 12일 신해

공충좌도 암행어사 김기만(金箕晩)이 보고하여, 온양의 전군수 이조식(李祖植)·**평택**의 전 현감 구병로(具秉魯) 등의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아울러 경중을 나누어 심리하여 처단하게 하였다. (줄임)

『순조실록』 권33 33년 10월 2일 기해

경기 암행어사 이시원(李是遠)이 보고하여, 여주목사 서유소(徐有素)·**진위현령** 이유승(李儒勝)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을 나누어 심리하여 처단하게 하였다. (줄임)

22. 『헌종실록』

『헌종실록』 권6 5년 6월 25일 기축

경기 암행어사 홍영규(洪永圭)를 회정당(熙政堂)에서 불러 보고, **진위현령** 박장암(朴長巖) 등에게 차등 있게 죄를 주었는데, 어사의 보고에 인한 것이었다.

『헌종실록』 권6 5년 9월 30일 임술

임금이 회정당에 나아가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불러보았다. (줄임) 이지연이 아뢰기를 “**평택**의 죽은 선비 권위는 고 충신 권순장(權順長)의 현손인데, 지난 임자년에 그 고을의 수령이었던 이승훈이 방자하게 사교를 창도(唱導)하고 성묘에 배알하지 않은 죄를 태학에 통지하여 엄중한 말로 통렬하게 배척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어사를 보내어 날날이 살피게 하였는데, 그 당시 어사는 이승훈의 인척이 되는 당류였던 까닭에 부탁을 받고 죄를 얻어 자리에서 타살하여 입을 막았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소매를 걷어붙이며 분개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악한 무리들

이 다시 매우 성해져서 백성들의 뜻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를 당하여, 이와 같은 사람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도와 뿌리박게 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당하므로, 감히 아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아된 바가 좋다. 이조에 분부해서 상당한 관직을 포증(褒贈)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헌종실록』 권14 13년 10월 8일 갑인

청주 전 목사 이조식(李祖植)·**평택** 전 현감 정성수(鄭性秀) 등을 차등을 두어 죄주었다. 어사의 보고에 말미암은 것이다.

23. 『철종실록』

『철종실록』 권3 2년 윤8월 초하루 갑신

가평·양근·**진위**·양성 등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과 익사하거나 압사한 사람에게 홀전을 내렸다.

고종 · 순종실록 평택 관련 자료

『고종실록』 권2, 2년 8월 15일 정미

아산, **평택**, 신창(新昌), 천안, 전의(全義), 괴산, 진천, 전주, 남원, 운봉(雲峯), 곡성, 흥양(興陽), 동북(同福), 순천 등의 고을과 가리포진영(加里浦鎭營)에서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과 물에 빠져죽은 사람들에게 **훈전(恤典)**을 베풀었다.

『고종실록』 권3, 3년 6월 18일 을사

의정부가 전좌(殿最)에서 특출하게 성과를 나타낸 수령들을 등급을 나누어 다시 제의하였는데 차등있게 표창해 주었다. 안악군수 이휘중(李煥重), 창원부사 이명석(李明錫), 김해부사 허전(許傳), 선천부사(宣川府使) 이남보(李南輔), 선산부사(善山府使) 김병우(金炳愚), 공주판관 민치서(閔致序), 김제군수 이건하(李乾夏), 금산군수 김병연(金秉淵), 용강현령(龍岡縣令) 유초환(兪初煥), **진위현령** 이승겸(李承謙)에게는 모두 임금의 인장이 찍힌 글과 안팎 옷감(表裏)을 주는 은전을 베풀었다. (줄임)

『고종실록』 권4, 4년 정월 17일 임신

선혜청(宣惠廳)에서 제의하였다. “경기감사 이의익(李宜翼)이 보고를 올리기를 ‘본 선혜청에 바칠 쌀 1,108석 13두와 콩 7석 5두를 실은 공충도(公忠道) 덕산군(德山郡)의 대동선(大同船) 1척이 병인년(丙寅年) 10월 19일에 **양성현(陽城縣) 농도(籠島)**에 이르러 전체 배가 침몰하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쌀이 1,087석인데 법전에 따라서 물에 젖은 쌀을 다시 말뚝으로 되면 실지로는 쌀이 694석 10두나 됩니다. 이것을 시가(時價)대로 1냥(兩) 9전(錢)씩으로 팔아 바치니 계산하여 볼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에 잠겼던 곡식에 대한 우환이 전후에 걸쳐 많고 많았지만 모두가 의심스럽고 괴상한 이러한 배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미 안쪽 바다에 이른 테다가 또한 어둡지도 않고 풍랑과 안개를 만난 것도 아니며 배를 부리고 지키는 채주가 없는 것을 근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세 높음 도망가버려 스스로 무서워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평계대며 물에서 건져낸 쌀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하여 거의 절반에 가깝게 하였습니다. 그리

고 함께 신고 간 콩에 대해서는 전혀 형체를 나타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명하여 볼 때 미리 계획한 흔적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도망쳐버린 세 놈을 즉시 자취를 따라서 체포하고 감색(監色), 사공을 다시 엄하게 형장을 쳐서 기어코 진심을 말하도록 한 다음 해당한 법조문에 따라서 형벌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곡을 주관한 관리인 덕산군수 신석유(申錫游)와 지방의 관리인 양성의 전 현감 이민항(李敏恒)을 모두 법말은 관청으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고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양곡은 이미 팔아치운 만큼 품질이 낮은 쌀과 합쳐서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칠 데 대한 뜻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인하였다. 잡아다 신문하기 위하여 잠시 죄의 집행을 멈추게 하였다.

『고종실록』 권4, 4년 8월 24일 갑진

사복시(司僕寺)에서 제의하기를 “이번에 제주에서 전후에 걸쳐 바치는 공물을 운반하는 말을 중도에서 이와 같이 많이 잃어버린 것은 전날에 없던 일입니다. 잘 선발하여 봉진하지 못한 해당 목사 이후선(李後善)과 잘 호송하지 못하여 많은 수량을 잃어버리게 한 지방의 관리인 임피현령(臨陂縣令) 윤흥선(尹興善)을 모두 해당 부에 지시하여 잡아다 신문하고 처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제군수 홍병희(洪秉僖), 옥천군수 김병기(金炳基), **평택현감** 송태진(宋泰鎭)도 다같이 벼슬을 파면시키는 형벌을 적용할 것이며 이 밖에 잃어버린 수령들도 다같이 직접 고발을 받은 다음 중한 편으로 추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지시하기를 “중도에서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는가. 제주목사와 오는 길가에 있는 고을의 수령들을 물론 중한 죄에 걸려 처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고을의 사무를 보는 데서 수령이 빈다는 것은 민망한 노릇이니 아직은 중한 편으로 과오를 추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5, 5년 10월 15일 무오

경기암행어사 정순조(鄭順朝)를 불러들여 만나보았다. 그의 서면 보고에 근거하여 전 죽산부사 정형기(鄭亨基), 전 통진부사(通津府使) 백낙선(白樂善), 부평부사 서광두(徐光斗), **진위현령** 송병찬(宋秉贊) 등에게 죄를 주고 안성군수 정기석(鄭箕錫), 전 영평군수(永平郡守) 이헌경(李憲綱), 용인현령 박용민(朴容珉), 양지현감(陽智縣監) 이헌문(李憲文), 과천현감 이병제(李秉悌), 적성현감(積城縣監) 조운주(趙雲柱), 음죽현감(陰竹縣監) 김두하(金斗河) 등에게는 모두 표창으로 벼슬을 올려주었다.

『고종실록』 권5, 5년 11월 초하루 갑술

공충좌도암행어사 한경원(韓敬源)을 불러들여 만나보고 서면 보고에 근거하여 전문의현감(文義縣監) 심의훈(沈宜薰), 단양군수 이유헌(李裕憲), 제천현감 홍종관(洪鍾觀), 전 청풍부사(淸風府使) 윤종의(尹宗儀), 신창현감(新昌縣監) 최승현(崔升顯), **평택현감** 이만응(李晚應), 영동현감 박승수(朴升壽) 등에게는 죄를 주고 충주목사 조병로(趙秉老), 천안군수 오달선(吳達善), 보은군수 조동순(趙東淳), 서원현감(西原縣監) 남정학(南廷鶴), 전 진천현감 이병석(李秉奭), 전전 전의현감(全義縣監) 이제원(李濟元), 청산현감(靑山縣監) 김계진(金啓鎭), 전 **평택현감** 송태진(宋泰鎭), 황간현감(黃澗縣監) 심영경(沈英慶), 음성현감(陰城縣監) 초징명(楚徵明), 직산현감 강준수(姜駿秀), 영춘현감(永春縣監) 박규동(朴奎東), 성환찰방(成歡察訪) 김병수(金炳洙) 등에게는 모두 표창으로 벼슬을 올려주었다.

『고종실록』 권7, 7년 8월 21일 을묘

예조에서 제의하였다. “지난 을축년(乙丑年)에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의 제사를 지낼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조(吏曹)에서 해당 집안 어른을 불러다가 속히 바로잡을 데 대하여 지시를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예조에서 올린 간단한 제의서에 의하여 시골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모인 다음에 의논하여 결정할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방금 양성에 있는 유학(幼學) 정치석(鄭致奭)을 비롯한 5명이 연명으로 올린 글에 의하면, 봉화백의 제일 큰 갈래의 16대손인 정응기(鄭應夔)를 사손(嗣孫)으로 정하였으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한 조건에서 지시를 오래 끄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정응기를 봉화백의 사손으로 세우고 문건을 작성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하니 승인하였다.

『고종실록』 권8, 8년 4월 22일 신사

삼군부(三軍府)에서 보고하였다. “충청도병사(忠淸道兵使)의 군영(軍營)에 포군(砲軍) 101명, 충주목에 포수(砲手) 200명, 공산부(公山府)에 포군 50명, 홍주목(洪州牧)에 포수 120명, 청풍부(淸風府)에 화포군(火砲軍) 50명, 태안부(泰安府)에 포수 100명, 임천군(林川郡)에 포수 40명, 한산군(韓山郡)에 포수 40명, 서천군에 포군 50명, 면천군(沔川郡)에 포수 40명, 천안군에 포수 40명, 괴산군에 포수 19명, 서산군에 포수 50명, 온양군에 포군 20명, 대흥군(大興郡)에 포수 20명, 홍산현(鴻山縣)에 포수 23명, 제천현에 포군 35명, **평택현**에 포수 35명, 직산현(稷山縣)에 포수 20명, 정산현(定山縣)에 포군 15명, 청양현(靑陽縣)에 포군 15명, 은진현(恩津縣)에 포수 40명,

노성현(魯城縣)에 포군 20명, 부여현에 포수 20명, 석성현(石城縣)에 포군 15명, 비인현(庇仁縣)에 포수 50명, 남포현(藍浦縣)에 포군 50명, 진천현에 포군 60명, 결성현(結城縣)에 포군 50명, 보령현(保寧縣)에 포수 50명, 해미현(海美縣)에 포수 50명, 당진현에 포수 45명, 신창현(新昌縣)에 포수 40명, 예산현에 포수 40명, 목천현(木川縣)에 포군 16명, 전의현(全義縣)에 포수 20명, 황간현(黃澗縣)에 포군 100명, 아산현에 포군 40명, 평신진(平新鎭)에 포수 40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고종실록』 권11, 11년 7월 30일 경오

차대(次對)를 하였다.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이 말하였다. (줄임) 또 말하였다. 지난 번 접견 석상에서 지시를 받고 원자의 태를 모시고 갈 때 지나가는 각 고을에서 백성들의 폐단에 관계되는 일들을 보고하여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방금 경기 감사의 보고를 보았는데 시흥, 과천, **진위** 등 세 고을에서 이전부터 내려오는 허위 결수가 358결 81부 1속인데 모두 백판에서 세납을 징수하고 있으니 영영 감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세 고을의 허위 결수는 참으로 뼈를 깎아내는 폐단입니다. 경사를 만나 은혜를 베푸는 마당에서 그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헤아릴 것도 없이 특별히 허락하여 10년 동안 세납을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제의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지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니 이유원이 말하기를 “10년 동안 세납을 중지하면 그 사이에 다시 소생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줄임).

『고종실록』 권11, 11년 9월 20일 기미

차대(次對)를 하였다. 영의정 이유원이 말하였다. “지난 번 접견에서 원자의 태를 묻는 곳으로 따라갈 때 큰 길가 고을 백성들의 폐해를 알아보고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지금 충청감사 성이호(成彝鎬)의 장계를 보니 **평택**, 아산, 신창(新昌), 예산, 대흥(大興), 결성(結城) 등 6개 고을에서 진전(陳田) 336결 6부는 모두 대장에 올라있지도 않는데 해마다 억울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홍주의 제방 부근에 논을 푼 곳은 그 전에 조세를 바친 토지가 1결 58부 6속이었는데 지금은 제방을 대충 쌓은 조건에서 전세는 응당 도로 삭감하여야 하니 묘당(廟堂)에 문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원자의 태를 가지고 갈 때 은혜를 베푸는 전례가 이미 있고 본도는 특히 다른 만큼 **평택** 등 6개 고을의 묵은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특별히 조세를 그만두도록 허락하고 홍주의 제방 부근 논에 대해서는 장계(狀啓)의 요청대로 조세를 감해주도록 공문을 띄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인하였다.

이러하였습니다. ‘도 안의 **평택**·직산 두 고을의 묵힌 토지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준 것이 지금 이미 기한이 찼으나 토지없이 원통하게 물게 되니 실상 딱합니다. 평택현의 기묘년에 큰물에 의하여 떨어져 나간 토지를 갑신년에 다시 일군 묵힌 10결 97부 4속과 직산현의 경진년에 사고로 잡아준 묵 가운데서 241결 22부를 다시 5년간 조세를 받는 것을 연기시켜 줄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한이 되자 문득 또 시끄럽게 청하고 토지세는 중요한 만큼 물론 의논하기 곤란합니다만 두 고을로 말하면 가장 작은 현으로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생판으로 물리는 것이 이미 이렇게 원통한 일로 되고 있는 만큼 회유하고 보호하는 도의상 응당 감면시켜주고 돌려주는 정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년을 한정하여 조세를 감면시켜주어 기어이 원 충량을 보충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줄임)

『고종실록』 권23, 23년 5월 23일 을묘

의정부에서 제의하였다. “지금 전 경기감사 박제관(朴齊寬)이 보고한 것을 보니, **진위현**은 임오년 이후부터 농사가 흉년이 들어 곡식값이 날로 올라가서 임오, 계미, 갑신 3년간 조세를 면제시켜주었는데, 대동(大同)의 쌀과 콩도 합 196섬이 모두 해당 각 고을에서 각 년도에 축낸 속에 들어갔는데, 사실 현물로 받아다 바칠 방도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미년에 이미 시행한 전례도 있는 만큼 각기 그해에 바칠 때의 값으로 특별히 대신 바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규례를 놓고 볼때 정녕 토의하기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만 받아낼 곳이 없는 만큼 현물로 마련하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보고한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인하였다.

『고종실록』 권24, 24년 8월 16일 경자

검예조판서 이재원(李載元)을 **평택현**으로 귀양보냈다. 여러번 신칙하는 지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임명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지시가 있었다.

『고종실록』 권24, 24년 8월 29일 계축

평택현에 귀양보낸 죄인 이재원을 놓아주라고 지시한 다음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임명하였다.

『고종실록』 권26, 26년 2월 10일 병술

의정부에서 제의하였다. “방금 충청감사 민영상(閔泳商)의 장계를 보니, 도 내의

평택, 직산의 두 고을은 모두 바닷가에 있는데, 언제나 논밭이 물에 떠내려가기 때 문에 작황을 확인하고 세액을 정할 데가 없는데 종전대로 조세를 받으면 백징(白徵) 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백성들은 고장을 떠나가게 될 것이니 **평택현**의 진전(陳田) 10결 97부와 직산현의 진전 234결 1부에 대해서 5년 동안 특별히 조세를 중지하도록 묘당에서 문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청했습니다. 물에 떠내려 갔다면 진흙땅이 생기기 마련인데 조금도 부칠 땅이 없어서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만큼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주는 정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 직산 두 고을의 진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특별히 조세를 중지하여 주되 감영과 고을에서 힘을 들여 일구도록 장려해서 원래의 총량을 회복하도록 신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인하였다.

『고종실록』 권27, 27년 3월 4일 계유

사옹원에서 “이제 경기감사가 보고한 것을 보니,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3월분으로 바치는 음식재료를 **진위** 지방에 와서 화적(火賊)을 만나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위에 바치는 더없이 중요한 음식물을 중도에서 도적을 맞았다는 것은 아주 놀랍고도 황송한 일입니다. 그 지방 관리인 **진위현령** 이태정(李台正)을 해당 의금부에서 잡아다 신문하고 죄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하니 승인하였다.

『고종실록』 권28, 28년 12월 23일 계축

의정부에서 제의하였다. “지금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장계를 보니 **평택현** 냇가 땅 10결 97부 4속과 직산현의 진결(陳結) 234결 1부 7속에 대해서 이미 3년간 조세를 정지하도록 승인을 받았는데, 평택에서는 조금도 개간한 것이 없고, 직산에서는 약간의 진흙 땅에 조세를 매긴 것이 1결 60부이고 그 나머지는 아직도 냇가 땅으로 남아 있어 대체적인 윤곽조차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다시 5년을 연장하여 조세를 정지하도록 묘당에서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 줄 것을 청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경작하지 않은 토지라는 것을 알게된 이상 어떻게 조세를 요구하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불쌍히 생각해야 할 것이니 특별히 기한을 3년 연장하게 하고, 감영과 읍에서 잘 감독하고 신칙하여 점차 조세 총액을 회복하도록 공문으로 알리는 것이 어떻까 합니다.” 하니 승인하였다.

『고종실록』 권29, 29년 3월 18일 병자

의정부에서 제의하였다. “도적을 막을 것에 대하여 접견 석상에서 한 신칙과 의정부에서 올린 제의가 여간 엄하지 않았는데 계속 성하여 수도의 가까운 곳에서 집

들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수도 주변도 오히려 이런 형편이니 지방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경기 지방을 말하더라도 고양, 파주, **진위**, 용인이 특히 심하여 길이 막히고 역참이 텅 비었으며 도적의 무리가 성해도 규찰하여 체포하였다는 보고는 들을 수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포청(捕廳), 지방에서는 감사나 수령들이 엄하게 신칙하고 장교와 나졸들을 많이 풀어 철저히 염탐하고 조사하였더라도 어찌 더 번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여기에 미치니 지극히 한심합니다. 좌우포장(左右捕將)과 경기감사에게 우선 엄중하게 추궁하는 법조문을 적용할 것입니다. 도적을 금지시킬 방책에 대해 따로 규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적을 막는 요령에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규찰하여 무리배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결탁하여 패거리를 불러 모으겠습니까. 대개 오가작통법은 인재가 있어 정사가 잘 시행되는 다음에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느 고을을 물론하고 그 고을 경내에서 변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뜸 그 수령을 처벌하고 근무 실적이 성실한가 태만한가를 평가하는 것도 또한 독려하고 신칙하는 법이 되니 우선 네 고을부터 수령 자리를 비우지 말고 그때마다 대책을 세워 기어이 숙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칙한 후에도 혹 전과 같이 하면 해당 지방관에 대해서는 감사로 하여금 규탄하는 글을 올리고 잡아다가 신문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런 내용으로 좌우포도청, 경기감영, 각 도와 5도(五都)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인하였다. 이어 지시하기를 “소문이 그렇듯 자자한데 지방관으로 있는 사람들만은 듣지 못하였겠는가.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이 팔짱을 끼고 앉아 남의 일 보듯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니 네 수령을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신문하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29, 29년 6월 7일 기사

충청도 암행어사 이중하(李重夏)와 전라도 암행어사 이면상(李冕相)을 불러들여 만났다. 다녀온 보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서면보고에 의하면 전 해미현감(海美縣監) 윤형대(尹亨大), 전 **평택현감** 조영원(趙榮元), 전 당진현감 황기인(黃夔仁), 전 청안현감(淸安縣監) 오우선(吳友善), 성환찰방(成歡察訪) 김필현(金弼鉉), 전 충주영장(忠州營將) 윤양대(尹養大), 평신첨사(平薪僉使) 이민성(李敏性), 전 첨사 이상욱(李象郁)…… 등을 차등있게 표창하였다.

『고종실록』 권33, 32년 정월 29일 신축

내무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제의하기를 “개성부(開城府)에다 종래에 경

고 한다.

제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한성부【한성군, 양주군, 광주군, 적성군(積城郡), 포천군, 영평군(永平郡), 가평군, 연천군, 고양군, 파주군, 교하군(交河郡)】

인천부【인천군, 김포군, 부평군, 양천군(陽川郡), 시흥군, 안산군, 과천시, 수원군, 남양군, 강화군, 교동군(喬桐郡), 통진군(通津郡)】

충주부【충주군, 음성군, 연풍군(延豐郡), 괴산군, 제천군, 청풍군(淸風郡), 영춘군(永春郡), 단양군, 진천군, 청안군(淸安郡), 여주군, 용인군, 죽산군, 음죽군(陰竹郡), 이천군, 양지군, 원주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홍주부【홍주군, 결성군(結城郡), 덕산군(德山郡), 한산군, 서천군, 비인군(庇仁郡), 남포군(藍浦郡), 보령군, 임천군(林川郡), 홍산군(鴻山郡), 서산군, 해미군(海美郡), 당진군, 면천군(沔川郡), 태안군, 대흥군(大興郡), 청양군(淸陽郡), 예산군, 신창군(新昌郡), 온양군, 아산군, 정산군(定山郡)】

공주부【공주군, 연기군, 은진군,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 노성군(魯城郡), 옥천군,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 보은군, 회인군(懷仁郡), 영동군,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澗郡), 청주군,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 직산군, 안성군, **진위군**, 양성군, 진산군(珍山郡), 금산군】(줄임)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한성】, 인천부【인천 제물포】, 충주부【충주】, 홍주부【홍주】, 공주부【공주】, 전주부【전주】, 남원부【남원】, 나주부【나주】, 제주부【제주】, 진주부【진주】, 동래부【동래 부산】, 대구부【대구】, 안동부【안동】, 강릉부【강릉】, 춘천부【춘천】, 개성부【개성】, 해주부【해주】, 평양부【평양】, 의주부【의주】, 강계부【강계】, 함흥부【함흥】, 갑산부【갑산】, 경성부【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 목사, 부사, 군수, 서윤, 판관, 현령, 현감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의 군수로 된다.

『고종실록』 권40, 37년 정월 17일 양력.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이 아뢰기를 “공납을 연체시키는 일을 가

지고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하고 아뢰었지만 먼저 가장 심한 고을의 수령은 파면시켜 징계하고 계속해서 속히 내려가 각기 해당 도 관찰사 및 해당 군수를 엄하게 훈계 할 것입니다. 거리를 따져서 기한을 정해주고 날짜를 따져 독촉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는 것이었는데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줄곧 태만하고 있으니 기강이 있는 조건에서 만만 번 놀라운 일입니다. 각기 해당 군 중에서 갑오조(甲午條)를 많이 체납(滯納)한 재령(載寧) 등 4개 군【평산(平山), 수안(遂安), 전주】, 을미조(乙未條)를 많이 체납한 광주 등 3개 군【**평택**, 신천】, 병신조(丙申條)를 많이 체납한 대흥(大興) 등 6개 군【충주, 장성(長城), 나주, 안동, 연안(延安)], 정유조(丁酉條)를 많이 체납한 이천 등 7개 군【신창(新昌), 나주, 거창, 경주, 안동, 영덕(盈德)], 무술조(戊戌條)를 많이 체납한 회덕(懷德) 등 14개 군【괴산, 진천, 여수, 순천, 함평, 진주, 경주, 성주, 예천(醴川), 영덕, 선산, 보성, 장연(長淵)]의 전 군수는 이미 교체 되었다고 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조문대로 징벌하게 할 것입니다. (출임)”라고 하니 승인하였다.

『고종실록』 권40, 37년 3월 23일

각 도의 신규 재결을 감할 것을 허락한다고 명하였다.【경기 420결 73부 3속, 충청남도 801결 40부, 충청북도 694결 40부 7속, 전라남도 3,849결 20부, 전라북도 1,639결 68부 2속, 경상남도 952결 97부 2속, 경상북도 602결 44부 6속, 황해도 1,207결 63부 7속, 평안남도 62결 26부 7속, 평안북도 98결 45부 6속, 함경남도 72결 12부 9속, 충청남도의 해일로 인한 재결 1,569결 18부 2속, **평택**의 개천으로 바뀐 재결 8결 21부 8속이었다.】

『고종실록』 권47, 43년 12월 11일

의정부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이 제의하였다.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 여산(礪山), 경기의 **진위** 등 지방이 다른 지방보다 수재를 많이 당한 것과 관련하여 전 홍주군수(洪州郡守) 유맹(劉猛), 진천군수 이택응(李鐸應)을 모두 위유사로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기 가서 위로하고 전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며 재난을 당한 형편을 문건으로 제때에 보고할 데 대하여 지시로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위유사(慰諭使) 등의 보고를 받아보니 충청남도의 각 군과 전라북도의 여산, 경기의 **진위** 등 지방에서 물에 빠져죽은 사람이 284명,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이 4,020호, 물에 씻겨 나가 유실된 토지가 8,799결 85부 9속이며 충청북도 각 군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63명,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이 2,071호, 물에 씻겨나가 유실된 토지가 3,337결 94부입니다. 생각하건대 금번에 문건으로 급보를 올린

것이 모두 실지조사에 의거한 것이라면 불쌍한 저 백성들이 여러 차례 고통을 겪은 뒤에 이렇게 전에 없는 수재를 당하여 물에 빠져죽고 집이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그 광경은 극도로 참혹하고 처참합니다. 더구나 또 농가들에 식량이 곤란한데 한번 홍수를 겪으면 추수할 것도 전혀 없을 것이므로 백성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놀라움과 한탄을 누를 길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돌보아 묻어주고 거처할 집을 지어주는 방도와 조세와 호포(戶布)를 탕감해주는 은전을 후한 편을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부(內部)와 탁지부(度支部)에서 속히 구제방도를 충분히 의논하고 대책을 세워서 재해를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제때에 안착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돌봐주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시하였다. “제의대로 할 것이다. 이번에 뜻밖의 재난이 늦가을에 있어서 물에 빠져죽은 사람과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민가와 파괴된 제방과 못쓰게 된 토지가 이렇게 많으니 불쌍한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살 곳을 잃고 연이어 쓰러지는 참상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 같다. 원홀전(原恤典)은 내부와 탁지부에서 전례에 따라 배푸는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2,000원을 내려보낼 것이니 적당히 갈라서 보내줄 것이며 각 군에서는 이재민들을 모아놓고 잘 타일러주는 동시에 하나 하나 보존되도록 돌봐주고 집을 지어 안착시키는 방도를 기한을 정해놓고 신칙함으로써 재해를 받은 백성들이 몽땅 흩어지며 한탄하는 일이 없게 할 데 대하여 의정부에서 글을 만들어 거듭 강조하게 할 것이다.”

『고종실록』 권48, 44년 3월 15일 양력

충청남도의 각 군, 경기의 **진위군**, 전라북도의 여산군(礪山郡)에서 집이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졌거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하여 구제금을 주었다.【대궐 안에서 2,000원과 국고금 1만2,876원을 내어 올 것이다.】

『고종실록』 권48, 44년 7월 6일 양력

법부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제의하였다. “평리원(平理院)의 문의서에 의하면 피고 나인영(羅寅永), 오기호(吳基鎬), 김인식(金寅植), 김동필(金東弼), 강상원(康相元), 지팔문(池八文), 박종섭(朴鐘燮), 김경선(金京善), 황문숙(黃文叔), 황성주(黃聖周), 이경진(李京辰), 조화춘(趙化春), 이종학(李鐘學), 최상오(崔相五), 박응칠(朴應七), 황경오(黃景五), 이용태(李容泰), 민형식(閔衡植), 정인국(鄭寅國), 최익진(崔翼軫), 이석중(李奭鍾), 이기(李沂), 서창보(徐彰輔), 윤주찬(尹柱贊), 이광수(李光秀), 윤충하(尹忠夏), 이승대(李承大), 김영채(金永采), 최동식(崔東植), 서정희(徐廷禧), 전덕준(全德俊)의 안전을 검사의 공소에 근거하여 심리하니 피고 나인영은 이렇게 공술하였

습니다. (줄임)

피고 지팔문(池八文)과 박종섭(朴鐘燮)은 같은 달 초에 대전지방에서 이름모를 김주사의 모집에 응하여 수도로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김주사의 지시를 받고 대신을 처죽일 생각으로 남문 밖의 정거장 근처에서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겁에 질려 도주하여 진위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줄임) 해당 범인 나인영, 오기호, 김인식, 김동필, 강상원, 지팔문, 박종섭, 김경선, 황문숙, 황성주, 이경진, 조화춘, 이종학, 최상오, 박응철, 이용태, 민형식, 정인국, 최익진, 이석중, 이기, 서창보, 윤주찬, 이광수, 윤충하, 이승대, 김영채, 최동식, 서정희, 전덕준 등을 해당 원에서 적용한 법조문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인하였다.

『순종실록』 부록 권5, 7년 9월 16일

인원을 진위, 천안, 온양 등의 군에 보내어 목장 개발에 적합한 땅을 선정하도록 명하였다.

진위현(振威縣)—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¹⁾

동쪽으로 양성현 경계까지 13리이고, 남쪽은 충청도 직산현 경계까지 37리이며, 서편으로는 수원부(水原府) 경계까지 12리이고, 북쪽으로 용인(龍仁)현 경계까지 33리인데, 서울과는 1백 18리의 거리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²⁾

본래 고구려 부산현(釜山縣)이다. 옛 연달 부곡(淵達部曲)인데, 또는 금산(金山)이라 하기도 하고, 송촌활달(松村活達)이라 하기도 한다.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수성군(水城郡) 속현으로 만들었고, 고려 때에도 그대로 두었다. 명종(明宗) 2년에 감무(監務)³⁾를 두었고, 그 뒤에 영(令)으로 승격시켰다. 본 조에서도 그대로 하다가, 태조(太祖) 7년에 충청도에서 '떼어서' 본 도에 이속시켰다.

관원(官員)

현령 : 1명이다. 관직 품계(品階)는 종 5품(從五品)이며, 다른 현령과 같다.
훈도 : 1명이다.

군명(郡名)

부산(釜山) · 연달(淵達) · 송촌활달(松村活達)

성씨(姓氏)

본현 : 김 · 이 · 유(柳) · 최 · 송
영신(永新) : 김 · 최 · 오 · 황 · 이
송장(松莊) : 이 · 유(柳)

1) 1432년에 완성된 신찬 팔도 지리지를 바탕으로 하여 1481년(성종 12)에 『여지승람』 50권을 완성, 1486년(성종 17)에 이를 다시 정정하여,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이름으로 발간, 1499년(연산군 5) 개수, 1530년(중종 25)에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간행했다.

2) 군현(郡縣)이 변천해 온 과정

3) 고려 때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縣)의 감독관.

형승(形勝)⁴⁾

길이 남과 북으로 통한다 : 하륜(河崙)이 기문을 지었다.

3도 요충(要衝)이 되는 지역에 위치했다 :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기문이 있다.

산천(山川)

부산(釜山) : 현 동쪽 2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무봉산(舞鳳山) : 현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수원부 편에도 적혀 있다.

천덕산(天德山) : 현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양성현 편에도 적혀 있다.

장호천(長好川) : 현 남쪽 1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용인 속현 으로 되어 있는 처인(處仁) 동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옛 양지현 서편에서 나와서 합류한다. 객관 남쪽을 지나 다시 서편으로 흘러 수원부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으로 들어간다.

토산(土産)

붕어(鮪魚) · 계 · 지황(地黃).

궁실(宮室)

객관(客館)⁵⁾ : ○ 하륜이 지은 중수기(重修記)에, "진위는 한길 옆이어서, 노력(勞力)과 비용이 다른 고을보다 갑절이나 된다. 원이 된 자가 진실로 마음을 지극히 쓰지 아니하면, 민생(民生)을 편하게 하여 공을 이룰 수 없다. 현령 이후(李侯)가 수원(水原) 나의 여차(旅次)⁶⁾에 와서 문안하고 또 말하기를, '고을 객사(客舍)가 거의 못 쓰게 될 지경이었다. 내가 고을 사람과 중건(重建)하기를 도모하고 도관찰(都觀察) 민공(閔公)에게 두 번이나 말했더니, 공이 허가하고 또 비용도 도와 주었다. 내 이에 놓고 있는 자를 모집하고, 녹봉(祿俸) 중에서 남는 것으로 먹이며, 재목을 베고 기와를 구웠다. 옛 터에 가서 더하기도 줄이기도 하여, 가운데 당(堂)을 높게 하고, 양 옆으로는 퇴를 달고 꺾어서 따뜻한 방과 서늘한 마루를 만들었다. 마루와 행랑채, 대문까지도 새롭게 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든 기둥에 약간의 붉은 흙과 백토(白土)를 발랐고, 주위에는 담을 둘렀다' 하였다. 완성된 뒤에 민공이 와서 보고, '현령이 이와 같이 헤아려 생각할 줄은 몰랐다. 기록하여 후인에게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그 달을 넘기지 못하고 민공은 조정(朝廷)에 돌아갔다. 아! 지금 공은

4) 땅의 위치나 모양.

5) 고려 · 조선 시대 각 고을에 설치했던 관사(館舍), 객사(客舍)라고 한다.

6) 여행 중에 머무르는 곳.

서거하였으나, 그의 말씀은 아직도 나의 귀에 있어서 잊을 수 없으니, '자네는 행여 기문(記文)을 지어 민공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를 청한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글이 서투른데 어찌 기문(記文)을 지으리요' 하였다. 그러나 생각하니, 내가 전일 전라도관찰사로 가던 날에 이 고을을 지나게 되어 객사에 유숙하였다. 티가 낮고 습하며, 기둥과 서까래가 썩고 위태한 것이 거의 반이나 되었다. 밤에 비가 왔는데, 밑으로 젖어들고 위로는 썰까 염려되어 누워서 잠들 수 없었다. 날이 밝아서 떠날 참에 늙은 아전들이 문밖까지 전송하였다. 나는 객사가 어찌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3·40년 이래로 고을에 사고가 많아서 백성이 살 수 없었고, 더구나 저의 고을은 남북으로 통하는 큰 길이므로, 사신과 빈객의 행차가 잇달아서 영접·전송하고 접대하느라고 넉넉하지 못함을 염려하는데, 관사 수리까지 어찌 바라겠습니까. 우리들이 진실로 몸 둘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민망해 하다가 떠났는데, 손꼽아 보니 지금 벌써 6년이나 되었다. 이번에 후(候)가 황폐한 것을 일으킨 것이 이와 같으니, 전에 늙은 아전의 말과 어찌 거리가 멀까. 후(候)가 무슨 수단으로 이렇게 하였는지 모르거니와, 오늘 날 세상 형편이 전날의 3·40년과는 벌써 다름을 볼 수 있고, 후(候)의 다스림이 또한 3·40년 동안의 원으로 있던 이와 같은 날에 논할 바가 역시 아닌 것이다. 일찍이 이르기를, '관사라는 것은 사신을 접대하고 임금의 위엄과 덕망을 선포하는 곳인데, 수령된 자가 그 황폐해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성스럽지 못한 것이다' 하였었다. 그러나 수령으로서 건물을 짓는 일에 능하다고 이름난 자는, 으레 백성의 힘을 부리고 혹은 백성의 농사 시기마저 빼앗아 백성의 걱정이 되게 하는게, 후(候)의 이번 일은 놓고 있는 무리만 부렸을 뿐, 온 고을 농사짓는 자에게는 고을 관원이 건축하는 일이 있는 줄도 모르게 하였으니, 이 점이 기록할 만한 것이다. 후(候)의 이름은 치(稚)이며, 계림 사족(鷄林士族)이다. 과거에 합격하였고, 조정에 올라서 문장과 행실로써 칭찬 받다가, 나가서 이 고을을 맡게 되었으나, 작은 벼슬이라도 낮추어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다해서 공을 나타낸 것이다. 후(候)의 뒤를 이어서 다스리는 자는, 과거에 오랫동안 황폐하여도 쉽사리 중수하지 못하던 것을 생각하고, 오늘날 다시 세운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 기운 것을 살피고 새는 곳을 살피서, 어렵게 될 일을 쉬운 때에 생각하여, 때때로 수리, 완전하게 하여, 다시 황폐하지 않게 할 지어다" 하였다.

○ 서거정이 지은 기문(記文)에 "진위(振威)는 작은 고을로서 3도의 요충 되는 지점에 위치하였다. 사신과 손님의 왕래로 말발굽과 수레바퀴가 서로 잇달랐다. 가난한 백성과 곤궁(困窮)하고 피폐(疲弊)한 아전이 번거로운 영접·전송에 곤란을 겪고, 수령된 자는 대접하기에 고달픈데, 또 무슨 다른 일을 할 것이라. 그러므로 객관

(客館)이 낮고 습하며 협소하여도 우물쭈물하기만 할 뿐 수리하지 않은 지가 여러 해였다. 성화(成化)⁷⁾ 갑오년에 연안(延安) 이후(李侯) 숙규(淑珪)가 원이 되어 왔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며 정사를 행하고, 온갖 조치에도 또한 놀리는 칼날에 여유가 있었다. 개탄(慨歎)하며 관사를 중수할 뜻이 있으니, 고을의 부로(父老)⁸⁾ 인전 현감 최각(崔高)·민의(閔誼), 부장(部將) 최철석(崔哲錫), 도사(都事) 최윤신(崔潤身) 등이 각자 재물을 내어 비용을 도왔다. 이에 늘고 있는 자를 뽑아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구워서, 옛 터에 본래의 규모보다 크게 지었다. 건립(建立)한 것은 대청(大廳)이 5칸이고, 동헌(東軒)이 2칸인데, 모두 앞 뒤 툇마루가 있다. 윗방이 2칸이고 거기에 달아서 서늘한 방과 따듯한 방이 있다. 마루와 행랑이 이어 달렸고 담으로 둘러는데, 단청(丹青)이 새로와서 온 고을이 장관(壯觀)으로 여겼다. 후(侯)의 둘째 형인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숙감(淑監)이 나에게 기문 짓기를 요구하였다. 나는 원 된 자가 능히 그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청간(淸簡)⁹⁾하다고 불리는 자는 오할(汚濁)¹⁰⁾하기가 보통이고, 반착(盤錯)¹¹⁾한 것을 처리하는 자는 번요(煩擾)¹²⁾한 데에 많이 실수한다. 오할한 폐단은 관해(官廩)를 여관같이 보아서 무너져도 그냥 두고, 번요한 폐단은 천시(天時)를 빼앗고, 백성의 힘을 해롭게 하여 고달프게 한 뒤에 그친다. 청간하면서 오할한 데에 이르지 아니하고, 반착하면서 번요하지 않는 것은, 호걸로서 유용(有用)한 재주가 아니면 능히 못한다. 들으니, 후(侯)가 진위(振威)에 정사한 지가 지금 6년이라 한다. 오로지 일없이 하기만을 숭상하여 영건하기를 일삼지 않는 것 같았으나, 여러 해 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관사를 하루 아침에 모습을 고치게 하였으니, 후(侯)의 일을 결단하는 묘함이 어찌 이같이 신기한가, 그 청간하다는 명성(名聲)만 도둑질하면서, 편하고 한가롭게 세월만 허송하는 자와 견주어서 어떠하다고 하겠는가. 원으로서 능히 그 책임을 다하는 후(侯)와 같은 자를 쉽게 얻을 수 있으랴. 옛사람이 말하기를, '무릇 고을에 어진 원을 만나기가 어렵고, 다행히 어진 원을 만났다 하더라도, 능히 사업을 일으키기는 더욱 어렵다. 비록 능히 일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황폐·파괴되지 않게 하는 것을 만나기가 또 어렵다' 하였으니, 다만 모를 것은 후(侯)의 뒤를 잇는 자가 능히 앞사람의 청사를 저버리지 않고 황폐·파괴되지 않게 할는지 모르겠다. 후(侯)가 만기되어서 돌아갈 참에, 고을의 부로(父老)가 후(侯)의 덕을 말하여 마지아니하고, 간 뒤에도

7) 명나라 현종의 연호.

8) 고을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을 높이어 일컫는 말.

9) 맑고 깨끗함.

10) 실제와는 관련이 없. 세상일에 어두움.

11) 복잡하게 얽힌 것.

12) 번거롭고 요란스러움.

생각하는 뜻을 기문에 넣고자 하여, 나에게 틀림없이 말하는 자가 있는 까닭으로, 아울러 적어서 보낸다” 하였다.

누정(樓亭)

부산정(釜山亭) : 객관 북편에 있다.

학교(學校)

향교(鄕校) : 현 동쪽 1리 지점에 있다.

역원(驛院)

장호원(長好院) : 현 남쪽 2리 지점에 있다.

이방원(李方院) : 현 북쪽 10리 지점에 있다.

백현원(白峴院) : 현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갈원(葛院) : 현 남쪽 20리 지점에 있다.

불우(佛宇)¹³⁾

만기사(萬寄寺) : 무봉산(舞鳳山)에 있다.

사묘(祠廟)

사직단(社稷壇) : 현 서쪽에 있다.

문묘(文廟) : 향교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 현 북쪽 1리 지점에 있다.

여단(厲壇) : 현 북쪽에 있다.

고적(古跡)

영신폐현(永新廢縣) : 현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영풍(永豐)이라 하기도 한다. 옛 날에는 양성속현 이었는데, 본조 태종 때에 ‘현 경계(顯境界)가 개 이빨처럼 서로 들어갔다’ 하여 수원부에 이속(移屬)시켰다가, 세종 15년에 다시 내속(來屬)시켰다.

송장부곡(松莊部曲) : 현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옛날에는 수원부에 딸렸던 것인데, 본조 세종 6년에 내속(來屬)하였다.

13) 절(寺).

천장부곡(川場部曲) : 현 서쪽 12리 지점에 있다.

우거(寓居)¹⁴⁾ : 본조(本朝)

김지(金漬) : 과거에 올라 벼슬이 성균관 사예(司藝)에 이르렀다. 성품이 옛것을 좋아하고 음물에 밝았으며, 집이 가난하여도 태평인 듯 하였다.

14) 타향에 임시로 사는 경우.

진위현(振威縣) — 여지도서(輿地圖書)

진위현(振威縣)

수원부(水原府) 진관(鎭管)의 관할 아래에 있다.

현으로부터 동쪽으로 양성과의 경계에 이르는데 10리, 북쪽으로는 용인과의 경계에 이르는데 10리이다. 서쪽으로는 수원과의 경계에 이르는데 20리, 남쪽으로는 충청도 평택과의 경계에 이르는데 30리이다. 북쪽으로 서울까지의 거리는 1백 20리로 하루 반 정도 걸리며, 감영(監營)¹⁾까지의 거리도 같다. 서쪽으로 수영(水營)²⁾까지의 거리는 2백 80리로 육로로는 사흘 정도 걸리며, 수로로는 반일 걸린다.

방리(坊里)

마산면(馬山面)

상리(上里) 관아로부터 동쪽으로 10리이다. 28호 가운데 남자는 48구이며 여자는 22구이다.

하리(下里) 관아로부터 동남쪽으로 10리이다. 87호 가운데 남자는 1백 51구이며 여자는 1백 20구이다.

성북면(城北面)

동천리(東泉里) 관아로부터 동북쪽으로 10리이다. 36호 가운데 남자는 49구이며, 여자는 42구이다.

청호리(靑好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10리이다. 47호 가운데 남자는 54구이며 여자는 46구이다.

갈곶리(葛串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10리이다. 30호 가운데 남자는 42구이며 여자는 37구이다.

1) 지방장관인 감사(監司), 즉 관찰사가 머무는 곳으로 경기도의 감영은 서울의 서대문 밖에 있었다.

2) 지방 수군(水軍)의 책임자인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머무는 곳으로, 경기도의 수영은 교동(喬桐)에 있었다.

가곡리(佳谷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5리이다. 30호 가운데 남자는 41구이며 여자는 31구이다.

준북리(浚北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5리이다. 30호 가운데 남자는 54구이며 여자는 49구이다.

견산리(見山里) 관아로부터 서북쪽으로 5리이다. 1백 14호 가운데 남자는 1백 20구이며 여자는 1백 29구이다.

서면(西面)

궁리(宮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0리이다. 20호 가운데 남자는 41구이며 여자는 38구이다.

신리(新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5리이다. 70호 가운데 남자는 93구이며 여자는 61구이다.

금암리(金岩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20리이다. 40호 가운데 남자는 59구이며 여자는 48구이다.

마두리(馬頭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20리이다. 35호 가운데 남자는 41구이며 여자는 51구이다.

내천리(奈川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20리이다. 50호 가운데 남자는 41구이며 여자는 50구이다.

야막리(野幕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0리이다. 1백 20호 가운데 남자는 1백 30구이며 여자는 1백 20구이다.

탄현면(炭峴面)

상리(上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5리이다. 75호 가운데 남자는 99구이며 여자는 91구이다.

하리(下里) 관아로부터 서남쪽으로 10리이다. 75호 가운데 남자는 66구이며 여자는 62구이다.

사리(四里) 관아로부터 서남쪽으로 10리이다. 74호 가운데 남자는 83구이며 여자는 82구이다.

오리(五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20리이다. 42호 가운데 남자는 66구이며 여자는 52구이다.

송장면(松庄面)

동령리(東嶺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이다. 62호 가운데 남자는 58구이며

여자는 51구이다.

여방면(餘方面)

사창리(司倉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이다. 50호 가운데 남자는 45구이며 여자는 50구이다.

갈원리(葛院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20리이다. 70호 가운데 남자는 61구이며 여자는 58구이다.

서재리(西才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25리이다. 60호 가운데 남자는 53구이며 여자는 55구이다.

울지리(栗枝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20리이다. 30호 가운데 남자는 41구이며 여자는 39구이다.

영신리(永新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30리이다. 30호 가운데 남자는 52구이며 여자는 51구이다.

방효동(方孝洞)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15리이다. 30호 가운데 남자는 45구이며 여자는 52구이다.

병파면(丙坡面)

통보리(通湊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30리이다. 65호 가운데 남자는 51구이며 여자는 66구이다.

비전리(碑前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30리이다. 58호 가운데 남자는 62구이며 여자는 59구이다.

어리남리(於里南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30리이다. 30호 가운데 남자는 49구이며 여자는 43구이다.

성남면(城南面)

잔교리(殘橋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30리이다. 95호 가운데 남자는 1백 40구이며 여자는 1백 23구이다.

고두면(古頭面)

동청리(東靑里) 관아로부터 서남쪽으로 30리이다. 20호 가운데 남자는 42구이며 여자는 23구이다.

옹정리(瓮井里) 관아로부터 서남쪽으로 30리이다. 64호 가운데 남자는 61구이며 여자는 68구이다.

현내면(縣內面)

동리(東里) 1백 60호 가운데 남자는 2백 77구이며 여자는 2백 39구이다.

서리(西里) 1백 60호 가운데 남자는 2백 2구이며 여자는 1백 88구이다.

도합 1천 8백 1호 가운데 남자가 2천 5백 27구이고 여자가 2천 2백 49구이다. 기묘년(己卯年, 1759년)의 장적(帳籍)에 의거했다.

도로(道路)

현(縣) 앞의 큰길은 북쪽의 서울로부터 출발하여 삼남(三南)의 큰길에 이른다. 동쪽으로는 양성까지 이르는데, 20리 정도이며 작은 길이다. 서쪽으로는 수원(水原)의 분양로(汾陽路)에 이르는데, 작은 길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구려 때의 부산현(釜山縣)이다. 신라 경덕왕(敬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어 수성군(水城郡)을 영현(領縣)³⁾으로 하였다.

고려 때 그대로 속하게 하였는데, 명종 2년(117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뒤에 감무를 승격시켜 현령(縣令)으로 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두었다.

태조 7년(1398년)에 충청도로부터 경기도로 옮겨 속하게 하였다.

읍명(邑名)

부산(釜山) 연달(淵達) 송촌활달(松村活達) 진위(振威)

관원(官員)

현령(縣令) 1원(員) 음관(陰官) 6품.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군관(軍官) 13인, 파총(把摠) 1인, 초관(哨官) 5인, 기패관(旗牌官) 12인, 아전(衙前) 15인, 지인(知印) 9인, 사령(使令) 7명, 관노(官奴) 7명, 관비(官婢) 8명.

산천(山川)

부산(釜山) 현(縣)의 동쪽 2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무봉산(舞鳳山)으로부터 줄기가 이어진다.

3)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방 군현(郡縣)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역에 한하여 배치하였다. 즉 고려시대의 지방은 외관(外官)이 파견된 영군(領郡)·영현(領縣)과 그들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屬郡)·속현(屬縣)으로 구분되었다.

무봉산(舞鳳山) 현의 북쪽 5리에 있다. 용인(龍仁) 응봉산(鷹鳳山)으로부터 줄기가 이어진다.

천덕산(天德山) 일명 다락산(多樂山)이다. 현의 동남쪽 5리에 있다. 양성(陽城) 천덕산(天德山)에서 줄기가 이어진다.

불악산(佛樂山)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양성 천덕산에서 줄기가 이어진다.

장호천(長好川)현의 남쪽 1리에 있다. 그 근원이 둘이니, 하나는 용인의 동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예전 양지현(陽智縣) 서쪽에서 나와 합류한다. 객사(客舍)의 남서쪽을 지나 수원 향곶진(項串津)으로 들어간다.

귀천(龜川) 현의 동쪽 3리에 있다.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와 갈라져 북쪽으로 몇 리를 흐른후 장호천으로 다시 들어간다.

서천(鋤川) 현의 서쪽 10리에 있다.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와 갈라져 남쪽으로 흘러 큰 내를 이룬 후 다시 장호천으로 들어간다.

토현천(兔峴川) 현의 서쪽 15리에 있다. 용인(龍仁) 구흥역천(駒興驛川)의 하류로 장호천과 합류하여 수원 향곶진으로 들어간다.

내천(奈川)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수원 부읍천(府邑川) 동북쪽의 하류로부터 나와 장호천·토현천과 합류하여 수원 향곶진에 들어간다.

통보포(通洑浦)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조수(潮水)가 들고나며, 원래 물고기가 나지 않는다.

성씨(姓氏)

김씨, 이씨, 류씨, 최씨, 송씨, 오씨, 황씨.

풍속(風俗)

재주로 보면 무인들이 선비들보다 많다. 백성들은 농업에 힘쓰고, 상공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상인이나 공장(工匠)이 거의 없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현의 동쪽 2리에 있다.

문묘(文廟) 향교에 있다.

여단(厲壇) 현의 북쪽 1리에 있다.

성황단(城隍壇)현의 동쪽 3리에 있다.

학교(學校)

향교(鄕校) 현의 동쪽 2리에 있다.

궁실(宮室)

객사(客舍) 남쪽을 향해 있다.

아사(衙舍) 남쪽을 향해 있다.

창고(倉庫) 단지 읍창(邑倉)만이 있을 뿐이다.

해창(海倉) 전삼세(田三稅)⁴⁾를 거두어들일 뿐이다.

제언(堤堰)

사발동(沙鉢洞) 관아로부터 동쪽으로 10리이다. 둘레는 3백 69척이다. 길이는 1백 23척이고 너비는 1백 16척이다. 안쪽 높이는 5척이고 바깥쪽 높이는 7척이다. 병인년(丙寅年, 1746년)에 토사(土砂)가 덮어버려 제언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폐기하였다.

가은산(加隱山)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5리이다. 둘레는 1천 62척이다. 길이는 4백 32척이고 너비는 1백 94척이다. 안쪽 높이는 7척이고 바깥쪽 높이는 10척이다. 수통(水桶)이 1곳 있으며, 수심은 3척이다. 논밭에 물을 대 혜택을 받는다.

진가리(眞假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10리이다. 둘레는 1천 8백 4척이다. 길이는 5백 18척이고 너비는 4백 20척이다. 안쪽 높이는 10척이고 바깥쪽 높이는 13척이다. 수통이 1곳 있으며, 수심은 3척이다. 논밭에 물을 대 혜택을 받는다.

눌리(訥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5리이다. 둘레는 1천 7백 82척이다. 길이는 4백 척이고 너비는 5백 94척이다. 의창군방(義昌君房)⁵⁾에서 절수(折受)⁶⁾하여 논을 만든 후 세금을 걷는다.

금각(金角)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20리이다. 둘레는 1천 5백 10척이다. 길이는 5백 10척이고 너비는 1백 90척이다. 안쪽 높이는 3척이고 바깥쪽 높이는 7척이다. 병인년(1746년)에 토사가 덮어버려 폐기하였다.

오근천(五斤川)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20리이다. 둘레는 2천 68척이다. 길이는 7백 20척이고 너비는 3백 20척이다. 지난 을사년(乙巳年, 1665년)에 숙휘옹주방(淑徽翁主房)의 도장(導掌)⁷⁾ 최인천(崔仁天)이 내수사(內需司)에 청하여 절수하였다.

4) 전결(田結)을 단위로 하여 물리는 주요한 세금 3가지를 가리키는 말로, 전세(田稅), 대동(大同), 결작(結作)을 이르는 말이다.

5) 의창군(義昌君, 1589~1645)은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宣祖)의 8번째 왕자이다. 이름은 이광(李珣)이며, 인빈(仁嬪) 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6) 임금으로부터 토지 대신 그 토지에서 나는 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절수라 한다.

한전(旱田)

1천 1백 54결 27부 3속 가운데 기묘년(己卯年, 1759년)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진 밭을 제외하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밭은 7백 39결 35부 6속이다. 매해 실제 경작하는 토지를 조사하는데,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

수전(水田)

1천 1백 34결 48부 8속 가운데 기묘년(1759년)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진 논을 제외하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논은 5백 89결 20부 7속이다. 매해 실제 경작하는 토지를 조사하는데,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

조적(糶糶)

호조(戶曹)·상평청(常平廳)·진휼청(賑恤廳)·진색(賑色)·비변사(備邊司)·영진(營賑) 등 각종 명목의 곡식이 도합 1만 7백 41석 5두 4승(升) 9합(合) 5작(勺) 6리(釐)이다.

을해년(乙亥年, 1755년)과 병자년(丙子年, 1756년)에 걷지 못한 3천 4백 17석 3두 9승 4합을 제외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7천 3백 24석 1두 5승 5합 5작 6리이다. 매해 1월에 창고를 열어 차례대로 나누어주고, 10월부터 거두어들여 12월에 창고를 닫는다.

전세(田稅)

기묘년(1759년)조의 세금으로 걷은 쌀은 1백 57석 1두 8승 2합 8작, 콩 1백 97석 2두 4승 2합 2작이다. 매해 경작하는 토지의 결수에 따라 마련하는 까닭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 1월에 거두어 4월에 실어보낸다. 해창(海倉)에서 출발해 수원 광덕포(光德浦), 아산 당포(堂浦), 수원 영웅대해(永雄大海), 남양(南陽) 도리대해(道里大海), 인천(仁川) 팔미대해(八味大海), 영종(永宗) 손도항(孫道項), 강화, 통진, 김포, 고양, 행주(杏洲), 양천포(陽川浦) 등을 거치는데 20여 일이 걸린다. 한강에 도착해 군자감(軍資監)에 상납한다.

대동(大同)

기묘년(1759년)조의 결미(結米) 1천 57석 7두 9승 8합 3석 가운데 기묘년 가을과 경진년(庚辰年, 1760년) 봄 저장해 놓고 사용할 관청의 경비, 아전의 녹봉, 내빈의

7) 조선시대 때 궁방전(宮房田)을 관리하고 세금을 받는 사무를 담당했던 궁방(宮房)의 직원이다.

접대, 기름과 꿀 값 등을 제외하고 상납할 쌀이 3백 79석 7두 9승 7합이다. 매해 경작하는 토지의 결수(結數)에 따라 마련하여 거두어 올리는 까닭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 뱃길은 위와 같다.

균세(均稅)

균역청의 면세결(免稅結)쌀이 2석 10두 5승 3합 2작이고 콩이 5석 4두 3승이다. 대동미(大同米)가 23석 14두 4승 9합 6작이다.

선무군관(選武軍官) 76명의 번포전(番布錢)⁸⁾이 1백 52냥이다.

결전(結錢)은 7백 64냥 4전으로 매해 경작하는 토지의 결수(結數)에 따라 마련하는 까닭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

봉름(俸廩)

관수미(官需米)는 1백석, 아록미(衙祿米)는 14석 10두,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는 1백 50석, 유청지지미(油淸紙地米)는 16석이다.

군병(軍兵)

균역청 선무군관(選武軍官) 76명.

훈련도감(訓練都監) 여러 명색의 보인(保人) 72명.

어영청(御營廳) 정군(正軍)과 여러 명색의 보인 1백 14명.

금위영(禁衛營) 정군과 여러 명색의 보인 1백 40명.

수어청(守禦廳) 부아병(部牙兵) 속오(束伍) 별과진(別破陣)과 여러 명색의 보인 8백명.

병조(兵曹) 기병(騎兵)·보병(步兵)과 여러 명색의 보인 4백 67명.

공조(工曹) 장인(匠人)과 보인 30명.

총융청(摠戎廳) 정군과 여러 명색의 보인 2백 56명.

감영(監營) 기수(旗手)의 호수(戶首)와 보인 18명.

이상 서울과 지방의 군안(軍案)에 소속된 군병 1천 9백 73명 가운데 양인(良人) 1천 1백 31명, 사천(私賤) 8백 42명.

8) 조선시대 군사들이 번(番)을 서는 대신에 바치던 포(布)를 번포(番布)라 하며, 포 대신 돈으로 내는 것을 번포전(番布錢)이라 한다.

<한문 원문>

振威縣 管水原府鎮下 自縣東至陽城界十里 北至龍仁界十里 西至水原界二十里 南至忠清道平澤界三十里 北距京都一百二十里 一日半程 監營同 西距水營二百八十里 陸路三日程 水路半日程

坊里 馬山面 上里 自官門東十里 二十八戶內 男四十八口 女二十二口
下里 自官門東南間十里 八十七戶內 男一百五十一口 女一百二十口
城北面 東泉里 自官門東北間十里 三十六戶內 男四十九口 女四十二口
青好里 自官門北十里 四十七戶內 男五十四口 女四十六口
葛串里 自官門北十里 三十戶內 男四十二口 女三十七口
佳谷里 自官門北五里 三十戶內 男四十一口 女三十一口
浚北里 自官門北五里 三十戶內 男五十四口 女四十九口
見山里 自官門西北間五里 一百十四戶內 男一百二十口 女一百二十九口
西面 宮里 自官門西十里 二十戶內 男四十一口 女三十八口
新里 自官門西十五里 七十戶內 男九十三口 女六十一口
金岩里 自官門西二十里 四十戶內 男五十九口 女四十八口
馬頭里 自官門西二十里 三十五戶內 男四十一口 女五十一口
柰川里 自官門西二十里 五十戶內 男四十一口 女五十口
野幕里 自官門西十里 一百二十戶內 男一百三十口 女一百二十口
炭峴面 上里 自官門南五里 七十五戶內 男九十九口 女九十一口
下里 自官門西南間十里 七十五戶內 男六十六口 女六十二口
四里 自官門西南間十里 七十四戶內 男八十三口 女八十二口
五里 自官門西南間二十里 四十二戶內 男六十六口 女五十二口
松庄面 東嶺里 自官門南十里 六十二戶內 男五十八口 女五十一口
餘方面 司倉里 自官門南十里 五十戶內 男四十五口 女五十口
葛院里 自官門南二十里 七十戶內 男六十一口 女五十八口
西才里 自官門南二十五里 六十戶內 男五十三口 女五十五口
栗枝里 自官門南二十里 三十戶內 男四十一口 女三十九口
永薪里 自官門南三十里 三十戶內 男五十二口 女五十一口
方孝洞 自官門南十五里 三十戶內 男四十五口 女五十二口
丙坡面 通湫里 自官門南三十里 六十五戶內 男五十一口 女六十六口

裨前里 自官門南三十里 五十八戶內 男六十二口 女五十九口
於里南里 自官門南三十里 三十戶內 男四十九口 女四十三口
城南面 殘橋里 自官門南三十里 九十五戶內 男一百四十口 女一百二十三口
古頭面 東青里 自官門西南間三十里 二十戶內 男四十二口 女二十三口
瓮井里 自官門西南間三十里 六十四戶內 男六十一口 女六十八口
縣內面 東里 一百六十戶內 男二百七十七口 女二百三十九口
西里 一百六十戶內 男二百二口 女一百八十八口
都合一千八百一戶內 男二千五百二十七口 女二千二百四十九口 己卯帳籍爲準

道路 縣前大路 卽自北京都距三南大路 東距陽城二十里程卽小路 西距水原汾陽路卽小路

【建置沿革】 本高句麗釜山縣 新羅敬德王改今名 水城郡領縣 至高麗仍屬 明宗二年置監務 後陞爲令 本朝仍之 太祖七年自忠清道移隸本道

【邑名】 釜山 淵達 松村活達 振威

【官員】 縣令一員 蔭六品 座首一人 別監二人 軍官十三人 把摠一人 哨官五人 旗牌官十二人 衙前十五人 知印九人 使令七名 官奴七名 婢八名

【山川】 釜山 在縣東二里 鎮山 舞鳳山來脈

舞鳳山 在縣北五里 龍仁鷹鳳山來脈

天德山 一名多樂山 在縣東南間五里 陽城天德山來脈

佛樂山 在縣南十里 陽城天德山來脈

長好川 在縣南一里 其源有二 一出龍仁東 一出古陽智縣西合流 經客舍南西 水原項串津

龜川 在縣東三里 源出長好川 支分北流數里 還入于長好川

鋤川 在縣西十里 源出長好川 分流向南 爲一長川 還入長好川

兔峴川 在縣西十五里 自龍仁駒興驛川下流 與長好川合流 入于水原項串津

柰川 在縣西二十里 自水原府邑川東北下流 與長好川 兔峴川合流 入于水原項串津

通泐浦 在縣南三十里 潮水出入 素無魚產

【姓氏】 金 李 柳 崔 宋 吳 黃

【風俗】 才藝則武多於儒 人民則務本農業 不事末業 商賈工匠甚稀

【壇廟】社稷壇 在縣東二里

文廟 在鄉校

厲壇 在縣北一里

城隍壇 在縣東三里

【學校】鄉校 在縣東二里

【宮室】客舍 南向

衙舍 南向

倉庫 只有邑倉

海倉 田三稅捧納倉

【堤堰】沙鉢洞 自官門東十里 周回三百六十九尺 長一百二十三尺 廣一百十六尺 內高五尺 外高七尺 丙寅覆沙 永無堰形 仍爲廢棄

加隱山 自官門南五里 周回一千六十二尺 長四百三十二尺 廣一百九十四尺 內高七尺 外高十尺 水桶一庫 水深三尺 灌溉蒙利

真假里 自官門北十里 周回一千八百四尺 長五百十八尺 廣四百二十尺 內高十尺 外高十三尺 水桶一庫 水深三尺 灌溉蒙利

訥里 自官門西五里 周回一千七百八十二尺 長四百尺 廣五百九十四尺 義昌君房折受作畜應稅

金角 自官門西二十里 周回一千五百十尺 長五百十尺 廣一百九十尺 內高三尺 外高七尺 丙寅覆沙廢棄

五斤川 自官門南二十里 周回二千六十八尺 長七百二十尺 廣三百二十尺 已去乙巳年分 淑徽翁主房導掌崔仁天 呈本司折受

旱田 一千一百五十四結二十七負三束內 己卯條除各樣雜項 實結七百三十九結三十五負六束 而每年實起爲實 故贏縮不同

水田 一千一百三十四結四十八負八束內 己卯條除各樣雜項 實結五百八十九結二十負七束 而每年實起爲實 故贏縮不同

糶糴 戶曹常平賑廳賑色備邊司營賑各色穀 都合一萬七百四十一石五斗四升九合五勺六釐 除乙亥丙子未捧三千俎四百七石三斗九升四合 在數七千三百二十四石一斗五升五合五勺六

釐 每年自正月開倉 排巡分給 自十月捧上 十二月封倉

田稅 己卯條稅米一百五十七石一斗八升二合八勺 太一百九十七石二斗四升二合二勺 每年從時起結數磨鍊 故贏縮不同 正月收捧 四月裝載 自海倉 水原光德浦 牙山堂浦 水原永雄大海 南陽道里大海 仁川八味大海 永宗孫道項 江華 通津 金浦 高陽 杏洲 陽川浦 二十餘日 達于京江 軍資監上納

大同 己卯條結米一千五十七石七斗九升八合三石內 除己卯秋庚辰春 儲置營需衙祿使客支供 油清紙地 上納米三百七十九石七斗九升七合 而每年從時起結數磨鍊捧上 故贏縮不同 船路上同

均稅 本廳免稅結 米二石十斗五升三合二勺 太五石四斗三升

大同米 二十三石十四斗四升九合六勺

選武軍官 七十六名 番布錢一百五十二兩

結錢 七百六十四兩四錢零 每年從時起結數磨鍊 故贏縮不同

俸廩 官需米一百石 衙祿米十四石十斗 使客支供米一百五十石 油清紙地米十六石

軍兵 均役廳選武軍官七十六名 訓練都監各色保七十二名 御營正軍及各色保一百十四名 禁衛營正軍及各色保一百四十名 守禦廳部牙兵東伍別破陣各色保八百名 兵曹騎步兵各色保四百六十七名 工曹匠保三十名 摠戎廳正軍及各色保二百五十六名 監營旗手戶保十八名

已上京外案付軍 一千九百七十三名內 良一千一百三十一名 私八百四十二名

진위현(振威縣)—1843년 진위읍지(道光 23년)

도광(道光) 23년(1843) 정월 일 진위현읍지(振威縣邑誌)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구려 부산현(釜山縣)이다. 옛 연달부곡(淵達部曲)¹⁾인데, 혹은 송촌설달(松村舌達)이라고도 한다. 세 번 이름을 고쳐 진위현(振威縣)이 되었다. 군명은 연달·부산·송촌설달·진위이다. 현령은 1명이다. 수원진관(水原鎭管)²⁾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³⁾의 통할을 받았는데, 지금은 남양진관(南陽鎭管)의 관할 하에 있다. 품계는 종 5품으로, 다른 현령과 같다.

강계(疆界)⁴⁾

동쪽은 양성현(陽城縣) 경계까지 13리이고 양성현 치소와는 20리의 거리이다
서쪽은 수원부 경계까지 12리이고 수원부 치소와는 30리의 거리인데 지금은 50리이다

남쪽은 충청도 직산현(稷山縣) 경계까지 37리이고 직산현 치소와는 50리의 거리이다

북쪽은 용인현(龍仁縣) 경계까지 10리이고 용인현 치소와는 50리의 거리이다. 충청도 평택현(平澤縣) 경계에 이른다. 평택현 치소와는 40리 내지 30리의 거리이다. 서울까지의 거리는 120리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118리라고 되어 있다.

장면(掌面)⁵⁾

마산면(馬山面) 현의 동쪽 10리에 있다.

성북면(城北面)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 지금은 일북면(一北面)과 이북면(二北面)

1) 부곡(部曲) : 집단 천인(賤人)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특수 행정 조직의 하나.

2) 진관(鎭管) : 조선시대에 어느 군진(軍鎭)의 관할(管轄)이란 뜻임.

3) 조선시대 외관(外官) 무직(武職)으로, 품계는 종6품이다.

4) 강토(疆土)와 경계(境界).

5) 진위현이 관장하는 면(面)을 지칭하는 것.

2면으로 나뉘어 있다.

서면(西面)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지금은 일서면(一西面)과 이서면(二西面) 2면으로 나뉘어 있다.

탄현면(炭峴面)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지금은 일탄면(一炭面)과 이탄면(二炭面) 2면으로 나뉘어 있다. 새로운 시장이 일탄면 10리에 있다.

송장면(松庄面) 현의 남쪽 15리에 있다.

여방면(余方面) 현의 남쪽 20리에 있다.

병파면(丙破面)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성남면(城南面)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고두면(古頭面)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현내면(縣內面) 역시 진위현의 한 면이다.

형승(形勝)⁶⁾

도로가 남과 북으로 통하여, 3도(道)의 요충이 되는 지역에 위치한다.

산천(山川)

부산(釜山) 현의 동쪽 2리 지점에 있는 진산(鎭山)⁷⁾이다.

무봉산(舞鳳山) 현의 북쪽 5리 지점에 있다. 또한 수원부편(水原府編)에도 적혀 있다.

천덕산(天德山) 일명 달악산(達岳山)이라고도 한다. 현의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양성현편에도 적혀 있다.

부락산(負樂山) 현의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충청도 평택현편에도 적혀 있다.

장호천(長好川) 현의 남쪽 1리 지점에 있다. 수원(水源) 중의 하나는 용인의 옛 속현⁸⁾인 처인(處仁) 동쪽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양지현(陽智縣)에서 나와 합류한다.

귀천(龜川) 현의 동쪽 3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와서 갈라져 북쪽으로 몇 리를 흐르다가 다시 본천(本川)으로 흘러 들어온다

서천(鋤川) 현의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와서 갈라져 흐르다가 굽어져 하나의 장천(長川)이 되었다가, 다시 본천으로 흘러 들어온다. 용성군(龍城君) 최자반(崔子泮)과 원정(猿亭) 최수성(崔壽城)이 함께 낚시대를 드리웠으나 명성이 알려지기[聞達]를 구하지는 않았다.

6) 지세(地勢)와 경치가 뛰어난 곳.

7) 도읍이나 성시(城市)의 뒤쪽에 있는 큰 산으로, 그 도읍이나 성시를 진호(鎭護)한다고 여겨 제사를 드렸음.

8)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縣). 따라서 지방관이 파견된 현인 주현(州縣)의 지방관이 직접 속현을 관할하였음.

토현천(兔峴川) 현의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내천(奈川) 현의 서쪽 20리 지점에 있다. 수원부 읍촌(邑村) 동북쪽으로 흘러내려 장호천과 토현천이 합류하여 수원 타항곶진(他項串津)으로 들어간다.

통보포(通洑浦) 현의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단지 조수가 들락날락하여 본래 어물(魚物) 생산이 없다.

관방(關防)⁹⁾ · 성곽(城郭) · 봉수(烽燧)¹⁰⁾ 없다.

제언(堤堰)

사발동(沙鉢洞) 가은산(加隱山) 제언 마산면에 있다.

진가리(眞加里) 제언 성북면에 있었고 지금은 이북면에 있는데, 폐기되었다.

눌리(訥里) 제언 성북면에 있는데, 물이 말라 독을 허물었다. 인조 22년(1644)에 송선군방(崇善君房)¹¹⁾에 주어 논으로 만들었다.

오근천(五斤川) 제언 송장면에 있는데, 물이 말라 독을 무너뜨렸다. 강희(康熙) 5년(1666)에 숙휘공주방(淑徽公主房)¹²⁾에 절수(折受)¹³⁾해 주어, 이에 제언이 폐기되었다.

금각(金角) 제언 탄현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탄면에 있다.

방보(防洑)

비록 조목 중에는 실려있지 않으나, 민사(民事)에 이익을 끼치는 것이 제언과 마찬가지로이므로 아울러 기록하여 둔다.

황생보(黃生洑) 용인 땅에 있는데, 본읍 북평(北坪)에 물을 댈다.

중보(中洑) · 황이보(黃二洑) · 생현산보(生峴山洑) 이 3보는 옛 성북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북면에 있다. 해당 면에 물을 댈다.

금복보(金福洑) 수원 땅에 있다. 예전에는 서면에 물을 댔으나, 지금은 이서면에 물을 댈다.

견산보(見山洑) · 토현보(兔峴洑) · 신보(新洑) 이 3보는 예전에는 서면에 있

9) 국경(國境)을 경비·방비하는 곳.

10) 국가에 큰 병란이 있을 경우 올리는 신호불. 높은 산에 올라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평상시에는 횃불 1번, 적이 나타나면 2번, 적이 국경 가까이 접근하면 3번,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4번, 적과 접전(接戰)하면 5번 봉화를 올림.

11) 조선시대 16대 임금인 인조(仁祖)의 아들 송선군의 집임. 당시 왕자나 공주의 집은 궁방(宮房)이라 불리었는데, 이 궁방에는 궁방전(宮房田)이라 불리는 토지가 많이 있었음.

12) 조선시대 17대 임금 효종(孝宗)의 딸인 숙휘공주의 집.

13) 임금에게 자기 뉘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

었는데, 지금은 일서면에 있다. 해당 면에 물을 댈다.

대야소보(大也所淤) 읍내에 있다. 탄현면에 물을 대었는데, 지금은 일탄면과 이탄면에 물을 댈다.

미시보(彌時淤) 대야소의 내용과 같다.

익흥보(益興淤) 여방면에 있는데, 본 면에 물을 댈다.

우두보(牛頭淤) 여방면에 있는데, 본 면에 물을 댈다.

백량보(白梁淤) 방파면에 있는데, 본 면에 물을 댈다.

방시천보(方時川淤) 고두면에 있는데, 본 면에 물을 댈다.

장경천보(長慶川淤) 용인 땅에 있는데, 마산면에 물을 댈다.

이상의 제언과 방보는 감관(監官)¹⁴⁾의 감독 하에, 보의 주인과 농민이 (수축해야 할) 때가 되면 수축(修築)한다.

관우(館宇)

아사(衙舍) 예전에 현의 동쪽 3리 지점에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의 터로 옮겼다. 병자호란(1636, 인조 14년) 시기에 불타 없어졌다. 순치(順治) 원년 갑신년(1644)에 현령 남두극(南斗極)이 개축하였고, 신해년(1671, 현종 12년)에 현령 조윤식(曹允植)이 또 개축하였다. 계년(癸年)에 내아(內衙)¹⁵⁾가 무너졌다. 지금 경자년에 현령 황중림(黃鍾林)이 담장을 개축하여 아주 새롭게 하였다.

아동헌(衙東軒)¹⁶⁾ 예전에 서향(西向)으로 지었는데, 현령 조지강(趙持綱)이 남향으로 고쳐지었다.

객사(客舍)¹⁷⁾ 동헌(東軒)과 서헌(書軒) 사이의 대청은 만들어진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나, 병자호란 때 역시 무너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다. 순치 3년 병술년(1646)에 현령 이산퇴(李山賚)가 동헌과 서헌을 중수하였다. 경자년(1660, 현종 원년)에 현령 송박중(宋搏中)이 대청을 중수하였다. 그 후 현종 6년(1665)에 임금이 온천에 행행할 때 또 단청으로 둘러서 중수하였다. 예전에 하륜(河崙)과 서거정(徐居正)의 「중수기(重修記)」가 있었다. 그 후 신해년에 현령 조윤식(曹允植)이 개축하였다. 지금 신축년에 현령 황중림이 또 수리하였다.

사창(司倉) 본래 동고(東庫) 14칸인데, 5칸은 현령 윤영(尹榮)이 지은 것이다. 서고(西庫) 5칸은 현령 신유(申泐)가 지은 것인데, 환상(還上)¹⁸⁾한 곡물이 점점 늘어나

14) 조선시대 궁가(宮家)나 관아의 물품 출납을 관리하던 관리.

15) 지방 관청의 안채.

16) 지방의 수령이 공사(公事)를 처리하던 곳.

17) 각 고을의 관사로, 쾨패(關牌)를 모셔 두고, 왕명을 받들고 내려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는 집.

18) 환곡으로 봄에 받을 쌀을 가을에 바치는 것을 이름.

고 경창(京倉)에 이전(移轉)할 것을 또한 거두어 유치(擡留)하고 있는 까닭에, 곳간이 협소하여 들여놓을 수가 없어서, 매년 들판에 쌓아 민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강희 31년 임신년(1692)에 현령 허송(許悚)이 이런 폐단을 염려하여, 북고(北庫) 13칸을 지었다. 대개 그후부터는 곡식을 창고 밖에 쌓아두는 것은 면하였고 또한 민폐도 없어졌다. (그러나) 해가 오래되어 모두 무너지자 금년 신축에 현령 황종림이 동고(東庫)를 20칸으로 고쳐지었다.

빙고(氷庫) 현의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관청고(官廳庫) 현의 남쪽에 있다.

누정(樓亭)

부산정(釜山亭) 객사의 북쪽에 있다. 비록 『동국여지승람』에는 실려 있으나, 그 흥폐(興廢)의 연월을 알 수 없고, 터도 확실치 않다.

옥(獄) 담이 태반은 무너져서, 강희 36년 정축년(1697)에 수령이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대략 보수하여 완성하였는데, 해가 오래되자 폐지되어 버렸다.

학교(學敎)

향교(鄕校) 현의 동쪽 2리 지점에 있다. 옛 향교가 병자호란 때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 위판(位版)에 이르러서는 향교 밑에 사는 아전 최응수(崔應守)가 병화(兵火)로 위판을 내오기가 어려움을 염려하여, 먼저 나가 위패를 등에 지고 이를 깨끗한 곳에 보관하였다. 사태가 진정된 후 두어 칸을 지어 위패를 모셨다. 현령 남두극이 이를 보고 개탄하여 재물과 질기와의 모아 순치 원년 갑신년(1644)에 (향교를) 짓기 시작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관직이 교체되었다. 현령 이산뢰가 (건축 사업을) 이어받아 정해년(1647, 인조 25)에 이르러 고성전(告成殿)·우(宇)·재(齋)·당(堂)·부엌·창고·문호를 갖추어 겨우 지었다. (그러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없어서, 고성전 안에 벽을 나누어 제현(諸賢)을 배향하였다. 최응수가 성현을 사모하는 마음이 특이하다고 하여, 모든 향교에 있는 사람들이 관청에 품고(稟告)하고 상사(上司)에 전보하니, 이에 입계(入啓)¹⁹⁾하여 복호(復戶)²⁰⁾로 삼고 5결(結)을 주었으며, 자손들이 천역(賤役)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인년간(1662, 현종 3)에 그 계하(啓下)²¹⁾의 문서를 잃어버렸고 또 자손들이 오히려 많아지자, 그 복호를 받지 못하였다. 신문(神門)·서재(書齋)는 그 담이 해가 오래 되어 무너지니, 지

19)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림.

20) 군인·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 대상자에게 조세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특히 충신이나 효자에게 상(賞)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음.

21) 임금의 재가를 받음. 임금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는 '계(啓)'를 새긴 도장을 찍음에서 비롯된 용어임.

금 임인년에 현령 황종림이 명륜당(明倫堂)²²⁾을 고쳐 짓고 전사청(典祀廳)²³⁾을 보수 하였고, 현령 박장암(朴張淹)이 무술년에 고쳐 지었다.

사직단(社稷壇)²⁴⁾ 현의 서쪽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현의 동쪽에 있다.

문묘(文廟)²⁵⁾ 향교에 있다. 오성위(五聖位) 주자(周子)·정자(程子)·정자(程子)·주자(朱子)·동방의 홍문후(弘文侯)를 배향하고 문창공(文昌公)·문성공(文成公)·문충공(文忠公)과 본조의 문헌공(文獻公)·문원공(文元公)·문경공(文敬公)·문정공(文正公)·문순공(文純公)·문성공(文成公)·문간공(文簡公) 등 모두 20위를 배향한다.

성황사(城隍祠) 현의 북쪽 1리 지점에 있다.

여단(厲壇)²⁶⁾ 현 북쪽에 있다.

역원(驛院)

장호원(長好院) 현의 2리 지점에 있다.

이방원(李方院) 현의 북쪽 10리 지점에 있다.

백현원(白峴院) 현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또는 희도원(喜到院)이라고도 한다. 맹사성(孟思誠)이 이곳에 이르러 녹사(錄事)²⁷⁾와 공당(公堂)²⁸⁾에서 문답하였다.

갈원(葛院) 현의 남쪽 20리 지점에 있다.

이상의 여러 원들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으나, 없어진지 오래되어 다만 터만 남아있다.

불우(佛宇)

만기사(萬奇寺) 무봉산(舞鳳山) 아래에 있다. 절 북쪽에 있는 돌구멍에서 맑은 샘물이 나오는데 맛이 아주 달고 차가웠다. 옛날 세조대왕이 이 절에 수레를 멈추어 놓고 우물에 나아가 물을 마셔보고 하교하기를, “맛이 단 샘물이다”라고 하고는 이내 명하여 “감로천(甘露泉)이라고 하라”라고 하였다. 지금의 사람들은 어정(御井)이라고 한다.

22)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鄕校) 안의 건물로, 유학(儒學)을 강의(講學)하는 곳임.

23) 문묘(文廟)의 제사를 맡아보게 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24) 국가에서 백성의 복(福)을 위해 토지의 신(神)인 사(社)와 곡식의 신(神)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祭壇).

25) 공자를 받드는 사당.

26) 여제(厲祭)를 지내는 제단. 여제는 돌림병을 퍼뜨리는 악귀를 위무(慰撫)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임.

27) 조선시대에는 의정부(議政府)·중추부(中樞府)와 같은 주요 관부에 딸린 아전(衙前)이었고, 고려시대에는 문하부(門下府)의 종7품 벼슬이었고, 그 이외 각종 관부의 경우는 8품~9품 벼슬이었음.

28) 공무를 보는 곳.

고적(古跡)

영신폐현(永新廢縣) 현의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송장부곡(松庄部曲) 현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천장부곡(川場部曲) 현의 서쪽 12리 지점에 있다.

신증(新增)

인침담(印沈潭) 현의 남쪽 5리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논으로 만들었다. 민간에 전해오기를, “맹사성(孟思誠)이 온양(溫陽)에 살고 있었는데, 의정(議政)²⁹⁾으로서 임금의 부름을 받고 상경할 때, 몇 읍의 원님들이 이곳에 나아가 (그를) 기다렸다. (원님들이) 서로 거닐면서 그를 오래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소를 타고 그들의 앞을 지나갔는데, 이졸(吏卒)들이 소에서 내리라고 꾸짖자 노인이 말하기를, ‘온양의 맹고불(孟古佛)³⁰⁾이 지나가고 있다. 사실 모든 원님들이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늙고 피곤하여 내릴 수가 없다’ 고 하였다. 원님들이 비로소 그가 맹상(孟相)임을 알고 모두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에, 인신(印信)이 못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곳을 ‘인침담’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조산(造山) 현의 남리문(南里門) 바깥 지점에 있다. 대체로 현의 터 남쪽이 허술하여 이를 쌓았다고 한다.

모정령(茅亭嶺) 현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용성군(龍城君) 최자반(崔子泮)이 이 모정을 창건하였는데, 무너지고 파괴된 지가 오래되어 그 터를 증명하여 점검[憑驗]할 수 없다.

원정령(猿亭嶺) 현의 서쪽 11리에 있다. 산이 험준하고 웅장한데, 모든 길이가 수리(數里)나 된다. 동쪽으로는 모정령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항곶교(項串橋)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부락산(負樂山)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장호천에 접한다. (일찍이) 최수성(崔壽城)과 최자반이 원정령에 올라가 경치를 구경하였다. 원천(猿泉)은 원정령 북쪽 산기슭에 있는데, 샘물이 솟아 나온다. 푸른 원숭이가 스스로 나와 최수성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때, 푸른 원숭이가 벼루 물을 받들어 서로 친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옛 샘물이 있다. 광해군 때에 나라를 그르친 죄는 모두 최수성에게서 나왔다고 하여 조정이 (그를) 극형으로 논죄하였다.

안처선(安處善)의 처 최씨 묘(墓) 현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최씨는 수원의 망족(望族)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유림(有臨)인데, 적개공신(敵愾功臣)³¹⁾에 참여하

29) 조선시대의 영의정(領議政) · 좌의정(左議政) · 우의정(右議政)의 총칭.

30) 맹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불은 맹사성의 호임.

여 수성군(隨城君)에 책봉되었고, 사후에 조정에서 자헌대부(資憲大夫)³²⁾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추증하였다. 시호는 안양공(安襄公)이다. 아버지 윤신(潤身)은 통훈대부(通訓大夫)³³⁾ 상의원정(尙衣院正³⁴⁾)이다. 어머니는 광릉안씨(廣陵安氏) 통정대부(通政大夫)³⁵⁾ 덕원도호부사(德原都護府使)인 극사(克思)의 따님이시다. 부인은 성화(成化) 10년 갑오년(1474)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공경·효도하는 성품을 타고났다. 15세가 되자 안군(安君)과 결혼하였다. 군은 사실 지금의 경상도병마절도사(慶尙道兵馬節度使) 탐(探)의 차남인데, 젖을 떼기도 전에 백부인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³⁶⁾ 호(瑚)가 길러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대단히 귀하게 여겼다. 또한 그 아들의 현명함을 알고 그 옳은 점을 받들었다. 이에 부인을 얻어 아내로 삼았다. 부인은 편안히 쉬고 있을 때에도 점잖고 단정하게 앉아서 매양 남편이 독서하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반드시 깨달았다. (부인은) 무오년(1498, 연산군 4) 11월 7일에 죽었다. 안처선은 정사년(1497, 연산군 3)의 과거에 등제하여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子)³⁷⁾가 되었다고 한다. 묘갈명(墓碣銘)에, “세상을 하직하였네, 아름다운 덕이 있었고, 군자의 어짐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득히 멀리 가버렸는가. 부인은 아름답고 화려함을 모두 갖추었는데, 그 삶이 짧았으니, 하늘은 어찌 어질지 아니한가. 저 우측과 좌측 가운데 골에 무덤이 있는데, 부인의 무덤이다”라고 하였다. 홍치(弘治) 13년(1500) 6월 기망(既望)³⁸⁾에 통덕랑(通德郎)³⁹⁾ 홍문관교리(弘文館敎理)⁴⁰⁾·지제교(知製敎)⁴¹⁾ 겸경연시독관(兼經筵試讀官)⁴²⁾·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⁴³⁾ 남곤(南袞)이 짓다.

최수성의 묘 현의 서쪽 13리 지점에 있다.

이세준(李世俊)의 묘 현의 남쪽 5리 지점에 있다. 이세준은 영의정 이덕형(李德

31) 세조 13년(1467)에 이시애(李施愛)의 반란을 평정한 공신에게 준 공신호(功臣號).

32) 조선시대 관계(官階)로, 정2품에 해당함.

33) 조선시대 관계(官階)로, 문관 정3품 당하관(堂下官)에 해당함.

34) 상의원정은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만들어 바치고 내부의 금은 보화를 관장하던 상의원의 최고 관직으로, 품계가 정3품임.

35) 조선시대 관계(官階)로, 정3품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함.

36) 조선시대에 정사(政事)의 잘잘못을 임금에게 간언하는 역할을 했던 사간원(司諫院)의 으뜸 벼슬. 정3품으로 정원은 1원(員)이었음.

37) 조선시대 홍문관의 정9품 벼슬.

38) 매월 16일을 가리키는 옳어.

39) 조선시대 관계(官階)로, 정5품에 해당함.

40) 조선시대 홍문관에서 문한(文翰)을 담당하던 정5품 벼슬.

41) 임금이 반포하는 교서(敎書)의 글을 짓는 일을 맡은 벼슬. 조선시대에 홍문관(弘文館)이나 집현전(集賢殿)의 관리들이 이 직을 겸임하였음.

42) 조선시대 경연청(經筵廳)의 정5품 벼슬. 홍문관의 교리(敎理)가 겸임하며,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연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43) 조선시대 춘추관의 5품 벼슬.

馨)의 5대조이시다.

이연손(李延孫)의 묘 무봉산에 있다.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의 고조할아버지의 묘갈(墓碣)이다. 공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연손이다. 죽은 뒤 참판(參判)에 추증된 승(昇)의 아들인데, 신라의 망족(望族)이다. 공의 성품은 공손·검소하며 지조가 굳세고 확신했다. 일찍이 무(武)를 닦아 비로소 사판(仕版)에 올라, 치적으로 이름났다. 처음에 교하현(交河縣)의 정사를 돌보았는데, 검소함과 근신을 숭상한다는 화려한 소문이 비로소 퍼져, 드디어 한성소윤(漢城小尹)⁴⁵⁾에 임명되었다가 조금 있다가 부안진병마사(扶安鎭兵馬使)로 나갔다. 위엄과 은혜가 (백성에게) 함께 이르렀는데, 오고(五考)⁴⁶⁾를 채우지 않고 초란(椒蘭)⁴⁷⁾과 연계되어 등급이 뛰어 올라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이윽고 첨지중추(僉知中樞)⁴⁸⁾에 임명되고 품계는 통정대부가 되었다. 봉직함에 근신하니, 조정의 의론이 돌아가게 되어, (이후) 마침내 전라감사(全羅監司)에 발탁되었고 품계는 가선대부(嘉善大夫)⁴⁹⁾가 되었고, 곧 한성부윤(漢城府尹)⁵⁰⁾에 임명되고 품계는 가정대부(嘉靖大夫)⁵¹⁾가 되었다가 조금 후 본직(本職)에 임명되었다. 천순(天順) 7년(1463) 계미 6월 11일에 집에서 병으로 죽었는데, 나이가 육순에 이르렀다. 부음이 양궁(兩宮)⁵²⁾에 전해지자, 양궁이 심히 애도하고 물건을 하사하였다. 본년(本年) 윤7월 27일에 경기 진위현 동천동(東泉洞)의 선영(先塋) 북쪽에 장사지내고 제사하였다. 공은 영의정으로 추증된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윤번(尹蕃)의 셋째 딸과 결혼하였는데, 이분이 바로 지금 중궁(中宮)의 동모제이시다.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은 양천현령(陽川縣令) 숭수(崇壽)이고, 둘째 아들은 사섬소윤(司贍小尹)⁵³⁾ 철건(鐵堅)이고, 셋째 아들은 전생서승(典牲署丞)⁵⁴⁾ 정지(釘至)이고, 넷째 아들은 장사랑(將仕郎)⁵⁵⁾ 석지(石至)이다. 장녀는 상장군(上將軍) 심운(沈暉)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감찰(監察)⁵⁶⁾ 변효동(邊孝洞)에게 시집갔고, 셋째 딸은 충순위(忠順衛)⁵⁷⁾ 이희(李熙)에게 시집갔고, 넷째 딸은 감찰 이일동(李一同)에

44)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차석(次) 당상관(堂上官)으로, 종 2품 벼슬임.

45)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의 정4품 벼슬.

46) 관원(官員)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다섯 번의 검사. 다섯 번의 고사에서 한번 중(中)의 성적을 받은 자는 현직보다 높은 벼슬에 임명받지 못하고, 두번 중의 성적을 받는 자는 파면되었음.

47) 임금의 친척을 지칭하는 용어.

48)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의 당상(堂上) 정3품 벼슬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약칭(略稱)임.

49) 조선시대 관계(官階)로, 문관 정2품에 해당함.

50)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의 종2품 벼슬.

51) 조선시대 관계(官階)로, 종2품에 해당함.

52) 왕과 왕비를 지칭하는 용어.

53) 조선시대 저화(楮貨)의 제조와 지방 노비의 공포(貢布)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관청인 사섬시(司贍寺)의 벼슬.

54) 조선시대 국가의 제사에 쓰는 양·돼지 등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전생서의 벼슬.

55) 조선시대 관계(官階)로, 문관 종9품에 해당함.

56)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벼슬.

게 시집갔고, 다섯째 딸은 과거에 급제한 서강(徐岡)에게 시집갔고, 여섯째 딸은 직장(直長)⁵⁸⁾ 우신(禹晨)에게 시집갔다. 승수의 장남은 녹사(錄事) 성무(成茂)이고, 차남은 어리고, 딸은 4명인데 (모두) 어리다. 철견에게는 1남1녀가 있는데, 모두 어리다. 정지에게는 1녀가 있는데, 어리다. 장녀의 장남은 사정(司正)⁵⁹⁾ 영모(永慕)이고, 차남은 유학(幼學)⁶⁰⁾ 영견(永肩)이다. 셋째 딸에게는 2남이 있는데, 모두 어리다. 넷째 딸에게는 2남이 있는데 어리다. 다섯째 딸에게는 1남이 있는데, 어리다. 여섯째 딸에게는 1남이 있다. 그 비명에 이르기를, “오직 그 충의로써 공경에 이르렀고, 임금의 인척에 연계되어 더욱 번성하였네. 그 명성을 세상에 드날렸으며, 자손은 무성하게 자란 풀과 같구나. 죽어 장사지내니 이 비문에 새긴 것과 같다. 이 경사가 크구나 조선국 가선대부 공조참판 이연손의 묘.”라고 하였다.

성씨

본 현에는 김(金)·이(李)·유(柳)·최(崔)·송(宋)이 있고, 영신(永新)에는 김(金)·최(崔)·오(吳)·황(黃)·이(李)가 있고, 송장(宋庄)에는 이(李)·유(柳)가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되어 있다.

인물

최유림(崔有臨) 무과에 올랐다. 적개공신에 참여하여 수성군에 봉해졌다. 병조판서를 추증받았고 시호는 안양공이다. 묘는 현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최윤신(崔潤身) 유림의 아들이다. 훈음(勳蔭)⁶¹⁾으로 벼슬이 집의(執義)⁶²⁾에 이르렀다. 본 현은 예전에 관사가 없었는데, 윤신과 동지 몇 명이 각기 재력을 내어서 (관사를) 건립하였다. 묘는 현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소흙(蘇翁) 고려인이다. 후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절도사(節度使)에 이르렀다.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되었을 때, 한라산 아래에 있는 큰 연못에 물고기와 비슷한 생물이 있었는데, 그 물고기는 망령된 바람과 괴이한 비를 일으킬 수 있어 백성에게 해를 끼쳤다. (그래서) 목사로 된 자가 매번 이를 없애버리려 해도 손

57) 조선시대 충무위(忠武衛)에 딸린 군대로, 임금의 이성(異姓) 시마친(總麻親)과 외육촌(外六寸) 이상의 친척, 왕비·선왕(先王)·선후(先後)의 시마친과 외5촌 이상의 친척, 문관 6품 이상과 무관 4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 문무과(文武科) 출신과 유음자제(有蔭子弟) 등으로 조직되었음.

58) 조선시대 종7품 벼슬로, 봉상시(封常寺)·종부시(宗簿寺)·사옹원(司饗院)·의금부(義禁府)·상서원(尙瑞院) 등의 중앙 관청에 있었음.

59)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7품 무관직.

60) 조선시대에 사족(士族)으로써 아직 벼슬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61)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자제에게 준 음서.

62)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3품 벼슬.

을 쓰지 못하였는데, 소흠이 부임해서 많은 군정(軍丁)을 내어 연못가에 늘어서게 하고, 큰 그물로 이를 끄집어 내려하니, 맑게 갠 날인데도 천둥이 크게 치고 비가 오더니 갑자기 구름이 모이더니 그쳤다. 노출된 반신(半身)의 모양이 모질고 사나와서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 땅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소흠이 철화살(鐵箭)을 뽑아 연달아 쏘아 이를 죽여 끄집어냈더니 길이가 거의 10여장(丈)이나 되었다. 고기는 저며 포로 만들고 껍질은 벗겨 북을 만들었는데, 그 북소리가 깊고 웅장하였다. 자손에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병란으로 잃어버렸다고 한다.

원균(元均) 무과에 급제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 30)에 이순신(李舜臣)을 대신하여 통제사(統制使)⁶³가 되었다. 여러 번 큰공을 세웠으나 덕도(德島)에서 전사하였다. 선무공신⁶⁴ 일등(宣武功臣一等)으로 좌찬성(左贊成)⁶⁵으로 추증되고 원릉군(原陵君)에 책봉되었다. 사적(事蹟)이 『임진록(壬辰錄)』에 실려있다. 그 후 죽은 참판(參判) 이선위(李選爲)가 그 시묘(侍墓)를 세웠는데, 묘는 현의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원사립(元士立) 현감 연(延)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 30) 이후 왜적이 서천(舒川)과 한산(韓山) 사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조정은 사립이 장수가 될만한 바탕이 있다고 하여 상중(喪中)에 서천군수로 삼았다. 여러 번 왜적을 물리친 공을 세워 통정대부 진주목사로 승진되었다. 후에 부모님의 상을 만나 몸이 상하도록 슬퍼하며 지내다가 병이 나서 죽었다. 묘는 현의 남쪽 16리 지점에 있다. 효자였으므로 경인년(1650, 효종 1)에 조정에서 정려(旌閭)⁶⁶하였다.

권사공(權士恭)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정랑(正郎)⁶⁷에 이르렀다. 일찍이 혼조(昏朝)⁶⁸에 모후(母后)를 폐하는 사건⁶⁹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극언으로 상소하였다가 끝내 유배지에서 죽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⁷⁰ 이후 증직(贈職)되었다.

남명익(南溟翼)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정랑에 이르렀다. 문한(文翰)을 당대에 떨쳤다. 혼조(昏朝) 시기에 끝까지 과거를 보러 나가지 않다가, 인조반정 후 과거에 급제하여 안성군수(安城郡守)가 되었다.

이성부(李聖符) 공정대왕(恭靖大王)⁷¹의 후예이고, 감사(監司) 억손(億孫)의 증손

63)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의 약칭으로, 조선시대 선조 때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수군(水軍)을 통솔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무관직.

64) 임진왜란 때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준 공신호(功臣號).

65)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종1품 벼슬.

66) 정표문려(旌表門閭)의 약칭으로, 충신·효자·열녀가 사는 마을의 거리에 정문(旌門)을 세워 그들을 표창하는 것임.

67)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정5품 벼슬.

68) 조선시대 광해군 시기를 일컫는 말.

69) 조선시대 광해군 때 국왕이 자신의 계모(繼母)인 인목대비를 폐하려고 했던 사건.

70) 조선시대 광해군 15년(1623)에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를 새 국왕으로 옹립했던 사건.

이다. 체격이 크고 홀륭하였으며 재력이 뛰어났다. 어려서부터 강개(慷慨)⁷²⁾하고 절개가 많았다. 수원부사로써 산로방어사(山路防禦使)가 되어, 금천(錦川)의 저탄(猪灘)에서 적을 만났는데, 중과부적이어서 적 몇 명만을 베고 울면서 장계(狀啓)하기를, “중과부적이어서 승패가 이미 났으니 한번 죽어 나라에 보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물가에 이르러 죽었다. 조정은 때에 (그를) 병조판서로 추증하였고 정려(旌闈)하고 복호를 주도록 명하였다. 묘는 현의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사과(司果)⁷³⁾ 우예순(禹禮舜)의 처 임씨(任氏) 불한당이 갑자기 그 남편에게 달려들자 미처 피해 달아나지 못했다. 불한당이 곧바로 우예순을 향하니 곧 덮침을 당할 것 같았는데, 부인이 몸을 날려 그 위를 품듯이 감싸고는 서슬이 번쩍이는 칼날을 감수하여 온전한 살갗이 한 조각도 없이 죽었다. 우예순은 부인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 조정에서 부인을 정려하고 조문(弔文)하였다.

사노(私奴) 언용(彦龍)의 처 양녀 설애상(薛愛常) 병자호란 때 적기(敵騎)가 갑자기 이르렀다. 설애상은 그 남편이 병으로 걸을 수가 없어 두 사람 모두 온전하기가 어려움을 염려하였다. 이에 자신이 문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뒤쪽으로 도망가게 하여 (남편은) 살아날 수 있었다. 적이 (부인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려고 하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어지럽게 베어져 죽임을 당하였다. 병란이 끝난 후 소문이 조정에 알려져 정표(旌表)하였다.

학생 홍복성(洪復性)의 처 이씨 병자호란 때 홍복성이 포로가 되어 해를 당하게 되자, 앞장서 나아가 적에게 달려들다가 죽었다. 조정에 알려져서 정표(旌表)하였다.

조정암(趙靜菴) 본 현 송장면에 조씨의 장토(庄土)가 있다. 선생은 일찍이 이곳에 우거(寓居)하였는데, 지금 옛 터가 남아있고, 또 선묘(先墓)도 있다.

사실(事實)

황효원(黃孝源) 상주(尙州) 사람이다.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좌익·좌리공신(左翼·佐理功臣)⁷⁴⁾에 참여하고 상산군(商山君)에 책봉되어 관직이 좌찬성(左贊成)에

71) 조선시대 2대 임금인 정종(定宗).

72) 의분에 복받치어 슬퍼하고 한탄함.

73)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하였던 정6품 무관직.

74) 좌익공신은 조선시대 세조 원년(1455)에 단종(端宗)을 복위시키려던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의 모의를 미리 임금에게 알린 공으로,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에게 주었던 공신회이며, 좌리공신은 조선시대 성종 2년(1471)에 임금을 잘 보필한 공으로,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에게 주었던 공신회임.

이르렀다. 그 별업(別業)이 본 현의 영신면(永新面)에 있으므로, 항상 왕래하였다. 천순 4년(1460)에 경기감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행하다가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본현이 쇠약해져 관노비(官奴婢)와 지대(支待)⁷⁵⁾가 없어서 모든 일을 촌민들이 하였다. 황효원이 이것을 보고들은 후에 해남(海南)에 있는 자기 노비 26명을 배에 싣고 와서 본 현에 주어 영구히 관노비로 삼게 했다. 그 후 대신이 (이를) 아뢰어 임금으로부터 특별히 복호(復戶)와 60결(結)을 포상으로 받았다. 그의 자손이 장토(庄土)에 살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다.

호총(戶摠)

원호(元戶)는 2,181호이고, 인구는 7,429명이다. 남자는 3,774명인데, 장남(壯男)은 2,433명이고, 노남(老男)은 635명이고, 아남(兒男)은 706명이다. 여자는 3,655명인데, 장녀(壯女)는 2,556명이고, 노녀(老女)는 454명이고, 아녀(兒女)는 645명이다.

군총(軍摠)⁷⁶⁾

가정초군(駕精抄軍)은 322명이고, 난후아병(攔後牙兵)은 218명이고, 납포팔달대(納布八達隊)는 981명이다. 이상의 군은 화영(華營)에서 관할한다. 포보군(砲保軍)은 40명이고, 군향보군(軍餉保軍)은 3명이다. 이상은 훈련도감(訓練都監)⁷⁷⁾에 군포(軍布)를 납부한다.

환향총(還餉摠)⁷⁸⁾

각 아문의 쌀은 1,237석 12두 7승 8홉 6작이고, 벼는 6,302석 10두 1승 2홉 4작이고, 보리는 894석 5두 9홉 6작이고, 밀은 65석 6두 4승 3홉 5작이고, 팥은 16석 3두 3승 4홉 5작이다.

결총(結總)⁷⁹⁾

원장부의 전답은 모두 2,493결 92부 3속인데, 그 중에서 밭은 1,275결 27부이고, 논은 1,218결 15부 3속이다. 잡탈(雜頂)⁸⁰⁾된 1,393결 87부 5속을 제외하면, 실결(實

75) 지방에 출장한 고급 관원의 음식물·일용품을 그 지방의 관아에서 공급하는 일.

76) 군병(軍兵)의 총수(總數).

77)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인 선조 27년(1594)에 설치한 군영으로, 수도방어를 핵심 임무로 하였다. 급료를 받는 용병인 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의 심수병을 훈련시키기 위해 삼수미(三手米)라는 명목으로 경상·전라·충청·강원·황해·경기의 6도에서 토지 1결당 쌀 2.2말을 징수하였다.

78) 환곡(還穀)과 향곡(餉穀).

79) 총 호수(戶數).

80) 잡다한 여러 사고나 탈을 지칭하는 말.

結)은 1,100결 4부 8속이다. 매년 재해와 탈로 인해 증감이 있다. 관수미(官需米)⁸¹⁾는 100석이고, 지공미(支供米)⁸²⁾는 150석이고, 지지미(紙地米)⁸³⁾는 16석이고, 아록위결(衙祿位結)⁸⁴⁾과 공수위결(公須位結)⁸⁵⁾은 55결이다.

81) 조선시대 각 관청의 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거둔 쌀.

82) 각종 수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저축해두는 쌀.

83) 종이를 만드는 재료는 닥나무 껍질인데, 지지미는 닥나무를 심고 기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해 마련한 쌀임.

84) 아록위(衙祿位)는 관청의 녹료(祿料)를 의미한다. 위(位)는 위전(位田)의 약칭으로, 이 위전의 수입으로 관청의 여러 잡비를 충당한다.

85) 아록위의 일종으로, 공무로 출장하는 관리의 숙박, 접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주·부·군·현에서 획급한 전토(田土)를 의미함.

진위현(振威縣)—1872년 진위읍지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구려 부산현(釜山縣)이었다. 옛날에는 연달 부곡(淵達部曲)이었다.¹⁾

지금 이름으로 수성군(水城郡)의 속현(屬縣)²⁾이 되었다가, 고려때에도 그대로 소속시켰다.

본조(本朝)[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태조 7년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이속(移屬)시켰다.

군명(郡名)

부산(釜山), 연달(淵達)

관원(官員)

현령(縣令)은 1명이다. 수원진관(水原鎭管)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를 겸한다. 관품(官品)은 종5품으로 (경기도의) 여러 현령도 같다. 훈도(訓導)³⁾

강계(疆界)

동쪽으로 양성현(陽城縣) 경계까지는 13리이며, 그 현까지의 거리는 20리이다.

북쪽으로 용인현(龍仁縣) 경계까지 10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북쪽으로 용인현 경계까지 34라고 적혀있으나, 지금은 단지 10리 정도이다. 그 현까지의 거리는 50리이다.

서쪽으로 수원부(水原府) 경계까지 12리이며, 그 부까지의 거리는 50리이다.

남쪽으로 충청도 직산현(稷山縣) 경계까지 37리이며, 그 현까지의 거리는 60리이다. 충청도 평택현(平澤縣) 경계까지 30리이며, 그 현까지의 거리는 40리이다. 서울까지의 거리는 120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18리로 적혀 있다.

1) 송촌(松村), 혀달(舌達)이었다가 세번째로 진위현(振威縣)으로 되었다고 한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원문의 영현(嶺縣)은 영현(嶺縣)으로 되어 있어 속현으로 풀이했다. 이책에 따르면 고쳐서 수성군의 속현이 된 때는 신라 경덕왕대이다. (제 10권, 진위현)

3) 조선 시대 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사역원(司譯院) 등에 둔 종9품 벼슬

장면(掌面)

- 마산면(馬山面) 현(縣) 동쪽 10리 거리에 있다.
일북면(一北面) 현(縣)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⁴⁾
이북면(二北面) 현(縣) 북쪽 5리 거리에 있다.
일서면(一西面) 현(縣) 서쪽 15리 거리에 있다.⁵⁾
이서면(二西面) 현(縣) 서쪽 20리 거리에 있다.
일탄면(一炭面) 현(縣) 서쪽 10리 거리에 있다.⁶⁾
이탄면(二炭面) 현(縣) 서쪽 20리 거리에 있다.
송장면(松庄面) 현(縣) 남쪽 15리 거리에 있다.
여방면(余方面) 현(縣)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병과면(丙坡面) 현(縣) 남쪽 30리 거리에 있다.
성남면(城南面) 현(縣) 남쪽 30리 거리에 있다.
고두면(古頭面) 현(縣) 남쪽 30리 거리에 있다.
현내면(縣內面) 또한 치소(治所)와 위치가 일치한다.

형승(形勝)

도로가 남북으로 통하여 3도의 요충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적혀있다.

- 산천(山川)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부산(釜山)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무봉산(舞鳳山)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천덕산(天德山)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장호천(長好川)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⁷⁾
〈신증(新增)〉
부락산(負樂山)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귀천(龜川)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서천(鋤川)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⁸⁾
도현천(兔峴川)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4) 원래는 성북면(城北面)이었으나 이후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분리되었다.

5) 원래는 서면(西面)이었으나 이후 일서면과 이서면으로 분리되었다.

6) 원래는 탄현면(炭峴面)이었으나 이후 일탄면과 이탄면으로 분리되었다.

7) 현(縣) 남쪽 1리 거리에 있다. 그 원류(原流)는 2곳인데 한곳은 용인동(處仁東)에서 나오고, 또 한곳은 옛날 양지현에서 나온다. 서쪽에서 합류하여 객사(客舍) 남쪽을 경유하여 흐른다.

내천(奈川)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⁹⁾

통복포(通伏浦)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관방(關防)¹⁰⁾ 없다.

성곽(城郭) 토축(土築), 석축(石築)은 원래 없었다.

봉수(烽燧) 없다.

제언(堤堰)¹¹⁾

사발동(沙鉢洞) 마산면(馬山面)에 있다. 물이 말라 무너지자 폐기되었다.

가은산(加隱山) 마산면(馬山面)에 있다. 물이 말라 제언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이 논으로 만들었다. 기사년(1869)에 세금을 냈다.

진가리(眞加里) 일북면(一北面)에 있다.¹²⁾ 물이 말라 제언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이 논으로 만들었다. 기사년(1869)에 세금을 냈다.

눌리(訥里)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금각(金角) 이탄면에(二炭面) 있다. 물이 말라 무너지자 폐기되었다.

오근천(吾斤川)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방보(防狀)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황생(黃生)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¹³⁾

중보(中淤)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¹⁴⁾

황이상(黃二尙)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¹⁵⁾

현산(峴山)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¹⁶⁾

금복(金福)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견산(見山)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8) 현(縣) 서쪽 10리 거리에 있다. 수원(水源)은 장호천(長好川)에서 나와 나뉘어 남쪽 작은 웅덩이로 흘러 하나의 긴 냇가 되었다가 다시 장호천으로 흘러들어간다. 할는 모두 깊이가 수 길[丈]이나 된다. 흰 마름[蓼(藜)]·붉은 여뀌[蓼(蓼)]·원추리[원(鳥)]·기러기[안(鷹)]들이 모여들었다.

9) 현(縣) 서쪽 20리 거리에 있다. 수천부(水原府) 읍촌(邑村)의 동북쪽 아래로 흐르다가 장호천(張好川)과 합류하여 수원부 다라고비진(多羅古飛津)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나 다라고비진의 길은 지금은 없어지고 그 상류의 끝에 있는곳 사이로 옮겨졌다.

10) 국경을 방어하는 방비하는 것으로서 성보(城堡)나 진수(鎭戍) 등을 말한다.

11) 둑이나 방죽을 말함.

12) 1843년 진위현읍지에 따르면 이북면(二北面)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13) 용인지역에 있다. 본읍 일북(一北)땅에 관계한다.

14) 일북면(一北面)에 있으며, 일북면에 관계한다.

15) 일북면(一北面)에 있으며, 일북면에 관계한다.

16) 일북면(一北面)에 있으며, 일북면에 관계한다.

토현(兔峴)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신보(新洑)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대야소(大也所)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미시(彌時)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흥익(興益)¹⁷⁾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우두(牛頭)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백량(白梁)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사라천(沙羅川) 성남면(城南面)에 있다. 해당 면에 관개한다.
 가리천(加里川) 성남면(城南面)에 있다. 해당 면에 관개한다.
 방시천(方是川)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¹⁸⁾
 장경(長慶)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사인(舍人) 일북면(一北面)에 있다. 현내면(縣內面)에 관개한다.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¹⁹⁾

관우(館宇)

아사(衙舍)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아동헌(衙東軒)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객사(客舍)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사창(司倉)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빙고(氷庫) 현(縣) 서쪽 단(壇) 아래에 있다.
 군기고(軍器庫) 현(縣) 동쪽에 있다.
 관청고(官廳庫) 현(縣) 남쪽에 있다. 현령 조지강(趙持綱)이 세웠다.
 옥(獄) 담과 형옥(刑獄)은 지은 지 오래되었다. 옥(獄) 사이의 담은 태반이 무너져
 자못 죄수가 도망가는 사고가 있었다. 강희(康熙) 정축년(1679)에 순영(巡營)²⁰⁾에 보
 고하여 대략 보수하여 완성했다. 지금은 무너져 다만 터만 남아있다.

누정(樓亭)

부산정(釜山亭)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신증(新增)>

17) 1834년 진위현 읍지에는 익흥(益興)으로 적혀있다.

18) 고두면(古頭面)에 있다. 해당면과 수원 땅에 관개한다.

19) 이상 각 면의 방보(防汙)는 매년 물 감관(監官)이 살펴보고 보주(洑主)를 차정(差定)하고, 혜택을 받는 전부(田夫)를 이끌고 가서 때에 맞춰 수리하여 쌓는다.

20) 감사가 직무하는 관청, 감영의 다른 말.

연정(蓮亭) 객사 서쪽에 있다. 본래 연지(蓮池)는 있었으나 건물은 없었다. 강희(康熙) 임자년(1672) 현령 조지강(趙持綱)이 정자 여러 칸을 지었다. 그 후에 기울어지고 무너지자 현령 최석진(崔錫晉)이 개조했다. 지금은 무너져 다만 그 터만 남아 있다.

학교(學校)

향교(鄕校)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사직단(社稷壇)²¹⁾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문묘(文廟)²²⁾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오성위²³⁾ 종사(五聖位從祀)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성황사(城隍祠)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여단(厲壇)²⁴⁾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역원(驛院)

장호원(長好院)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이방원(李防院)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백치원(白峙院)²⁵⁾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갈원(葛院)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불우(佛宇)

만기사(萬奇寺)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고적(古跡)

영신폐현(永新廢縣)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송장부곡(松莊部曲)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천장부곡(川場部曲)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신증(新增)>

인침담(印沈潭)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조산(造山)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21)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을 제사 지내는 제단(祭壇)

22) 공자(孔子)를 모신 사당. 근궁(芹宮), 성묘(聖廟), 합사묘(合祀廟).

23) 여러 가지 설(說)이 있으나 대체로 북쪽에 위패(位牌)를 모시는 지성선사 공자(至聖先師孔子), 동쪽에 모시는 복성 안자(復聖顏子), 숭성 자사자(述聖子思子), 서쪽에 모시는 종성 증자(宗聖曾子), 아성 맹자(亞聖孟子)를 말한다.

24) 천재지변(天災地變) 등으로 횡사(橫死)하거나 후사가 없는 귀신을 제사지내던 단(壇)

25) 1843년 읍지에는 백현원(白峴院)으로 적혀있다.

모정령(茅亭嶺) 현의 남쪽으로 10리, 장호천(長好川) 하류의 남쪽으로 3리, 서연(鋤淵)의 남쪽으로 2리, 부락산(負樂山) 북쪽으로 4리에 있다. 용성군(龍城君) 최자반(崔子泮)이 모정을 창건하여 날마다 즐겼다. 원정(猿亭)은 최수성(崔壽成)이 노니던 것이다. 원정에는 ‘茅蒼松竹仰能攀’이라는 글귀가 있다.

원정령(猿亭嶺)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원천(猿泉)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유명교(有名橋) 현의 서쪽으로 5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廢)해졌다.

덕암명기(德巖名基) 현의 동남쪽으로 10리에 덕암산(德巖山)이 있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판도판서(版圖判書) 여을경(蘓乙卿)이 이곳에 살았다. 기(基)는 여을경 전에 소(蘇)씨가 이곳에 살았다. 기(基)라는 것은 역시 여러 대에 걸쳐 합하여 말하는데, 몇 대(代)인지 모른다고 한다.

총묘(塚墓)

최유림(崔有臨) 묘 현 남쪽 10리 거리에 있다.

최윤신(崔潤身) 묘 현 남쪽 10리 거리에 있다.

안처선(安處善) 처(妻) 최씨의 묘 (앞부분은 1843년 진위현 읍지와 동일)²⁶⁾ 그 아들의 현명함을 알고, 아들에게 맞는 여자를 찾고 있었다. 드디어 부인을 얻어 며느리로 삼았다. 항상 스스로 기뻐하며 만하기를, “하늘이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는 구나!” 했다. 부인은 시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물으면 대답하고 물러가라고 명(命)한 후에야 물러갔으며 종일토록 나태한 모양이 없었다. (1843년 읍지와 동일) 매번 안처선이 고서(古書)를 읽는 것을 보고 경계하며 말하기를, “어찌 입으로만 하고 그칩니까?”라고 했다. 안처선이 밖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묻기를, “오늘은 함께 노닐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했다. 시가(嫗家) 사람들을 모시기를 혈육(血肉)처럼 대했고, 동서(同壙) 간에는 정성을 다하는데 겨를이 없었다. 누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들으면 행하여 반드시 그와 같아지려고 했다. 그래서 대간(臺諫) 부인 김씨(金氏)가 항상 칭찬하여 말하기를, “만약 사람들이 내 며느리와 같다면 가르침을 말해봐야 무엇하겠느냐” 했다.

정사년에 부인이 마침내 병을 얻어 나왔다가 아프기도 하다가 다음해에 갑자기 심해져 백약(百藥)이 효과가 없었다. 무오년(1498) 11월 7일에 죽었다. 부인은 항상 옛날 열부(烈婦)들의 행실을 기쁘게 여겨 병에 걸려 아프면서도 고쳤다. 또 안처선

26) 묘갈(墓碣)은 다음과 같다.

홍치(弘治) 11년(1498)겨울 안처선(安處善)이 그의 아내를 기려 예(禮)로써 진위현의 치소(治所)남쪽에 장사 지냈다. 3년이 지나 여름 묘앞에 입석(立石)을 세우려고 했다. 평소애 쓸만한 일로 그의 친구에게 명(銘)을 요청하니 의리상 감히 선부른 말을 할 수 없다. 삼가 생각컨대(이후는 1843년 진위현 읍지와 동일)

이 『소학(小學)』의 말로써 이야기하면 문득 읍(揖)하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고금(古今)과 다르겠습니까?” 하면서 자주 다시 경계하여 깨달았으니 그의 타고난 품성의 고매(高邁)함이 이와 같았다. 1남 2녀를 낳았다. 자식들이 자라자 먼저 부인이 요절했다. 아들이 7세가 되었을 때 매우 숙연한 기운이 있었고, 딸도 역시 명석하고 훌륭함이 남달랐다.(이후는 1843년 진위현 읍지와 동일)

최수성(崔壽城) 묘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이세준(李世俊) 묘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이연손(李延孫) 묘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소흡(蘇滄) 묘 현(縣) 남쪽 16리 거리에 있다.

원균(元均) 묘 현(縣) 남쪽 16리 거리에 있다.

이성부(李聖符) 묘 현(縣) 남쪽 16리 거리에 있다.

원사립(元士立) 묘 현(縣) 남쪽 16리 거리에 있다.

이준(李濬) 묘 현(縣) 남쪽 15리 거리에 있다.

성씨(姓氏)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인물(人物)

최유림(崔有臨)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최윤신(崔潤身)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소흡(蘇滄)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원균(元均)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최희효(崔希孝) 최윤신(崔潤身)의 손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절도사(節度使)에 이르렀다.

원팽수(元彭壽) 현감 원몽량(元夢良)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원연(元堧) 원균(元均)의 동생이다. 임진(壬辰) 난에 의병장이 되어, 여러 번 승리한 공이 있어 상으로 관직이 제수되었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소응종(蘇應宗) 병사(兵使) 소흡(蘇滄)의 조카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원사립(元士立)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권사공(權士恭)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남명익(南溟翼)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²⁷⁾

이성부(李聖符)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사과(司果) 우례순(禹禮舜)의 처 임씨(任氏)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사노(私奴) 언용(彦龍)의 처 양녀(良女) 설애상(薛愛常)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학생(學生) 홍복성(洪復性)의 처 이씨(李氏)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기만헌(奇晩獻)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정언(正言)에 이르렀다.

최진운(崔振雲)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도사(都事)에 이르렀다.

최정운(崔挺雲) 최진운(崔振雲)의 동생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의(參議)에 이르렀다.

최충운(崔冲雲) 최진운(崔振雲)의 동생이다. 생원으로 숨어지냈다. 원래 효행으로 향리(鄉里)에서 칭찬했다.

이현(李灝) 목천군(目川君) 이정암(李廷穰)의 조카이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며 자수(自守)했다. 음서(蔭敍)로 금부(禁府) 도사(都事)와 찰방(察訪)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정중하게 사양하고 벼슬하지 않았다. 향년(享年) 80여년이 었다. 벼슬을 올려주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소정진(蘇挺震) 병사(兵使) 소흡(蘇滄)의 손자이다. 음서(蔭敍)로 벼슬하여 관직이 판관(判官)에 이르렀다.

정이창(鄭以昌) 의정(議政) 정인지(鄭麟趾)의 후손이며, 정언(正言) 정응두(鄭應斗)의 아들이다. 어린 나이에 사마(司馬)가 되어 여러번 (관직에) 천거되었으나 음사(蔭仕)로 말미암아 봉사(奉事)하지는 않았다. 향년 91세였다. 여러번 (관품이) 더해져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윤창구(尹昌考) 현감 윤상(尹常)의 아들이며 의정(議政) 윤승훈(尹承勳)의 종손(從孫)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수사(水使)에 이르렀다.

이상우(李象羽)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수사(水使)에 이르렀다.

최형구(崔亨衢)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부사(府使)에 이르렀다.

강호석(姜好奭)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군수(郡守)에 이르렀다.

소형우(蘇亨宇) 판관 소정진(蘇挺震)의 아들이다. 병술년에 사마(司馬)가 되었다. 그후로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경문(經文)을 널리 익히고 깨달아 자수(自守)했다. 여러 번 천목(薦目)에 올랐으나 만보재(晩補齋)에서 늙도록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27) 은혜를 많이 입었으나 청백리(淸白吏)에 뽑혔다. 군민(君民)들이 지금에도 말을 전하기를, “교체되는 때를 맞이하여 말기마 1개를 만들어 보냈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공의 청렴함에 말기마 1개가 다 무엇이나? 날마다 병들과 아픈 사람들은 한갓 의지할 것도 없다. 이런 일이 이와 같다면 청백리의 명성을 얻는 것이 또한 부끄럽지 않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남용익은 더욱 후진들의 학문을 잘 이끌어, 공보다 많은 성취가 있었다.

한상현(韓尙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통례(通禮)에 이르렀다.

최창운(崔昌運) 수성군(隨城君) 최유림(崔有臨)의 손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군수(郡守)에 이르렀다.

최형운(崔亨運) 수성군(隨城君) 최유림(崔有臨)의 후손이며 최창운(崔昌運)의 동생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품과 관직이 통정대부(通政大夫)·부사(府使)에 이르렀다.

최진창(崔震昌) 부사(府使) 최명후(崔鳴後)의 조카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군수(郡守)에 이르렀다.

최치후(崔致後)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감찰(監察)에 이르렀다.

정완(鄭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정빈(鄭玘)의 손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감찰(監察)에 이르렀다.

이만영(李晩榮) 수사(水使) 이상우(李象羽)의 조카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현감에 이르렀다.

최명운(崔溟運) 최유림(崔有臨)의 후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관(判官)에 이르렀다.

이준(李濬) 목천군(目川君) 이정암(李廷穰)의 셋째 아들이다. 임진왜란때 목천군(目川君)을 따라 연안(延安)에 있었는데 성이 포위되었을 때 여러 번 재략(才略)을 다했다. 조정에서 큰 공으로 논의했으나 군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직장(直長)으로 일찍 죽었다.

조일범(趙一范) 관직이 참봉에 이르렀다.

한세상(韓世相) 관직이 참봉에 이르렀다.

최치영(崔致榮) 관직이 봉사(奉事)에 이르렀다.

이후성(李後晟)

이천근(李天根) 현감 이만영(李晩榮)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고, 현 춘천 부사(春川府使)이다.

이인석(李寅錫) 고려 때 시중(侍中) 이춘부(李春富)의 후손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고, 현 진주 목사(晉州牧使)이다.

이석근(李碩根) 현감 이만영(李晩榮)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고, 현 영흥 부사(永興府使)이다.

최진한(崔鎭漢) 부사 최형운(崔亨運)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고, 현 경주 영장(慶州營將)이다.

양인(良人) 박충립(朴忠立) 나이 56세에 죽었다. 그 아버지가 요절(夭折)하자 그 어머니는 수절하면서 과부로 살았고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다. 박충립은 어렸을 때 부터 어머니를 지극한 효도로 모시었다. 장가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음식물은

어육(魚肉)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했다. 그의 어머니는 향년 80여세가 되었으나 더욱 효사(孝事)의 정성이 돈독해졌다. 계축년 겨울 박충립이 마침 이웃집에 갔을 때 집안 사람이 실화(失火)했다. 그 불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서 어머니 있는 곳을 물었다. 그 어머니는 연로(年老)하여 스스로 나오지 못하자 앞장서서 들어갔으나 그 어머니를 찾아 나오지 못했다. 이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3번 했으나 끝내 나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고 집안을 들여다 보니, 박충립은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그 몸은 불에 타 죽었으나 그 어머니는 여러 날을 더 연명(延命)할 수 있었다. 그 효성으로 말한다면 옛사람이라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정표(旌表)를 해주더라도 이런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정말로 애통하도다.

우빈(禹濱) 내금위(內禁衛)로써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전사(戰死)했다. 여사(御使)가 왕에게 보고하여 역(役)과 복호(復戶)가 면제되었다. 학생(學生) 이홍석(李弘奭)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게 되지 손가락을 잘라 약(藥)으로 써서 치료하자 나왔다. 복호(復戶)하도록 했다.

우거(寓居)

조정암(趙靜庵)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최수성(崔壽誠) 일탄현면(一炭縣面) 제역동(除役洞)에 우거(寓居)했다. 공(公)의 자(字)는 가진(可鎭)이고, 호는 원정(猿亭)으로서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어려서 부터 의기(意氣)가 비할 바 없고 총민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에게서 학문을 배워 의리의 학(學)을 마음 속에 두었다.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더불어 도의(道義)의 교류를 위해 소요(逍遙)했고, 여러 차례 관직에 불렸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또 남곤(南袞)의 간사함을 알아차리고 그 숙부 참판 최세절(崔世節)에게 함께 교우(交友)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최수성이 무고하게 참소(讒訴)되어 조정에서 극형(極刑)에 처하자고 논의하자 누구도 거두어 들어 장사(葬事)지내지 못했다. 호남에 사는 제자 한사람이 꿈속에서 선생을 뵈었는데 시(詩)를 주면서 말하기를 '현실(玄室)²⁸⁾은 누가 찾아오기 위함인가! 푸른 이끼 만이 홀로 친하다. 염(簾)을 따라 뒤따라 오는 것을 언 듯 생각해보니 해골(骸骨)인 듯 하다.' 라고 했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깜깜한 밤에 가서 보니 선생님이 화를 당해 시신이 염(簾)으로 둘둘 말려서 계곡 사이에 방치되어 있다. 즉시 관곽(棺槨)을 마련해 선생의 별업(別業)²⁹⁾에 장사지내니 곧 진위현(振威縣) 일탄현면(一炭面) 제역동(除役洞)이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양자(養子)를 들어서 그 자손들이 때때로 묘(墓) 아

28) 관(棺)을 묻는 광중(塋中).

29) 별장(別莊)과 같은 곳.

래에서 거처했다.

사실(事實)

황효원(黃孝源) (1843년 진위현 읍지와 같다)

토산(土産)

즉어(鰱魚)³⁰⁾ 상(蟹)³¹⁾ 지황(地黃)³²⁾ 『승람(勝覽)』에는 실려있으나 지금은 모두 없다.

풍속(風俗)

재예(才藝)는 무(武)가 많고 선비와 백성들은 오로지 전농(田農)에만 힘쓰고 말업(末業)에 종사하지 않아서 상고(商賈)와 공장(工匠)이 매우 적다.

호액(戶額)

호(戶)는 2,051호(戶)이고, 인구는 8,519명이다. 남자는 4,124명이고, 여자는 4,385명이다.

전안(田案)

밭전(田) 1,275결(結) 27부(負)

논답(沓) 1,218결(結) 65부(負) 3속(束)

합 2,493결(結) 92부(負) 3속(束)이다. 임오 양전(壬午量田) 때 이 결수(結數)를 얻었으나 각 궁(宮)의 면세(免稅)와 잡탈(雜頃)을 제외하고 계산한 실결(實結)은 1천 68결(結) 61부(負) 2속(束)이다.

재곡(財穀)

호조(戶曹) 원회부(元會付) 미(米)³³⁾ 1천6백57석(石) 13두(斗) 5승(升) 6합(合) 6석(勺) 읍창(邑倉) 반류반분(半留半分)에는 반을 남기고 반은 분급한다.

병인 별비미(丙寅別備米) 5백석(石) 각면(各面) 사창(社倉)³⁴⁾

30) 붕어

31) 게

32) 한의학에서 보혈제로 쓰이는 약용식물 임. 날것을 '생지황', 말린 것을 '건지황', 썬 것을 '숙지황'이라 함.

33) 원곡(元穀)에 합쳐서 호조로 보내는 쌀

34) 각 고을에 환곡(還穀)을 저장하여 두던 곳집.

공안(貢案)

태(太)³⁵⁾ 134석(石) 6두(斗) 1승(升) 8합(合)

미(米) 150석(石) 8두(斗) 2승(升) 6합(合) 8석(夕) 成陳省直納于廣興倉而一從□□實
結出稅放□□□□

병안(兵案)

화성(華城) 소계(所係) 팔달대(八達隊) 양군(良軍) 5백 53명, 팔달대(八達隊) 노군(奴軍) 4백 28명, 좌사우초군(左司右哨軍) 양인(良人) 1백 27명, 좌사후초군(左司後哨軍) 양인(良人) 1백 27명, 중사후초군(中司後哨軍) 양인(良人) 1백 27명, 별중사 전초군(別中司前哨軍) 노(奴) 1백 27명, 별중사우초군(別中司右哨軍) 노(奴) 50명, 난 후아병(欄後牙兵) 양인(良人) 48명

훈련도감(訓練都監) 소계(所係) 포보(砲保) 양인(良人) 40명, 군향보(軍餉保) 양인(良人) 3명

이안(吏案)

향리는 22명이다. 향리는 2성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가속(假屬)이다.

통인(通引)³⁶⁾ 7명이다. 모두 가속(假屬)이다.

천안(賤案)

관(官)

남자 노비[노(奴)] 5명. 실제로는 3명이다.

여자 노비[비(婢)] 4명. 실제로는 1명이다.

교(校)

남자 노비[노(奴)] 2명

여자 노비[비(婢)] 1명

제영(題詠)³⁷⁾ 없다

만력(萬曆) 계미년(1583) 부터 시작한다

이빈(李贄), 황치성(黃致成), 최진방(崔振昉), 이원(李蓬), 이계필(李繼弼), 박충남(朴

35) 콩, 대두(大豆).

36) 조선 시대 지방 관아의 우두머리에 달려 잔심부름하던 이속, 지인(知印), 토인.

37) 시(詩)

忠男), 민곤서(閔昆瑞), 김공휘(金公輝), 유대형(俞大衡), 정응탁(鄭應倬), 용천택(龍天澤), 채길선(蔡吉先), 장세철(張世哲), 신현(申晷), 유달증(俞達曾), 최준(崔峻), 윤기빙(尹起聘), 이경황(李慶滉), 황치중(黃致中), 이승(李昇), 권주(權澍), 노사해(盧士海), 유몽용(柳夢龍), 김흠(金洽) 이문빈(李文賓), 심상(沈相)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이선술(李善述), 안대남(安大楠), 이종립(李宗立), 최숙(崔淑), 이덕언(李德言), 김준(金俊), 유시증(俞是曾)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가 있다.

박병(朴炳) 청간선정비(淸簡善政碑)가 있다. 임기가 되어 교체되었다.

김우엄(金友淹), 이명달(李命達)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김광위(金光遂), 류신남(柳信男), 권담(權潭), 권대유(權大有), 한유량(韓有良), 안정(安挺)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가 있다. 남두극(南斗極), 이산퇴(李山貴), 유희(柳翕)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심약하(沈若河), 허린(許麟), 신보(申洵), 염원준(廉元俊), 이분(李昉), 정만화(鄭萬和) 청덕비(淸德碑)가 있다. 비문에 “臨政七朔沒世不忘(정사(政事)를 7달 행했는데,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라고 적혀 있다. 윤유진(尹惟晉), 정후계(鄭後啓), 고두흥(高斗興), 황부(黃哀) 청간에민선정비(淸簡愛民善政碑)가 있다. 이극빈(李克儉), 송박(宋搏), 성희적(成熙績), 이관하(李觀夏), 윤영(尹榮) 임기가 되어 교체되었다. 강석노(姜碩老), 이집성(李集成), 한성보(韓聖輔), 조지강(趙持綱), 윤의(尹澍), 신응징(申應澄), 양정개(楊廷蓋), 민정백(閔挺栢), 이현년(李玄季), 최성임(崔聖任), 한세신(韓世臣), 이유징(李休徵), 권유(權諭), 이만성(李晩成), 송도흥(宋道興), 성지선(成至善), 이세필(李世弼) 삭령(朔寧)에 승배(陞拜)되었다. 최석진(崔錫晉), 윤이복(尹以復) 익산(益山)에 승배(陞拜)되었다. 안중(安重), 허승(許士乘), 이백겸(李百謙), 이혜주(李惠疇) 청간에민선정비(淸簡愛民善政碑)가 있다.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되어 수사(水使)로 옮기었다. 신광제(申廣濟), 송세태(宋世泰), 이세회(李世會), 임세검(林世儉), 양헌석(楊憲奭), 윤보(尹普), 이구(李溝), 이준(李竣), 권성징(權聖徵), 이노성(李老成), 허집(許沾), 조해수(趙海壽), 권익순(權益淳), 신사성(申思聖), 이위(李瑋), 김명환(金命煥), 이시명(李善命), 이의연(李宜衍), 조동빈(趙東彬), 유성징(柳聖澄), 윤세관(尹世觀), 조상징(趙尙鼎), 이하구(李夏龜), 권수린(權壽麟), 김시교(金時教), 이정철(李廷喆), 김상열(金相說), 윤광적(尹光迪), 박명양(朴鳴陽), 조한숙(趙漢淑), 박봉한(朴鳳漢), 이병승(李秉升), 권정웅(權正雄), 김한길(金漢吉), 박인원(朴隣源), 김경희(金敬熙), 이성진(李宥鎭), 이장호(李章祐), 유한태(俞漢泰), 김노(金魯), 경현(慶絢), 한후증(韓厚增), 송재덕(宋載德), 김사혼(金思渾), 박좌원(朴左源), 홍명문(洪秉文), 홍이건(洪履健), 조익현(趙翼鉉), 이항연(李恒演), 이협성(李協聖), 조윤식(曹允植), 오재두(吳在斗), 윤응현(尹應鉉), 정치우(鄭致愚), 이명익(李明翼), 변세익(卞世義), 남주헌(南周獻), 박종우(朴宗雨), 박영수(朴榮壽), 한용성(韓用誠), 권용(權裕), 이영효(李英孝), 조운로(趙雲路), 조종협(趙宗協), 한철유(韓喆裕), 황기익(黃基

翼), 송계간(宋啓狼), 조운표(趙雲杓), 이종인(李鍾仁), 김익철(金益喆), 박종대(朴宗大),
 민정현(閔靖顯), 유영근(柳英根), 윤행린(尹行麟), 이원달(李源達), 홍병기(洪秉箕), 이
 유승(李儒勝), 오근상(吳謹常), 남흥중(南興中), 박장암(朴長菴), 오경흥(吳慶興), 황중
 립(黃鍾林), 김무순(金茂淳), 조병성(趙秉性) 청덕애민비(淸德愛民碑)가 있다. 강로(姜洙),
 김정호(金鼎鎬), 황유수(黃裕秀) 청덕애민비(淸德愛民碑)가 있다. 서미순(徐眉淳), 홍정
 하(洪庭河), 박제관(朴齊寬) 청덕애민비(淸德愛民碑)가 있다. 이기신(李騏新), 박승황(朴
 承晃), 이승겸(李承謙) 청덕애민영세불망비(淸德愛民永世不忘碑)가 있다. 조운궁(趙雲兢),
 조용하(趙龍夏), 이병제(李秉悌), 송병찬(宋秉瓚).

진위현(振威縣)—1891년 진위읍지

진위현읍지

광서(光緒) 17년(1891) 8월 일 진위현(振威縣) 읍지(邑誌)

관직

현령은 본래 없다. 읍지 고적(古蹟)편에 자세하지 않다.

현명(縣名)

진위이다. 옛 명칭은 부성(釜城)이고 그 전의 옛 명칭은 연달(淵達)인데 그 이전의 명칭은 본래 전해오는 문적(文蹟)이 없어서 자세히 기록할 수 없다.

공해(公解)¹⁾

객사가 24칸이다. 내외가 3문(門) 6칸이다.

사직단이 1칸이다. 홍문(紅門)이 3개인데 해가 오래되어 썩고 상하였다.

여제단이 1칸이다.

기우제단(祈雨祭壇)이 6곳이다.

대성전²⁾이 9칸이다. 내외가 3문 6칸이다.

명륜당³⁾이 6칸이다. 동재(東齋)가 3칸이고 서재(西齋)가 3칸이다. 전사청⁴⁾이 12칸이다.

동헌⁵⁾이 15칸이다. 익랑⁶⁾이 41칸이고 서각(西閣)이 1칸이다.

내아⁷⁾가 23칸이다. 외랑(外廊)이 8칸이고 서각이 1칸이고 이목지중문(二木只中門)이 1칸이다.

1) 관가 소유의 건물

2) 대성전(大成殿) : 문묘 안에 공자의 위패를 모셔 놓은 전각

3) 명륜당(明倫堂) : 성균관·향교 안에서 유학을 강의하고 학습하던 곳.

4) 전사청(典祀廳) :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곳.

5) 동헌(東軒) : 고을 원이 공사를 처리하던 곳.

6) 익랑(翼廊) : 문의 좌우쪽에 잇대어 지은 행랑.

7) 내아(內衙) : 지방 관청의 안채.

책방(冊房)이 7칸 반이다. 서각이 1칸이다.

폐문루(廢門樓)가 6칸이다.

익랑이 9칸이다.

현사(縣司)가 7칸 반이다. 행랑이 6칸이다.

관청(官廳)이 8칸 반이다.

향청⁸⁾이 6칸이다. 행랑이 3칸 반이다. 장청⁹⁾이 8칸 반이다. 인리청¹⁰⁾이 14칸이다. 행랑이 12칸이다.

사창대청(司倉大廳)이 7칸 반이다. 창고가 15칸이고 사각문(四脚門)이 1칸이다.

사창¹¹⁾은 3곳인데 사환미¹²⁾가 원곡(元穀)으로 들어온 뒤 각기 그 면민(面民)들에게 방매(放賣)하여 줬다.

이상 공해가 190칸 이내이고, 신축(新築)이 188칸이고, 정집(正執)이 56칸이고, 보수한 것이 46칸이다. 공해 각처는 해가 오래되어 무너졌다. 경오년 봄에 현령 서광두(徐光斗)가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재물을 모아 중수하였는데 3년만에 공사를 마쳤다.

공해좌지전(公廩坐地田)

8일 경결¹³⁾의 면적인데 2결(結) 45부(負) 1속(束)이다.

방리(坊里)

읍내면(邑內面) 호구는 73호인데 남정¹⁴⁾이 75명이고, 여정(女丁)이 78명이다.

일북면(一北面) 호구는 154호인데 남정이 175명이고, 여정이 165명이다.

이북면(二北面) 호구는 143호인데 남정이 134명이고, 여정이 130명이다.

일서면(一西面) 호구는 123호인데 남정이 123명이고, 여정이 125명이다.

이서면(二西面) 호구는 177호인데 남정이 180명이고, 여정이 177명이다.

일탄면(一炭面) 호구는 133호인데 남정이 133명이고, 여정이 135명이다.

이탄면(二炭面) 호구는 136호인데 남정이 136명이고, 여정이 135명이다.

8) 향청(鄉廳) :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이 일을 보살피는 곳.

9) 장청(將廳) : 군야(郡衙)와 감영에 딸린 장교의 근무처.

10) 인리청(人吏廳) : 아전들이 사무를 보던 곳.

11) 사창(社倉) : 조선시대 환곡을 저장해 두던 각 고을의 창고

12) 사환미(社還米) : 각 고을에서 사창에 간직했다가 춘궁기인 봄철에 백성에게 꾸어주고, 추수기인 가을에 받아들이던 곡식.

13) 경결(耕結) : 경(耕)은 전답의 면적 단위인데, 농우(農牛)로 하루종일 갈 수 있는 전답의 면적. 약 1,200평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없다.

14) 남정(男丁) : 15세 이상의 장정(壯丁)이 된다.

마산면(馬山面) 호구는 144호인데 남정이 150명이고, 여정이 145명이다.
송장면(松庄面) 호구는 78호인데 남정이 80명이고, 여정이 78명이다.
여방면(余方面) 호구는 294호인데 남정이 310명이고, 여정이 305명이다.
병파면(丙坡面) 호구는 229호인데 남정이 230명이고, 여정이 229명이다.
성남면(城南面) 호구는 130호인데 남정이 130명이고, 여정이 128명이다.
고두면(古頭面) 호구는 269호인데 남정이 270명이고, 여정이 275명이다.
 이상 진위현이 관장하는 면은 13면이다. 각 동(洞)은 123동이고, 원호(元戶)는 2,083호이다. 남정은 2,126명이고, 여정은 2,106명이다.

도로(道路)

서울과는 북쪽으로 120리의 거리이고, 동쪽으로는 용인현과 70리의 거리이고, 남쪽으로는 충청도 평택현과 40리의 거리이고, 서쪽으로는 남양부와 70리의 거리이다. 북쪽으로는 수원부와 50리의 거리이고, 동남쪽으로는 양성현과 20리의 거리이다.

산천(山川)

무봉산은 북쪽으로 5리의 거리이다. 귀천(龜川)이 늪을 끼고 앞에 흐른다. 남쪽으로 1리의 거리이다. 송장면 조락산(鳥落山)은 남쪽으로 10리의 거리이다. 양성현 천덕산(天德山)은 동쪽으로 5리의 거리이다. 가내천(佳乃川)은 여방면에 있다. 남쪽으로 25리의 거리이다.

물산(物産) 붕어 · 향부자 · 계

교량(橋梁) 전천교량(前川橋梁)이 하나이고, 가내천교량(佳乃川橋梁)이 하나이다.

성지(城池) 없다.

형승(形勝)¹⁵⁾ 없다.

역원(驛院) 없다.

목장 없다.

관애(關陬)¹⁶⁾ 없다.

봉수(烽燧) 없다.

누정(樓亭) 없다.

15) 지세나 경치가 뛰어난 곳.

16) 국경의 경비.

도서(島嶼) 없다.

진공(進貢) 없다.

어염(魚鹽) 없다.

요역(搖役) 없다.

비판(碑板) 없다.

제언(堤堰)¹⁷⁾

마산에 가은산 양자(羊字)는 제79번째인데 서쪽을 범하고 있다.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4리의 경계이고, 둘레가 1060척이고 서쪽 길이는 422척, 넓이는 192척이다. 기사년부터 집복¹⁸⁾하여 세금을 낸다.

사밭동 성자(聖字)는 제64번째인데 남쪽을 범하고 있다.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의 거리이다. 둘레가 369척이고 남쪽 길이가 165척, 넓이가 117척이다. 병인년 서부터 모래가 덮여 쌓여 폐기되었다.

일북면 진가리 양자(陽字)는 제45번째인데 남쪽을 범하고 있다. 관문으로부터 10리의 거리이다. 둘레가 1741척이고 남쪽 길이가 528척, 넓이가 360척이다. 기사년부터 집복하여 세금을 낸다.

이북면 놀리 개자(芥字)는 제37번째인데 남쪽을 범하고 있다.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의 거리인데 둘레가 1782척이고 남쪽 길이가 400척, 넓이가 394척이다. 의창군(義昌君)이 절수하여¹⁹⁾ 논으로 만들었다.

이탄면 금각리 의자(宜字)는 제54번째인데 서쪽을 범하고 있다.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의 거리이다. 둘레가 2,463척이고 남쪽 길이가 580척이고 넓이가 292척이다. 병인년서부터 모래가 덮여 폐기되었다.

송장면 장애리(長涯里) 용자(容字)는 제49번째인데 서쪽을 범하고 있다.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의 거리이다. 둘레가 1,068척이고 서쪽 길이가 702척이고 넓이가 452척이다. 기사년에 나누어서 숙휘궁방(淑徽宮房)의 도장²⁰⁾ 최석천(崔石川)이 본사(本司)에 증정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여방면 영신 규자(規字)는 제4번째인데 동쪽을 범하고 있다.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30리의 거리이다. 둘레가 420척이고 동쪽 길이가 140척, 넓이가 140척이다. 기사년부터 집복하여 세금을 낸다.

17)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하여 흙과 돌로 쌓아 올린 둑.

18) 집복(執卜) : 농사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풍흉(豐凶)을 현장에서 조사하여 세금액수를 매기던 일.

19) 절수(折授) : 임금한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

20) 도장(導掌) : 조선시대 때 관둔전(官屯田)·궁둔전(宮屯田)을 관리하여 관청이나 궁정(宮廷)에 일정한 도조를 바치는 일을 맡았던 벼슬

원장부(元帳付) 전답(田畝)

모두 2,493결 92부 3속 이내이다. 밭이 1,275결 27부 이내이고 논이 1,218결 65부 3속 이내이다. 각 궁방의 면세전(免稅田)이 729결 97부 5속이고 면세답(免稅畝)이 377결 13부이다. 아록전이²¹⁾ 20결, 아록답(衙祿畝)이 20결이다. 공수위전(公須位田)이 1결 25부이고 공수위답(公須位畝)이 13결 75부이다. 인리복(人吏復)이 70결, 완릉복(緩陵復)이 103결 50부이다.

전세(田稅)

콩이 112석(石) 26승(升) 8홉(合)인데 돈으로 만들어 영문(營門)에 상납(上納)한다. 쌀이 215석 6두 9홉 2석(夕)인데 돈으로 만들어 영문에 상납한다.

포랑미(砲糧米) 95석 14두 5승 7홉 6작인데 심영에²²⁾ 상납한다.

대동미(大同米)²³⁾ 706석 12두 2승 5홉 8작인데 혜청에²⁴⁾ 낸다.

지공미(支供米)²⁵⁾ 150석인데 돈으로 바꿔 영문(營門)에 낸다.

영수미(營需米)²⁶⁾ 12석이다.

관수미(官需米) 100석이고 지지미(紙地米)가 16석이다.

결전(結錢)²⁷⁾ 800냥(兩) 4전(錢) 2푼(分)인데 혜청에 상납한다.

호포전(戶布錢) 1,618냥 6전인데 화영(華營)에 상납한다.

환자(還上)

호조의 원래 회부미(會付米)는 1,464석 12두 8승 6홉 6작이고 순영보폐미(巡營補弊米)는 132석 10두 9승 2홉 4작으로 쌀 합계가 1,597석 8두 7승 9홉인데 금년 봄

21) 아록전(衙祿田) : 조선시대 때 관청의 인건비 기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급한 토지. 농민들에게 경작을 시키고 조(租)를 받아들였다.

22) 심영(沈營) : 강화도에 설치하였던 병영(兵營)이다.

23) 조선시대 중기 이후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공물을 미곡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하던 납세미(納稅米).

24) 혜청(惠廳) : 선혜청(宣惠廳)의 약자임. 1608년(선조 41) 상평창(常平倉)을 개칭한 기관으로 대동법에 의한 대동미와 포(布)·전(錢)의 출납을 맡아 보았다. 이에는 각 지방 대동미의 출납을 위하여 8개의 지청(支廳)을 두었는데 경기청은 1608년(선조 41), 강원청은 1624년(인조 2), 호서청은 1652년(효종 3), 호남청은 1657년(효종 8), 영남청은 1677년(숙종 3), 해서청은 1708년(숙종 34)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상평청(常平廳)은 독립 관청이던 것을 1626년(인조 4)에 병합하였고, 비변사(備邊司)에 속했던 진휼청(賑恤廳)도 같은 해에 통합하였다. 그 후 업무의 증가에 따라 1753년(영조 29) 균역청(均役廳)을 다시 병합하였다가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다.

25) 각종 수용에 응하여 지변(支辨)하는 미곡

26) 군영(軍營)의 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납세미

27) 결작전(結作錢)의 줄임말. 조선시대 때의 세금임. 병역 의무의 대상(代賞)으로 받던 양포(良布)를 반으로 줄인 데서 생긴 국고(國庫)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751년(영조 27)에 전결(田結)의 부가세(附加稅)로 약간의 전(錢)을 덧붙여 결작전이라고 했다. 이것은 공해·관청·향교·서원·사찰의 부지(敷地) 및 적전(籍田)을 제외한 각 영(營)·각 아문(衙門), 각 궁방(宮房) 소속의 면세지에도 모두 부과하였다.

에 분급(分給)한다.

군기(軍器)

겸창(鎌創)이 5자루이고, 언월도(偃月刀)가 16자루이고, 환도(環刀)가 201자루이고, 삼혈포(三穴砲)가 10문(門)이고, 조총(鳥銃)이 45자루이고, 철환(鐵丸)이 137개이고 고초갑(藁草甲)이 50건(件)이고, 등룡철(燈籠鐵)이 5개이고, 철주(鐵冑)가 2개, 전죽(箭竹)이 20속(束), 기죽(旗竹)이 5자루, 나팔(囉叭)이 1쌍, 호적(呼笛)이 1쌍, 곤장(棍杖)이 1쌍, 영기(令旗)가 1쌍, 대쟁(大鍾)이 1좌(坐), 제금(啼金)이 1쌍 있다.

군병(軍兵)

화영(華營) 팔달대(八達隊)에 양인 553명, 노비 428명, 별효사자보(別驍士資保) 15명, 친군영포보(親軍營砲保) 43명이 있다.

식목(植木)

일북면에 400주(株), 이북면에 300주, 일서면에 200주, 이서면에 300주, 일탄면에 200주, 이탄면에 300주, 마산면에 400주, 송장면에 150주, 여방면에 500주, 병과면에 500주, 고두면에 300주, 성남면에 300주, 현내면에 500주, 도합 2,450주를 식목하였다.

관음(官廩)²⁸⁾ · 각종작입(各種作入)

수미(需米)는 삭에²⁹⁾ 9석 10두가 들어오는데 시장으로부터 바로 들어온다.

아록미(衙祿米)는 삭에 1석 12두 5승이 들어오는데 시장으로부터 곧바로 들어온다.

기화(其花)는 삭에 5두 4승 1홉 7석이 들어오는데 매 두(每斗)에 3전 5푼씩이다.

진말³⁰⁾은 삭에 5두 4승 1홉 7석이 들어오는데 매 두에 3전 1푼씩이다.

법유³¹⁾는 삭에 2두 6합 7석이 들어오는데 매 승(每升)에 4전씩이다.

진유³²⁾는 삭에 2두 7승 9석이 들어오는데 매 승에 6전씩이다.

청(淸)은 삭에 2두 6홉 7석이 들어오는데 매 승에 8전씩이다.

28) 조선시대 때 관리의 봉급.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했는데, 초기에는 실직(實職)에 따라 봄·여름·가을·겨울의 처음 달인 정월·4월·7월·10월에 주었다. 20대 경종 때부터는 매월 초하루에 앞당겨 주었다.

29) 삭(朔)은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

30) 진말(眞末) : 밀가루

31) 법유(法油) : 들기름

32) 진유(眞油) : 참기름

호도(胡桃)는 삭에 3점(貼) 50개가 들어오는데 매 집(集)에 3전씩이다.

홍시(紅柿)는 삭에 1점이 들어오는데 값이 5전이다. 밤은 3두 3승 3흡이 들어오는데 매 두(斗)에 5전씩이다.

대추는 삭에 3두 3승 3흡이 들어오는데 매 두(斗)에 5전씩이다.

석어(石魚)는 삭에 31숙(束) 3개가 들어오는데 매 숙(束)에 1전 8푼씩이다.

송어는 삭에 41급(級) 14마리가 들어오는데 매 급(級)에 3푼씩이다.

민어는 삭에 3미(尾) 2줄 들어오는데 매 미(每尾)에 2전씩이다.

난염(卵鹽)은 삭에 1승이 들어오는데 값이 5전이다.

백화염(白花鹽)은 삭에 2승 5흡이 들어오는데 매 승(升)에 1전씩이다.

간장(良醬)은 삭에 4두 3승이 들어오는데 매 승(升)에 3푼씩이다.

감장(甘醬)은 삭에 4두 1승이 들어오는데 매 승(升)에 2푼씩이다.

소주는 삭에 돈(斗)으로 3냥 3전 3푼 3리가 들어온다.

닭은 삭에 90수(首)가 들어오는데 매 수(首)에 2전씩이다.

정육(正肉)은 삭에 54근(斤)이 들어오는데 매 근(斤)에 1전씩이다.

백지(白紙)는 삭에 55숙(束)이 들어오는데 매 숙(束)에 3전씩이다.

남초³³⁾는 삭에 3근이 들어오는데 매 근(斤)에 3전씩이다.

마철³⁴⁾은 삭에 2부(部)가 들어오는데 매 부(部)에 2전씩이다.

황밀(黃蜜)은 삭에 3근 6냥 6전 7푼중(分重)이 들어오는데 매 근(斤)에 1냥씩이다.

탄(炭)은 삭에 1석(石)이 들어오는데 값이 5전이다.

경내농보(境內農洑)

장호천(長好川) 현 남쪽 2리에 있다. 그 물의 근원은 들인데 하나는 용인현 처인(處仁) 동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양지현(陽知縣) 서쪽에서 나온다. 객사 남쪽에서 합류하여 흐른다.

장호평보(長好坪洑) 현 동쪽 3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은 장호천에서 나온다. 현내면에 물을 댈다.

황승보(黃承洑) 현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온다. 마산면에 물을 댈다.

대야소보(大也所洑) 현 남쪽 2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온다. 일탄면과 이탄면에 물을 댈다.

신보(新洑) 현 서쪽 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온다. 이북면에 물

33) 남초(南草) : 담배

34) 마철(馬鐵) : 말굽에 붙이는 쇠조각. 편자라고 함.

을 댄다.

미시보(彌時漑) 현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온다. 이탄면에 물을 댄다.

금복보(金福漑) 현 서쪽 2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수원땅에서 나온다. 이서면에 물을 댄다.

금암보(金巖漑) 현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토현천(兔峴川)에서 나온다. 일서면에 물을 댄다.

통복보(通伏漑)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가내천(加乃川)에서 나온다. 성남면에 물을 댄다.

우두보(牛頭漑) 현 남쪽 25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가내천에서 나온다. 여방면에 물을 댄다.

백량보(白梁漑)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양성현 소사천(素沙川)에서 나온다. 병과면에 물을 댄다.

울성보(蔚城漑) 현 남쪽 35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사라천(沙羅川)에서 나온다. 성남면과 수원땅에 물을 댄다.

문묘(文廟)

오성위(五聖位)를 배향한다. 주자(周子)³⁵⁾ · 정자(程子)³⁶⁾ · 정자(程子)³⁷⁾ · 주자(朱子)³⁸⁾ · 동방홍문후(東方弘攸文侯)³⁹⁾ · 문창공(文昌公)⁴⁰⁾ · 문성공(文成公)⁴¹⁾ · 문충공(文忠公)⁴²⁾ · 본조(本朝)의 문헌공(文獻公)⁴³⁾ · 문원공(文元公)⁴⁴⁾ · 문경공(文敬公)⁴⁵⁾ · 문정공(文正公)⁴⁶⁾ · 문순공(文純公)⁴⁷⁾ · 문성공(文成公)⁴⁸⁾ · 문간공(文簡公)⁴⁹⁾ · 신증(新

35) 주돈이(周敦頤) : 중국 북송(北宋)의 유학자

36) 정호(程顥) : 중국 북송의 유학자

37) 정이(程頤) : 중국 북송의 유학자

38) 주희(朱熹) : 중국 남송(南宋)의 유학자

39) 설총(薛聰) : 신라 3대 문장가(강수 · 설총 · 최치원) 중의 하나로 이두를 만들었다. 원효의 아들로 경주설씨의 시조이다.

40) 최치원(崔致遠) : 신라말의 대학자로 경주최씨의 시조이다.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문명(文名)을 크게 떨쳤다. 『계원필경』 등의 문집이 전해진다.

41) 안향(安珦) : 고려 충렬왕 때 활약한 인물로 우리 나라 최초의 성리학자이다.

42) 정몽주(鄭夢周) : 고려말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43) 정여창(鄭汝昌) : 성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성리학의 대가이다. 김종직의 문인(門人)으로 무오사화로 유배되었다. 광해군 때 문묘에 배향되었다.

44) 이언적(李彦迪) : 조선 중종대의 문신이며 학자. 광해군 때 문묘에 배향되었다.

45) 김굉필(金宏弼)

46) 조광조(趙光祖)

47) 이황(李滉) :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호는 퇴계.

48) 이이(李珣) :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호는 율곡.

49) 성혼(成渾) :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增)의 문렬공(文烈公)⁵⁰⁾ · 문경공(文敬公)⁵¹⁾ 등 모두 22위(位)⁵²⁾이다.

역원(驛院)

장호원 · 이방원 · 갈원 신증 진위현 역원조와 같다.

백현원(白峴院) 일명 회도원(喜到院)이라고 하는데 현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맹사성(孟思誠)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여기에 도착하여 녹사(錄事)와 공당(公堂)에서 문답하였다.

이상의 여러 원은 승람(勝覽)에 실려 있으나 무너진지 오래되어 단지 터만 남아있다.

고적(古跡)

영신부곡 신증에는 영신평현 · 송장부곡 · 천장부곡 : 신증 진위현 고적조와 같다.

조산(造山) 현 남문리(南門里)에 있다. 대개 현 터의 남쪽이 허술하여 이를 쌓았다고 한다.

인침담(印沈潭) 현 남쪽 10리 일탄면에 있다. 지금은 없어져 논으로 되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맹사성이 온양(溫陽)에 살고 있었는데, 의정(議政)으로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상경할 때 고을 원님들이 이곳에서 오래 기다렸다. 몹시 기다려도 오지를 앓았다. 갑자기 한 노인이 소를 타고 지나가자 앞에 있던 아전과 군졸들이 소에서 내리라고 꾸짖자 노인이 말하기를, “온양의 맹고불(孟古佛)이 지나간다. 진실로 여기에 있는 모든 원님들을 알고 있으나 내릴 수가 없다”고 하자 모든 원님들이 비로소 맹사성이 행차함을 알고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중에 인신(印信)이 못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인침담이라고 부른다.

모정령(茅亭嶺) 현 남쪽 10리에 있다. 장호천 하류 남쪽 3리이고, 서연(鋤淵) 남쪽 2리이고, 조락산(鳥樂山) 북쪽 4리이다. 용성군(龍城君) 최자반(崔子泮)이 모정(茅亭)을 창건하였다. 매일 원정(猿亭) 최수성(崔壽城)과 놀던 곳이다. 예전에 모정에는 「피풀로 엮은 처마끝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드리워져, 쳐다보면 능히 잡아 당길 수 있다」는 글이 있었다.

원정령(猿亭嶺) 현 서쪽 11리 지점에 있다. 동쪽으로는 모정령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항낭교(項囊橋)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조락산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장호천과 접한다. 최수성이 최자반과 함께 여기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던 곳이다.

50) 조헌(趙憲) : 조선 중기의 학자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51) 김집(金集) : 조선 인조 때의 문신이며 학자.

52) 위의 인물 외에 22위에 배향된 사람은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俊吉)이다.

원천(猿泉) 원정령 북쪽 산기슭에 있는데 샘물이 솟아 나온다. 최수성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푸른 원숭이가 스스로 나와 벼루를 바쳤다. 지금도 여전히 옛 샘이 있다.

최유림묘(崔有臨墓) 현 남쪽 10리에 있다. 무과에 급제하고 적개공신⁵³⁾에 참여하여 수성군(隨城君)에 책봉되었다. 병조판서를 추증하였고 시호⁵⁴⁾는 안양공(安襄公)이다.

최윤신묘(崔潤身墓) 현 남쪽 10리에 있다.

최수성묘 현 서쪽 13리에 있다.

이세준묘(李世俊墓) 현 남쪽 5리에 있다.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의 5대조이다.

이연손묘(李延孫墓) 현 북쪽 7리 떨어진 무봉산 아래 기슭에 있다.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의 고조(高祖)이다.

소흠묘(蘇滄墓) 현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원균묘(元均墓) 현 남쪽 16리 지점에 있다. 무과에 급제하였다. 정유년(1597년)에 이순신(李舜臣)을 대신하여 통제사(統制使)가 되었다. 여러 번 큰 공을 세웠으나 가덕도(嘉德島)에서 전사하였다. 선무공신(宣武功臣) 일등(一等)에 등록되었다. 좌찬성⁵⁵⁾을 추증하고 원릉군(原陵君)에 책봉되었다.

이성부묘(李聖符墓) 현 남쪽 16리 지점에 있다.

원사립묘(元士立墓) 현 남쪽 16리 지점에 있다. 정유년 이후 왜적이 서천(舒川)과 한산(韓山) 사이에 주둔하자 조정에서는 사립을 서천군수(舒川郡守)로 삼았다. 여러 번 적을 위협하는 공을 세워 진주목사(晉州牧使)에 승격되었다.

이준묘(李濬墓) 현 남쪽 15리에 있다. 월천군(月川君) 정암(廷淹)의 셋째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월천군을 따라 연안(延安)에 있을 때 성이 포위되자 방략(方略)을 많이 세웠다. 조정에서 큰 공으로 논(論)하였으나 진실로 사양하고 연안에 살지 않았다. 직장⁵⁶⁾으로서 일찍 죽었다.

성씨(姓氏)

본현은 김·이·유(柳)·최·송씨이고, 영신리는 김·최·오·황·이씨이고 송장은 이·유(柳)씨이다.

53) 적개공신(敵愾功臣) :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신에게 준 훈호(勳號).

54) 시호(諡號) : 국가에서 죽은 사람에게 그 생전의 행적에 의하여 주는 호(號). 조선시대에 종친(宗親)과 문·무관 정2품 이상에게 주었다. 시호를 받을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먼저 자기들이 선정한 행장(行狀)을 예조에 낸다. 예조는 봉상시(奉常寺)에 전하며, 다시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봉상시의 정(正)과 홍문관의 응교(應教)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시호를 정하여 준다. 이 제도는 후에 현신(賢臣)·명유(名儒)·절신(節臣)들에게까지 적용되었다.

55) 좌찬성(左贊成) : 의정부의 정1품 벼슬

56) 직장(直長) : 종7품관으로서 의금부(義禁府)·상서원(尙瑞院)을 비롯한 30개 중앙부서에 있다.

인물(人物)

사과⁵⁷⁾ 우례순(禹禮舜)의 처 임씨(任氏) 불한당이 갑자기 그 남편에게 뛰어들어 미쳐 달아나 피하지 못하였다. 모든 불한당들이 예순에게 향하여 덮치려 하자 몸을 날개처럼 펴서 남편의 위를 가리고 서슬퍼런 칼날을 감수(甘受)하였으므로 한 조각의 온전한 살갓도 없이 죽었고 예순은 부인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 나라에서 정표(旌表)하였다.

사노(私奴) 언룡(彦龍)의 처 양녀(良女) 설애상(薛愛常) 병자호란 때 언룡이 병이 나서 움막에 나가 있었는데, 적의 기병이 갑자기 다다랐다. 애상은 자기 남편을 염려하였으나 병으로 걸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온전하기가 어려워 자신이 움막 문을 지키고 앉았다. 그 사이 남편은 움막 뒤쪽으로 도망쳐 숨었으므로 살아날 수가 있었다. 적들이 부인을 끝내 더럽히고 욕되게 하려고 하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끝내 듣지 않았다. 마침내 어지럽게 찢려 죽었다. 조정에 알려져 정표하였다.

학생(學生) 홍복성(洪復性)의 처 이씨(李氏) 병자호란 때 복성이 포로가 되어 해를 만나게 되려 하자 부인이 앞장서 나아가 적에게 달려들다가 죽었다. 조정에 알려져 정표하였다.

하리(下吏) 최응수(崔應守) 향교 아래에 살았는데 병자호란 때 적이 향교에 들어와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 때 응수가 앞장서 들어가 위판⁵⁸⁾을 지고 나와 깨끗한 곳에 보관하였다. 난리가 끝난 후 두어칸을 지어 위판을 모셔와 봉안하였다. 현령 남두극(南斗極)이 재물과 질기와의를 모아 고쳐 지었는데 순치(順治) 원년(1644)에 완성하지 못하고 교체되었다. 현령 이산뢰(李山賚)가 이어 받아 정해년에 전(殿)·재(齋)·당(堂)·부엌·창고·문호(門戶)를 지었다. 동·서무(東西廡)가 하나도 없어 전내(殿內)에 벽으로 갈라 막아 제현(諸賢)과 최응수를 배향하였는데, 성현(聖賢)을 사모하는 마음이 특히 더하였다. 모든 향교의 사람들이 관청에 품고(稟告)하고 전보⁵⁹⁾하였다. 이에 입계⁶⁰⁾하여 복호⁶¹⁾로 삼고 5결을 주어 자손들이 천역(賤役)을 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 후 자손들이 그 계하⁶²⁾의 문서를 잃어버려 복호를 얻지 못하였다. 교궁⁶³⁾에서 쓰던 번포⁶⁴⁾가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다.

57) 사과(司果) : 조선시대 때 오위(五衛)에 딸린 정6품의 관직.

58) 위판(位版) : 위패(位牌)를 말함. 단(壇)·묘(廟)·원(院)·절(寺)에 모시는 신주의 이름을 적은 나무임.

59) 전보(轉報) : 남에게 부탁하여 소식을 알림.

60) 입계(入啓) : 임금에게 상주하는 글월을 올림.

61) 복호(復戶) : 충신이나 효자들에게 부역을 면하여 주던 일

62)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음.

63) 교궁(校宮) : 각 고을에 있는 문묘·향교.

64) 번포(膾脯) : 제육(祭肉)과 포. 제사 때 쓰는 제물(祭物)임.

양인(良人) 박충립(朴忠立) 나이 겨우 5, 6세 때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그 어머니는 몸을 지켜 혼자서 평생을 살면서 고기(肉)를 생각하지 않았다. 충립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시기를 지극한 효도로써 하였고 무릇 공양하는 물건은 어육(魚肉)을 서로 섞어쓰지 않았다. 그 어머니의 향년이 80여세가 되었을 때에는 더욱 효도로 섬기는 정성을 돈독히 하였다. 계축년 겨울에 충립이 이웃집에 갔을 때 집안 사람이 실수하여 불이 났다. 그 불을 보고 급히 와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니 연로하여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 하자 뛰쳐 들어 갔으나 그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또 하고, 세번째에 이르러서는 끝내 나오지 아니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집을 헐어 불을 끄고 보니 충립이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엎드린 채로 온 몸이 불에 타 죽었다. 그 어머니는 며칠 더 살 수 있었다. 그 효성으로 말한다면 고인(古人)을 따를 사람이 없고 정표에 이르러서는 이런 종류에 미칠 사람이 없다.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

우빈(禹濱) 내금위(內禁衛)로서 임진년에 국전망어사(國戰亡御史)가 되었다. 계문(啓聞)하여 역(役)을 덜고 복호가 되었다.

학생(學生) 이홍석(李弘奭)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여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게 하여 병이 나았다. 이에 이우고 그 몸이 복호가 되었다.

조정암(趙靜菴)⁶⁵⁾ 선생은 일찍이 송장면에 우거(寓居)하였는데, 지금도 옛 터가 있고 또 선묘(先墓)도 있다.

최수성 일탄면 제역동(除役洞)에 우거하였다. 공의 자는 가진(可鎭)이고 호는 원정(猿亭)이다. 강릉인(江陵人)이다. 어려서부터 의기(義氣)가 남달랐고 총명함이 뛰어나다. 한훤당(寒暄堂)⁶⁶⁾에게서 잠심의리의 학(潛心義理之學)을 수업받았고 정암선생과 도의(道義)의 교류를 하면서 소묘하였다. 여러 차례 불렀으나 병들어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버렸다. 또한 남곤(南袞)⁶⁷⁾의 간사함을 알고 있었다.

황효원(黃孝源) 남산군(南山君)에 책봉되었고 관직이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그 별장이 본현 영신면에 있어서 항상 왕래하였다. 천순(天順) 4년(1460)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되어 이곳에 도착하였다. 본현이 쇠잔하여 관노비와 지대⁶⁸⁾가 없어 모

65) 조광조(趙光祖, 1482~1519)임. 조선시대 11대 중종 때의 성리학자. 정치가.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 본은 한양. 도덕파(道德派)의 우두머리. 관직은 부제학·대사헌(大司憲)에 이르는. 도덕적 이상 정치를 꾀하다가 원로들과 충돌하여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로 능주(綾州)로 귀양갔다가 38세 때에 남곤(南袞) 일파에게 몰리어 처형됨. 시호는 문정(文正).

66)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말함. 조선시대 9대 성종 때의 문신·학자. 자는 대유(大猷), 호는 사옹(養翁)·한훤당. 본은 서흥(瑞興). 김종직의 문하생. 관직이 형조좌랑(刑曹佐郎)에 이르는.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에 관련되어 유배되었다가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 때 처형됨.

67) 남곤(1471~1527). 조선시대 11대 중종 때의 문신. 자는 사화(士華), 호는 지정(止亭)·지족당(知足堂). 본은 의령(宜寧). 김종직(金宗直)의 문인. 성종 25년(1494) 문과에 급제, 대사헌·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는.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 등 여러 사람(士林) 출신 소장파를 없앴.

든 일을 전부 촌민이 하였다. 이를 본 효원이 민망하게 여겨 해남(海南)에 있는 자기의 노비 26명을 배에 싣고 와서 본현에 두어 영구히 관노비로 삼았다. 후에 대신이 아뢰어 임금으로부터 특별히 복호와 60결을 포상으로 주어 장려하였다. 자손들이 장토(莊土)에 산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 알 수 없다.

풍속(風俗)

재예(才藝), 즉 무(武)는 많으나 문(文)은 적다. 사람들이 오로지 농사에 힘쓰고 말업(末業)인 상고(商賈)와 공장(工匠)을 섬기지 않아 매우 드물다.

68) 지대(支待) : 나라 일로 지방에 나가는 관리의 모든 비용을 그 지방 관청에서 대어 주던 일.

진위현(振威縣)—1899년 진위읍지*

진위군 읍지

광무(光武) 3년(1899) 경기도 진위군(振威郡) 읍지(邑誌)

사방도로(四方道路) ※1891년 진위읍지 도로조와 같다.

읍명고호(邑名古號) 연달·부성이다.

진관(鎭管) 남양부이다.

호총(戶摠)

현내면(縣內面)은 121호인데 사방이 3리이다.

일북면은 162호인데 북쪽으로 10리 거리이다.

이북면은 153호인데 북쪽으로 5리 거리이다.

일서면은 142호인데 서쪽으로 10리 거리이다.

이서면은 204호인데 서쪽으로 20리 거리이다.

일탄면은 156호인데 남쪽으로 10리 거리이다.

이탄면은 144호인데 서쪽으로 20리 거리이다.

마산면은 140호인데 동쪽으로 10리 거리이다.

송장면은 75호인데 남쪽으로 10리 거리이다.

여방면은 336호인데 남쪽으로 25리 거리이다.

병파면은 206호인데 남쪽으로 30리 거리이다.

성남면은 123호인데 남쪽으로 30리 거리이다.

고두면은 294호인데 남쪽으로 30리 거리이다. 이상 2,256호이다.

결총(結摠)

원 장부의 전답이 2,493결 92부 3속이다. 여러 가지 잡경(雜耕)이 769결 84부 6속이다. 매년 일어나는 허결¹⁾이 169결 38부 7속이다. 매해 경작되는 백성의 결(結) 가운

*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이 있는데, 손실된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 원래 내용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1) 허결(虛結) : 허복(虛卜)임.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땅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공연히 물리는 구실.

데 매 결(每結) 당 12부 8속씩 덧붙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갑술년 태봉²⁾행차 때 민폐를 염려하여 정부가 계문³⁾하여 세금을 정지하였다. 여러 가지 면세지는 36결 50부 2속이다. 그러므로 실결(實結)은 1,518결 18부 8속이다. 그런데 을미년에 조사한 은결⁴⁾(隱結)이 44결 51부 6속이므로 도합 결수는 1,562결 70부 4속이다.

환총(還摠)

사환미(社還米) 1백석, 여방면 모곡리(茅谷里), 일탄면 신장리(新場里), 이서면 도도리(道道里)에 각각 새로 사창(社倉)을 짓고 조적(糶糶)의 조절은 장정(章程)에 의거하여 해당 사창의 우두머리가 주관하여 거행한다.

군총(軍摠)

총리영(摠理營) 팔달대(八達隊)가 981명 양인이 553명, 노비가 428명이다. 이고, 정초군(精抄軍)은 3초(三哨)인데 381명 좌사우초군은 양인이 127명이고, 후초군(後哨軍)은 양인이 127명이고 중사후초군은 양인이 127명이다. 이고, 별중사(別中司) 전초군노(前哨軍奴)는 120명이고 우초군노(右哨軍奴)는 50명이다. 난후아병(攔後牙兵)은 양인이 48명이고, 별효사(別驍士) 자보군(資保軍)이 15명이다. 훈련도감⁵⁾은 포보(砲保)로써 양인이 40명이고 군향보(軍餉保)로써 양인이 3명이다. 이상 1,638명인데 양군(良軍)이 1,025명 이내, 노군(奴軍)이 598명, 자보(資保)가 15명이다.

아사(衙舍) 현내면에 있다. 객사 현내면에 있다. 사직단⁶⁾ 현 동쪽 1리에 있다.

향교 현 동쪽 1리에 있다. 여단 현 서쪽 2리에 있다. 성황단 현 북쪽 1리에 있다.

창고 · 사창 현에 있다. 세창(稅倉) 현 남쪽 고두면 30리 지점에 있는데 무너졌다.

산천

무봉산 현 북쪽 5리 지점에 있다. 용인 부아산(負兒山)으로부터 나오는데 현의 주봉(主峯)이다. 수원부가 바라보인다. 천덕산(天德山) 일명 달악산(達岳山)이라고 하는데 현 동쪽 7리에 있다. 양성현이 바라보인다. 부락산(負樂山) 현 남쪽 15리 지점

2) 태봉(胎封) : 왕실의 태를 묻음. 또는 그 묻은 곳.

3) 계문(啓聞) : 임금이나 제후에게 알림.

4) 은결(隱結) : 조선시대 조세의 부과 대상에서 불법적으로 누락시킨 토지. 토지의 소유자나 경작자가 은결하는 경우 외에도 조세를 관리하던 관리들이 부정으로 은결시켜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5) 훈련도감(訓練都監) : 조선시대 때 5군영의 하나. 수도 수비의 책임을 맡았으며 군사훈련을 하였던 곳으로 훈국(訓局)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때 오위(五衛)의 군제가 무너지면서 생긴 것인데, 1593년(선조 26) 명나라의 장군인 낙상지(駱尚志)의 소청으로 신설. 포수(砲手) · 살수(殺手) · 사수(射手)의 3수군(三手軍)을 양성하였다. 1881년 군제개혁으로 별기군(別技軍)을 설치할 때까지 존속했으며,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6) 사직단(社稷壇) :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에 제사하던 제단

에 있다. 충청도 평택현이 바라보인다. **귀천** 일명 장호천이라 하는데 현 동쪽 2리 지점에 있다. 그 물의 근원은 둘인데, 하나는 용인땅에서 나오고 하나는 양지땅에서 나온다. 현의 남쪽 대로(大路)를 경유하여 합류된 뒤 한 내가 된다. **불천(佛川)** 현의 서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물의 근원이 수원땅에서부터 시작되어 황구포(黃口浦)로 흘러내려 간다. **토현천(兔峴川)** 현의 서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물의 근원이 수원땅으로부터 시작된다.

월포(越浦)

군문포(軍門浦)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대로가 충청도 평택현으로 통한다.

황구포 예전에는 항곶포(項串浦)라고 하였다. 현 서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수원 경계로 통한다.

해창포(海倉浦)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소로(小路)가 수원과 평택 경계로 통한다.

고잔포(古棧浦)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소로가 평택 경계로 통한다.

제언(堤堰)

사밭동언(沙鉢洞堰) 현 동쪽 10리 마산면 상리에 있는데 지금은 물이 말라 독을 허물었다.

가은산언(加隱山堰) 현 남쪽 3리 마산면 방축동에 있는데 물이 말라 독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스스로 논을 만들었다.

진가리언(眞加里堰) 현 북쪽 10리 일북면 청호리에 있는데 물이 말라 독을 무너뜨려 백성들이 스스로 논을 만들었다.

놀리언(訥里堰) 현 서쪽 5리 이북면 후북리에 있는데 물이 말라 독을 허물었다. 인조 갑신년에 숭선군방(崇善君房)에 사급(賜給)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금각언(金角堰) 현 서쪽 20리 이탄면 황구포에 있는데 물이 말라 독을 허물었다.

축보(築洑) ※1891년 진위읍지 경내농보(境內農洑)와 같다.

역원(驛院) ※1891년 진위읍지와 같다.

성지(城池)

- 7) 성첩(城堞) :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이 담에 몸을 숨기고 적을 치거나 쏜.
 8) 첨사(僉使) : 조선시대 때 각 진영(鎭營)에 속했던 무관직. 첨절제사(僉節制使)라고도 함. 절도사(節度使)의 아래로 병영(兵營)에는 병마(兵馬)첨절제사, 수영(水營)에는 수군첨절제사가 있었다. 병마첨절제사는 1409년(태종 9)에 설치했으며, 수군첨절제사는 1466년(세조 12)에 도만호(都萬戶)를 개칭한 것인데 목(牧)·부(府)에는 수령이 겸임하였으나 전문적인 무관을 두는 곳도 있다. 이들은 종3품관직을 원칙으로 하였다.

부성(釜城) 현 서쪽 3리 지점에 있는데 둘레가 1리를 넘지 못한다. 성첩⁹⁾은 이미 허물어졌다. 고려 때 읍의 터였다. 관(官)은 첨사¹⁰⁾라 한다.

충현묘소(忠賢墓所) ※1891년 진위읍지 고적조와 같다.

충효열인(忠孝烈人) ※1891년 진위읍지 인물조와 같다.

고적(古跡) ※1891년 진위읍지 고적조 및 인물조와 같다.

사찰(寺刹) 만기사(萬奇寺) 현 북쪽 5리 무봉산 남쪽 산기슭에 있다.

기우제단(祈雨祭壇)

사단(社壇) 현 동쪽 1리 지점에 있다. 구사단(舊社壇) 현 서쪽 1리 지점에 있다.

무봉산 현 북쪽 5리 지점에 있다. 귀천 현 동쪽 2리 지점에 있다.

서천(鋤川) 현 서쪽 7리 지점에 있다.

장시 읍장(邑場) 현내면에 있는데 매월 1일과 6일에 열린다.

점막(店幕)⁹⁾

읍내점(邑內店) 홍문 앞에 있다. 청호점(淸湖店) 현 10리 일북면에 있는데 본현의 처음 경계와 수원의 마지막 경계에 있다. 견산점(見山店) 현 북쪽 2리 이북면에 있다. 신계점(新堤店) 현 남쪽 2리 마산면에 있다. 우곡점(牛谷店) 현 남쪽 10리 마산면에 있다. 갈원점(葛院店) 현 남쪽 20리 여방면에 있다. 이상의 6개 점은 길이 삼남(三南)으로 통한다. 통복점(通伏店) 현 남쪽 25리 병파면에 있는데 갈원으로부터 갈림길이 평택현으로 통한다.

관직(官職)

현령 1명 종5품인데 문관·읍관¹⁰⁾·무관이 교대로 임명된다.

좌수¹¹⁾ 1명·별감¹²⁾ 2명·장교¹³⁾ 10명·아전¹⁴⁾ 18명·지인¹⁵⁾ 8명·사령¹⁶⁾ 12명·관노¹⁷⁾ 15명·관비¹⁸⁾ 11명을 두었다.

9) 음식을 팔기도 하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것으로 업을 삼는 집.

10) 읍관(蔭官) : 읍서(蔭叙)에 의해 채용된 관리. 읍서는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堂上官)의 자손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 이와 같이 문음(門蔭)으로 채용되어 벼슬하는 관원을 읍관(蔭官) 또는 남행관(南行官)이라고 불렀다. 고려 때부터 이미 읍서는 있었고, 조선시대에서도 답습되었다. 조선시대 때 읍자제(蔭子弟)의 등용시험은 매년 정월에 있었고, 공신과 2품 이상인 자의 아들·손자·사위·아우·조카, 3품인 자의 아들·손자, 이조·병조·도총부(都總府)·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부장(部長) 및 선전관(宣傳官) 등의 읍직(蔭職)을 역임한 자의 아들로 20세 이상인 자는 간단한 시험에 의하여 실직(實職)에 임용하였다.

토산(土産) 붕어·계·생지황·향부자·금은화¹⁹⁾

풍속(風俗)

민예(民藝)와 무(武)는 많은데 문(文)은 적다. 농사에 힘쓰고 상업은 적다.

목장은 없다. 사복시²⁰⁾가 말 1필을 분양하여 준다. 매년 7월 서울에 올려 보내고 다시 받아온다. 성곽은 없다. 봉수는 없다.

제영(題詠)

단청한 외양을 보니 비록 새로우나 丹雘外看雖一新
안을 보니 옛날에 왔을 때와 같네 內瞻恍若昔臨辰
먼저 행했었는데 오늘도 이 방에 머무니 何幸今時宿此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 몇 년이나 지났나 追惟往歲幾年春

객사에 드니 옛 감회가 깊고 軒中惟古興懷深
달빛 아래 난간에 기대 옛일을 회상하네 月夜憑欄只憶昔
경치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들뜨게 하나 物色其何倍我心
매달린 등불을 멀리서 보니 저녁등불 같구나 懸燈遙望若燈夕

경오년 늦은 가을에 짓다 歲庚午暮秋書

이는 영조께서 온양에 행차하실 때 남긴 글이라고 한다.
此是 英宗祖溫陽 幸行時 遺筆云

-
- 11) 좌수(座首) : 조선시대 때 향소(鄉所)의 벼슬. 향소의 향사(鄉士) 중 나이가 가장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좌수라 하여 향사가 선거.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2년으로 수령이 바뀔 때에는 개선할 수도 있었다. 향소도 역시 6방(房)으로 분류, 좌수는 이방(吏房)·병방(兵房)을 맡아 보았다.
 - 12) 별감(別監) : 조선시대 때 궁중의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관직. 임금을 직접 모시는 대전별감(大殿別監)·중궁전(中宮殿) 별감·세자궁(世子宮) 별감·처소별감 등으로 구분된다. 임금이나 세자가 행차하면 어가(御駕) 앞에서 시위했다.
 - 13) 장교(將校) : 조선시대 때 각 군영에 속했던 군관(軍官). 권무군관(權務軍官)·별군관(別軍官)·지구관(知穀官)·기패관(旗牌官)·별무사(別武士)·교련관(敎鍊官)·별기위(別旗衛) 및 지방관청의 군무에 종사하던 속역(屬役)을 총칭하여 장교라 하였음.
 - 14) 아전(衙前) : 중앙과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관청에 속해있던 하급관리. 일명 인리(人吏) 또는 서리(胥吏)라 함. 군수 등 지방 수령이 집무하는 정청(正廳)의 바로 앞에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전이라는 이름이 생겼음.
 - 15) 지인(知印) : 조선시대 때의 토관직. 지방관의 관인(官印)을 보관·날인(捺印)하는 일을 맡아 보던 밑종의 향리이다.
 - 16) 사령(使令) : 조선시대 관청에서 심부름하던 하인
 - 17) 관노(官奴) : 관가에 딸린 사내 종. 여러 가지 부역이나 생산에 종사했음.
 - 18) 관비(官婢) : 관가에 딸린 여자 종.
 - 19) 금은화(金銀花) : 인동덩굴의 꽃. 한약재로 씀.
 - 20) 사복시(司僕寺) : 고려와 조선시대 때 궁중의 수레·말·목장 등을 맡아 보던 관청

평택현(平澤縣)—신증동국여지승람

동쪽으로 직산현 경계까지 10리요, 남쪽으로는 아산현 경계까지 8리이며, 천안군(天安郡) 경계까지 12리요, 서쪽으로는 경기 수원부 경계까지 20리이며, 북쪽으로도 역시 수원부 경계까지 10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1백 24리이다.

건치연혁

옛날 하팔현(河八縣)이다. 고려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천안부에 예속시켰다. 뒤에 감목(監牧)을 두었었는데, 조선 태종 13년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관원

현감·훈도 각 1명.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경기도 이속(移屬)시킨 것을 중종 초에 다시 이전대로 환원하였다.

군명

하팔

성씨

본현 이·임(林)·박·전(田)·손·전(全)·박 : 촌성이다.

산천

성산(城山) 현 북쪽 1리 지점에 있다. 오을미곶포(吾乙未串浦) 현 북쪽 10리 지점에 있다. 시포(市浦) 현 남쪽 11리 지점 아산현 경계에 있다. 신덕포(新德浦) 현 서쪽 5리 지점에 있다.

토산

붕어·승어·지황

평택현(平澤縣) — 여지도서(輿地圖書)

평택현(平澤縣)

홍주(洪州) 진관(鎭管)¹⁾에 속한다.

동쪽으로는 직산, 서쪽으로는 수원과의 경계에 이르는데 15리이다. 남쪽으로는 아산, 북쪽으로는 진위와의 경계에 이르는데 10리이다. 북쪽으로 서울까지의 거리는 1백 60리로 하루 반 정도 걸리며, 남쪽으로 감영(監營)²⁾까지의 거리는 1백 40리로 하루 반 정도 걸린다. 동쪽으로 병영(兵營)³⁾까지의 거리는 1백 40리로 하루 반 정도 걸리며 남쪽으로 수영(水營)⁴⁾까지의 거리는 2백리로 이틀 정도 걸린다. 서쪽으로 곤지포(昆池浦)까지의 거리는 8리쯤 된다.

방리(坊里)

읍내면(邑內面)

향교리(鄉校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民戶)는 21호이다. 남자는 35구(口)이며, 여자는 45구이다.

대정리(大井里) 관아의 앞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83호이다. 남자는 1백 81구이며 여자는 1백 73구이다.

객사리(客舍里)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73호이다. 남자는 1백 36구이며 여자는 1백 21구이다.

빙고리(氷庫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1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12호이다. 남자는 25구이며 여자는 23구이다.

1) 진관(鎭管)은 조선시대의 주요 군사기지로써의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군사조직단위를 가리킨다. 중심 고을의 수령이 거진의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가 되어 그에 나누어 소속된 주변의 고을, 즉 제진(諸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명령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같은 진관체제는 조선의 지방군사제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지방장관인 감사, 즉 관찰사가 머무는 곳으로 충청도의 감영은 공주에 있었다.

3) 지방 육군의 책임자인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머무는 곳으로, 충청도의 병영은 청주에 있었다.

4) 지방 수군의 책임자인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머무는 곳으로, 충청도의 수영은 보령(保寧)에 있었다.

남자는 71구이며 여자는 86구이다.

서근보(鋤斤淤)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8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35호이다. 남자는 52구이며 여자는 52구이다.

노산상리(老山上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19호이다. 남자는 34구이며 여자는 41구이다.

노산중리(老山中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25호이다. 남자는 32구이며 여자는 34구이다.

노산하리(老山下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2백 23호이다. 남자는 6백 82구이며 여자는 6백 73구이다.

신포리(新浦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포구를 넘어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33호이다. 남자는 41구이며 여자는 50구이다.

서면(西面)

경정리(鯨井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18호이다. 남자는 23구이며 여자는 27구이다.

대추리(大秋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12호이다. 남자는 21구이며 여자는 25구이다.

동창리(東倉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8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16호이다. 남자는 31구이며 여자는 33구이다.

내리(內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54호이다. 남자는 96구이며 여자는 1백 11구이다.

염정리(鹽井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19호이다. 남자는 32구이며 여자는 35구이다.

야리(野里)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포구를 넘어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20호이다. 남자는 40구이며 여자는 45구이다.

북면(北面)

근내동(近乃洞)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4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52호이다. 남자는 1백 15구이며 여자는 97구이다.

원정리(院井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5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53호이다. 남자는 91구이며 여자는 93구이다.

작정리(鵲井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5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14호이다. 남자는 24구이며 여자는 25구이다.

흑석리(黑石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6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93호이다. 남자는 1백 41구이며 여자는 1백 71구이다.

신리(新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5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29호이다. 남자는 40구이며 여자는 59구이다.

야리(野里)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5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21호이다. 남자는 31구이며 여자는 38구이다.

소북면(小北面)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포구를 넘어 10리이다. 호적에 편입된 민호는 67호이다. 남자는 1백 2구이며 여자는 1백 26구이다. 이 면은 단지 1개 리 뿐으로 포구 사이에 두고 떨어져있다. 진흙이 모여 육지가 만들어진 곳으로 본래 샘이나 우물이 없다. 땅을 파서 물을 저장하여 마신다.

이상 원호(元戶)가 1천 3백 95호에 남자가 2천 8백 38구이고 여자가 2천 8백 83구이다. 기묘년(己卯年, 1759년)의 장적(帳籍)⁵⁾에 의거했다.

도로(道路)

동대로(東大路) 직산과의 경계에 있는 맹간교(盲看橋)로부터 시작하는데, 관아까지 7리이다. 아산과의 경계에서 그치는데,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5리이다.

남대로(南大路) 관아에서 시작해 아산과의 경계에 있는 고사봉로(高寺峯路)에 이어진다.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7리이다.

서소로(西小路) 관아에서 시작해 수원과의 경계에 있는 곤지진로(昆池津路)에 이어진다.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0리이다.

북소로(北小路) 진위와의 경계에 있는 병파면로(丙破面路)로부터 시작해 관문로(官門路)에 이어진다. 북쪽으로 7리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

고려 때 양광도(楊廣道)에 속했는데, 곧 지금의 경기도이다. 충청도의 천안(天安)에 옮겨 속하게 하였다가, 따로 감무(監務)⁶⁾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1415년)에 예에 의해 현감으로 고치고, 또한 훈도(訓導)⁷⁾ 1원을 더 두었다. 연산군 을축년(乙丑年, 1505년)에 다시 경기도에 속하게 하였다가 중종 때에⁸⁾ 복구하였다. 선조(宣祖)

5) 장적(帳籍)은 호구장적(戶口帳籍)의 준말로, 호적이라고도 한다. 3년에 한 번씩 각 호마다 자기 호구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아에 제출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참고하여 호구장적을 작성하게 되어있었다.

병신년(丙申年;1596년)에 없앴다가 경술년(庚戌年;1610년)에 다시 설치하여 도로 충청도에 속하게 하였다.

현명(縣名)

옛 이름은 팽성부(彭城府)이다. 읍지에는 실려있지 않으나, 다만 구전되어 불린다. 옛 이름은 하팔현(河八縣)이다. 고려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관직(官職)

현감(縣監) 음관(蔭官)⁶⁾ 6품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좌수(座首) 1인과 별감(別監) 2인, 현군관(縣軍官) 30인, 아전(衙前) 18인, 지인(知印) 16인, 사령(使令) 21명, 관노(官奴) 23구, 관비(官婢) 26구가 속한다.

산천(山川)

한 작은 언덕이 현의 서쪽 1리쯤에 있다. 큰 들판에 모말을 세워 놓은 듯, 모습이 마치 연꽃과 같다. 직산의 왕주산(王住山)으로부터 와서 고을의 주산(主山)이 되었다.

하천은 양성 소사천(素沙川)의 하류가 동쪽으로부터 구불구불 서북쪽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간다. 직산 염작천(念作川)의 하류는 남쪽으로부터 제멋대로 남쪽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간다.

성씨(姓氏)

이(李)씨, 임(林)씨, 박(朴)씨, 전(田)씨, 손(孫)씨, 전(全)씨.

풍속(風俗)

본현의 풍속은 대체로 부드럽고 순하니, 유달리 굳세고 과감하여 떨쳐 일어나는 기운이 없다. 이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글공부나 무예에 힘쓰거나 마음에 둘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6) 감무(監務)는 고려시대에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에 두었던 감독관이다. 조선초기까지 존속되다가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7) 훈도(訓導)는 각 지방의 향교에 두었던 종9품의 관직이다.

8) 원문에는 '성종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중종조'의 착오이다.

9) 음관(蔭官)은 음서(蔭敍)에 의하여 채용된 관원을 말한다. 음서는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堂上官)과 같은 고위 관리의 자손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채용하던 관직등용제도이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현의 서쪽 1리에 있다. 건물은 1간으로 그 남쪽에 있다.

여단(厲壇) 사직단의 동쪽에 있다. 건물은 1간으로 사직단의 아래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3간으로 현의 북쪽 주산(主山)에 있다.

대성전(大成殿) 향교에 있다.

포의사(褒義祠) 현의 서쪽 10리에 있다. 학사 홍익한(洪翼漢)·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¹⁰⁾을 함께 제사지낸다. 본 건물은 6간이고,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는 6간이며, 강당은 8간이다.

학교(學校)

향교(鄕校) 현의 서쪽 1리에 있다. 동재와 서재는 6간이며, 명륜당(明倫堂)은 10간이다.

공해(公廡)

객사(客舍) 14간이다.

연무청(鍊武廳) 3간이다.

아동헌(衙東軒) 3간이다.

내아(內衙) 걸채까지 모두 30간이다.

향청(鄕廳) 6간이다.

작청(作廳) 15간이다.

사령청(使令廳) 5간이다.

군기고(軍器庫) 5간이다.

제언(堤堰) 5곳에 있다.

탄천제(灘淺堤) 읍내 동쪽 변두리에 있다. 길이는 8백 79척이고 너비는 4백 13척이다. 안쪽 높이는 6척이고 바깥쪽 높이는 9척이다. 둘레는 1천 3백 5척이고 수심은 3척이다.

신직제(新直堤) 탄천제의 서쪽 변두리에 있다. 길이는 1백 23척이고 너비는 41척 6촌이다. 안쪽 높이는 6척 6촌이고 바깥쪽 높이는 8척 6촌이다. 둘레는 4백 24척이

10) 홍익한·오달제·윤집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청(淸)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한 세 학사로 삼학사(三學士)라고도 한다. 1636년(인조 14) 12월 청태종(淸太宗)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에 침입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했을 때, 조정 신하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였다. 최명길(崔鳴吉) 등은 정나라와 화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삼학사는 결사항전(決死抗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1637년(인조 15) 1월에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세 사람은 척화신(斥和臣)으로 심양(瀋陽)에 잡혀가 참형되었다.

고 수심은 3척이다.

노양제(老陽堤) 동면에 있다. 길이는 4백 11척이고 너비는 2백 91척이다. 안쪽 높이는 6척 6촌이고 바깥쪽 높이는 10척이다. 둘레는 1천 3백 99척이고 수심은 3척이다.

신제(新堤) 북면에 있다. 길이는 8백 80척이고 너비는 6백 89척이다. 안쪽 높이는 6척 6촌이고 바깥쪽 높이는 12척이다. 둘레는 2천 2백 51척이고 수심은 3척이다.

마구제(麻仇堤) 남면에 있다. 길이는 3백 50척이고 너비는 6백 94척이다. 안쪽 높이는 6척 6촌이고 바깥쪽 높이는 8척이다. 둘레는 7백 20척이다. 이 제언은 이익은 적은데 해로움이 많은 까닭에 제언사(堤堰司)¹¹⁾의 판결에 의해 충청도의 도사(都事)¹²⁾가 살펴본 후, 경신년(庚申年, 1740년)에 없애버렸다.

창고(倉庫)

읍창(邑倉) 30간이다.

물산(物産)

벼, 콩, 붕어, 가물치, 지황(地黃)¹³⁾, 황금(黃芩)¹⁴⁾, 택사(澤瀉)¹⁵⁾, 더위지기¹⁶⁾.

교량(橋梁)

서근보석교(鋤斤淤石橋) 남면에 있으며, 관아에서 7리쯤의 거리이다. 직산 염작천(念作川)의 하류에 있다.

역원(驛院)

화천역(花川驛) 금정(金井)에 속한다. 큰 말이 2필, 승용마가 2필, 짐신는 말이 2

11) 제언사는 조선시대 때의 관청으로, 각도의 수리시설을 조사·수리하는 일을 맡아보는 기관이다.

12) 도사는 조선시대 때의 관직으로, 지방의 각도에 두었다. 종5품으로 지방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과거시험을 담당하였다.

13) 지황(地黃)은 현삼과의 다년초로, 중국산이며 약용식물로서 재배한다. 뿌리를 지황이라고 하며 생 것을 생지황, 건조시킨 것을 건지황, 찌서 말린 것을 숙지황이라고 한다. 단맛이 있으나 다소 쓴맛이 돌며, 보혈강장제·지혈제·해열제로서 빈혈·하혈·토혈·허약체질에 사용한다.

14) 황금(黃芩)은 꿀풀과의 다년초로 산지의 풀밭에서 자란다. 한방에서 뿌리를 해열·이뇨·지사·이담 및 소염제로 이용하며, 약용식물로 재배한다.

15) 택사(澤瀉)는 택사과의 다년초로 습지에서 자란다.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데, 뿌리줄기는 한방에서 이뇨제·수종 및 임질에 사용한다.

16) 더위지기는 국화과의 낙엽활엽 관목으로, 산기슭의 양지쪽이나 들에서 자란다. 잎은 이뇨·이담·간염·황달에 효능이 있다.

필이다. 역리(驛吏)가 36인으로, 노비는 없다.

목장(牧場)

분양마(分養馬)¹⁷⁾ 1필이 있다. 9월에 받아와 4월에 상납한다.

누정(樓亭)

관가정(觀稼亭) 예전에 관가의 북쪽 담장 밖에 있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져 터만 남아있다.

도두정(掉頭亭) 예전에 현의 서남쪽 곤지포의 변두리에 있었다. 지금 정자는 없고 다만 터만 남아있다.

서정자(西亭子) 현의 서쪽으로 5리쯤에 있다. 예전에 물길을 따라 천자에게 조회 하러 가던 때에, 중국의 사신과 우리나라의 사신이 오가다 머물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폐해지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 되었다.

사찰(寺刹)

망한암(望漢菴) 현의 동쪽 1리쯤에 있다. 곧 읍터의 수구(水口)를 막고 있다.

고적(古跡)

백랑부곡(白浪部曲)이 『여지지(輿地誌)』에 실려있지만 지금은 살펴볼 수 없다. 현 서쪽 3리쯤에 토성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한다.

인물

절사(節士) 홍익한(洪翼漢) 병자호란 때에 장령(掌令)¹⁸⁾으로서 척화를 앞장서 주장하였고, 적국에서 절의를 지키다 죽었다. 그의 의관(衣冠)을 현의 서쪽 10리쯤에 있는 그의 선영 곁에 장사지냈다. 사당을 건립하고 임금이 편액(扁額)을 내려주었는데, 그 이름이 포의사(褒義祠)이다.

충신 이성길(李成吉) 무과시험에 급제하였다. 병자호란 때에 전봉(前鋒) 초관(哨官)으로서 광주(廣州)에서 전사한 사실이 알려져, 군사감주부(軍資監主簿)에 증직되고 그 집의 호역(戶役)이 면제되었다.

충신 권임길(權臨吉) 옥포(玉浦)의 전만호이다. 병자호란 때에 충주의 달천(達川)

17) 분양마는 나라의 말로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하는 말을 가리킨다.

18) 장령은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종4품 관직으로, 주로 관리들에 대한 규찰 업무와 왕에 대한 간쟁 업무를 맡아 보았다.

에서 전사한 사실이 알려져, 특명으로 그 집의 호역이 면제되었다. 그의 의관을 현의 서쪽 7리쯤에 장사지냈다.

충신 방덕룡(方德龍) 낙안(樂安) 군수로서 무술년(戊戌年, 1598년) 왜란 때에 노량(露梁)에서 전사한 사실이 알려져,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증직되고 충청도에 그 집의 호역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충신 이운룡(李雲龍) 선전관(宣傳官)으로서 임금의 종계(宗系)를 고치는 일로 중국에 다녀와, 광국공신(光國功臣)에 책봉되었다. 임진왜란 때에 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로서 상소를 올리고 출전하였다. 충주 달천에서 전사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명으로 그 집의 호역을 면제하였다. 그의 의관을 현의 서쪽 7리쯤에 장사지냈다.

효자(孝子) 방일찬(方日贊)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그 어미의 병을 구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부모의 분묘(墳墓)에 배례(拜禮)하기를 나이 80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旌閭)¹⁹⁾ 하였다.

효자 방이흠(方以欽) 그 아버지가 병환이라,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에 흘려넣으니 소생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하였다.

효자 박영(朴寧) 그 어미를 섬기기를 지극히 하여, 아침 저녁의 문안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져 비석을 세웠다.

효부(孝婦) 유씨(柳氏) 이덕원(李德源)의 아내이다. 정축년(丁丑年, 1637년) 호란 때에 그 시어미와 함께 목천(木川) 승천리(勝天里)로 피난하였다. 적들이 불을 지르자, 유씨가 시어미에게 빨리 나가라고 권하였다. 그 시어미가 차라리 불 속에서 죽겠다며 나가지 않았다. 유씨 또한 나가지 않고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하였다.

열녀(烈女) 심씨(沈氏) 가선대부(嘉善大夫)²⁰⁾ 신광철(申光澈)의 아내이다. 병자년(丙子年, 1636년) 겨울, 그 지아버가 평산(平山)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호란이 갑자기 일어났다. 사람들이 모두 피난할 것을 권하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친정 어미 송씨가 적에게 죽음을 당할 지경이 되자, 맨몸으로 적에게 뛰쳐나가 대신 죽었다. 열녀와 효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실이 알려져 정려하였다.

열녀 사비(私婢) 천금(天今) 일찍 그 지아버를 잃었다. 그 형제들이 다시 시집보내려고 하자,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하였다.

한전(旱田)

본래 장적에 실려있는 6백 39결 27부 6속 가운데 목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

19) 충신이나 효자, 열녀 등을 그들이 사는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는데, 이를 정려(旌閭)라 한다.

20)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관계(官階)의 하나로 종2품 하계(下階)이다.

로 빠진 것이 4백 39결 12부 9속이다. 기묘년(己卯年, 1759년) 현재 경작하고 있는 밭은 2백결 14부 7속이다.

수전(水田)

본래 장지에 실려있는 1천 1백 40결 3부 2속 가운데 묵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진 것이 5백 42결 45부이다. 기묘년(1759년) 현재 경작하고 있는 논은 5백 97결 58부 2속이다.

진공(進貢)

2월령 백급(白芨)²¹⁾ 2냥(兩) 6전(錢), 태수(胎水)²²⁾ 1흡.

3월령 건지황(乾地黃) 2냥, 황금(黃芩) 1근 12냥, 가새풀(남칠(藍漆)) 5전, 담죽엽(淡竹葉) 7냥 5전.

5월령 제비풀²³⁾ 1냥.

6월령 인동초(忍冬草) 3냥.

10월령 구판(龜板) 1개.

진하진상(進賀進上)²⁴⁾ 오리 1마리.

도계진상(到界進上)²⁵⁾ 조기 굴비는 몫을 나누어 정하는 데에 따라 마련해 진상한다.

조적(柴糶糶)

삼창(三倉)²⁶⁾ 회부(會付) 쌀 2석 9두, 벼 1천 7백 61석, 콩 18석, 팥 6석, 보리 9백 85석 3두.

경리청(經理廳) 쌀 38석 1두, 벼 51석 13두, 보리 2백 42석 9두.

통영별록(統營別錄) 벼 6석 13두.

비변사(備邊司) 군작미(軍作米) 1백 38석 7두.

균역청(均役廳) 군작미 2백 15석 2두.

21) 백급은 난초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이다. 뿌리는 약재로 쓰며 또 전분(澱粉)을 만들기도 한다. 대암풀이라고 하며, 백급(白芨)이라고도 쓴다.

22) 양수(羊水)를 달리 이르는 말.

23) 제비풀의 줄기나 잎은 자궁병, 월경불순, 눈병 등의 약재로 쓰인다.

24)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 축하를 들이는 일을 진하(進賀)라 하며, 이 때 각 고을에서 특산물을 올리는 것을 진하진상(進賀進上)이라 한다

25) 조선시대 관찰사가 새로 부임한 후에 의례적으로 그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어 임금에게 진상하는 것을 도계진상이라 한다.

26) 군자창(軍資倉), 상평청(常平廳), 진흥청(賑恤廳)을 삼창(三倉)이라 한다.

2월에 창고를 열고 12월에 창고를 닫는다.

전세(田稅)

기묘년(1759년)은 쌀 3백 24석 4두, 콩 61석 12두이다. 2월에 거두어들여 3월에 실어 보낸다. 노산포로(老山浦路)를 출발해 영옹해(靈翁海), 도리해(都里海), 팔미해(八彌海), 황무포(黃茅浦), 연의정해(延義亭海)를 거쳐 한강에 도착한다. 광흥창(廣興倉)과 군자감(軍資監)의 별영(別營)에 나누어 바친다.

대동(大同)

기묘년(1759년)에 상납한 봄 가을의 쌀은 3백 55석 13두로 선혜청(宣惠廳)에 바친다. 실어 보내는 것은 전세(田稅)와 같다. 저치미(儲置米)²⁷⁾는 2백 27석 1두이다.

균세(均稅)

선세(船稅) 기묘년(1759년) 봄의 선세는 돈 36냥으로 6월에 상납했으며, 가을의 선세는 돈 36냥으로 12월에 상납한다.

결전(結錢) 4백 60냥 3전 2푼으로 봄철에 상납한다.

봉름(俸廩)

관수미(官需米)는 1백 20석, 아록미(衙祿米)는 7석 8두, 아록태(衙祿太)는 3석 1두, 공수미(公須米)는 4석이다. 잡역상정미(雜役詳定米)는 1백 70석으로 토지 1결마다 쌀 3두를 걷는다. 쌀감이나 평, 닭 등은 그 쓰임새의 다소에 따라 헤아려 사서 쓴다.

군병(軍兵)

좌영(左營) 속오(束伍) 파총(把摠) 1인, 초관(哨官) 1인, 기패관(旗牌官) 4인, 군기감관(軍器監官) 1인, 토포군관(討捕軍官) 4인, 마병(馬兵) 16명, 마병보(馬兵保) 16명, 속오노군(束伍奴軍) 1백 44명.

병영(兵營) 신선(新選) 노아병(奴牙兵) 2명.

순영(巡營) 재인(才人) 아병(牙兵) 9명, 수미(收米) 아병 74명.

안흥(安興) 신선·수군(水軍) 15명.

병조(兵曹) 기병(騎兵) 1백 48명, 보병(步兵) 24명.

금군보(禁軍保) 19명.

27) 대동(大同)으로 걷은 쌀 중 일부는 그 지방에 남겨두어, 재정에 보태도록 했다. 그것을 저치미(儲置米)라 한다.

보충대(補充隊) 여정(餘丁) 1명.
 청파(靑坡) 노원(蘆原) 양역보(兩驛保) 5명
 금위영(禁衛營) 보군(保軍) 13명.
 훈련도감(訓練都監) 포보(砲保) 31명, 군항보(軍餉保) 7명.
 여영청(御營廳) 상번군(上番軍) 33명, 자보(資保) 35명, 작미보(作米保) 70명.
 수어청(守禦廳) 군수(軍需) 아병 초관(哨官) 1인, 기괘관 2인, 양아병(良牙兵) 5명,
 노아병 1백 20명, 둔(屯) 기괘관 2인, 둔 양아병 5명, 노아병 1백 20명.
 사복시(司僕寺) 제원보(諸員保) 6명.
 장악원(掌樂院) 악공(樂工) 7명.
 균역청 선무군관(選武軍官) 25인
 이상 도합 양군(良軍) 4백 97명, 노군(奴軍) 4백 69명.

<한문 원문>

平澤縣 鎮管洪州 東至稷山 西至水原界十五里 南至牙山界 北至振威界十里 北距京城一百六十里 一日半程 南距監營一百四十里 一日半程 東距兵營一百四十里 一日半程 南距水營二百里 二日程 西距昆池浦八里許

坊里 邑內面 鄉校里 自官門西距一里 編戶二十一戶 男三十五口 女四十五口
 · 官門前 大井里 編戶八十三戶 男一百八十一口 女一百七十三口
 · 客舍里 編戶七十三戶 男一百三十六口 女一百二十一口
 · 氷庫里 自官門北距一里 編戶十二戶 男二十五口 女二十三口
 · 樓里 自官門北距二里 編戶七戶 男十五口 女十四口
 · 頭里 自官門北距四里 編戶四十六戶 男一百三十八口 女一百十七口
 · 上宮里 自官門東距七里 編戶十二戶 男二十四口 女二十一口
 · 下宮里 自官門北距六里 編戶十八戶 男三十三口 女三十九口
 · 軍勿里 自官門北距越浦八里 編戶二十五戶 男五十五口 女四十六口
 東面 南山里 自官門南距二里 編戶二十七戶 男四十八口 女四十七口
 · 楸八里 自官門東距四里 編戶四十七戶 男七十八口 女七十五口
 · 老連里 自官門東距七里 編戶二十四戶 男四十八口 女四十口
 · 瓦也里 自官門東距十里 編戶十四戶 男二十四口 女二十二口
 南面 鞍峴里 自官門南距三里 編戶二十七戶 男四十二口 女五十五口

- 松堂里 自官門南距四里 編戶五十四戶 男一百二十九口 女一百十口
- 開花里 自官門南距四里 編戶二十五戶 男六十六口 女六十九口
- 農串里 自官門南距五里 編戶十六戶 男三十二口 女三十三口
- 濁川里 自官門南距五里 編戶二十戶 男三十口 女三十三口
- 大沙洞 自官門南距五里 編戶四十一戶 男七十一口 女八十六口
- 鋤斤湫 自官門南距八里 編戶三十五戶 男五十二口 女五十二口
- 老山上里 自官門南距十里 編戶十九戶 男三十四口 女四十一口
- 中里 自官門南距十里 編戶二十五戶 男三十二口 女三十四口
- 下里 自官門南距十里 編戶二百二十三戶 男六百八十二口 女六百七十三口
- 新浦里 自官門南距越浦十里 編戶三十三戶 男四十一口 女五十口

西面 鯨井里 自官門西距十里 編戶十八戶 男二十三口 女二十七口

- 大秋里 自官門西距十里 編戶十二戶 男二十一口 女二十五口
- 東倉里 自官門西距八里 編戶十六戶 男三十一口 女三十三口
- 內里 自官門西距十里 編戶五十四戶 男九十六口 女一百一十一口
- 鹽井里 自官門西距十里 編戶十九戶 男三十二口 女三十五口
- 野里 自官門西距越浦十里 編戶二十戶 男四十口 女四十五口

北面 近乃洞 自官門北距四里 編戶五十二戶 男一百十五口 女九十七口

- 院井里 自官門北距五里 編戶五十三戶 男九十一口 女九十三口
- 鶴井里 自官門北距五里 編戶十四戶 男二十四口 女二十五口
- 黑石里 自官門北距六里 編戶九十三戶 男一百四十一口 女一百七十一口
- 新里 自官門北距五里 編戶二十九戶 男四十口 女五十九口
- 野里 自官門北距五里 編戶二十一戶 男三十一口 女三十八口

小北面 自官門西距越浦十里 編戶六十七戶 男一百二口 女一百二十六口 此面只是一里 而隔一浦水 泥生成陸之地 本無泉井 掘地儲水而飲

以上 元戶一千三百九十五戶 男二千八百三十八口 女二千八百八十三口 以己卯帳籍爲率

道路 東大路 自稷山界盲看橋來 自官門七里 去接于牙山界 自官門南距五里 南大路 去自官門 接于牙山界高寺峯路 自官門南距七里 西小路 去自官門 接于水原界昆池津路 自官門西距十里 北小路 來自振威界丙破面路 接于官門路 北距七里

【建置沿革】高麗時屬於楊廣道 卽今京畿也 移屬本道天安 別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 例改縣監 又增置訓導一員 燕山乙丑又屬京畿 成宗朝復舊 宣祖朝丙申革 庚戌復設 還屬忠清道

【縣名】古號彭城府 邑誌無載 只稱口傳

河八縣 高麗時 改今名

【官職】縣監 蔭六品置 其屬座首一人 別監二人 縣軍官三十人 衙前十八人 知印十六人 使令二十一名 官奴二十三口 婢二十六口

【山川】一小丘 在縣西一里許 斗起於大野之中 狀若芙蓉 而自稷山王住山來 爲邑主山 川陽城素沙川下流 自東逶迤西北方 入西海 稷山念作川下流 自南橫流南方 入西海

【姓氏】李 林 朴 田 孫 全

【風俗】本縣風俗類多巽戾 殊欠剛果振作之氣 且緣土瘠民貧 不能有所作爲 筆硯弓馬之間 尾狀刻意留心

【壇廟】社稷壇 在縣西一里 堂一間 在其南

厲壇 在社稷壇東 堂一間 在社稷壇下

城隍祠 三間 在縣北主山

大成殿 在鄉校

褒義祠 在縣西十里 學士洪翼漢吳達濟尹集同享 正堂六間 東西齋六間 講堂八間

【學校】鄉校 在縣西一里 東西齋六間 明倫堂十間

【公廨】客舍 十四間

鍊武廳 三間

衙東軒 三間

內衙 廊廡并三十間

鄉廳 六間

作廳 十五間

使令廳 五間

軍器庫 五間

【堤堰】五處

灘淺堤 在邑內東邊 長八百七十九尺 廣四百十三尺 內高六尺 外高九尺 周回一千三百五尺

水深三尺

新直堤 在灘淺堤西邊 長一百二十三尺 廣四十一尺六寸 內高六尺六寸 外高八尺六寸 周回四百二十四尺 水深三尺

老陽堤 在東面 長四百一十一尺 廣二百九十一尺 內高六尺六寸 外高十尺 周回一千三百九十九尺 水深三尺

新堤 在北面 長八百八十尺 廣六百八十九尺 內高六尺六寸 外高十二尺 周回二千二百五十一尺 水深三尺

麻仇堤 在南面 長三百五十尺 廣六百九十四尺 內高六尺六寸 外高八尺 周回七百二十尺 右堤以利小害多 因堤堰司題辭 本道都事摘奸 庚申廢棄

【倉庫】 邑倉 三十間

【物產】 稻稔 豆菽 鱒魚 烏鱗魚 地黃 黃芩 澤瀉 茵草

【橋梁】 鋤斤湫石橋 在南面 距官門七里許 稷山念作川下流

【驛院】 花川驛 金井屬 大馬二匹 騎馬二匹 卜馬二匹 驛吏三十六人 奴婢無

【牧場】 分養馬一匹 九月受來 四月上納

【樓亭】 觀稼亭 曾在官家北牆外 歲久頽壓 只有遺址

掉頭亭 曾在縣西南間昆池浦邊 而今無亭 只有遺址

西亭子 在縣西五里許 昔於水路朝天時 華使及我國使臣 往來留住之所云 而廢爲民村

【寺刹】 望漢菴 在縣東一里許 卽防邑袋水口

【古跡】 白浪部曲載在輿地誌 今無可考 而縣西三里許 有土城 疑或指此也

【人物】 節士洪翼漢 丙子以掌令 首倡斥和 節死於彼國 其衣冠 葬在於縣西十里許 其先塋之側 建祠賜額 額名褒義

忠臣李成吉 登武科 丙子胡亂時 爲前鋒哨官 戰亡於廣州地事 聞贈軍資監主簿 命復其戶 其衣冠葬在縣西七里許

忠臣權臨吉 以玉浦前萬戶 丙子胡亂 戰亡於忠州達川事 聞特命復其戶 其衣冠 葬在於縣西七

里許

忠臣方德龍 以樂安郡守 戊戌倭亂 戰亡于露梁事 聞贈刑曹參議 令本道復其戶

忠臣李雲龍 以宣傳官 改宗系事 往返天朝 名參光國功臣 壬辰倭亂 以廣興主簿 陳疏出戰 戰亡于忠州達川事 聞特命復其戶 其衣冠 葬在於縣西七里許

孝子方日贊 斷指出血救其母兵 朔望拜墳 年至八十不廢事 聞旌閭

孝子方以欽 其父病也 斷指出血灌口得甦事 聞旌閭

孝子朴寧 事母至孝 定省不怠事 聞立碑

孝婦柳氏 李德源之妻也 丁丑胡亂 與其姑避亂于木川勝天里 有賊縱火 柳氏勸姑速出 其姑寧欲死於火中而不出 柳氏亦不出 與之同死事 聞旌閭

烈女沈氏 嘉善大夫申光澈之妻也 丙子冬 其夫往平山地未還 胡亂猝起 人皆請避矢死 不動及其親母宋氏之爲賊將死 挺身赴賊 以身代死 烈孝雙全事 聞旌閭

烈女私婢天今 早喪其夫 其兄弟欲奪其志 自刎而死事 聞旌閭

旱田 元帳付六百三十九結二十七負六束內 陳雜 頃四百三十九結十二負九束 己卯時起二百結十四負七束

水田 元帳付一千一百四十結三負二束內 陳雜 頃五百四十二結四十五負 己卯時起五百九十七結五十八負二束

進貢 二月令 白芑二兩六錢 胎水一合 三月令 乾地黃二兩 黃芩一斤十二兩 藍漆五錢 淡竹葉七兩五錢 五月令 夏枯草一兩 六月令 金銀花三兩 十月令 龜板一箇 進賀進上 鴨子一首 到界進上 仇乙非石魚段 隨其分定備進

糶糶 三倉會付 米二石九斗 租一千七百六十一石 太十八石五斗 赤豆六石 牟九百八十五石三斗 · 經理廳 米三十八石一斗 租五十一石十三斗 牟二百四十二石九斗 · 統營別錄 租六石十三斗 · 備局軍作米 一百三十八石七斗 · 均廳軍作米 二百十五石二斗 二月開倉十二月封倉

田稅 己卯 米三百二十四石四斗 太六十一石十二斗 二月收捧 三月裝發 自老山浦路 由靈翁海 都里海 八彌海 黃菴浦 延義亭海 到京江廣興倉軍資監別營分納

大同 己卯上納春秋米 三百五十五石十三斗 納宣惠廳 裝發田稅同 儲置米二百二十七石一斗 均稅 船己卯春稅錢三十六兩 六月上納 秋稅錢三十六兩 臘月上納 結錢 四百六十兩三錢二分 春間上納

俸廩 官需米一百二十石 衙祿米七石八斗 太三石一斗 公須米四石 雜役詳定米一百七十石 每結收三斗米 柴炬炭雉雞等 隨其酬用之多少 參量貿用

軍兵 左營東伍 把總一人 哨官一人 旗牌官四人 軍器監官一人 討捕軍官四人 馬兵十六名 保十六名 東伍奴軍一百四十四名 兵營新選奴牙兵二名 巡營才人牙兵九名 收米牙兵七十四名 安興新選水軍并十五名 兵曹騎兵一百四十八名 步兵二十四名 禁軍保十九名 補充隊余丁一名 青坡蘆原兩驛保五名 禁衛營保軍十三名 訓練都監砲保三十一名 軍餉保七名 御營廳上番軍三十三名 資保三十五名 作米保七十名 守禦廳軍需牙兵哨官一人 旗牌官二人 良牙兵五名 奴牙兵一百二十名 屯旗牌官二人 屯良牙兵五名 奴牙兵一百二十名 司僕寺諸員保六名 掌樂院樂工七名 均役廳選武軍官二十五人

都以上 良軍四百九十七名 奴軍四百六十九名

평택현(平澤縣) — 평택읍지(平澤邑誌)

강계(疆界)

동쪽으로 직산(稷山)과 접하는데 경계까지 8리이다. 직산현까지의 거리는 30리이다.

남쪽으로 아산(牙山)과 접하는데 경계까지 7리이다. 아산현까지의 거리는 40리이다.

서쪽으로 수원(水原)과 접하는데 경계까지 10리이다. 수원부까지의 거리는 90리이다.

북쪽으로 진위(振威)와 접하는데 경계까지 5리이다. 진위현까지의 거리는 40리이다.

서울까지는 1백 60리이고, 공주(公州)의 순영(巡營)¹⁾까지는 1백 40리이다.

청주(淸州)의 병영(兵營)까지는 1백 40리이고, 보령(保寧)의 수영(水營)까지는 2백 리이다.

홍주(洪州)의 진영(鎭營)까지는 1백 30리이고, 해미(海美)의 좌병영(左兵營)까지는 1백 50리이다.

육면(六面) 촌명(村名)

읍내면(邑內面)

향교리(鄉校里) 대정리(大井里) 보십리(甫十里) 객사리(客舍里) 누촌(樓村) 하신대리(下新垆里) 상신대리(上新垆里) 두리(頭里) 상궁리(上宮里) 하궁리(下宮里) 군물리(軍勿里) 신덕리(新德里) 창월리(倉越里)

동면(東面)

와야동(瓦也洞) 노련리(老蓮里) 추팔리(秋八里) 남산리(南山里)

1) 감영(監營)을 다른 말로 순영(巡營)이라고도 한다.

서면(西面)

경정리(鯨井里) 대추리(大秋里) 동창리(東倉里) 내리(內里) 곤지두(昆池頭)

남면(南面)

서정자(西亭子) 안현리(鞍峴里) 송중리(松中里) 송하리(松下里) 석교(石橋) 대사동(大沙洞) 개화리(開花里) 서근리(鋤斤里) 월정리(月井里) 상리(上里) 중리(中里) 노하리(老下里) 신성리(新成里)

북면(北面)

신리(新里) 근내동(近乃洞) 원정리(院井里) 원봉(院峯) 흑석리(黑石里) 호치동(虎峙洞) 신환포(新換浦)

소북면(小北面)

안두언(安頭堰) 안언(鞍堰) 동언(東堰) 상대리(上垞里) 중대리(中垞里) 교포(橋浦)

<한문 원문>

疆界

東接稷山界八里 距稷山縣三十里
南接牙山界七里 距牙山縣四十里
西接水原界十里 距水原府九十里
北接振威界五里 距振威縣四十里
京城一百六十里 公州巡營一百四十里
清州兵營一百四十里 保寧水營二百里
洪州鎮營一百三十里 海美左營一百五十里

六面村名

邑內面

鄉校里 大井里 甫十里 客舍里 樓村 下新垞里 上新垞里 頭里 上宮里 下宮里 軍勿里 新德里

倉越里

東面

瓦也洞 老蓮里 秋八里 南山里

西面

鯨井里 大秋里 東倉里 內里 昆池頭

南面

西亭子 鞍峴里 松中里 松下里 石橋 大沙洞 開花里 鋤斤里 月井里 上里 中里 老下里 新成里

北面

新里 近乃洞 院井里 院峯 黑石里 虎峙洞 新換浦

小北面

安頭堰 鞍堰 東堰 上岱里 中岱里 橋浦

평택현(平澤縣)—팽성지 사례(彭城誌 事例)

전안(田案)

기해년(己亥年, 1839년) 양안(量案)¹⁾의 원장(元帳)에 수록된 논밭의 총수는 1천 7백 79결(結) 30부(負)이다.

묵은 밭 6백 77결 1부

묵은 논 5백 50결²⁾

유실된 토지 3백결 26부

겹쳐서 기재된 논 46부

합 1천 4백 77결 78부

6백 8결 9부가 줄었다.

경작하는 밭 2백 67결 41부

경작하는 논 6백 67결 51부

합 9백 54결 92부

85결 20부가 줄었다.

여러 궁가(宮家)의 면세(免稅) 항목

능원대군(綾原大君)³⁾방(房)

김귀인(金貴人)방

순화군(順和君)⁴⁾방

인성군(仁城君)⁵⁾방

1) 양안은 농민들의 토지대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20년에 한번씩 양전을 시행하여 새로 양안을 작성하게 되어있었다.

2) 원문에는 5백 50부로 되어있지만, '부'는 '결'의 오키인 것으로 보인다.

3) 능원대군(1592~1656)은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의 손자로, 원종(元宗)의 아들이며 인조의 아우이다.

임해군(臨海君)⁶⁾방

경창군(慶昌君)⁷⁾방

충훈부(忠勳府)

수어청(守禦廳)

여러 위전(位田)⁸⁾ · 위답(位畓) 항목

교위(校位)

관아록(官衙祿) 공수위(公須位)

관둔(官屯)

역(驛) 공수위

역마위(驛馬位)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속한 몰수 전답

재곡(財穀)

대동(大同) 저치미(儲置米) 23석

호조(戶曹) 쌀 1석 3두 9승

상평청(常平廳) 쌀 14석 10두 7승, 벼 38석 14두 7승

진휼청(賑恤廳) 쌀 10두 7승, 벼 1천 4백 9석 7승, 콩 11석 9두, 봄보리 1천 36석 13두, 지금 있는 팔 2석 3승

통영(統營) 회내외(會內外) 벼 1천 16석 6두 3승

이상의 곡식들은 지금은 없다.

갑자년(甲子年, 1864년) 합록곡(合錄穀) 3백 66석

따로 마련한 사창(社倉)의 환곡(還穀) 쌀 7백 32석

4) 순화군(?~1607)은 조선 제14대 임금이 선조의 여섯째 아들로, 순빈(順嬪) 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 때에 함경도에서 임해군(臨海君)과 함께 왜장 가등청정(加藤清正)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다가 화의가 성립된 뒤 풀려났다.

5) 인성군(1588~1628)은 조선 제14대 임금이 선조의 일곱째 아들이다. 이름은 이공(李珙)으로, 생모는 정빈(靜嬪) 민씨이다.

6) 임해군(1574~1609)은 조선 제14대 임금이 선조의 맏아들이다. 광해군의 형으로, 어머니도 같은 공빈(恭嬪) 김씨이다.

7) 경창군(1604~1654)은 조선 제14대 임금이 선조(宣祖)의 아들로 어머니는 정빈(貞嬪) 홍씨이다.

8) 위전(位田)은 능(陵).묘(墓) 등의 제사와 관리에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장만한 토지를 말한다. 좁게는 밭만을 가리키지만, 위답(位畓)의 개념을 포함하기도 하며, 위토(位土)라고도 한다.

공안(貢案)

향교의 노비 2명

관아의 노비 5명

군안(軍案)

병조 기병(騎兵) 1백 48명, 보병 24명, 금군보(禁軍保) 19명, 청파(靑坡) 역보(驛保) 5명

훈련도감 포보(砲保) 32명, 군향보(軍餉保) 7명

어영청(御營廳) 상변군 33명, 자보(資保) 35명, 작미보(作米保) 70명

수어청(守禦廳) 아병(牙兵) 4백 50명

사복시(司僕寺) 보(保) 6명

장악원(掌樂院) 악공(樂工) 양인(良人) 7명

균역청(均役廳) 선무군관(選武軍官) 25인

순영(巡營) 재인(才人) 9명, 작미(作米) 아병 74명

병영(兵營) 소속 아병 2명

좌영(左營) 병(兵) 16명의 보인(保人) 16명, 속오군(束伍軍) 1백 44명

방어영(防禦營) 수군(水軍) 15명

고을 소속 군관 9인, 인리(人吏) 17인, 통인(通引) 4인, 사령(使令) 5명

잡보(雜保)

정조진봉호장보(正朝進俸戶長保) 7명

약보(藥保) 12명

<한문 원문>

<田案>

己亥量案元帳付 田畝總數 一千七百七十九結三十負

陳田 六百七十七結一負

陳畓 五百五十負

浦落 三百結二十六負

今疊畓 四十六負

合 一千四百七十七結七十八負 今減六百八結九負

起田 二百六十七結四十一負
起畚 六百六十七結五十一負
合 九百五十四結九十二負 今減八十五結二十負

〈諸宮家免稅秩〉

綾原大君房・金貴人房・順和君房・仁城君房・臨海君房・慶昌君房・忠勤府・守禦廳

〈諸般位田位畚秩〉

校位 官衙祿公須位 官屯 驛公須位 驛馬位 訓練都監屬籍沒田畚

〈財穀〉

大同儲置米二十三石
戶曹米一石三斗九升
常平廳米十四石十斗七升 正租三十八石十四斗七升
賑恤廳米十斗七升 正租一千四百九石七升 太十一石九斗 春牟一千三十六石十三斗 今在赤豆二石三升
統營會內外 正租一千十六石六斗三升
已上財穀今革
甲子合錄穀三百六十六石
別備社會還米七百三十二石

〈貢案〉

校奴婢二名
官奴婢五名

〈軍案〉

兵曹騎兵一百四十八名 步兵二十四名 禁軍保十九名 青坡驛保五名
訓練都監砲保三十二名 軍餉保七名
御營廳上番軍三十三名 資保三十五名 作米保七十名
守禦廳牙兵四百五十名
司僕寺保六名
掌樂院樂工良七名
均役廳選武軍官二十五人

巡營才人九名 作米牙兵七十四名

兵營屬牙兵二名

左營兵十六名保十六名 東伍軍一百四十四名

防禦營水軍十五名

本官屬軍官九人 人吏十七人 通引四人 使令五名

〈雜保〉

正朝進俸戶長保七名

藥保十二名

건치연혁(建置沿革)

옛날의 하팔현(河八縣)을 고려 때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천안(天安)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별도로 감무(監務)²⁾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³⁾에 예에 의하여 현감(縣監)⁴⁾으로 고치고 훈도(訓導)⁵⁾ 한 사람을 증치(增置)하였다. 연산군 을축년(乙丑年)⁶⁾에 경기도로 이속시켰다. 중종⁷⁾ 때에 복구하였다. 선조 병신년(丙申年)⁸⁾에 혁파되었다가 병술년(丙戌年)⁹⁾에 복구하였다. 세상에 전하기를 이 고을은 고려 때에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였다고 하였으니, 양광도는 즉 현재의 경기도이다. 충청도로 이속시킨 뒤로부터는 천안군에, 혹은 직산현(稷山縣)에 합하여졌다. 그 후에 읍인(邑人)들이 글을 올려 복구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대체로 읍을 합할 때에 남쪽 한 면을 그대로 아산에 이속(移屬)시켰으니 지금의 아산 남창(南倉)이 곧 옛날의 평택 남창이다. 이 면(面)은 아산에서는 북쪽이고 평택에서는 남쪽이 되는데, 지금도 오히려 남창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 옛 이름을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자(壬子) 연간¹⁰⁾에 어느 사람이 고봉산(高峯山)에서 비석을 얻었는데, 그 각문(刻文)¹¹⁾에 “평택 남창”이라

- 1) 『팽성지』는 1871년경에 쓰여졌는데, 1895년에 작성된 『평택읍지 平澤邑誌』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반면 『평택읍지』의 내용이 더 자세하다. 그러므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평택읍지』의 내용을 작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하여 보충하였다.
- 2) 고려 예종(睿宗) 이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군·현(屬郡縣)에 파견된 최하급의 관리이다. 감무의 파견은 중앙집권화의 진전 내지는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서 인종(仁宗)·명종(明宗)·공양왕(恭讓王) 때까지 지속되었다.
- 3) 1413년이다.
- 4) 현(縣)에 두어졌던 지방장관이다. 종6품직으로서 중앙에서 임명하는 지방장관으로서의 최하의 관직이었다. 여기서 현감으로 고쳤다는 것은 현감이 설치되는 급의 고을로 고쳤다는 의미이다.
- 5) 조선시대에 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사역원(司譯院) 및 5백 호(戶) 이상의 고을에 두었던 종9품 관직이다.
- 6) 연산군 11년(1505)이다.
- 7) 원문에는 성종(成宗)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뒤의 내용과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참고하면 중종(中宗) 때이다.
- 8) 선조 29년(1596)이다.
- 9) 인조 24년(1646)이다.
- 10) 『팽성지』가 편찬되기 전의 임자년은 철종 3년(1852)이다.
- 11) 쇠붙이, 나무, 돌 등에 새겨진 글을 말한다.

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죽히 남창이 평택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대체로 본현은 경기도, 혹은 호서(湖西)¹²⁾에 소속되어, 이리 찢기고 저리 갈리고 하여서 범위가 점점 축소되어 사면의 넓이가 다른 현의 한 면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장은 호우(湖右)¹³⁾의 경계 머리(界首)에 있고 내포(內浦) 가는 큰 길의 요충에 처해 있어서, 응해야 할 일이 직산(稷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민역(民役)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다른 현에 비하여 곱절이나 되니 견디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 팽성이라는 이름이 전하여 온 것은 이미 오래이지만 전하는 기록이 없어 어느 때에 이 이름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이름인 평택은 고려 때의 옛 호칭이다.

별호(別號)¹⁴⁾

하팔. 팽성. 현재 이름은 평택(平澤)인데, 이것은 고려 때의 옛 이름이다.

사방의 경계(疆界)

동쪽으로 직산 경계까지 8리이다. 직산현과의 거리는 30리이다.

남쪽으로 아산 경계까지 7리이다. 아산현과의 거리는 40리이다.

서쪽으로 수원(水原) 경계까지 10리이다. 수원부와의 거리는 90리이다.

북쪽으로 진위(振威) 경계까지 5리이다. 진위현과의 거리는 40리이다.

서울까지는 160리이다. 공주(公州) 순영(巡營)¹⁵⁾까지는 140리이다.

청주(淸州) 병영(兵營)¹⁶⁾까지는 140리이다. 보령(保寧) 수영(水營)¹⁷⁾까지는 200리이다.

홍주(洪州) 진영(鎭營)¹⁸⁾까지는 130리이다. 해미(海美) 좌영(左營)¹⁹⁾까지는 150리이다.

본읍선생안(本邑先生案)²⁰⁾

만력(萬曆) 24년 병신년(丙申年)²¹⁾에 본 고을을 직산에 합하였다가 38년 경술년(庚戌年)²²⁾에 다시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병신년 이전은 문헌에 기록이 없어서 이 선생

12)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를 합쳐 부르는 이름으로, 현재의 금강(錦江)인 호강(湖江) 서쪽의 지역이란 의미이다.

13) 호서지역 중 오른쪽에 있음을 말한다.

14) 『평택읍지』에는 이 항목이 없다.

15)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순찰사(巡察使)를 겸임함으로써 생긴 말로 감영(監營)과 같은 말이다. 순영은 각 도의 관찰사가 사무를 보는 관청이다.

16)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을 말한다. 이곳에서 절제제사(僉節制使)·동첨제제사(同僉節制使)·절제도위(節制都尉)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17)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관리하는 군영이다.

18) 조선시대에 지방군대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 정3품 진영장(鎭營將)이 관할한다.

19) 조선 말기에 설치된 군영으로 고종 20년(1883)에 친군영(親軍營)으로 설치되었으며 고종 25년(1888)에 전영(前營)과 합하여 장위영(壯衛營)으로 개칭되었다.

20) 『평택읍지』에 이 항목은 없다.

21) 선조 29년(1596)이다.

안은 경술년부터 시작한다.

조수륜(趙守倫) 경술년에 부임하였다가 임자년(壬子年)²³⁾에 화를 입었다.

조감(趙鑑) 계축년(癸丑年)²⁴⁾에 부임하였다.

홍영(洪羹)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참판(參判)²⁵⁾에 이르렀다.

정희(鄭晦)

송시혁(宋時赫) 비로소 향교(鄕校)²⁶⁾와 명륜당(明倫堂)²⁷⁾을 지었다.

박서(朴遜)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判書)²⁸⁾에 이르렀다.

신용휴(申用休) 계해년(癸亥年)²⁹⁾에 장과(狀罷)³⁰⁾되었다.

안정(安錠) 을축년(乙丑年)³¹⁾에 파면되었다.

이엄(李儼) 기사년(己巳年)³²⁾에 파면되었다.

강진소(姜晋昭) 임신년(壬申年)³³⁾에 교체되었다.

원장길(元長吉) 을해년(乙亥年)³⁴⁾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돌아갔다.

성하창(成夏昌) 정축년(丁丑年)³⁵⁾에 폄파(貶罷)³⁶⁾되었다.

이성항(李性恒) 임오년(壬午年)³⁷⁾에 파면되어 갔다. 거사비(去思碑)³⁸⁾가 있다.

유산립(柳山立) 갑신년(甲申年)³⁹⁾에 죽었다.

정희윤(鄭希尹) 병술년(丙戌年)⁴⁰⁾에 파면되었다.

황도명(黃道明) 신묘년(辛卯年)⁴¹⁾에 만기가 되어 돌아갔다. 거사비가 있다.

최항(崔恒) 임진년(壬辰年)⁴²⁾에 붙들려 가서 파면되었다.

22) 광해군 2년(1610)이다.

23) 광해군 4년(1612)이다.

24) 광해군 5년(1613)이다.

25) 조선시대 6조(六曹)에 소속되었던 중2품 관직이다. 정원은 각 1명으로 판서(判書) 다음 가는 벼슬이다.

26) 지방에 있는 문묘(文廟)와 거기에 부속된 옛날의 학교로서 지방 교육기관이다.

27) 유학(儒學)을 강학(講學)하는 곳이다.

28) 조선시대 6조의 가장 높은 벼슬이다. 정2품관으로 각 1명씩을 두었다.

29) 인조 원년(1623)이다.

30) 장계(狀啓)에 의한 파면으로 짐작된다.

31) 인조 3년(1625)이다.

32) 인조 7년(1629)이다.

33) 인조 10년(1632)이다.

34) 인조 13년(1635)이다.

35) 인조 15년(1637)이다.

36) '팸'은 낮은 지위로 옮겨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자리에서 파직되면서 더 낮은 지위로 임명되었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37) 인조 20년(1642)이다.

38) 지방 관리가 임지를 떠날 때 그 지방에서 관리의 정치를 기리기 위해서 세웠던 기념비를 말한다. 덕정비(德政碑)라고도 한다.

39) 인조 22년(1644)이다.

40) 인조 24년(1646)이다.

41) 효종 2년(1651)이다.

이형길(李亨吉) 임진년에 파면되었다.
 유인(柳璘) 계사년(癸巳年)⁴³⁾에 부모의 상을 만나 돌아갔다.
 윤현(尹瑁) 계사년에 파면되었다.
 서상민(徐相民) 을미년(乙未年)⁴⁴⁾에 교체되었다.
 이홍유(李弘猷) 기해년(己亥年)⁴⁵⁾에 어사(御史)⁴⁶⁾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심익선(沈益善) 임인년(壬寅年)⁴⁷⁾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돌아갔다.
 박성부(朴成阜) 병오년(丙午年)⁴⁸⁾에 어사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이기영(李耆英) 정미년(丁未年)⁴⁹⁾에 폄파되었다.
 이행하(李行夏) 임자년(壬子年)⁵⁰⁾에 만기가 되어 돌아갔다.
 이진백(李震白) 정사년(丁巳年)⁵¹⁾에 파면되었다.
 이적길(李迪吉) 무오년(戊午年)⁵²⁾에 파면되었다.
 이재(李哉) 계해년(癸亥年)⁵³⁾에 폄파되었다.
 안지(安至) 갑자년(甲子年)⁵⁴⁾에 파면되었다.
 박장건(朴長健) 갑자년에 폄파되었다.
 정추(鄭推) 무진년(戊辰年)⁵⁵⁾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돌아갔다.
 김익구(金益九) 기사년(己巳年)⁵⁶⁾에 파면되었다.
 정제두(鄭齊斗) 기사년에 자진 사퇴하고 돌아갔다.
 이만길(李萬吉) 임신년(壬申年)⁵⁷⁾에 파면되었다. 거사비가 있다.
 어진석(魚震奭) 을해년(乙亥年)⁵⁸⁾에 교체되었다.
 김종우(金重禹) 경진년(庚辰年)⁵⁹⁾에 만기가 되어 돌아갔다. 거사비가 있다.

42) 효종 3년(1652)이다.

43) 효종 4년(1653)이다.

44) 효종 6년(1655)이다.

45) 효종 10년(1659)이다.

46) 각 관청의 감독과 검열을 하고 민생의 고통의 살피기 위해 사헌부(司憲府) 소속으로 파견된 관리이다. 암행어사(暗行御史)도 사 중의 하나이다.

47) 현종 3년(1662)이다.

48) 현종 7년(1666)이다.

49) 현종 8년(1667)이다.

50) 효종 13년(1672)이다.

51) 숙종 3년(1677)이다.

52) 숙종 4년(1678)이다.

53) 숙종 9년(1683)이다.

54) 숙종 10년(1684)이다.

55) 숙종 14년(1688)이다.

56) 숙종 15년(1689)이다.

57) 숙종 18년(1692)이다.

58) 숙종 21년(1695)이다.

59) 숙종 26년(1700)이다.

윤세강(尹世綱) 경진년에 자진 사퇴하고 돌아갔다.
 이순영(李舜英) 병술년(丙戌年)⁶⁰에 만기가 되어 돌아갔다. 거사비가 있다.
 정혁선(鄭赫先) 기축년(己丑年)⁶¹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돌아갔다.
 심오(沈澳) 경인년(庚寅年)⁶²에 폼파되었다.
 이하보(李夏輔) 을미년(乙未年)⁶³에 만기가 되어 돌아갔다. 거사비가 있다.
 이기현(李耆顯) 을미년에 파면되었다.
 신필하(申弼夏) 무술년(戊戌年)⁶⁴에 파면되었다.
 홍서하(洪叙夏) 무술년에 파면되었다.
 박필교(朴弼教) 계묘년(癸卯年)⁶⁵에 만기가 되어 돌아갔다.
 홍순원(洪舜元) 을사년(乙巳年)⁶⁶에 파면되었다.
 이세해(李世楷) 을사년(乙巳年)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돌아갔다.
 문재중(文在中) 문과 급제하였다. 병오년(丙午年)⁶⁷에 파면되었다.
 박세표(朴世杓) 문과 급제하였다. 정미년(丁未年)⁶⁸에 파면되었다.
 유중겸(柳重謙) 기유년(己酉年)⁶⁹에 파면되었다.
 심화(沈樺) 갑인년(甲寅年)⁷⁰에 만기가 되어 돌아갔다.
 서종조(徐宗朝) 정사년(丁巳年)⁷¹에 어사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임상익(林象翼) 공이 민폐를 많이 고쳤다. 백성들이 그를 잊지 않을 것을 생각하여 생사(生祠)⁷²를 세웠다. 조정에서 이를 금하였기 때문에 즉시 헐었다. 이에 거사비를 세웠다.
 남기명(南紀明) 계해년(癸亥年)⁷³에 폼파되었다.
 이경조(李景祚) 을축년(乙丑年)⁷⁴에 파면되었으나, 후에 높은 지위에 올랐다.
 심중주(沈重周) 병인년(丙寅年)⁷⁵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돌아갔다.

60) 숙종 32년(1706)이다.

61) 숙종 35년(1709)이다.

62) 숙종 36년(1710)이다.

63) 숙종 41년(1715)이다.

64) 숙종 44년(1718)이다.

65) 경종 3년(1723)이다.

66) 영조 원년(1725)이다.

67) 영조 2년(1726)이다.

68) 영조 3년(1727)이다.

69) 영조 5년(1729)이다.

70) 영조 10년(1734)이다.

71) 영조 13년(1737)이다.

72) 사당(祠堂)은 죽은 사람의 신주를 모시는 곳인데, 임상익을 위해 지어진 사당은 그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사'라고 이야기한 듯하다.

73) 영조 19년(1743)이다.

74) 영조 21년(1745)이다.

유적기(兪迪基) 무진년(戊辰年)⁷⁶⁾에 펴파되었다.
 이정일(李廷一) 기사년(己巳年)⁷⁷⁾에 펴파되었다.
 권도(權濤) 경오년(庚午年)⁷⁸⁾에 교체되어 돌아갔다.
 황진(黃眞) 문과 급제하였다. 갑술년(甲戌年)⁷⁹⁾에 펴파되었다.
 박재원(朴載源) 을해년(乙亥年)⁸⁰⁾에 교체되어 돌아갔다.
 변치명(邊致明) 문과 급제하였다. 병자년(丙子年)⁸¹⁾에 펴파되었다.
 김면행(金勉行) 자(字)⁸²⁾는 경부(敬夫)이다. 작은 일로 파면되었는데 백성들의 소청으로 그대로 유임되었다.

6면의 마을이름〔六面村名〕

읍내면(邑內面)

향교리(鄕校里), 대정리(大井里), 보십리(甫十里), 객사리(客舍里), 누촌(樓村), 하신대리(下新岱里), 상신대리(上新岱里), 두리(頭里), 상궁리(上宮里), 하궁리(下宮里), 군물리(軍勿里), 신덕리(新德里), 창월리(倉越里)

동면(東面)

와야동(瓦也洞), 노련리(老蓮里), 추팔리(秋八里), 남산리(南山里)

서면(西面)

경정리(鯨井里), 대추리(大秋里), 동창리(東倉里), 내리(內里), 곤지두(昆池頭)

남면(南面)

서정자(西亭子), 안현리(鞍峴里), 송중리(松中里), 송하리(松下里), 석교(石橋), 대사동(大沙洞), 개화리(開花里), 서근리(鋤斤里), 월정리(月井里), 상리(上里), 중리(中里), 노하리(老下里), 신성리(新成里).

북면(北面)

신리(新里), 근내동(近乃洞), 원정리(院井里), 원봉(院峯), 흑석리(黑石里), 호치동(虎峙洞), 신오평(新揆浦)

소북면(小北面)

안두언(安頭堰), 안언(鞍堰), 동언(東堰), 상대리(上岱里), 중대리(中岱里), 교포(橋浦)

75) 영조 22년(1746)이다.

76) 영조 24년(1748)이다.

77) 영조 25년(1749)이다.

78) 영조 26년(1750)이다.

79) 영조 30년(1754)이다.

80) 영조 31년(1755)이다.

81) 영조 32년(1756)이다.

82) 성인이 되었을 때 실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리어 대신 부르기 위해 짓는 이름이다.

불우(佛宇)⁸³⁾

관해(官廩)⁸⁴⁾

관사(官舍)는 처음 창건한 것이 이미 오래 되어 모두가 파손되고 무너졌다. 상동헌(上東軒)은 이만길(李萬吉) 군수 때 중수하였고 하동헌(下東軒)은 이진백(李震白) 군수 때 새로 지었다. 내이(內衙)⁸⁵⁾와 행랑(行廊), 관청(官廳), 공수청(公需廳)⁸⁶⁾, 권무청(勸武廳)⁸⁷⁾, 창고 등 70 여칸은 모두 이순영(李舜英) 군수 때 새로 지었다.

객사(客舍)⁸⁸⁾

옛날의 객사는 공해(公廩)⁸⁹⁾ 담지 않았는데 심익선(沈益善) 군수가 비로소 규모를 넓히고 나서 동·서헌(東西軒)과 중·대청(中大廳)의 제도가 조금 갖추어졌다. 그 뒤에 무너지고 파손된 것을 이순영 군수가 수리하였다. 뜰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몇 백년이나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동악(李東岳)⁹⁰⁾의 시에 “나무는 태평(太平)⁹¹⁾의 초기부터 늙었었네”라고 한 것은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산천(山川)

성산(城山)은 현의 서쪽 1리쯤에 있는데, 조그마한 언덕이 마치 큰 들판에 말뚝 하나 엮어놓은 것 같다. 그 모양이 연꽃(芙蓉)처럼 생겼으니 이것이 관가(官家)⁹²⁾의 주산(主山)⁹³⁾이다. 위로는 토성(土城)의 터가 있는데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고, 정상에⁹⁴⁾ 성황사(城隍祠)⁹⁵⁾가 있고 그 아래⁹⁶⁾ 찬 우물(冷井)이 있다.

곤지진(昆池津)은 현(縣)에서 서쪽 7리쯤에 있는데, 그곳이 수원(水源)으로 왕래하는 나

83) 『팽성지』에는 없는 항목이다. 「불우」에 들어있는 망한사(望漢寺)와 총묘(塚墓)가 『팽성지』에서는 「학교(學校)」에 부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택읍지』에만 있는 「불우」의 내용은 『팽성지』의 순서에 따라 그곳에 기록하였다.

84) 『팽성지』에 없는 항목이다. 관해는 관원들이 사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관청(官廳)이나 관아(官衙)라고도 한다.

85) 지방관청의 안채로 그 지방관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다.

86) 공수는 공용(公用)을 이야기함으로, 공수청은 관청의 공용품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생각된다.

87) 권무는 임시로 맡는 사무라는 뜻이므로, 권무청은 임시 사무와 관련된 관청으로 짐작된다.

88) 『팽성지』에 없는 항목이다. 객사는 그 지방에 오는 사신이나 손님에 묵는 곳이다.

89) 공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관아 또는 공청(公廳)이라고도 하였다.

90) 이안눌(李安訥)을 말한다. 선조 4년(1571)~인조 15년(1637). 문신이자 시인으로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 시호는 문혜(文惠), 본관은 덕수이다.

91) 중국 연호인 듯하지만,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 알 수 없다.

92) 나라의 일을 보는 집이나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던 관아(官衙)를 말한다.

93) 주택이나 궁궐의 뒤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안산(鞍山)이라고 하는데 객산(客山)의 대칭되는 말이다.

94) 『팽성지』에는 성황사가 산의 정상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평택읍지』에는 토성 터가 위쪽(上)에, 성황사는 가운데(中)에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95) 토지의 부(富)와 즐거움을 수호하는 신(神)인 성황(城隍)을 모신 사당이다.

96) 『평택읍지』에는 북변(北邊)이라고 되어 있다.

루터이다. 밀물 때는 배를 타고 건너지만 썰물에는 옷을 걸고 건널 수 있다. 고깃배·소금 배들이 이 나루터에 정박한다. 이 나루터의 앞쪽에 조우제단(祈雨祭壇)⁹⁷⁾이 있다.

삽교포(挿橋浦)⁹⁸⁾는 현의 북쪽 10리쯤에 있는데, 안성(安城)과 직산(稷山)의 양 개천이 합류하여 바닷물과 서로 교차하는 곳이다. 이곳이 서울로 왕래하는 지름길이다. 조수와 흙탕물(淤泥)의 변화가 봄과 가을에 다르게 변해서 가을과 겨울에는 나무가 몹시 험하고 봄이나 여름에는 건너기가 편하다. 한겨울에 얼음이 얼어붙으면 얼음을 타고 건널 수도 있다. 삽교포라고도 한다.

통복포(通伏浦)는 현에서 북쪽으로 8리쯤에 있다. 이곳에 나무가 있는데, 바로 삽교의 상류이다. 이 나무를 건너면 진위(振威)와 수원 땅에 접한다.

시포(市浦)는 현에서 서쪽으로 10리쯤에 있다. 이곳 역시 나루터가 있는데 밀물과 썰물의 드나드는 것이 삽교에 비해서 약간 빠르다. 그 아래에 노안촌(鷺岸村)이 있는데, 상선(商船)이 이곳에 정박한다. 여기를 건너면 아산(牙山)의 경계이다. 옛날에 시포는 본현의 땅이었지만 본현(本縣)이 직산에 합해졌을 때 아산(牙山)에 이속되었다고 한다.

감동지(感動池)⁹⁹⁾는 현에서 동쪽으로 5리쯤에 있다. 이 연못에서 비를 기원하면 감동스러운 효험이 많았기 때문에 못 이름을 감동지라 하였다.

대정(大井)은 현의 서쪽으로 1리쯤 되는 곳에 있다.¹⁰⁰⁾ 샘의 근원이 솟아나서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한데, 가물 때나 장마 때나 줄고 느는 일이 없다. 물이 솟아나는 곳에 큰 구멍이 있고 그 깊이는 알 수 없다.

토성(土城)은 현의 서쪽 5리쯤에 있는데, 높이가 몇 길이 되며 둘레는 2리쯤이다. 그 가운데 몇 일 동안 갈만한 밭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 문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을 무엇때문에, 언제 쌓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 옛 일을 잘 아는 늙은이의 전하는 말에는 삼국이 전쟁할 때에 상호간에 노략질하는 까닭에 백성들이 매년 가을에 추수한 후에(곡식을) 거두어 모아서 곡식을 숨겨 놓은 곳이라고도 하고, 혹은 신승(神僧)인 도선(道詵)¹⁰¹⁾이 지맥(地脉)¹⁰²⁾을 진압하기 위하여 이 성을 쌓았다고 하기도 한다. 어느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독과 방죽[堤堰防築]¹⁰³⁾

97) 비를 바라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기 위한 제단으로 생각된다. 『평택읍지』에는 기우제단(祈雨祭壇)이라고 쓰여 있다.

98) 『평택읍지』에는 군물포(軍勿浦)라고 되어 있다.

99) 『평택읍지』에는 이 조항이 없다.

100) 『평택읍지』에는 대정이 현의 안에 있으며 서쪽으로 관문(官門)과 거리가 1리쯤 된다고 되어 있다.

101) 통일신라 말기의 승려이다. 영암(靈岩) 출신으로 속성(俗姓)은 김씨이다. 그의 음양지리설(陰陽地理說)과 풍수상지법(風水相地法)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02) 땅의 맥락을 가리킨다.

탄천제(灘淺堤)와 신직제(新直堤)는 읍내에 있고 관문(官門)에서 동쪽으로 2리쯤 되는 곳에 있다. 그 옆에 망한사(望漢寺)가 있다.

신제(新堤)는 북면(北面)에서 3리쯤에 있다.¹⁰⁴⁾

대야보(大也堡)는 남면의 갈천(渴川) 아래에 있는데 관문(官門)에서 8리쯤 된다.

서근보(鋤斤堡)는 남면에 있는데, 대야보¹⁰⁵⁾의 하류다. 관문에서 10리쯤에 있다.

노양제(老陽堤)는 동면에 있는데, 관문에서 5리쯤에 있다.

서면의 12 방죽, 북면의 2 방죽. 이들 방죽 중에는 어떤 것은 옛날에 쌓았고, 어떤 것은 새로 쌓은 것도 있다. 또 어떤 것은 조수에 파괴되어 반쯤 개펄이 된 것도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모두 갯가의 땅인데, 개펄의 동쪽이 떨어져 나갔는가 하면 서쪽은 진흙이 생겨서 이쪽 저쪽 경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까닭에 다툼과 소송하는 사람이 그칠 날이 없다.¹⁰⁶⁾

서정자(西亭子)¹⁰⁷⁾는 현의 서쪽 5리쯤에 있다. 중국 사신과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드나들 때 머물던 곳인데, 뒤에 이곳은 민촌(民村)이 되었다.

학교(學校)¹⁰⁸⁾

향교(鄕校)는 현의 관문에서 서쪽 2리쯤 되는 곳에 있다.

서원(書院)¹⁰⁹⁾은 홍익한(洪翼漢), 오달제(吳達濟), 윤집(尹集) 3명의 절사(節士)¹¹⁰⁾와 우처사(禹處士)의 남양사우(南陽祠宇)가 서면의 경정리(鯨井里)에 있다. 포의사(褒義祠)라고 사액(賜額)¹¹¹⁾하였다.

사직단(社稷壇)¹¹²⁾은 관문에서 서쪽으로 2리쯤에 있다.

성황단(城隍壇)¹¹³⁾도 관문에서 서쪽으로 2리쯤에 있다.

여단(厲壇)¹¹⁴⁾도 관문에서 서쪽으로 2리쯤에 있다.

103) 『평택읍지』에는 제언(堤堰)으로 표기되어 있다.

104) 『평택읍지』에 의하면 신제는 북면에 있으며 관문으로부터 3리쯤 되는 곳에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105) 『평성지』에서는 대보(大堡)라고, 『평택읍지』에는 대야보라고 되어 있는데 전후의 내용을 보아 대야보가 맞다고 판단된다.

106) '서면의 12방죽' 이후의 내용은 『평택읍지』에 없다.

107) 『평택읍지』에는 없는 조항이다.

108) 『평택읍지』에는 이 내용이 없다.

109) 조선 중기에 보급된 사학(私學) 기관이다. 선현을 제사지내는 사(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齋)가 합쳐져서 설립되었다.

110) 절개가 있는 선비 또는 지조가 굳은 선비를 가리킨다.

111) 임금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112)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신인 직(稷)을 모셔 놓은 곳으로 이들에 대한 제사와 기우제 등을 지냈다.

113) 토지의 부와 즐거움을 수호하는 신(神)인 성황 또는 서낭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114) 매년 3월 청명절(淸明節)과 7월 15일, 10월 1일에 마을의 북쪽 교외에 단을 설치하고 제사가 끝난 자들의 영혼에 제사지냈는데, 이때 세워진 단이 여단이다.

화천역(花川驛)은 관문에서 동쪽으로 5리쯤에 있다.

망한사(望漢寺)는 객사(客舍)에서 동쪽으로 1리쯤에 있다. 옛날에는 큰 사찰로 평야(平野) 가운데에 있었다. 그 때에 관속(官屬)¹¹⁵⁾은 풍성하고 읍내의 사람들은 부유하였는데 이 사찰이 파손된 이후 관예(官隸)¹¹⁶⁾와 이속(吏屬)¹¹⁷⁾들이 흩어지고 없어 거의 없어지고 약간 남은 자도 또한 가난하여져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다. 지사(地師)¹¹⁸⁾가 이르기를 “이 절은 관거(官居)의 수구(水口)인데, 마을 사람들이 가난하고 쇠잔하게 사는 것은 실로 이 절이 허물어진 것에 연유한다. 지금 만약 중건한다면 관속들의 부성(富盛)함이 옛날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관속들이 돈을 거두어서 작은 암자를 창건하고 약간의 위전(位田)¹¹⁹⁾을 갖추어 지급하고, 스님 두서너 분이 거기에서 살게 하였다. 그로부터 마을의 형편이 전보다 조금 나아졌다.

총묘(塚墓)

본읍은 본래 평야지대로 면적이 매우 좁다. 경내에는 원래 이름 있는 묘라고 칭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홍익한(洪翼漢) 학사(學士)의 의관(衣冠)을 모신 곳이 경정리에 있고, 본도(本道)의 절도사(節度使)¹²⁰⁾로 있던 방륜(方輪)의 묘가 한사동(寒沙洞)에 있을 뿐이다.

성씨(姓氏)

이(李), 임(林), 박(朴), 전(田), 손(孫), 전(全)씨가 있다.

인물(人物)

절사(節士) 홍익한(洪翼漢)은 남양(南陽) 사람이다. 본현의 서면 경정리에 살았다. 갑자년(甲子年)¹²¹⁾ 공주에서 시행한 정시(庭試)¹²²⁾에 장원(壯元)하고, 병자년¹²³⁾ 봄에 장령(掌令)¹²⁴⁾을 제수받았다. 그때 오랑캐들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자기네가 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논하였다. 공이 상소하니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이

115) 관아에 소속된 아전과 하인, 즉 뒤에 나오는 관예와 이속을 합쳐 말한 것이다.

116) 관아에서 부리는 하인을 의미한다.

117) 아전을 말한다.

118) 지관(地官)이라고도 하는데, 풍수설(風水說)에 의하여 지리를 살피고 묘자리나 집터를 잡는 사람을 말한다.

119)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또는 각 능(陵)·원(園)·묘(墓) 등의 제사 비용 등에 총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120) 각 도에 임명되어 그곳의 군사권을 맡아 다스리던 총책임자이다. 대개 관찰사(觀察使)가 겸직하였고 재직기간은 720일이었다.

121) 인조 2년(1624)이다.

122) 경과(慶科)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때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비정기적으로 보던 과거를 말한다.

123) 인조 14년(1636)이다.

124) 사헌부(司憲府)의 종4품 관직으로 정원은 2명이었다.

의주부윤(義州府尹)¹²⁵으로 있는 이준(李俊)의 장계(狀啓)¹²⁶를 받아보니, 이것이 바로 금(金)¹²⁷ 한(汗)¹²⁸이 황제를 칭하였다는 일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저 오랑캐들이 맹약을 깨뜨려 틈을 만들었다고 하여 우리의 입을 봉하여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차 천하에 대고 말하기를 조선이 우리를 높여 황제라 불렀다고 할 작정인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무슨 면목으로 천하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신은 청합니다. 그 사신을 잡아다가 그 약속 위반한 것을 꾸짖고 죽여서 예의를 밝혀 보인 후에 그 목을 베어 오랑캐의 글과 함께 황조(皇朝)¹²⁹에 아뢰면 의리는 더욱 떨치고, 사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대답하기를 “너의 나라를 위한 충성은 매우 가상하지만 사신의 목을 벤다는 일은 너무 조급한 것 같다. 천천히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조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해 12월 13일에 오랑캐가 쳐들어 온다는 경보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다. 이때 마침 평양(平壤)의 서윤(庶尹)¹³⁰ 자리가 비어 있었다. 마침내 공을 제수하여 평양으로 가기를 재촉하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초상난 집같이 야단들이었다. 공이 거의 말과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여 적과 싸우다 죽는 것이 내가 평소부터 품어온 뜻이다”라 하고 드디어 즉시 임금께 사은숙배(謝恩肅拜)¹³¹한 후 출발하였다. 출발한 지 20여 일만에 비로소 평양의 보산성(寶山城)에 도착하였다. 도입한 후에는 대책을 모으고 장사(將士)¹³²를 타일러 그 성을 안전하게 보위하였다. 이때에 임금은 남한강도(南漢江都)¹³³로 들어갔으나 마침내 적에게 함락되었다. 적이 척화신(斥和臣)¹³⁴을 매우 급하게 찾았다. 조정은 공과 윤집(尹集) 선생, 오달제(吳達濟) 선생이라고 아뢰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록이 윤집, 오달제 두 분 전기에 전한다. 정축년(丁丑年)¹³⁵ 2월 12일 밤에 평양도사(平壤都事)¹³⁶ 전벽(田闢)¹³⁷이 임금의 뜻을 증산현감 변대중

125) 부윤은 지방에 있는 부(府)의 최고 관직으로 종2품에 해당한다.

126) 감사(監司)나 왕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관원이 서면으로 임금에게 보고하는 글이다.

127) 후에 청(淸) 나라로 이름을 바꾸는 후금(後金)을 말한다.

128) 중국 북방민족들이 최고의 추장을 일컫는 명칭이다. ‘칸’이라고도 한다.

129) 명나라 조정을 이야기한다.

130) 한성부(漢城府)와 평양부에 두어졌던 종4품 벼슬로 판윤(判尹)과 좌·우윤(左右尹)을 보좌하였다.

131) 임금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손이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여 공손히 절하는 것을 말한다.

132) 장수와 병졸을 이야기하며 장졸(將卒)이라고도 한다.

133) 남한산성을 의미한다. 이곳을 임시 수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강도(江都)라 부른 듯하다.

134) 후금(後金, 이후 淸)과의 화해를 반대한 신하들을 말한다.

135) 인조 15년(1637)이다.

136) 평양에 두어진 종5품 관리이다. 지방관리의 불법적인 행동을 규찰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

137) 조선 인조 때의 문신이다. 자는 자서(滋墅), 호는 서정(西亭). 본관은 남원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에 나이가 어리고 학문이 미숙하다고 하여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서 독서에 힘썼다. 광해군 때 거제도(居島)로 귀양갔다가 인조반정 때 석방되어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괄(李适)의 난 때 군대 3천을 이끌고 왕을 공주로 모셨으며 청나라가 명나라의 수도를 치기 위하여 조선에게 출병을 요구했을 때 대장 이시영(李時英)의 종사관으로 의주에 이르렀다가 ‘군사로 명나라에 대항함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돌아왔다.

(邊大中)에게 전하여 공을 평양 두리도(頭里島)에서 잡아 적군의 진영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변대중이 공을 결박한 것이 매우 견고하여 은산현감(殷山縣監) 이순민(李舜民)¹³⁸⁾이 와서 보고 공을 위로하기를, “나라 일이 이 꼴이 되어 벌레와 같이 천한 나의 남은 목숨이야 죽히 논할 것이 못되지만 다만 나인들 어찌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명(命)을 피하겠는가. 어찌 속박하는 것이 이갈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순민이 변대중을 타일러서 결박을 늦추게 하였다. 밤 이경(二更)¹³⁹⁾에 강을 건너, 새벽에서 밤까지 걸음을 재촉하여 5일에 의주(義州)에 도착하였다. 그 때에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¹⁴⁰⁾이 나와 공을 맞아 들여 앉히고 말하기를, “공의 이번 행동은 진실로 남자입니다. 살아서 능히 대의(大義)를 지탱하고, 죽어서는 그 이름을 빛낼 것이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내가 상소 한 장 올린 것으로 말미암아 화패(禍敗)¹⁴¹⁾가 이에 이르렀으니 죽은들 어찌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경업이 공의 행자(行資)¹⁴²⁾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풍부하게 보태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가죽 옷을 벗어서 공에게 입히고 미곶첨사(彌串僉使)¹⁴³⁾ 장초(張超)로 하여금 압송하여 보냈다. 중국 사람으로서 만주 오랑캐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진실된 충신이라고 차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 대명황제가 이 일을 안다면 어찌 높여 주지 않겠는가. 남자로써 이러한 죽음에 이른다면 또한 빛이 나겠다”고 서로 위로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28일에 한(汗)이 공을 별실에 가두어 두고서 박사관(博士官)에게 명하여 술자리를 배풀고 요리사는 또한 아침·저녁을 성대하게 차리어 대접하며 말하기를, “황제가 특별히 대접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나는 오직 한 번 죽을 일만 있을 뿐이다.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라 하고 모두 받지 않았다. 오랑캐 장수 용골대(龍骨打)¹⁴⁴⁾가 공이 묵는 곳으로 와서 통역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너는 무슨 까닭으로 이곳에 들어왔느냐”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나는 척화하기를 주장한 자로써 잡혀 왔다”라고 하였다. 용골대가 말하기

138) 인종 1년(1545)~?. 자는 호여(皜如), 호는 이봉(伊峯), 본관은 전주이다.

139)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140) 선조 27년(1594)~인조 24년(1646).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본관은 평택이고 충주에서 출생하였다. 광해군 10년(1618)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인조 2년(1624)에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 진압에 참여하여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이 되었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의주부윤으로 청나라 군대에 대항하였다. 인조 20년(1642) 청의 군대가 금주(錦州)를 포위하자 명나라와 내통하여 청에 대항하려고 하다가 일이 탄로나자 명나라로 도망하였다. 명나라의 남경(南京)이 함락되어 청나라에 잡혔다가 본국에서 일어난 심기원(沈器遠)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피살되었다.

141) 재앙을 의미한다.

142) 노잣돈을 말한다.

143) 첨사는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줄인 말로 각 진영(鎭營)에 속하였던 무관직이다. 보통은 그 지역의 수령이 겸임하였으나 중요한 해안지방의 독진(獨鎭)과 그 진관(鎭管), 평안·함경도의 독진과 그 진관은 수령이 겸하지 않고 전문적인 무관으로서 첨절제사를 임명하고 이 경우에 한하여 첨사라고 약칭하였다.

144) 청나라 장수 용골대(龍骨大)를 말한다. 용골대는 인조 14년(1636) 2월에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청나라 황제의 존호를 쓰고 그들과 군신(君臣)의 의리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돌아갔다. 그 후 그해 12월에 마부대(馬富大)와 함께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를, “너의 나라 신하 중에서 척화를 주장한 사람이 어찌 너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하니,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해서 남을 속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용골타는 “너 이외에도 척화를 주장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하였다. 공은 “작년 봄에 네가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을 때 네 머리를 벨 것을 청한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였다. 용골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참 할 수 없는 놈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가 버렸다. 3월 초 5일에 한(汗)이 양쪽에 장수들을 늘어 세우고 공을 끌어 들이였다. 바야흐로 공이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 음식 드는 품이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 음식을 다 들고 나서 하인에게 이르기를, “한(汗)이 반드시 나를 굴욕시키려 하겠지만 나는 끝내 굴복할 수 없으니 오늘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금 뒤에 즐거들이 매우 급하게 전하여 부르므로 공이 그 문밖에 이르니 양손을 묶어 뜰 아래로 끌고 갔다. 독촉하였지만 공의 걸음걸이가 편안하였다. 하인이 노하게 할까 두려워서 곁에서 재촉하였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남자가 이런 지경에 이르러 마땅히 조용히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어찌 위무(威武)¹⁴⁵⁾를 두려워하여 행동을 잘못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도착하여 뜰 아래에 딱 버티고 서니 오랑캐 무리들이 모두 일어서서 발돋움을 하면서 구경하였다. 한(汗)이 그 결박을 풀라고 명령하고 이어 말하기를, “네가 어찌서 무릎을 꿇지 않고 건방진 것이 이와 같은가”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이 무릎을 어떻게 너의 앞에 꿇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한이 말하기를, “네가 전에 화해를 반대한 것은 반드시 나를 멸망시키려 한 것이다. 너는 어찌 먼저 약속을 위반하여 척화를 주장하고 양국으로 하여금 틈이 생기게 하는가”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나라가 형제의 맹약을 맺었는데 도리어 황제와 신하를 칭하고 자 하니 내가 약속을 어긴 잘못이 어찌 내게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한이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네가 제일 먼저 화해를 반대했으니 반드시 우리를 섬멸하려고 할 터인데 어찌 우리 대군이 쳐들어갔는데도 맞아 싸우지 않고 있다고 도리어 나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느냐?”고 하였다. 공이 “내가 주장한 것은 대의(大義)일 뿐이다. 망하고 흥하고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냐. 만약 우리나라 신민들이 모두 내 뜻과 같았다면 너는 벌써 죽고 살아 남지 못하였을 것이다”라 하고 곧 옷을 벗어 땅에 내던지고 발가벗은 채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너의 나라에서는 사람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 있다 하니 어찌하여 그 형벌을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라 하였다. 인하여 종이를 달라하여 쓰기를 “대명(大明) 조선의 누대 신하인 홍익한의 척화에 관한 일을 뚜렷이 베풀어 말할 것이로되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마땅히 글로써 밝히려. 무릇 온 세상은 모두가 형제라 할 수 있고 두 아버지를 둔 아들은 없다. 조선은 본디 예의를 숭상하여 간신(諫臣)¹⁴⁶⁾은 오직 직절(直節)을 풍속으로 삼는 까닭에 작년 봄에 내가 마침 언론 기관의 책임을 맡

145) 권위(權威)와 무력(武力)을 의미한다.

았다가 너의 나라가 맹약을 어기고, 황제라고 칭하였다 하니 만일 실지로 맹약을 어기었다면 이것은 형제의 의리에 위배된 처사이고 만약 실제로 황제라고 일컬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천자가 들이 되는 셈이다. 한 문중에 어찌 형제의 의리에 위배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어찌 두 천자가 있겠는가? 하물며 너의 나라와 우리 조선 사이에는 새로이 금석(金石)¹⁴⁷⁾의 맹약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배반하였다. 대명은 조선에 대하여 옛부터 작은 나라를 사랑한 깊은 은혜가 있다. 이런 것을 저버린다면, 이치로 따져도 잘못이고 사리로 판단하여도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이런 까닭에 내가 앞장서서 척화의 의논을 주장한 것은 신하의 직분을 다한 것일 뿐이지 무슨 딴 뜻이 있겠는가? 또 신하와 자식된 도리는 마땅히 충효를 다할 뿐이다. 나는 위로 임금과 아버지가 있는데, 임금도 아버지도 잘 봉양하고 보호하여 드리지 못하여 이제 세자(世子)¹⁴⁸⁾와 대군(大君)¹⁴⁹⁾이 모두 포로가 되었고 노모가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의 상소를 함부로 올려 국가가 큰 화를 당하게 되었으니 충효의 도리는 이것으로 흔적도 없게 된 것이다. 비록 한번 죽는다 할지라도 실지로 달게 받겠노라. 내 피를 받아서 희생의 제물을 삼아라. 죽은 넋이 하늘로 날아가 고향 산천에 가서 노닐면 그것이 쾌한 일이라, 이 밖에 무슨 할 말이 있으랴. 오직 원하는 것은 속히 죽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이 통역을 시켜 번역한 말을 듣고 말하기를,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이로구나”라 하고 또 공에게 물기를, “내가 어찌서 황제가 될 수 없단 말이나?”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너는 천조(天朝)¹⁵⁰⁾의 반적(反賊)¹⁵¹⁾이다. 네가 어찌 황제가 될 수 있단 말이나” 하였다. 크게 성이 나서 드디어 두 오랑캐로 하여금 공의 겨드랑이를 끼고 나가게 하니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형법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공의 하인을 붙들어서 별실에 가두어 두고 공이 타고 갔던 말과 이불, 옷가지 등을 역인(譯人)¹⁵²⁾ 김여량(金汝亮)에게 주어 그 하인과 함께 본국으로 환송시키었다. 공의 하인

146) 간관(諫官)을 의미하며 언관(言官)이라고도 한다. 사간원(司諫院)·사헌부(司憲府)에 소속된 관리를 지칭한다.

147) 사전적으로는 쇠와 돌을 이야기하여, 단단한 사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쇠와 돌처럼 단단하여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을 이야기한다.

148) 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이야기한다. 광해군 4년(1612)에 태어나 인조 23년(1645)에 사망하였다. 인조 3년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병자호란 때 후에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의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다. 청나라에 있는 동안 서양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귀국하면서 천문(天文)·과학에 관한 서양 문물과 천주교 서적 등을 가져왔으나 귀국 후 2개월 만에 병사하였다.

149) 후에 인조의 뒤를 이어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鳳林大君)이다. 광해군 11년(1619)에 태어나 효종 10년(1659)에 사망하였고 1649년부터 1659년까지 재위하였다. 병자호란 때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에 볼모로 잡혀 갔으며 왕위에 오른 후 청나라에 대한 굴욕을 씻고자 북벌계획을 세우고 군비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150) 명나라를 의미하는 듯하다.

151) 반적(叛賊)이라고도 쓰는데, 반역자를 의미한다.

152) 통역관을 말하는데, 역인은 중인(中人) 신분으로 그 신분과 직분이 세습되었다.

이 공의 일기를 가져와 전하였고 중국 사람으로서 의리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도 이와 같았다. 효종(孝宗) 때에 특명으로 그 자손을 녹용(錄用)¹⁵³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에게는 승지(承旨)¹⁵⁴를 추증(追贈)¹⁵⁵하였다. 공이 죽었을 때 소현세자(昭顯世子)께서 초혼(招魂)¹⁵⁶에 사용하도록 비단을 보내 주었다. 공의 양재繼子인 응원(應元)이 공의 의관을 현의 서쪽 경정리 장보(章甫)에 묻고 묘 아래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남한산성에도 삼절사(三節士)¹⁵⁷의 사당이 있다. 공은 총명이 빼어났고 아버지를 정성껏 섬기었으며 문장이 맑아서 말 한 마디 글 한 구절이 충효(忠孝)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었다. 심양(瀋陽)에 잡혀 있을 때에 마침 3월 3일이어서 시를 지으니, “양지쪽에 가는 풀은 새움이 돋는데, 우리에게 갇힌 새는 마음 더욱 슬프구나. 무슨 겨를에 답청(踏靑)할 일 생각하라, 고향 땅 흰 구름만 꿈 속에 오락가락. 바람이 돌을 치니 음산(陰山)도 움직이고, 눈이 봄날에 흩날리니 달빛까지 열렸구나. 배 고라서 이어가는 실날같은 내 목숨아, 백년 뒤 오늘에 눈물이 두 뺨을 적시리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전하여 암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공은 병술년(丙戌年)¹⁵⁸에 태어나 죽을 때 52세였다. 화포선생(花浦先生)이라 불리었다.

충신 이성길(李成吉)은 경주(慶州) 사람이다. 읍내의 누리(樓里)에 살았는데, 경신년(庚申年)¹⁵⁹에 무과에 급제하고 병자호란(胡亂) 때에 충청감사(忠淸監司)¹⁶⁰ 정세규(鄭世規)¹⁶¹가 군사를 거느리고 왕을 보위할 때 이성길을 전봉초관(前鋒哨官)¹⁶²으로 삼았다. 행렬이 광주(廣州)에 이르렀을 때 별안간 적군을 만나자 이성길이 자기의 부하병사를 거느리고 용맹을 떨쳐 앞으로 나아가면서, 한편으로 싸우니 적군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였다.

153) 기록하여 관직에 채용함을 말한다.

154) 조선시대에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되어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았던 관원을 통칭한다. 정원은 6명으로 모두 정3품 당상관(堂上官)이었으며 각각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방(工房)을 담당하였다. 또한 임금의 비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 등을 겸임하였다.

155) 죽은 뒤에 관직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56)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한다는 뜻으로 죽은 사람의 혼을 제사지내어 위안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157) 홍익한과 윤집·오달제를 말한다.

158) 선조 19년(1586)이다.

159) 광해군 12년(1620)이다.

160) 감사는 관찰사(觀察使)로 충청감사는 충청도의 관찰사를 말한다. 관찰사는 각 도에 1명씩 두어진 문관직으로 대부분 절도사(節度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등의 무관직을 겸임하였다. 관찰하는 도에 대한 경찰권·사법권·징세권(徵稅權) 등을 가지고 있었다.

161) 선조 16년(1583)~현종 2년(1661). 인조 때의 대신으로 자는 군칙(君則), 호는 동리(東里), 시호는 경헌(景憲). 본관은 동래이다. 광해군 5년(1613)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관직에 올랐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충청도관찰사로서 도의 군대를 이끌고 용인의 험천(險川)에 진주했다고 청군의 급습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 그후 안성을 거쳐 청주에 나가 재거병을 계획하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듣고 임금에게 나와 죄를 청하였다.

162) 초관은 각 군영의 위관(尉官) 중 하나로 군대 1초(哨)를 지휘하는 종9품 무관이다.

드디어 군사를 거두고 퇴각하였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적군이 다시 대군을 소집하여 앞뒤에서 충돌하였다. 이성길이 또 출전하였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 진중(陣中)에서 죽었다. 뒤에 이 사실이 임금께 알려져 군자주부(軍資注簿)¹⁶³⁾에 추증되고 또 명하여 복호(復戶)¹⁶⁴⁾ 하였다.

충신 권임길(權臨吉)은 안동(安東) 사람이다. 부사(府使)¹⁶⁵⁾ 벼슬을 지낸 권정길(權井吉)의 동생이다. 본현의 북촌(北村)에 살았는데, 키가 9척이나 되고 용맹과 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무오년(戊午年)¹⁶⁶⁾에 무과에 급제하고, 병자년(丙子年)¹⁶⁷⁾에 옥포만호(玉浦萬戶)¹⁶⁸⁾로 있다가 만기가 되어 본가로 오는데 갑자기 오랑캐 군사들이 서울로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한산성으로 호종하기에는 이미 늦어 충청순영(忠淸巡營)으로 달려갔다. 감사(監司) 정세규(鄭世規)는 평소 그의 명성을 익히 들었으므로 그 군중에 두었더니 험천(險川)의 패군(敗軍) 때 권임길이 힘써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 뒤에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특명으로 복호(復戶)하게 하였다.

충신 이운룡(李雲龍)은 체력이 뛰어났고 본현의 서촌(西村)에 살았다. 힘이 장사인 데다 활쏘고 말달리는 재주가 뛰어났다. 28살에 무과에 합격하고 만력(萬曆) 경인년(庚寅年)¹⁶⁹⁾에 선전관(宣傳官)¹⁷⁰⁾에 제수되었다. 임금의 종계(宗系)를 고치는 일¹⁷¹⁾로 여러번 중국을 왕래하였기 때문에 광국공신(光國功臣)¹⁷²⁾에 참여하였다. (나이 30세가 된) 임진왜란 때에 광흥주부(廣興注簿)¹⁷³⁾로 대궐에 나아가 상소를 올려 출전할 것을 자원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허락하시고 곧 별치부(別置簿)¹⁷⁴⁾에 명하였다. 이에 도원수(都元帥)¹⁷⁵⁾ 신립(申唖)의 막하로 나아가 선봉되기를 구하였다. 충주(忠州) 달천(達川)에 도달하자 원수(元帥)가 배수진(背水陣)¹⁷⁶⁾을 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운룡이 말하기를, “이것은 스스로

163) 군자감(軍資監)의 주부를 말한다. 군자감은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담당하였고 주부는 6품에서 8품사이에서 임명되었다.

164) 요역(搖役)과 전세(田稅) 이외의 잡부금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165) 조선시대의 지방관직으로 정3품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종3품인 도호부사를 가리킨다.

166) 광해군 10년(1618)이다.

167) 인조 14년(1636)이다.

168) 옥포의 만호이다. 만호는 무관직의 하나로, 관할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말하는 몽고의 군제에서 기원하였다. 만호는 보통 정4품관이 임명되었다.

169) 선조 13년(1580)이다.

170)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관리로 정3품부터 종9품까지 있었다.

171) 선조 23년(1590) 명나라 역사에 조선의 왕실인 이씨의 세계(世系)가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친 사실을 말한다.

172) 조선 선조(宣祖) 때 명나라 역사에 임금의 종계(宗系)가 잘못 기록된 것 즉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한다.

173) 광흥창(廣興倉)의 주부이다. 광흥창은 관리들의 봉급을 관리하던 곳으로 주부는 종6품의 관원이었다.

174) 조선시대 정·종 3품관 이하의 측근 신하가 죽었을 때 하사하는 처부를 말한다.

175) 전쟁 때 군대를 통솔하던 임시 무관직으로 보통 문관이 임명되었다.

176) 물을 등지고 치는 진이다. 중국 한(漢)나라의 한신(韓信)이 처음 배수진을 친 것에서 유래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전력을 다하여 일의 성패를 다투는 경우를 비유하기도 한다.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라 하고 인하여 땅에 엎드려 울면서 배수진이 잘못된 계책이라는 것을 자세히 진술하였다. 원수는 크게 노하여 변변치 못한 일개 무사가 감히 망녕된 말을 하여 기회를 그릇친다고 하고 마침내 곤장 30도(度)를 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 이운룡이 일어나 흐르는 피를 씻고 곧 바로 군문(軍門)에 서서 예전과 같이 일을 하였다. 이튿날 아침을 지을 때에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지척(咫尺)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조금 있다가 적병이 벌써 조령(鳥嶺)을 넘어 왔다. 대포 소리 한 방에 우리 군사가 모두 흩어지고 달천에 빠져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었다. 이운룡이 말을 달리고 창을 휘두르며 적진 중으로 뛰어 들어갔다. 말을 끄는 노비가 이미 적군의 칼에 맞아 죽고 이운룡의 동생 이응룡(李應龍)이 또한 군중에 있다가 이운룡 말의 고삐를 잡고 빨리 달아나서 적군의 칼을 피하라고 권하였다. 이운룡이 성이 나서 큰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적들 속에서 죽을테니 너는 돌아가서 노모(老母)를 봉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응룡이 그 고삐를 놓지 않고 곧바로 1마장(馬場)쯤이나 달려가니 이운룡이 철편(鐵鞭)177)으로 후러치고 다시 고삐를 잡고 되돌아가서 적진으로 뛰어 들었다. 적군의 머리를 벤 것이 매우 많았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마침내 적진에서 죽었다. 그 때 장사(將士)로서 살아 돌아온 자가 이 사실을 갖추어 고하였다. 임금께서 그 전공을 기록하도록 하고 복호의 명을 내리었다. 이운룡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의관을 본현의 서면(西面)에 장사지내었다.

충신 방덕룡(方德龍)은 본현의 북촌(北村)에 살았는데 병사(兵使)¹⁷⁸⁾ 방호의(方好義)의 손자이다. 만력(萬曆) 무자년(戊子年)¹⁷⁹⁾ 무과에 급제하고 무술년(戊戌年)¹⁸⁰⁾ 왜란 때에 안락군수(安樂郡守)¹⁸¹⁾로 있었다. 그때의 통제사(統制使)¹⁸²⁾ 이순신(李舜臣)¹⁸³⁾이 공이 효용(驍勇)하고 또 지략(智略)이 있음을 알고 공을 선봉장(先鋒將)으로 삼았다. 공이 왜병과 노량(露梁)에서 크게 싸울 때 사력을 내어 적중을 횡행(橫行)¹⁸⁴⁾하였다. 왜군의 배를 깨뜨리고 적군의 목을 수없이 베었다. 충무공(忠武公)¹⁸⁵⁾이 이미 전사하

177) 쇠로 만든 채찍이다.

178)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약칭이다. 병마절도사는 조선의 종2품 무관직으로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고 경비를 담당했다.

179) 선조 21년(1588)이다.

180) 선조 31년(1598)이다. 반면 『평택읍지』에는 무자년이라고 되어 있다.

181) 『평택읍지』에는 ‘낙안군수’라 되어 있다. 군수는 군의 지방행정을 맡아 보던 장관으로 종4품관이 임명되었다.

182) 경상·전라·충청 3도의 수군(水軍)을 통솔하던 무관직이다.

183) 인종 1년(1545)~선조 31년(1598).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공(忠武公), 본관은 덕수(德水)로 선조 9년(1576) 무과에 급제하였다.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가 되었을 때 전쟁을 예측하고 군사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 전쟁에 대비하였다. 임진왜란 때 왜적의 수군을 격파하여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을 시기한 원균(元均)과 일본의 이간질로 선조 29년(1596)에 서울에 압송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정탁(鄭琢)의 도움으로 사형이 면제되고 권율(權栗)의 휘하에서 백의종군하였다. 원균이 일본에 대패하자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하여 명량(鳴梁)과 노량(露梁) 등에서 크게 승리하였으나 노량에서 사망하였다.

184) 사전상으로는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다. 즉 적진에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적과 싸웠음을 묘사한 것이다.

였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주장(主將)이 이미 죽었는데 내가 어찌 살기를 구하겠는가”라 하고 다시 적군에 뛰어 들어 죽으니 나이 38세였다. 임금께서 그 절의(節義)를 가상하게 여기어 형조참의(刑曹參議)¹⁸⁶⁾를 추증하고, 또 그 자손을 녹용(錄用)토록 하였으며 본도(本道)에 명하여 복호하였다.

효자(孝子) 방일찬(方日贊)은 방덕룡의 손자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단지(斷指)¹⁸⁷⁾하여 피를 내여서 그 어머니의 병을 구하였다. 또 매달 삭망(朔望)¹⁸⁸⁾이면 부모의 무덤에 배례(拜禮)하여 나이가 팔십이 되어도 오히려 폐하지 않았으니 그 선조를 봉양하는 정성이 늙을수록 더욱 독실했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정려(旌闈)¹⁸⁹⁾ 되었다. 방일찬의 아들 방세현(方世顯) 또한 어머니의 병에 단지하여 효성을 다하였으니, 대체로 충과 효는 둘이 아니다. 방덕룡의 충절이 이미 저와 같았으니 방일찬 부자의 지극한 효성이 또한 이러한 것을 보면 그것이 모두 전수된 바가 아니겠는가?

효자 방이흠(方以欽)은 본현의 북촌에 살았다. 아버이 섬기기를 효로써 하였는데, 그 아버지 나이 68세에 중병을 앓아서 명이 경각에 있었다. 방이흠이 곧 그 손가락을 끊어 피를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었더니 곧 다시 깨어나서 20여 년의 생명을 연장하였으니 어찌 효성의 지극함이 아니라면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때에 방이흠의 아내가 젓먹이 어린아이가 있어서 마침 젓이 있을 때라 그 젓을 짜서 그 아버지에게 바치기를 한 달 이상 하였더니 그 아버지가 다시 완전하게 병이 나아서 90이 넘는 후에 죽었다. 대개 단지하는 일은 효자의 작은 행위라고 하겠으나, 이번 방이흠의 아버지가 이 일에 의뢰하여 다시 깨어나 20여 년의 명을 더 연장하였음은 즉 지성스런 효도가 이루어 낸 일이 아니겠는가.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정려되었다.

효자 박영(朴寧)은 본은(本邑)의 아전이다. 읍내 남산리(南山里)에 살았는데, 어머니 섬기기를 지극한 효로써 하고 아침 저녁의 문안을 게을리 하는 일이 없고, 그 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힘을 다하여 따르니 이 사실이 여지지(輿地志)¹⁹⁰⁾에 전

185) 이순신(李舜臣)의 시호이다.

186) 형조의 참의를 말한다. 형조는 법률·소송·노비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으며 참의는 정3품 관직이다.

187) 손가락을 자르는 것을 말한다. 부모님의 병환이 위중할 때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게 하면 그 효성 때문에 병이 낫는다고 한다.

188) 초하룻날과 보름을 말한다.

189)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가 살던 집 앞에 붉은 문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190) 여지도(輿地圖)를 말한다. 여지도는 조선 숙종·영조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의 군현별(郡縣別) 지도이다. 각 장(張)의 표면에 해당 군현의 지도를, 그 이면에는 민호수(民戶數)·아문(衙門) 전담의 결부수(結負數), 접경군(接境郡)과의 동서남북 거리, 성곽·조세·창고수(倉庫數)·면초경리수(面初境里數)·군항창고(軍餉倉庫) 등을 기입하였다. 책머리에는 천하총도(天下總圖)를 싣고, 이어 중국·유구(琉球)·일본 등의 각 국도(國圖)와 연경(燕京·北京)·남경(南京)·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조선전도(朝鮮全圖)·송도(松都)·경도도(京都圖) 등이 첨부되어 있다.

한다. 박영의 7세손(世孫) 윤신(閔身), 윤호(閔湖) 형제도 또한 조업(祖業)¹⁹¹⁾을 준수하였다. 모두 정성스러운 효성이 있었다. 그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한데, 의원의 말이 흰 개의 피를 쓰면 좋다고 하였다. 그 집의 흰 개는 성격이 사나워 제압하기 힘들었다. 박윤신이 개를 향하여 슬피울며, “원컨대 네 피를 얻자”고 하였더니 그 개가 머리를 숙이고 박윤신의 곁을 맴돌았다. 마침내 칼로 그 귀를 잘라 피를 취하여 아버지에게 바치니 마침내 회생하였다. (즉시 칼로 그 귀를 자르니까 개가 머리를 숙이고 이를 가는데 마치 아픔을 참는 것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정성이 하늘에 통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어머니의 병환에 단지하여 피를 내어 바쳤더니 마침내 회생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자, 아침 저녁으로 산소에 가서 3년을 호곡(號哭)¹⁹²⁾하되 비록 비바람이 불어도 한번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관가에 고하여 그 이역(吏役)¹⁹³⁾이 면제되고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정려되었다. 그 뒤에 박윤호가 무과에 급제하였다. 대체로 박영이 효로써 알려졌고 그 후손들이 능히 그 선조를 계승함이 이와 같으니, 가히 효자의 기맥(氣脈)¹⁹⁴⁾이 세월이 흘러도 쇠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녀(烈女)¹⁹⁴⁾ **청송(靑松) 심씨(沈氏)**는 가선대부(嘉善大夫)¹⁹⁵⁾ 신광철(申光徹)의 아내이다. 본읍의 남면 송당리(松堂里)에 살았는데, 병자년(丙子年)¹⁹⁶⁾ 12월에 신광철이 불일이 있어서 황해도 평산(平山)으로 가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이에 난리가 줄지에 일어났다. 신광철의 형의 처 성(成) 부인이 한 집에 살았는데 온 집안이 홍주(洪州) 땅으로 피난하려고 하면서 심씨에게 말하기를, “숙씨(叔氏)¹⁹⁷⁾께서 원행(遠行)을 하시어 비록 아직 돌아오시지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남자야 어는 곳에서나 사는 것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여자의 몸으로 홀로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반드시 참살을 당할테니 원컨대 자네는 나와 함께 떠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네”라고 하였다. 심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평산은 적군들이 모여들고 나가고 하는 요로(要路)입니다. 남편의 생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차마 혼자 살기를 구하겠습니까?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함께 뒤따라 가겠습니다. (남편이 다행히 화를 피하여 돌아오면 마땅히 뒤쫓아 가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죽는다고

191) 박영이 담당한 이전의 역(役)을 말한다. 향리나 군인들의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192) 소리를 내어 슬피우는 것을 말한다.

193) 중앙과 지방 관청에 소속되었던 하급관리인 서리(胥吏) 중 그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아전을 하는 사람을 향리(鄉吏)라고 하고 그들이 담당했던 역(役)을 이역(吏役)이라고 했다. 이역이 면제되면 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어 과거시험 등을 통해 신분상승까지 꾀할 수 있다.

194) 정조를 굳게 지킨 여자를 말한다.

195) 조선시대의 중2품 관계(官階)이다. 처음에는 문무반(文武班)에 한정하여 주어졌으나 후기에 종친(宗親)이나 의빈(儀賓)도 이 관계를 받았다.

196) 인조 14년(1636)이다.

197) 시동생을 일컫는 것이니, 성부인이 신광철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더라도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성부인이 여러번 되풀이 개유(開諭)¹⁹⁸⁾ 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이튿날 다시 말하였지만 심씨가 또 듣지 않았다. 성부인이 크게 한숨을 쉬면서, “그대의 뜻이 이미 정하여져서 다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으니, 원컨대 어린아이 하나를 나에게 맡기어 신씨 일문의 혈육이라도 보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였다. 심씨가 이에 그 둘째 아들을 내어 맡기니 나이가 겨우 5살이었다. 성부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아산(牙山) 선영(先塋)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심씨도 함께 가서 선영에 성묘한 뒤에 두 부인이 서로 마주 보고 통곡한 뒤에 헤어져서 성부인은 곧바로 홍주로 향하고, 심씨는 본가로 돌아왔다. 이같이 하여 수일이 지난 후에 심씨의 어머니 송씨(宋氏)가 용인(龍仁)에서 왔다. 대개 송씨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모시러 가고, 그 밖에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까닭에 심씨에게로 의탁하러 온 것이었다. 심씨가 어머니를 모시게 된 뒤부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멀리 떠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적군이 만약에 들어닥치면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로 걱정이 되어 밤낮없이 울음으로 나날을 보냈다. (성부인이 홍주로 떠나자) 이때 신광철이 평산으로부터 셋길로 돌아와 심씨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성부인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하였다. 심씨가 모든 까닭을 이야기하자 신광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많은 죽음에서 빠져 나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대의 지극한 정성 때문이다”라 하고 곧바로 행장을 차려 (마침내 심씨를 이끌고) 홍주의 성부인이 간 곳으로 가고자 하였다. 한 집안 식구가 함께 발행(發行)하여 마침 아산(牙山)에 도착하자 사잇길에서 갑자기 두서너명의 적을 만나니 (적군이 일행 앞으로 들어닥치니) 사람들이 놀라서 소와 말 등의 물건을 버리고 각자가 흩어졌다. 어떤 이는 울타리 밑에 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언덕진 숲속에 숨기도 하였다. 심씨는 어린 것을 안고 계집종 한 사람과 함께 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일행이 어디 있는지 궁급하여 머리를 들고 몰래 두리번거렸더니, 송씨가 적군에게 잡히어 살해되려는 모양이었다. 심씨가 급히 안고 있던 어린아이를 함께 숨어 있던 계집종에게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일이 급하다”고 하면서 마침내 몸을 날려 나가니 그 계집종이 잡아당기려 하였으나 벌써 달려가서 적군이 붙들고 있는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원컨대 나를 죽이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였다. 적이 드디어 심씨를 사로잡아 결박하여 앞으로 나아가려 가니 심씨가 땅에 엎드리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적이 철편으로 마구 때리었다. 그런 연후에 잡히어 가는 사람을 시켜 함께 붙들어 말에 태우려 하였다. 심씨가 몸무림을 치며 말에서 떨어지기를 너댓번이나 하여 온몸이 상처를 입고 피가 흘렀다. 적이 또 결박을 지어 말에 실었다. 심씨가 말에서 거꾸로 매달리어 큰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이 오랑캐놈들아, 왜 나를 빨리 죽이지 않느냐”고 하며 적을 욕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한 오랑캐가 드디어 화가 나서 긴 칼로 함부로 찢어서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인하여 그 칼로 송씨를 죽이려 하니 곁에 있던 늙이 급히 구하여 말리었다.

198)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 타이름을 이야기한다.

두 오랑캐가 함께 서서 심씨의 시신을 가리키며 서로 말을 주고 받았는데 그 말은 비록 알아 들을 수 없었으나 대개 절개를 지켜 죽은 뜻을 가상하게 여기는 듯하였다. 그 뒤에 두 명의 오랑캐는 말을 달려 가버렸다. 심씨의 어머니가 죽음에서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 가지도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심씨의 지성으로 흉악한 무리들도 감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때 잡히어 갔다 돌아온 자로써 그 일을 본 사람들은 매번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하면서 반드시 목이 막히어 울었다. 적이 떠난 뒤에 신광철이 심씨의 시체를 거두어 행중(行中)에 있던 이불로 싸서 마을 가에 고빈(藁殮)¹⁹⁹⁾하였다. 이때 심씨의 나이가 31살이었고, 그 안고 있던 어린아이는 낳은 지 6개월이라 심씨가 세상을 떠난 후 열흘이 못되어 저승으로 가 버렸다. 호란이 끝난 뒤에 아산의 선영으로 반장(返葬)²⁰⁰⁾하였다. (죽임을 당해 신광철이 그 시신을 거두어 아산의 선영 아래에 묻었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정려되었다. 그 때 사람들이 그 정문에 글을 짓기를, “몸을 돌보지 않고 적에게 뛰어 드는 일은 사내대장부도 오히려 어렵거늘, 죽기를 자기 집에 돌아가듯 하여 열녀와 효도의 두 일을 완벽하게 하였구나”고 하였다. 또 찬(贊)을 지어서 기록하였는데 그 대략은 “심씨가 성부인과 함께 떠나지 아니한 것은 남편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의리를 지키기 위함ियो, 어머니가 적에게 붙잡히자, 몸을 던져 적에게 뛰어 든 것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죽음을 피하지 않는 효성이다. 효부(孝婦)와 열녀(烈女)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 때에도 또한 있었으나, 각각 한가지 절개만을 지켰을 뿐이고 이 둘을 모두 온전히 지킨 분은 없었는데, 오직 이 심씨께서 그 위급한 때를 당하여 죽는 길을 달게 택하여, 그 열녀의 의리를 온전히 하고 또한 그 효도까지 완수하였다. 또한 흉한 오랑캐도 이 정성에 감동하였으니 고금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아! 신씨의 문중에는 기릴 만한 일이 한둘이 아니로다. 신광철의 할아버지 계형(季衡)은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왜란(倭亂) 때에 죽었고 그 형 광립(光立)은 혼조(昏朝)²⁰¹⁾에 절개를 지켰다. 그 처의 일이 또 이와 같으니 그 충절이 한 집에 함께 모인 것이 아닌가!

열녀 정씨(鄭氏)는 남촌(南村)에 사는 충위(忠衛)²⁰²⁾ 이효상(李孝常)의 아내이다. 유씨(柳氏)는 즉 이효상의 아들인 이덕원(李德源)의 아내이다. 정축년(丁丑年)²⁰³⁾ 정월 호란(胡亂)이 일어나자 이덕원의 형제는 상하 가솔들을 거느리고 목천(木川) 흑성산(黑城山)으로 피난가려 하였다. 행렬이 아산 염작리(念作里)²⁰⁴⁾에 이르자 그 할머니 장씨(張氏)가 연로한 부인이어서 병이 줄지에 더욱 심해졌다. 그 때문에 덕원의 형 덕함(德涵)이 그 할

199) 예의를 갖추지 않고 간략히 매장한 것을 말한다.

200) 타지에서 죽은 자를 고향으로 돌아와 장례지내는 것을 말한다.

201) 광해군의 조정 혹은 광해군 치세를 말한다.

202) 『평택읍지』에는 충의위(忠義衛)로 되어 있으므로 충위는 충의위의 오류이거나 줄여서 쓴 것 같다. 충의위는 5위(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된 군대로 세종(世宗) 때 처음 설치되었다. 공신(功臣)의 자손 등으로 조직되었으며 1·4·7·10월의 4차례에 선발하여 140일을 재직토록 하였다.

203) 인조 15년(1637)이다.

204) 현재의 둔포면 염작리이다.

머리를 모시고 그대로 그 마을에 남고 덕원은 그 어머니 정씨와 아내 유씨를 데리고 목천 승천동(勝天洞)에 도착하여 촌집을 한 채 얻어 그 집안을 안頓(安頓)²⁰⁵⁾ 시켰다. 그 후에 할머니의 병세가 어떤지를 알아 보려고 염작리로 되돌아 갔다. 그 밤에 정씨와 유씨가 모두 불에 타 죽었다. 대개 그때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정씨가 거처하는 곳에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 동네의 한 사람이 본래 도둑놈으로 몰래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먼저 동네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움직이게 하여 그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여 도망치려 하였다. 먼저 동네집 울타리 사이에 불을 지르고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기를, “오랑캐 기병 수십명이 동네로 뛰어 들어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며 재물을 약탈하니 동네 사람을 빨리 나와 피하라”고 하였다. 그 말이 그치기도 전에 불이 마을에 번졌다. 불빛이 하늘을 찔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급히 나와 피하는 사이에 유씨도 또한 정씨에게 권하여 빨리 빠져 나가자고 하자 정씨는 “적군의 칼에 맞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불 속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아 유씨가 말하기를 “시어머님이 나가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홀로 살기 위하여 뛰쳐 나갈 수 있으랴”하고 두 부인이 동시에 불 속에서 함께 죽었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정려되었다. 그 후에 이덕원이 동네 사람과 함께 그 도둑놈을 잡아서 죽였다.

열녀 사비(私婢)²⁰⁶⁾ **천금(天矜)**²⁰⁷⁾ 광손(廣孫)의 아내이다. 그 남편²⁰⁸⁾과 8년 동안을 같이 살다가 남편이 병으로 죽자 천금은 밤낮으로 소리를 내어 슬피 울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않아 자기의 용모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람과 상대하여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또한 그 시부모를 섬기는 것이 남편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욱 잘 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기었다. 그 형제들이 그가 어린 나이에 일찍이 과부가 된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천금을 개가(改嫁)시키려 하였다. 먼저 그 뜻을 떠 보았으나 천금은 울고 목이 메이면서 죽음으로써 거절하였다. 그 형이 몰래 다른 사람과 서로 약속하여 그 개가할 날까지 정하고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였다. 천금이 이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먼저 그 시부모께 드렸다. 다음은 그 마을에 사는 남편의 친구들을 불러 주식을 대접하면서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 내 뜻을 모르고 나를 시집보내려 하는데, 내 뜻은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만날 기회도 없겠기에 이것으로써 서로 떠나는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죽은 남편과 한 무덤에 묻히어 함께 지하에서 쫓아 노는 것이 지극한 소원이니, 원컨대 나를 남편의 무덤 곁에 묻어 주십시오. 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

205) 안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잘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206) 개인에게 소유된 여자 노비를 말한다.

207) 개인에게 소유된 남자 노비를 가리킨다.

208) 『팽성지』에는 아버지(父)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평택읍지』에는 남편(夫)이라고 쓰여있다. 글의 전후를 살펴보면 남편이 옳은 듯하다.

습니다”라 하고 눈물을 흘렸다. 좌중의 여러 사람이 좋은 말로 위로하고는 모두 돌아갔다. 천금은 그 집으로 돌아와 술을 몇 잔 마시고 취한 이후에 인하여 잠을 잤다. 그 이튿날 해가지도록 괴이하게 오랫동안 집을 나오지 않으므로 문을 열고 보니 천금은 이미 죽어 피가 방에 가득하였다. 동네 사람이 깜짝 놀라서 창황히 방에 들어가 보니 평소에 차고 있던 장도칼로 목을 찔러 자살한 것이었다. (천금이 그것을 알고 몇 잔의 술을 마시고 나서 차고 있던 칼로써 자신의 목을 찔렀다.) 그 일가들이 곧 그 시체를 남편의 무덤에 함께 묻어 주니, 이때 천금의 나이가 26세였다. 대체로 천인(賤人)의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다시 시집가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었는데, 천금은 사노의 아내이면서도 능히 정절(貞節)을 지켰으니, 세상에 썩 드문 일이다. 대저 그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 자결하여 죽는다는 것은 정부(貞婦)²⁰⁹로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경신년(庚申年)²¹⁰에 (일이 알려져) 정려되었다.

처사(處士)²¹¹ 우남양(禹南陽)의 자는 몽뢰(夢賚)고 본현의 북면(北面) 사람이다. 공이 고학(古學)²¹²을 공부하고, 벼슬할 마음을 끊었다. 감찰(監察)²¹³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나이 70여 세가 되어 죽었다. 공의 학문은 근본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듣건대 『대학(大學)²¹⁴』을 가장 오래 읽었다고 한다. 대개 유자(儒者)의 체통을 잃지 않고, 문을 닫아 걸고 독서하기를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제사에는 더욱 지극하여 물을 길는 데에도 자기가 스스로 들고, 나들이 할 때에는 반드시 아내와 마주 서서 손을 마주 잡고 절하기를 예로써 하였다. 평상시에도 서로 대하기를 손님 대하듯 하였다고 하니 가히 알만하다. 자기 부인 이외에는 여색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었다. 친구로는 오직 서화담(徐花潭)²¹⁵, 김모재(金慕齋)²¹⁶, 최원정(崔輓亭)²¹⁷ 등 몇 사람뿐이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들으면 믿지 않고 일단 확인한 다음에 사실인 즉 절교하고 다시는 더불어 교통하지 않

209) 정절을 굳게 지키는 여자를 말한다.

210) 정확히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다. 경신년은 광해군 12년(1620), 숙종 6년(1680), 영조 16년(1740), 정조 23년(1800), 철종 11년(1860)에 해당한다.

211) 벼슬을 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묻혀있는 선비를 말하며 거사(居士)라고도 한다.

212) 옛날 사람의 교훈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213) 관리들의 감찰업무를 맡은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관직이다.

214) 사서(四書) 중의 하나이다. 3강령(綱領), 8조목(條目)으로 윤리와 정치의 이념을 기록 설명하였다. 본래 『예기(禮記)』의 제42편이었던 것을 송(宋)의 사마광(司馬光)이 처음으로 때로 떼어서 만들고 그후 주자(朱子)가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만들어 주석을 더하고 이를 존송하면서부터 세상에 퍼졌다.

215) 중종 때의 학자였던 서경덕(徐敬德)이다. 자는 기구(可久), 호는 복재(復齋)·화담, 시호는 문강(文康)이고 본관은 당성(唐城)이다. 18세 때 『대학(大學)』을 배우다가 격물치지(格物致知)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 원리에 의지하여 학문을 연구하였다. 어머니의 명령으로 사마시(司馬試)를 보아 합격했을 뿐 과거에 뜻을 두지 않은 채 도학(道學)에만 전념하였다.

216) 성종 9년(1478)~중종 38년(1543)에 살았던 김안국(金安國)이다.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 시호는 문경(文敬)이고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조광조(趙光祖)·기운(奇運) 등과 함께 김굉필(金宏弼)의 제자로서 도학에 통달하였고 성리학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겨 유학진흥에 공을 세웠다.

았다. 비록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또한 그렇게 하였다. 한번은 호남의 장수가 당대의 세력자였는데 호남으로 지나는 길에 한 번 만나 보고자 하였으나 사절하고 만나지 않았다. 격조가 높고 산업(産業)²¹⁸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집안 경제가 풍족하였으니, 그에게 딸린 노비로 먼 지방에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2백인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노비를 버려 두어 형제와 종족(宗族)²¹⁹들이 함부로 빼앗아 취하여 가도 추궁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집안이 아주 가난하여져서 채소와 현미로도 끼니를 잇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 세상살이의 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공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손이 미약하여 학문한 사람은 수십인이었으나 모두 학문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그의 언론(言論)과 덕행(德行)이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 조포저(趙浦渚)²²⁰가 이 어른을 기리어 말하기를, “공자(孔子)께서는 안회(顔回)²²¹를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우선생은 본래 대대로 높은 벼슬하던 집안으로 재산이 아주 넉넉하였으나, 그의 대에 이르러 은거하여 살면서 벼슬도 하지 않고 평생토록 생업도 돌보지 않아 집안이 가난하게 되어 죽었으니 그 지조에 어찌 한 점(點)의 진루(塵累)²²²인들 있겠는가? 우선생의 정말 훌륭한 분이다. 세상에서 이르기를 이룬바 처사라는 사람들은 혹 산림에서 고상한 마음을 길러 보전하면서 스스로를 허유(許由)²²³나 무광(務光)²²⁴에 비유하지만 그 실상은 명예나 세력을 얻어 한 세상을 흔들려고 한다고 하니 이것은 본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말할 가치도 없지 않은가? 우선생같은 사람이 진실로 존경할 만하다. 우선생이 죽은 지 이미 6~70년이 지났으나 고향 사람조차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이미 적다. 다시 수십년이 지나면 누가 우선생같은 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로 미루어 보건대 시골에 묻히어 산 현인(賢人)들이 이같이 사라진 자가 진실로 또한 많을 것이니 슬픈 일이다. 내가 이 사실이 세상에 전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마침내 들은 대로 몇 마디 적어 후세에 전하려 하노라”고 하였다.

217) 조선시대 중종 때의 유명한 선비인 최수성(崔壽城)이다. 원정(輓亭)은 원정(猿亭)의 오자인 듯하다. 생몰연대는 성종 18년(1487)~중종 16년(1521)이다. 자는 가진(可鎭), 호는 원정·북해거사(北海居士)·경포산인(鏡浦山人)이고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문장·서법(書法)·화격(畫格)·음률(音律)에 정통하였다고 한다.

218)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업(生業)을 의미한다.

219)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일가를 말한다.

220) 선조 12년(1579)~효종 6년(1655)에 생존한 조익(趙翼)을 말한다. 포저는 호이고 자는 비경(飛卿), 시호는 문효(文孝)로 풍양(豐壤)을 본관으로 한다.

221) B.C. 521~B.C. 490.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현인(賢人)으로 공자가 가장 신임하였던 제자이다. 학문과 덕이 특히 높아서, 공자도 그를 가리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하였다.

222) 세상살이에 얽매인 너저분한 일들을 가리킨다. 속루(俗累)·물루(物累)라고도 한다.

223) 중국 요(堯) 임금 때의 고사(高士)로 요임금이 천하를 그에게 양여(讓與)하려 했지만 거절하고 기산(箕山)으로 들어가 숨어 버렸다.

224) 고대의 은사(隱士)이다.

남촌(南村)에 산 충의위(忠義衛) 이덕함(李德涵)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밤이면 결박당하여 그들 진중에서 잤다. 행렬이 해서(海西)²²⁵⁾에 이르러서는 매번 밤이면 철장(鐵杖)²²⁶⁾으로 그의 두 발을 묶고 포대로 덮고서는 오랑캐 너댓 사람이 그 위에서 자곤 하였다. 이덕함이 손으로 그 쇠를 꺾었는데, 그 쇠는 굵기가 엄지발가락만이나 하고 길이가 3척(尺) 정도 되었다. 한 여인이 같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함께 풀리어 났다. 그 여자가 이덕함을 붙들고 울면서 함께 달아나기를 애걸하므로 이덕함이 왼쪽 겨드랑이에 그 여자를 끼고 오른손으로는 그 철장을 잡고서 그 포대를 해집고 나왔다. 오랑캐들이 깜짝 놀라서 뒤를 쫓아왔다. 이덕함이 몸을 돌이켜 그 쇠지팡이로 후려치니 오랑캐가 땅에 넘어졌다. 이에 오랑캐 수십명이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왔다. 이덕함이 또한 후려치고 달아나고 하기를 여러번 한 끝에 적에게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도로 본가로 돌려 보내고 그 철장은 일찍이 본가에 있었다고 한다. 본디 이덕함의 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덕함에게 이르기를, “당신 같은 장사로서 만약에 출신(出身)²²⁷⁾한다면 가히 세상에서 크게 쓰일 것이다”고 하였다. 덕함이 말하기를, “제주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해를 입는데, 스스로 화를 취할 길을 나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침내 과거에 응하지 않고 일생을 초야에 묻히어 살았으니 정말 아까운 일이다.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²²⁸⁾ 홍윤성(洪允成)²²⁹⁾은 본읍의 서촌(西村) 염정리(鹽井里)에 살았다. 세조 때 정란(靖亂)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임금의 사랑을 받아 조정이 그에게 복종하였고 상으로 받은 물건이 굉장히 많았다. 또한 재산을 모으는 것에 정신이 없어 사망에서 실리어 오는 짐바리가 동네 입구를 매울 정도였고 문밖에 술을 걸고 묵는 사람이 거의 만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집을 크게 짓고 또 못가에 정자를 지었는데 임금께서 친히 경해(傾海)라는 두 글자를 지어서 내려 주셨으니 임금의 은우(恩遇)²³⁰⁾의 성함이 이와 같았다. 그때의 높은 벼슬아치와 이름난 선비들을 불러서 매일 잔치 베푸는 일로 일과를 삼다시피 하였다. 산해진미가 소반 위에 가득하니 만냥짜리 잔치상도 이보다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요, 맑은 노래와 고운 춤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손님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 반

225) 황해도(黃海道)의 별칭이다. 서해안의 서쪽에 있다는 뜻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인 해동(海東)의 서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26) 단어상으로는 철로 만든 지팡이인데, 이것으로 발을 묶었다고 하니 지팡이정도 길이로 만들어진 얇은 철을 말하는 듯하다.

227) 관직에 등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228) 부원군은 임금의 장인이나 정1품 공신(功臣)에게 주던 칭호이다. 보통 받는 사람의 본관(本貫) 지명(地名)을 앞에 붙이고 혹은 같은 부원군이 생길 때는 옛날의 지명이나 다른 글자를 넣어 이름을 붙였다.

229) 세종 7년(1425)~성종 6년(1475). 자는 수옹(守翁), 시호는 위평(威平), 본관은 회인(懷仁)이다. 세종 32년(1450)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단종 1년(1453)에 수양대군(首陽大君)과 함께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공신의 호를 받았다.

230) 은혜를 베푸는 대우(待遇)를 뜻한다. 임금의 총애로 해석할 수 있다.

드시 엉망으로 취한 후에 그치니 비록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그 위세에 놀리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술잔에 술을 넘치도록 하여 마시고는 꺼꾸로 실려 집에 돌아가곤 하였다. 기생에게 주는 화대의 비용도 또한 굉장히 많았다. 20여 년 동안을 부귀로서 스스로 즐기고 성세(聲勢)²³¹를 떨치고 살았으니,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가 영상(領相)²³²일 때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본현의 현감(縣監)이 녹사(錄事)²³³로 벼슬길에 올라 본현의 현감이 된 사람이라 상공(相公)²³⁴께 와서 알현하였다. 상공이 편복(便服)²³⁵으로 현감을 맞아 보았다. 현감이 인사하고 물러나간 뒤에 즉시로 사람을 보내어 상공의 가노(家奴)²³⁶ 십여명을 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현감은 비록 벼슬은 낮다고 하더라도 토주(土主)²³⁷이고 상공은 비록 귀하다고 하더라도 이 고장의 백성이다. 현감이 예복(禮服)을 입고 나아가 알현을 하는 데에 상공이 편복으로 맞이하니 어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튿날 가두어 둔 사람을 풀어 주었다. 상공이 휴가를 끝내고 조정으로 돌아가서 임금을 뵈 자리에서 지나간 경로의 각 읍 수령들의 잘잘못을 논할 때에 상공이 대답하여 평택현감(平澤縣監)이 가동(家僮)을 잡아 가둔 일을 아뢰었다. 임금께서 칭찬하였고 한참 지나서 특별히 평택현감에게 통정(通政)²³⁸의 가자(加資)²³⁹를 내리었다. 그때의 현감의 성명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미관말직(微官末職)으로서 정승과 같은 존귀한 자에게 능히 그 체통을 지키는 것이 이와 같으니 가히 위무(威武)로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처사(處士) 박천건(朴天健)의 자는 자이(子以)인데, 남양(南陽)으로부터 와서 본현에 우거(寓居)²⁴⁰하였다. 천품(天分)이 다른 사람과 특이하게 달랐고 어려서부터 독서하였는데 의리(義理)에 대해 해박하였고, 경사(經史)²⁴¹에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이런 것을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서도 학문이 정통하였다. 모든 경서 중에서도 『중용(中庸)』²⁴²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주역(周易)』²⁴³의 이치에 밝았다. 심지어 곡예(曲藝)²⁴⁴나 상기(常技)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서, 그 때에 남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도

231) 명성(名聲)과 위세(威勢)를 말한다.

232) 영의정(領議政)의 약칭이다. 영의정은 조선시대의 최고 관직으로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1품의 벼슬이며 백관(百官)의 통솔과 서정(庶政)의 감독을 담당했다.

233) 각 관아에 소속되었던 하급 이속(史屬)의 직명(職名)으로 품계(品階)가 있는 사람은 임명될 수 없었다. 재직 임기 514일이 만료되면 품계를 주었고 중6품의 품계를 받고 퇴관한 후에 지방수령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령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234) 상공은 재상을 높여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홍윤성을 가리킨다.

235) 관복(官服)이 아닌 평상시에 입는 옷을 말한다.

236) 개인에게 사사로이 소유된 노비 즉 사노비(私奴婢)를 말한다.

237) 그 땅을 다스리는 장관 즉 최고 관리를 의미하여 여기서는 현감을 가리킨다.

238)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문산계(文散階)인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약칭이다.

239) 품계(品階)를 승격시키는 것을 말한다.

240) 타향에서 임시로 사는 것을 말한다.

241) 좁게는 성인이 지은 경서(經書)와 역사책인 사서(史書)를 말하고 넓게는 중국 서적의 분류법에 의한 경사자집(經史子集) 즉 경서, 사서, 제자류(諸子類), 시문집을 통칭하여 모든 종류의 서적을 말한다.

곧잘 적중하였으나 겉으로 나타내는 일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알지 못하였다. 얼굴이 특이하게 생겼으면서도 위엄이 있고 풍채가 당당하니, 만나는 사람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굴복하였다고 한다. 공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자기의 명수(命數)²⁴⁵⁾를 알아서 자기는 불우하게 지낼 팔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장성하여 공의 어머니가 과거 보러 가기를 권하였더니, 공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서 시문(時文)의 각체(各體)를 얻어서 한번 보고는 다시는 책을 펼쳐 보고 공부하는 일이 없이 과거보는 장소로 들어가 대과(大科)²⁴⁶⁾·소과(小科)²⁴⁷⁾에 모두 합격하고 5장(場)을 모두 통과하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 아뢰고는 회시(會試)²⁴⁸⁾에는 나아가지 않고 말하기를, “글이라는 것으로 과거에 급제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저의 팔자에 없는 것이야 어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문장이 훌륭하였지만 글을 쓰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름도 당세에 떨치지 않아 이름이 인멸되고 후세에 전하지 않으니, 문달(聞達)²⁴⁹⁾을 구하지 말자는 것이 공의 본심이였다. 공은 비록 서운해 하지 않았지만 뒤에 그를 아는 사람은 탄식하기를 마지 않았다. 김(金) 상공(相公)이 어렸을 때 항상 공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이미 상국공(相國公)²⁵⁰⁾이 되었어도 위엄있게 제자로서 대접하고 김 상국(相國)도 존경하여 섬기어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예절을 더욱 공손하게 지키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모두 아름답게 여기었다. 지금 전하는 말에는 이전의 현감이었던 세표(世杓)가 공의 손자인데, 그가 아이였을 때 그 머리를 어루 만지면서 말하기를 “이 아기가 이 마을의 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공이 죽은 지 50여년 후에 과연 그 말같이 되었다고 한다.

진사(進士)²⁵¹⁾ 신식(申埴)의 자는 사직(士直)이고 평산(平山) 사람이다. 문장, 재주와 덕행이 소과(小科)에 그칠 사람이 아니었다. 비록 운수가 불길하여 여러번 과거를 보았으

242) 중국 고대의 철학 서적인 사서(四書) 중 하나이다. 공자(孔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었다고 한다.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에 있는 「중용편(中庸篇)」이 송(宋)나라 때 단행본이 된 것으로,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와 함께 사서로 불리고 있다.

243) 유교의 경전(經典) 중 삼경(三經)의 하나인 『역경(易經)』이다.

244) 하찮은 기술을 가리킨다.

245) 자신의 운명이나 수명을 말한다.

246) 조선시대 관리가 될 대상자를 뽑는 과거 중 문과(文科)의 별칭이다. 대과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3단계로 이루어졌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험보는 식년시(式年試)와 특별한 경우에 임시로 보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었다.

247) 조선시대 관리가 될 대상자를 뽑는 과거 중 대과(大科)를 보기 전에 치러야 할 과정이다. 소과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합격하면 진사(進士)나 생원(生員)이라고 불리면서 대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248) 보통 소과의 2단계인 복시(覆試)를 일컫는다. 그러나 위에서 대과와 소과의 5장을 모두 통과하였다고 하니, 대과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듯하다.

249) 명성이 많이 알려지고 출세하는 것을 가키린다.

250) 위의 상공(相公)과 같은 뜻이다.

251) 과거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던 칭호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진사 시험에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었고 초시와 복시에 모두 합격한 자를 사류(士類)에 참여하게 된 자격을 얻었다는 뜻인 '진사'라고 불렀다. 진사는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할 자격을 얻었으며 하급 관리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나 모두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공이 가르친 사람으로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셋이고 상사(上舍)²⁵²⁾ 한 사람이 여덟이었다. 낙향(落鄕)한 뒤에도 높은 사람들이 연이어 이르고 수학하러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것이 남중(南中)의 재백(宰伯)이 된 까닭이다. 만년에는 경학(經學)²⁵³⁾에 공교하였다. 퇴거하여 고향에 서실(書室)을 세우고 후진들을 불러 들어 가르치고 인도하니 책을 짚어지고 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심히 많았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엄격한 교육 지침을 만들어 강업(講業)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본현은 본래 문학을 숭상하는 기풍이 없었는데 이로부터 후생들이 차차 공부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여 대과와 소과의 초시(初試)에 합격하는 자가 서로 이었고 혹은 한 마을에서 한번의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5~6인에 이르렀으니 향선생(鄕先生)이라고 칭하여진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상국(相國)²⁵⁴⁾ 남구만(南九萬)²⁵⁵⁾이 아산에 거할 때에 공의 이름을 듣고 찾아와서 아들과 손자들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으니 그 편지가 지금껏 전한다. 만약에 문장과 경학이 높지 않았다면 상국이 공경하여 대접함이 어찌 이와 같았겠는가? 간행된 『팽성지(彭城誌)』도 바로 그가 지은 것이다.

토산(土產)²⁵⁶⁾

본현에서는 도갱(稻糠)²⁵⁷⁾이 가장 많이 난다. 서거정(徐居正)²⁵⁸⁾의 시에 “뜰에 이미 가을이 깊어지니 도갱이 풍족하구나”라고 한 부분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밭곡식으로는 보리와 콩[菘]이 토질에 맞고, 기정黍(稷)·조粟(粟)·적두(赤豆)·녹두(菘豆)·목화(木花)는 모두 토산이 아니다. 본현의 토지에는 원래 논에 댈 만한 물이 나오는 곳이 없는 까닭으로 농사꾼들은 도갱(稻糠)을 마른 탕에 심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 봄에 많은 물이 있더라도 여름에 가뭄이 들면 반드시 곡식이 제대로 익지 못하니, 이곳이 다른 읍보다 가뭄을 심하게 입는 까닭이다. 대개 이 읍은 염분이 많아 곡식이 않되는 땅이고 땅의 등급은 매우 낮아 지력(地力)이 강하지 않으니 혹 풍년을 만나도 수확하는 곡식이 산전(山田)²⁵⁹⁾에

252) 상사는 국자감의 학생을 말한다. '삼사하였다'는 것은 초시에 합격하여 국자감의 학생이 되었다는 의미다.

253) 경서(經書)의 뜻을 연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254) 백관(百官)의 우두머리인 재상(宰相)의 통칭이다. 진시황(秦始皇)이 여불위(呂不韋)를 임명한 데서 시작되었다.

255) 인조 7년(1629)~숙종 37년(1711). 자는 설로(雪路), 호는 약천(藥泉)·미재(美齋),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본관은 의령으로 현령(縣令)을 역임한 남일성(南一星)의 아들이다. 효종 7년(1656)에 별시(別試)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며 숙종 때 소론(少論)의 거두로서 활동하였다.

256) 『평택읍지』에는 이 항목이 「6면의 마을 이름(六面村名)」과 「불우(佛宇)」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평택읍지』에는 '봉어' 이하의 내용이 없다.

257) 메벼의 일종이다.

258) 세종 2년(1420)~성종 19년(1488). 자는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佳亭),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본관은 대구(大邱)로 목사(牧使)를 역임한 서미성(徐彌性)의 아들이고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외손이다. 성종 26년(1444)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종1품인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창경궁(昌慶宮)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의 전당(殿堂)·정각(亭閣)·문(門)의 이름을 지었다.

비해 반도 되지 않는다. 산림에서 땀나무를 구하는 이익은 없고 오직 밭 사이에서 풀을 베어 땀거리로 사용할 뿐이다.

닭. 『본초강목(本草綱目)』²⁶⁰에서 말하기를 “중국 사람이 닭 한 마리를 얻었는데, 푸른 색과 검은 색, 붉은 색을 띠고 있었고 깃털이 선명하였으며 꼬리가 몇 척(尺) 정도의 길이였다. 이것은 조선 충청도 평택 소산인테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게 여겨 애완용으로 사용하였다. 대개 꼬리의 길이가 몇 척이 되는 닭은 지금 비록 볼 수 없지만 푸르고 검은 색을 띤 것은 과연 있다. 이 닭을 익혀서 맛을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매우 맛이 좋다”고 하였다.

붕어(鰱魚)는 제언(堤堰)²⁶¹ 사이에 있다.

- 지황(地黃)²⁶²은 황토(黃土)의 낮고 습한 곳에 기를 만하다.
- 황금(黃芩)²⁶³은 3·4월이나 8·9월에 채취한다.
- 택사(澤瀉)²⁶⁴는 제방, 습지 같은 곳에 있다.
- 나문재(海緋)²⁶⁵는 개펄 근처에서 나는데, 연할 때에는 먹음직하다.
- 인초(茵草)²⁶⁶는 제방 사이에 있다. 1년에 두 번 베어 엮어서 자리로 사용한다.

259) 평지가 아닌 산에 있는 밭을 말한다.

260) 『팽성지』에는 ‘본초강(本草綱)’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택읍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본초강목』은 중국 명(明)나라 때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이 엮은 약학서(藥學書)이다. 약용(藥用)으로 쓰이는 대부분의 것을 자연분류를 주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총계 1,871종의 약재가 망라되어 있다.

261) 방죽이나 제방(堤防)을 말한다.

262) 현삼과의 다년초로 약용식물로서 재배한다. 뿌리는 굵고 육질이며 옆으로 자라고 적갈색이다. 뿌리를 지황이라고 하며 생것을 생지황, 건조시킨 것을 건지황, 찌서 말린 것을 숙지황이라고 한다. 단맛이 있으나 다소 쓴맛이 돌며, 보혈강장제·지혈제·해열제로서 빈혈·하혈·토혈·허약체질에 사용한다.

263) 꿀풀과의 다년초로 산지의 풀밭에서 자란다. 3월 3일에 뿌리를 캐어 그늘에서 말려 사용하였다. 한방에서 뿌리를 해열·이뇨·지사·이담 및 소염제로 이용한다.

264) 택사과의 다년초로 습지에서 자란다.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데, 뿌리줄기는 한방에서 이뇨제·수종 및 임질에 사용한다.

265) 명아주과의 1년초로 바닷가에서 자란다.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고 곧게 서며 가늘고 긴 가지를 치는데 높이는 1m 정도이다. 잎은 어긋나고 다다다닥 붙으며 녹색으로 좁은 선형이고 길이는 1~3cm정도이다. 어린 잎을 식용한다.

266) 사철쑥 또는 더위지기·등심초(燈心草)라고도 한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데 방에 까는 다다미의 표면을 덮는 자리의 재료로 쓰고 그 밖에 방석·돛자리 등을 만든다. 생약의 등심초는 줄기의 속을 말린 것으로 한방에서는 치습(治濕)·사습제(瀉濕劑)·이뇨 등에 사용한다.

사례(事例)²⁶⁷⁾

전안(田案)²⁶⁸⁾

기해(己亥)²⁶⁹⁾ 양안(量案) 원장(元帳)²⁷⁰⁾에 전답(田畓)²⁷¹⁾ 총 수 1,779결(結) 30부(負)

진전(陳田)²⁷²⁾ 677결 1부

진답(陳畓) 550부

포락²⁷³⁾된 것은 300결 26부

현재 중복된 논 46부

합계 1,477결 78부, 현재 감소된 것은 608결 9부

기전(起田) 267결 41부

기답(起畓) 667결 51부

합계 954결 92부, 현재 감소된 것은 85결 20부

여러 궁가의 면세질(諸宮家免稅秩)

- 능원대군방(綾原大君房)²⁷⁴⁾
- 김귀인방(金貴人房)²⁷⁵⁾
- 순화군방(順和君房)²⁷⁶⁾
- 인성군방(仁城君房)²⁷⁷⁾
- 임해군방(臨海君房)²⁷⁸⁾

267) 이하의 항목들은 『평택읍지』에 없는 것들이다.

268) 조선시대의 토지대장(土地臺帳)으로 양안(量案)이라고도 한다. 전답(田畓)의 소재·위치, 전품(田品)의 등급·형상, 결부수(結負數:면적), 자호(字號) 등을 기록한 것으로, 양전(量田:토지 측량)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269) 효종 10년(1659)이다.

270) 거래를 계정별(計定別)로 기록·계산하는 장부이다.

271) 논과 밭을 말한다.

272) 고려·조선시대에 전안(田案)에는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고 황무지로 묵힌 땅으로, 영진전(永陳田)이라고도 한다.

273)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것을 말한다.

274) 능원대군방은 능원대군의 궁방전을 의미한다. 능원대군은 인조(仁祖)의 동생으로 추존된 원종(元宗)의 아들이다. 태어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며 효종 7년(1656)에 사망하였다. 궁방전은 후비·왕자대군(王子大君)·왕자군(王子君)·공주·옹주 등의 궁방에 소요되는 경비와 죽은 뒤의 제사 비용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이다.

275) 선조의 후궁으로 후에 인빈(仁嬪)이 된다. 소생으로 신성군(信城君)이 있다.

276) 순화군은 선조(宣祖)와 순빈(順嬪) 김씨의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강원도로 군사모집을 갔다가 임해군과 함께 왜군의 포로가 되기도 하였다.

277) 인성군은 선조와 정빈(靜嬪) 민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광해군이 폐모(廢母)할 때 그 의논에 참석하였던 것 때문에 인조 6년(1628)에 진도로 귀양보내어 졌다가 왕명으로 자살하였다.

278) 임해군은 태어난 때가 정확하지 않으며 광해군 1년(1609)에 죽었다. 선조(宣祖)의 맏아들이자 광해군의 형으로 광해군 즉위 후 역모죄로 몰려 살해되었다.

- 경창군방(慶昌君房)²⁷⁹⁾
- 충훈부(忠勳府)²⁸⁰⁾ 수어청(守禦廳)²⁸¹⁾

제반위전답질(諸般位田畝秩)

교위(校位)²⁸²⁾, 관아록공수위(官衙祿公須位)²⁸³⁾, 관屯(官屯)²⁸⁴⁾, 역공수위(驛公須位)²⁸⁵⁾, 역마위(驛馬位), 훈련도감속적물전답(訓練都監屬籍沒田畝)²⁸⁶⁾

재곡(財穀)

대동저치미(大同儲置米) 23석(石)
 호조미(戶曹米) 1석 3두(斗) 9승(升)
 상평청미(常平廳米) 14석 10두 7승
 정조(正租) 38석 14두 7승
 진휼청미(賑恤廳米) 10두 7승
 정조 1,409석 7승
 태(太)²⁸⁷⁾ 11석 9승
 춘모(春牟)²⁸⁸⁾ 1,036석 13두
 현재 적두(赤豆) 2석 3승
 통영회(統營會) 내외(內外) 정조 1,016석 6두 3승
 이상의 재곡은 지금 혁파되었다.
 갑자년(甲子年)의 합계는 곡식 366석
 별도로 준비한 사창환미(社倉還米)는 732석

279) 선조의 아홉째 아들이다.

280) 국가에 공이 많은 공신(功臣)들을 임명하던 관청이다. 공신도감(功臣都監)·충훈사(忠勳司)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281) 인조 4년(1626)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축하고 그 부근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진(鎭)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된 군영(軍營)이다.

282) 향교를 위해 설치된 토지인 듯하다.

283) 지방 관아에 소속된 관리들의 녹봉을 주기 위해 설치된 토지이다.

284) 지방관아의 일반 경비에 보충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이다.

285) 역의 운영에 필요한 물건 등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이다.

286) 적몰되어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듯하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이후 창설되어 도성수비를 맡은 군대이다.

287) 콩을 말한다.

288) 봄밀을 가리킨다.

공안(貢案)²⁸⁹⁾

교노비(校奴婢)²⁹⁰⁾ 2명, 관노비(官奴婢)²⁹¹⁾ 5명

군안(軍案)²⁹¹⁾

병조(兵曹)²⁹²⁾ 기병(騎兵) 148명

보병(步兵) 24명

금군보(禁軍保)²⁹⁴⁾ 19명

청과역보(靑坡驛保) 5명

훈련도감(訓練都監) 포보(砲保) 32명

군향보(軍餉保) 7명

어영청(御營廳)²⁹⁵⁾ 상번군(上番軍) 33명

자보(資保) 35명

작미보(作米保) 70명

수어청(守御廳)²⁹⁶⁾ 아병(牙兵)²⁹⁷⁾ 450명

사복시보(司僕寺保)²⁹⁸⁾ 6명

장악원(掌樂院)²⁹⁹⁾ 악공(樂工)으로 양민 7명

균역청(均役廳)³⁰⁰⁾ 선무군관(選武軍官)³⁰¹⁾ 25인

순영(巡營) 재인(才人) 9명

작미(作米) 아병(牙兵) 74명

병영(兵營)에 속한 아병 2명

289)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예산표이다.

290) 향교에 소속된 노비로 보인다.

291) 관아에 소속된 노비이다.

292) 군적(軍籍)이라고도 하며, 군인의 주소·성명·학력·경력 등을 적어 군인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밝힌 장부이다.

293) 무관 관리의 선발, 군대의 일, 왕의 호위, 우역(郵驛)에 관한 일, 병기(兵器)에 관한 일과 서울의 성문과 민가의 경비, 궁궐문 열쇠의 관리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청이다.

294) 금군은 궁중을 지키고 임금의 거동할 때 호위와 경비를 담당하는 군대이다. 보(保)는 군보(軍保)로 조선시대에 직접 균역(軍役)을 담당하는 정병(正兵)의 농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균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후에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균역을 면제해주고 대신 삼베나 무명 따위를 받았다.

295) 조선시대 서울에 있었던 균영(軍營)이다. 효종 3년(1652)에 설치되었고 장어영(壯御營)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다.

296) 조선시대의 군영으로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그 부근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진(鎭)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297) 대장의 휘하에 있는 병사를 말한다.

298) 사복시는 궁중의 탈 것인 가마와 말 그리고 목장(牧場) 등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299)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300)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면서 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영조 26년(1750)에 설치된 관청이다.

301) 경기·충청·황해·전라·경상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 시험을 본 후 뽑아 올린 군관을 말한다.

좌영(左營) 병(兵) 16명, 보(保) 16명

속오군(東伍軍)³⁰² 140명

방어영(防禦營) 수군(水軍) 15명

본관(本官)에 소속된 군관(軍官) 9인

인리(人吏)³⁰³ 17인

통인(通引)³⁰⁴ 4인

사령(使令)³⁰⁵ 5명

잡보(雜保)

정조(正朝)³⁰⁶ 진봉(進奉)³⁰⁷ 호장보(戶長保)³⁰⁸ 7명

약보(藥保) 12명

풍속(風俗)

본현은 들판으로써 이미 산천의 육정(毓精)³⁰⁹이 없는데 경내(境內)의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진실로 이상한 일이다. 우선 근세로 이야기하면 나이가 8·90을 넘긴 자가 한 마을 안에 어떤 동네는 7·8인이거나 4·5인이 되기도 하니 오래 살고 요절하는 장단(長短)은 풍토(風土)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팽성총론(彭城摠論)

우리나라의 주현(州縣) 360개 중 피폐한 고을로 논하자면 반드시 평택을 이야기 하는데 그 조잔(凋殘)³¹⁰한 것으로는 정말로 조선 8도(道)에서 제일이다. 사면(四面)의 경계에 10여 리가 되는 땅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고을의 뒤에 있는 주산(主山)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경내의 사람들이 일시에 모두

301) 경기·충청·황해·전라·경상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 시험을 본 후 뽑아 올린 군관을 말한다.

302) 선조 27년(1594) 임진왜란 때 국가에 역(役)을 지지 않은 양인(良人)과 천민(賤民) 중에서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편성된 군대로 평시에는 군포(軍布)를 내고 유사시에만 소집되었다.

303) 아전 또는 서리(胥吏)를 말한다.

304) 지방 관청에서 소속되어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이다.

305) 관청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이다.

306) 정월 초하룻날 아침을 말한다. 이 날에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많은 행사가 있다.

307) 바친다는 의미다.

308) 호장은 향리(鄕吏)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309) 사물을 기르는 정기를 말한다.

310) 시들고 쇠잔한 것을 말한다.

모인다”고 하니 이 고을의 넓이와 인원이 작은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하물며 이 읍의 갯벌가는 염분이 많아 곡식이 안되는 땅이고 또한 관개(灌溉)할 만한 것이 없어 조그만한 가뭄을 만나면 그때마다 재난을 입으니 만약 큰 장마를 만나면 사면의 평야가 모든 물이 모여 흐르는 까닭에 회양(懷襄)의 재앙³¹¹⁾을 면하지 못하니 본현이 자주 흉년을 만나는 이유이다. 또 본현은 경기와 호서 사이에 끼여 있고, 본도(경기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큰 길이므로 크고 작은 사신들의 접대하는 일이 있는데 왼쪽으로는 직산(稷山)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본읍이 있으니 가히 잔폐(殘廢)한 읍의 책임이 어려움을 가히 알 수 있다. 인물로서 이야기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적(事蹟)을 들추어 보니, 효자도 있고 충신도 있으며 학행(學行)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절의(節義)가 있었던 사람도 있으니 10집밖에 안되는 읍에서도 또한 충신이 있음을 가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역(賦役)으로 말하면, 온 고을 안에 여러 방(房)의 면세와 각 관청의 둔전(屯田)의 수효가 심히 많아서 인민(人民)이 세금을 내는 밭은 겨우 그 반이 되니 그 역역(力役)이 심하게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 토산물에 대하여 논하면, 본현은 개펄 옆에 있는 들판으로 큰 바다에 직접 붙어 있지도 않고 또 두메산골도 아니어서 수륙(水陸)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도 모두 결핍되어 있다. 명승(名勝)에 대하여 말한다면, 본현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는 고을이 아니고 정사(亭榭)³¹²⁾나 누대(樓臺)³¹³⁾ 같은 것도 거의 없다. 그 풍속을 논하자면, 세상 인심은 이미 떨어졌고 풍습은 이미 변하여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풍속이 다르고 오직 그 사족(士族)만이 집안의 풍습을 본받고 유풍(遺風)을 전하는 외에는 자못 무너지고 해이해져서 점점 옛날과 같지 않게 된다. 그 사이에서 심한 것은 형제간에 재산 싸움을 하여 재판까지 일으키는 일이 혹 있고 심지어 소민(小民)³¹⁴⁾들에게서 더욱 심한 것은 흉년을 여러 번 겪고 항심(恒心)³¹⁵⁾을 잃어서 걸핏하면 곳곳에서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록 관청의 위엄으로도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니 이러한 땅에서 백성의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의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다. 대체로 이 읍은 옛날의 팽성부(彭城府)로, 강등되어 하팔현(河八縣)이 되고 또 고쳐져서 평택(平澤)이 되어, 혹 경기에 속하기도 하고 혹 호서(湖西)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혹 천안군(天安郡)에 합해지거나 직산현(稷山縣)에 합해지기도 하였다. 만력(萬曆) 경술년(庚戌年)³¹⁶⁾에 이르러서 비로소 옛날처럼 고을이 다시 설치되었으므로 기유년(己酉年)³¹⁷⁾

311) 회산양릉(懷山襄陵)의 준말이다. 홍수가 나서 산이나 릉이 모두 물에 잠긴다는 의미이다.

312) 산수(山水)가 좋은 곳에 놓기 위하여 지은 정자(亭子)를 말한다.

313) 층이 있는 누각(樓閣)을 말한다.

314) 미친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평민을 의미한다.

315)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이다. 일정불변한 마음, 즉 사람이 항심 지니고 있는 착한 마음을 가리킨다.

316) 광해군 2년(1610)이다.

이전의 선생안(先生案)은 모두 고증할 만한 문헌이 없어서 경술년 이후의 관원만 그 순서에 따라 일일이 기록하였다. 그 중 치적(治績)이 있는 사람은 마을의 여론을 구하여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주를 달아 그 치적의 대략을 기록하여 후일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진사(進士) 신식(申植)이 짓다.

317) 광해군 1년(1609)이다.

수원부(水原府) — 신증동국여지승람

동쪽으로 용인현 경계까지 21리, 남쪽으로 충청도 평택현 경계까지 50리, 같은 현 경계까지 59리, 진위현 경계까지 22리, 서쪽으로 남양부(南陽府) 경계까지 20리, 같은 부(府) 경계까지 1백 13리, 북쪽으로 과천현(果川縣) 경계까지 39리, 서울까지는 88리가 된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수성군(水成郡)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가 남쪽으로 정벌할 때에, 이 고을 사람 김칠(金七)·최승규(崔承珪) 등이 귀순하여 힘을 다하였으므로, 그 공로로 승격되어 수주(水州)가 되었다. 고려 성종이 도단련사¹⁾를 두었는데, 목종이 혁파하였고, 현종 9년에 지수주사(知水州事)로 회복하였다. 원종 12년에 착량(窄梁)을 방수(防戍)하던 몽고 군사가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침노하고 노략질하자, 섬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하게 여겨 몽고 군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부사(副使)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여 평정하였으므로, 그 공로로 도호부로 승격시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뒤에 또 승격시켜 수주목(水州牧)이 되었는데, 충선왕 2년에 모든 목사(牧使)를 없앴에 따라 강등되어 수원부가 되었다. 공민왕 11년에 홍건적(紅巾賊)이 선봉대를 보내어 양광도(楊廣道)의 주군(州郡)에게 항복하기를 권유하였다. 수원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맞이하고 항복하여, 적의 형세를 더욱 강성하게 만들었으므로 드디어 강등시켜 군이 되었다. 군 사람들이 재상 김용(金鏞)에게 후하게 뇌물을 바쳐 다시 부(府)가 되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고쳤고, 세조 때에 진(鎭)을 설치하고 또 판관(判官)을 두었다.

속현

쌍부현(雙阜縣) 부 서쪽 45리 되는 곳에 있는데, 옛날 육포(六浦)이다. 고려 현종

1) 도단련사(都團練使)는 고려시대 995년(성종 14)에 12주목제(州牧制)가 12군(軍) 절도사제(節度使制)로 개편되면서 새로 설치된 지방관직이다. 7군데에 두어졌으며, 1105년(목종 8)에 폐지되었다.

9년에 와서 본부에 예속되었다. 용성현(龍城縣) 부 남쪽 50리 되는 곳에 있는데, 본래 고구려의 상홀현(上忽縣), 또는 차홀(車忽·수릿골)이라고 한다. 신라에서 차성(車城)으로 고쳐 당은군(唐恩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와서 본부에 예속되었다.

진관

도호부가 3이고 부평(富平)·남양·인천(仁川), 군이 2이고 안산(安山)·안성(安城), 현이 7이다. 진위·양천(陽川)·용인·금천(衿川)·양성(陽城)·통진(通津)·김포(金浦)

관원

부사(府使)·판관·교수(教授) 각 1명이다.

신증

중종 21년에 부의 백성으로 그의 부모를 죽인 자가 있어서, 강등되어 군이 되었다.

관원

군수(郡守) 1명이다.

군명

한남(漢南)·수성(隋城)·매홀(買忽)·수성(水城)·수주(水州)

성씨

본부(本府) 최·김·이·서·백 다른 곳에서 온 것. 백·최·이·방·하 모두 촌성(村姓)이다. 쌍부 서·송·박·이·심·신(愼). 용성 차·송·임(任)·장. 청구(靑丘) 정·박·이. 공촌(公村) 김·섭(葉). 내미(內彌) 이·백. 심곡(深谷) 차. 오타(五朶) 여(呂)·김. 주석(柱石) 송·김·최·차. 쟁홀(爭忽) 이·김·박. 정송(貞松) 이·김·최·윤. 양간(楊干) 박·김. 사정(奢井) 도(都). 금음촌(今音村) 여(呂)·이. 종덕(宗德) 유(柳)·서·이·차. 분촌(盆村) 백·전. 사랑(沙梁) 견(堅)·김·주. 공이(工二) 송. 유계(楡梯) 차.

2) 진산(鎭山) : 한 지방을 진정시켜 편안하게 하는 명산(名山)을 말한다.

산천

발점산(鉢岾山) 부 남쪽 2리 되는 곳에 있는데 진산²⁾이다. **광교산(光敎山)** 부 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용인현의 서쪽 20리 지점이다. **무봉산** 부 동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일명 만의산(萬義山)이라고도 한다. **독성산(禿城山)** 부 남쪽 7리 되는 곳에 있다. **홍법산(弘法山)** 부 서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흥천산(興川山)** 쌍부현에 있다. 바다 부 서남쪽 63리 되는 곳에 있다. **사근천(沙近川)** 부 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근원은 광교산에서 나와서, 또 동쪽으로 흘러 대천으로 들어간다. **대천(大川)** 부 동쪽 8리 되는 곳에 있다. 사근천과 용인현 구흥천(駒興川)이 합류하는 곳이다. 또 남쪽으로 흘러 광덕현(廣德縣)을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구이포(仇二浦)·진목포(眞木浦)·적진포(赤津浦)** 모두 쌍부현에 있다.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 부 남쪽 67리 되는 곳에 있다. 대천과 진위현 장호천(長好川)의 물이 여기에서 합류하여, 또 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양야곶(陽也串)** 쌍부현에 있는데 부 서쪽까지 50리이다. 둘레가 68리이고 목장이 있다. **홍원곶(洪源串)** 용성현에 있는데 부 남쪽까지 55리이다. 둘레가 75리이고 목장이 있다. **팔라곶(八羅串)** 쌍부현에 있다. **오을미곶(吾乙未串)·대저지도(大楮只島)·소저지도(小楮只島)·옹도(鷹島)·구화도(仇火島)** 모두 쌍부현에 있는데 부 서쪽까지 90리이다. **풍도(楓島)** 부 서쪽 45리 되는 곳에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성종 17년에 남양으로부터 와서 예속되었으며 목장이 있다. **기지(機池)** 부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손항지(孫項池)** 쌍부현에 있다. **도계지(刀梯池)** 신영장(新永莊)에 있으며 부 남쪽까지 60리이다.

토산

백옥(白玉) 저지도에서 난다. 소금·송어·병어·홍어·조기·황조기·농어·민어·뱅어·숭어·진어(眞魚)·오징어·호독어(好獨魚)·조개·모시조개·맛조개·토화(土花)·굴·낙지·해양(海臙)·대하·중하·자하(紫蝦)·게·청해(靑蟹)·부레

성곽

읍성(邑城)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4천 35척이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다.

봉수

흥천산 봉수 남쪽으로 양성현 괴태길곶(槐台吉串)에 맞닿고, 서쪽으로 남양부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

누정

운금루(雲錦樓) 이색(李穡)이 지은 기(記)에, “지대와 피사³⁾는 놀고 구경하는 곳인데, 세도(世道)에 무슨 관계가 있으랴. 그러나 국가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자취와, 주현(州縣)의 흥하고 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개 조정이 맑고 깨끗하고 위와 아래가 기쁘고 편안하면, 이속(吏屬)은 그 직책을 즐거이 여기고, 백성은 그 생업에 편안할 것이니, 지대와 피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태평 시대의 성대한 모습을 형용할 수가 있겠는가. 법령이 가혹하고 사나우며 세금 거두는 것이 번거롭고 무거우면, 백성은 들에서 탄식하고 이속들은 관아에서 피곤하니, 비록 지대와 피사가 있더라도 어찌 홀로 즐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수원부의 새 정자를 지은 것에 대하여 기록이 없을 수 있으랴. 부의 소재지 동북쪽 모퉁이에 옛 못이 있는데, 황폐한 지가 이미 오래였다. 전성안(全成安) 군이 부사(府使)가 되었을 때에, 개연히 복구하는 데에 뜻이 있어 이에 못을 파서 깊게 하고,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서 새 정자를 산뜻하게 지었는데, 재물은 관가에서 나오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다. 완성이 되자 고을 사람들이 보고 서로 돌아보며 놀라 말하기를, ‘어떻게 그리 쉽게 이루어 졌는가. 반드시 귀신이 와서 도왔나보다. 어떻게 우리들을 부리지 않고도 이렇게 되었는가’ 하였다. 아, 전군은 참으로 백성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로다. 마침 전군이 내직(內職)으로 옮기고 비서소감(秘書少監) 안군(安君)이 나와서 양광도 안찰사(按察使)가 되었다. 전군이 행정에 능한 것을 가상히 여기어 내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전씨의 자취가 없어지지 않고 후세에 전하는 것은, 오직 글로 기록하는 데 있으니 그대는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수원은 안찰부(按察府)의 소재지로서 여러 주·군을 통제하므로, 한 도(道)의 폭주하는 곳이 된다. 그러나 성하고 쇠하며 흥하고 폐하는 것도 또한 한 도의 첫째가 된다. 지금 전군은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이르고, 무마와 안집(安集)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었으며, 또 소민(小民)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우리 국가의 태평한 아름다움을 넓혔다. 안군은 백성의 풍속을 살피는데 힘을 다하고 남의 착한 것을 즐겨 말하니 모두 기록할 만한 사실이다. 다른 날에 색(穡)은 공이 이루어져서 물러가기를 빌어, 이 고을을 지나는 길에 만일 연꽃이 피는 때를 만나면, 반드시 수레를 멈추고 정자에 올라 나의 이 글을 읽은 뒤에 갈 것이다” 하였다. ○ 신숙주(申叔舟)가 지은 중수기(重修記)에, “천순(天順) 계미년(세조 9년) 봄에 내가 바야흐로 한가하게 있을 즈음에 편지를 보낸 이가 있었는데, 성균사성(成均司成) 공기(孔頴)와 예조좌랑(禮曹佐郎) 김구영(金九英)은 모두 수원부의 사람이다. 편지에 이르기를, ‘부의 관사 동쪽

3) 지대(池臺)와 피사(腋樹) : 모두 못과 정자를 뜻한다.

에 연못이 있는데, 혹은 정자도 짓고 혹은 다락도 지어서 세워졌다 허물어졌다, 흥했다 폐하였다 하여 그 유래가 매우 오래이다. 지금은 막히고 답답하여 기울고 무너져서 사람이 거처할 수 없다. 여강(驪江) 민효열(閔孝悅) 선생이 명부⁴⁾가 되자 정사가 이루어지고 여가가 많으므로, 이것을 민망하게 여기어 그 옛 것을 회복하려 하여, 공장에게 명하여 재목을 모아서, 모두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일곱 달이 지난 뒤에 완성되었는데, 영(楹)이 셋이요 보동(補棟)이 20여 개나 되었다. 옛 못을 넓히고 또 그 북쪽을 파니, 누대(樓臺)가 이제는 완전히 못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 제도가 굉장하고 단청이 또 선명하여, 섬들이 둘러 있고 꽃과 풀이 그윽하니, 이 못에 정자와 누각이 있는 이래로 일찍이 없던 바이다. 공사 기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 역사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서도, 능히 옛 물건을 회복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청하건대, 기를 지어서 후세에 남기라 하였다. 옛날 전성안이 이 정자를 지었을 때에, 목은이 일찍이 기를 지었으니 나같은 자가 어찌 그 뒤를 이을 수가 있겠는가. 대개 물건의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운수가 있고, 일의 흥하고 폐하는 것이 때가 있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폐하여짐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들고 돌아 끝이 없다. 그 정자가 되고 누각이 되며 이루어지고 허물어지고 흥하고 폐해지는 것이, 어느 것이나 물건과 일이 합하고 운수와 때가 서로 합한 것이 아닌가. 선생은 세상에 처하는 것이 항상 욕심이 없고 깨끗하며, 정치를 하는 것 또한 무마하고 사랑하는 것을 힘쓰고, 헛되게 꾸미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이 정자가 없어진 것을) 첫째로 민망하게 여기어, 옛 것을 회복하여 더 증대시킨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물건이 허물어지면 마땅히 이루어질 운수가 있고, 일이 폐하여지면 흥할 때가 오는 것이니, 이것은 선생이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요, 이 못이 크게 (때와 사람을) 만난 것이다. 내가 비록 용졸하나 또한 기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연꽃을 사랑하는 말과 경치의 아름다운 데는 말이 미칠 겨를이 없다. 목은의, '꽃이 피면 수레를 멈추겠다'는 뜻은, 마침내 그대로 되었는지 내가 (뒤에 그곳에 가서 풍경을) 눈으로 구경하고 흥취를 푸는 것도, 마침내는 또한 운수와 때에 붙일 뿐이다" 하였다. ○ 권제(權躋)가 지은 서(序)에, "갑오년 봄에 내가 지금 부사(府使) 조극관(趙克寬), 사인(舍人) 권극화(權克和), 장흥부사(長興府使) 김돈(金墩) 공과 더불어 과거에 떨어지고⁵⁾ 남쪽으로 놀러 나와, 여기에 이르러 이 정자 위에 앉았다. 내가 정자의 좋은 경치를 즐겨워하여 아름다운 정취(情趣)를 한껏 말하려 하여 이에, '뒷날에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눈이 펄펄 날리며 밝은

4) 명부(明府) : 원래는 밝은 원님이란 뜻으로, 그 원님을 대하여 말할 적에 상대방을 칭찬하여 쓰는 말이다.

5) 하예위(下禮闈) : 과거에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예위(禮闈)의 위라는 말은 과거를 보는 과장(科場)을 뜻한다. 원래 과거를 예조에서 맡아 보았으므로 예위라고 한다.

달이 발(簾)에 들어오고, 연꽃 향기가 자리에 가득한 그 때를 당하여, 내가 한 지방을 맡아 있으면서 두세 사람과 더불어 이 정자 위에서 휘파람 불고 읊으면, 또한 죽히 오늘의 (초라한) 걸음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하였더니, 여러 공(公)이 웃으며 말하기를, '말이 어찌 그렇게도 이치에 맞지 않는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눈이 날리지 않을 것이요,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린다면 달이 밝지 못할 것이다. 연꽃 향기가 또 어찌 눈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자 내 또한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뒤에 여러 공은 모두 높은 과거에 뽑히어, 내직과 외직을 두루 거치고 나 또한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여러 공의 뒤에 끼어서 혹 때로 모이어 이야기하다가, 전날의 그 말을 하고는 서로 매양 크게 웃었다. 금년 봄에 나는 외람되게 성은을 입어서 감사(監司)가 되었는데, 조공(趙公)이 와서 전송하며 술잔을 잡고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수주(水州)의 눈 가운데 연꽃을 이제야 구경할 수 있겠네' 하고, 서로 웃었다. 몇 달이 못 되어 공은 사재감정(司宰監正)으로 있다가, 나와서 이곳의 부사가 되었다. 수레에 내린 지 3일 만에 내가 와서 순시하자, 예를 마치고 정자 위에 나가 앉으며 공이 들어와 뵈는데, 마침 연꽃이 무성하게 피었다. 돌아보고 서로 눈짓하며 말하지 않고 웃었다. 아, 바야흐로 과거에 낙방하고⁶⁾ 근심하고 울적하여 종자 한 사람과 한 필의 말로 나그네의 피곤하고 초라한 행색을 지금도 상상할 수 있는데, 어찌 다시 공이 조관(朝官) 중의 높은 물망으로 특별히 은혜로운 명령을 받아, 붉은 깃발과 검은 일산으로 여기에 자리할 줄 알았으며, 또 어찌 내가 고루하고 외람되고 자질구레한 자질로, 감사가 되어 관찰하여 출척(黜陟)의 권리를 전임하여, 다시 공을 여기에서 만날 것을 알았으랴.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귀신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들의 궁한 것을 불쌍히 여기어, 가만히 시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던가.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또한 반드시 가만히 시키어, 짐짓 우습게 만들어서 오래 되어도 잊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찌서 이치에 어긋나는 그 말이 실제로 증명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설문우(薛文遇)의 시에, "연잎은 배개 말의 빛소리에 요란히 울고, 버들개지는 발을 걷어치는 바람에 가볍게 날린다. 귀양살이 간곳마다 강산이 좋으니, 만사는 모두 말 잃은 늙은이 그대로다" 하였다. ○ 권람(權孳)의 시에, "수주에서 일찍이 연꽃 못을 구경했더니, 그날의 풍경이 꿈속에 들어오네. 두어 이랑 연꽃은 붉어서 선명하고, 몇 가지 버들은 푸르러 늘어졌네. 연못은 새 집으로 인하

6) 점액용문(點額龍門) : 용문(龍門)은 황하(黃河)가 산간 지대에서 평야 지대로 나오는 곳인데, 물의 흐름이 매우 험난하다. 잉어가 이 용문을 지나 올라가면 용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용되는 문이라 이름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 것을 용문에 올랐다고 한다. 점액용문(點額龍門)이란 말은 겨우 그 용문에 가서 이마만 대어보고 올라가지 못하였다는 말이니, 과거를 보기만 하고 떨어졌다는 뜻이다.

여 더욱 값을 더하고, 땅은 어진 부사를 기다려 다시 한 때에 빛이 난다. 임친을 모셔 놀음 다시 얻게 어려우니, 머리를 돌이키매 부질없이 백년의 슬픔이로다” 하였다. ○ 이석형(李石亨)의 시에, “일찍이 듣거니 산간이” 못에서 놀기를 좋아하였단다. 이제 새 못을 보니 내 흥취가 일어난다. 바람은 연꽃을 흔들어 향기 멀리 퍼지고, 연기는 버들 숲에 끼어 푸른 빛 낮추어 나직이 늘어졌다. 그윽한 회포는 변화한 땅을 저버리지 않겠건만, 장한 뜻은 어찌 늘그막에 어기어졌고, 곳곳의 누대에서 세월을 보내니, 가을이 온다고 어찌 송옥(宋玉)의 슬픔을 배우랴(「秋來肯學宋生愁」 송옥(宋玉)은 굴원(屈原)의 제자로 초(楚) 나라의 대부(大夫)이다. 굴원이 쫓겨나자 가련하게 여겨 구변(九辯)을 지어 슬퍼하였다.)” 하였다.

학교

향교 부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다.

역원

장족역(長足驛) 부의 동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동화역(同化驛) 부의 서쪽 7리 되는 곳에 있다. 청호역(靑好驛) 부의 동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도산원(島山院) 부의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사원(蛇院) 부의 남쪽 13리 되는 곳에 있다. 대계원(大梯院) 부의 남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불우

만의사(萬義寺) 무봉산에 있다. ○ 신우(辛禩) 때에 우리 태조가 의주로부터 의거를 일으켜 회군(回軍)하는데, 중 신조(神照)가 휘하에 있으면서 큰 계책을 정하는데 참여하였다. 공양왕이 특별히 공패(功牌)를 주어서, 이 절을 주지케 하고 인하여 노비와 토지를 주어서 법손(法孫)에게 전하게 하였다. 창성사(彰聖寺) 광교산에 있다. ○ 이색이 지은 고려의 중 천희(千熙)의 비명이 있다. 반룡사(盤龍寺) 객사 남쪽에 있다.

사묘

사직단 부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부 동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여단 부 북쪽에 있다.

총묘 최상저(崔尙蠡) 묘 홍법산(弘法山)에 있다. 덕원군(德源君) 묘 부 남쪽 30

7) 산간(山簡)은 진나라 사람인데, 양양(襄陽) 땅에 놀면서 못가에서 노는 것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였다.

리에 있다.

고적

정송폐현(貞松廢縣) 부 서쪽 15리 되는 곳에 있는데 옛 송산(松山) 부곡이다. 광덕폐현(廣德廢縣) 부 남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위의 두 고을은 고려 현종 9년에 와서 예속되었다. 포내미(浦內彌) 부곡·육내미(陸內彌) 부곡 모두 부 남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쟁홀(爭忽) 부곡 부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제촌(堤村) 부곡 부 남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청구(靑丘) 부곡·사량(沙梁) 부곡 부 서쪽 20리 되는 곳에 있다. 공촌(公村) 부곡 부 남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주석향(柱石鄉) 부 남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분촌향(盆村鄉) 부 서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공이향(工二鄉) 부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사정처(奢井處) 부 남쪽 50리 되는 곳에 있다. 금음촌처(今音村處) 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양간처(楊干處) 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본래는 인주에 속하여 있었는데, 조선 태종 18년에 와서 예속되었다. 삼봉처(三峯處) 부 서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고등촌처(古等村處) 부 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심곡처(深谷處) 부 서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 유제처(楡梯處) 부 동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오타장(五朶莊) 부 남쪽 65리 되는 곳에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영신현(永新縣)을 일명 오타라고 하였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영신은 지금 진위현에 속한다. 종덕장(宗德莊) 부 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신영장(新永莊) 부 남쪽 60리 되는 곳에 있다. 처음에는 양성에 속하여 있었는데, 조선 태조 7년에 와서 예속되었다.

명환

고려 김흥조(金興祖) 부사가 되어서 치적(治績)이 매우 드러났다. 윤승해(尹承解) 판관이 되었다. 그보다 전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자 중 청렴한 사람이 적어서 정치도 모두 헤이하여졌는데, 승해가 한결같이 법으로 다스리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꺼리어, 감히 범하는 자가 없었다. 신안지(愼安之) 송나라 개봉부(開封府) 사람인데, 아버지 수(脩)가 문종 때에 바다의 배를 따라 왔다. 안지는 예종 때에 벼슬 하였는데, 나와서 지수주사가 되었는데 정사를 하는 것이 청렴하고 엄숙하매,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편안하였다. 전신(全信) 부사가 되었었는데 (갈려간 뒤에) 백성들이 오래토록 생각하였다. 이성(李晟) 사록(司錄)이 되었다. 김정순(金正純) 예종 때에 지주(知州)가 되었는데, 본래 행정의 사무에는 익숙하지 못하여 장부와 문서에 개의치 않고 대체만 살폈으나 실무가 잘못됨이 없었다. 이윤수(李允綏) 명종 때의 지주사(知州事)이다. 조선 맹사성(孟思誠) 판관이 되었다. 이예손(李禮

孫) 부사가 되었다. 신증 문근(文瑾)·권복(權福) 모두 부사가 되었다.

인물

고려 최자성(崔滋盛) : 과거에 올라 인종 때에 벼슬이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이르고,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가하였다. 여러 번 글을 올려 치사⁸⁾ 하였으며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효자

고려 최누백(崔婁伯) 본래 부의 아전이다. 그의 아버지 상저(尙嘉)가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였다. 누백이 그 때 나이 15세로 호랑이를 잡으려 하자 어머니가 말렸다. 누백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곧 도끼를 메고 호랑이를 추적하니, 호랑이는 먹고 나서 배가 불러 누워 있었다. 누백이 곧 앞으로 다가가서 꾸짖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었으니 나는 너를 먹어야겠다” 하니,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엎드리자 곧 찍어 죽이고,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와 고기를 꺼내어 그릇에 담아서, 흥법산 서쪽에 장사지내고 드디어 시묘(侍墓) 살이를 하였다. 하루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시를 읊기를, “덤불을 헤치고 효자의 여막에 이르니, 정은 느낌이 많고 눈물은 그지없다. 흙을 저다가 날마다 무덤 위에 더하니, 그것을 아는 이는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로다. 살아서는 봉양하고 죽어서는 무덤에서 지키니, 누가 효도가 시종(始終)이 없다 말하랴” 하였다. 뒤에 누백이 과거에 올라 벼슬이 기거사인·한림학사(起居舍人翰林學士)에 이르렀다.

〈신증(新增)〉 본조 최세호(崔世湖) 어머니가 오래 병들어 앓자 다리살을 베어 약에 타서 드렸더니 곧 나왔다. 중종 9년에 정려(旌闕)하였다. **한몽송(韓蒙松)**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고기를 잡다가 아버지가 빠져 죽자, 몽송이 물에 뛰어들어 시체를 안고 나왔다. 중종 22년에 정려하였다.

제영

해근어만반(海近魚滿盤) 이색의 시에, “산이 깊으니 술에는 연기가 뜨고, 바다가 가까우니 생선이 소반에 가득하다. 촌 송아지는 언덕 머리에 누워 있고, 들 사람은 머리에 갓이 없다” 하였다. **누하하화만수개(樓下荷花滿水開)** 이송인(李崇仁)의 시

8) 치사(致仕)는 나이 70세가 되어 벼슬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에, “누 밑에 연꽃이 물에 가득히 피었으니, 수성(隋城)의 6월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였다. **천년벽루홍망구(千年壁壘興亡久)** 김수온(金守溫)의 시에, “연꽃을 낀 높은 누각은 문노니 누가 지었느냐. 내가 등림(登臨)한 것이 마침 늦게 갠 때, 뜰 아래는 의관(衣冠)을 갖춘 아전이 모이고, 길 옆에는 붉은 단장한 기생이 영접하구나. 천년의 성벽은 홍망이 오래이고, 만가구의 뽕나무와 삼은 정치가 태평이로다. 가장 한스럽구나. 목은이 일찍이 (지은) 기가 있는데, 옛 현관에 티끌이 끼어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구나” 하였다.

(비고) 연혁

고종 32년에 군으로 고치다. 문헌비고(文獻備考)

중종 30년에 복구(復舊)하였다 선조 35년에 방어사(防禦使)를 겸하였다. 현종 9년에 별중영장(別中營將)을 겸하였다. 숙종 13년에 총계좌영장(摠戡左營將)을 겸하도록 고쳤다. 정조 16년에 진(鎭)을 남양으로 옮겼다. 정조 13년 부의 화산(華山)에 있는 현릉원(顯陵院)으로 옮겼다 즉 옛 치소이다. 치소를 팔달산(八達山) 동쪽으로 옮겼다 광주(廣州)의 일용(日用)·송동(松洞) 두 면(面)을 내속(來屬)시켰다. 17년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다. 사도(四都) 중의 하나이다.

관원

유수(留守) 계축년에 장용외사(壯勇外使)를 겸하였다. 임술년에 총리사(摠理使)를 겸하도록 고쳤다. **판관** 화성전령(華寧殿令)과 관성장(管城將)·총리관(摠理官)을 겸하였다. **검률(檢律)**·**의학(醫學)** 각 1명이다.

토산 쑥·감 : 면(綿)·삼베·닥나무·칠(漆) 등은 전혀 없다.

성지

부성(府城) 정조 18년에 둘레 4천 6백 보의 성을 쌓았다. 치성(雉城)이 여덟인데 남은 팔달문(八達門), 북은 장안문(長安門), 동은 창룡문(蒼龍門), 서는 서화문(西華門)이라고 한다. 동·서·남·북에 암문(暗門)이 있고, 남·북에 수문(水門)이 있다. 성 둘레에 여러 모양의 누대가 거리를 굽어보고 있는데, 모두 25개 소이다. **독성산성(禿城山城)** 남쪽으로 30리이다. 선조 25년에 고성(古城)을 쌓았다. 정조 20년에 둘레 1천 8백 보로 고쳐 쌓았는데 문이 넷이다. ○ 중군(中軍)이 독성 파총(把摠)을 겸하였다. 별장 1명, 유진장(留鎭將) 1명이다. ○ 선조 35년에 부사 변응성(邊應星)이 쌓았다. 구읍성(舊邑城)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는 4천 35보이다. 지금은 건릉(建陵)의

국내(局內)에 들어 있다.

산천 건달산(建達山) 서남쪽 30리. **안산(案山)** 부의 동성(東城)에 있다.

궁실 행궁(行宮) 성 안에 있다.

누정 영화정(迎華亭) 장안문 북쪽 3리이다. 유수(留守)가 여기서 교체한다. **항미정(杭眉亭)** 서둔제(西屯堤)의 서쪽 연안이다.

역참 영화도(迎華道) 장안문 밖이다. ○ 찰방(察訪) 1명, 총리척후장(總理斥堠將)이 겸한다. ○ 속역(屬驛) 11명이다.

진도 계두진(鷄頭津) 남쪽으로 80리인데, 아산(牙山)으로 통한다. **리포진(里浦津)** 남쪽으로 70리이며 평택으로 통한다. **당포진(堂浦津)** 남쪽으로 90리이며 아산으로 통한다. **대진(大津)** 서남쪽으로 1백리이며 넓이가 10여리인데 조세(潮勢)가 사납다. 중류(中流)에 영옹암(翁翁巖)이 우뚝 서 있는데 높이는 1백 척 가량 된다. 만조 때에 배로 건너면 홍주(洪州)·면주(沔州) 등 여러 읍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교량 대황교(大皇橋) 남쪽으로 15리이며 건릉의 영내이다. **오목천교(梧木川橋)** 대황교 동쪽에 있으며 남쪽 큰 길로 통한다.

창고 창(倉) 4, 고(庫) 23 성 안에 있다. **삼창(三倉)** 용주사(龍珠寺), **사창(四倉)**·**오창(五倉)** 산성(山城), **칠창(七倉)** 청룡(靑龍), **육창(六倉)** 상흥, **팔창(八倉)** 공향(貢鄕), **구창(九倉)** 우정(雨井).

목장 홍원곶장(洪原串場) 서남쪽으로 80리이다. ○ 감목관(監牧官), **양야곶장(陽也串場)** 서남쪽으로 70리이다.

사원

궐리사(闕里祠) 지평(芝坪)에 있다. 정조 계축년에 옮겨 짓고, 어필(御筆)의 액판(額板)을 걸었다. 공자(孔子) 영정(影幀) ○ **매곡서원(梅谷書院)** 숙종 갑술년에 짓고, 을해년에 사액(賜額)하였다. 송시열(宋時烈) 경도의 문묘편을 보라. ○ **명고서원(明臯書院)** 서쪽 20리 송동에 있다. 현종 신축년에 짓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조익(趙翼) 자(字)는 비경(飛卿)이고 호는 포저(浦渚)이며 풍양(豐壤) 사람이다. 벼슬은 좌의정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조복양(趙復陽) 자는 중초(仲初)이며 조익의 아들이다. 벼슬은 이조판서로 문형이 되었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조지겸(趙持謙) 자는 광보(光甫)이고 호는 우재(迂齋)이며 조복양의 아들이다. 벼슬은 부제학(副提學)이었는데 이조판서를 추증(追贈)하였다.

능원

건릉(建陵) 화산(花山)의 남쪽인데, 정조의 능이며, 기신(忌辰)은 6월 20일이고 효의왕후(孝懿王后)를 부장하였는데 기신은 3월 9일이다. ○ 영(令)·참봉(參奉) 각 1명이다. 현릉원(顯隆園) 영조 38년에 양주(楊州)의 배봉(拜峯)에 장사하고, 호를 격은묘(擊恩墓)라 하였는데, 정종 병신년에 영유원(永裕園)이라는 호를 드리고, 기유년에 이 곳으로 원(園)을 옮기면서 지금의 호를 드렸다. 장헌세자원(莊獻世子園)인데 기신은 5월 21일이다. 혜빈(惠嬪) 홍씨(洪氏)를 부장하였는데 기신은 12월 23일이다. ○ 영과 참봉이 각 1명이다.

묘전

화령전(華寧殿) 정조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다. 생일과 사망일 두 번 제사하는데, 제사하는 의식은 영희전(永禧殿)과 같다.

관원

영 2명 1명은 판관이 겸한다. 위장(衛將) 2명 1명은 중군(中軍)이 겸한다. 수문장 2명 본부에서 파견한다.

수원부(水原府) — 여지도서(輿地圖書)

수원 고을의 둘레는 550리이다. 남에서 북으로는 120리, 동에서 서로는 110리가 된다. 부에서 동쪽으로 용인현(龍仁縣)의 경계(境界)까지는 21리이고, 남쪽으로 진위현(振威縣)의 경계까지는 20리, 서쪽으로 남양부(南陽府) 경계까지는 10리, 북으로 광주부(廣州府) 경계까지는 30리이다. 남쪽으로 가사곶면(佳士串面) 아주도(牙州島)까지는 110리인데, 거기에 큰 나루가 있다. 그 나루의 남쪽은 곧 충청도 당진(唐津)과 면천읍(沔川邑)의 경계이다. 서쪽으로 압장면(鴨長面) 고온리(古溫里)의 80리 거리에 큰 나루가 있는데, 수로(水路)가 4·500리이다. 이 바깥은 끝없는 망망대해이다.

방리(坊里)

수원부(水原府) 안에 있는 문수당(文殊堂) 1수(一授) 266호(戶)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55구(口), 여자는 363구이다.

3수(三授) 234호(戶)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35구, 여자는 328구이다.

5수(五授) 270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312구, 여자는 343구이다.

6수(六授) 215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341구, 여자는 312구이다.

안녕면(安寧面)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7리 거리에 있다. 451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676구, 여자는 511구이다.

남곡면(南谷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6리 거리에 있다. 234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64구, 여자는 417구이다.

정송면(貞松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6리 거리에 있다. 235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39구, 여자는 455구이다.

모지면(茅旨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148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236구, 여자는 305구이다.

삼봉면(三峯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192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366구, 여자는 350구이다.

호매절어량천면(好梅折於良川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395

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937구, 여자는 855구이다.

용복면(龍伏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221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348구, 여자는 329구이다.

고등촌면(古等村面)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316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904구, 여자는 1,100구이다.

공석면(空石面)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328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64구, 여자는 417구이다.

광교면(光教面)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285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10구, 여자는 478구이다.

장족면(長足面)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275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18구, 여자는 533구이다.

산창이 속해 있는 산성면(山倉屬 山城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241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363구, 여자는 424구이다.

초평면(草坪面)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265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75구, 여자는 506구이다.

청호면(靑好面) 수원부에서 동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338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61구, 여자는 403구이다.

삼머곡면(三旆谷面)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322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713구, 여자는 745구이다.

정림면(正林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296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611구, 여자는 598구이다.

어탄면(魚呑面)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274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61구, 여자는 351구이다.

동북면(東北面)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502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759구, 여자는 735구이다.

태촌면(苔村面)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8리 거리에 있다. 352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762구, 여자는 773구이다.

사창이 속해 있는 쟁홀면(社倉屬 爭忽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310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639구, 여자는 584구이다.

동면(東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544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838구, 여자는 837구이다.

양간면(楊干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266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26구, 여자는 535구이다.

금물촌면(今勿村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225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61구, 여자는 537구이다.

종덕면(宗德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367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718구, 여자는 568구이다.

오타면(吾朶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282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39구, 여자는 562구이다.

토법면(土法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230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56구, 여자는 489구이다.

북방면(北方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262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11구, 여자는 480구이다.

설창이 속해 있는 청룡면(設倉屬 靑龍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301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605구, 여자는 548구이다.

숙성면(宿城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45리 거리에 있다. 269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54구, 여자는 488구이다.

오정면(梧井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3리 거리에 있다. 432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710구, 여자는 694구이다.

감암면(甘巖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270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66구, 여자는 575구이다.

광덕면(廣德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70리 거리에 있다. 274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668구, 여자는 641구이다.

포내면(浦內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398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745구, 여자는 776구이다.

가사곶면 삼도(佳土串面 三島)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90리 거리에 있다. 365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675구, 여자는 556구이다.

해창이 속해 있는 공이향면(海倉屬 工以鄕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27리 거리에 있다. 287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53구, 여자는 539구이다.

서북면(西北面) 수원부에서 서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169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51구, 여자는 465구이다.

모전면(茅田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159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99구, 여자는 374구이다.

팔탄면(八灘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251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488구, 여자는 490구이다.

가질등면(加叱等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284호가 거주하는

데, 그 안에 남자는 522구, 여자는 559구이다.

쌍창이 속해 있는 화방면(雙倉屬 禾方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45리 거리에 있다. 243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755구, 여자는 629구이다.

수류면(水流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313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81구, 여자는 594구이다.)

마정면 풍도(馬井面 楓島)는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276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601구, 여자는 560구이다.

초장면(草長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253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92구, 여자는 589구이다.

사정면(奢井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340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537구, 여자는 700구이다.

팔라곶면(八羅串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275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663구, 여자는 574구이다.

압장면(鴨長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80리 거리에 있다. 496호가 거주하는데, 그 안에 남자는 773구, 여자는 722구이다.

군명(郡名)

(수원군의 다른 이름은) 한남(漢南), 수성(隋城), 매홀(買忽), 수성(水城), 수주(水州)이다.

형승(形勝)

금당암(金堂巖)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리 거리로 모지면(茅旨面)에 있다. 바위 위는 수십명이 앉을 수 있고, 용모양과 쇠로 만든 쟁기의 흔적이 있다.

망운대(望雲臺)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80리 거리로 광덕면(廣德面)에 있다. 그 앞에는 대양(大洋)이 펼쳐 있다.

망월봉(望月峯)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80리 거리로 압장면(鴨長面)에 있다. 왼쪽으로 대양이 펼쳐 있다.

성지(城池)

읍성(邑城) 흙으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3,035척이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다.

어목현지(禦牧軒池) 길이는 27척이고 너비는 7척, 깊이는 반길이다. 돌로 쌓았다.

관청전지(官廳前池) 길이는 30척이고 너비는 15척, 깊이는 지금은 메워졌다.

사창전지(司倉前池) 길이는 17척이고 너비는 10척, 깊이는 반길이다. 흙으로 쌓

았다.

문루전지(門樓前池) 길이는 20척이고 너비는 10척, 깊이는 반길이다. 흙으로 쌓았다.

객사후지(客舍後池) 길이는 31척이고 너비는 17척이다. 지금은 메워졌다.

독성산성(禿城山城) 둘레는 5리이다. 성가퀴는 303개인데, 가퀴의 높이는 3장(丈)이다. 수첩군 11명, 사령(使令) 14명, 아전(衙前) 13명, 지인(知印) 9명, 군뢰(軍牢) 4명, 비자(婢子) 2명이다.

관직(官職)

수원부사는 도호부사겸병마좌방어토포사(都護府使兼兵馬左防禦討捕使)이다. 문관이면 3품, 무관은 2품이다.

산천(山川)

화산(花山) 수원부의 주산(主山)이다. 국릉(國陵)¹⁾을 쓸 곳으로 표를 해놓은 곳이 하록(下麓)에 있다.

체점산(體帖山)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2리 거리에 있다. 수원부의 진산(鎭山)이다.

홍법산(弘法山)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광교산(光教山)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광교면에 있으며 30리 거리에 있다.

무봉산(舞鳳山) 일명 만의산(萬儀山)이라고도 한다.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30리 거리로 동북면(東北面)에 있다.

독성산(禿城山)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만력(萬曆) 30년 임인년(壬寅年, 1602, 선조 35년)에 석성(石城)을 쌓았다.

흥천산(興天山)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60리 거리로 압장면(鴨長面)에 있다. 봉수대(烽燧臺)가 있다.

건달산(乾達山)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5리 거리로 가질등면(加叱等面)에 있다. 옛날부터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었다. 그런데 강희(康熙) 49년 경인년(庚寅年, 1710, 숙종 36년) 여름에 벼락이 쳐서 큰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이 뒤로는 <기우제를 지내도>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기우제를 폐지하였다.

서봉산(棲鳳山) 수원부에서 서남쪽으로 15리 거리로 정송면(貞松面)에 있다. 작은 암자(庵子)가 있다.

광덕산(光德山)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80리 거리에 있다. 산위에 망운대(望雲臺)

1) 정조의 능인 건릉(健陵)을 말한다.

와 작은 사찰(寺刹)이 있다.

쌍부산(雙阜山)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0리 거리로 화방면(禾方面)에 있다. 서쪽과 남쪽으로 바다가 바라다보이며, 새로 작은 암자를 세웠다.

치악산(鷓岳山)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5리 거리로 호매절면(好梅折面)에 있다. 매곡서원(梅谷書院)이 있다.

망월산(望月山)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80리 거리로 압장면(鴨長面)에 있다.

형제산(兄弟山)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로 견당면(見堂面)에 있다.

계두산(鷄頭山)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80리 거리로 가사곶면(加士串面)에 있다. 봉우리 위에 바둑판 모양의 반석(盤石)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신선들이 노는 곳이라고 한다.

노류령(老留嶺)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0리 거리로 모지면(茅旨面)에 있다. 고개가 험준하고 길이 막혀 있다.

밀양령(密陽嶺)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30리 거리로 모전면(茅田面)에 있다. 산세가 높고 험해 길이 막혀있다.

총수산(總水山)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70리 거리로 옛 용성현(龍城縣)의 남쪽에 있다.

바다(海) 수원부에서 서남쪽으로 63리 거리에 있다.

사근천(沙斤川)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30리 거리로 광고산 아래로 흐른다.

대천(大川)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8리 거리이다. 사근천(沙斤川) 및 용인(龍仁)의 구흥천(駒興川)과 합류하여 남으로 흘러 광덕(廣德)을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후평천(後坪川)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7리 거리로 대교(大橋)와 소교(小橋)가 있다. 수원(水源)은 광주(廣州) 경계에서 나온다. 남으로 금물촌면(今勿村面)까지 50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오매천(烏梅川)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수원(水源)은 용인(龍仁) 경계에서 나온다. 남으로 금물촌면까지 40리를 흘러 후평천과 합류해서 바다로 들어간다.

구이포(仇二浦)와 적진포(赤津浦)는 모두 쌍부폐현(雙阜廢縣)에 있다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6, 7리 거리에 있다. 대천(大川)과 진위(振威)의 장호천(長好川) 물길이 합류하여 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당진포(唐津浦)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80리 거리에 있다. 광덕면(廣德面), 아산읍(牙山邑) 등으로 통한다.

대포진(大浦津)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80리 거리에 있다. 포내며(浦內旆), 당진읍(唐津邑) 등으로 통한다.

이포진(里浦津)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금물촌면(今勿村面), 평택읍(平澤邑) 등으로 통한다.

양야곶(陽也串)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0리 거리로 쌍부폐현(雙阜廢縣)에 있다. 둘레는 68리이고 목장이 있다.

홍원곶(洪原串)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둘레는 75리이고 목장이 있다. 숙종(肅宗) 19년(1693년)에 감목관(監牧官)을 두었다.

팔라곶(八羅串) 쌍부폐현(雙阜廢縣)에 있다.

오을미곶(吾乙未串), 대저지도(大猪只島), 소저지응도(小猪只應島), 구화도(仇火島) 등은 모두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90리 거리로 쌍부폐현(雙阜廢縣)에 있다.

풍도(楓島)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다. 성종(成宗) 17년(1486년)에 남양(南陽)에서 수원부로 이속(移屬) 하였다. 옛날에는 목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대저비(大猪飛), **소저비(小猪飛)**는 모두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로 가사곶면(加士串面)에 있다.

아주도(鵝洲島) 둘레가 20리이다.

오동도(梧桐島) 둘레가 10리이다. 모두 수원부에서 남쪽인 가사곶면(加士串面)에 있다. 만력(萬曆) 연간에 해일이 일어나면서 두 섬이 생겼는데, 백성들이 살고 있다.

기지(機池)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손항지(孫項池) 쌍부폐현(雙阜廢縣)에 있다.

도제지(刀梯池)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60리 거리로 신영면(新永面)에 있다.

방하지(方下池)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큰 가뭄에도 물이 줄지 않는다.

성씨(姓氏)

수원부(水原府) 최(崔), 김(金), 이(李), 서(徐), 백(白), 최(崔), 이(李), 방(方), 하(河)이다.

촌성(村姓)을 아울러 적는다. 쌍부(雙阜) 서(徐), 송(宋), 박(朴), 이(李), 신(愼)

용성(龍城) 차(車), 송(宋), 임(任), 장(張)

청구(靑丘) 정(鄭), 박(朴), 이(李)

공리(公利) 김(金), 섭(葉)

내미(內彌) 이(李)

심곡(深谷) 차(車)

오타(吾朶) 여(呂), 김(金)

주석(柱石) 송(宋), 김(金), 최(崔), 차(車)

쟁홀(爭忽) 이(李), 김(金), 박(朴)

정송(貞松) 이(李), 김(金), 최(崔), 윤(尹)

양간(楊干) 박(朴), 김(金)

사정(奢井) 도(都)

금음촌(今音村) 여(呂), 이(李)

종덕(宗德) 유(柳), 서(徐), 이(李), 차(車)

분촌(盆村) 백(白), 전(田)

사량(沙梁) 견(堅), 김(金), 송(宋)

공이향(工以鄉) 송(宋)

유제(楡梯) 차(車)

풍속(風俗)

무예를 좋아한다. 인심은 꾸미는 것보다는 소박한 쪽에 가깝고 농사짓는 것을 기꺼이 여긴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문묘(文廟) 옛날에는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리 거리에 있었다. 현종(顯宗) 2년(1661년)에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2리 거리에 있는 독흘산(秃屹山)으로 이견하였다. 이경원(李慶遠)이 쓴 명륜당 중수기(明倫堂重修記)에 이르기를, <이하 생략함>

여단(厲壇)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매곡서원(梅谷書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0리 거리로 호매절면(好梅折面) 치악산(鷓岳山) 아래에 있다. 송 문정공(宋文正公)²⁾이 늘 이곳을 왕래하였기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서원을 세울 것을 청하였다.

공해(公廨)

객사(客舍) 순치(順治) 을유년(乙酉年 1645년, 인조 23년) 구인기(具仁暨)가 부사였을 때 증건하였다.

은약헌(隱若軒) 동헌(東軒)이다. 만력(萬曆) 갑진년(甲辰年 1604년, 선조 37년) 이

2) 송시열(宋時烈)

광악(李光岳)이 부사였을 때 중건하였다. 경종(景宗) 신축년(辛丑年 1721년, 경종 1년) 조관빈(趙觀彬)이 부사였을 때 개건(改建)하였다. 시가 있는데, 이르기를, <이하 생략함> 영조(英祖) 을축년(乙丑年 1745년, 영조 21년) 이복영(李復永)이 부사였을 때 중건하였다. <이하 생략함>

제언(堤堰)

유문제언(留門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2,234척이고 깊이가 3척이다

작현제언(鵲峴堤堰)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874척이고 깊이가 3척이다

진장제언(陣場堤堰)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2,202척이고 깊이가 2척이다

방답제언(方畓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860척이고 깊이가 2척이다

사모제언(沙某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2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344척이고 깊이가 3척이다

도차리제언(道差里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114척이고 깊이가 2척이다

직교제언(直橋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135척이고 깊이가 3척이다

동파제언(東坡堤堰)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2,000척이고 깊이가 2척이다

권동제언(權洞堤堰)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015척이고 깊이가 3척이다

어읍교제언(於邑橋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115척이고 깊이가 1척이다

감상제언(甘嘗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8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670척이고 깊이가 1척이다

지의제언(智義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8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2,161척이고 깊이가 1척이다

수금제언(水今堤堰)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461척이고 깊이가 1척이다

사사리제언(寺寺里堤堰)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740

척이고 깊이가 3척이다

도마교제언(道馬橋堤堰)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396척이고 깊이가 2척이다

장교제언(長橋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114척이고 깊이가 2척이다

여외지제언(如外池堤堰)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560척이고 깊이가 1척이다

독동제언(獨洞堤堰)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023척이고 깊이가 1척이다

건여제언(件餘堤堰)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940척이고 깊이가 3척이다

신원제언(新院堤堰)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110척이고 깊이가 3척이다

신라물제언(新羅勿堤堰)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940척이고 깊이가 3척이다

손항제언(孫項堤堰)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318척이고 깊이가 2척이다

기지제언(基池堤堰)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129척이고 깊이가 2척이다

창고(倉庫)

사창(司倉) 수원부에 있다.

산창(山倉) 독성산성(禿城山城)에 있다.

사창(社倉) 수원부의 남쪽인 쟁홀면(爭忽面)에 있다.

해창(海倉) 수원부의 서쪽인 공이향면(工以鄉面)에 있다.

설창(設倉) 수원부의 남쪽인 청룡면(靑龍面)에 있다.

쌍창(雙倉) 수원부의 서쪽인 화방면(禾方面)에 있다.

군향고(軍餉庫) 수원부에 있다.

군기고(軍器庫) 수원부에 있다.

물산(物産)

소금, 소어(蘇魚), 병어(兵魚), 홍어(紅魚), 황석수어(黃石秀魚), 농어〔鱸魚〕, 준치〔眞魚〕, 민어(民魚), 석어(石魚), 백어(白魚), 수어(秀魚), 오징어〔烏賊魚〕, 황합(黃蛤),

호독어(好獨魚), 토화(土花), 석화(石花), 낙지[落蹄], 해양(海脹), 대하(大蝦), 중하(中蝦), 자하(紫蝦), 청하(靑蝦), 부레[魚鰓]

교량(橋梁)

세남교(細南橋)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후천대교(後天大橋)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후천소교(後天小橋)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8리 거리에 있다.

역원(驛院)

동화역(同化驛)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가 1필(匹), 짐싹는 말이 4필, 노(奴)가 8명이다.

장족역(長足驛) 수원부에서 북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가 1필, 기마(騎馬)가 1필, 짐싹는 말이 2필, 노(奴)가 5이다.

청호역(靑好驛)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2필, 짐싹는 말이 3필, 노(奴)가 7명이다.

목장(牧場)

홍원목장(洪原牧場)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75리 거리로 포내며(浦內旆)에 있다. 들레는 25리이고 면적은 밭 182결(結)이다. 원전답(元田畓)은 모두 76결(結) 49부(負) 6속(束)이다. 목리(牧吏)가 3, 목자(牧子)가 75명이다. 말 1필은 매년 상납한다. 말을 나누어 기르는 것은 상사(上司)에서 나누어 정해준대로 거행한다.

봉수(烽燧)

흥천산봉수(興天山烽燧)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75리 거리로 압장면(鴨長面)에 있다. 남쪽으로 양성현(陽城縣) 괴태길곶(槐台吉串)에 응하고 서쪽으로 남양부(南陽府)의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

누정(樓亭)

공극루(拱極樓) 수원부 관아 3문의 누각이다. 경신년(庚申年 1740년, 영조 16년)에 부사(府使) 이정보(李鼎輔)가 중건(重建)하였다. 상량문(上樑文)이 있다. <이하 생략>

진남루(鎭南樓) 독성(禿城)의 남쪽 표루(標樓)이다. 이정귀(李廷龜)가 기문(記文)을 썼다. <이하 생략>

사찰(寺刹)

만의사(萬儀寺) 무봉산(舞鳳山)에 있다. 고려 우왕(禑王) 때 조선의 태조대왕(太祖大王)이 의주(義州)에서 거의(擧義)하여 회군(回軍)³⁾하였는데, 승려 신조(神助)가 휘하에 있으면서 함께 대책(大策)을 정하였다.⁴⁾ 공양왕(恭讓王)이 특별히 공패(功牌)를 주고, 신조를 이 사찰의 주지로 삼았다. 인하여 노비(奴婢)와 전택(田宅)을 주어 법손(法孫)에게 전하게 하였다.

창선사(彰善寺) 광교산(光敎山)에 있다. 중간에 없어졌다가 요즈음에 비로소 창건하였다.

반룡산사(盤龍山寺) 지금은 없어졌다.

오동사(梧桐寺) 서봉산(棲鳳山)에 있다.

정수암(淨水菴) 삼성산(三聖山)에 있다.

가지사(迦支寺) 건달산(乾達山)에 있다. 지금은 없어졌다.

신복사(新福寺) 광덕산(光德山)에 있다.

만봉암(萬峯菴) 공이향면(工以鄕面) 갈동(葛洞)에 있다.

백산암(栢山菴) 쌍부산(雙阜山)에 있다.

고적(古跡)

정송(貞松)⁵⁾ 폐현(廢縣)이다.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옛날의 송산부곡(松山部曲)이다.

광덕(光德) 폐현(廢縣)이다.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위의 두 현(縣)은 고려 현종(顯宗) 9년(1018년) 수원부에 속하게 되었다.

포내며(浦內旆) 부곡(部曲)이었다.

쟁홀(爭忽) 부곡(部曲)이었다. 수원부에서 60리 거리에 있다.

육내미(陸內彌) 부곡(部曲)이었다.

제촌(提村) 부곡(部曲)이었다.

청구(靑丘) 부곡(部曲)이었다.

사량(沙梁) 부곡(部曲)이었다. 모두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공촌(公村) 부곡(部曲)이었다.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주석향(柱石鄕) 부곡(部曲)이었다.

3) 위화도 회군을 말함.

4)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축출하고 우왕을 왕위에서 쫓아낸 다음, 차기 왕을 결정할 때 신조가 참여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5) 원문에는 정송이란 글자가 나와있지 않다. 동국여지승람이나 다른 수원부 읍지를 참고하면 여기에 정송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수로 빠진 것 같다.

분촌향(盆村鄉)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공이향(工以鄉)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사정면(奢井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금물촌면(今勿村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양간면(楊干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본래는 인천(仁川)에 속했었는데, 태종(太宗) 18년(1418년)에 수원부에 속하게 되었다.

삼봉면(三峯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고등촌면(古等村面)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심곡(深谷) 수원부에서 서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유계(楡梯) 수원부에서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오타면(吾朶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오타면을〉 단영(斷永)⁶⁾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신영(新永)은 지금 진위(振威)에 속한다.

종덕면(宗德面) 수원부에서 남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본래 양성(陽城)에 속했었는데, 태종(太宗) 17년(1417년) 수원부에 속하게 되었다.

진보(鎭堡)로 속진(屬鎭)이 없는 읍 12곳 부평(富平), 인천(仁川), 남양(南陽), 통진(通津), 안성(安城), 안산(安山), 김포(金浦), 진위(振威), 양천(陽川), 용인(龍仁), 양성(陽城), 금천(衿川)

인물(人物)

고려(高麗)⁷⁾ 최자성(崔滋盛), 최영규(崔永奎)

본조(本朝) 공인서(孔麟瑞), 이광식(李光植), 최희(崔禧), 최천건(崔天健), 유계(俞槩), 임지제(任之悌), 손탁(孫倬), 장세걸(張世傑), 유몽룡(劉夢龍), 유찬선(劉纘先), 이지언(李祗言), 최덕인(崔德仁), 김우추(金遇秋), 김대건(金大乾), 김체건(金體乾), 김성(金城), 김하중(金夏重), 전봉(田鳳),李大근(李大根), 원승선(元承善), 권정길(權井吉), 최응일(崔應一), 최종두(崔宗斗), 최동로(崔東老), 형협(邢浹), 오대남(吳大男), 정탁(鄭倬), 정척(鄭倬), 박응신(朴應信), 최만득(崔晚得), 유세웅(柳世雄), 이유현(李維賢), 최정현(崔廷顯), 정한기(鄭漢驥), 이탁남(李卓男), 오도홍(吳道弘), 김양서(金良恕), 최천인(崔千仞), 이계관(李繼寬), 김대흥(金大興), 이득남(李得男), 김계남(金繼男), 축남(丑男), 김기축(金起丑), 이응춘(李應春), 정추(鄭推), 조헌경(曹憲卿), 조복경(曹復卿), 이

6) 원문은 단영(斷永)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 문헌을 고찰하면 신영(新永)으로 해야 할 것 같다.

7) 자세한 이력은 생략한다.

동현(李東顯), 이동암(李東諱), 이동욱(李東郁), 기만헌(奇晩獻), 최승제(崔嵩齊), 최항제(崔恒齊), 김천룡(金天龍), 처사(處士) 김우상(金禹祥).

효자(孝子)

고려(高麗) 최루백(崔婁伯), 최세호(崔世湖), 한몽송(韓蒙松), 박시형(朴時亨), 이봉현(李奉賢), 홍여석(洪汝奭), 이시귀(李時龜), 배홍중(裵弘重), 윤필명(尹必鳴), 진사(進士) 박재만(朴再蔓), 고경천(高擎天), 한슬매(韓瑟每), 진사(進士) 김취징(金就徵).

충신(忠臣)

한명윤(韓明胤), 윤정준(尹廷俊).

효부(孝婦)

수성 차씨(隋城 車氏), 함양 박씨(咸陽 朴氏), 숙부인 안동 김씨(淑夫人 安東 金氏)

열부(烈婦)

밀양 박씨(密陽 朴氏), 함안 이씨(咸安 李氏), 나주 박씨(羅州 朴氏), 용인 이씨(龍仁 李氏) 처자 용인 이씨(處子 龍仁 李氏), 안산 이씨(安山 李氏), 충주 김씨(忠州 金氏), 순흥 안씨(順興 安氏), 연안 이씨(延安 李氏), 수원 최씨(水原 崔氏).

충노(忠奴)

이만만(李晚萬)

한전(旱田) 6,328결 87부.

수전(水田) 5,275결 74부.

진공(進貢)

생계(生蟹) 9월에서 10월에 걸쳐 봉진(封進)한다.

조적(粟糶糶)

조(租) 6,663석 4두 9승. 미(米) 898석 13두. 태(太) 39석 10두 8승.

군향미(軍餉米) 4,009석 9두 6승. 태(太) 4,907석 2두 4승.

칙수미(勅需米) 922석 12두 8승.

전세(田稅)

미(米) 1,232석 2두 9승 태(太) 770석 11두 6승. 매년 같지 않다.

대동(大同)

미(米) 3,453석 8두 7승. 매년 같지 않다.

균세(均稅)

면세결(免稅結) 66결 대동미(大同米) 52석, 세미(稅米) 12석, 태(太) 4석.

결전(結錢) 3,553냥 5전 6푼.

어염전세전(魚鹽船稅錢) 580냥 9전. 매년 같지 않다.

관수미(官需米) 120석

사객지응미(使客支應米) 150석

지지유청가미(紙地油淸價米) 20석

군총(軍摠)

별효사별장(別驍士別將) 1원(員), 장(將) 2원, 마병별장(馬兵別將) 2원, 천총(千摠) 3원, 파총(把摠) 6원이다.

초관(哨官) 38원, 교련관(教鍊官) 10원, 지각관(知燬官) 5원, 기패관(旗牌官) 61원
본영도안군관(本營都案軍官) 61인 중 영도안군관(營都案軍官) 40인, 모입군관(募入軍官) 30인이다.

도훈도(都訓導) 4인, 별효사(別驍士) 220인, 별장표하군(別將標下軍) 18명, 좌우장
표하군(左右將標下軍) 10명, 마별장표하군(馬別將標下軍) 36명, 천총표하군(千摠標下軍) 54명, 파총표하군(把摠標下軍) 108명, 마병(馬兵) 444명, 치중군(輜重軍) 200명,
모입초군(募入哨軍) 375명, 보군(步軍) 3, 750명

본영(本營) 뇌자(牢子) 34명, 기수(旗手) 63명, 취수(吹手) 91명, 대기수(大旗手) 100명

중영(中營) 뇌자 12명, 기수 12명

액외(額外)

본영(本營) 뇌자 37명, 기수 12명, 대기수 1명

중영(中營) 뇌자 10명, 기수 22명

집사마정(執事馬丁) 152명, 치중(輜重) 4명, 도훈도마정(都訓導馬丁) 4명

부사선생안(府使先生案)

<이하생략>

<한문 원문>

水原府邑誌

一境周回五百五十里 自南至北一百二十里 自東至西一百十里 自府東至龍仁界二十一里 南至振威界二十里 西至南陽界十里 北至廣州界三十里 南至佳士申面牙州島一百十里 有大津 津南乃忠淸道唐津河川邑界 西至鴨長面古溫里八十里前 有大津 水路四五百里 此外無邊大洋

【坊里】

府內文殊堂一授 二百六十六戶內〈男四百五十五口 女三百六十三口〉

三授 二百三十四戶內〈男四百三十五口 女三百二十八口〉

五授 二百七十戶內〈男三百十二口 女三百四十三口〉

六授 二百十五戶內〈男三百四十一口 女三百十二口〉

安寧面 府東距七里 四百五十一戶內〈男六百七十六口 女五百十一口〉

南谷面 府南距六里 二百三十四戶內〈男四百六十四口 女四百十七口〉

貞松面 府西距六里 二百三十五戶內〈男五百三十九口 女四百五十五口〉

茅旨面 府西距五里 一百四十八戶內〈男二百三十六口 女三百五十口〉

三峯面 府西距十里 一百九十二戶內〈男三百六十六口 女三百五十口〉

好梅折於良川面 府西距十里 三百九十五戶內〈男九百三十七口 女八百五十五口〉

龍伏面 府西距五里 二百二十一戶內〈男三百四十八口 女三百二十九口〉

古等村面 府北距十里 三百十六戶內〈男九百四口 女一千一百口〉

空石面 府北距二十里 三百二十八戶內〈男五百一口 女四百二十八口〉

光教面 府北距二十里 二百八十五戶內〈男五百十口 女四百七十八口〉

長足面 府北距二十里 二百七十五戶內〈男五百十八口 女五百三十三口〉

山倉屬山城面 府南距十五里 二百四十一戶內〈男三百六十三口 女四百二十四口〉

草坪面 府東距二十里 二百六十五戶內〈男五百七十五口 女五百六口〉

青好面 府東南距二十里 三百三十八戶內〈男五百六十一口 女四百三口〉

三旆谷面 府東距十五里 三百二十二戶內〈男七百十三口 女七百四十五口〉

正林面 府南距十里 二百九十六戶內〈男六百十一口 女五百九十八口〉

魚吞面 府東距二十里 二百七十四戶內〈男四百六十一口 女三百五十一口〉

東北面 府東距二十里 五百二戶內〈男七百五十九口 女七百三十五口〉

苔村面 府東距八里 三百五十二戶內〈男七百六十二口 女七百七十三口〉

社倉屬爭忽面 府南距二十里 三百十戶內〈男六百三十九口 女五百八十四口〉

東面 府南距二十里 五百四十四戶內〈男八百三十八口 女八百三十七口〉

楊干面 府西距三十里 二百六十六戶內〈男四百二十六口 女五百三十五口〉
 今勿村面 府南距四十里 二百二十五戶內〈男四百六十一口 女五百三十七口〉
 宗德面 府南距四十里 三百六十七戶內〈男七百十八口 女五百六十八口〉
 吾朶面 府南距五十里 二百八十二戶內〈男五百三十九口 女五百六十二口〉
 土法面 府南距四十里 二百三十戶內〈男四百五十六口 女四百八十九口〉
 北方面 府南距四十里 二百六十二戶內〈男五百十一口 女四百八十口〉
 設倉屬青龍面 府南距五十里 三百一戶內〈男六百五十口 女五百四十八口〉
 宿城面 府南距四十五里 二百六十九戶內〈男四百五十四口 女四百八十八口〉
 梧井面 府南距五十三里 四百三十二戶內〈男七百十口 女六百九十四口〉
 甘巖面 府南距六十里 二百七十戶內〈男五百六十六口 女五百七十五口〉
 廣德面 府南距七十里 二百七十四戶內〈男六百六十八口 女六百四十一口〉
 浦內面 府南距六十里 三百九十八戶內〈男七百四十五口 女七百七十六口〉
 佳士串面三島 西南距九十里 三百六十五戶內〈男六百七十五口 女五百五十六口〉
 海倉屬工以鄉面 府南距二十七里 二百八十七戶內〈男五百五十三口 女五百三十九口〉
 西北面 府西南距二十里 一百六十九戶內〈男四百五十一口 女四百六十五口〉
 茅田面 府西距二十五里 一百五十九戶內〈男四百九十九口 女三百七十四口〉
 八灘面 府南距二十里 二百五十一戶內〈男四百八十八口 女四百九十口〉
 加叱等面 府西距二十里 二百八十四戶內〈男五百二十二口 女五百五十九口〉
 雙倉屬禾方面 府西距四十五里 二百四十三戶內〈男七百五十五口 女六百二十九口〉
 水流面 府西距四十里 三百十三戶內〈男五百八十一口 女五百九十四口〉
 馬井面楓島 府西距四十里 二百七十六戶內〈男六百一口 女五百六十口〉
 草長面 府西距五十里 二百五十三戶內〈男五百九十二口 女五百八十九口〉
 奢井面 府西距六十里 三百四十戶內〈男五百三十七口 女七百口〉
 八羅串面 府西距五十里 二百七十五戶內〈男六百六十三口 女五百七十四口〉
 鴨長面 府西距八十里 四百九十六戶內〈男七百七十三口 女七百二十二口〉

【郡名】

漢南 隋城 買忽 水城 水州

【形勝】

金堂巖〈在府西五里茅旨面 上可以坐數十人 有龍形及鐵犁之痕〉

望雲臺〈在府南八十里廣德面 前臨大洋〉

望月峯〈在府西八十里鴨長面 左有大洋〉

【城池】

邑城〈土築 周回三千三十五尺 今皆頽廢〉
禦牧軒池〈長二十七尺 廣七尺 深半丈 石築〉
官廳前池〈長三十尺 廣十五尺 深今填〉
司倉前池〈長十七尺 廣十尺 深半丈 土築〉
門樓前池〈長二十尺 廣十尺 深半丈 土築〉
客舍後池〈長三十一尺 廣十七尺 今填〉
禿城山城〈周回五里 城堞三百三 堞高三丈 守堞軍十一 使令十四 衙前十三 知印九 軍牢四 婢子二〉

【官職】

都護府使兼兵馬左防禦討捕使〈文三品 武二品〉

【山川】

花山〈本府主山 國陵置標在下麓〉
躋帖山〈在府南二里 鎮山〉
弘法山〈在府西五里〉
光教山〈在府北光教面 三十里〉
舞鳳山〈一名 萬儀山 在府東三十里東北面〉
禿城山〈在府南十里 萬曆三十年壬寅 築石城〉
興天山〈在府西六十里鴨長面 有烽燧臺〉
乾達山〈在府西十五里加叱等面 自古祈雨有靈 康熙四十九年 庚寅夏 雷震 大巖崩落 自後無驗 因廢〉
棲鳳山〈在府西南十五里貞松面 有小菴〉
光德山〈在府南八十里 其上有望雲臺 有小刹〉
雙阜山〈在府西五十里禾方面 通望西南海 新創小菴〉
鷗岳山〈在府西十五里好梅折面 有梅谷書院〉
望月山〈在府西八十里鴨長面〉
兄弟山〈在府南五十里見堂面〉
鷄頭山〈在府南八十里加士申面 峯上有盤石有碁局形 世稱神人之遊〉
老留嶺〈在府西十里茅旨面 險峻而路阻隘〉
密陽嶺〈在府西三十里茅田面 岷 嶽路隘〉
總水山〈在府南七十里古龍城縣之南〉

海〈在府西南六十三里〉
 沙斤川〈在府北三十里 光教山下流〉
 大川〈在府東八里 沙斤川及龍仁駒興川合流南來 經廣德 入海〉
 後坪川〈在府北七里 有大小橋 源出廣州界 南流五十里 今勿村面入于海〉
 烏梅川〈在府東二十里 源出龍仁界 南流四十里 今勿村面 與後坪川合流 入于海〉
 〈仇二浦 赤津浦 俱在雙阜廢縣〉
 多羅高飛津〈在府南六七里 大川及振威長好川之水合流南 入海〉
 唐津浦〈在府南八十里 廣德面 牙山等邑 通涉〉
 大浦津〈在府南八十里 浦內旆 唐津等邑 通涉〉
 里浦津〈在府南五十里 今勿村面 平澤等邑 通涉〉
 陽也串〈在府西五十里 雙阜廢縣 周回六十八里 有牧場〉
 洪原串〈在府南五十里 周回七十五里 有牧場 肅宗十九年設監牧官〉
 八羅串〈在雙阜廢縣〉
 〈吾乙未串 大猪只島 小猪只應島 仇火島〉等〈俱在府西九十里 雙阜廢縣〉
 楓島〈在府西四五十里 周回二十里 成宗十七年 自南陽來屬 舊有牧場 今廢〉
 〈大猪飛 小猪飛 俱在府南七十里 加士串面〉
 鵝洲島〈周回二十里〉
 梧桐島〈周回十里〉〈俱在府南加士串面 萬曆間 爲海潮齏成兩島 有居民焉〉
 機池〈在府東十五里〉
 孫項池〈在雙阜廢縣〉
 刀梯池〈在府南六十里 新永面〉
 方下池〈在府南二十里 大旱不縮〉

【姓氏】

本府 崔 金 李 徐 白 崔 李 方 河
 〈竝村〉 雙阜 徐 宋 朴 李 沈 愼
 龍城 車 宋 任 張
 青丘 鄭 朴 李
 公利 金 葉
 內彌 李
 深谷 車
 吾朶 呂 金
 柱石 宋 金 崔 車

爭忽 李金朴
貞松 李金崔尹
楊干 朴金
奢井 都
今音村 呂李
宗德 柳徐李車
盆村 白田
沙梁堅 金宋
工以鄉 宋
榆梯 車

【風俗】

好武技 人心多質小文而好田作

【壇廟】

社稷壇〈在府西五里〉

文廟〈舊在府西三里 顯宗二年 移建于府南二里秃屹山 李慶遠明倫堂重修記曰〈以下 省略〉

厲壇〈在府北五里〉

城隍祠〈在府東五里〉

梅谷書院〈在府西十五里 好梅折面 鶻岳山下 宋文正公常往來此地 故多士請建〉

【公廡】

客舍〈順治乙酉年 具仁賢爲府使時 重建〉

隱若軒〈東軒 萬曆甲辰 李光岳爲府使時 重建 景宗大王辛丑 趙觀彬爲府使時 改建 有詩〉

〈以下 省略〉 當宁 乙巳〈李復永爲府使時 重建〉

【堤堰】

留門堤堰〈在府南三里 周回二千二百三十四尺 深三尺〉

鵲峴堤堰〈在府東五里 周回八百七十四尺 深三尺〉

陣場堤堰〈在府東十里 周回二千二百二尺 深二尺〉

方番堤堰〈在府南十五里 周回八百六十尺 深二尺〉

沙某堤堰〈在府南五十二里 周回一千三百四十四尺 深三尺〉

道差里堤堰〈在府南四十里 周回一千一百十四尺 深二尺〉

直橋堤堰〈在府南四十里 周回一千一百三十五尺 深三尺〉
 東坡堤堰〈在府東四十里 周回二千尺 深二尺〉
 權洞堤堰〈在府北十里 周回一千十五尺 深三尺〉
 於邑橋堤堰〈在府南六十里 周回一千十五尺 深一尺〉
 甘嘗堤堰〈在府南八十里 周回一千六百七十尺 深一尺〉
 智義堤堰〈在府南八十里 周回二千一百六十一尺 深一尺〉
 水今堤堰〈在府西二十里 周回四百六十一尺 深一尺〉
 寺寺里堤堰〈在府北十五里 周回一千七百四十尺 深三尺〉
 道馬橋堤堰〈在府西五十里 周回一千三百九十六尺 深二尺〉
 長橋堤堰〈在府北十五里 周回二千五十一尺 深一尺〉
 如外池堤堰〈在府南五十里 周回一千五百六十尺 深一尺〉
 獨洞堤堰〈在府西二十里 周回一千二十三尺 深一尺〉
 件餘堤堰〈在府西二十里 周回九百四十尺 深三尺〉
 新院堤堰〈在府北二十里 周回一千一百十尺 深三尺〉
 新羅勿堤堰〈在府東五十里 周回一千九百四十尺 深三尺〉
 孫項堤堰〈在府西五十里 周回一千三百十八尺 深二尺〉
 基池堤堰〈在府東十五里 周回一千一百二十九尺 深二尺〉

【倉庫】

司倉〈在府下〉
 山倉〈在禿城山城〉
 社倉〈在府南 爭忽面〉
 海倉〈在府西 工以鄉面〉
 設倉〈在府南 青龍面〉
 雙倉〈在府西 禾方面〉
 軍餉庫〈在府下〉
 軍器庫〈在府下〉

【物産】

鹽 蘇魚 兵魚 紅魚 黃石秀魚 鱸魚 眞魚 民魚 石魚 白魚 秀魚 烏賊魚 黃蛤 好獨魚 土花 石花 落蹄 海贖 大蝦 中蝦 紫蝦 青蝦 魚鱉

【橋梁】

細南橋〈在府南五里〉
後天大橋〈在府北五里〉
後天小橋〈在府北八里〉

【驛院】

同化驛〈在府西十里 大馬一匹 卜馬四匹 奴八名〉
長足驛〈在府北二十五里 大馬一匹 騎馬二匹 卜馬二匹 奴五名〉
青好驛〈在府東南二十五里 大馬二匹 卜馬三匹 奴七名〉

【牧場】

洪原牧場〈在府南七十五里浦內旆 周回二十五里 坐地田一百八十二結 元田畝 并七十六結 四十九負六束 牧吏三 牧子七十五名 馬一匹 每年上納 分養則從其上司之分定舉行〉

【烽燧】

興天山烽燧〈在府西南七十五里鴨長面 南應陽城縣槐台吉串 西應南陽府念佛山〉

【樓亭】

拱極樓〈府衙三門樓 庚申年 府使李鼎輔重建 有上樑文〉以下 省略
鎮南樓〈在禿城南標樓 李廷龜作記〉以下 省略

【寺刹】

萬儀寺〈在舞鳳山 高麗辛禑時 我太祖大王 自義州舉義回軍 僧神助在麾下 與定大策 恭讓王 特加功牌 使住是刹 因給奴婢田宅 傳子孫〉

彰善寺〈在光教山 中廢今始創〉
盤龍山寺〈今廢〉
梧桐寺〈在樓鳳山〉
淨水菴〈在三聖山〉
迦支寺〈在乾達山 今廢〉
新福寺〈在光德山〉
萬峯菴〈在工以鄉葛洞〉
栢山菴〈在雙阜山〉

【古跡】

(貞松)〈廢縣 在府西十五里 古松山部曲〉
光德〈廢縣 在府南六十里 右二縣 高麗顯宗九年 來屬〉
浦內族〈部曲〉
爭忽〈部曲 在府六十里〉
陸內彌〈部曲〉
提村〈部曲〉
青丘〈部曲〉
沙梁〈部曲 俱在府西二十里〉
公村〈部曲 在府南二十里〉
柱石鄉〈部曲〉
盆村鄉〈在府西十五里〉
工以鄉〈在府西二十里〉
奢井面〈在府南五十里〉
今勿村面〈在府南三十里〉
楊干面〈在府南三十里 本屬仁川 太宗十八年 來屬〉
三峯面〈在府西十五里〉
古等村面〈在府西三十里〉
深谷〈在府西二十五里〉
榆梯〈在府東五里〉
吾朶面〈在府南六十里 高麗史斷永絕非也 新永今屬振威〉
宗德面〈在府南六十里 本屬陽城 太宗十七年 來屬〉
鎮堡無屬鎮邑十二〈富平 仁川 南陽 通津 安城 安山 金浦 振威 陽川 龍仁 陽城 衿川〉

【人物】

高麗 崔滋盛 崔永奎
本朝 孔麟瑞 李光植 崔禧 崔天健 俞榮 任之悌 孫倬 張世傑 劉夢龍 劉纘先 李祗言 崔德仁 金遇秋 金大乾 金體乾 金城 金夏重 田鳳 李大根 元承善 權井吉 崔應一 崔宗斗 崔東老 邢浹 吳大男 鄭倬 鄭偶 朴應信 崔晚得 柳世雄 李維賢 崔廷顯 鄭漢驥 李卓男 吳道弘 金良恕 崔千仞 李繼寬 金大興 李得男 金繼男 丑男 金起丑 李應春 鄭推 曹憲卿 曹復卿 李東顯 李東詭 李東郁 奇晚獻 崔嵩齊 崔恒齊 金天龍 處士 金禹祥

【孝子】

高麗 崔婁伯 崔世湖 韓蒙松 朴時亨 李奉賢 洪汝奭 李時龜 裒弘重 尹必鳴 進士 朴再蔓 高擎天 韓瑟每 進士 金就徵

【忠臣】

韓明胤 尹廷俊

【孝婦】

隋城 車氏 咸陽 朴氏 淑夫人 安東 金氏

【烈婦】

密陽 朴氏 咸安 李氏 羅州 朴氏 龍仁 李氏 處子 龍仁 李氏 安山 李氏 忠州 金氏 順興 安氏 延安 李氏 水原 崔氏

【忠奴】

李晚萬

【旱田】

六千三百二十八結 八十七負

【水田】

五千二百七十五結 七十四負

【進貢】

生蟹〈自九月十月至封進〉

【崇禿榮羅】

租 六千六百六十三石 四斗 九升 米 八百九十八石 十三斗 太 三十九石 十斗 八升
軍餉米 四千九石 九斗 六升 太 四千九百七石 二斗 四升
勅 需米 九百二十二石 十二斗 八升

【田稅】

米 一千二百三十二石 二斗 九升 太 七百七十石 十一斗 六升〈年各不同〉

【大同】

米 三千四百五十三石 八斗 七升〈年各不同〉

【均稅】

免稅結 六十六結〈大同米 五十二石 稅米 十二石 太 四石〉

結錢 〈三千五百五十三兩 五錢 六分〉

魚鹽船稅錢 〈五百八十兩九錢 年各不同〉

官需米 一百二十石

使客支應米 一百五十石

紙地油清價米 二十石

【軍摠】

別驍士別將 一員 將 二員 馬兵別將 二員 千摠 三員 把摠 六員 哨官 三十八員 教鍊官 十員
知穀官 五員 旗牌官 六十一員

本營都案軍官 六十一人中 營都案軍官 四十人 募入軍官 三十人 都訓導 四人

別驍士 二百二十二名 別將標下軍 十八名 左右將標下軍 十名 馬別將標下軍 三十六名 千摠
標下軍 五十四名 把摠標下軍 一百八名 馬兵 四百四十四名 輜重軍 二百名 募入哨軍 三百七十
五名 步軍 三千七百五十名

本營 牢子 三十四名 旗手 六十三名 吹手 九十一名 大旗手 一百名

中營 牢子 十二名 旗手 十二名

額外

本營 牢子 三十七名 旗手 十二名 大旗手 一名

中營 牢子 十名 旗手 二十二名

執事馬丁 一百五十二名 輜重 四名 都訓導馬丁 四名

【府使先生案】

以下省略

양성현(陽城縣)—신증동국여지승람

동쪽으로 안성군 경계까지 3리이고, 남쪽으로 충청도 직산현(稷山縣) 경계까지 27리이며, 서쪽으로 진위현 경계까지 19리이고, 북쪽으로 용인현 경계까지 15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백 12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 사복홀(沙伏忽)인데, 신라 경덕왕이 적성(赤城)으로 고쳤으며 백성군(白城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는 수주(水州)에 예속시켰다. 명종이 감무를 두었는데, 조선 태종 13년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만들고,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속시켰다.

관원

현감 · 훈도 : 각 1명이다.

군명

사복홀 · 적성 · 사파을(沙巴乙).

성씨

본현 하 · 유(柳) · 이 · 임(任) · 갈 · 강(康) · 송 모두 다른 곳에서 온 성씨이다.

산천

천덕산(天德山) 현 서쪽 2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진위현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백운산(白雲山) 현 남쪽 12리 지점에 있다. 바다 괴태길곶 서쪽 1백리 지점에 있다. 괴태길곶(槐台吉串) 현 서쪽 1백리 지점에 있다. 줄같은 한 가닥 길이 진위현의 송장, 수원의 양간(楊干)을 지나서 바다에 불췌 들어갔는데, 무릇 75리이다. 목장이 있다. 홍경천(弘慶川) 현 남쪽 35리 지점에 있다. 선원천(禪院川)과 안성천 남천물이 합쳐지고, 서쪽으로 흘러 직산현 홍경원 북쪽에 와서 이 냇물이 된다. 또 수원

부 오을미곶에 들어간다. 선원천 고을 동쪽 1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죽산현 좌찬역(佐贊驛) 서쪽 끝에서 나와, 고양지(古陽智)를 지나고, 본현의 선원(禪院) 앞에 와서 냇물이 된다.

토산

웅어 · 지황

봉수

괴태길곶 봉수 남쪽으로 충청도 면천군 창택산(倉宅山)에 응하고, 또 직산현 망해산(望海山)에 응하며, 북쪽으로 수원부 홍천산과 응한다.

학교

향교 현 북쪽 2리 지점에 있다.

역원

가천역(加川驛) 현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선원(禪院) 현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소초원(所草院)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불우

청원사(靑原寺) 천덕산에 있다. 수정사(修淨寺) · 덕적사(德積寺) 모두 백운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현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현 북쪽 2리 지점에 있다. 여단¹⁾ 현 북쪽에 있다.

고적

무한성(無限城) 현 남쪽 12리 지점에 있는데, 둘로 쌓았다. 둘레는 1천 3백 5척이며, 성 안에 못 하나가 있다.

1) 여단(厲壇) : 못된 돌림병을 유행시키는 귀신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는 단으로 병이 나지 않도록 기원함. 서울과 각 고을에 있었음.

구천(九千) 남쪽으로 처음은 15리, 끝은 30리이다.
 공제(孔悌) 남쪽으로 처음은 20리, 끝은 30리이다.
 반곡(盤谷) 서쪽으로 처음은 25리, 끝은 30리이다.
 원당(元堂) 서쪽으로 처음은 20리, 끝은 30리이다.
 승량(升良) 북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20리이다.
 영통(令通) 서남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40리이다.
 금질동(金叱洞) 동북쪽으로 처음은 30리, 끝은 40리이다.
 덕산(德山) 남쪽으로 처음과 끝이 10리이다.
 구룡동(九龍洞) 남쪽으로 처음은 30리, 끝은 40리이다.
 소고니(所古尼) 서쪽으로 처음은 30리, 끝은 40리이다.
 도일(道一) 남쪽으로 끝이 35리. 울북(栗北) : 서쪽으로 처음은 40리, 끝은 45리이다.
 서신리(西新里) 서쪽으로 처음은 50리, 끝은 55리이다.
 감미동(甘味洞) 서쪽으로 처음은 65리, 끝은 65리. 이상 세 면은 수원 남쪽 경계를 넘어 옹포(瓮浦)의 옆에 있다.
 외양동(外良洞) 서쪽으로 처음은 90리, 끝은 1백 15리인데, 서쪽은 바다에 닿았다.

서원

덕봉서원(德峰書院) 숙종 을해년에 세웠고, 경진년에 사액하였다. 오두인(吳斗寅) 자는 원미(元微) 호는 양곡(陽谷)으로 해주(海州) 사람이다. 숙종 기사년에 항소(抗疏)하여 절사(節死)하였다. 벼슬은 형조판서였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고루

소사천(素沙川) 남북쪽에 네 군데가 있다.

양성현(陽城縣)

수원부(水原府) 진관(鎭管)의 관할이다.

동쪽으로 안성과의 경계에 이르는데 5리, 남쪽으로 충청도 직산과의 경계에 이르는데 37리, 서쪽으로 진위와의 경계에 이르는데 20리, 북쪽으로 용인과의 경계에 이르는데 15리이다.

서울까지의 거리는 현에서부터 1백 50리로 하루 반 정도 걸리며, 감영(監營)¹⁾, 병영(兵營)²⁾까지의 거리도 같다. 수영(水營)³⁾은 교동부(喬桐府)에 있는데 현에서부터 2백리로 이를 정도의 거리이며, 경건포(綱巾浦)는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백리의 거리이다.

방리(坊里)

현내(縣內)에는 동리(東里), 서리(西里) 2백 45호(戶)가 있으며 남자는 2백 96구(口) 여자는 2백 21구이다.

지동(紙洞) 관아로부터 동쪽으로 10리이다. 1백 9호 가운데 남자는 1백 33구이며 여자는 1백 11구이다.

금동(金洞) 관아로부터 동쪽으로 10리이다. 93호 가운데 남자는 1백 34구이며 여자는 1백 17구이다.

송오리(松五里) 관아로부터 동쪽으로 15리이다. 58호 가운데 남자는 1백 4구이며, 여자는 1백 1구이다.

덕산(德山)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15리이다. 1백 93호 가운데 남자는 2백 89구이며 여자는 1백 87구이다.

1) 각 도의 감사(監司), 즉 관찰사가 집무하던 관청.

2) 지방에 주둔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던 곳.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병영이 감영과 병행되어 설치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한성부 서문(西門) 밖의 감영이 병영의 구실도 했다.

3) 조선시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주재하던 병영, 병선 건조, 무기 제조, 수군의 훈련 등을 담당했다.

구천리(九千里)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20리이다. 76호 가운데 남자는 97구이며 여자는 78구이다.

공제(孔梯)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25리이다. 1백 46호 가운데 남자는 2백 11구이며 여자는 1백 18구이다.

도일(道一)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30리이다. 1백 65호 가운데 남자는 2백 24구이며 여자는 1백 86구이다.

영통(令通)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30리이다. 1백 20호 가운데 남자는 2백 62구이며 여자는 1백 86구이다.

구룡동(九龍洞)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30리이다. 1백 95호 가운데 남자는 2백 97구이며 여자는 2백 85구이다.

반곡(盤谷) 관아로부터 서남쪽으로 20리이다. 1백 28호 가운데 남자는 2백 40구이며 여자는 2백 70구이다.

원당(元堂)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20리이다. 1백 95호 가운데 남자는 3백 11구이며 여자는 2백 70구이다.

승양원(升良院)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5리이다. 85호 가운데 남자는 97구이며 여자는 95구이다.

소고니(所古尼)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30리이다. 1백 74호 가운데 남자는 2백 38구이며 여자는 1백 87구이다.

울북(栗北)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50리이다. 71호 가운데 남자는 1백 10구이며 여자는 61구이다.

감미동(甘味洞)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60리이다. 1백 40호 가운데 남자는 2백 82구이며 여자는 2백 11구이다.

승양동(升良洞)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90리이다. 1백 3호 가운데 남자는 1백 98구이며 여자는 1백 14구이다.

호를 합한 2천 3백 21호 가운데 남자는 3천 5백 23구이고 여자는 2천 6백 46구이다. 기묘년(己卯年, 1759년)의 장적(帳籍)에 의거했다.

도로(道路)

현에서부터 서쪽으로 금노치(金老峙)를 지나 진위현에 이르는 20리의 길이 있고, 동쪽으로는 한천(漢川)을 지나 안성군에 이르는 20리의 길이 있다. 북쪽으로는 이현(梨峴)을 지나 용인현에 이르는 70리의 길이 있고, 남쪽으로는 덕산(德山) 앞에서 본현의 소사(素沙) 점막(店幕)에 이르는 30리의 길이 있는데 이것이 합하여 삼남(三

南)의 큰길이 된다. 서쪽은 원당(元堂) 앞길을 지나 본 현의 해창(海倉)까지 60리의 거리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구려의 사복홀(沙伏忽)이다. 신라 경덕왕(景德王)때 적성(赤城)으로 고치고 백성군(白城郡)⁴⁾의 영현(領縣)⁵⁾을 삼았고, 고려 초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수주(水州)⁶⁾에 속하게 하였고 명종(明宗) 때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태종(太宗) 13년(1413)에 예대로 현감(縣監)을 두었으며,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옮겨 속하게 하였다.

군명(郡名)

사복홀, 적성, 사파을(沙巴乙)

성지(城池)

무한성(無限城)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석축(石築)이며 주변 길이는 1천 3백 5척(尺)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백제 때에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흔적만이 있을 뿐이고 담이나 관문(關門)도 없다. 성 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제단과 하나의 연못이 있다.

관직(官職)

현감 문남(文南)⁷⁾ 6품.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군관(軍官) 12인, 아전(衙前) 30인, 지인(知印) 16인, 사령(使令) 11명, 가관노(假官奴) 18명, 관비(官婢) 5명.

산천(山川)

산의 한 줄기는 고양지(古陽智) 쌍령산(雙嶺山)으로부터 내려와서 이현(梨峴)을 지나 남쪽으로 천덕산(天德山)을 이루고 또 남쪽으로 백운산(白雲山)이 되면서 그친다.

선원천(禪院川) 근원은 죽산 좌찬(左贊)으로부터 시작되어 읍의 앞을 지나 안성대천(大川)과 합류하여 직산의 경계를 이룬다.

4) 지금의 안성(安城)

5)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방 군현(郡縣)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역에 한하여 배치하였다. 즉 고려시대의 지방은 외관(外官)이 파견된 영군(嶺郡)·영현(領縣)과 그들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屬郡)·속현(屬縣)으로 구분되었다.

6) 지금의 수원

7) 문관과 음관(蔭官).

홍경천(弘慶川) 소사교(素沙橋)의 서남쪽을 지나 진위현의 장호천(長好川)과 합류하여 다라와비진(多羅窩飛津)이 된다. 남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쌍령산에서 발원하여 본현의 금동면(金洞面)을 지나 용인의 대천과 합류하여 산북(山北) 승량원(升良院)을 지난다. 이어 진위 장호천(長好川)의 물과 합류하여 항곶진(亢串津)의 물이 되고 또 아래로 본현의 소사교(素沙橋) 아래의 물와 합류하여 다라와비진(多羅窩飛津)이 되면서 바다로 흘러든다.

명봉산(鳴鳳山) 수원 양간(楊干)과의 경계가 되고 산 아래에 포내(浦內) 삼면(三面)이 있다. 서쪽으로 50리를 내려가면 괴태길산(槐台吉山)이 되는데 본 현의 봉대(烽臺)이다.

천덕산(天德山) 현의 서쪽 2리에 있는데 진산이며 진위현조에서도 보인다.

백운산(白雲山) 현의 남쪽 20리에 있다.

홍경천(弘慶川) 현의 남쪽 35리에 있다.

선원천(禪院川) 현의 동쪽 1리에 있는데 죽산 좌찬역 서쪽 끝에서부터 발원한다.

성씨(姓氏)

하(河)씨, 류(柳)씨, 이(李)씨, 임(任)씨, 갈(葛)씨, 강(康)씨, 송(宋)씨.

풍속(風俗)

유업(儒業)을 숭상하고 충렬(忠烈)이 많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현의 서쪽 3리에 있다.

문묘(文廟) 향교에 있으며 현의 동쪽 3리 지점이다.

여단(厲壇) 현의 북쪽 4리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현의 서쪽 2리에 있다.

〈신증(新增)〉 **덕봉사우(德峰祠宇)** 현의 5리에 있으며 판서(判書) 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의 사우이다. 숙종 갑술년(1694년)에 건립되었으며 사액(賜額)서원⁸⁾이다.

공해(公廩)

객사벽대청(客舍壁大廳) 4칸.

8) 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서원의 명칭을 적은 서원명현판과 노비, 서적, 토지 등을 하사 받은 서원. 명종(明宗)때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의 현판을 받으면서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동헌(東軒) 6칸.
 서헌(西軒) 4칸.
 아사(衙舍) 13칸.
 내동헌(內東軒) 5칸.
 외동헌(外東軒) 6칸.
 공수(公湏) 4칸.
 현사(縣司) 3칸.
 향청(鄉廳) 4칸.
 장청(將廳) 4칸.
 군관청(軍官廳) 3칸.
 작청(作廳) 6칸.

제언(堤堰)

읍내제언(邑內堤堰) 현의 동쪽 2리에 있다. 둘레는 9백 98척이고 수심은 2척이다.

송오리제언(松五里堤堰) 현의 동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9백 70척이고 수심은 2척이다.

덕산제언(德山堤堰)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1천 6백 88척이고 수심은 2척이다.

구천리제언(九千里堤堰) 현의 남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1천 1백 94척이고 수심은 3척이다.

공계제언(孔梯堤堰) 현의 남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2천 24척이고 수심은 2척이다.

구룡동제언(九龍洞堤堰)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둘레는 1천 1백 94척이고 수심은 3척이다.

반곡백야리제언(盤谷白也里堤堰)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둘레는 1천 5백 41척이고 수심은 3척이다.

소유월제언(小六月堤堰) 반곡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도솔항제언(都率項堤堰)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7백 27척이고 수심은 2척이다.

원당제언(元堂堤堰) 현의 서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소고니제언(所古尼堤堰) 현의 서쪽 30리에 있다. 둘레는 9백 79척이고 수심은 2척이다.

창고(倉庫)

○ 읍창(邑倉)

좌기청(坐起廳) 3칸(間).

동고(東庫) 11칸.

서고(西庫) 12칸.

남고(南庫) 7칸.

○ 남창(南倉)은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좌기청(坐起廳) 3칸

동고(東庫) 7칸.

남고(南庫) 6칸.

○ 해창(海倉)은 현의 서쪽 60리에 있다.

좌기청(坐起廳) 3칸

남고(南庫) 5칸.

서고(西庫) 4칸.

북고(北庫) 3칸.

교량(橋梁)

소사교(素沙橋)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아교(牙橋) 소사평(素沙坪)의 직산 경계에 있다.

역원(驛院)

가천역(加川驛) 현의 서쪽 원당면(元堂面) 20리에 있다.

대마(大馬)가 3필, 기마(騎馬)가 4필, 복마(卜馬)⁹⁾가 2필이고, 공노(貢奴)는 14명, 응공(應貢)은 7명, 비(婢)는 없다.

목장(牧場)

괴태장(槐台場) 수원 홍원(洪原)에 속하며 현의 서쪽 90리에 있고 둘레는 20리이다. 마필(馬匹)은 암수 모두 48필이며 가가(假家)가 세 곳이다. 곡초(穀草)는 6천 속이고 진상하는 말은 한 필인데 매년 4월 안에 올려 보낸다. 분양마(分養馬)¹⁰⁾는 8월 안에 나누어준다.

9) 짐을 싣는 말

10)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고을에 나눠주어 기르게 하는 말.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기르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데 기한이 되면 도로 돌려 받았다.

봉수(烽燧)

괴태곶(槐台串) 현의 서쪽 90리에 있다. 남쪽으로는 충청도 면천(沔川)의 창택(倉宅) 봉수와 연락하고 북쪽으로는 수원 흥천산(興天山) 봉수와 연락한다.

사찰(寺刹)

청원사(淸源寺) 천덕산(天德山) 뒷 기슭에 있다.

덕적사(德積寺) 명봉산(鳴鳳山)에 있다.

수도암(修道菴) 괴태(槐台) 봉수 아래에 있다.

고적(古跡)

김육비(金堉碑) 소사교(素沙橋) 옆의 길 위에 있다. 현종(顯宗) 기축년에 세웠다. 김육이 대동법(大同法)¹¹⁾을 건의하여 실시하였는데 백성에게 편리하여 기호(畿湖) 민인(民人)들이 그 덕을 칭송하였다. ○ 김육은 잠곡관영상(潛谷官領相)이라고 불리어 졌다.

고려송(高麗松) 현의 남쪽 20리에 있다. 갈마동(渴馬洞)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고려 때부터 자랐다고 한다. ○ 진사(進士) 조종준(趙宗俊)의 시에 이르기를 '비스듬히 우산을 쓴 산사람이 흰 개를 끌고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옛 명성을 전하네. 하늘에 늘어선 검푸른 빛 삼천척이요 떨어지는 비와 서리맞은 껍질 팔백년을 지났네. 들리는 통소소리에 마음을 기울이니 지나가는 나그네라. 나무 뿌리에 걸터앉아 쉬면서 때로 옷을 벗어놓으니 늙은 중의 어깨가 드러나는구나. 동쪽에서 태어나 다행히 태몽의 화를 피한지 여러 번, 오랜 세월 맑은 바람만이 홀로 너를 온전하게 했구나.'

진보(鎭堡)

괴태장 안에 수원 소속의 흥원 감목관(監牧官)¹²⁾이 있다. 현에서부터 서쪽으로 90리에 있다.

인물(人物)

〈고려〉 이천(李堧) 관직이 첨의평리개성윤(僉議評理開城尹)에 이르렀다.

11) 조선 중기 이후 공물(貢物)을 미곡(米穀)으로 환산하여 통일한 납세 제도. 선조 41년(1608), 방납(防納)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였는데, 먼저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한 경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방으로 확대, 숙종 34년(1708)년에 완성되었다.

12) 지방의 목장(牧場) 일을 맡아보는 종6품의 관직

〈본조〉 이옥(李沃) 이천(李堧)의 증손이다. 무과에 합격하여 중추부사(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이추(李推) 관직이 황해도 도관찰출척사(黃海道都觀察黜陟使)에 이르렀다.

이순지(李純之)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이 판중추(判中樞)에 이르렀다.

이예(李芮) 과거에 두 번 합격하여 관직이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질(文質)이다. 문장을 잘한다는 명망이 있었다.

이승소(李承召) 세종 정묘년(丁卯年, 1447)의 과거에 장원을 하였고, 또 중시(重試)¹³⁾에도 합격하였다. 성종 때 좌리공신(佐理功臣)¹⁴⁾을 하였고 양성군(陽城君)에 봉해졌다. 관직은 예조판서에 이르렀고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충신 이대원(李大源)은 만력(萬曆) 정해년에 녹도만호(鹿島萬戶)로서 전쟁에서 왜적을 함몰시켜 수사(水使)에 올랐다. 또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제수 받았고 정려(旌閭)¹⁵⁾되었다.

효자 봉한정(奉漢鼎)은 정문이 덕산(德山)에 있다. 기축년(己丑年)에 현감 유명건(兪命健)이 마을 앞에 비를 세우고 그를 기렸다.

오두웅(吳斗雄)은 어머니가 병이 들자 어머니의 변을 맛보아 병세를 살피고 상(喪)을 당해서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 곡을 하였다. 어머니의 상이 끝나고서도 어렸을 때라서 행하지 못한 아버지 상을 3년 더 추상(追喪) 하였다. 지금 임금이 정사년(丁巳年)에 지평(持平)을 제수하였고 신유년(辛酉)에 정려(旌閭) 하였다.

〈신증(新增)〉 허곡(許澗) 임금이 기묘년(己卯年)에 정려(旌閭) 하였다.

한전(旱田)

원장부(元帳付) 1천 9백 76결 56부 2속 중에 현재 경작하는 실결(實結)은 7백 28결 93부 6속이다.

수전(水田)

원장부 1천 80결 31부 7속 중에 현재 경작하는 실결은 4백 85결 23부 8속이며 모두 시기전(時起田)이다.

13) 문과 당하관을 위하여 둔 과거.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였으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상 정3품의 품계로 올려주었다.

14) 조선조 성종 2년(1471)에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는 공으로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등 75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15) 마을 입구나 집에 문을 세워 선행을 칭찬하고 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

조직(司職)

호조(戶曹)의 벼는 1백 96석 12두 3승 4홉, 보리는 55석 3두 9승 1홉 5작이다.

상평청(常平廳)¹⁶⁾의 벼는 3백 55석 5두 7승 6홉 9작, 보리는 1천 29석 5두 3승 3홉 3작이다. 진청(賑廳)은 쌀 1백 44석 6두 2승 1홉 1작, 콩은 4백 98석 1승 4홉 4작, 벼는 1만 2백 54석 10두 8승 2홉 4작, 팥은 1석 4두 6승 4홉 7작, 밀은 4백 12석 3두 4승 6홉 4작, 보리는 9백 49석 2두 2승 3홉 6작이다.

균역청(均役廳)¹⁷⁾은 쌀 1백 30석 12두 2승 2홉 9작, 옮겨온 벼는 18석 13두 5승 1홉 6작, 콩은 4석 5두 5승 2홉 4작, 쌀은 43석 1두 7승 6홉이다. 영미(營米)는 54석 5두 7홉 4작, 콩은 6석 4두 9작, 벼는 1천 3백 30석 10두 3승 7홉 6작이고, 영진미(營賑米)는 2석 3두 6승 4홉 1작, 콩은 68석 7두 6승 4홉 5작, 팥은 2승 6홉 6작, 벼는 6백 70석 1두 8승 1홉 4작이며 고마청(雇馬廳)¹⁸⁾의 벼는 7백 8석 9두 3승 6홉 7작, 쌀은 25석 6두 1승 3작이다.

매해 10월에 창고를 열고 12월에 창고를 닫는다.

전세(田稅)

쌀이 1백 29석 5두 9승 5홉 2작이고, 대두는 1백 94석 7두 8승 5홉 8작이다.

매해 2월에 거두어 3월에 배에 신고 본현 해창(海倉) 용포(瓮浦)에서 출발하여 강화 뱃길을 거쳐 용산강(龍山江)에 도착한다.

물길을 계산하면 바람이 좋을 때 5일 정도 걸린다.

대동(大同)

기묘년(1759년) 조 두 번의 상납미는 5백 92석 5두 7홉 7작이다. 영수미(營需米)는 18석이고 관수미(官需米)는 1백석이며, 저치미(儲置米)는 1백 79석이다. 작목(作物)¹⁹⁾은 없다.

매년 실제 경작하는 결수에 따라 마련하므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 배에 선적하고 떠나는 날이나 경유하는 길, 정박하는 곳 등은 전세를 운반하는 경우와 같다.

16) 조선조 초기에 물가 조절 기관으로 설치된 관아.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선혜청(宣惠廳)이 창설되고 상평청과 진흥청은 이에 합속되었다.

17) 균역법(均役法)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영조 26년(1750)에 설치되었다가 영조 29년에 선혜청에 병합되었다. 종래 양민(良民)이 신역(身役)의 대가로 바치는 군포(軍布)가 매해 일인당 2필이었는데 균역법을 실시하여 이를 1필로 감하고 그 대신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 은결(隱結)의 결전(結錢)으로 부족 분을 보충하게 하였다.

18) 민간에서 징발한 말을 관리하던 조선 중기의 관청.

19) 전세(田稅)를 받을 때 곡식 대신에 무명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 또는 그 무명.

군세(均稅)

기묘조(己卯條)의 본청에 들이는 대동미(大同米)는 15석 13두 5승이다. 세미(稅米)는 1석 13두 4승이고 세태(稅太)는 5석 2두 6승이다. 결전(結錢)은 6백 61량 2전 2푼이고 어염선세전(魚鹽船稅錢)은 88량이며 선무포전(選武布錢)²⁰⁾은 60량이다.

결전(結錢)은 그해 실제 경작하는 토지 결수에 따라 마련한다. 어염선세, 선무포는 그때 그때의 수에 따라 거두어들이며 기한 내에 상납하도록 한다.

봉름(俸廩)

관수미(官需米)는 1백석인데 매일 4두 1승 6홉 6작씩을 12개월에 나누어준다. 아록공수위미(衙祿公須位米)는 36석 10두인데, 봄에는 매일 1두 3승 3홉 3작을, 가을에는 매일 1두 2승 2홉 2작을 12개월에 나누어준다.

땀감이나 핑, 닭은 잡역(雜役)으로 정해지는 것을 혁파하고 매 결당 잡역전(雜役錢)으로 1냥씩 거두어들인다.

군병(軍兵)

훈련도감(訓練都監)의 포수보(砲手保)는 1백명, 군항보(軍餉保)²¹⁾는 44명이다.

어영청(御營廳)의 정군은 40명, 자보(資保)²²⁾는 43명, 관납보(官納保)는 84명이다.

금위영(禁衛營)의 정군은 1백 27명, 자보(資保)는 1백 36명, 관납보(官納保)는 78명, 별파진보(別破陣保)²³⁾는 3명이다.

수어청(守禦廳)의 별파진(別破陣)은 23명이다.

속오군(束伍軍)은 4백 2명, 부아병(部牙兵)은 2백 50명, 둔아병(屯牙兵)²⁴⁾은 2명, 군수보(軍需保)는 14명, 경표하보(京標下保)²⁵⁾는 1명이다.

총융장초군(摠戎壯抄軍)은 65명, 둔군수보(屯軍需保)는 2백 94명, 경표하보(京標下保)는 3명이다.

병조의 기병(騎兵)은 5백 57명, 보병은 18명, 금군보(禁軍保)는 10명, 보직보(裨直保) 1명, 호연대보(扈輦隊保) 4명, 청파노원양역보(靑坡盧原兩驛保) 90명, 내취보(內吹保) 6명, 악생보(樂生保) 8명, 악공보(樂工保) 3명, 창준보(唱準保) 25명, 영기수호

20) 각 지방의 군관 중에서 무술시험을 거쳐 선출한 군관을 일러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 하는데 그 군관에게 주는 보포, 그에 해당하는 돈을 말한다.

21) 군량에 충당하기 위해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대신 삼배, 무명 등을 받는 군정(軍丁)

22)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던 보인(保人).

23) 주로 화기(火器)를 다루며 무관 잡직으로 편성되었다.

24) 둔전(屯田)에 소속된 아병.

25) 서울에 있는 각 군영의 표하군을 말함. 표하군은 대장(大將)이나 장관(將官)에게 딸린 수하 친병(手下親兵)이다.

보(營旗手戶保) 27명, 봉수별장(烽燧別將) 1인, 감관(監官) 5인, 봉수군(烽燧軍) 25명, 군보(軍保) 75명이다.

이상의 군액(軍額)은 2천 5백 77명인데, 그 중 양역(良役)은 1천 5백 77명, 사역(私役)은 1천명이다.

<한문 원문>

陽城縣 水原鎭管 東至安城界五里 南至忠淸道稷山界三十七里 西至振威界二十里 北至龍仁界十五里 距京自縣一百五十里 一日半程 監兵營上同 水營喬桐府自縣西距二百里 二日程 綱巾浦自官西距一百里

坊里 縣內 東里 西里 二百四十五戶 男二百九十六口 女二百二十一口
紙洞 自官東距十里 一百九戶 男一百三十三口 女一百一十一口
金洞 自官東距十里 九十三戶 男一百三十四口 女一百一口
德山 自官南距十五里 一百九十三戶 男二百八十九口 女一百八十七口
九千里 自官南距二十里 七十六戶 男九十七口 女七十八口
孔梯 自官南距二十五里 一百四十六戶 男二百一十一口 女一百十八口
道一 自官南距三十里 一百六十五戶 男二百二十四口 女一百八十六口
令通 自官南距三十里 一百二十戶 男二百六十二口 女一百八十六口
九龍洞 自官南距三十里 一百九十五戶 男二百九十七口 女二百八十五口
盤谷 自官西南距二十里 一百二十八戶 男二百四十口 女二百七十口
元堂 自官西距二十里 一百九十五戶 男三百一十一口 女二百七十口
升良院 自官西距十五里 八十五戶 男九十七口 女九十五口
所古尼 自官西距三十里 一百七十四戶 男二百三十八口 女一百八十七口
栗北 自官西距五十里 七十一戶 男一百十口 女六十一口
甘味洞 自官西距六十里 一百四十戶 男二百八十二口 女二百一十一口
升良洞 自官西距九十里 一百三戶 男一百九十八口 女一百十四口
合戶二千三百二十一戶 男三千五百二十三口 女二千六百四十六口 己卯式帳籍爲準

道路 自縣西距金老峙路振威縣二十里 東由漢川路安城郡二十里 北由梨峴路龍仁峴七十里 南距德山前路本縣素沙店幕三十里 合爲三南大路 西由元堂前路本縣海倉六十里

【建置沿革】本高麗沙伏忽 新羅景德改赤城爲白城郡領縣 高麗初改今名 顯宗九年屬水州 明

宗置監務 太宗十三年例改爲縣監 自忠清道移隸本道

【郡名】沙伏忽 赤城 沙巴乙

【城池】無限城 在縣南十里 石築周廻一千三百五尺 傳言百濟所築而有痕而已 無障堞門關之事 上有祈雨祭壇又有一池

【官職】縣監文南六品 座首一人 別監二人 軍官十二人 衙前三十人 知印十六人 使令十一名 假官奴十八名 官婢五名

【山川】山之一脉 自古陽智雙嶺山來過梨峴 南爲天德山 又南爲白雲山而止 禪院川源自竹山左贊過邑前 仍與安城大川 合爲稷山界 弘慶川過素沙橋西南 與振威縣長好川 合流爲多羅窩飛津 南流一派 發源于雙嶺山 過本縣金洞面 合于龍仁界大川 過山北升良院 仍與振威長好川水 合流爲亢串津水 又下與本縣素沙橋下流水 合爲多羅窩飛津入于海 鳴鳳山 卽水原楊干界 而山下有浦內三面 西下五十里爲槐台吉山 卽本縣烽臺也 天德山 在縣西二里鎮山 又見振威縣 白雲山 在縣南二十里 弘慶川 在縣南三十五里 禪院川 在縣東一里 源出竹山佐贊驛西洞

【姓氏】河 柳 李 任 葛 康 宋

【風俗】爭尙儒業 多著忠烈

【壇廟】社稷壇 在縣西三里

文廟 鄉校在縣東三里

癘壇 在縣北四里

城隍壇 在縣西二里

〈新增〉德峰祠宇 在縣五里 卽判書忠貞公吳斗寅祠宇也 肅宗朝甲戌建祠 賜額

【公廨】客舍壁大廳 四間

東軒 六間

西軒 四間

衙舍 十三間

內東軒 五間

外東軒 六間

公湏 四間
縣司 三間
鄉廳 四間
將廳 四間
軍官廳 三間
作廳 六間

【堤堰】邑內堤堰 在縣東二里 周廻九百九十八尺 水深二尺
松五里堤堰 在縣東十里 周廻九百七十尺 水深二尺
德山堤堰 在縣南十里 周廻一千六百八十八尺 水深二尺
九千里堤堰 在縣南十五里 周廻一千一百九十四尺 水深三尺
孔梯堤堰 在縣南二十里 周廻二千二十四尺 水深二尺
九龍洞堤堰 在縣南三十里 周廻一千一百九十四尺 水深三尺
盤谷白也里堤堰 在縣西二十五里 周廻一千五百四十一尺 水深三尺
小六月堤堰 在盤谷 今廢
都卒項堤堰 在縣西二十里 周廻七百二十七尺 水深二尺
元堂堤堰 在縣西 今廢
所古尼堤堰 在縣西三十里 周廻九百七十九尺 水深二尺

【倉庫】邑倉 坐起廳 三間 東庫 十一間 西庫 十二間 南庫 七間
南倉 在縣南三十里 坐起廳 三間 東庫 七間 南庫 六間
海倉 在縣西六十里 坐起廳 三間 南庫 五間 西庫 四間 北庫 三間

【橋梁】素沙橋 在縣南三十里
牙橋 在素沙坪 稷山界

【驛院】加川驛 在縣西元堂面二十里 大馬 三匹 騎馬 四匹 卜馬 2匹 貢奴 十四名 應貢 七名
婢 無

【牧場】水原洪原屬槐台場 在縣西九十里 周廻二十里 馬匹雌雄 并四十八匹 假家 三處 郊穀
草 六千束 封進馬 一匹 每年四月內上送 分養馬 一從分定八月內出給

【烽燧】槐台串 自縣西距九十里 南應忠清道河川倉宅烽燧 北應水原興天山烽燧

【寺刹】清源寺 在天德山後麓 德積寺 在鳴鳳山 修道菴 在槐台烽臺下

【古跡】金墳碑 在素沙橋傍道上 顯宗朝己丑 金墳建白設行大同法以便於民 畿湖民人等以頌其德 ○金墳號潛谷官領相

高麗松 在縣南二十里 渴馬洞諺傳 高麗時所生 ○進士趙宗俊詩曰 偃蓋山人白狗牽 來從麗代舊名傳 參天黛色三千尺 溜雨霜皮八百年 聽籟幾傾行旅耳 憩根時袒老僧肩 生東幸脫秦封累 萬古清風獨爾全

【鎮堡】槐台場內有水原屬洪原監牧官 自縣西距九十里

【人物】高麗李埏 官至僉議 坪理開城尹 本朝李沃埏之曾孫 擢武科至中樞府事 李推 官至黃海道都觀察 黜陟使 李純之 登第官至判中樞 李芮 再登第官至刑曹判書 諡文質 有文名 李承召 世宗朝丁卯科壯元 又擢重試 成宗朝參佐理功臣 封陽城郡 官至禮曹判書 以文章名世 諡門簡

忠臣李大源 萬曆丁亥 以鹿島萬戶 力戰倭賊 陷沒陞拜水使 又贈兵曹參判 命旌閭

孝子李漢鼎 旌門在德山村 己丑間縣監俞命健立碑於村前以表之

吳斗雄 母病嘗糞 及其喪逐日上山哭 喪畢以兒時未及服父喪 追喪三年 今上丁巳 贈持平 辛酉 命旌閭

〈新增〉許灑 上之己卯命旌閭

旱田 元帳付一千九百七十六結五十六負二束內 行用實結七百二十八結九十三負六束

水田 元帳付一千八十結三十一負七束內 行用實結四百八十五結二十三負八束 一從時起

糶糶 戶曹 租一百九十六石十二斗三升四合 牟五十五石三斗九升一合五勺 常平廳 租三百五十五石五斗七升六合九勺 牟一千二十九石五斗三升三合三勺 賑廳 米一百四十四石六斗二升一合一勺 太四百九十八石一升四合四勺 租一萬二百五十四石十斗八升二合四勺 豆一石四斗六升四合七勺 小麥四百十二石三斗四升六合四勺 牟九百四十九石二斗二升三合六勺 均役廳 米一百三十三石十二斗二升二合九勺 移轉租十八石十三斗五升一合六勺 太四石五斗五升二合四勺 米四十三石一斗七升六合 營米五十四石五斗七合四勺 太六石四斗九勺 租一千三百三十石十斗三升七合六勺 營賑米二石三斗六升四合一勺 太六十八石七斗六升四合五勺 豆二升六合六勺 租六百七十石一斗八升一合四勺 雇馬廳 租七百八石九斗三升六合七勺 米二十五石六斗一升三勺 每當十月開倉 十二月封倉

田稅 米一百二十九石五斗九升五合二勺 太一百九十四石七斗八升五合八勺 每當二月收捧 三月裝載 自本縣海倉瓮浦發船 由江華海路 到龍山江 ○以水路計之則 順風五日程

大同 己卯條兩等上納米 五百九十二石五斗七合七勺 營需米十八石 官需米一百石 儲置米一百七十九石 作木無 ○每年從時起結數磨鍊 故贏縮不同 裝發日期路由所泊 與田稅同

均稅 己卯條本廳納大同米十五石十三斗五升 稅米一石十三斗四升 稅太五石二斗六升 結錢六百六十一兩二錢二分 魚鹽船稅錢八十八兩 選武布錢六十兩 結錢從時起而磨鍊 魚鹽船稅選武布依時數而收捧 趁限上納

俸廩 官需米一百石 每日四斗一升六合六勺式十二朔分排 衙祿公頂位米三十六石十斗 春每日一斗三升三合三勺 秋每日一斗二升二合二勺式十二朔分排 柴炭雉雞雜役詳定時革罷 每結雜役錢一兩式依詳定收捧

軍兵 訓練都監 砲手保 一百名 軍餉保 四十四名 御營廳正軍 四十名 資保 四十三名 官納保 八十四名 禁衛營正軍 一百二十七名 資保 一百三十六名 官納保 七十八名 別破陣保 三名 守禦廳別破陣 二十三名 束伍軍 四百二名 部牙兵 二百五十名 屯牙兵 二名 軍需保 十四名 京標下保 一名 摠戎壯抄軍 六十五名 屯軍需保 二百九十四名 京標下保 三名 兵曹騎兵 五百五十七名 步兵 十八名 禁軍保 十名 袂直保 一名 扈輦隊保 四名 青坡盧原兩驛保 九十名 丙吹保 六名 樂生保 八名 樂工保 三名 唱準保 二十五名 營旗手戶保 二十七名 烽燧別將 一人 監官 五人 烽燧軍 二十五名 軍保 七十五名

以上軍額二千五百七十七名內 良役一千五百七十七名 私役 一千名

양성군읍지(陽城郡邑誌)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 사복홀(沙伏忽)인데, 신라 경덕왕이 적성(赤城)이라 고쳐서 백성군(白城郡) 속현(屬縣)¹⁾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기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는 수주(水州)에 예속시켰다. 명종이 감무(監務)²⁾를 두었는데, 본조 태종 13년(1413)에 현감으로 만들고, 충청도에서 본도(本道)인 경기도에 이속(移屬)시켰다.

군명(郡名)

사복홀 · 적성 · 사과을(沙巴乙)이라 한다.

성씨

본현(本縣)에는 하(河) · 유(柳) · 이(李) · 임(任) · 갈(葛) · 강(康) · 송(宋)이 있다. 모두 내성(來姓)이다.

관직

현감(縣監) 한 사람이다.

훈도(訓導) 한 사람인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학교

향교 현의 북쪽 2리 지점에 있다.

- 1)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縣). 따라서 지방관이 파견된 현인 주현(州縣)의 지방관이 직접 속현을 관할하였음.
- 2) 고려시대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屬縣)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종(睿宗) 이후로 점차 파견한 하급 지방관으로, 이 관직은 이후 속현이 없어짐에 따라 현감(縣監)으로 되었음.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현의 서쪽 2리 지점에 있다. 건륭(乾隆) 을사년(1785)에 옛 터에서 앞으로 7보 나아가 새로 지었다.

여단(厲壇)³⁾ 현의 북쪽 4리 지점에 있다. 건륭 을사년(1785)에 옛 터에다 남향으로 새로 지었다.

기우단(祈雨壇) 하나는 천덕산(天德山)에 있고, 다른 하나는 무한성(無限城) 용추(龍湫) 위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현의 북쪽 2리 지점에 있다.

덕봉사우(德峯祠宇) 현의 남쪽 5리 지점에 있는데, 판서 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의 사당이다. 숙종 갑술년(1694)에 사액(賜額)⁴⁾을 받았다.

산천

천덕산(天德山) 현의 서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산 위에 기우제단이 있다. 현의 진산(鎭山)⁵⁾이다.

백운산(白雲山) 현의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괴태산(槐台山) 현의 서쪽 100리 지점에 있다. 줄 같은 한 가닥 길이 진위현의 송장면과 수원을 지나서 바다에 들어간다. 목마장이 있다.

이상의 산천 이외에 새로이 덧붙인다.

고성산(高城山) 읍의 서남쪽 5리 지점에 있다.

월출산(月出山) 천덕산의 동쪽으로부터 5리를 뺀어나가 서쪽이 열렸는데 읍의 주산(主山)⁶⁾이다.

소사천(素沙川) 현의 남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선원천(禪院川)과 안성군(安城郡) 남천(南川)의 물이 합류하여 서쪽에서 이 냇물이 된다.

선원천(禪院川) 현의 동쪽 2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죽산(竹山)에서 나와 고양지(古陽智)를 지나 현의 선원(禪院) 앞에 이르러 이 냇물이 된다.

바다 현의 서쪽 100리 지점인 괴태산 서쪽에 있다.

풍속

순박하다.

3) 여제(厲祭)를 지내는 제단. 여제는 돌립병을 퍼뜨리는 악귀를 위무(慰撫)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임.

4) 임금의 사당(祠堂)·서원(書院)·누문(樓門) 등의 이름을 직접 지어줌을 의미함.

5) 도읍이나 성시(城市)의 뒤쪽에 있는 큰 산으로, 그 도읍이나 성시를 진호(鎭護)한다고 여겨 이곳에 제사를 드렸음.

6) 주택·궁궐이나 읍 등의 바로 뒤에 놓여있는 산봉우리.

방리(坊里)

읍내 동리(東里)·서리(西里)·향촌리(鄉村里)·추곡리(楸谷里)가 있다.

지동면(紙洞面)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지점에 있는데, 상리(上里)·중리(中里)·하리(下里)가 있다.

금곡면(金谷面) 관문으로부터 25리 지점에 있는데, 상리(上里)·장항리(獐項里)·미이천리(彌龜川里)가 있다.

송오리면(松吾里面) 관문으로부터 10리 지점에 있는데, 화산리(火山里)·중리(中里)가 있다.

덕산면(德山面) 관문으로부터 남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미륵당리(彌勒堂里)·중리(中里)·하리(下里)가 있다.

구천리면(九千里面) 관문으로부터 10리 지점에 있는데, 마정리(馬井里)·방축리(防築里)·문대리(文岱里)가 있다.

공제면(孔梯面) 관문으로부터 남쪽 25리 지점에 있는데, 신두리(新頭里)·공제리(孔梯里)가 있다.

영통면(令通面) 관문으로부터 남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상리·사천리(沙川里)·건천리(乾川里)·유천리(柳川里)가 있다.

도일면(道一面) 관문으로부터 남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반리(盤里)·주정리(朱井里)·입암리(立巖里)·용두리(龍頭里)·신촌리(新村里)·승이리(繩頭里)가 있다.

구룡동면(九龍洞面) 관문으로부터 남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진리(陳里)·방축리(防築里)·점막리(店幕里)·창리(倉里)가 있다.

반곡면(盤谷面) 관문으로부터 서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침교리(砧橋里)·청룡리(靑龍里)·진촌리(陣村里)·관동리(官洞里)가 있다.

원당면(元堂面) 관문으로부터 서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상리·내촌리(內村里)·불지리(佛智里)·강문리(江文里)·역촌리(驛村里)·하리가 있다.

승량원면(升良院面) 관문으로부터 북쪽 17리 지점에 있는데, 사기막리(沙器幕里)·통심리(通心里)·산북리(山北里)가 있다.

소고니면(所古尼面) 관문으로부터 서쪽 40리 지점에 있는데, 가좌동리(加佐洞里)·장당리(獐堂里)·대소리(大召里)·울포리(栗浦里)·광천리(廣川里)·지장리(地庄里)가 있다.

울북면(栗北面) 관문으로부터 서쪽 50리 지점에 있는데, 동청리(東靑里)·중리(中里)·불정리(佛井里)·서신리(西新里)가 있다.

감미동면(甘味洞面) 관문으로부터 서쪽 60리 지점에 있는데, 송산리(松山里)·대양리(大陽里)·고관리(古關里)·창리(倉里)·반촌리(般村里)가 있다.

승량동면(升良洞面) 관문으로부터 서쪽 100리 지점에 있는데, 상리·궁리(宮里)·하리·곡교리(曲橋里)가 있다.

이상의 방리 이외에 새로이 덧붙인다.

서신리면(西新里面) 관문으로부터 서쪽 55리 지점에 있는데, 예전에 금리(金里)·현곡리(玄谷里)에 창리(倉里)를 설치했다.

호구(戶口)

원호(元戶)는 2,157호이다. 남자가 4,580명이고, 여자가 3,516명이다.

전부(田賦)⁷⁾

원 장부(帳付) 밭이 1,976결(結) 56부(負) 2속(束)이고, 논이 1,080결 31부 7속인데, 그 안에 행용전(行用田)⁸⁾은 759결 61부 4속이고, 논은 578결 47부 1속이다. ○세미(稅米)는 143석(石) 4두(斗) 6승(升) 5홉(合) 2작(勺)이고, 팔이 202석 5두 8승 4작이고, 대동미(大同米)⁹⁾가 695석 9두 2승 2홉 8작이다.

신증(新增) 동치 임신년(1872)에 개량하였다. 원 장부 갑오년(1894)의 실결(實結)이 1,840결 12부 6속인데, 그 안에 밭이 854결 36부 3속이고, 논이 985결 76부 3속이 있다.

요역(徭役)

서울에 상납하는 결전(結錢)이 매 결당 5전(錢) 1푼(分)이고 본관(本官)에 내는 잡역(雜役)이 매 결에 1냥(兩)이다.

신증(新增) 잡역은 매 결에 1냥 5전인데, 모두 지금은 없어졌다.

군액(軍額)

원총(元總)은 2,577명이다. 그 안에 양인(良人)이 1,577명이고, 천인이 1,000명인데, 지금은 없다.

7) 전지(田地)에 매긴 부세(賦稅), 즉 전세(田稅)를 지칭함.

8) 행용(行用)이라는 것은 '늘 사용하는 것' 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행용전은 늘 경작하는 토지를 지칭하는 것임.

9) 대동미는 대동법을 실시하여 토지에서 징수했던 쌀이다. 대동법은 토산물로 바치던 공납(貢納)을 농토의 면적에 따라 쌀이나 벼, 돈으로 내게 한 것인데, 쌀로 낼 때는 '대동미', 벼로 낼 때는 '대동포', 화폐로 낼 때는 '대동전'이라고 하였다. 그 양은 1결당 쌀 12말이었다. 주무 관청은 선혜청(宣惠廳)이었다.

성지(城池)

탐라고성(耽羅古城) 현의 남쪽 5리 고성산(高城山) 제3봉에 있다. 옛날에 '탐라국' 3자(字)가 돌에 새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무한성(無限城) 고성산 서쪽 수리(數里) 지점에 있다. 전해오기를, '백제가 쌓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만 둘레가 있고 가운데에 못이 있는데 속칭 용추(龍湫)라고 한다. 그 위에 기우제단(祈雨祭壇)이 있다. 오정(梧亭) 박란(朴蘭)의 시에, "아홉 마리의 용이 구름을 타고 누각 위에 올라갈 때 성을 지나가는 비가 내리는데, 백제의 옛 나라는 없어졌네" 라고 하였다.

창고(倉庫)

읍의 창고 9개이다. 지금은 8칸인데 대문(大門)이 1칸이다. 쌓아두었다가 등급에 따라 나누어주는데(劃下)¹⁰⁾, 지금 있는 쌀[時存米]이 35석 10두 1홉 9석이다. ○ 환곡(還穀) 벼는 7,550석 8두 7승 9홉 1작이고, 쌀은 256석 4두 9승 7홉이고, 팔은 601석 13두 8승 5작이고, 보리는 1,908석 13두 3승 4작이고, 밀은 7석 7두 3홉 6작이다.

남창(南倉) 3개이다. 지금은 2개다. 동치 임신년(1872)에 대청 6칸·창고 12칸·신당(神堂) 1칸·대문 1칸·헛간 2칸을 새로 지었는데, 구룡동(九龍洞)에 있다. 육면세(陸面稅)와 대동미를 바쳐 올리는데[大同捧上] 봄을 기다렸다가 포장하여 싣는다[裝載]. ○ 환곡의 벼가 2,670석 9두 1홉 8석이고, 쌀이 38석 12두 4작이고, 팔이 109석 13두 6승 7홉 2작이고, 콩이 1석 6두 7홉 9작이고, 보리가 656석 6두 3승 2홉 4작이다.

해창(海倉) 4개이다. 감미동에 있는데, 포면세(浦面稅)와 대동미를 바쳐 올리는데 봄을 기다렸다가 포장하여 보낸다[裝發]. ○ 지금은 창고가 2개이고, 대청이 2칸이다. ○ 환곡의 벼는 1,647석 2두 6승 2홉 1작이고, 쌀은 36석 5두 2승 5홉 6작이고, 팔은 36석 8두 5승 1홉 5작이고, 콩은 8두 2승 9홉이고, 보리는 665석 5홉 4작이다. ○ 각 창고 벼의 총량은 11,868석 5두 4승 3홉이고, 쌀의 총량은 330석 7두 2승 8홉이고, 팔은 748석 6두 7홉 2작이고, 콩은 1석 11두 4승 4홉 3작이고, 보리는 3,230석 4두 6승 8홉 2작이고, 밀은 7석 7두 3홉 6작인데, 총 합계가 16,989석이다.

총 합계가 16,989석 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호조(戶曹)의 벼는 325석 14두 1승 6홉 2작이고, 보리는 44석 4두 6작이다. ○ 상진청(常賑廳)의 벼는 6,409석 2두 8승 7홉 7작이고, 쌀은 13두 6승 7홉 9작이고, 팔은 644석 3두 1승 7홉 2작이고, 보리는

10) 획급(劃給)이라고도 하는데,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아니하고 갈라서 나누어 줌을 의미하는 말이다.

2,688석 13두 9홉 9작이고, 콩은 1석 9두 2승 9홉 3작이고, 밀은 7석 7두 3홉 6작이다. ○ 균역청(均役廳)¹¹⁾의 벼는 677석 7두 3승 4홉 3작이고, 쌀은 238석 6두 4승 9홉 8작이다. ○ 영진(營賑)¹²⁾의 벼는 114석 4두 3승 6홉 1작이고, 쌀은 9석 6두 4승 3홉 2작이고, 팥은 90석 4두 4승 2홉 6작이고, 콩은 2두 1승 5홉이고, 보리는 311석 14두 3승 8작이다. ○ 고마청(雇馬廳)¹³⁾의 벼는 1,048석 12두 9승 7홉 2작이고, 쌀은 19석 11두 1승 2홉 4작이고, 보리는 185석 3두 2승 6홉 9작이다. ○ 순아병(巡牙兵)의 벼는 114석 6두 9승 9홉 6작이다. ○ 영환(營還)¹⁴⁾의 벼는 1,772석 14두 9승 8홉 8작이고, 쌀은 58석 11두 4승 7홉 5작이다. ○ 보환곡(補還穀)¹⁵⁾의 벼는 717석 10두 1승 2홉 5작이고, 쌀은 6석 4두 5승이다. ○ 칙수곡(勅需穀)¹⁶⁾의 벼는 687석 6두 6승 6작이다. ○ 예전의 환곡은 동치 병인년(1866)에 조정의 명령으로 탕감하였고, 호조가 특별히 비축하여 둔 쌀을 환곡으로 만들어 읍창과 해창에 나누어 저장하였다가, 반은 남겨두고 반은 나누어주었다. 모곡(耗穀)¹⁷⁾ 중 치러야 할 액수를 제하고 남은 것으로 환곡의 기본으로 삼았다. ○ 지금은 모두 없다.

사창(社倉) 6개이다. 동치 연간에 신설하였다. ○ 승량원·지동·공제리·구룡동·감미동·승량동 6면에 각 1개씩 두었다. 해당 창고의 사수(社首)¹⁸⁾가 일을 맡아 관리하여 모곡을 상정(詳定)하고 호조에 돈으로 봉납하였는데, 지금은 없다. ○ 사환미(社還米)¹⁹⁾ 100석을 을미년(고종 32년, 1895) 가을에 대금을 자세히 하여서 민간에 갈라 나누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쌀을 매매하는 계절에 각 면·리의 사수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다.

군기고(軍器庫) 2칸이다. 동치 계유년(고종 10년, 1873)에 새로 건립하였다.

봉수(烽燧)

괴태길곶(槐台吉串) 현의 서쪽 100리 지점인 괴태산에 있는데, 남쪽으로 충청도

11) 조선 후기 영조 26년(1750)에 설치된 관청으로,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영조 29년(1753)에 선혜청(宣惠廳)에 합병되었다.

12) 영진(營賑)을 진흥하는 것을 의미함.

13) 조선시대에 고마법(雇馬法)에 의해 민간에서 고용한 말을 관리하는 곳. 고마법은 역마(驛馬) 이외에 민간의 말을 고용하여 쓰는 법임.

14) 조선시대에 군영(軍營)에 환곡을 주었다가 받는 것을 의미함.

15) 환곡이 모자랄 것에 대비하여 마련해 놓은 곡물.

16) 조선시대 칙사(勅使)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곡물.

17) 각 고을 창고에서 저장한 양곡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해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자연적으로 손실된 분을 보충하기 위해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임.

18) 조선 후기에 환곡의 폐단이 심해지자, 지방 양반을 중심으로 마련한 사창(社倉)의 우두머리.

19) 조선 후기 고종 32년(1895)에 폐단이 극심했던 환곡제를 폐지하고, 지방 양반들이 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사창(社倉)을 공식화하여 사환(社還)이라고 하였음. 이 때 제정된 사환조례(社還條例)에 의하면 사환은 자치적으로 운영하되, 이자는 종전보다 매 섬당 50승을 감하였다고 함.

면천군(沔川郡)의 창택산(倉宅山)에 접하고, 또 직산(稷山)의 망해산(望海山)에 접하며, 북쪽으로 수원의 흥천산(興天山)에 접한다.

누대(樓臺)

간의정(諫議亭) 예전에 객사(客舍)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불우(佛宇)

청원사(淸源寺) 천덕산의 뒤쪽 산기슭에 있다.

수도사(修道寺) 괴태산의 봉대(烽臺) 아래에 있다.

덕적사(德積寺) 명봉산(鳴鳳山)에 있다.

도로

소사로(素沙路) 현의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관문로(官門路) 동쪽으로 안성 경계까지 2리의 거리이고, 남쪽으로 충청도 직산 경계까지 27리의 거리이고, 서쪽으로 진위현 경계까지 20리의 거리이고, 북쪽으로 용인 경계까지 15리의 거리이며, 북쪽으로 서울까지는 150리의 거리이다.

교량(橋梁)

소사교(素沙橋) 소사원 앞에 있다.

아교(牙橋) 소사 남쪽 5리 직산 경계에 있다.

주교(舟橋) 소사원 북쪽 5리 지점에 있다.

제언(堤堰)

읍내(邑內) 제언 현의 동쪽 2리 지점에 있었는데, 둘레가 998척(尺)이다. 지금은 없다.

송오리(松五里) 제언 현의 동쪽 10리 지점에 있었는데, 둘레가 977척이다. 지금은 없다.

덕산(德山) 제언 현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둘레가 1,688척이다.

구천리(九千里) 제언 현의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데, 둘레가 1,226척이다.

공제(孔梯) 제언 현의 남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둘레가 2,504척이다.

구룡동(九龍洞) 제언 현의 남쪽 30리 지점에 있었는데, 둘레가 1,194척이다. 지금은 없다.

백야리(白也里) 제언 현의 서쪽 20리 지점인 반곡(盤谷)에 있었는데, 둘레가

727척이다. 지금은 없다.

소유월(小六月) 제언 현의 서쪽 20리 지점인 반곡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도솔항(都率項) 제언 현의 서쪽 20리 지점인 반곡에 있었는데, 둘레가 727척이다. 지금은 없다.

원당(元堂) 제언 현의 서쪽 15리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소고니(所古尼) 제언 현의 서쪽 40리 지점에 있었는데, 둘레가 979척이다. 지금은 없다.

시장

읍내장 선원천 냇가에 있었는데, 매달 4일과 9일에 열린다. 지금은 없다.

소사장(素沙場) 소사원 동쪽에 있는데, 매달 5일과 10일에 열린다.

어염(漁鹽)

어기(漁基)²⁰⁾ 1 곳이다. 현의 서쪽 100리 지점인 승량동면 하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염분(鹽盆) 11 곳이다. 현의 서쪽 100리 지점인 승량동면 하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역원(驛院)

가천역(加川驛) 현의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소사원(素沙院) 현의 남쪽 30리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선원(禪院) 현의 동쪽 2리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목장(牧場)

괴태길곶 마장(馬場) 현의 서쪽 100리 지점인 승량동면에 있었는데, 세 방향이 바다로 막혀있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홍원목(洪原牧)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고적(古蹟)

고려송(高麗松) 현의 남쪽 20리 지점인 갈마동(渴馬洞)에 있었다. 전해오기를, 고려 때 난 것인데 한 그루에 세 가지 뻗었고 높이가 1,000 척이었다고 하나, 지금

20) 어장(漁場).

은 없다. 진사 조종준(趙宗浚)의 시에, “(나무가) 누워있고 드리워진 것이 산인이 백구(白狗)를 데리고 오는 형상이니, 고려 때부터 옛 이름이 전해오네.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있어, 검푸른 색이 3,000척이네. 비와 서리를 맞은지 800년이라, 통소 소리를 들으니 거의 지나가는 나그네의 귀를 기울이게 하네. 나무 뿌리에 앉아 쉬고 있는데 늙은 중의 벗은 어깨가 보이더니, 동쪽으로 요행히 벗어나자, 무덤에서 곡조가 들리네. 만고에 청풍(淸風)은 너밖에 없구나” 하였다.

고적성(古赤城) 무한성 남쪽 기슭 아래에 있는데, 속칭 고현지(古縣地)라 한다. 터가 완연히 보인다.

토산(土産)

위어(葦漁) 지금은 없다.

지황(地黃) 지금은 없다.

봉름(俵廩)²¹⁾

관수미(官需米)²²⁾가 100석이고, 유·청·지지가미(油淸紙地價米)가 30석 10두인데, 지금은 없다.

환적(宦蹟)

김수렴(金守廉) · 홍여익(洪汝翼) · 심대복(沈大復) · 이덕연(李德淵) · 남영(南嶸) · 구굉(具宏) · 이의부(李義傅) · 허교(許喬) · 심인록(沈仁祿) · 윤미(尹瑁) · 유용회(柳用晦) · 조경진(趙景禎) · 신맹경(申孟慶) · 박경엽(朴慶燦) · 윤충원(尹忠源) · 안응인(安應仁) · 이종문(李宗汶) · 윤광(尹侁) · 유지호(柳之豪) · 박승안(朴承顔) · 김인룡(金仁龍) · 이여항(李汝恒) · 이회(李瀼) · 한여형(韓汝洞) · 조공립(趙恭立) · 조직(趙潏) · 유시경(柳時慶) · 현술선(玄述善) · 이한(李憫) · 정호례(鄭好禮) · 이창원(李昌源) · 이유사(李幼泗) · 윤교(尹攸) · 유흡(柳翁) · 신여정(申汝挺) · 민여진(閔汝鎭) · 이열(李悅) · 조윤석(趙胤錫) · 민후(閔煦) · 유호연(柳浩然) · 민희원(閔希遠) · 정담(鄭詹) · 김해(金垓) · 홍주천(洪柱天) · 윤전(尹塹) · 심지치(沈之治) · 안숙(安塾) · 이지(李至) · 허장(許璋) · 박시경(朴時璟) · 황석(黃錫) · 홍구령(洪九齡) · 이빈(李檣) · 조하경(曹夏卿) · 김만재(金萬哉) · 이봉조(李鳳朝) · 김창집(金昌集) · 경예(慶睿) · 홍진종(洪鎭宗) · 안지(安至) · 권덕광(權德廣) · 한옥(韓奭) · 황탁(黃鐸) · 변세영(邊世英) · 윤지인(尹趾仁) · 윤유(尹揄) · 남연(南淵) · 이제상(李齊尙) · 권익룡(權益隆) · 곽만적(郭萬

21) 관리에게 봉급으로 주는 쌀.

22) 조선시대 각 관청의 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거둔 쌀.

續) · 심약황(沈若潢) · 유명건(兪命健) · 원명익(元命益) · 김운택(金雲澤) · 박치원(朴致遠) · 이병성(李秉成) · 조한위(趙漢緯) · 임적(任適) · 김태수(金泰壽) · 한일운(韓日運) · 채덕윤(蔡德潤) · 이만유(李萬囿) · 이언소(李彦簾) · 김집(金集) · 박필교(朴弼敎) · 이경(李垞) · 김도(金鎭) · 원경하(元景夏) · 이징복(李徵復) · 여광세(呂光世) · 이익준(李益俊) · 홍익삼(洪益三) · 서지수(徐志修) · 이도제(李道躋) · 홍흠보(洪欽輔) · 윤지언(尹之彦) · 이민보(李敏輔) · 박인원(朴麟源) · 이인보(李仁普) · 홍지해(洪趾海) · 홍계구(洪啓九) · 김종협(金鍾協) · 전태상(田泰祥) · 권도(權導) · 김수묵(金守默) · 심이진(沈以鎭) · 조종현(趙宗鉉) · 임면주(任冕周) · 이학원(李學源) · 윤현기(尹顯基) · 이우규(李禹圭) · 윤재관(尹在寬) · 남미로(南眉老) · 유준주(兪駿柱) · 홍복호(洪復浩) · 조경진(趙景鎭) · 이언신(李彦薰) · 박지원(朴知源) · 홍성호(洪成浩) · 이두원(李斗源) · 이익(李益) · 위광익(魏光翼) · 윤광석(尹光碩) · 황인도(黃仁燾) · 안정탁(安廷鐸) · 남성로(南省老) · 권순(權榭) · 정주(鄭柱) · 오경원(吳慶元) · 김상임(金相任) · 김효진(金孝眞) · 심정수(沈廷秀) · 임홍상(任弘常) · 정문용(鄭文容) · 정재중(鄭在中) · 서유수(徐孺修) · 이중현(李重鉉) · 이횡(李鉉) · 서유직(徐有稷) · 박금원(朴肯源) · 한계린(韓季麟) · 이면심(李勉心) · 장섭원(張燮元) · 신명익(申命翼) · 유화원(柳和元) · 이갱(李鏗) · 한용정(韓容鼎) · 박래형(朴來亨) · 한진서(韓鎭書) · 임수(任燧) · 심석규(沈碩奎) · 조한응(趙漢應) · 이병희(李秉義) · 이헌요(李憲堯) · 임화준(任華準) · 유만회(柳萬會) · 박빈수(朴分壽) · 이민항(李敏恒) · 이응규(李應奎) · 정기승(鄭基承) · 이재민(李在珉) · 이유열(李裕烈) · 김병이(金炳怡) · 김정선(金正善) · 현제승(玄濟昇) · 민영학(閔泳學) · 정재영(鄭在英) · 조병업(趙秉業) · 박제문(朴齊文) · 김재우(金載禹) · 유정환(兪程煥) · 강범수(姜凡秀) · 장석구(張錫龜) · 이용익(李容翊) · 이최영(李最榮) · 한진상(韓鎭庠) · 성기운(成岐運) · 조민희(趙民熙) · 이석진(李奭鎭) · 송헌빈(宋憲斌) · 이인금(李寅鎭) · 윤기선(尹夔善) · 남계술(南啓述) · 정덕화(鄭德和) · 이관구(李觀九)

과거(科擧)

고려 : 이연(李堧) 벼슬이 첨의평리(僉議評理)²³⁾ · 개성윤(開城尹)²⁴⁾에 이르렀다.

본조 : 이추(李推) 벼슬이 황해도관찰출척사(黃海道觀察黜陟使)에 이르렀다. 이순지(李純之) 벼슬이 판중추(判中樞)²⁵⁾에 이르렀다. 이예(李芮) 과거에 두 번이나 올라서, 벼슬이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질(文質)이다. 글 잘한다는

23) 고려시대 문하부(門下府)의 종2품 벼슬.

24) 고려시대 개성부(開城府)의 종2품 벼슬.

25) 판중추부사의 약칭으로, 중추부(中樞府)의 종1품 벼슬.

명망이 있었다. 이승소(李承召) 세종조 정묘년(세종 29년, 1447)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고, 또 중시(重試)²⁶⁾에 뽑혔다. 성종조에 좌리공신(佐理功臣)²⁷⁾에 참여하여 양성군(陽城君)으로 책봉되었고, 벼슬이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이르렀다. 문장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났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이세영(李世英) 벼슬이 참판(參判)²⁸⁾에 이르렀고, 청렴하고 대쪽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일컬어졌다. 오숙(吳翺)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감사(監司)에 이르렀다. 오빈(吳飜)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지사(知事)에 이르렀다. 오핵(吳翺)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벼슬이 지평(持平)²⁹⁾에 이르렀다. 오두인(吳斗寅)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기사년에 진신(縉紳)³⁰⁾으로서 소두(疏頭)³¹⁾가 되자, 먼 곳으로 유배당하던 중 도중에서 죽었다. 갑술년에 이르러 신원(伸冤)되고 사당을 세웠다. 시호를 충정공(忠貞公)이라 추증했다. 오두헌(吳斗憲)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필선(弼善)³²⁾에 이르렀다. 최일(崔逸)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다. 김상빈(金尙賓)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벼슬이 사예(司藝)³³⁾에 이르렀다. 이기태(李基泰)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최규서(崔奎瑞)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무신년에 변란이 일어나자 반역을 알려 임금으로부터 '일사부정(一絲扶鼎)' 이라고 특별히 쓴 글을 포상받았다. 박지형(朴之亨)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도사(都事)³⁴⁾에 이르렀다. 조수(趙修)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오원(吳瑗)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벼슬이 대제학(大提學)³⁵⁾에 이르렀다. 오찬(吳瓚)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벼슬이 정언(正言)³⁶⁾에 이르렀다. 황신(黃神)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벼슬이 대사헌(大司憲)³⁷⁾에 이르렀다.

-
- 26)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이 급제 후 10년에 한번 씩 치르는 시험인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상관 정3품의 품계로 올려주었음.
 27) 조선시대 성종 2년(1471)에 임금을 잘 보필한 공으로,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에게 주었던 공신호.
 28)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차석 당상관(堂上官)으로, 종 2품 벼슬.
 29)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정5품 벼슬.
 30) 벼슬아치를 통틀어 일컫는 말.
 31) 연명(聯名)으로 올린 상소문에 맨 먼저 이름이 적혀 주동자로 되는 사람.
 32)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4품 벼슬로, 세자에게 경서(經書)와 서적(書籍)을 강론하였음.
 33)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정4품 벼슬.
 34) 조선시대에 관리의 감찰과 규탄을 맡아보았던 종5품 벼슬로, 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의금부(義禁府)·개성부(開城府)·충익부(忠翊府)·중추부(中樞府)·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에 속해 있던 벼슬임. 한편 지방의 각 도에도 이 벼슬을 두어 지방관의 불법을 규찰하도록 하였음.
 35) 조선시대에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정2품 벼슬.
 36) 조선시대의 사간원의 정6품 벼슬.
 37)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2품 으뜸 벼슬.

인물

효자 봉한정(奉漢鼎) 정문(旌門)³⁸⁾이 덕산촌(德山村)에 있다. 기축년에 현감 유명건(俞命健)이 비를 세워 표창하였다.

박만석(朴萬錫)·이개백(李介白) 모두 정문이 있다.

오두웅(吳斗雄) 어머니가 병이 나자 인분을 맛보았으며, 상을 당하자 연일 산에 올라가 통곡을 하면서 상을 마쳤다. 또 뒤이어 아버지 상을 당하여 3년상을 마쳤다. 정사년에 지평(持平)으로 추증하고 신유년에 정려(旌閭)³⁹⁾를 명하였다.

충신 이대원(李大源) 만력 정해년(1587, 선조 20)에 녹도만호(鹿島萬戶)⁴⁰⁾가 되어 왜적을 역습하여 함몰시켰다. 병조판서를 추증하고 정려를 명하였다.

열부 사인(士人) 최유청(崔惟淸) 처 소씨(蘇氏) 남편이 죽자 통곡하며 울고 미음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아 몸이 상해 병이 나서, 마침내 목숨을 버림에 이르렀다.

제영(題詠)

고려 강호문(康好文)의 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영조의 「읍호요동간의명」과 같다.

유정현(柳廷顯)의 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영조의 「노수참천요적성」과 같다.

감사 박로(朴蘿)의 시 “스스로 정절(旌節)⁴¹⁾을 가지고서 서울을 떠나, 왕기(王畿)⁴²⁾를 거닐한 지 이미 10일이나 됐네. 정원(庭院)은 고요하고, 인리(人事)는 물러갔네. 숲 가득한 곳에서 우는 새는 봄을 보내는 소리네.”

감사 심수경(沈守慶)의 시 “안성을 아침에 출발하여 양성에 도착해, 말머리를 돌려보니 단지 수리(數里) 길이네. 수목에는 녹음이 가득하고 못과 관(館)이 담장을 격한 좋은 때에 다시 앵무새 소리 듣네.”

직제학(直提學) 최흥효(崔興孝)의 시 “그대를 시켜 술을 가져와 시름을 푸네. 성(城)에 있는 나그네는 시를 읊어 갈 길을 잊네. 처마에 제비 훌쩍 나니 춤을 추는 것 같네. 숲 속에서 우는 새 소리는 나그네 보내는 노래 소리네.”

비판(碑板)

대동비(大同碑) 소사교의 옆에 있다. 현종 기축년⁴³⁾에 죽은 영의정 김육(金瑬)이

38) 충신·효자·열녀의 행위를 표창하기 위해 그 집 문앞에 세우는 붉은 문.

39) 정표문려(旌表門閭)의 약칭으로, 충신·효자·열녀가 사는 마을의 거리에 정문(旌門)을 세워 그들을 표창하는 것임.

40) 녹도는 충청남도에 있는 섬이며, 만호는 정4품의 무관직임.

41) 의장(儀仗)의 한 가지.

42) 왕도(王道)의 주변 지역을 일컫는 용어.

43) 현종은 재위 기간 중에는 기축년이 없음.

기호(畿湖)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건의했는데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였다.

공해(公解)

객사(客舍) 동치 임신년(1872, 고종 9)에 대청 6칸, 동·서 대청 8칸, 내 3문 3칸 외 3문 3칸, 고직가(庫直家)⁴⁴⁾ 5칸을 신축했다.

동헌(東軒)⁴⁵⁾ 15칸이고, 통인방(通引房) 2칸, 행각(行閣) 10칸, 내 3문 3칸, 형리청(刑吏廳) 5칸, 사령청(使令廳) 7칸, 외 3문 6칸, 관노방(官奴房) 5칸이다.

내아(內衙)⁴⁶⁾ 11칸 반이고, 내행각 9칸, 외행각 4칸, 관청 7칸, 행각 3칸이다.

사당(祠堂) 3칸이다.

책방(冊房) 6칸이다.

작청(作廳)⁴⁷⁾ 12칸이고, 행각은 8칸이다.

향청(鄉廳)⁴⁸⁾ 6칸을 신축했고, 행각 5칸도 신축했다.

장청(將廳)⁴⁹⁾ 5칸이고, 행각이 5칸이다.

광무 3년(1899) 5월 일, 양성군수(陽城郡守) 이관구(李觀九)

44) 고직은 창고지기를 뜻하는 용어로, 고직가는 창고지기가 머무르는 곳을 이룸.

45) 지방의 수령이 공사(公事)를 처리하던 곳.

46) 지방 관청의 안채.

47) 지방 관청에서 아전이 일을 보던 곳.

48) 조선시대 자치기관인 향약(鄉約)의 사무관청으로,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이 그곳에서 사무를 처리하였음.

49) 지방 관아와 감영(監營)에 딸린 장교(將校)의 직무소.

진위

■ 경사상납질(京司上納秩)

□ 호조(戶曹)

○ 전세미(田稅米)¹⁾ 246석 9두 6승 8홉 6작, 콩 132석 7두 8승 3합 6작

□ 선혜청(宣惠廳)²⁾

○ 대동미(大同米)³⁾ 773석 4두 5승 7홉

□ 균역청(均役廳)⁴⁾

○ 면세미(免稅米)⁵⁾ 2석 10두 5승 3홉 2작, 면세태 5석 4두 3승

○ 대동미 23석 14두 4승 9홉 6작

○ 결전(結錢)⁶⁾ 788냥 3전 9푼

○ 선무군관전(選武軍官錢)⁷⁾ 152냥(76인, 매인 2냥)은 강화부에 납부한다.

□ 병조(兵曹)

○ 기병전(騎兵錢) 472냥(236명, 매명 2냥)

○ 보병전(步兵錢) 14냥(7명, 매명 2냥)

1) 전지(田地)에 매긴 국세(國稅)로 쌀을 징수한다.

2) 조선조 선조 41년(1608)부터 각 지방에서 바치는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이나 벼로 통일하여 내게 하는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에 따라 대동미·대동포의 출납을 맡은 관아.

3) 대동법에 의해 징수하는 쌀.

4) 균역법의 시행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영조 26년(1750)에 설치한 관아.

5) 궁방전(宮房田)·역둔전(驛屯田)·관둔전(官屯田) 등의 토지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먼저 받는 대신 각 기관에 납부하는 쌀.

6)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징병 면제의 대가로 양인에게 징수하는 포를 반감한 데서 생긴 국고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결(田結)의 부가세로 받는 돈.

7) 조선후기 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강원도의 군관 중에서 무술 시험을 보이며 뽑은 군관이 해마다 바치는 돈.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며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행함.

○경역보전(京驛保錢) 180냥(90명, 매명 2냥)

○표하보전(標下保錢) 60냥(30명, 매명 2냥)

□ 훈련도감(訓練都監)⁸⁾

○포보전(砲保錢) 102냥(51명, 매명 2냥)

○군항보전(軍餉保錢) 55냥 22전(23명, 매명 2냥 4전)

□ 어영청(御營廳)⁹⁾

○군보전(軍保錢) 144냥(60명, 매명 2냥 4전)

□ 금위영(禁衛營)¹⁰⁾

○군보전 136냥 8전(57명, 매명 2냥 4전)

□ 수어청(守禦廳)¹¹⁾

○별파진미(別破陣米) 29석 3두(73명, 매명 6두)

○표하군미(標下軍米)¹²⁾ 9석 12두(49명, 매명 3두)

○부아병양군미(部牙兵良軍米) 14석 6두(36명, 매명 6두), 노군미(奴軍米) 42석 12두(214명, 매명 3두)

○과하양군미(把下良軍米) 1석 9두(6명, 매명 4두), 노군미 2석 12두(21명, 매명 2두)

□ 총융청(摠戎廳)¹³⁾

○둔장초양군미(屯壯抄良軍米) 9석 3두(23명, 매명 6두), 노군미 4석 12두(24명, 매명 3두)

○둔군수보미(屯軍需保米) 42석 3두(211명, 매명 3두)

□ 공조(工曹)

○장인(匠人)¹⁴⁾ 보전(保錢) 60냥(30명, 매명 2냥)

8) 임진왜란 이후 창설된 것으로 도성 수비를 맡았으며 포수·사수·살수의 삼수군(三手軍)을 양성함.

9) 삼군문의 하나.

10) 서울을 지키며 호위하는 군영(軍營). 삼군문(三軍門)의 하나.

11) 수어사(守禦使)가 주재하는 군영아문(軍營衙門)의 하나로서 광주(廣州) 등 진과 남한산성을 통제함.

12) 대장(大將) 이하 각 장관(將官)에게 전속된 수병(手兵)에게서 징수하는 쌀.

13) 조선조 인조 2년(1624)에 설치하여 광주·양주·수원 등의 진(鎭)의 군무를 맡아 서울의 외곽을 경비한 군영.

14) 주로 궁실(宮室)·성곽(城郭) 등을 짓는 목수. 대목.

- 생밤(生栗) 40두(제역²⁴) 10명, 매명 4두)
- 대추(大棗) 40두(제역 10명, 매명 4두)
- 호도(胡桃) 42두(제역 6명, 매명 7두)
- 홍시(紅柿) 12접(貼)²⁵ (제역 4명, 매명 3접)
- 조(租) 80석(6천구, 매구 2승씩 징수하여 3년마다 호적을 제작하는 비용 및 서채잡비(書債雜費)에 사용)
- 말편자(馬鐵) 36부(대장장이 3명, 매월 3부)

평택

■ 경사상납질(京司上納秩)

- 호조(戶曹)
 - 전세미(田稅米) 136석 4두 4승 7합, 잡비미(雜費米)²⁶ 31석 10두 4승 2홉, 콩(丈) 35석 9두 1승, 잡비태 7두 8홉, 잡비미 3석 9두 1승
 - 삼수량미(三手糧米)²⁷ 62석 12두 4승 8홉, 잡비미 2석 10두 8승 3합
 - 노공전(奴貢錢)²⁸ 8냥(4구, 매구 전 2냥), 노공 잡비전 1냥 2전(매구 전 3전)
 - 비역가전(婢役價錢)²⁹ 6전(2구, 매구 전 3전)
- 육상궁(毓祥宮)³⁰
 - 면세미(免稅米) 66석 9승 1홉, 잡비미 13석 6두 4승 9홉
- 선혜청(宣惠廳)
 - 위미(位米)³¹ 8석 4두 2승 5홉, 잡비미 12두 4승 2홉, 콩 7석 14두 8승, 잡비태 11두 9승 8홉
 - 대동미(大同米) 291석 5두 7승 2홉, 잡비미 46석 6두

24) 병역이나 부역을 면제받은 사람.

25) 과실 백 개를 한 단위로 이르는 말. 곧 "접"의 음차(音借) 표기이다.

26) 기본 비용 이외에 자질구레하게 쓰이는 항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쌀

27)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조총을 주무기로 하는 포수(砲手), 활을 주무기로 하는 사수(射手), 장창(長鎗)이나 당파(鎗鉞) 등을 주무기로 하는 살수(殺手) 등의 심수를 양성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결(田結)의 원세(元稅) 외에 내는 세미(稅米).

28) 관아에 딸린 남자종이 국가에 대하여 부담해 바치는 돈.

29) 각 관아에 딸린 여자종이 국가에 부담하는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는 돈.

30) 조선조 역대 임금 중 정궁(正宮) 출신이 아닌 임금의 생모 신위를 안치한 사당. 궁정동(宮井洞)에 있음.

□ 균역청(均役廳)

- 결전(結錢) 421냥 8푼, 잡비전 8냥 4전 2푼
- 선무군관전(選武軍官錢) 50냥(25인³²), 매인 전 2냥
- 선세전(船稅錢) 14냥 1전. 봄·가을에 나누어 납부한다.

□ 훈련도감(訓練都監)

- 포수보(砲手保)³³ 목(木)³⁴ 31필(31명, 매명 목 1필), 잡비전 9냥 3전(매명 전 3전)
- 승호포수(陞戶砲手)³⁵가 서울에 근무하러 가는 해에는, 포수보(砲手保)에게서 매명 전 1냥씩 합계 31냥을 징수하여 길 떠나는 비용을 갖추게 한다.
- 군향보미(軍餉保米)³⁶ 2석 12두(7명, 매명 미 6두), 잡비미 7두(매명 미 1두)

□ 양향청(糧餉廳)

- 둔세조(屯稅租) 50석을 돈으로 대신하여 100냥(매석 전 2냥)을 징수한다. 잡비전 9냥

□ 금위영(禁衛營)

- 보미(保米)³⁷ 5석 3두(13명, 미 6두), 잡비미 13두(매명 1두)
- 별파진보전(別破陣保錢)³⁸ 2냥(1명), 잡비전 2전 5푼

□ 어영청(御營廳)

- 보미(保米) 28석 12두(72명 매명 미 6두), 잡비미 4석 12두(매명 미 1두)
- 정군(正軍)³⁹ 자보(資保)⁴⁰ 34명에게서 매명 전 2냥씩 징수하여, 정군(正軍)이 상

31) 대동법 실시 이전 각 군현 토지 중의 일부에서는 그 전세를 주(紬)·면(綿)·정포(正布) 등의 포와 유·꿀(蜜) 등으로 바꾸어 상납하였다. 이를 전세공물(田稅貢物)·전세소출공물(田稅所出貢物)·전세포화(田稅布貨)라고도 하였는데 말하자면 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이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이를 개혁하여 쌀·콩으로 바치게 하였던 바 이를 위미태(位米太)라고 하였다. 다른 일반 전세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게 되었으나 일반 전세가 호조 관할임에 비하여 위미태는 선혜청 소관으로서 공가(貢價) 지불의 자원으로 됨이 다른 점이었다.

32) 원문에는 '十五'로 되어있으나 '二十五'의 오기임.

33) 보(保)는 조선조 때 정병(正兵)을 돕기 위하여 둔 조정(助丁)으로 원래는 병역을 면제 받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후에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역을 면제해 주고 그 대가로 삼베나 무명 따위를 받아들임.

34) 무명, 포수보목(砲手保木)은 포수의 보인(保人)에게서 징수하는 무명을 말한다.

35) 해마다 서울 및 각 지방에서 뽑혀 훈련도감의 정군(正軍)이 되는 군졸.

36) 군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병역을 면제해 준 군정(軍丁)에게서 받아들이는 쌀.

37) 군보(軍保)로부터 거두어 들인 쌀.

38) 주로 화기(火器)를 다루며, 무관 잡직으로 편성된 별파진(別破陣)의 보인에게서 징수하는 돈.

번할 때 지급한다.

○대동미에서 옮기어 온 것 18석, 잡비미 1석 9두 5승 4홉

□총융청(摠戎廳)

○장초군전(壯抄軍錢)³⁹⁾ 8냥(양인 2명, 매명 전 2냥, 천인 4명, 매명 전 1냥), 잡비 전 1냥 2전(매명 전 2전)

○둔군군수보미(屯軍軍需保米) 3석 9두(18명, 매명 미 3두), 잡비미 1석 3두(매명 미 1두)

□수어청(守禦廳)

○아병미(牙兵米)⁴²⁾ 21석 9두(양인 1명, 미 6두, 천인 106명 매명 미 3두), 잡비미 9석 14두 8승(매명 미 1두 4승)

○대장미(隊長米) 1석 3두(9명, 매명 미 2두), 잡비미 12두 6승(매명 미 1두 4승)

○표하군미(標下軍米) 10두(4명, 매명 미 2두 5승), 잡비미 5두 6승(매명 미 1두 4승)

○둔아병미(屯牙兵米) 16석 6두(82명, 매명 미 3두), 잡비미 7석 9두 8승(매명 미 1두 4승)

**앞서 나온 隊長米, 標下軍米 반복되어 나옴, 기록의 오류인 듯

○수철아병전(水鐵牙兵錢) 30냥(25명, 매명 전 1냥 2전)

○둔세조(屯稅租) 140석(수어청 초관⁴³⁾이 거두어 납부한다.)

□장용영(壯勇營)⁴⁴⁾

○둔세조(屯稅租) 180석 2두(장용영 둔감⁴⁵⁾이 거두어 납부한다)

□병조(兵曹)

○기병(騎兵) 148명 내 상번(上番)⁴⁶⁾은 3명이다. 기병보자전(騎兵保資錢)⁴⁷⁾ 20냥 2전 5푼은 상번군(上番軍)에게 지급한다.(9명 매명 전 2냥 2전 5푼)

39) 국가의 규정에 의하여 양인 장정들로 조직된 정규군 또는 정규군에 속한 병사.

40)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는 보인(保人).

41) 장초군(壯抄軍)은 조선조 훈련도감에 딸렸던 군대의 하나. 후에 총융청에 합속(合屬)되었다. 장초군전(壯抄軍錢)은 장초군에게서 징수하는 돈.

42) 아병(牙兵)은 '大將의 旗'를 뜻하는 '牙'에서 유래하여 각급 지휘관의 친병(親兵)이 원래의 의미. 감사·병사는 물론 수령도 아병(牙兵)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각 군문에서 둔전(屯田) 등에 둔아병(屯牙兵)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아병미(牙兵米)는 아병에게서 징수하는 쌀.

43) 각 군영(軍營)의 위관(尉官)의 하나. 군대 1초(100명 가량)를 거느리는 종 9품 무관.

44) 1791년(정조 15)에 수원에 설치한 군영.

45) 고려조 또는 조선조 때에 지방에 두었던 관직으로 둔토(屯土)를 감독하였음.

□ 해미진(海美鎭)

○토포군관제번전(討捕軍官除番錢)⁵³⁾ 4냥(4인, 메인 전 1냥)

□ 본관(平택현)

○관수미(官需米) 120석

○유청가미(油淸價米)⁵⁴⁾ 36석 10두

○공사지가미(公事紙價米)⁵⁵⁾ 9석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35석

○아록미(衙祿米) 18석 9승 1흡, 아록태 4석 5두 4흡

○잡역상정미(雜役詳定米)⁵⁶⁾ 170석(신결⁵⁷⁾ 소출미가 부족하면 상진곡⁵⁸⁾으로 획급하고, 만약 여유가 있으면 상진곡에 회록한다)

○관둔세태(官屯稅太) 10석 8두 8승, 관둔세미 19석 3두 4승

○무부목(巫夫木)⁵⁹⁾ 4필(4명 매명 목 1필)

○1처 장시세전(場市稅錢)⁶⁰⁾ 153냥을 징수하여, 경각사(京各司)·각영문(各營門)·각읍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품삯에 사용한다

○연분문서지지가태(年分文書紙地價太)⁶¹⁾ 8석 5두1승은 민결(民結)⁶²⁾에서 마련하여 징수한다.

○포구의 어선, 상선에서는 선박세로 청어(靑魚)·조기(石魚)를 가리지 않고 2마리씩 징수하여 사용한다.

○소금상선에서는 소금 1석 당 세금 1푼씩, 어류 1동(同)⁶³⁾ 세금 5푼씩 합 67냥을 징수하여 어물을 교역하는 값에 보충한다.

○곡식상인이 곡식을 교역하기 위해 포구를 떠날 때 매 바리마다 2푼씩 분세(分稅)하여 징수하면 풍년은 50~60냥이고 흉년이면 30~40냥인데 공행(公行)의 말먹이에 보충한다.

53) 도적을 잡는 일을 맡은 군관이 번 드는 일을 면제 받은 대신에 바치는 돈.

54) 기름과 꿀을 마련하기 위한 쌀.

55) 공용에 사용하는 종이를 마련하기 위한 쌀.

56) 잡역(雜役)은 의무로 하여야 할 요역 이외에 국가에서 시키는 잡다한 요역을 말한다. 상정미(詳定米)는 용도와 수량을 자세히 밝히어 정해 놓은 국가 소용의 쌀이다.

57) 땅의 결복(結卜)에 따라 새로 매긴 조세.

58)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의 소관 곡물.

59) 무당의 서방에게서 받는 무명.

60)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받는 세금.

61)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보고한 문서의 종이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콩.

62) 백성들이 소유한 논밭의 결복.

63) 물고기 1천마리 또는 2천마리를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

- 면세전(免稅田) 1,675냥 2전(218결 10부 9속, 매결 7냥 6전 7분), 수진궁(壽進宮)⁶⁹⁾(26결 38부 6속, 202냥 4전), 용동궁(龍洞宮)(6결, 46냥 2푼), 내수사(內需司)⁷⁰⁾(92결, 705냥 6전 4푼), 경평군방(慶平君房)(10결, 76냥 2푼), 숙정옹주방(淑靜翁主房)(14결 2부 3속, 107냥 5전 4푼), 정화옹주방(貞和翁主房)(40결, 306냥 8전), 경수궁(慶壽宮)(30결, 230냥 1전)

□선혜청(宣惠廳)

- 대동미(大同米) 718석 4두 4승 1흡

□균역청(均役廳)

- 면세미(免稅米) 1석 13두 4승, 면세대 5석 2두 6승
- 대동미(大同米) 21석 3두
- 결전(結錢) 810냥 9전 6푼
- 강세전(缸稅錢) 9냥 5전
- 염세전(塹稅錢) 92냥 2전
- 선무군관번전(選武軍官番錢) 60냥(30인 매인 2냥) 강화부에 납부한다.

□병조(兵曹)

- 기병전(騎兵錢) 1,160냥(580명, 매명 2냥)
- 금군보전(禁軍保錢) 22냥(11명, 매명 2냥), 복직(伏保)전(楸直保錢) 2냥(1명)
- 호련대(扈輦隊保錢)⁷¹⁾ 6냥(3명, 매명 2냥)
- 경역보전(京驛保錢) 180냥(90명, 매명 2냥)
- 내취(內吹)⁷²⁾ 보전(保錢) 4냥(2명, 매명 2냥)
- 충순위(忠順衛)⁷³⁾ 번전(番錢) 2냥(1명)

69) 조선시대 봉작(封爵)을 받기 전에 죽은 왕자나 시집가기 전에 죽은 공주·옹주(翁主)의 제사를 지내던 궁.

70) 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는 쌀·베·잡물(雜物)과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71) 호련대는 조선조 임금이 행차할 때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던 군대로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한정을 선발하여 충당하였다. 호련대보전이란 호련대에 소속된 보인에게서 징수하는 돈을 말함.

72) 겸내취(兼內吹)의 준말. 조선조 때 오영문(五營門)에서 군악을 불며 북을 치는 사람.

73) 조선조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무위(忠武衛)에 소속되었던 군대. 임금의 이성시마(異姓總麻)·외6촌 이상의 친척, 왕비·선왕(先王)·선후(先后)의 시마·외5촌 이상의 친척, 동반 6품 이상 및 서반 4품 이상의 실직 현관(實職顯官)을 지낸자, 문무과 출신, 생원·진사, 유음자손(有蔭子孫) 등이 이에 입속되었다. 뒤에 충순위로 개칭하였다.

□ 훈련도감(訓練都監)

- 포보전(砲保錢) 202냥(101명, 매명 2냥)
- 군항보전(軍餉保錢) 108냥(45명, 매명 2냥 4전)

□ 어영청(御營廳)

- 군보전(軍保錢) 201냥 6전(84명, 매명 2냥 4전)

□ 금위영(禁衛營)

- 군보전(軍保錢) 194냥 4전(81명, 매명 2냥 4전)

□ 수어청(守禦廳)

- 군수보미(軍需保米) 3석 3두(16명, 매명 3두)
- 부아병양군미(部牙兵良軍米) 6석 6두(16명, 매명 6두), 노군미(奴軍米) 46석 12두(234명, 매명 3두)
- 별파진보미(別破陣保米) 9석 3두(23명, 매명 6두)
- 의승번전(義僧番錢)⁷⁴⁾ 10냥(절반은 승도들이 납부하고, 절반은 영진곡의 이자⁷⁵⁾에서 납부한다)

□ 총융청(摠戎廳)

- 군수보미(軍需保米) 20석(100명, 매명 3두)
- 둔군수보미(屯軍需保米) 38석 12두(194명, 매명 3두)
- 둔장초양군미(屯壯抄良軍米) 16석(40명, 매명 6두), 노군미(奴軍米) 5석 6두(27명, 매명 3두)

□ 양항청(糧餉廳)

- 둔세미(屯稅米) 8석 6두 1승

□ 장악원(掌樂院)

- 악공보전(樂工保錢) 22냥(11명, 매명 2냥)

74) 조선조 총융청(摠戎廳)에 소속된 승병(僧兵)이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에 번 들어 방어하지 않는 대신 바치던 돈.

75) 영진곡(營賑穀)은 흉수나 가뭄을 대비하여 만든 환곡으로,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영진모(營賑耗)는 평시에 영진곡을 환곡으로 운영하여 1/10의 이자를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 충훈부(忠勳府)⁷⁶⁾

○ 충익위(忠翊衛)⁷⁷⁾ 전(錢) 2냥(1명)

□ 교서관(校書館)⁷⁸⁾

○ 창준(唱準)⁷⁹⁾ 보전(保錢) 50냥(25명, 매명 2냥)

■ 감영상납질(監營上納秩)

○ 영수미(營需米) 18석(대동미 중 제출상납)

○ 순아병보전(巡牙兵保錢) 29냥(매명 1냥)

○ 찰쌀(粘米) 3석 5두(영환곡의 이자로 납부한다)

○ 참깨(眞荏) 1석 4두 3승(영환곡의 이자를 바꾸어 납부한다)

■ 본읍봉용질(本邑捧用秩)

○ 관수미(官需米) 100석 ○ 아록미(衙祿米) 16석 이상 대동미를 획급하여 매월 비용으로 한다

○ 관둔세각곡(官屯稅各穀) 48석 8두 2승(벼 36석 7두, 콩 12석), 목화(木花) 20근, 생마(生麻) 20근

○ 장세전(場稅錢) 103냥 3전(소사장에서 매월 9냥, 5·6월 2달은 4냥 3전)

■ 결역(結役)

○ 전 902냥(902결 매결 1냥 징수하여 각종 공역에 보충하고, 각종 비용에 사용한다)

○ 미 14석 10두(아록공수위 55결 면세조에서 징수한다)

■ 호역(戶役)

○ 시(柴) 338 자내(自乃)(338호 매호 1자내)

○ 전 201냥 4전 4푼(2,518호 매호 8푼, 땀감 1자내를 돈으로 징수한 것이다)

○ 얼음덩이[氷丁] 1,290장(430호 매호 3장)

○ 미 30석 9두 5승 4홉(7,659구 매구 6홉씩 징수하여 3년마다 호적을 제작할 때 종이값 및書債잡비에 사용한다.)

76) 조선조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아.

77) 조선조 원종공신(原從功臣)과 그 자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군대.

78) 경적(經籍)의 인행(印行)과 향축(香祝)·인전(印篆)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79) 교서관의 한 잡직으로서, 인쇄 원고를 창독(唱讀)하면서 교정을 담당함.

□ 訓練都監

- 砲保錢 一百二兩(五十一名 每名 二兩)
- 軍餉保錢 五十五兩 二錢(二十三名 每名 二兩 四錢)

□ 御營廳

- 軍保錢 一百四十四兩(六十名 每名 二兩 四錢)

□ 禁衛營

- 軍保錢 一百三十六兩 八錢(五十七名 每名 二兩 四錢)

□ 守禦廳

- 別破陣米 二十九石 三斗(七十三名 每名 六斗)
- 標下軍米 九石 十二斗(四十九名 每名 三斗)
- 部牙兵良軍米 十四石 六斗(三十六名 每名 六斗), 奴軍米 四十二石 十二斗(二百十四名 每名 三斗)
- 把下良軍米 一石 九斗(六名 每名 四斗), 奴軍米 二石 十二斗(二十一名 每名 二斗)

□ 摠戎廳

- 屯壯抄良軍米 九石 三斗(二十三名 每名 六斗), 奴軍米 四石 十二斗(二十四名 每名 三斗)
- 屯軍需保米 四十二石 三斗(二百一十一名 每名 三斗)

□ 工曹

- 匠人保錢 六十兩(三十名 每名 二兩)

□ 糧餉廳

- 屯稅租 一百七十四石 六斗

■ 監營上納秩

- 營需米 十二石(大同米中 除出上納)
- 巡牙兵保錢 二十兩(二十名 每名 一兩)
- 太 四石(以營還耗上納)
- 眞荏 一石(以營還耗 搜買上納)

■本邑捧用秩

○官需米 一百石 ○使客支供米 一百五十石 ○衙祿米 十六石 以上大同米中劃給 排朔需用

■結役(除雜頃 實結九百七十結 六十二負 七束)內

○米 二百四十四石 一斗 一合 六勺(四百五十七結 六十二負七束 每結八斗收捧 用雜物質用)

○米 十四石 十斗(衙祿公須位 五十五結免稅條 所捧)

○眞油 五十二斗 七升(一百五十五結 每結三升四合)

○清蜜 二十九斗 四升 五合(一百五十五結 每結 一升 九合)

○白紙 七百八十七束 十張(一百五結 每結 七束 十張)

○黃蠟 四十五斤(三十結 每結 一斤 八兩)

○炭 十三石(十三結 每結 一石)

■戶役

○鷄 一千五十首(一千五十戶 每戶 一首)

○生粟 四十斗(除役十名 每名四斗)

○大棗 四十斗(除役十名 每名四斗)

○胡桃 四十二斗(除役六名 每名七斗)

○红柿 十二貼(除役四名 每名三貼)

○租 八十石(六千口 每口二升收捧 式年戶籍帳冊紙地及) 書債雜費

○馬鐵 三十六部(冶鐵 三名 每朔 三部)

平澤

■京司上納秩

□戶曹

○田稅米 一百三十六石 四斗 四升 七合, 雜費米 三十一石 十斗 四升 二合, 太 三十五石 九斗 一升, 雜費太 七斗 八合, 米 三石 九斗 一升

○三手糧米 六十二石 十二斗 四升 八合, 雜費米 二石 十斗 八升 三合

○奴貢錢 八兩(四口, 每口 錢 二兩), 雜費錢 一兩 二錢(每口 錢 三錢)

○婢役價錢 六錢(二口 每口 錢 三錢)

□ 毓祥宮

- 免稅米 六十六石 九升 一合, 雜費米 十三石 六斗 四升 九合

□ 宣惠廳

- 位米 八石 四斗 二升 五合, 雜費米 十二斗 四升 二合, 太 七石 十四斗 八升, 雜費太 十一斗 九升 八合
- 大同米 二百九十一石 五斗 七升 二合, 雜費米 四十六石 六斗

□ 均役廳

- 結錢 四百二十一兩 八分, 雜費錢 八兩 四錢 二分
- 選武軍官錢 五十兩(十五人 每人 錢 二兩)
- 船稅錢 十四兩 一錢 春秋分納

□ 訓練都監

- 砲手保木 三十一疋(三十一名 每名 木 一匹), 雜費錢 九兩 三錢(每名 錢 三錢)
- 當其陸戶砲手 上送之年 則砲手保 每名 錢 一兩式 合錢 三十一兩收捧 備給資裝
- 軍餉保米 二石 十二斗(七名 每名 米 六斗), 雜費米 七斗(每名 米 一斗)

□ 糧餉廳

- 屯稅租 五十石 代錢一百兩(每石 錢 二兩), 雜費錢 九兩

□ 禁衛營

- 保米 五石 三斗(十三名 米 六斗), 雜費米 十三斗(每名 米 一斗)
- 別破陣保錢 二兩(一名), 雜費錢 二錢 五分

□ 御營廳

- 保米 二十八石 十二斗(七十二名 每名 米 六斗), 雜費米 四石 十二斗(每名 米 一斗)
- 正軍資保 三十四名 每名 錢 二兩式 正軍上番時 計年捧給
- 移劃大同米 十八石, 雜費米 一石 九斗 五升 四合

□ 摠戎廳

- 壯抄軍錢 八兩(良二名 每名 錢 二兩, 賤四名 每名 錢 一兩), 雜費錢 一兩 二錢(每名 錢 二錢)

- 司僕寺
- 諸員保錢 十二兩(六名 每名 錢 二兩), 雜費錢 一兩 五錢(每名 錢 三錢 五分)

■ 營邑捧用秩

- 雙樹山城牙兵米 十九石 十一斗(七十四名 每名 米 四斗)
- 安興鎮別新選錢 十二兩(六名 每名 錢 二兩), 雜費錢 一兩 五錢(每名 錢 二錢 五分) ○
- 水軍錢 十八兩(九名 每名 錢 二兩), 雜費錢 二兩 二錢 五分(每名 錢 二錢 五分)
- 海美鎮討捕軍官除番錢 四兩(四人 每人 錢 一兩)
- 本官
- 官需米 一百二十石
- 油清價米 三十六石 十斗
- 公事紙價米 九石
- 使客支供米 三十五石
- 衙祿米 十八石 九升 一合, 太 四石 五斗 四合
- 雜役詳定米 一百七十石(新結所出米 若不足 則以常賑穀割給 若有餘 則會錄常賑穀)
- 官屯稅太 十石 八斗 八升, 米 十九石 三斗 四升
- 巫夫木 四疋(四名 每名 木 一疋)
- 一處場市稅錢 一百五十三兩收捧 用於京各司各營門各邑公事持者雇價
- 年分文書紙地價太 八石 五斗 一升 以民結磨鍊收捧
- 浦口漁商船母論青魚石魚 每船稅二級式 收捧需用
- 塩商船塩一石稅一分式 魚屬一同稅錢五分式 合爲六十七兩收捧 添補於魚物貿易價
- 穀商貿穀出浦時 每馱錢二分式 以分稅收捧 豐年則爲五十六兩 鎌歉歲則三四十兩 添補於公行馬料
- 魚膠二十張 地土船磨鍊收捧 用於軍器修補
- 濟州出來歲貢馬牽軍 計其匹數 使各面民人 分定擔當
- 水丁 各面民戶 除雜項 每戶三張式 鑿納
- 本官或在任身死 則民賻錢二百兩 以民戶除四窮 磨鍊收捧 親喪妻喪同
- 式年成籍時 米三十石 以民戶 大中小戶區別收捧 用於紙筆墨及磨勘雜費, 戶籍書寫租五十石 以民戶磨鍊收捧 出給書寫債
- 歲抄時 軍保中物故外 各樣雜項 每名錢一兩式收捧 用於紙筆墨及磨勘雜費
- 馬兵保錢三十二兩 每年馬兵收捧(十六名 每名 錢 二兩), 加給保錢三十二兩 每年馬兵亦爲收捧(十六名 每名 錢 二兩)
- 式年改都案時 良軍三百九十六名 每名錢三錢式 私奴軍 四百九十八名 每名錢一錢五分式

- 合錢一百九十三兩五錢收捧 用於紙筆墨及磨勘雜費
- 十年一次大都案時 良軍二百三十九名 每名錢一錢五分式 合錢八十三兩六錢五分收捧 用於紙筆墨及磨勘雜費
- 進上藥夫保錢 一百兩(五十名 每名 錢 二兩)

陽城

■京司上納秩

□戶曹

- 田稅米 一百三十四石 一升 八合 八勺, 太 二百三石 三斗 六升 八合 八勺
- 奴婢貢錢 二十兩 九錢(奴十口 各二兩, 婢三口 各三錢)
- 免稅錢 一千六百七十五兩 二錢(二百十八結四十負九束 每結七兩六錢七分) 壽進宮(二十六結三十八負六束 二百二兩四錢) 龍洞宮(六結 四十六兩二分) 內需司(九十二結 七百五兩六錢四分) 慶平君房(十結 七十六兩二分) 淑靜公主房(十四結二負三束 一百七兩五錢四分) 貞和翁主房(四十結 三百六兩八錢) 慶壽宮(三十結 二百三十兩一錢)

□宣惠廳

- 大同米 七百十八石 四斗 四升 一合

□均役廳

- 免稅米 一石 十三斗 四升, 太 五石 二斗 六升
- 大同米 二十一石 三斗
- 結錢 八百十兩 九錢 六分
- 缸稅錢 九兩 五錢
- 塩稅錢 九十二兩 二錢
- 選武軍官番錢 六十兩(三十人 每人 二兩) 移納江華府

□兵曹

- 騎兵錢 一千一百六十兩(五百八十名 每名 二兩)
- 禁軍保錢 二十二兩(十一名 每名 二兩)
- 楸直保錢 二兩(一名)
- 扈輦隊保錢 六兩(三名 每名 二兩)
- 京驛保錢 一百八十兩(九十名 每名 二兩)

○內吹保錢 四兩(二名 每名 二兩)

○忠順衛番錢 二兩(一名)

□訓練都監

○砲保錢 二百二兩(一百一名 每名 二兩)

○軍餉保錢 一百八兩(四十五名 每名 二兩 四錢)

□御營廳

○軍保錢 二百一兩 六錢(八十四名 每名 二兩 四錢)

□禁衛營

○軍保錢 一百九十四兩 四錢(八十一名 每名 二兩 四錢)

□守禦廳

○軍需保米 三石 三斗(十六名 每名 三斗)

○部牙兵良軍米 六石 六斗(十六名 每名 六斗), 奴軍米 四十六石 十二斗(二百三十四名 每名 三斗)

○別破陣保米 九石 三斗(二十三名 每名 六斗)

○義僧番錢 十兩(折半 僧徒處捧納 折半 營賑耗充納)

□摠戎廳

○軍需保米 二十石(一百名 每名 三斗)

○屯軍需保米 三十八石 十二斗(一百九十四名 每名 三斗)

○屯壯抄良軍米 十六石(四十名 每名 六斗), 奴軍米 五石 六斗(二十七名 每名 三斗)

□糧餉廳

○屯稅米 八石 六斗 一升

□掌樂院

○樂工保錢 二十二兩(十一名 每名 二兩)

□忠勳府

○忠翊衛錢 二兩(一名)

□校書館

○唱準保錢 五十兩(二十五名 每名 二兩)

■監營上納秩

○營需米 十八石(大同米中 除出上納)

○巡牙兵保錢 二十九兩(二十九名 每名 一兩)

○粘米 三石 五斗(以營還耗上納)

○眞荏 一石 四斗 三升(以營還耗 搜貿上納)

■本邑捧用秩

○官需米 一百石 ○衙祿米 十六石 以上大同米中劃給 排朔需用

○官屯稅各穀 四十八石 八斗 二升(租 三十六石 七斗零 太 十二石零), 木花 二十斤, 生麻 二十斤

○場稅錢 一百三兩 三錢(素沙場 每朔 九兩 五六兩朔 四兩三錢)

■結役

○錢 九百二兩(九百二結 每結一兩收捧 以補公役買用各種)

○米 十四石 十斗(衙祿公須位 五十五結免稅條 所捧)

■戶役

○柴 三百三十八自乃(三百三十八戶 每戶 一自乃)

○錢 二百一兩 四錢 四分(二千五百十八戶 每戶 八分 柴一自乃 以錢收捧)

○冰丁 一千二百九十張(四百三十戶 每戶 三張)

○米 三十石 九斗 五升 四合(七千六百五十九口 每口 六合收捧 式年戶籍 帳冊紙地 及書債 雜費)

○馬鐵 七十二部(冶匠 六名 每朔 六部)

○東海 四十八介(關器兩店 每朔 四介)

○火爐? 四十八坐((關器兩店 每朔 四介)

○所羅 四十八坐(關器兩店 每朔 四介)

○瓶二百四十介(關器兩店 每朔 二十介)

振威縣令名單

성명	재임기간	出典
민승서(閔承序)	1427	實錄
정속(鄭束)	1431~1433	實錄
우전(禹傳)	1434	實錄
김순신(金純善)	1465	實錄
양원(梁瑗)	1466	實錄
이숙규(李叔圭)	1479	實錄
황사충(黃事忠)	1479	實錄
이오(李塢)	1496 경	司馬榜目
정삼산(鄭三山)	1509	實錄
안서봉(安瑞鳳)	1509~1512 사이	實錄
최칭(崔稱)	1512	實錄
권옥(權沃)	1519	司馬榜目
이경(李經)	1524	司馬榜目
김한(金瀚)	1534 경	司馬榜目
한수온(韓守溫)	1555 이전	司馬榜目
이희백(李希伯)	?	邑誌(1899)
이윤(李贄)	癸未(1583)~丁亥(1587)	邑誌(1899)
황치성(黃致成)	丁亥(1587)~戊子(1588)	邑誌(1899)
최진방(崔振昉)	戊子(1588)~己丑(1589)	邑誌(1899)
이원(李遠)	己丑(1589)~庚寅(1590)	邑誌(1899)
이계필(李繼弼)	庚寅(1590)~壬辰(1592)	邑誌(1899)
박충남(朴忠男)	壬辰(1592)~癸巳(1593)	邑誌(1899)
민곤서(閔昆瑞)	癸巳(1593)~甲午(1594)	邑誌(1899)
김공휘(金公輝)	甲午(1594)~乙未(1595)	邑誌(1899)
유대형(兪大衡)	乙未(1595)~丙申(1596)	邑誌(1899)
정응탁(鄭應卓)	丙申(1596)~丁酉(1597)	邑誌(1899), 實錄
용천택(龍天澤)	?	邑誌(1899)
채길선(蔡吉先)	?	邑誌(1899)

성명	재임기간	出典
장세철(張世哲)	?	邑誌(1899)
신현(申峴)	?	邑誌(1899)
유달증(兪達曾)	1600	邑誌(1899), 實錄
최준(崔浚)	1602	邑誌(1899), 實錄
김새(金璽)	1602	邑誌(1899), 實錄
윤기빙(尹起聘)	1606	邑(1899), 實錄
이승(李昇)	1606	邑誌(1899), 實錄
김래(金球)	1607	實錄
조광벽(趙光璧)	1612	實錄
이경황(李慶滉)	?	邑誌(1899)
황치중(黃致中)	1614	邑誌(1899)
권주(權澍)	?	邑誌(1899)
노사해(盧士海)	?	邑誌(1899)
유몽룡(柳夢龍)	庚戌(1610)~辛亥(1611)	邑誌(1899)
김흠(金洽)	辛亥(1611)~壬子(1612)	邑誌(1899)
이문빈(李文賓)	壬子(1612)~癸丑(1613)	邑誌(1899)
심화(沈和)	癸丑(1613)~甲寅(1614)	邑誌(1899)
이선술(李善述)	甲寅(1614)~戊午(1618)	邑誌(1899)
안대남(安大楠)	戊午(1618)~庚申(1620)	邑誌(1899)
이종립(李宗立)	庚申(1620)~辛酉(1621)	邑誌(1899)
최숙(崔淑)	辛酉(1621)~壬戌(1622)	邑誌(1899)
이덕언(李德言)	壬戌(1622)~癸亥(1623)	邑誌(1899)
김준(金俊)	癸亥(1623)~丙寅(1626)	邑誌(1899), 實錄
유시증(兪是曾)	丙寅(1626)~丁卯(1627)	邑誌(1899), 司馬榜目
성희주(成熙胄)	丁卯(1627)~丁卯(1627)	實錄
박병(朴炳)	丁卯(1627)~癸酉(1633)	邑誌(1899)
김우엄(金友淹)	癸酉(1633. 6)~癸酉(1633. 10)	邑誌(1899)
이명달(李命達)	癸酉(1633. 10)~甲戌(1634. 11)	邑誌(1899)
김광위(金光煒)	甲戌(1634. 11)~乙亥(1635. 8)	邑誌(1899)
유신남(柳信男)	乙亥(1635. 8)~乙亥(1635. 10)	邑誌(1899)
권담(權潭)	乙亥(1635.10)~丁丑(1637.12)	邑誌(1899)
권대유(權大有)	丁丑(1637.12.24)~庚辰(1640.6)	邑誌(1899), 司馬榜目
한유(韓有良)	庚辰(1640.7.20)~壬午(1642.3)	邑誌(1899)
안정(安錠)	壬午(1642.5.6)~壬午(1642.12.12)	邑誌(1899)
남두극(南斗極)	癸未(1643. 3)~丙戌(1646)	邑誌(1899)
이산뢰(李山賚)	丙戌(1646)~己丑(1649)	邑誌(1899)

성명	재임기간	出典
유흡(柳翁)	己丑(1649)~己丑(1649)	邑誌(1899)
심약하(沈若河)	己丑(1649)~庚寅(1650)	邑誌(1899)
허인(許麟)	庚寅(1650)~庚寅(1650)	邑誌(1899)
신록(申沔)	辛卯(1651)~壬辰(1652)	邑誌(1899)
염원준(廉元俊)	壬辰(1652)~癸巳(1653)	邑誌(1899)
이분(李昉)	癸巳(1653)~癸巳(1653)	邑誌(1899)
정만화(鄭萬和)	癸巳(1653)~甲午(1654)	邑誌(1899), 司馬榜目
윤유진(尹惟晉)	甲午(1654)~丙申(1655)	邑誌(1899), 司馬榜目
정후계(鄭後啓)	丙申(1655)~丙申(1655)	邑誌(1899)
고두홍(高斗興)	丙申(1655)~丁酉(1657)	邑誌(1899)
황부(黃寔)	丁酉(1657)~己亥(1659)	邑誌(1899), 碑石
이극빈(李克儉)	己亥(1659)~己亥(1659)	邑誌(1899)
송박(宋搏)	己亥(1659)~癸卯(1663)	邑誌(1899)
성희적(成熙績)	癸卯(1663)~乙巳(1665)	邑誌(1899)
이관하(李觀夏)	乙巳(1665)~乙巳(1665)	邑誌(1899)
윤영(尹榮)	乙巳(1665)~庚戌(1670)	邑誌(1899)
강석로(姜碩老)	庚戌(1670)~辛亥(1671)	邑誌(1899)
이집성(李集成)	辛亥(1671)~壬子(1672)	邑誌(1899)
한성보(韓聖甫)	壬子(1672)~癸丑(1673)	邑誌(1899)
조지강(趙指綱)	癸丑(1673)~乙卯(1675)	邑誌(1899)
윤의(尹漪)	乙卯(1675)~乙卯(1675)	邑誌(1899)
신응징(申應澄)	乙卯(1675)~丙辰(1676)	邑誌(1899)
양정신(楊廷薰)	丙辰(1676)~丁巳(1677)	邑誌(1899)
민정백(閔挺栢)	丁巳(1677)~乙未(1679)	邑誌(1899), 司馬榜目
이현년(李玄季)	乙未(1679)~庚申(1680)	邑誌(1899)
최성임(崔聖任)	庚申(1680)~庚申(1680)	邑誌(1899)
한세신(韓世臣)	庚申(1680)~辛酉(1681)	邑誌(1899)
권유(權諭)	辛酉(1681)~壬戌(1682)	邑誌(1899)
이만성(李晩成)	壬戌(1682)~癸亥(1683)	邑誌(1899)
이휴징(李休徵)	癸亥(1683)~甲子(1684)	邑誌(1899)
송도흥(宋道興)	甲子(1684)~丙寅(1686)	邑誌(1899)
성지선(成至善)	丙寅(1686)~丙寅(1686)	邑誌(1899)
이세필(李世弼)	丙寅(1686)~戊辰(1688)	邑誌(1899)
최석진(崔錫晉)	戊辰(1688)~己巳(1689)	邑誌(1899)
윤이복(尹以復)	己巳(1689)~己巳(1689)	邑誌(1899)
안중(安重)	己巳(1689)~辛未(1691)	邑誌(1899), 司馬榜目

성명	재임기간	出典
허승(許乘)	辛未(1691)~癸酉(1693)	邑誌(1899)
이백겸(李百謙)	癸酉(1693)~乙亥(1695)	邑誌(1899)
이혜주(李惠疇)	乙亥(1695)~丁丑(1697)	邑誌(1899)
신광제(申廣濟)	丁丑(1697)~庚辰(1699)	邑誌(1899)
송세태(宋世泰)	庚辰(1699)~庚辰(1700)	邑誌(1899)
이세회(李世會)	庚辰(1700)~辛巳(1701)	邑誌(1899)
임세검(林世儉)	辛巳(1701)~癸未(1703)	邑誌(1899)
양헌석(楊憲錫)	癸未(1703)~甲申(1704)	邑誌(1899)
윤보(尹普)	甲申(1704)~戊子(1708)	邑誌(1899)
이구(李構)	戊子(1708)~己丑(1709)	邑誌(1899)
이준(李竣)	己丑(1709)~己丑(1709)	邑誌(1899)
권성징(權聖徵)	己丑(1709)~庚寅(1710)	邑誌(1899)
이노성(李老成)	庚寅(1710)~癸巳(1713)	邑誌(1899)
허점(許玷)	癸巳(1713)~甲午(1714)	邑誌(1899)
조해수(趙海壽)	甲午(1714)~乙未(1715)	邑誌(1899)
권익순(權益淳)	乙未(1715)~戊戌(1718)	邑誌(1899)
신사성(申聖聖)	戊戌(1718)~乙亥(1719)	邑誌(1899)
이위(李瑋)	乙亥(1719)~辛丑(1721)	邑誌(1899)
김명환(金命煥)	辛丑(1721)~丙午(1726)	邑誌(1899)
이시명(李耆命)	丙午(1726)~丁未(1727)	邑誌(1899)
이의연(李宜衍)	丁未(1727)~戊申(1728)	邑誌(1899)
조동빈(趙東彬)	戊申(1728)~己酉(1729)	邑誌(1899)
유성징(柳聖澄)	己酉(1729)~辛亥(1731)	邑誌(1899)
윤세관(尹世觀)	辛亥(1731)~癸丑(1733)	邑誌(1899)
조상징(趙尙鼎)	癸丑(1733)~甲寅(1734)	邑誌(1899)
이하구(李夏龜)	甲寅(1734)~己未(1739)	邑誌(1899)
권수린(權壽麟)	己未(1739)~己未(1739)	邑誌(1899)
김시교(金時敎)	己未(1739)~辛酉(1741)	邑誌(1899)
이정철(李廷喆)	辛酉(1741)~乙丑(1745)	邑誌(1899)
김상설(金相說)	乙丑(1745)~丙寅(1746)	邑誌(1899)
윤광직(尹光迪)	丙寅(1746)~己巳(1749)	邑誌(1899)
박명양(朴鳴陽)	己巳(1749)~辛未(1751)	邑誌(1899)
조한숙(趙漢淑)	辛未(1751)~辛未(1751)	邑誌(1899)
박봉한(朴鳳漢)	辛未(1751)~乙亥(1755)	邑誌(1899)
이병승(李秉升)	乙亥(1755)~丙子(1756)	邑誌(1899)
권정확(權正確)	丙子(1756)~丙子(1756)	邑誌(1899)

성명	재임기간	出典
김한길(金漢吉)	丙子(1756)~丁丑(1757)	邑誌(1899)
박린원(朴隣源)	丁丑(1757)~戊寅(1758)	邑誌(1899)
김경희(金敬熙)	戊寅(1758)~己卯(1759)	邑誌(1899), 司馬榜目
이성진(李成鎭)	己卯(1759)~辛巳(1761)	邑誌(1899)
이장호(李章祐)	辛巳(1761)~壬午(1762)	邑誌(1899)
유한태(兪漢泰)	壬午(1762)~壬午(1762)	邑誌(1899), 司馬榜目
김노(金魯)	壬午(1762)~乙酉(1765)	邑誌(1899)
경현(慶絢)	乙酉(1765)~丁亥(1767)	邑誌(1899)
한후증(韓厚增)	丁亥(1767)~己丑(1769)	邑誌(1899)
송재덕(宋載德)	己丑(1769)~甲午(1774)	邑誌(1899)
김사훈(金思渾)	甲午(1774)~丁酉(1777)	邑誌(1899)
박좌원(朴左源)	丁酉(1777)~己亥(1779)	邑誌(1899), 司馬榜目
홍병문(洪秉文)	己亥(1779)~壬寅(1782)	邑誌(1899)
홍리건(洪履健)	壬寅(1782)~壬寅(1782)	邑誌(1899)
조익현(趙翼鉉)	壬寅(1782)~乙巳(1785)	邑誌(1899)
이항연(李恒演)	乙巳(1785)~戊申(1788)	邑誌(1899)
이협성(李協聖)	戊申(1788)~庚戌(1790)	邑誌(1899)
조운식(曹允植)	庚戌(1790)~癸丑(1793)	邑誌(1899)
오재두(吳在斗)	癸丑(1793)~丙辰(1796)	邑誌(1899)
윤응현(尹應鉉)	丙辰(1796)~己未(1799)	邑誌(1899)
정치우(鄭致愚)	己未(1799)~辛酉(1801)	邑誌(1899)
이명익(李明翼)	辛酉(1801)~辛酉(1801)	邑誌(1899)
변세의(卞世義)	辛酉(1801)~甲子(1804)	邑誌(1899)
남주현(南周獻)	甲子(1804)~甲子(1804)	邑誌(1899)
박종우(朴宗雨)	甲子(1804)~乙丑(1805)	邑誌(1899)
박영수(朴榮壽)	乙丑(1805)~戊辰(1808)	邑誌(1899)
한용성(韓用誠)	戊辰(1808)~己巳(1809)	邑誌(1899)
권용(權裕)	己巳(1809)~辛未(1811)	邑誌(1899)
이영효(李英孝)	辛未(1811)~壬申(1812)	邑誌(1899)
조운로(趙雲路)	壬申(1812)~壬申(1812)	邑誌(1899)
조종협(趙宗協)	壬申(1812)~壬申(1812)	邑誌(1899)
한철유(韓喆裕)	壬申(1812)~甲戌(1814)	邑誌(1899)
황기익(黃基翼)	甲戌(1814)~丁丑(1827)	邑誌(1899), 司馬榜目
송계근(宋啓根)	丁丑(1827)~庚辰(1820)	邑誌(1899)
조운표(趙雲杓)	庚辰(1820)~辛巳(1821)	邑誌(1899)
이중인(李鍾仁)	辛巳(1821)~癸未(1823)	邑誌(1899), 司馬榜目

성명	재임기간	出典
김익철(金益哲)	癸未(1823)~乙酉(1825)	邑誌(1899)
박종대(朴宗大)	乙酉(1825)~丙戌(1826)	邑誌(1899)
민정현(閔靖顯)	丙戌(1826)~己丑(1829)	邑誌(1899)
유영근(柳英根)	己丑(1829)~己丑(1829)	邑誌(1899)
윤행린(尹行麟)	己丑(1829)~壬辰(1832)	邑誌(1899)
이원달(李源達)	壬辰(1832)~壬辰(1832)	邑誌(1899)
홍병기(洪秉箕)	壬辰(1832)~壬辰(1832)	邑誌(1899)
이유승(李儒勝)	壬辰(1832)~乙未(1835)	邑誌(1899)
오근상(吳謹常)	乙未(1835)~丙申(1836)	邑誌(1899)
남홍중(南興中)	丙申(1836)~丙申(1836)	邑誌(1899)
박장암(朴長淹)	丙申(1836)~己亥(1839)	邑誌(1899)
오경흥(吳慶興)	己亥(1839)~己亥(1839)	邑誌(1899)
황종림(黃鍾林)	己亥(1839)~癸卯(1843)	邑誌(1899)
김무순(金茂淳)	癸卯(1843)~乙巳(1845)	邑誌(1899)
조병성(趙秉性)	乙巳(1845)~丁未(1847)	邑誌(1899), 司馬榜目
강노(姜洎)	丁未(1847)~戊申(1848)	邑誌(1899)
김정호(金鼎鎬)	戊申(1848)~庚戌(1850)	邑誌(1899)
황유수(黃裕秀)	庚戌(1850)~癸丑(1853)	邑誌(1899)
서미순(徐眉淳)	癸丑(1853)~乙卯(1855)	邑誌(1899)
홍정하(洪庭河)	乙卯(1855)~丙辰(1856)	邑誌(1899)
박제관(朴齊寬)	丙辰(1856)~己未(1859)	邑誌(1899)
이기신(李麒新)	己未(1859)~甲子(1864)	邑誌(1899)
박승황(朴承晃)	甲子(1864)~乙丑(1865)	邑誌(1899)
이승겸(李承謙)	乙丑(1865)~丙寅(1866)	邑誌(1899)
조운궁(趙雲兢)	丙寅(1866)~丙寅(1866)	邑誌(1899)
조용하(趙龍夏)	丙寅(1866)~丁卯(1867)	邑誌(1899)
이병제(李秉悌)	丁卯(1867)~戊辰(1868)	邑誌(1899)
송병찬(宋秉贊)	戊辰(1868)~己巳(1869)	邑誌(1899)
서광두(徐光斗)	己巳(1869)~壬申(1872)	邑誌(1899), 司馬榜目, 碑石
목양석(睦養錫)	壬申(1872)~乙亥(1875)	邑誌(1899)
박창근(朴昌根)	乙亥(1875)~丙子(1876)	邑誌(1899)
이승우(李勝宇)	丙子(1876)~戊寅(1878)	邑誌(1899)
이한철(李漢喆)	戊寅(1878)~己卯(1879)	邑誌(1899)
심기택(沈琦澤)	己卯(1879)~庚辰(1880)	邑誌(1899)
김경수(金景遂)	庚辰(1880)~庚辰(1880)	邑誌(1899)
박제문(朴齊文)	庚辰(1880)~辛巳(1881)	邑誌(1899)

성명	재임기간	出典
홍현보(洪顯普)	辛巳(1881)~壬午(1882)	邑誌(1899)
이주의(李周儀)	壬午(1882)~癸未(1883)	邑誌(1899)
김재순(金載舜)	癸未(1883)~乙酉(1885)	邑誌(1899), 碑石
안광묵(安光默)	乙酉(1885)~乙酉(1885)	邑誌(1899)
조원식(趙元植)	乙酉(1885)~丙戌(1886)	邑誌(1899)
방천용(方天鏞)	丙戌(1886)~己丑(1889)	邑誌(1899)
방시영(方時榮)	己丑(1889)~己丑(1889)	邑誌(1899)
이태정(李台琺)	己丑(1889)~辛卯(1891)	邑誌(1899)
이재근(李載覲)	辛卯(1891)~癸巳(1893)	邑誌(1899)
정인량(鄭寅亮)	癸巳(1893)~癸巳(1893)	邑誌(1899)
심의적(沈宜迪)	癸巳(1893)~甲午(1894)	邑誌(1899), 司馬榜目
조문규(趙文奎)	甲午(1894)~乙未(1895)	邑誌(1899)
안정수(安鼎壽)	乙未(1895)~建陽元年(1896)	邑誌(1899)
오인섭(吳麟燮)	建陽元年(1896)~建陽元年(1896)	邑誌(1899)
조만희(趙萬熙)	建陽元年(1896)~建陽2年(1897)	邑誌(1899)
김사필(金思弼)	建陽2年(1897)~建陽4年(1899)?	邑誌(1899)
유치흥(俞致興)	?	
조성호(趙性鎬)	?	

平澤縣監名單

성명	재임기간	출典
조계생(趙啓生)	세종20(1438)	실록 세종 20(1438) 9. 14.
최흥우(崔興雨)	세종23(1441)	실록 세종 23(1441) 1. 24.
방강(方綱)	세조 2(1456)	실록 세조 2(1456) 8. 10.
김득경(金得敬)	세조 8(1462)	실록 세조 8(1462) 1. 28.
이평(李平)	예종 · 성종 연간	사마방목 성종 14. 생년생원시
홍흔(洪忻)	성종 8(1477)	실록 성종 8(1477) 6. 2.
홍흥(洪興)	성종10(1479)	실록 성종 10(1479) 7. 30 실록 성종 10(1479) 10. 30.
변징원(卞澄源)	성종14(1483)	실록 성종 14(1483) 9. 5.
송계흥(宋繼興)	성종16(1485)	팽성지
이장은(李長崙)	연산군7(1501)	사마방목, 연산군 7. 증광 진사시
조영걸(趙英傑)	중종22(1527)	실록 중종 22. 11. 13
노한우(盧漢佑)	중종25(1530)	실록 중종 25. 3. 7
윤위(尹緯)	명종1(1544)	실록 명종 1. 12. 1
조수륜(趙守倫)	광해군2(1610)~5(1613)	팽성지
조감(趙鑑)	광해군5(1613)	팽성지, 『국역대동야승』 111
홍영(洪羹)		팽성지
정희(鄭晦)		팽성지
송시혁(宋時赫)		팽성지
박서(朴遜)		팽성지
신용휴(申用休)	광해군14(1614)~인조1(1623)	팽성지, 실록 광해군 14. 6. 15
안정(安錠)	인조1(1623)~인조3(1625)	팽성지
이엄(李儼)	인조7(1629)	팽성지
강진소(姜晉昭)	인조7(1629)~10(1632)	팽성지
원장길(元長吉)	인조10(1632)~13(1635)	팽성지
성하창(成夏昌)	인조13(1635)~인조15(1637)	팽성지, 사마방목
이성항(李性恒)	인조15(1637)~인조20(1642)	팽성지
유산립(柳山立)	인조20(1642)~	팽성지

성명	재임기간	出典
정희윤(鄭希尹)	인조24(1644)~	팽성지
황도명(黃道明)	인조24(1644)~효종2(1651)	팽성지
최항(崔恒)	효종2(1651)~효종3(1652)	팽성지
이형길(李亨吉)	효종3(1652)~효종3(1652)	팽성지
유린(柳璘)	효종3(1652)~효종4(1653)	팽성지
서상민(徐相民)	효종4(1653)~효종6(1655)	팽성지
이홍유(李弘猷)	효종6(1655)~효종10(1659)	팽성지
심익선(沈益善)	효종10(1659)~현종3(1662)	팽성지, 실록 현종 2. 6. 6.
박성부(朴成阜)	현종3(1662)~현종7(1666)	팽성지
이기영(李耆英)	현종7(1666)~현종8(1667)	팽성지
이행하(李行夏)	현종8(1667)~현종13(1672)	팽성지 실록 현종 12. 11. 1
이진백(李震白)	현종13(1672)~숙종3(1677)	팽성지, 사마방목
이적길(李迪吉)	숙종3(1677)~숙종4(1678)	팽성지
이재(李裁)	숙종4(1678)~숙종9(1683)	팽성지
안지(安至)	숙종9(1683)~숙종10(1684)	팽성지
박장건(朴長健)	숙종10(1684)~숙종10(1684)	팽성지
정추(鄭推)	숙종10(1684)~숙종14(1688)	팽성지
김익구(金益九)	숙종14(1688)~숙종15(1689)	팽성지
정제두(鄭齊斗)	숙종15(1689)~숙종15(1689)	팽성지
이만길(李萬吉)	숙종15(1689)~숙종18(1692)	팽성지
어진석(魚震奭)	숙종18(1692)~숙종21(1695)	팽성지
김중우(金重禹)	숙종21(1695)~숙종26(1700)	팽성지
윤세강(尹世絳)	숙종26(1700)~숙종26(1700)	팽성지
이순영(李舜英)	숙종26(1700)~숙종32(1706)	팽성지
정혁선(鄭赫先)	숙종32(1706)~숙종35(1709)	팽성지
심오(沈澳)	숙종35(1709)~숙종36(1710)	팽성지
이하보(李夏輔)	숙종36(1710)~숙종41(1715)	팽성지
이기현(李耆顯)	숙종41(1715)~숙종41(1715)	팽성지
신필하(申弼夏)	숙종41(1715)~숙종41(1715)	팽성지
홍서하(洪叙夏)	숙종41(1715)~숙종44(1718)	팽성지
박필교(朴弼敎)	숙종44(1718)~경종3(1723)	팽성지
홍순원(洪舜元)	경종3(1723)~영조1(1725)	팽성지
이세해(李世楷)	영조1(1725)~영조1(1725)	팽성지
문재중(文在中)	영조1(1725)~영조2(1726)	팽성지
박세표(朴世杓)	영조2(1726)~영조3(1727)	팽성지
유중겸(柳重謙)	영조3(1727)~영조5(1729)	팽성지

성명	재임기간	出典
심화(沈樺)	영조5(1729)~영조10(1734)	팽성지, 실록 영조 8. 9. 19
서종조(徐宗朝)	영조10(1734)~영조13(1737)	팽성지
임상익(林象翼)	영조13(1737)~영조16(1740)	팽성지
남기명(南紀明)	영조16(1740)~영조19(1743)	팽성지
이경조(李景祚)	영조19(1743)~영조21(1745)	팽성지
심중주(沈重周)	영조21(1745)~영조22(1746)	팽성지
유적기(兪迪基)	영조22(1746)~영조24(1748)	팽성지
이정일(李廷一)	영조24(1748)~영조25(1749)	팽성지
권도(權導)	영조25(1749)~영조26(1750)	팽성지
황진(黃鎰)	영조26(1750)~영조30(1754)	팽성지
박재원(朴載源)	영조30(1754)~영조31(1755)	팽성지
변치명(邊致明)	영조31(1755)~영조32(1756)	팽성지
김면행(金勉行)	영조36(1756)~영조38(1758)	팽성지
김재순(金載順)	영조38(1758)~	실록 영조 38. 11. 8
유한장(兪漢章)	영조51(1775)~	팽성지 실록 영조 51. 1. 9
홍빈(洪彬)	정조1(1776)	실록 정조 1. 7. 8
윤광택(尹光宅)	영 · 정조 연간	사마방목 정조 4 식년 진사시
심전(沈鉞)	영 · 정조 연간	사마방목 정조 4 식년 진사시
이형필(李衡弼)	정조11(1787)	실록 정조 11. 4. 19
이승훈(李承薰)	정조15(1791)~	실록 정조 15. 11. 3
성정주(成鼎柱)	정조19(1795)~	실록 정조 19. 4. 22
유상문(柳相文)	정조23(1799)~	실록 정조 23. 5. 9
정양선(鄭養善)	정조 · 순조 연간	사마방목 순조 7 식년 생원시
유맹환(兪孟煥)	순조6(1806)~순조11(1811)	외임안
성은주(成殷柱)	순조11(1811)~순조13(1813)	외임안
서유성(徐有聲)	순조13(1813)~순조14(1814)	외임안
김인주(金仁柱)	순조14(1814)~순조14(1814)	외임안
박인수(朴寅秀)	순조14(1814)~순조16(1816)	외임안
이준모(李俊模)	순조16(1816)~	외임안
이명인(李命寅)	순조17(1817)~	외임안
윤대동(尹大東)	순조17(1817)~순조22(1822)	외임안
이횡(李鉞)	순조22(1822)~순조26(1826)	외임안
정의준(丁義準)	순조26(1826)~순조28(1828)	외임안, 사마방목
조진문(趙鎭文)	순조28(1828)~순조30(1830)	실록 순조 29 11. 30
구병노(具秉魯)	순조30(1830)~순조33(1833)	실록 순조 33. 6. 12
이해선(李海善)	순조33(1833)~헌종1(1835)	외임안

성명	재임기간	出典
엄석명(嚴錫明)	헌종1(1835)~헌종1(1835)	외임안
유영환(俞永煥)	헌종1(1835)~헌종5(1839)	외임안
김재진(金在晉)	헌종5(1839)~헌종6(1840)	외임안
김해식(金海植)	헌종6(1840)~헌종6(1840)	외임안
유한방(俞漢方)	헌종6(1840)~헌종10(1840)	외임안
정성수(鄭性秀)	헌종10(1840)~헌종12(1846)	외임안 실록 헌종 13. 10. 8
이은영(李殷榮)	헌종12(1846)~철종 2(1851)	외임안
권용익(權用翼)	철종2(1851)~철종4(1853)	외임안
심학영(沈學永)	철종4(1853)~철종8(1857)	외임안
이돈학(李敦學)	철종8(1857)~철종11(1860)	외임안
서정보(徐玼輔)	철종11(1860)~철종13(1862)	외임안
이학진(李鶴鎭)	철종13(1862)~철종13(1863)	외임안
한치조(韓致肇)	철종13(1863)~고종2(1865)	외임안
윤후성(尹厚成)	고종2(1865)~고종3(1866)	외임안, 사마방목
송양진(宋養鎭)	고종3(1866)~고종5(1868)	외임안
이만응(李晩應)	고종5(1868)~고종5(1868)	외임안
이원태(李原泰)	고종5(1868)~고종9(1872)	외임안
이주옥(李周鈺)	고종9(1872)~고종11(1874)	외임안
한공우(韓兢愚)	고종11(1874)~고종14(1877)	외임안
민성훈(閔星勳)	고종14(1877)~고종17(1880)	외임안
윤경현(尹兢鉉)	고종17(1880)~고종19(1882)	외임안
임백헌(任百憲)	고종19(1882)~고종21(1884)	외임안
손진구(孫振九)	고종21(1884)~고종22(1885)	외임안
채경묵(蔡慶默)	고종22(1885)~고종23(1886)	외임안
민영집(閔泳集)	고종23(1886)~고종23(1886)	외임안
홍우룡(洪祐龍)	고종23(1886)~고종24(1887)	외임안
이순응(李純應)	고종24(1887)~고종24(1887)	외임안
박문하(朴文夏)	고종24(1887)~고종25(1888)	외임안
이민승(李敏承)	고종25(1888)~고종25(1888)	외임안
정환대(鄭煥大)	고종25(1888)~고종26(1889)	외임안
장계환(張啓煥)	고종26(1889)~고종27(1890)	외임안
조영원(趙榮元)	고종27(1890)~	외임안
이우증(李友曾)		외임안
홍문환(洪文煥)		외임안
신종원(愼宗源)		외임안
이관희(李觀熙)		외임안

성명	재임기간	出典
이필응(李弼應)		외임안
이태헌(李台憲)		외임안
이종욱(李種郁)	1894. 7. 14~1896. 8. 5	한말지방관록
김응직(金應稷)	1896. 8. 5~1898. 8. 16	한말지방관록
김종식(金宗植)	1898. 8. 16~1899. 8.17	한말지방관록
권택수(權宅洙)	1899. 9. 16~	한말지방관록
김난규(金蘭圭)	광무4(1900)	외임안
김기중(金祺中)	1901. 10. 10~	한말지방관록
박봉환(朴琿煥)	1902. 3. 7~1902. 4. 8	한말지방관록
남만리(南萬里)	1902. 4. 8~	한말지방관록
오횡묵(吳紘默)	1902. 7. 19~	한말지방관록
이사철(李思哲)	1906. 7. 19~	한말지방관록
이기(李琦)	1910. 10. 1~	한말지방관록

조선시대 평택시 지역(진위현·평택현) 거주 소과(小科) 합격자

항목 해설

【시험년도】 시험 시행 연도.

【합격등위】 1등, 2등, 3등은 등위를 의미하며 숫자는 등수임. 물음표(?)는 등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성명】 합격자의 이름

【본인 자】 합격자의 자(字)

【본인초명】 합격자의 처음 이름. 별표(*)는 개명(改名)을 표시

【본인생년】 합격자가 태어난 해.

【본인본관】 합격자의 본관

【본인 호】 합격자의 호

【본인거주】 시험 당시의 합격자의 거주지

【본인구존】 부모와 조부모의 생존 여부¹⁾

【본인문과】 문과 합격 연도와 시험의 종류²⁾

【본인양시】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

【본인전력】 시험에 응시할 당시의 지위

【본인품계】 시험 합격 이후의 품계

【본인관직】 시험 합격 이후의 관직

【본인과목】 합격자의 시험 과목

【본인문과】 이외의 과거 합격 사항

1) 구경하(具慶下) : 부모 모두 생존
 영감하(永感下) : 부모가 모두 돌아가심.
 엄시하(嚴侍下) : 아버지만 생존
 자시하(慈侍下) : 어머니만 생존
 중경하(重慶下) :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생존

2) 식년시(式年試),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알성시(謁聖試), 전시(殿試), 정시(庭試), 현량과(賢良科), 중시(重試), 삭과(削科), *는 문과방목에서 확인한 경우.

- 【부친성명】 아버지의 성명
- 【부친과거】 아버지의 과거 합격 사항
- 【부친품계】 아버지의 품계
- 【부친관직】 아버지의 관직
- 【부친봉작】 아버지의 공신 칭호와 작위
- 【생부성명】 합격자가 양자로 입적한 경우, 친아버지의 성명
- 【생부과거】 합격자가 양자로 입적한 경우, 친아버지의 과거 합격 사항
- 【생부품계】 합격자가 양자로 입적한 경우, 친아버지의 품계
- 【생부관직】 합격자가 양자로 입적한 경우, 친아버지의 관직
- 【생부봉작】 합격자가 양자로 입적한 경우, 친아버지의 공신 칭호와 작위
- 【생부구존】 시험 당시 생부의 생존 여부
- 【조부성명】 할아버지의 성명
- 【조부관직】 할아버지의 관직
- 【조부봉작】 할아버지의 공신 칭호와 작위
- 【증조성명】 증조 할아버지의 성명
- 【증조관직】 증조 할아버지의 관직
- 【증조봉작】 증조 할아버지의 공신 칭호와 작위
- 【외조성명】 외할아버지의 성명
- 【외조관직】 외할아버지의 관직
- 【외조봉작】 외할아버지의 공신 칭호와 작위
- 【처부성명】 처부의 성명
- 【처부관직】 처부의 관직
- 【처부본관】 처부의 본관
- 【안향(형)】 합격자의 형
- 【안향(적형)】 합격자의 적형(嫡兄)
- 【안향(서형)】 합격자의 서형(庶兄)
- 【안향(제)】 합격자의 동생
- 【안향(적제)】 합격자의 적제(嫡弟)
- 【안향(서제)】 합격자의 서제(庶弟)
- 【안향】 형제 관계가 미상

소과(小科) 생원과(生員科) 합격자³⁾

1510년(중종 5) 식년시

① 최숙손(崔叔孫)

【합격등위】 3등 44 【본인 자】 자철(子徹) 【본인본관】 해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최은(崔垠)
 【부친과거】 성균생원(成均生員)

1513년(중종 8) 식년시

① 최보한(崔輔漢)

【합격등위】 2등 20 【본인 자】 언경(彦卿) 【본인본관】
 【본인거주】 진위 【본인문과】 1524년 별시(別試)*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최윤명(崔潤明)
 【부친관직】 통훈대부·행당진현감(通訓大夫行唐津縣監)

1534년(중종 29) 식년시

① 유조함(柳祖諫)

【합격등위】 3등 69 【본인 자】 언화(彦和) 【본인본관】 진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유인(柳茵)
 【부친관직】 통훈대부·행진원현감(通訓大夫行珍原縣監)

1549년(명종 4) 식년시

① 원국량(元國良)

【합격등위】 3등 66 【본인 자】 석보(碩輔) 【본인본관】 원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원임(元任)
 【부친품계】 효력부위(效力副尉)

3) 먼저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같은 해에 동시에 합격하면 등위에 따라 선후를 결정하였다.

1561년(명종 16) 식년시

① 장오길(張五吉)

【합격등위】 3등 97	【본인 자】 경응(慶應)	【본인생년】 1540
【본인본관】 풍덕(豐德)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문과】 1574년 별시	【본인양시】 양시(兩試)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장인(張麟)	【부친품계】 장사랑(將仕郎)	
【안향(제)】 장중길(張重吉)		

1618년(광해군 10) 식년시

① 박원(朴蘧)

【합격등위】 2등 16	【본인 자】 이성(而盛)	【본인생년】 1588
【본인본관】 밀양(密陽)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엄시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박효공(朴孝恭)	
【부친관직】 유학	【안향(제)】 박거(朴蘧)	

1624년(인조 2) 식년시

① 남명익(南溟翼)

【합격등위】 2등 27	【본인 자】 만리(萬里)	【본인생년】 1602
【본인본관】 의령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엄시하
【본인문과】 1637년 별시	【본인양시】 양시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남계하(南啓夏)		
【부친관직】 통훈대부·행수안군수(通訓大夫行遂安郡守)		
【안향(형)】 남명우(南溟羽)	【안향(제)】 남명한(南溟翰)	

1630년(인조 8) 식년시

① 정대신(鄭大信)

【합격등위】 3등 96	【본인 자】 서백(瑞伯)	【본인생년】 1592
【본인본관】 온양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영감하(永感下)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정복선(鄭復善)	【부친과거】 성균진사(成均進士)	
【안향(형)] 정대수(鄭大受)		

1646년(인조 24) 식년시

① 소형우(蘇亨宇)

【합격등위】 3등 38	【본인 자】 경회(景晦)	【본인생년】 1616
【본인본관】 진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소정진(蘇挺震)	
【부친관직】 통훈대부·행안동대도호부판관(通訓大夫行安東大都護府判官)		
【안향(제)] 소형도(蘇亨道)		

1648년(인조 26) 식년시

① 정광수(鄭廣壽)

【합격등위】 3등 42	【본인 자】 성구(聖耆)	【본인생년】 1607
【본인본관】 온양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엄시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정빈(鄭玘)	
【부친관직】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안향(형)] 정광업(鄭廣業)		

1652년(효종 3) 증광시

① 이익해(李翼海)

【합격등위】 3등 58	【본인 자】 자유(子游)	【본인생년】 1624
【본인본관】 용인	【본인거주】 진위	【본인양시】 양시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이수현(李秀顯)	
【부친관직】 학생		

1660년(현종 1) 식년시

① 이만표(李萬標)

【합격등위】 3등 37	【본인 자】 건중(建仲)	【본인생년】 1623
【본인본관】 전의(全義)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엄시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이효(李駮)	
【부친품계】 선교랑(宣敎郎)	【안향(제)】 이만익(李萬楹)	

1660년(현종 1) 증광시

① 남궁전(南宮典)

【합격등위】 3등 76	【본인 자】 계후(季厚)	【본인생년】 1632
【본인본관】 함열(咸悅)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자시하
【본인관직】 유학	【부친성명】 남궁엽(南宮燁)	
【부친관직】 학생	【안향(형)】 남궁윤(南宮玆), 남궁인(南宮瑱)	

1669년(현종 10) 식년시

① 한순상(韓舜相)

【합격등위】 2등 9	【본인 자】 자원(子元)	【본인생년】 1634
【본인본관】 청주(淸州)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엄시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한휴(韓休)	
【부친관직】 절충장군 · 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1679년(숙종 5) 식년시

① 이진무(李震茂)

【합격등위】 2등 12	【본인 자】 무백(茂伯)	【본인생년】 1615
【본인본관】 전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이명섭(李命燮)	
【부친관직】 유학		
【안향(제)】 이진화(李震華), 이진영(李震英), 이진기(李震夔)		

1684년(숙종 10) 식년시

① 이진기(李震夔)

【합격등위】 2등 7 【본인 자】 성일(聖一) 【본인생년】 1653
 【본인본관】 전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이명섭(李命燮) 【부친관직】 유학
 【안향(형)] 이진무(李震茂), 이진화(李震華), 이진영(李震英)

② 이홍기(李弘祺)

【합격등위】 3등 49 【본인 자】 징보(徵甫) 【본인생년】 1644
 【본인본관】 용인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영감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이익해(李翼海)
 【부친과거】 성균진사(成均進士)
 【안향(제)] 이홍유(李弘裕), 이홍정(李弘禎)

1689년(숙종 15) 증광시

① 원역(元潑)

【합격등위】 2등 7 【본인 자】 징보(澄甫) 【본인생년】 1646
 【본인본관】 원주(原州)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원순상(元舜相)
 【부친품계】 통덕랑(通德郎)
 【안향(제)] 원직(元潑), 원석(元灑), 원속(元涑)
 【안향(서제)] 원척(元滌)

② 남수교(南壽喬)

【합격등위】 3등 59 【본인 자】 여교(汝喬) 【본인생년】 1657
 【본인본관】 의령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엄시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남중유(南重維)
 【부친관직】 통훈대부·행사직서령(通訓大夫行社稷署令)
 【안향(서형)] 남정(南錠)
 【안향(제)] 남수종(南壽宗), 남수현(南壽賢)

1696년(숙종 22) 식년시

① 경문회(慶文會)

【합격등위】 3등 38	【본인 자】 중우(仲遇)	【본인생년】 1651
【본인본관】 청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자시하
【부친성명】 경민(慶敏)	【부친관직】 학생	
【안향(제)】 경지회(慶之會)		

1699년(숙종 25) 식년시

① 신응사(申應泗)

【합격등위】 3등 48	【본인 자】 도원(道源)	【본인생년】 1669
【본인본관】 평산(平山)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신식(申植)	【부친과거】 생원
【안향(형)】 신응운(申應運), 신응수(申應洙)		

1699년(숙종 25) 증광시

① 이담(李澁)

【합격등위】 3등 71	【본인 자】 화중(和仲)	【본인생년】 1662
【본인본관】 경주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자시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이후강(李後綱)	
【부친관직】 학생	【안향(제)】 이철(李澈), 이수(李洙), 이숙(李涑)	

1708년(숙종 34) 식년시

① 안상태(安相台)

【합격등위】 3등 34	【본인 자】 여삼(汝三)	【본인생년】 1668
【본인본관】 죽산(竹山)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영감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안유(安綏)	【부친관직】 학생
【안향(형)】 안상세(安相世), 안상기(安相器)		
【안향(제)】 안상시(安相時)		

1721년(경종 1) 증광시

① 이정화(李廷華)

【합격등위】 3등 69	【본인 자】 국보(國甫)	【본인생년】 1697
【본인본관】 완산(完山)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영감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이태연(李泰淵)	
【부친관직】 충의위(忠義衛)	【안향(형)] 이인화(李寅華), 이석화(李錫華)	

1723년(경종 3) 증광시

① 강규환(姜奎煥)

【합격등위】 2등 23	【본인 자】 장문(長文)	【본인생년】 1697
【본인본관】 진주(晋州)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자시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강주천(姜柱天)	
【부친관직】 학생(學生)		

1725년(영조 1) 증광시

① 강연부(姜淵溥)

【합격등위】 2등 12	【본인 자】 정숙(靜叔)	【본인생년】 1694
【본인본관】 진주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자시하
【본인전력】 업유(業儒)	【부친성명】 강석규(姜錫圭)	
【부친관직】 통훈대부·군자감정·지제교(通訓大夫軍資監正知製敎)		
【안향(형)] 강호부(姜浩溥)		
【안향(적형)] 강택부(姜澤溥), 강제부(姜濟溥), 강준부(姜浚溥)		

1726년(영조 2) 식년시

① 강호부(姜浩溥)

- 【합격등위】 2등 10 【본인 자】 양직(養直) 【본인생년】 1690
 【본인본관】 진주(晉州)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자시하
 【본인문과】 1754년 증광시* 【본인전력】 업유(業儒)
 【부친성명】 강석규(姜錫圭)
 【부친관직】 통훈대부·군자감정·지제교(通訓大夫軍資監正知製教)
 【안향(적형)] 강택부(姜澤溥), 강제부(姜濟溥), 강준부(姜浚溥)
 【안향(제)] 강연부(姜淵溥)

1774년(영조 50) 증광시

① 정환주(鄭桓周)

- 【합격등위】 3등 35 【본인생년】 1747
 【본인본관】 동래(東萊)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전력】 유학 【본인과목】 일의(一疑)
 【부친성명】 정세좌(鄭世佐)
 【부친관직】 병절교위·행용양위부사과(秉節校尉行龍驤衛副司果)

1873년(고종 10) 식년시

① 이석구(李碩龜)

- 【합격등위】 3등 146 【본인 자】 성겸(聖謙) 【본인생년】 1829
 【본인본관】 전주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영감하(永感下) 【본인전력】 유학
 【본인과목】 일의(一疑) 【부친성명】 이방식(李芳植)
 【부친관직】 학생 【안향(형)] 이석린(李碩麟)
 【안향(제)] 이석룡(李碩龍)

1880년(고종 17) 증광시

① 방주민(方周民)

【합격등위】 3등 159	【본인 자】 경렬(敬烈)	【본인생년】 1809
【본인본관】 온양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영감하
【본인전력】 유학	【본인과목】 일의(一義)	
【부친성명】 방시중(方時中)		
【부친관직】 증조봉대부·동몽교관(贈朝奉大夫童蒙教官)		
【안향(형)】 방주현(方周顯), 방주문(方周文)		
【안향(제)】 방주명(方周命), 방주헌(方周憲), 방주운(方周運)		

소과(小科) 진사과(進士科) 합격자

1531년(중종 26) 식년시

① 원몽량(元夢良)

【합격등위】 3등 87	【본인본관】 원주	【본인거주】 진위
【부친성명】 원건(元健)	【부친관직】 훈도(訓導)	

1561년(명종 16) 식년시

① 장오길(張五吉)

【합격등위】 2등 18	【본인 자】 경응(慶應)	【본인생년】 1540
【본인본관】 풍덕(豐德)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문과】 1574년 별시	【본인양시】 양시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장인(張麟)	【부친품계】 장사랑(將仕郎)	
【안향(제)】 장중길(張重吉)		

1624년(인조 2) 증광시

① 남명익(南溟翼)

【합격등위】	3등 89	【본인 자】	만리(萬里)	【본인생년】	1602
【본인본관】	의령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엄시하(嚴侍下)				
【본인문과】	1637년 별시*	【본인양시】	양시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남계하(南啓夏)				
【부친관직】	통훈대부·행수안군수(通訓大夫行遂安郡守)				
【안향(형)】	남명우(南溟羽)	【안향(제)】	남명한(南溟翰)		

1633년(인조 11) 식년시

① 정시교(鄭時僑)

【합격등위】	3등 73	【본인 자】	백회(伯淮)	【본인생년】	1607
【본인본관】	해주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구경하
【부친성명】	정대승(鄭大升)				
【부친관직】	장사랑·군자감참봉(將仕郎軍資監參奉)				
【안향(제)】	정시우(鄭時羽), 정시길(鄭時吉), 정시담(鄭時湛)				

1652년(효종 3) 증광시

① 이익해(李翼海)

【합격등위】	3등 58	【본인 자】	자유(子游)	【본인생년】	1624
【본인본관】	용인(龍仁)	【본인거주】	진위		
【본인양시】	양시(兩試)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이수현(李秀顯)	【부친관직】	학생(學生)		

1660년(현종 1) 증광시

① 소흥우(蘇興宇)

【합격등위】 2등 8 【본인 자】 도장(道長) 【본인생년】 1625
【본인본관】 진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자시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소정진(蘇挺震)
【부친관직】 통훈대부·행사헌부감찰(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안향(형)] 소형우(蘇亨宇)

1660년(현종 1) 식년시

① 임학수(任鶴壽)

【합격등위】 2등 24 【본인 자】 명수(鳴叟) 【본인생년】 1634
【본인본관】 풍천(豊川)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구경하(具慶下)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임언(任鰲) 【부친관직】 유학
【안향(형)] 임익수(任益壽), 임덕수(任德壽)

1675년(숙종 1) 증광시

① 남언창(南彦昌)

【합격등위】 3등 63 【본인 자】 응숙(應叔) 【본인생년】 1644
【본인본관】 의령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자시하
【본인문과】 1681년 알성시*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남명익(南溟翼)
【부친관직】 통훈대부·행병조정랑(通訓大夫行兵曹正郎)
【안향(형)] 남언성(南彦成), 남언필(南彦弼), 남언상(南彦相)

1689년(숙종 15) 증광시

① 소선(蘇鎰)

【합격등위】 2등 26	【본인 자】 정보(誠甫)	【본인생년】 1646
【본인본관】 진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소형우(蘇亨宇)	
【부친관직】 장사랑 · 선원전참봉(將仕郎璿源殿參奉)		
【안향(제)】 소환(蘇銓), 소관(蘇館)		

1691년(숙종 17) 증광시

① 기정현(奇挺賢)

【합격등위】 3등 76	【본인 자】 사회(士希)	【본인생년】 1659
【본인본관】 행주(幸州)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기서규(奇瑞奎)	
【부친관직】 유학	【안향(제)】 기정성(奇挺聖)	

1696년(숙종 22) 식년시

① 정유익(鄭維益)

【합격등위】 3등 36	【본인 자】 여겸(汝謙)	【본인생년】 1664
【본인본관】 하동(河東)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영감하
【부친성명】 정민흠(鄭民欽)	【부친품계】 통덕랑(通德郎)	
【안향(형)】 정유항(鄭維恒), 정유림(鄭維臨)		

② 윤광직(尹光績)

【합격등위】 3등 45	【본인 자】 문약(文若)	【본인생년】 1642
【본인본관】 칠원(漆原)	【본인거주】 평택	
【부친성명】 윤우상(尹遇商)	【부친관직】 학생	
【안향(형)】 윤휘직(尹徽績)		

1786년(정조 10) 식년시

① 조상본(趙常本)

【합격등위】 2등 11	【본인 자】 공오(公五)	【본인생년】 1757
【본인본관】 한양(漢陽)	【본인거주】 평택	【본인구존】 차시하
【본인전력】 업유(業儒)	【부친성명】 조사충(趙思忠)	
【부친관직】 통훈대부·봉상시정(通訓大夫奉常寺正)		
【안향(적제)】 조국인(趙國仁)		

1835년(헌종 1) 증광시

① 김원식(金元植)

【합격등위】 3등 76	【본인 자】 원배(元培)	【본인생년】 1819
【본인본관】 김해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구경하(具慶下)	【본인전력】 유학	
【본인과목】 이시(二詩)	【부친성명】 김제숙(金濟瑋)	
【부친관직】 유학		

1870년(고종 7) 식년시

① 윤현배(尹顯培)

【합격등위】 2등 11	【본인 자】 백인(伯仁)	【본인생년】 1800
【본인본관】 파평(坡平)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영감하
【본인전력】 유학	【본인과목】 이시(二詩)	
【부친성명】 윤성(尹愷)	【부친관직】 학생	
【안향(제)】 윤형배(尹馨培)		

1873년(고종 10) 식년시

① 이주현(李周顯)

【합격등위】 3등 191	【본인 자】 사유(士維)	【본인생년】 1831
【본인본관】 전주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엄시하
【본인전력】 유학	【본인과목】 일시(一詩)	
【부친성명】 이성려(李聲呂)	【부친관직】 유학	

1882년(고종 19) 증광시

① 이금래(李肯來)

【합격등위】 3등 163 【본인 자】 경구(敬構) 【본인생년】 1848
 【본인본관】 광주(廣州)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영감하
 【본인전력】 유학 【부친성명】 이병각(李秉珩)
 【부친관직】 학생
 【안향(제)】 이덕래(李惠來), 이식래(李軾來), 이승래(李承來)

1894년(고종 31) 식년시

① 홍승혁(洪承赫)

【합격등위】 3등 539 【본인 자】 윤명(允明) 【본인생년】 1871
 【본인본관】 풍산(豊山)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엄시하
 【본인전력】 유학 【본인과목】 일부(一賦)
 【부친성명】 홍우달(洪祐達)
 【부친관직】 통사랑 · 행익릉참봉(通仕郎行翼陵參奉)
 【안향(제)】 홍승훈(洪承勛)

② 조동식(趙東植)

【합격등위】 3등 881 【본인생년】 1874
 【본인본관】 풍양(豊壤) 【본인거주】 진위 【본인구존】 구경하
 【본인전력】 유학 【본인과목】 일시(一詩)
 【부친성명】 조장하(趙長夏)
 【부친관직】 효력부위 · 용양위부사용 · 규장각검서관(效力副尉龍駘衛副司勇奎章閣檢書官)
 【생부성명】 조선하(趙善夏) 【생부관직】 유학 【생부구존】 구경하

역대 군수 · 시장 명단

■ 통합전 평택군수

역대	구분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1		장범교(張範敎)	'46. 4. 12	'50. 4. 12	4년
2		이종상(李鍾常)	'51. 5. 31	'53. 1. 15	1년 8월
3		유인상(柳寅相)	'53. 1. 16	'54. 6. 30	1년 5월
4		이기석(李起錫)	'54. 7. 1	'56. 7. 16	2년 1월
5		이의종(李懿種)	'56. 7. 19	'57. 4. 8	9월
6		민병태(閔丙泰)	'57. 4. 23	'58. 11. 4	1년 7월
7		이승렬(李承烈)	'58. 11. 5	'60. 5. 23	1년 6월
8		이규복(李圭復)	'60. 5. 24	'60. 10. 31	5월
9		이민성(李敏晟)	'60. 11. 1	'61. 7. 14	8월
10		윤자순(尹滋舜)	'61. 7. 20	'61. 9. 21	2월
11		홍순항(洪淳恒)	'61. 11. 10	'65. 3. 20	3년 4월
12		한영수(韓英洙)	'65. 3. 21	'66. 8. 12	1년 5월
13		오건식(吳建植)	'66. 8. 22	'67. 12. 10	1년 4월
14		김동순(金東淳)	'67. 12. 11	'69. 2. 1	1년 2월
15		이용순(李勇淳)	'69. 2. 2	'69. 6. 23	5월
16		이병달(李炳達)	'69. 6. 28	'71. 8. 20	2년 2월
17		윤석범(尹錫範)	'71. 8. 21	'72. 8. 29	1년
18		이재창(李在昌)	'72. 8. 30	'74. 3. 5	1년 6월
19		신동안(申東安)	'74. 3. 6	'75. 9. 3	1년 6월
20		이건우(李建雨)	'75. 9. 4	'76. 3. 18	7월
21		진희상(秦熙相)	'76. 3. 25	'78. 3. 10	2년
22		최종구(崔鍾球)	'78. 3. 10	'79. 11. 15	1년 8월
23		신태섭(申兌燮)	'79. 11. 16	'80. 7. 16	8월
24		강도희(姜道熙)	'80. 8. 1	'81. 12. 22	1년 4월
25		이정구(李貞九)	'81. 12. 23	'85. 3. 10	3년 4월
26		박창곤(朴昌坤)	'85. 3. 11	'86. 3. 7	1년
27		이영해(李永海)	'86. 3. 18	'88. 6. 10	2년 3월

역대	구분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28		윤봉수(尹鳳洙)	'88. 6. 11	'91. 7. 15	3년 1월
29		정세영(鄭世泳)	'91. 7. 16	'93. 3. 28	1년 8월
30		유희두(柳熙斗)	'93. 3. 29	'94. 3. 20	1년
31		이무광(李茂光)	'94. 3. 21	'94. 10. 5	7월
32		김선기(金善基)	'94. 10. 6	'95. 5. 9	7월

■ 통합전 평택시장

역대	구분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1		김태수(金太洙)	'86. 1. 1	'86. 12. 23	1년
2		조건호(趙建鎬)	'86. 12. 24	'88. 6. 3	1년 6월
3		임석봉(林錫鳳)	'88. 6. 9	'91. 7. 15	3년 1월
4		최종구(崔鍾球)	'91. 7. 16	'93. 3. 28	1년 8월
5		이영해(李永海)	'93. 3. 29	'93. 12. 31	9월
6		권호장(權皓章)	'94. 1. 6	'94. 10. 5	9월
7		이상윤(李相允)	'94. 10. 6	'95. 5. 9	7월

■ 통합전 송탄시장

역대	구분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1		김기형(金基亨)	'81. 7. 1	'82. 9. 17	1년 3월
2		한세권(韓世權)	'82. 9. 18	'83. 12. 26	1년 3월
3		고 황(高 煌)	'83. 12. 27	'85. 8. 30	1년 8월
4		김용선(金鎔善)	'85. 8. 31	'86. 3. 7	6월
5		이호선(李浩善)	'86. 3. 8	'88. 6. 3	2년 3월
6		조건호(趙建鎬)	'88. 6. 4	'91. 1. 9	2년 7월
7		최병호(崔炳鎬)	'91. 1. 10	'92. 1. 3	1년
8		권호장(權皓章)	'92. 1. 4	'93. 1. 17	1년
9		홍성원(洪性元)	'93. 1. 18	'94. 5. 8	1년 4월
10		박계민(朴桂敏)	'94. 5. 9	'94. 12. 31	8월
11		김관수(金寬洙)	'95. 1. 1	'95. 5. 9	4월

■ 통합후 평택시장

역대	구분	성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1		이상윤(李相允)	'95. 5. 10	'95. 6. 30	2월
2		김선기(金善基)	'95. 7. 1	'98. 6. 30	3년
3		김선기(金善基)	'98. 7. 1	2000. 현재	

역대 국회의원 명단

역대	성명	연령	주소	소속정당
제 1 대 (48. 5. 10)	최석화(崔錫和)	37	평택군 포승면 석정리	무소속
제 2 대 (50. 5. 30)	안재홍(安在鴻)	59	평택군 고덕면 두릉리 646	무소속
제 3 대 (54. 5. 20)	황경수(黃慶秀)	47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565	자유당
제 4 대 (58. 5. 2)	정존수(鄭存秀)	47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292-60	자유당
제 5 대 (60. 7. 29)	이병헌(李炳憲)	63	평택군 포승면 방림리 404	민주당
제 6 대 (63. 11. 26)	유치송(柳致松)	39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162-293	민정당
제 7 대 (67. 6. 8)	이윤용(李允鎔)	53	평택군 송탄읍 서정리 319	민주공화당
제 8 대 (71. 5. 25)	최영희(崔榮喜)	50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624	민주공화당
제 9 대 (73. 2. 27)	서상린(徐相麟) 유치송(柳致松)	48 49	안성군 안성읍 심포동 463 서울시 성동구 황학동 135	민주공화당 신 민 당
제 10 대 (78. 12. 12)	서상린(徐相麟) 유치송(柳致松)	53 54	서울시 관악구 상도 1동 562 안성군 안성읍 봉남동 333-1	민주공화당 신 민 당
제 11 대 (81. 3. 25)	이자헌(李慈憲) 유치송(柳致松)	46 57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613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562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제 12 대 (85. 2. 12)	이자헌(李慈憲) 유치송(柳致松)	50 61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613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562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제 13 대 (88. 4. 26)	이자헌(李慈憲) 권달수(權達洙)	53 57	평택군 포승면 내기리 194 평택시 비전동 622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제 14 대 (92. 3. 24)	이자헌(李慈憲) 김영광(金永光)	57 57	평택군 포승면 내기리 194 송탄시 지산동 502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제 15 대 (96. 4. 11)	원유철(元裕哲) 허남훈(許南勳)	34 59	평택시 독곡동 369-10 수원시 수원맨션 3차 203호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제 16 대 (00. 4. 13)	원유철(元裕哲) 정장선(鄭長善)	38 42	평택시 독곡동 369-10 비전동 856 동성효성A 201-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역대 도의원 명단

■ 1~3대 도의원

역대(선거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정당	비고
1대 (56. 8. 13)	이윤용	'14. 4. 5	평택군 송탄면 서정리 319	자유당	통합전 평택군
	서태원	'14. 1. 27	평택군 오성면 교포리 27	자유당	"
2대 (60. 12. 12)	이윤용	'14. 4. 5	평택군 송탄면 서정리 319	민주당	"
	방승학	'29. 7. 29	평택군 팽성읍 원정리 88	민주당	"
3대 (91. 6. 20)	김용태	'36. 3. 21	평택군 팽성읍 송화리 24-11	무소속	"
	전운상	'36. 7. 8	평택군 진위면 고현리 143-1	민주자유당	"
	이계석	'43. 1. 28	평택군 안중면 안중리 277	민주자유당	"
	천낙범	'42. 1. 12	평택시 비전동 542-2	민주자유당	통합전 평택시
	최병호	'38. 1. 15	평택시 평택동 59-4	무소속	"
	유천형	'38. 11. 11	평택시 평택동 142	민주당	"
	원유철	'62. 9. 26	송탄시 독곡동 396-10	무소속	통합전 송탄시
	한양석	'40. 1. 6	송탄시 서정동 328-16	민주자유당	"
	정태호	'33. 9. 18	송탄시 신장동 304-12	민주자유당	"

■ 4대 도 의원

('95.6.27)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정당
1선거구	김용현	'39. 12. 6	평택시 지산동 714-15	무소속
2선거구	최홍석	'44. 12. 8	이충동 381 현대A 108-705	한나라당
3선거구	정태호	'33. 9. 18	신장동 304-14	한나라당
4선거구	장기만	'46. 10. 3	합정동 835 주공A 213-505	한나라당
5선거구	유천형	'38. 11. 11	평택동 142-1	무소속
6선거구	정장선	'58. 3. 16	비전동 856 동성효성A 201-1002	한나라당
7선거구	유광	'43. 2. 12	팽성읍 안정리 153-16	한나라당
8선거구	권혁동	'40. 10. 8	진위면 은산리 960	한나라당
9선거구	이계석	'43. 1. 28	안중면 안중리 277	새정치국민회의

■ 5대 도 의원

('98.6.4)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정당
1선거구	허정	'31. 11. 22	신장동 206-5	새정치국민회의
2선거구	장영남	'55. 5. 20	이충동 산44	"
3선거구	이계석	'43. 1. 28	안중면 안중리 277	"
4선거구	정장선	'58. 3. 16	비전2동 동아A 102-1003	자유민주연합
보궐선거	김홍규	'60. 6. 28	비전동 787-4	한나라당

역대 교육위원 명단

역대	성명	선거지역	비고
1대	김우룡	평송교육청	
	김경배	평택교육청	
2대	김경배	평택교육청	

역대 시의원 명단

■ 시 의원 1대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팽성읍	방효원	'43. 10. 1	팽성읍 안정리 219-1	통합전평택군
팽성읍	조재득	'33. 6. 30	팽성읍 안정리 264-26	"
진위면	권혁동	'40. 10. 18	진위면 은산리 960	"
서탄면	김영호	'49. 2. 25	서탄면 금각리 351	"
고덕면	김현승	'57. 11. 1	고덕면 궁리 89	"
오성면	정의화	'43. 3. 13	오성면 속성리 137	"
청북면	이춘재	'34. 8. 6	청북면 한산리 102-6	"
포승면	유원목	'32. 7. 1	포승면 신영리 534	"
현덕면	공명구	'43. 4. 23	현덕면 황산리 120	"
안중면	황종만	'43. 10. 30	안중면 안중리 277	"
신평동	김홍수	'28. 8. 21	합정동 36-1	통합전평택시
신평동	방효익	'37. 4. 21	통북동 92	"
서부동	박종수	'24. 5. 11	평택동 185-206	"
통북동	장필선	'36. 3. 28	통북동 70	"
비전1동	김학연	'50. 11. 13	비전동 622-6	"
비전2동	이남수	'47. 7. 19	소사동 89	"
세교동	이영기	'39. 5. 15	세교동 203	"
중앙동	박영웅	'44. 5. 7	이충동 213	통합전송탄시
서정동	한창수	'33. 11. 15	서정동 590-24	"
동부동	송영철	'38. 10. 9	가재동 167	"
도원동	김기호	'34. 2. 20	칠원동 39	"
지산동	이병주	'39. 4. 2	지산동 690	"
송북동	이의상	'43. 10. 23	독곡동 348	"
신장1동	오승수	'36. 6. 7	신장동 320-20	"
신장2동	한일우	'42. 9. 9	신장동 274-45	"

■ 2대 시 의원

선거일 : '95. 6. 27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주소
팽성읍	곽노선	'47. 6. 10	팽성읍 객사리 167-15
	배연서	'54. 6. 7	팽성읍 노양리 35-12
진위면	최재성	'32. 12. 9	진위면 은산리 1374
서탄면	송준섭	'52. 11. 6	서탄면 금암리 244
고덕면	김현승	'57. 11. 1	고덕면 궁리 89
오성면	표태정	'48. 2. 3	오성면 숙성리 130-1
청북면	이익재	'45. 3. 24	청북면 삼계리 395
포승면	오태수	'35. 3. 21	포승면 내기리 129
현덕면	공명구	'43. 4. 23	현덕면 황산리 120
안중면	황종만	'43. 10. 30	안중면 안중리 277
중앙동	김성남	'41. 1. 15	서정동 313-2
	이기택	'49. 5. 10	서정동 260
서정동	윤환수	'59. 2. 18	서정동 13 주공A 204-103
	이규천	'49. 2. 19	서정동 852-4
송탄동	한덕수	'35. 9. 21	칠괴동 445
도원동	박학순	'47. 5. 6	칠원동 91
지산동	이병주	'39. 4. 2	지산동 690
송북동	이의상	'43. 10. 23	지산동 753-11
	김창수	'41. 9. 5	독곡동 464 라이프A 2-902
신장1동	오승수	'36. 6. 7	신장1동 320-40
신장2동	한일우	'42. 9. 9	신장2동 274-45
신평동	최학수	'47. 11. 9	합정동 99-3 청송A 나-107
	김남옥	'50. 7. 7	합정동 730-2
원평동	전용식	'31. 10. 18	통북동 144-8
통북동	노승관	'47. 7. 8	통북동 27
비전1동	이상만	'35. 1. 25	동삭동 67
비전2동	이근표	'41. 9. 16	비전동 813 럭키덕동A 108-601
	장석근	'60. 4. 24	비전동 272-34 외기노조A 바-103
세교동	이영기	'39. 5. 15	세교동 432-25

■ 3대 시 의원

선거일 : '98. 6. 4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주소
팽성읍	배연서	'54. 6. 7	팽성읍 노양리 35-12
진위면	홍선의	'32. 8. 23	진위면 동천리 530
보컬선거	안광두	'52. 8. 15	진위면 봉남리 186
서탄면	이무전	'42. 5. 29	서탄면 내천리 289
재선거	송준섭	'52. 11. 6	서탄면 금암리 244
고덕면	김현승	'57. 11. 1	고덕면 궁리 89
오성면	정의화	'43. 3. 13	오성면 숙성리 137
청북면	용갑중	'55. 8. 19	청북면 현곡리 299-4
포승면	한만수	'49. 5. 2	포승면 내기리 286
현덕면	공명구	'43. 4. 23	현덕면 황산리 120
안중면	황종만	'43. 10. 30	안중면 안중리 277
중앙, 송탄동	황순오	'53. 6. 7	이충동 현대A 101-1404
서정동	이규천	'49. 2. 19	서정동 852-4
지산동	이병주	'39. 4. 2	지산동 690
송북동	이의상	'43. 10. 23	지산동 753-11
신장1동	이정우	'40. 11. 10	신장1동 406
신장2동	한일우	'42. 9. 9	신장2동 274-45
신평동	최학수	'47. 11. 9	합정동 99-3 청송연립 나-107
원평동	최종석	'55. 11. 12	군문동 274-4
통북동	노승관	'47. 7. 8	통북동 27
보컬선거	한장희	'42. 7. 17	통북동 96-1
비전1동	이영창	'46. 10. 28	죽백동 169
비전2동	정석근	'60. 4. 24	비전동 272-34 외기노조A 바-103
세교동	유해준	'52. 9. 3	동삭동 563

{ 통합전 평택군수



1대 장범교



2대 이종상



3대 유인상



4대 이기석



5대 이의중



6대 민병태



7대 이승렬



8대 이규복



9대 이민성



10대 윤자순



11대 홍순항



12대 한영수



13대 오건식



14대 김동순



15대 이용순



16대 이병달

통합전 평택군수



17대 윤석범



18대 이재창



19대 신동안



20대 이건우



21대 진희상



22대 최종구



23대 신태섭



24대 강도희



25대 이정구



26대 박창곤



27대 이영해



28대 윤봉수



29대 정세영



30대 유희두



31대 이무관



32대 김선기

{ 통합전 평택시장



1대 김태수



2대 조건호



3대 임석봉



4대 최종구



5대 이영해



6대 권호장



7대 이상윤

통합전 송탄시장 }
}



1대 김기형



2대 한세권



3대 고흥



4대 김용선



5대 이호선



6대 조건호



7대 최병호



8대 권호장



9대 홍성원



10대 박계민



11대 김관수

{ 통합후 평택시장



1대 이상운



2, 3대 김선기

역대 국회의원



제헌 최석화



2대 안재홍



3대 황경수



4대 정준수



5대 이병헌



6,9,10,11,12대 유치송



7대 이윤용



8대 최영희



9,10대 서상린



11,12,13,14대 이자현



13대 권달수



14대 김영광



15,16대 원유철



15대 허남훈



16대 정장선

{ 역대 도의원



1,2대 이윤용



1대 서태원



2대 방승학



3대 김용태



3대 전윤상



3,4,5대 이계석



3대 천낙범



3대 최병호



3대 유천형



3대 원유철



3대 한양석



3,4대 정태호



4대 김용현



4대 최흥석



4대 장기만



4,5대 정장선

역대 도의원 }



4대 유광



4대 권혁동



5대 허정



5대 장영남



5대 김홍규

{ 역대 교육위원



1대 김우룡



1,2대 김경배

역대 시의원(1대) }



방효원



조재득



권혁동



김영호



김현승



정의화



이춘재



유원목



공명구



황종만



김흥수



방효익



박종수



장필선



김학연



이남수

{ 역대 시의원(1대)



이영기



박영웅



한창수



송영철



김기호



이병주



이의상



오승수



한일우

역대 시의원(2대)



곽노선



배연서



최재성



송준섭



김현승



표태정



이익재



오태수



공명구



황종만



김성남



이기택



윤한수



이규천



한덕수



박학순

{ 역대 시의원(2대)



이병주



이의상



김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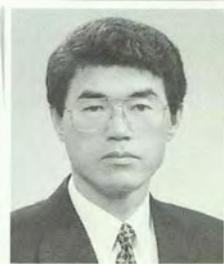
오승수



한일우



최학수



김남욱



전용식



노승관



이상만



이근표



장석근



이영기

역대 시의원(3대)



배연서



홍선의



안광두



이무전



송준섭



김현승



정의화



용갑중



한만수



공명구



황종만



황순오



이규천



이병주



이의상



이정우

{ 역대 시의원(3대)



한일우



최학수



최종석



노승관



한장희



이영창



장석근



유해준

2장 문화유적목록

平澤



여 백

문화유적 목록*

명칭	위치	시대	내용	좌표	문화재지정사항
서정리역 西井里驛	서정동	일제강점기 (1905)	경부선 개통과 함께 개설	37° 03' 16" 127° 03' 20"	
지장사지 地藏寺址	서정동	고려	임진왜란·한국전쟁으로 소실	37° 04' 13" 127° 03' 47"	
이헌방묘 李憲邦墓	장당동 산30	조선 (1540)	정종의 증손, 기묘사화로 낙향	37° 02' 34" 127° 04' 18"	
칠괴동 유물산포지 七槐洞 遺物散布地	칠괴동	조선	민묘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유구가 파괴되어 주변에 백자편이 다량 수습됨. 조선시대의 분묘유적으로 추정됨	37° 01' 24" 127° 05' 08"	
갈원사지[칠원동 사지] 葛院寺地[七院洞 寺址]	칠원동	조선	고려의 숭불정책으로 창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	37° 01' 19" 127° 06' 09"	
이혜주 선정비 李惠疇 善政碑	진위면 봉남리 167	조선 (1697)	진위현령 역임. 원래는 칠원동의 삼남대로변에 있었으나 1990년 현재 위치로 이전됨	37° 05' 44" 127° 05' 50"	
목양석 청덕선정비 睦養錫 淸德善政碑	진위면 봉 남리 167	조선 (1875)	진위현령 목양석의 선정비	37° 05' 44" 127° 05' 50"	

* 이 목록은 경기도 박물관편 『경기문화유적지도』, 1999 부록편에서 평택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였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추가하였음.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옥수정[옥관자정] 玉水井[玉冠子井]	칠원동 (칠원)	조선	매년 음력 10월 우물에 제사(정제)를 지냈다고 전함. 물맛이 뛰어나 우물에 벼슬의 호칭을 뜻하는 옥관자를 내렸다고 함	37° 01' 14" 127° 06' 10"	
이팔의 절터	칠원동 산재봉	조선	원칠원부락 산재봉 기슭에 절터가 있었다고 구전됨. 기와편, 자기편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을 찾기 힘들		
도일동 건물지 道日洞 建物址	도일동 (새골)	조선	각종 자기편, 토기편, 기와편들이 산재 현재 밭으로 경작되며 건물지로 추정됨	37° 03' 30" 127° 07' 01"	
수성최씨 묘역 隨城崔氏 墓域	도일동 (신촌)	일제강점기 (1934)	최진운(묘갈), 최형록(묘갈), 최경(묘갈) 등 6기의 묘소가 있음	37° 03' 24" 127° 06' 39"	
애마총 愛馬塚	도일동 산 82(신촌)	조선	전사한 원균의 유품을 그의 애마가 물고와 가족에게 죽음을 알렸다는 전설이 전함	37° 03' 07" 127° 06' 36"	
원균장군 묘 元均將軍 墓	도일동 산 82(신촌)	조선 (16세기)	경상도 수군통제사 역임. 정유재란 때 전사. 문인석, 무인석, 석등, 묘비	37° 03' 07" 127° 06' 35"	기념물 57
원균 사당 元均 祠堂	도일동 산 84(신촌)	조선	1604년 이순신·권율과 함께 선무공신 1등에 책록됨. 1992년 수리·개축,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제사	37° 03' 06" 127° 06' 28"	향토 유적 6
원주원씨 묘역1 原州元氏 墓域1	도일동 (신촌)	조선	원임(15세기, 청백리) 원준량(16세기 무관, 원균의 부친, 신도비)	37° 03' 17" 127° 06' 39"	
원균장군 元均將軍 생가터 生家[울음밭]	도일동 (암말)	조선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주변에서 자기, 토기편, 와편 등이 수습됨	37° 03' 20" 127° 06' 38"	
원주원씨 묘역2 原州元氏 墓域2	도일동 (안골)	조선	원몽, 원연(묘표), 원전(묘표) 원사립(묘표), 원길상(묘표)의 묘소	37° 03' 37" 127° 06' 51"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양세 충효정문 兩世 忠孝旌門	도일동 (안골)	조선 (1829~ 1894)	원연의 충절정려, 원사립의 충효정려, 원길상의 효자정 문이 모셔져 있음	37° 03' 17" 127° 06' 49"	
이성부 묘 李聖符 墓	도일동 (안골)	조선 (17세기)	무신, 만포진침절제사 역임. 이괄의 난 때 순절하여 병조 판서에 추증. 외가인 원주원씨 묘역 내에 묘소가 있다	37° 03' 37" 127° 06' 51"	
이성부 충절정문 李聖符 忠節旌門	도일동 (안골)	조선 (17세기)	시호는 충장. 금천의 민중사 에 제향됨. 목조기와 1동으 로 1평 남짓한 규모	37° 03' 34" 127° 07' 10"	
도일동 제철유적 道日洞 製鐵遺蹟	도일동 (안골)	조선	각종 철편, 철찌꺼기편, 노벽 편들이 무수히 깔려 있어 상 당한 규모의 제철작업이 이 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37° 03' 37" 127° 06' 40"	
도일동 사지[약천사] 道日洞 寺址[藥天寺]	도일동 173-2 (갈원골)	조선	옛 절터로 전해오던 곳에 현 재 약천사를 창건하였다. 절 터의 규모는 2,300평~2,400 평 정도임	37° 02' 56" 127° 07' 11"	
수성최씨 묘역 隨城崔氏 墓域	도일동	조선	최윤중, 최원호의 묘소	37° 02' 31" 127° 05' 15"	
가재동 유물산포지1 佳才洞 遺物散布地1	가재동 (방혜)	조선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 나, 자기편, 토기편, 와편 등 이 다량으로 산포	37° 02' 33" 127° 05' 31"	
가재동 유물산포지2 佳才洞 遺物散布地2	가재동 (막곡)	조선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 나, 각종 자기편, 토기편, 와 편 등이 산포	37° 02' 33" 127° 05' 31"	
가재동 유물산포지3 佳才洞 遺物散布地3	가재동 (방혜)	조선 (16세기)	백자 저부편, 분청사기편 등 이 산포	37° 02' 13" 127° 05' 13"	
오재공 사우 悟齋公 祠宇	장안동	일제강점기 (1940)	오재공 이당의 사당. 1960년 에 개축, 1993년 증축하여 원 래의 모습을 거의 잃은 상태	37° 02' 21" 127° 05' 29"	
이용손 시혜비 李容孫 施惠碑	장안동		1939년 흉년이 들자 마을 주 민들에게 기갈을 면하게 도 와주어 주민들이 은덕을 갚 고자 세움	37° 02' 29" 127° 05' 29"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장안동 빈대바위 절터 장안동 미륵바위 長安洞 彌勒	장안동	조선	미륵불상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되어 왔음. 주변에는 조선시대의 기와편, 백자편, 토기편 등이 산포	37° 03' 57" 127° 04' 53"	
차원부 묘 車原頴 墓	장안동 월운산	조선 (1398)	연안차씨 문절공파의 시조. 고려 두문동 72인의 한사람. 1398년 이방원의 명으로 피살. 주변에 최근에 지은 사당이 있음	37° 03' 15" 127° 05' 13"	
장안동 유물산포지 長安洞 遺物散布地	장안동	조선	다량의 자기편, 토기편, 와편 산포. 최근의 지형 변경으로 유구가 파괴된 것으로 보임	37° 03' 13" 127° 05' 11"	
동령리 성터	이충동 동령마을	삼국 고려	송강현의 치소로 읍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충의각 忠義閣	이충동 산37-1	조선 (1800)	조광조·오달제 유허비. 1976년 비각 건립	37° 03' 24" 127° 04' 28"	향토 유적 5
광산김씨 묘역 光山金氏 墓域	지산동 (소골)	조선	소골마을에 정착한 광산김씨 문중의 묘역. 김세한(충청도 병마절도사 역임), 김광성, 김구의 묘	37° 04' 26" 127° 04' 16"	
수성최씨 묘역 隋城崔氏 墓域	지산동 (소골)	조선 (15세기)	최유림, 최윤선 등 수성최씨 묘소	37° 04' 19" 127° 04' 59"	
광주이씨 묘역 光州李氏 墓域	지산동 (동막)	조선	이수함 등 3기의 묘소, 묘갈 등은 모두 근래에 세운 것이며, 문인석은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37° 04' 24" 127° 05' 33"	
절골 사지	지산동 (소골)	조선	옛날에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함. 현재 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건축부채로 보이는 돌들이 지표에 드러나 있음	37° 04' 04" 127° 05' 00"	
진주소씨 묘역 晉州蘇氏 墓域	지산동 (소골)	조선	소순, 소이, 소응사, 소경원, 소흡의 묘소	37° 04' 13" 127° 05' 03"	
수성군 사당 隋城君 祠堂	독곡동 산53	조선 (15세기)	조선 세조 때에 무관이었던 최유림을 모신 사당. 1983년 신축	37° 05' 02" 127° 04' 04"	향토 유적 4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최희효 묘·묘갈 崔希孝 墓·墓碣	독곡동 산53	조선 (1589)	명종조의 무관. 문장과 덕행으로 이름이 있 었음. 묘갈, 문인석	37° 05' 02" 127° 04' 05"	
양성이씨 묘역 陽城李氏 墓域	비전동 덕동산	조선	이귀손, 이연(묘표), 이말봉 (묘표, 문인석), 이수춘(묘 표), 이순중, 이실(묘표), 이 윤의(동지중추부사)	36° 59' 44" 127° 06' 00" 36° 59' 43" 127° 06' 09"	
현충탑 顯忠塔	비전동 산84	조선	이귀손, 이련, 이말봉, 이수 춘, 이순중, 이실, 이윤의를 기리기 위함	36° 59' 39" 127° 06' 03"	
두리봉성터	동삭동 원동삭	고려 (추정)	옛 영신현의 방어 목적으로 세운 영신고성으로 퇴폐식 토성으로 추정됨		
지제동 유적1 芝制洞 遺蹟1	지제동	청동기	청동기 시대의 구순각목토 기, 공열토기,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및 마제 석축 출토. 도로건설로 파괴됨	37° 01' 14" 127° 03' 31"	
지제동 유적2 芝制洞 遺蹟2	지제동 (건너말)	청동기· 조선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와편 수습	37° 00' 57" 127° 03' 58"	
태미산성	지제동 울성마을	삼국~ 고려	토성을 쌓고 왜군과 전투를 했다고 전해짐		
대동법 시행 기념비 大同法 施行 紀念碑	소사동 140	조선 (1659)	金墉이 대동법 시행하여 균 역하게 한 공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세움. 동쪽 약 50m 지점에서 1970 년 이전	36° 59' 00" 127° 07' 33"	유형 문화재 40
성공회 성요한 교회	팽성읍 객사리	일제강점기 (1936)	바실리카 양식의 평면에 한 식목조 건축으로 지은, 초기 교회건축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36° 57' 42" 127° 03' 46"	
망한사지[자비사] 望漢寺址[慈悲寺]	팽성읍 객사리 75	조선	중국의 고승 명장이 고향이 바라보이는 곳에 지은 절이 라고 전함. 망한사 폐사 이후 한망사로 했다가 자비사로 부르게 되 었다고 함	36° 57' 46" 127° 04' 07"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망한사지 불두	팽성읍 객사리 75	조선	무량보전 뒤에 불상의 머리 부분으로 몸체를 찾지 못하 여 구체적인 형체를 알지 못 하나 머리 크기가 몸체보다 다소 큰 불상으로 생각됨	36° 57' 46" 127° 04' 07"	
팽성읍 객사 彭城邑 客舍	팽성읍 객사리 117	조선 (1760)	조선의 전형적인 객사 건물. 본래 작은 규모였던 것을 현 종 때 크게 중창하였으며 영 조와 순조 때 거듭 중수함	37° 57' 43" 127° 03' 55"	유형 문화재 137
평택향교 平澤鄕校	팽성읍 객사리 185	조선 (1413년 추정)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 지와 전적, 노비 등을 지급받 아 교관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침. 공자와 맹자 의 위패를 봉안	36° 57' 45" 127° 03' 29"	문화재 자료 4
남산리 사지(용화사) 南山里 寺址(龍華寺)	팽성읍 남산리 235-3	고려	용화사는 1950년대에 창건 되었으나, 이 터에 옛부터 절 이 있었다고 전함.	36° 57' 38" 127° 03' 20"	
남산리 사지 석조팔 각대좌/南山里 寺址 石造八角臺座	팽성읍 남산리 235-3	고려	금동불상, 향로 등이 출토 1.3m의 대형 대좌석, 용호전 내에 안치된 석불 입상의 대 좌였던 것으로 전함	36° 57' 38" 127° 03' 20"	
평택농악 전수회관 平澤農樂 傳受會館	팽성읍 평궁리 283-1		무형문화재 11-나호로 지정 된 평택농악을 전수하기 위 한 회관	36° 58' 07" 127° 05' 15"	
정담수 묘·묘표·묘갈 鄭瞻壽 墓·墓表·墓碣	팽성읍 근내리	조선 (1899)	송근수 찬, 이현직 서	36° 58' 16" 127° 03' 12"	
원정리 충효정문 院井里 忠孝旌門	팽성읍 원정리 88-7	조선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충신 방덕룡과 효자로 이름 높은 그의 손자 방일찬, 방이흠, 방시중의 충효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짐	36 58 18 127 02 33	
홍학사 비각(포의각) 洪學士 碑閣(褒義閣)	팽성읍 본정리 322	조선	병자호란시 척화파 3학사 중 의 하나인 홍익한의 위패를 모신 곳. 평택유도회에서 매년 3월 31 일에 제향을 드리고 있음	36° 56' 30" 127° 00' 32"	문화재 자료 5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홍익한 묘·묘갈 1·묘갈 2·묘표 洪翼漢 墓·墓碣 1·墓碣 2·墓表	팽성읍 본정리 322	조선 (1831)	인조 때 척화론을 주장하다 의절한 3학사의 하나. 신도비(이의현 찬), 묘갈 (1689), 묘갈 2(1831)	36° 56' 29" 127° 00' 32"	
장우 묘·신도비 張羽 墓·神道碑	팽성읍 노양리	조선		36° 56' 14" 127° 00' 05"	
석근리 유물산포지 石斤里 遺物散布地	팽성읍 석근리	청동기	무문토기, 석부, 미완성 석제 품 출토. 주변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 들도 분포하는 것으로 미루 어 청동기시대부터 오랜 기 간 동안 생활터전이 되었던 곳으로 보임	36° 56' 22" 127° 03' 17"	
장준·장현근 효 자정문 張濬·張顯根 孝 子旌門	팽성읍 석근리 8	조선 (18세기)	효행이 뛰어났던 장준·장현 근 부자의 정문	36° 56' 14" 127° 03' 22"	
이효숙 묘 李孝叔 墓	팽성읍 대사리			36° 56' 26" 127° 03' 59"	
농성 農城	팽성읍 안정리 산41-5	조선	구룡의 경사부를 이용하여 축성한 토축의 평지성. 둘레 약 305m, 성내 넓이 약 14,900m 타원형의 평지 토 축성	36° 57' 45" 127° 02' 49"	기념물 74
대추리 곤주머리 유물산포지 大秋 里 遺物散布地	팽성읍 대추리	백제	무문토기와 적갈색 연질, 회 청색 경질의 타날문토기 산 포지	36° 58' 01" 127° 01' 04"	
봉남리 산성 鳳南里 山城	진위면 봉남리	삼국	북벽부를 제외한 동벽·서 벽·남벽은 형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거나 거의 멸실됨. 북 1, 2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 는 토루의 일부가 확인됨	37° 06' 25" 127° 05' 41"	
봉남리 아곡마을 산성 鳳南里 山城	진위면 봉남리	조선	둘레 약 180m, 외벽의 높이 는 1.5~2.2m 가량임. 남북 방향으로 긴 타원형의 퇴회 식 석축성	37° 06' 09" 127° 05' 45"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봉남리사지	진위면 봉남리 산261-1	통일신라 ~고려	빈대가 많아 절을 헐어버렸 다 전해 옴. 주먹토끼, 자르 개, 박편석기와 수막새 내림 새 등등이 발견됨		
청송심씨 묘역 靑松沈氏 墓域	진위면 봉남리	조선	심순택(신도비, 영의정 역임) 외	37° 05' 52" 127° 05' 41"	
심의보 가옥	진위면 봉남리 (동부)	조선 (1880년대)	경기도 지역의 전형적인 ㄱ 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가 튼 ㄷ자형 배치. 一자형 별채가 있었으나 무너지고 초석만 남아있는 상태	37° 05' 50" 127° 05' 43"	
진위현 관아터	진위면 봉남리 (진위초교)	조선	조선시대 진위현의 치소로 관아, 객사 등이 존재했으며 기단석, 주초석, 기와편 등이 산포함		
봉남리 선정비군 鳳南里 善政碑群	진위면 봉남리 167	조선	봉남리의 현령·선정비·공 덕비·애민비 등을 한데 모 아 진위향교 앞에 보존	37° 05' 44" 127° 05' 50"	
진위향교 振威鄉校	진위면 봉남리 167	조선	조선 초기에 건립된 교육기 관으로 중기에는 사림파들의 교류처이기도 함. 본래의 건 물은 병자호란 때 소실됨	37° 05' 47" 127° 05' 49"	
진위향교 대성전 振威鄉校 大成殿	진위면 봉남리 167	조선	조선 후기 건축양식이며 정 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맞 지붕. 규모는 18칸. 공자를 주향으로 하여 5성위를 모심	37° 05' 47" 127° 05' 49"	문화재 자료 40
진위현 옥터	진위면 봉남리 158	조선	병자호란 때 담의 태반이 무 너지서 1697년 감영에 보고 하여 대략 보수하여 완성했 는데, 1843년에는 폐기된 것 으로 기록되었다. 조선시대 기와편이 산재함		
불당골 사지 佛堂 寺址	진위면 마산리 (불당골)	조선	절터가 있었다고 전하며 건 물터로 다듬은 흔적은 보이 나, 현재 기와편이나 주춧돌 은 보이지 않음	37° 05' 00" 127° 06' 20"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숲안말 사지	진위면 마산리 (숲안말)	조선	다학산과 매봉 사이의 능선에 존재하는 데 절골이라 부르며 기와편이 많이 나오고 있음		
경주이씨 묘역 慶州李氏 墓域	진위면 마산리 (수촌)	조선	이성무(묘갈, 이항복의 증조부) 외	37° 04' 58" 127° 05' 31"	
단양우씨 묘역 丹陽禹氏 墓域	진위면 마산리 (안말)	조선 (15세기)	우원유(청백리) 외	37° 04' 56" 127° 05' 42"	
정도전 제단비 鄭道傳 祭壇碑	진위면 은산2리	조선	정봉시 찬, 정재훈 서	37° 04' 30" 127° 07' 22"	
정도전선생 사당 鄭道傳先生 祠堂	진위면 은산2리 189	조선	조선왕조 개국 후 개국 1등 공신으로 정권과 병권을 겸대. 시호는 문헌(文獻)으로 사당 명칭은 시호를 따라서 문헌사라고도 함	37° 04' 38" 127° 07' 22"	향토 유적 2
은산리 유물산포지1 銀山里 遺物散布地1	진위면 은산4리	조선	지표 상에 각종 자기편과 토기편들이 다량 산포.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고려·조선시대의 무덤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37° 05' 06" 127° 06' 55"	
은산리 유물산포지2 銀山里 遺物散布地2	진위면 은산3리	조선	지표상에 각종 자기편과 토기편들이 다량 산포.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음	37° 05' 15" 127° 06' 52"	
은산리 유물산포지3 銀山里 遺物散布地3	진위면 은산3리	조선	지표상에 각종 자기편과 토기편들이 다량 산포	37° 04' 46" 127° 07' 17"	
은산리 유물산포지4 銀山里 遺物散布地4	진위면 은산1리	조선	지표상에 자기편과 토기편들이 다량 산포	37° 04' 40" 127° 07' 20"	
동천리 고분1 東泉里 古墳1	진위면 동천1리		고분 2기. 현재 잡목으로 덮여 있으나, 봉분은 비교적 잘 남아 있음. 도굴의 흔적이거나 유물은 보이지 않음	37° 06' 29" 127° 06' 42"	
동천리 고분2 東泉里 古墳2	진위면 동천2리		봉분의 일부가 파괴된 돌무덤 1기	37° 07' 38" 127° 06' 14"	
동천리 고분3 東泉里 古墳3	진위면 동천리		석실분 1기	37° 06' 25" 127° 05' 58"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사후동 사지 寺後洞 寺址	진위면 동천리	조선	남이 장군의 부인 함평이씨가 장군과 친정 아버지의 위패를 모시기 위하여 절을 지었다는 전설이 전함. 주변에 석재, 기와편, 백자편들이 산재	37° 07' 54" 127° 06' 52"	
동천리 건물지 東泉里 建物址	진위면 동천1리	조선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와편과 자기편들이 다량 산포되어 있음. 건물지로 추정	37° 06' 27" 127° 06' 43"	
만기사 萬奇寺	진위면 동천리 548	고려 (942)	남대사가 창건. 19세기 말 현 위치로 이전. 경내에 고려시대 철조석가야래좌상과 파괴된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음	37° 06' 19" 127° 06' 11"	
만기사 석탑재 萬奇寺 石塔材	진위면 동천리 548	고려	파손된 불상과 함께 현재 축대를 쌓는 돌로 사용되고 있음	37° 06' 19" 127° 06' 11"	
만기사 석등부재 萬奇寺 石燈部材	진위면 동천리 548	고려	석불상, 석탑재와 함께 현재 축대를 쌓는 돌로 사용되고 있음. 석등 또는 장명등의 부재	37° 06' 19" 127° 06' 11"	
만기사 부도부재	진위면 동천리 548	고려	현재 축대를 쌓은 돌로 8각 원당형 부도의 기단부 중대석과 짝잎연꽃 무늬로 8각의 중대석괴임이나 상대석 부재로 추정	37° 06' 19" 127° 06' 11"	
무봉산성 舞鳳山城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	조선	무봉산의 9부능선에 축조한 석축의 테뫼식 산성. 성벽의 둘레 약 320m의 장타원형의 평면형	37° 06' 48" 127° 06' 07"	
동천리 승주골 사지 東泉里 寺址	진위면 동천리 (승주골)	조선	주변에는 토기편, 기와편, 자기편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으며, 일부대지에는 석축의 흔적도 보임. 예전에 큰 절이 있었다고 전해 내려옴	37° 06' 54" 127° 06' 15"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이효순 효열녀비 李孝順 孝烈女碑	진위면 가곡리	일제강점기 (1940)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도 30여년간 시부모를 봉양하고, 5~6년간 병수발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시부모가 죽은 후에서 집상(執喪)을 정성껏 행함	37° 06′ 55″ 127° 04′ 29″	
권씨 종가	진위면 가곡리	일제강점기 (1910년경)	안동권씨 종가로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가 튼 ㄷ자형 배치 안채는 평사랑구조이며 사랑채는 무고주오랑임	37° 06′ 38″ 127° 05′ 30″	
고종태 가옥	진위면 가곡리 81	조선 (1890년대)	ㄷ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가 튼 ㄴ자형 배치. 구조는 대청, 방 모두 1고주오랑으로 납도리집임	37° 06′ 35″ 127° 05′ 26″	
안동권씨 묘역 安東權氏 墓域	진위면 가곡리 336-10		안동권씨 43인의 위패를 모심	37° 06′ 56″ 127° 04′ 47″	
이계조 묘 李啓朝 墓	진위면 가곡리 (신가곡)	조선	이조판서 역임. 묘역에는 최근에 세운 묘표가 있음	37° 06′ 36″ 127° 05′ 22″	
이정좌 묘·묘갈·신도비 李正佐 墓·墓碣·神道碑	진위면 가곡리 (신가곡)	조선	선공감부정 역임. 묘갈(1762, 윤동도 찬, 서지수 서), 신도비(1829, 이덕수 찬, 서명균 서)	37° 06′ 36″ 127° 05′ 22″	
이종윤 가옥	진위면 가곡리 52	일제강점기 (1930년)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가 튼 ㄷ자형 배치. 경기지역의 전형적인 ㄱ자형 집 평면의 6칸전퇴집	37° 06′ 39″ 127° 05′ 29″	
고병선 가옥	진위면 가곡리 249	일제강점기 (1928년)	안채는 1928년에, 사랑채는 1967년에 지음. 구조는 1고주오랑이며, 창고-외양간-대문간-방으로 구성됨	37° 06′ 39″ 127° 05′ 04″	
청호리 8각 석등	진위면 청호리	18세기	8각 원당형 석등 또는 팔모석등으로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장명등으로 추정됨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청호리 쌍사자석 등2	진위면 청호리	9세기 (추정)	사각의 지대석 57×57× 12cm 위에 두 마리의 쌍사 자가 8각의 화사석을 받치고 있는 쌍사자석등		
청호리 쌍사자석 등1	진위면 청호리	18세기	쌍사자석등으로 조선후기에 만들어 진 것으로 추정.		
청호리 7층 석탑	진위면 청호리	고려 (추정)	3층 기단 위에 세워진 화강 암 석재의 7층 석탑. 기단면석에 건달바를 음각으 로 새김		
견산리 산성(부성·성 산성) / 見山里 山城(釜 城·城山城)	진위면 견산4리 산6-1	삼국~ 고려	해발 40m 안팎의 능선을 따 라 축성한 토축의 평산성. 동 서방향으로 긴 장방형	37° 06′ 22″ 127° 04′ 35″	
견산리 유적1 見山里 遺蹟1	진위면 견산리 진위사 주변	청동기	견산리 산성과 견산리 1보루 성이 연결된 능선상에 위치 하는 경작지 일대에서 무문 토기편 수습	37° 06′ 18″ 127° 05′ 15″	
견산리 유적2 見山里 遺蹟2	진위면 견산리 견산리산성	청동기~ 조선	견산리 산성 남사면의 발 일 대에서 무문토기편과 조선시 대 백자편을 다량으로 수습	37° 06′ 20″ 127° 04′ 41″	
한온장군 충신정문 韓蘊將軍 忠臣旌門	서탄면 금암리	조선	을묘왜변 당시 전라도 장흥 부사로 달랑포구에서 전사한 한온 장군의 애국충절을 기 리기 위함. 시호는 충의(忠毅)	37° 06′ 25″ 127° 02′ 07″	향토 유적 3
금암리 고분 金岩里 古墳	서탄면 금암2리	조선	2기. 봉분의 크기는 각 높이 약 2m, 둘레 약 10m 가량. 도굴된 흔적은 없으나, 주변 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음	37° 06′ 39″ 127° 02′ 23″	
성불정사 입구 동 자상 成佛精寺 入口 童 子像	서탄면 사리 375	조선	불교와는 관련 없는 동자상 으로 추정되는데 높이가 약 85cm의 크기에 양 손을 가 슴 앞에 모아 홑같은 지물을 들고 있는 모습	37° 06′ 46″ 127° 02′ 27″	

명칭	위치	시대	내용	좌표	문화재지정사항
수월암리 지석묘 水月峇里 支石墓	서탄면 수월암1리	청동기	타원형의 개석으로, 약 2×2.5×0.6×0.7m의 크기. 하부 구조는 확인하기 어려움	37° 07' 13" 127° 02' 36"	
수월암리 고분 水月峇里 古墳	서탄면 수월암2리		높이 1m, 둘레 6m의 크기. 주변에서 유물은 보이지 않으며, 도굴 흔적도 없음	37° 06' 58" 127° 02' 31"	
수월암리 고분군 水月峇里 古墳群	서탄면 수월암2리		10여기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음. 잡목이 우거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나, 출토 유물은 없는 것으로 보임	37° 06' 49" 127° 02' 26"	
강창기 가옥	서탄면 수월암2리	일제강점기 (1900년대)	4대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며, 임좌방향으로 배치된 안채만 있음. 5칸 전퇴집	37° 07' 02" 127° 02' 00"	
내천리 지석묘 奈川里 支石墓	서탄면 내천리	청동기	개석은 편평한 타원형으로 길이 약 2.7m, 두께 약 50~60cm의 크기. 후대에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어 상면에 그림을 그려놓음	37° 07' 09" 127° 00' 34"	
한광수 가옥	서탄면 내천2리 220	조선 (1895)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가 튼 ㄱ자형 배치. 초석, 기단 모두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며, 각 기둥을 세움	37° 07' 09" 127° 00' 46"	
이우휘 가옥	서탄면 내천2리 261	일제강점기 (1905)년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로 구성. 구조는 1고주사량으로 각기둥과 원기둥을 섞어 사용	37° 07' 03" 127° 00' 40"	
이춘휘 가옥	서탄면 내천2리 263	조선 (1885년)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튼 ㄱ자형 배치. 안채는 7칸전퇴집에, 평사랑임	37° 07' 02" 127° 00' 41"	
조흥기 가옥	서탄면 내천2리 271	일제강점기 (1944)	안채는 ㄱ자형 평면의 5칸전퇴집으로 비교적 원형을 갖추고 있으며, 사랑채는 뒤집은 ㄴ자 모양으로 거의 허물어져 있음	37° 07' 10" 127° 00' 43"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이규창 가옥	서탄면 내천2리 274	일제강점기 (1930~40 년대)	一자형 안채와 ㄷ자형 사랑 채가 튼 ㄷ자형 배치. 안채는 겹집이며, 사랑채의 구조는 1고주사랑	37° 07' 10" 127° 00' 47"	
이수용 가옥	서탄면 내천2리 301	조선 (1878)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 채, 행랑채가 튼 ㄷ자형 배 치.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모두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 으로 보임	37° 07' 07" 127° 00' 46"	
최병익 가옥	서탄면 내천3리 313-1	조선 (1895년)	안채는 ㄱ자형 평면의 7칸전 퇴집. 구조는 2고주사랑집. 기단과 초석은 자연석을 사 용하였고, 원기둥과 각기둥 을 섞어 사용함	37° 07' 02" 127° 00' 43"	
이보경 가옥	서탄면 내천3리 353	일제강점기 (1934)	안채는 전형적인 6칸전퇴집 으로, 구조는 평사랑임. 사랑 채는 1고주사랑임	37° 07' 00" 127° 00' 41"	
마두리 고분군 馬頭里 古墳群	서탄면 마두1리	조선	고분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 로 보이나 현재는 과수원 경 작으로 대부분이 파괴됨. 주 변에서 다량의 백자편 수습	37° 06' 25" 127° 00' 58"	
의령남씨 묘역 宜寧南氏 墓域	고덕면 당현리	조선	남두징(묘갈)	37° 03' 42" 127° 07' 56"	
덕원군 묘	고덕면 당현리 산63-1	조선 (1489)	세조의 셋째 왕자(덕원군). 연산군때 무오사화가 일어나 자 진위로 낙향	37° 04' 07" 127° 02' 24"	
종덕재 宗德齋	고덕면 당현리 산63-1	조선 (18세기)	이서의 위패를 모신 곳. 건물 규모는 대지 500평, 세실 25 평 가량. 매년 음력 7월 22일 에 제를 올림	37° 04' 01" 127° 02' 18"	
당현리 고분 堂峴里 古墳	고덕면 당현1리 원당현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1기. 주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음	37 03 39 127 01 45	
당현리 유물산포지 堂峴里 遺物散布地	고덕면 당현1리 원당현	조선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자기편, 토기편 등이 다 량 산포	37° 03' 40" 127° 01' 48"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안재홍 생가 安在鴻 生家	고덕면 두 릉리 646	조선	독립운동가·언론인·사학 자·정치인	37° 03' 16" 127° 01' 16"	기념물 135
함홍식 가옥	고덕면 두 릉리 649	일제강점기 (1913)	ㄱ자형 안채만 남아있음. 가 구구조는 1고주오량, 납도리 집. 초석은 다듬은 방향 초석 을 사용. 비교적 원형을 잘 갖추고 있음	37° 03' 17" 127° 01' 19"	
해창리 고분 海倉里 古墳	고덕면 해창6리 능말		일부 훼손되었으나 형태는 잘 보존된 편으로 현재 잡목 에 덮혀 있음. 주변에서 유물 은 보이지 않음	37° 01' 51" 127° 01' 42"	
방축리 유물산포지 防築里 遺物散布地	고덕면 방축 리 산153-1	청동기	화살촉, 칼, 청동유물 등 수 습	37° 01' 13" 127° 03' 20"	
방축리 사지[서천사] 防築里 寺址	고덕면 방축2리	고려	종단기록에 의하면 고려 공 민왕때(1352년) 나옹대사가 창건하였다 함	37° 00' 46" 127° 02' 47"	
표관수 우물	오성면 숙성리	조선	표관수씨 집 앞에 위치. 200 년이 넘는 우물로 전함. 시멘 트로 포장해 놓았으나, 내부 에는 옛날 우물의 구조가 그 대로 남아 있음	37° 00' 21" 126° 59' 07"	
유전개 가옥	오성면 숙성5리 147	일제강점기 (1905)	안채로만 이루어진 외채집으 로 ㄱ자형 평면에 6칸전퇴집 임. 구조는 평사량이며, 기단 과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	37° 00' 19" 126° 59' 02"	
안화리 유적 安花里 遺蹟	오성면 인 화리 청북 면 토진리	청동기	진위천에 합류하는 관리천 주변 의 논 주변에서 청동기시대 무 문토기가 출토되었으나, 현재 경지정리와 수로 공사로 인하여 유적이 훼손된 것으로 보임	37° 01' 30" 126° 58' 55"	
양교리 유물산포지 梁橋里 遺物散布地	오성면 양교5리 산30	청동기	간돌검 등 수습	37° 01' 24" 126° 57' 51"	
양교리 유적 梁橋里 遺蹟	오성면 양 교리 여수, 오봉산	구석기	제4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 으며 규암질의 격지석기 1점 이 수습됨	37° 01' 27" 126° 57' 44"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이대성 가옥	오성면 양교4리 605	일제강점기 (1900년대)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 채가 튼 ㄷ자형 배치. 안채는 1고주사랑구조이며, 사랑채 는 삼량임. 지을 당시의 모습 이 잘 남아 있음	37° 01' 05" 126° 58' 08"	
구범서 가옥	오성면 양교6리	일제강점기 (1917)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 겸 문간채로 구성. 안채는 경 기도 지역의 전형적인 ㄱ자 형으로 7칸전퇴집임. 지을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음	37° 01' 12" 126° 57' 36"	
양교리 가옥	오성면 양교6리	일제강점기 (1930년대)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 채로 구성. 안채는 6칸전퇴 집으로 평사랑이며, 사랑채 는 삼량임. 현재는 폐가로 방 치되어 있음	37° 01' 10" 126° 57' 39"	
환상호 가옥	오성면 양교6리 697	일제강점기 (1930년대)	ㄱ자형 안채만 있는 외채집. 당초에는 5칸전퇴집인데, 개 조가 심하게 이루어진 편임 평면은 ㄱ자형이며, 6칸전퇴 집이었던 안채는 원형이 거 의 남아있지 않음. 사랑채는 ㄱ자형 평면임	37° 01' 11" 126° 57' 35"	
구영희 가옥	오성면 양교6리 794	일제강점기 (1930년대)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 채가 튼 ㄷ자형 배치. 안채는 평사랑으로 보이며, 사랑채 는 삼량이다	37° 01' 11" 126° 57' 37"	
구홍서 가옥	오성면 양교6리 794	일제강점기 (1940년대)	현재 ㄱ자형 안채와 ㄷ자형 사랑채로 구성. 안채와 사랑 채는 모두 원형을 잃은 상태	37° 01' 11" 126° 57' 38"	
한씨 가옥	오성면 양교6리 794	일제강점기 (1926년)	안채는 5칸전퇴집으로 보이 며, 사랑채는 본래 一자형 평 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37° 01' 11" 126° 57' 36"	
윤정순 가옥	오성면 죽4리 605	일제강점기 (1938년) (안채)	안채와 사랑채가 튼 ㄷ자형 으로 배치. 안채는 7칸전퇴 집이며 방부분이 1고주사랑, 대청은 무고주평사랑 구조임	37° 00' 23" 126° 58' 00"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김대현 가옥	오성면 죽5리 76	일제강점기 (1940년대)	원래는 전형적인 ㄱ자형 평면의 7칸전퇴집이었으나, 현재는 원형을 찾기 어려움. 자연석 초석 위에 각기둥을 세움	37° 00' 23" 126° 57' 50"	
현곡리 유물산포지 玄谷里 遺物散布地	청북면 현곡1리 (원현곡)	조선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각종 자기편, 토기편 산포	37° 02' 41" 126° 56' 31"	
현곡리 고분 玄谷里 古墳	청북면 현곡3리	조선	상당한 규모의 봉분을 가진 무덤 2기. 주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음	37° 02' 40" 126° 55' 44"	
현곡리 건물지 玄谷里 建物址	청북면 현곡3리 (아랫광승)	조선	지표상에서 다량의 와편, 토기편이 산포하며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건물지로 추정	37° 02' 54" 126° 56' 46"	
삼계리 유물산포지 三溪里 遺物散布地	청북면 삼계4리	삼국~ 조선	삼국시대의 회백색 연질토기편, 조선시대 자기편들 수습	37° 02' 47" 126° 54' 44"	
고령신씨 사당 高靈申氏 祠堂	청북면 고잔리 905	조선	신숙주·신항·신의 등 삼위를 모신 곳. 대지 380평, 재실 25평의 규모	37° 02' 41" 126° 54' 44"	
신숙주 영정 및 감실주독	청북면 고잔리 905	조선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성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신숙주의 영정과 신위를 모심. 고령신씨 사당 내에 있음	37° 02' 41" 126° 53' 45"	향토 유적 8
김만근 묘·묘표 金萬謹 墓·墓表	청북면 옥길리	조선	승문원 정자와 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고 후에 홍문관 응교에 추증. 묘소에는 상석과 망주석, 1817년에 세운 묘표(김상휴 표, 유한지 서)	37° 01' 13" 126° 54' 52"	
김무택 묘·묘표 金茂澤 墓·墓表	청북면 옥길리	조선	한성부 판관 역임 후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 묘역에는 상석과 향로석, 1817년에 세운 묘표(김상휴 표, 유한지 서)	37° 01' 11" 126° 54' 50"	
김진륜 묘·묘표 金鎭崙 墓·墓表	청북면 옥길리	조선	이조참의에 추증. 묘소에는 상석과 1817년에 세운 묘표(김상휴 표, 유한지 서) 있음	37° 01' 16" 126° 54' 33"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무성산성 武城山城	청북면 옥길리 산120-2	삼국~ 고려	무성산의 9부능선에 축조한 토축의 테피식 산성. 전체둘레 547m가량. 평면은 남북이 긴 장타원형에 서쪽이 돌출된 ㄱ자 형태. 산성내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 출토	37° 01' 30" 126° 55' 34"	
후사리 사지 後寺里 寺址	청북면 후사리 (원후사동)	조선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전하며 주변에서 백자편, 기와편 등이 산재	37° 01' 09" 126° 55' 51"	
서흥수 가옥	청북면 토진리 396	일제강점기 (1900년대)	겹집인 안채 맞은편에 사랑채가 2자로 배치. 안채의 구조는 1고주오량이며, 사랑채는 삼량으로 안채보다 뒤에 지어짐	37° 01' 57" 126° 57' 43"	
백봉리 산성 栢峰里 山城	청북면 백봉리 (원백봉)	백제	토축의 테피식 산성. 둘레 220m가량. 성벽 높이 3~5m내외로 평면은 동서가 약간 긴 장타원형임	37° 01' 55" 126° 59' 34"	
백봉리 유적1 栢峰里 遺蹟1	청북면 백봉리	청동기· 백제	백봉산의 서남쪽 능선에서 소량의 무문토기편과 백제토기편 수습	37° 01' 53" 126° 59' 33"	
백봉리 유적2 栢峰里 遺蹟2	청북면 백봉리	청동기	최근 묘지 조성으로 구릉 단면이 노출되었으며, 노출된 층에서 무문토기편과 백제토기편이 수습	37° 01' 44" 126° 59' 22"	
오학린 효자비 吳學麟 孝子碑	청북면 어소리	조선 (1903)	수북면(너터리 장터)에 비석을 세움. 1942년 비각을 현 위치로 이전	37° 02' 27" 129° 57' 40"	
고렘리 유물산포지 古念里 遺物散布地	청북면 고렘리	조선	주변에서 조선시대 토기편, 백자편 및 소량의 와편 수습	37° 02' 46" 126° 55' 09"	
덕적사지[덕지사] 德積寺址[德智寺]	청북면 고렘3리 산1	조선 (1613)	광해군때 선지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함. 석등부재, 기타 석재들이 남아 있음	37° 03' 28" 126° 56' 15"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점사항
덕적사지 석등부재 德積寺址 石燈部材	청북면 고령3리 산1	조선 (1613)	석등하대석으로 넓은 방향의 지대석위에 8개의 연꽃꽃잎 무늬를 각면에 부조한 하대석 이 대응전의 터를 닦다가 출토 됨	37° 03' 28" 126° 56' 15"	
덕적사 부도부재	청북면 고령3리 산1	조선	석종형 부도로 탑신과 옥개석 이 남았는데 탑신은 구형으로 상하단을 약간씩 절단함	37° 03' 28" 126° 56' 15"	
최성익 효자정문 崔聖益 孝子旌門	포승면 도곡리 산36	조선 (19세기)	고종 때 효자문이 세워짐. 1955년경에 현재의 정각을 세 웠는데 건물 규모는 대지 10 평, 건평 4평에 한식와가임	36° 59' 05" 126° 52' 07"	
원정리 봉수대 [괴대봉 봉수] 遠井里 烽燧臺 [槐臺峰 烽燧]	포승면 원정리 109-45	조선	정상부에 약 2m 높이의 방형 석축으로 된 500여평의 평지 가 남아 있음. 조선시대 제 5로의 직봉	37° 59' 56" 126° 48' 58"	향토 유적 1
원정리 유적 遠井里 遺蹟	포승면 원정리 산 109-430	구석기~ 청동기	구석기시대의 석영제 밀개, 굽 개, 톱니날 등 석기 출토 신석 기시대의 조개더미와 야외노 지 및 빗살무늬토기, 석착, 석 도 등의 석기 출토 청동기시 대의 무문토기편과 석부, 석 축, 돌낫, 숫돌 등이 출토	36° 59' 32" 126° 47' 34"	향토 유적 7
원정리 괴대봉 봉 수 패총 遠井里 槐臺峰 烽 燧 貝塚	포승면 원정리 (봉화재)	원삼국~ 삼국	적갈색·회백색·회흑색의 연 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현재 도로개설로 대부분이 파 괴되어 패총의 흔적은 일부에 만 남아 있음	36° 59' 58" 126° 48' 57"	
수도사 修道寺	포승면 원정리 산83	통일신라 (852)	염거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설 이 있으나 확실치 않음. 임진 왜란과 1911년 소실. 60년대에 원래 자리에서 남쪽으로 100m 가량 자리를 옮긴 것	37° 00' 06" 126° 48' 59"	
수도사지 부도 修道寺址 浮屠	포승면 원정리 산 83	조선	기단, 탑신, 옥개석으로 구성 되며 수도사지에서 현재 수도 사로 옮겨짐	37° 00' 06" 126° 48' 59"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희곡리 유적 希谷里 遺蹟	포승면 희곡리	구석기	제4기 갱신세층과 짝개, 밀개, 여러면석기, 굽개 등 맨석기 수습	36° 58' 01" 126° 52' 24"	
이대원 장군 묘 · 신도비 李大源將軍 墓 · 神道碑	포승면 희곡리 산83-6	조선 (1587 · 1699)	조선 중기의 무신. 임진왜란직전 왜구와 전투에서 전사(남구만 찬, 조상우 서)	36° 57' 58" 126° 52' 35"	기념물 56
이대원 사당 李大源 祠堂	포승면 희곡리 산83-5	조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고향에 충신정문이 세워지고 홍양의 확충사에 제향됨. 본래 내기리에 있었던 것을 1978년 현 위치로 옮김	36° 57' 58" 126° 52' 35"	기념물 56
유병헌 가옥	포승면 신영3리 233	일제강점기 (1930년대)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었으며, 개조가 많이 이루어짐. 안채는 ㄱ자형 평면에 7칸전퇴집이며 평사랑임	36° 57' 02" 126° 53' 07"	
유병헌 동생 가옥	포승면 신영3리 233	일제강점기 (1940년대)	안채만 있는 외채집으로 겹집이다. 구조는 오랑이며 규모에 비하여 부채는 상당히 굵은 편이다	36° 57' 02" 126° 53' 07"	
홍성민 가옥	포승면 신영3리 293	일제강점기 (1940년대)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一자형 대문채가 튼 모자형 배치. 안채는 5칸전퇴집임.	37° 57' 04" 126° 53' 01"	
이용현 가옥	포승면 방림1리 149	일제강점기 (1934)	안채와 전후퇴집. 집안 목수인 이준서가 지었다고 함. 안채, 사랑채는 변형이 심한 편임	37° 58' 34" 126° 53' 24"	
이의현 가옥	포승면 방림1리 149	일제강점기 (1934)	안채가 7칸전퇴집에 평사랑 구조. 사랑채 전면에 퇴칸을 둠	36° 58' 34" 126° 53' 23"	
이계선 가옥	포승면 방림1리 151	조선 (1880년대)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ㄱ자형 평면이다. 안채는 7칸전퇴집	36° 58' 31" 126° 53' 25"	
이남현 가옥	포승면 방림1리 151	일제강점기 (1918)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었으며 ㄱ자형 평면임. 안채는 7칸전퇴집에 1고주평사랑, 사랑채는 1고주사랑구조	36° 58' 33" 126° 53' 25"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이삼헌 가옥	포승면 방림3리	조선 (1800년대)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와 행랑채가 튼 ㄱ자형으로 배 치. 전반적으로 변형이 심하게 이루어짐	36° 58' 03" 126° 53' 20"	
박준환 가옥	포승면 방림4리	일제강점기 (1926)	안채만 있는 외채집. 6칸전퇴 집으로 평사랑 구조에 각기둥 에 납도리, 자연석 초석을 썼 음	36° 57' 39" 126° 53' 47"	
박재구 가옥	포승면 방림4리 620	조선 (1890년대)	안채는 ㄱ자형 평면으로 5칸 전퇴집. 사랑채는 안채 전면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철거됨	36° 57' 38" 126° 53' 41"	
박인환 가옥	포승면 방림4리 623	일제강점기 (1924)	안채는 6칸전퇴집으로 구조는 평사랑. 기단과 초석 모두 자연석을 이용	36° 57' 40" 126° 53' 39"	
박경환 가옥	포승면 방림4리	조선 (1890년대)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로 이루어졌으며, 안채는 6칸 전퇴집임 구조는 안채와 사랑채 모두 평 사랑구조임	36° 57' 39" 126° 53' 41"	
방림리 가옥	포승면 방림4리	일제강점기 (1940년대)	안채와 문간채로 이루어졌으 며, 二자로 배치.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임	36° 57' 38" 126° 53' 47"	
석정리 유적 石井里 遺蹟	포승면 석 정리 114-8 번지 일대	구석기	제 4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 으며 몸돌, 여러면석기 등을 수습	36° 59' 08" 126° 53' 38"	
석정리 장성 石井里 長城	포승면 석 정리·원 정리~안 중면 성해 리 일원	고려	현재 약 3.5km의 토루 외 나 머지 구간은 파괴로 인해 확인 되지 않음	36° 59' 28" 126° 54' 00"	
홍원리 유적 洪原里 遺蹟	포승면 홍원리	구석기	기반암 풍화토 위에 붉은 갈색 찰흙층이 발달 격지석기 수습. 규암질의 여러면 석기 1점이 수습됨	37° 01' 01" 126° 52' 47"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운정리 유적 雲井里 遺蹟	현덕면 운정리	구석기	규암질의 여러면석기 1점이 수습됨	36° 59' 01" 126° 54' 02"	
박재봉 가옥	현덕면 운정3리 45	일제강점기 (1934)	6칸전퇴집인 안채의 구조는 평사량이며,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다. 안마당에는 우물이 남아있고, 원래 초가였던 것을 개량한 것으로 보임	36° 57' 47" 126° 54' 04"	
정인묵 효자정문 鄭人默 孝子旌門	현덕면 황산1리 72	조선	부친이 돌아가신 후 18년 동 안이나 좋은 곳을 찾아 마침내 현 포승면 원정리 산 109-110 번지로 이장. 1992년 종중의 결의로 개수하여 오늘에 이룸	36° 57' 42" 126° 56' 11"	
이경혁 효자문 李景赫 孝子門	현덕면 덕목2리	조선	고종 22(1885)년 명정	36° 57' 30" 126° 56' 58"	
교동인씨 열녀정문 喬桐印氏 烈女旌門	현덕면 덕목5리	조선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 으로 노력. 숙부인의 관직이 내려짐	36° 56' 58" 126° 58' 14"	
심복사 深福寺	현덕면 덕목리 115	통일신라	아랫단에는 요사채 석주가 있 고 윗단에는 대적 광전이 위 치. 대적광전에 안치된 비로자 나불상으로 보아 통일신라시 대 절로 추정	36° 56' 51" 126° 58' 02"	
심복사 삼층석탑 深福寺 三層石塔	현덕면 덕목리 115	고려(?)	높이 약 3m. 마모상태와 석질 로 보아 1층 탑신과 2·3층 옥 개석만이 원래의 탑 부재인 것 으로 보임	36° 56' 51" 126° 58' 02"	
심복사 석인상 深福寺 石人像	현덕면 덕목리 115	조선	머리에는 관을 썼고, 이목구비 는 큼직하게 표현됨. 사찰과는 무관한 조각으로 보임	36° 56' 51" 126° 58' 02"	
심복사 부도부재	현덕면 덕목리 275	통일신라	심복사를 건설할 때 죽은 소를 기리기 위해 만든 부도라 전해옴	36° 56' 51" 126° 58' 02"	
성옥순 가옥	현덕면 덕목3리	일제강점기 (1926)	안채는 7칸전퇴집으로 전형적 인 ㄱ자형 평면과는 다소 차이 가 나는 평면형. 안채는 평사 량, 사랑채는 1고주사량. 비교 적 원형이 잘 남아있음.	36° 57' 00" 126° 57' 36"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덕목리 성지 德睦里 城址	현덕면 덕 목4리 647- 1번지일대 (원덕목)	삼국~ 고려	토축의 평지성으로, 약 60m의 거리를 두고 동성과 서성이 배 치됨. 서성의 잔존 길이 약 127m, 동성의 잔존길이 25m	36° 56' 49" 126° 57' 21" 36° 56' 49" 126° 57' 26"	
공형동 가옥	현덕면 덕목4리 723	일제강점기 (1923년)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 채가 튼 ㄹ자형 배치.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임	36° 56' 45" 126° 57' 30"	
공석노 가옥	현덕면 덕목4리 724	일제강점기 (1940년대)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 채로 구성되어 있으나, 안채 가 심하게 개조됨	36° 56' 46" 126° 57' 31"	
공기진 가옥	현덕면 덕목4리 724	일제강점기 (1945년)	안채와 사랑채가 이어진 튼 ㄹ자형 형태. 안채는 ㄱ자형 집임	36° 56' 46" 126° 57' 30"	
공남열 가옥	현덕면 덕목4리 725	일제강점기 (1930년대)	ㄱ자형 평면의 5칸전퇴집인 안채와 그 옆에 一자형 가건 물 창고가 배치. 구조는 평사 량이며, 상당히 개조가 진행 된 집임	36° 56' 45" 126° 57' 26"	
공해열 가옥	현덕면 덕목4리 725	일제강점기 (1920년대)	안채는 ㄱ자형 평면의 5칸전 퇴집. 구조는 평사량이며 각 기둥, 납도리를 사용함	36° 56' 45" 126° 57' 29"	
공재효 가옥	현덕면 덕목4리 754	일제강점기 (1937년)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 채가 튼 ㄹ자형 배치. 안채의 구조는 1고주오랑이 며, 사랑채는 평사량에 가 기둥을 썼다.	36° 56' 37" 126° 57' 36"	
광덕사지 光德寺址 [신왕리사지 新王里寺址]	현덕면 신왕2리	고려~ 조선	10세기 경에 창건되어 16~ 17세기 경에 폐사되었다고 전함. 백룡사지로 추정	36° 56' 21" 126° 58' 23"	
경주이씨 효열비 慶州李氏 孝烈碑	현덕면 신왕2리 185-2	조선	일찍 부모를 여의고 신왕리 방씨 가문으로 출가하여 부 모를 극진한 정성으로 봉양 하고 남편을 공경으로 섬김	36° 56' 09" 126° 58' 13"	
대안리 사지1 大安里 寺址1	현덕면 대안리 (소외)	조선	백자, 분청사기, 기와편 수습. 대안리 사지2와 관련된 유적 으로 추정됨	36° 56' 25" 126° 57' 21"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대안리 사지2 大安里 寺址2	현덕면 대안리 (소외)	조선	절이 있었다고 전함. 주춧돌 과 석재 등이 출토되었으며 기와편이 주변에 산재	36° 56' 23" 126° 57' 08"	
기산리 산성 岐山里 山城	현덕면 대안2리 (수산 옥녀봉)	백제	옥녀봉의 8부 능선에 축조한 토축의 테피식 산성. 둘레는 약 250m 가량으로 평면형태 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	36° 56' 24" 126° 56' 26"	
기산리 유적 岐山里 遺蹟	현덕면 대안2리 (수산 옥녀봉)	청동기	옥녀봉 남사면에서 청동기시 대의 무문토기편 수습	36° 56' 22" 126° 55' 37"	
김정한 효자비 金正翰 孝子碑	현덕면 장수리	조선 (1880)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고 종 17년 지방 유림들의 건의 에 의하여 나라에서 명정. 1975년 대지 15평, 건평 4평 의 목조 기와집으로 신축	36° 56' 18" 126° 54' 17"	
정덕봉·정술제 효자정문 鄭德鳳·鄭述制 孝子旌門	안중면 안중5리	조선 (1875)	영·정조 때의 정덕봉·정술 제 부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 해 세움. 현재의 정문은 1995년경 다 시 세운 것으로 벽돌기와로 3평의 규모	36° 59' 14" 126° 54' 17"	
정술선 효자정문 鄭述先 孝子旌門	안중면 안중5리	조선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3년간 의 시묘살이 등의 효행을 한 정술선을 기리기 위해 세움	36° 59' 14" 126° 56' 09"	
청주한씨 열녀정문 淸州韓氏 烈女旌門	안중면 안중5리	일제강점기 (1929)	정원규의 처로 남편을 살해 한 범인을 찾아 원수를 갚음	36° 59' 14" 126° 56' 09"	
전주이씨 묘역 全州李氏 墓域	안중면 학현리	조선	이건의(묘갈), 이영중(묘갈)	36° 59' 13" 126° 55' 07"	
김봉익 효자정문 金鳳翼 孝子旌門	안중면 학현3리 216-1	조선 (1669)	그의 효성이 조정에 알려져 포상으로 사헌부지평의 관직 이 내려지고, 효자정문이 세 워짐	36° 59' 28" 126° 54' 49"	
금곡리 유물산포지 金谷里 遺物散布地	안중면 금곡4리 안중면	조선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각종 자기편, 와편, 토기 편 등이 산포	36° 59' 40" 125° 56' 47"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높은 절터	금곡4리	조선	정토사가 있던 자리로 추정. 정토사는 100여년전에 창건 된 것으로 전함	36° 59' 32" 126° 56' 48"	
대반리 유적 大盤里 遺蹟	안중면 대반6리 (직산말)	구석기~ 청동기	제 4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 으며 여러면석기, 망치 등이 지표에서 수습. 청동기시대 의 무문토기편과 간돌도끼 수습	36° 58' 24" 126° 56' 44"	
용성리 유적 龍城里 遺蹟	안중면 용성리	구석기	규암질의 여러면석기 1점 수 습	37° 00' 16" 126° 57' 07"	
비파산성 琵琶山城	안중면 용성리 비파산	삼국~ 고려	성벽 전체 길이는 1,662m가 량 되는 삼태기 모양의 평산 성. 성내에서는 구석기시대 의 규암질 굽개 수습	37° 00' 43" 126° 56' 02"	
약사사 藥師寺	안중면 용성1리 378	통일신라 (842)	신라 문성왕대에 염거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함. 주변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는 법맥을 잇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37° 00' 20" 126° 56' 14"	
약사사 부도 藥師寺 浮屠	안중면 용성1리378	조선	높이 0.7m, 둘레 1.4m의 석 종형 부도	37° 00' 20" 126° 56' 14"	
용성리 성지 龍城里 城址	안중면 용성3리	삼국~ 고려	토축의 평지성. 전체길이는 449m가량이며, 평면은 북벽 이 약간 짧은 사다리꼴임. 현재 약 90m의 토루만이 잔 존. 토루 북쪽의 경작지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 수습	37° 00' 32" 126° 56' 42"	
용성리 강길마을 성지 龍城里 城址	안중면 용 성3리(강길)		용성리 상여집 주변에서 고 려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	37° 01' 01" 126° 56' 55"	
용성리 유물산포지 龍城里 遺物散布地	안중면 용성3리	고려	고려~조선시대 기와편 등 수습	37° 00' 34" 126° 56' 36"	
덕우리 고분군 德佑里 古墳群	안중면 덕우리	고려	현재 북벽과 개석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석곽분 2기와 도굴되어 구덩이만 남아 있 는 4기 존재. 현황은 알 수 없음	37° 00' 46" 126° 55' 59"	

명 칭	위 치	시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자미산성 慈美山城	안중면 덕우리 산2	삼국~ 고려	테피식의 석축산성. 평면은 도서가 약간 긴 장방형을 기 본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길 이가 582m 가량. 복원 외벽 높이는 4~5m로 추정	37° 00' 55" 126° 55' 55"	
박재만 효자비각 朴再蔓 孝子碑閣	안중면 덕우리 산54	조선 (1891)	인조~현종대에 효행과 학문 이 뛰어났던 박재만의 효자 비각. 1684년 효자각을 세웠 으나 폐허가 되자 1891년 현 위치에 목조기와로 1.3평의 효자각을 신축	37° 00' 31" 125° 55' 13"	
김현진 가옥	안중면 덕우리	일제강점기 (1916)	당시 3,000석을 하는 부농의 집으로 전체 49칸 규모. 현 재의 ㄱ자형 안채와 최근에 지은 一자형 사랑채로 이루 어짐	37° 00' 38" 126° 55' 39"	
김종학 가옥	안중면 덕우리 288	일제강점기 (1900년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 채로 이루어짐. 안채는 5칸 전퇴집에 평사량 구조이며, 다소 변형됨	37° 00' 30" 126° 55' 39"	
이씨 가옥	안중면 덕우리 290	일제강점기 (1918)	원래 김현진 가옥의 사랑채 였던 건물을 이전하여 안채 로 개조하여 사용. 안채는 7 칸전퇴집으로 1고주오량 구 조이며 안채 앞에 ㄴ자형 사 랑채가 있음	37° 00' 38" 126° 55' 42"	
덕우리 가옥	안중면 덕우리	일제강점기 (1930년대)	전형적인 5칸전퇴집. 구조는 평사량이며 빈집이어서 퇴락 한 상태이나 옛모습이 제법 남아 있음	37° 00' 29" 126° 55' 39"	
송담리 유적 松潭里 遺蹟	안중면 송담리	구석기	제 4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 으며 규암질의 굵개 1점 수 습	36° 58' 22" 126° 56' 22"	
현화리 유적 玄華里 遺蹟	안중면 현화리 산 127일대	구석기~ 조선	구석기시대의 석영맥암으로 된 구형(球形)석기 1점, 청동 기시대의 집터 5기, 백제시	36° 58' 44" 126° 55' 16"	

명 칭	위 치	시 대	내 용	좌 표	문화재지정사항
			대 가마터,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토광묘, 7자모양의 토광유구, 폐기터로 보이는 수혈유구 5기, 고리모양의 수혈유구, 조선시대 회곽묘 2기가 조사됨		

여 백

3장 공장등록 현황

平澤



여 백

개별공장 등록현황(2001. 6. 30현재)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택	박종혁	팽성읍 대추리 162-26번지	장갑, 화장지, 문구용지	12
(주)경남엔지니어링	허태성	서탄면 수월암리 389-1번지	자동차부품 등	2
(주)경동보일러	박천곤	세교동 437-3번지	보일러	500
(주)경동보일러	박천곤	모곡동 437-1번지	가스보일러, 흡수식냉난방기, 공기조화기	160
(주)경동보일러	박천곤	모곡동 438-2번지	전기보일러 외	80
(주)경성기업	임종남	고덕면 문곡리 269-11번지	콘도라, 크레인, 목대기계	25
(주)경안전산	김명일	서탄면 수월암리 520-2번지	전력용, 통신용케이블	75
(주)계림인터내셔널	고승국	진위면 신리 66-3번지	전기맛사지기	2
(주)고보산업	송주현	서탄면 수월암리 870-1번지	PE파이프	6
(주)광우	권영길	모곡동 441-10번지	YOKE류, 엘보, 밸브류	39
(주)국제전계아이이에프	김수환	진위면 청호리 44-10번지	콘트롤박스(프레스용)	9
(주)그린물산	김종식	서탄면 수월암리 831번지	칠판(세라믹스틸보드)	2
(주)금강전척	변형식	팽성읍 추팔리 391-5번지	수. 배전반, 자동제어반	45
(주)금강종합산업	이상권	모곡동 430-2번지	합성수지제품, PE-BAG,	25
(주)금영	박경수	모곡동 430-3번지	HDW 시스템	30
(주)금호프라스틱	이준식	모곡동 439-2번지	필기구 일반제품	19
(주)나노이앤씨	이성근	모곡동 434-2번지	세척제	5
(주)나라컨트롤	문성주	세교동 536-11번지	자동제어기기 밸브	16
(주)나이트산업	주덕중	서탄면 금암리 512-6번지	다채무늬, 유리대리석 판넬	8
(주)나인	구자환	고덕면 울포리 331-9번지	건축자재	6
(주)남부햄	권태경	모곡동 451-6번지	햄, 소시지, 바베류	125
(주)녹원	홍석운	서탄면 수월암리 251-1번지	에초기	1
(주)능진	박양수	세교동 537-3번지	핸드폰 충전기	59
(주)다내기술	문강순	포승면 도곡리 845-7번지	아답터	0
(주)다성마그네틱	박현빈	모곡동 430-6번지	TRANSFORMER, LINEFILTER	68
(주)다이나시스템	정순재 이석주	서탄면 수월암리 851-4번지	콘크리트피복재	8
(주)대경기계	문성탁	장당동 270-4번지	보일러	17
(주)대농	김형철	서탄면 수월암리 449-2번지	고추장, 간장, 식초, 된장	25
(주)대망물산	김태인	세교동 542-9번지	합금철	4
(주)대선	백진성	현덕면 덕목리 660-2번지	전자제품완충제, 금속 절단기	10
(주)대성엘텍	박재범	세교동 537-4번지	CAR AUDIO, VTR용 HEAD DRUM ASSY	324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주)대승	이철근	서탄면 수월암리 224-1번지	자동차부품(동력전달축)	250
(주)대유신약	이승하	모곡동 441-8번지	의약품(정제, 캡슐, 연고제)	50
(주)대일정공	유신형	모곡동 451-8번지	금형(클러치 하우징)	10
(주)대하	조강환	세교동 536-9번지	우동	26
(주)대한난가공	박종철	팽성읍 두리 177번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30
(주)대한양행	고인영	모곡동 433-7번지	양말편직기	44
(주)대한화성	강연식	팽성읍 두리 29-1번지	PP마대	40
(주)더존식품	한정달	세교동 436-5번지	건과류(전병류)	25
(주)덕성테프	오대식	세교동 537-5번지	OPP TAPZ	83
(주)덕성테프	오대식	고덕면 율포리 539-5번지	접착테프(프라스틱, 종이)	80
(주)동국가연	김호영	고덕면 문곡리 264번지	나일론실	23
(주)동국특수유리	안호근	장안동 233-4번지	복층유리, 강화유리	36
(주)동남	최기환	청룡동 203-10번지	조립양금, 팔양금	19
(주)동산	이우춘	고덕면 율포리 331-4번지	자동차부품, 수지식동력구동공구 등	50
(주)동신건설	남순모	도일동 995-4번지	콘크리트벽돌, 인터로킹, 경계석	15
(주)동아정기	문의호	용이동 36-5번지	상용자동차부품(리어액슬)	78
(주)동아테크엔지니어링	김찬희	청북면 고렘리 852-13번지	자동화설비	8
(주)동양	이근호	서탄면 126-2번지	플라스틱용기	4
(주)동양금속	서춘식	모곡동 433-9번지	텐트 폴	50
(주)동양인크	최청운	세교동 542-6번지	인쇄용인크	15
(주)동양인크	최청운	진위면 가곡리 338-6번지	페놀수지, 마레인산수지	255
(주)동우엔지니어링	김경수	고덕면 여염리 39-2번지	차이염소산나트륨발생기(장치)	15
(주)동원화학	유원선	고덕면 문곡리 291-6번지	PP밴드	7
(주)동은소재	조규수	서탄면 수월암리 567-1번지	식품향첨가물	10
(주)동인위성네트웍	김지선	서정동 866-17번지	방송용위성장치	10
(주)동일캔버스	우현직	서탄면 수월암리 1280번지	캔버스, 여과포, 여과기, 수처리기계	20
(주)동주	박두식	서탄면 수월암리 311-1번지	플라스틱도마, P.P SHEET	33
(주)동화	노길식	모곡동 440-9번지	무선전화기 부품	90
(주)동화정공	조순애	팽성읍 석근리 5번지	소화전, 양수기등 철제류 박스	16
(주)두합	김임중	모곡동 438-11번지	스피커부품, 세탁기 샤프트	23
(주)디비엔지니어링	이득용	팽성읍 안정리 82-8번지	방음판넬	22
(주)디비엔지니어링 제2공	이득용	팽성읍 근내리 172-1번지	스프링마운트 스프링행거, 방음판넬	15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주)마에스텍	용한복	세교동 536번지	반도체 박막증착설비	10
(주)마이크로아이	문현찬	진위면 마산리 455-6번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10
(주)만도	오상수	포승면 만호리 343-1번지	마스터실린더/부스터, 드럼브레이크 등	1,100
(주)만도	오상수	포승면 만호리 579-1번지	자동차 부품(샷시 모듈) 조립	14
(주)만호	손만호	세교동 539-2번지	자동차 헤드 라이닝 (자동차내장재)	32
(주)명경	한병유	고덕면 해창리 353-9번지	금속포장용기(캔)	20
(주)명인기계	제윤선	진위면 청호리 44-5번지	전용시험기,테스트헨들러, 스판들유니트	14
(주)명진엔프라	박일진	세교동 542-10번지	산업용프라스틱 사출품	27
(주)명진프라스틱	서재명	서탄면 수월암리 232-1번지	에어컨, PARTS Aesy	26
(주)모이니텍	국용환	서탄면 수월암리 649-2번지	위성송수신기용 PCB	0
(주)모터넷	임태빈	진위면 마산리 455-6번지	소형모터	8
(주)미래소재	이재건	고덕면 해창리 338-2번지	지르코니아내화물	4
(주)미래씨엔에스	이상근	서탄면 581-1번지	플라스틱골판지박스	7
(주)미래정보	이재호	팽성읍 신궁리 11-152번지	V.T.R 부품(파워)	60
(주)미트빌	김도성	현덕면 황산리 154-2번지	양념육	10
(주)바우테크법랑	설혁수	청북면 한산리 12번지	주방그릇	17
(주)방주산업	정연훈	진위면 갈곶리 57번지	오디오CD-R, 비디오케이스제조	60
(주)방진사	홍수욱	고덕면 좌교리 285-3번지	자동차부품	18
(주)벨류엔지니어링	곽상길	서탄면 수월암리 765-4번지	아크챔버	12
(주)보부식품	윤종열	팽성읍 근내리 101-2번지	만두류, 면류, 양념류	30
(주)보승	정광수	고덕면 해창리 484-2번지	KMC천정판	11
(주)보임기술	황춘근	팽성읍 추팔리 000번지 6-2블	광학렌즈	60
(주)부산의용촌	최일환	모곡동 437-2번지	공중전화기	20
(주)부송어패럴	김병혁	모곡동 430번지	남성 기성복	100
(주)비비코리아	이상락	청북면 삼계리 465-4번지	혼합단미사료	5
(주)비에스코퍼레이션	전행자	서탄면 수월암리 605-2번지	컴퓨터부품, 화장지	20
(주)삼경정밀	정강환	가재동 242-2번지	EI-CORE	116
(주)삼미벽지	강승림	세교동 544-2번지	벽지(셀크 벽지, 발포벽지)	10
(주)삼미벽지	강승림	지제동 62-1번지	벽지	70
(주)삼신인터내셔널	김영갑 변정구	서탄면 수월암리 591번지	철재가구(책상, 캐비닛 등)	18
(주)삼신전기	이정린	청북면 삼계리 376-3번지	VALVE, METER SET, Fuel Govge	50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주)삼양전자	송양형	모곡동 437-9번지	칼라 텔레비전	350
(주)삼양전자(B)	송양형	모곡동 437번지	PCB 조립품	187
(주)삼오산업	주철준	칠괴동 575-1번지	자동차부품	58
(주)삼우케미칼	최명숙	비전동 83-2번지	왁스 및 표면광택제	6
(주)삼익적외선	이종익	모곡동 437-8번지	적외선 사우나 BOX, 적외선 히터	6
(주)삼진엔지니어링	김성무	합정동 175-11번지	농축시설, 분무건조기	50
(주)삼진정공	박주조	모곡동 449-4번지	자동차 에어컨 부품(FLANGE)	19
(주)삼천리기계 평택공장	서홍석	모곡동 437-3번지	CNC선반용 유압척	28
(주)삼현	정기환	오성면 양교리 431-1번지	적별들	81
(주)상지정공	김동원	모곡동 433-3번지	광학렌즈, 전자제품부품 (ANODE BODY)자동차	33
(주)상진미크론	권오현	세교동 537-10번지	전자렌지 부품, 가스렌지 부품, 금형	157
(주)새신	최문석	지제동 900번지	안전화, 등산화, 단화	15
(주)서림제지	김종철	모곡동 451-4번지	위생용 종이제품(네프킨)	5
(주)서신	조성중	모곡동 430-7번지	야쿠르트 은박지, 담배용접합알루미늄박지	18
(주)서울산전	구연정	팽성읍 추팔리 392-2번지	계기용변성기, 고장 구간 자동개폐기, 컷아	33
(주)서울신소재	박민서	모곡동 446-6번지	합성수지	6
(주)서울전기제작소	구연정	세교동 538-4번지	계기용 변압 변류기, 단로기, 예폭시 절연에	25
(주)서호건업	전태수	청북면 고렝리 527-10번지	보도블럭, 콘크리트 경계석	13
(주)석경화학	최필옥	고덕면 당현리 80-5번지	페프라스틱	13
(주)선양	김인기	모곡동 451-3번지	볶음 조미분, 볶음 참깨, 스포츠용 분말조미료,	14
(주)선양기업	김상진	팽성읍 추팔리 000번지 3-8블	폴리우레탄, 예폭시	3
(주)선일엔지니어링	오기석	오성면 숙성리 693-5번지	알루미늄샷시, 철구조물	7
(주)성림산업	조명기	세교동 542-4번지	부직포	11
(주)성일개발	표주성	청북면 백봉리 459-10번지	구조용금속판금, 일반철물	11
(주)성장에어텍	정명진	모곡동 439-5번지	공기필터	48
(주)세립	이봉주	모곡동 449-6번지	인쇄용 테이프	43
(주)세원	엄병운	진위면 하북리 88-1번지	WIRE HARNRESS(W/H)	289
(주)세원기연	김용석	세교동 539-1번지	공기조화기, 향온향습기, 저온냉동기, 송풍기	74
(주)세원전자	이명기	팽성읍 추팔리 391-6번지	Wire Harness	98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주)에이텍	이재화 서성기	모곡동 433번지	산업용 박막증착 및 부분품	86
(주)에이텍	이재화, 서성기	세교동 537-17번지	반도체 세정 장비	80
(주)에프지에프	최진원	모곡동 430번지	남성기성복	20
(주)에피플러스	박해성	청북면 율북리 1027번지	반도체 박막성장웨이퍼 및 반도체소자	11
(주)엘케이	김상열	모곡동 436-2번지	호이스트, 체인블럭	33
(주)엠아이텍	김철수	서탄면 금암리 17-1번지	중재적시술의료기기(Stent외)	20
(주)영도리씨이클링	한정수	서탄면 수월암리 704-2번지	P.E.T재생	5
(주)영신화학	김기권	진위면 봉남리 300번지	규산소다	29
(주)영창정공	진현태	청북면 율북리 1032-1번지	후레임부품, 클러치부품	25
(주)영풍	정혜업	서탄면 수월암리 472-1번지	드라이어, 후리자파이프, 섹션파이프, 모세관	50
(주)오산정밀	서대수	모곡동 430-8번지	냉동부품(와이어 콘덴서)	14
(주)오팩엔지니어링	성기철	청북면 율북리 1029번지	방전 가공기용 전극선	54
(주)용진개발	박용욱	장당동 산 81-2번지	아이스그란(바르는단열재)	7
(주)우성이엔아이	김양근	포승면 석정리 1119-3번지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링머신 등), 대형	25
(주)우영	박기점	서탄면 수월암리 222번지	콘넥터 및 LCD부품	350
(주)우원	김영호 박봉태 임종태	세교동 539번지	배관 제작, 닥트 제작	10
(주)윈다이캐스팅	변인숙	모곡동 438-8번지	자동차 엔진오일 커버	30
(주)윈우정밀	강명복	모곡동 433-11번지	백라이트	8
(주)윈일산업	곽영주	진위면 가곡리 383-1번지	학생용책걸상	7
(주)윌텍	정진우	모곡동 433-5번지	자동화 기기(크린룸, 항온항습기)	15
(주)유니테크	김승겸	모곡동 438-4번지	환경수처리약품(폐기물안정화제)	32
(주)유동금속	이광식	모곡동 435-6번지	자동차부품(FRAME)	40
(주)유미산업	양혜용	세교동 537-1번지	전착도장	18
(주)유성사	김용철	모곡동 437-5번지	스피커그릴, 스피커 ASSY	103
(주)유성사	김용철	팽성읍 추팔리 393-3번지	스피커그릴, 노트북 PC	213
(주)유평	변윤식	모곡동 446-1번지	송풍기, 냉동기기, 냉각탑, 공조기기	23
(주)유평케미칼	신현국	칠곡동 576-2번지	금속도금용화합물	144
(주)유한정공	박재현	서탄면 금암리 512-1번지	브레이크편	12
(주)유한홀로텍	심세유	청북면 율북리 1027-2번지	반도체제조용기계	13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주)은하양행	나도중	세교동 537번지	AIR DRYER, RECEIVER TANK	11
(주)이노컴	이창순	진위면 마산리 791번지	컴퓨터용pcb보드	48
(주)이젠택	이배근	칠괴동 577-6번지	에어컨부품, 김치냉장고INCASE	123
(주)이젠택 제 1공장	이배근	모곡동 447-1번지	전자렌지 케이스, 에어컨ASSY 부품	123
(주)이젠택-금형사업부	이배근	모곡동 433-6번지	담채 내부상자	47
(주)이지바이오텍	김기태	고덕면 문곡리 291-1번지	단비사료	4
(주)인터메딕	윤희선	모곡동 446-2번지	우왕침심원외,과위공드외, DR시계마쓰외	0
(주)인포디스크	박승환	청북면 어연리 886번지	CD,DVD	75
(주)일렉콤테크 제2공장	김경애	청북면 고림리 37-3번지	양면테이프, 라미네이팅 테이프	22
(주)일렉콤테크	김경신	고덕면 좌교리 179-3번지	전선절연테 및 알루미늄테크	50
(주)일룸	양영일	세교동 536-12번지	캐비닛	10
(주)일성	정창모	월곡동 397-5번지	Co2 Cartridge, 음료용 SYPHON	5
(주)임덕화학	이석주	모곡동 449-2번지	점착제, 접착제, LATES COMPOUND	46
(주)자금성식품	이상연	현덕면 황산리 154-2번지	만두	40
(주)재영	황영택	세교동 536번지	소형변압기	14
(주)재영	황영택	세교동 536-3번지	소형변압기	0
(주)재운상사	서운석	서탄면 내천리 206-2번지	콘크리트박리제	6
(주)정연테크	송민호	팽성읍 추팔리 000번지 3-1블	PVA SPONGE	14
(주)정일지공	정호진	고덕면 동청리 147-3번지	골판지	57
(주)제원산업	이성희	서탄면 수월암리 539번지	PIPE.BRACKET, PIN류	13
(주)제이아이엔	박우현	서탄면 사리 844번지	골판지상자	0
(주)제이케이칼	조옥제	세교동 537-9번지	반응성 염료,분산 염료	35
(주)제일미래텍	한기성	고덕면 두릉리 225-번지	mcc판넬, 오디오, 비디오, 방음자재	5
(주)제일씨킷트	홍석하	모곡동 449-12번지	인쇄회로기판(PCB)	45
(주)제일우레탄	고연중	고덕면 두릉리 225-8번지	스폰지가공품	5
(주)조인엔터프라이즈	장휴정	서탄면 수월암리 567-1번지	의료용부품	6
(주)종인니트	임성규	진위면 은산리 466-2번지	섬유원단	21
(주)주강로보테크	강인각	청북면 현곡리 177-28번지	공장자동화용 공압구동기기	26
(주)주암산업	윤영식	모곡동 441-1번지	와이어 패널(건축용 자재)	10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주)중앙정공	권석용	서탄면 수월암리 281-6-8번지	cd카바, dvd카바, abs브레이크카바	57
(주)중원	원제돈	현덕면 황산리 153-1번지	보온병	13
(주)중원	이학준	칠원동 229-1번지	원단(폴리에스텔)	40
(주)지엘인더스트리	박종관	진위면 건산리 102번지	히타케이스	24
(주)진선정보기술	정영섭	청북면 울북리 1027-3번지	컴퓨터모니터	100
(주)진성티씨	윤우석	세교동 538-5번지	굴삭기 부품(트랙 롤러, 플로팅 쉘)	102
(주)진양	황승민	모곡동 438-5번지	P.P마대, 콘테이너 백, 코팅	65
(주)진우하이테크	서동덕	진위면 청호리 44-7번지	휴지통, 채칼, 물통	10
(주)진홍	김재욱	청북면 백봉리 214번지	PP마대	20
(주)진홍정밀	지성구	모곡동 434-2번지	자동차 부품, 금형	19
(주)청우코아	이보영	청북면 토진리 424-65번지	골판지(지관)	37
(주)카마다코리아	김동휘	세교동 542-1번지	자동차 부품(실내등, 스위치류)	18
(주)캐즈	임재원	청북면 고잔리 510-1번지	사출금형	18
(주)케미콘	임동한	서탄면 금암리 509번지	모르타르, 믹싱펌프, 믹서, 펌프, 사일로	12
(주)케미텍인터내셔널	김철식	모곡동 451-4번지	세척제	10
(주)케이디전자	김두임	팽성읍 추팔리 393-1번지	TV 케이스	100
(주)케이에스테크놀로지	함학주	세교동 536-10번지	VTR부품(CD-ROM DECK, CAM LENS ASSY)	250
(주)케이에치실업	안광찬	오성면 죽리 1-6번지	pvc, pc 재생	8
(주)켄텍	방상우	세교동 538-6번지	예폭시 수지, 젤리연료	15
(주)코렘	채운용	모곡동 438-9번지	냉동기	6
(주)코베콤	최용택	모곡동 437-2번지	단말기	10
(주)코아센타	남창희	오성면 양교리 449-19번지	철관가공	6
(주)코코리아	장명걸	도일동 306번지	김치, 단무지	10
(주)클린코리아	김용신	진위면 하북리 260-3번지	정제연료유	53
(주)키토라이프	정특래	칠괴동 576-1번지	키토산올리고당	16
(주)탑엔지니어링	최성달	진위면 은산리 936번지	산업용수배전반	4
(주)태무	박태무	팽성읍 안정리 82-5번지	변압기	17
(주)태산엔지니어링	김유태	고덕면 좌교리 312-1번지	탱크류 및 기계부품 가공	5
(주)태진정공	조세규	세교동 541-3번지	복사기용 고무롤러	150
(주)태진펌프	임무상	세교동 536-1번지	부스타 펌프, 공기조절기구	11
(주)평농	김한국	지제동 233-1번지	소, 돼지, 염소	42
(주)푸른식품	안인구	진위면 가곡리 385-11번지	3분햄버거스테이크	38
(주)피비텍	변동우	안중면 덕우리 94-24번지	통신장비(모뎀)	15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주)하나기전	이창원	고덕면 궁리 80-8번지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중앙감시장치, 특수공	10
(주)하니레이스	유근화	안중면 덕우리 83-11번지	자수직물	25
(주)하봉	하준봉	서탄면 내천리 9-2번지	차량용히터케이스 외	64
(주)하원제약	주창순	진위면 가곡리 543-1번지	싸이파늘, 세파드록실캡셀	36
(주)하이팩시스템	설상인	서탄면 금암리 813-3번지	PS,(PP)-SHEET	10
(주)하츠	이수문	진위면 갈곶리 67번지	후드	100
(주)한강상사	이수문	진위면 갈곶리 산 33번지	렌지후드	220
(주)한국금속	노종호	서탄면 내천리 206-3번지	온풍기, 급배기관, 열교환기연소로	88
(주)한국기능공사	김성국	세교동 541-4번지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 VTR부품	65
(주)한국라선관	노종진	모곡동 447-2번지	신축 이음관(EXPANSION JOINT, FLXIBLEJOIN	32
(주)한국번디	김시원	진위면 신리 206-1번지	일중권및이중권강판	132
(주)한국알테코	정해철	서탄면 수월암리 282-2번지	순간접착제	24
(주)한국아쿠르트	김순무 평야박승	진위면 견산리 5-1번지	아쿠르트	130
(주)한국에바라정밀기계	카즈마타	모곡동 446-4번지	반도체용 진공펌프, 가스제거기	38
(주)한국켄트메다스	김장기	진위면 은산리 136-5번지	수도미터	15
(주)한국퀴즈	구원수	모곡동 447-3번지	반도체 제조용 석영제품	31
(주)한국퀴즈	구원수	팽성읍 추팔리 391-4번지	반도체 제조용 석영제품	58
(주)한국화이버	양옥순	진위면 갈곶리 289번지	POLYPROPYLENE, STAPLEFIBER	7
(주)한그린텍	이병기	서탄면 수월암리 1278번지	방내화 건축자재	9
(주)한길	정기환	세교동 537-15번지	타일	42
(주)한독고분자	문세민	모곡동 439-4번지	가죽사상제, 광택제	17
(주)한미	조상균	모곡동 440-1번지	화장품, 탄산음료, 과즙음료	19
(주)한솔장업	이영석	모곡동 449-9번지	스킨, 로션, 크림	15
(주)한스환경엔지니어링	이삼수	서탄면 수월암리 293번지	건축용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	49
(주)해인식품	김해철	모곡동 447-3번지	사공농축액, 냉면육수, 만두씨즈잉-F, 비프파	26
(주)행운레미콘	심재학	고덕면 해창리 357번지	레미콘	20
(주)현보화성	최선태	모곡동 432-1번지	김치냉장고부품, 우레탄	92
(주)혜성엘엠디	임종철	모곡동 433-12번지	휴대폰 액정화면	50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주)호성산업	김영식	모곡동 434-2번지	프라스틱 용기(CD-CASE, 엔진오일용기)	26
(주)호성정밀	유재환	모곡동 438-6번지	컴퓨터 디스켓 부품	10
(주)화성씨모	고홍달	모곡동 431번지	차량냉동기, 특수냉동기	35
(주)화성씨모	고홍달	칠괴동 577-1번지	차량용냉동기	6
(주)효성전자	유중섭	팽성읍 원정리 113-1번지	LEAD CONNECTOR ASSY	25
(주)휘닉스디지털테크	김정호	고덕면 해창리 338-2번지	자동화기기, 유리제품(TV브라운관용)	91
(주)홍진냉동프렌트	장충윤	고덕면 방축리 265-1번지	산업용냉장냉동설비	36
(주)KMT	윤경완	장당동 624-1번지	cd-rom, cable-modem	149
(합)오성농업회사법인	진수성	오성면 창내리 110-2번지	쌀	5
(합)청북농업회사	박일현	청북면 율북리 572-4번지	쌀	5
강우정공	이강희	고덕면 좌교리 188-3번지	전동공구부품	5
강원산업	김윤식	진위면 신리 66-3번지	잡철물제작	5
강인디아아공구	박삼규	서탄면 수월암리 851-2번지	절삭공구부품	2
거성산업	홍성택	청북면 현곡리 386-9번지	콘테이너 백 원단, 동물용 배합사료	10
건우촌식품	김정훈	고덕면 해창리 1105-1번지	추출가공식품부원료	5
경기물산(주)	차옥연	서탄면 금암리 589번지	제지기계, 산업용기계	6
경남기업	강경남	고덕면 문곡리 269-4번지	가공선지시대	8
경남사료상사	서동구	고덕면 율포리 50-1번지	사료원료	2
경림건설(주)	권태중	포송면 석정리 1280-6번지	목창호, 문틀	4
경안전산(주)	김명일	서탄면 수월암리 520-3번지	전력용, 통신용테이블	65
경원정밀	김태순	고덕면 좌교리 188-1번지	전동공구부품	9
경원종합기계(주)	김경중	서탄면 내천리 292번지	PP, 구리 원료생산	2
경진아이스큐브(주)	이일용	유천동 606-1번지	제빙기	5
경진정밀공업사	이정진	고덕면 방축리 295-4번지	MOTOR SHAFT, 자동차부품	8
고려포장(주)	최연수	진위면 가곡리 126-1번지	골판지박스	13
고산기업(주)	장 원	모곡동 439-5번지	스폰지	24
고오키 상에이 코리아(주)	사이토쇼조	동삭동 483번지	FLUX Solder Cream	23
고전섬유	한상양	고덕면 율포리 119-1번지	가네트울, 솜	3
공영화학공업(주)	변익환	포송면 도곡리 139-18번지	살균제, 살충제 (메스탄 싸이포스, 알파민)	10
광동제약(주)	최수부	장당동 404-1번지	운지천, 경옥골드	87
광동제약(주)	최수부	모곡동 440-2번지	의약품(연질캡셀, 과립제, 정제)	240
광륜상사(주)	박상십 외	서탄면 수월암리 126번지	골판지박스	27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광성산업	송준호	서탄면 내천리 844-1번지	포대제조	10
광신전기	변형식	팽성읍 추팔리 391-5번지	수전반, 배전반, 자동제어반	10
국제화성	안도영	서탄면 수월암리 692번지	에폭시수지2차가공	7
구성산업(주)	강수영	오성면 창내리 6-60번지	레토르트파우치	4
그린산업(주)	김기홍	진위면 갈곶리 58-1번지	동태이프, 전선PP사	9
그린캠산업(주)	반원익	서탄면 수월암리 1096-1번지	우레탄타일	10
그린테크컨설팅(주)	김태인	고덕면 두릉리 224번지	요소수	2
그린필드	윤대회	진위면 마산리 818-14번지	텐트	10
근흥종합식품(주)	전홍근	진위면 신리 24-5번지	오이피클(오이지)	13
금강기계공업(주)	최일학	오성면 죽리 1-2번지	철제 빠레트(밀판)	7
금강방화문	백은기	청북면 어소리 162-3번지	철제문	14
금강식품	임재수	청북면 토진리 340번지	쌀튀밥, 쌀산자, 강냉이	4
금구식품	최용선	팽성읍 노양리 152-1번지	에향 김맛 전병 외 3건	4
금보물산	홍복원	안중면 학현리 112-28번지	유, 공압실린더	13
금수정밀	선남기	모곡동 438-12번지	스프링	24
금영산업	김내세	서탄면 수월암리 1148-6번지	유도복지	8
금오양행	이경무	모곡동 437-7번지	표면광택제, 차단기	2
금호전자	이순만	모곡동 438-12번지	컴퓨터 CD-ROM	32
금화정밀	강현주	진위면 갈곶리 289번지	비디오 DECK	7
금황특수제지	이현모	청북면 고잔리 1079-1번지	한지, 황토제품	10
기광물산(주)	이광용	모곡동 441-14번지	육묘상자, 공구상자,과일저장상자	15
나노메트릭스코리아(주)	김재삼	청북면 한산리 837번지	반도체웨이퍼 황적오류측정기	38
나드리화장품(주)	전병인	진위면 견산리 1-1번지	화장품(로션, 스킨 등)	160
남방CNA(주)	김승길	팽성읍 추팔리 392-3번지	이형제, 세척제, 윤활제	44
남화산업(주)	임만섭	청북면 삼계리 610-7번지	식품포장지	22
내쇼날몰텍(주)	박창섭	모곡동 438-3번지	사출금형	21
내쇼날홈웨어(주)	김수진	모곡동 438-3번지	아이스박스, 서랍장, 아트밀폐용기,식기건조	10
다이아몬드전자(주)	이건	서탄면 금암리 509-4번지	엠프조립, CRT엠프조립	12
대경산업	이영웅	팽성읍 노양리 155-1번지	짜서볶은현미, 볶은보리	4
대경지관	손홍호	고덕면 문곡리 263번지	지관	7
대광산업	한대교	서탄면 내천리 20-1번지	일반플라스틱필름시트판제조업	6
대기탑과(주)	최대기	서탄면 적봉리 383-2번지	화물차용프레임, 건강식품(근육이완제 생산)	10
대륙환경	양호용	청북면 백봉리 174번지	프라스틱재생(폐PE류 용해압축)	6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대림가구	최낙범	청북면 고잔리 794-1번지	침대모체	6
대림산업(주)	이용구	죽백동 619-1번지	중장비정비, 금속구조재	14
대림산업(주)	이용구	죽백동 650-1번지	레미콘	90
대림아스콘(주)	정장을 정장수	죽백동 619-1번지	아스콘 및 레미콘	15
대림정공	조용윤	세교동 222-9번지	컴퓨터부품, 이동통신부품	15
대림정밀공업(주)	차국현	세교동 537-6번지	세탁기용 감속기(DRUM ASSY, GEAR HOUSING A)	80
대명산업	유석근	서탄면 사리 827번지	EPOXY지지에자	5
대명산업	이삼복	서탄면 수월암리 1162번지	종이스폰	3
대부산업	안부현	세교동 537-2번지	압축고철 가공, 철판고철 가공	40
대성공업(주)	장부일 외	세교동 537-8번지	플라스틱 케이스 (자동차 기어 카바, 복사기)	37
대성연료	양해민	청북면 고렘리 976-4번지	착화탄(번개탄)	6
대성이삭산업(주)	정용민	포승면 원정리 1000-802번지	산업용 접착제	7
대승산업사	제영진	고덕면 해창리 331-4번지	DoorLock, Branket부품	2
대양실업	김윤진	세교동 537-14번지	섬유레이스	15
대영기업	이정선	오성면 숙성리 732-3번지	썩크대	4
대영에프앤에스(주)	이희성	세교동 538-3번지	혼합조미료, 향료	11
대영화학	김창국	세교동 542-2번지	PLASTIC CASE, CAR WASHER TANK	14
대우공업(주)	오도영	포승면 내기리 679-1번지	자동차 차체	16
대우산업	전명호	모곡동 441번지	침대 받침대	8
대우산업	박경석	모곡동 438-3번지	침대프레임	13
대우썩크	강점식	팽성읍 객사리 61-3번지	썩크대	2
대웅석재산업	박종수	모곡동 436-5번지	석제품	14
대원산업(주)	허재건	청북면 고렘리 98-2번지	자동차용 시트	190
대원특수전선(주)	서명환	모곡동 433-10번지	자동차 절연전선, 케이블	60
대유통신(주)	이진규	모곡동 435번지	슬리브콘넥타, 전자철판	40
대일실업(주)	김방섭	모곡동 441-12번지	접착테이프, PE 필름	84
대정상사(주)	박성찬	도일동 996-2번지	.	18
대진공업	구본홍	팽성읍 추팔리 391-3번지	플라스틱시트, 판 인쇄	10
대진정공	송윤섭	모곡동 436-1번지	자동차H/T CASE, 에어콘 판넬	56
대창산업사	김진식	청북면 고렘리 960-1번지	세탁기 케이스, 냉장고 케이스, 콘솔박스	12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대한공기(주)	하마다야끼오	모곡동 449-11번지	자동차 냉방기 부품 (EXPANSION VALVE)	60
대한금속안료(주)	김문선	세교동 544번지	알루미늄페이스트	15
대한은박지공업(주)	김석주	세교동 544번지	용기, 포장지류	147
대한초경산업사	한락수	서단면 금각리 281번지	광산공구건설기계부속	5
대협산업(주)	이희선	진위면 가곡리 336-1번지	알미늄압출후면설비, 히타플랜지	10
대협지관공업사	정광석	유천동 606번지	지관(종이대롱)	9
대홍아이비엔(주)	정정훈	청북면 토진리 417-16번지	플라스틱용기	13
대홍화학공업(주)	이춘남	모곡동 450-5번지	젤라틴, 접착제	10
덕연산업(주)	이해환	청북면 삼계리 452-3번지	철골	5
덕영정밀공업	심희영	고덕면 좌교리 285-4번지	자동차후레임요모라켓	9
덕일산업(주)	유기덕	모곡동 431-1번지	자동차프라스틱콘벡터	37
덕홍수지	남시종	모곡동 441-3번지	합성수지 재생원료, PP BAND	10
덕홍전자부품(주)	민경보	서단면 수월암리 215-2번지	ABS Sheet 파렛트	33
덕홍특수공업사	이강현	청북면 고렘리 161-2번지	스텐레스선, 로프	6
도곡정미소	최진용	포승면 원정리 299-31번지	미곡	3
도원물산	권혁구	서단면 사리 844-2번지	정밀주조용코팅제	4
도투락물산(주)	왕조현	서단면 수월암리 787번지	만두, 음료, 방과	192
동강의료기(주)	주정국	팽성읍 추팔리 394-4번지	진단용 X선기기, X선 필름현상기	64
동광제약(주)	김천문 오대환	모곡동 439-1번지	항생의약품(리보타제외 119품목), 클라시린정	140
동광파렛트(주)	유인기	오성면 양교리 195-1번지	목재 파렛트	6
동국강업(주)	유정형	세교동 537-11번지	데크 플레이트	4
동국건설	박현수	모곡동 63번지	목재건구제조업	6
동국물산(주)	이기춘	가재동 345-8번지	큰돔	129
동국철강	강등국	세교동 537-11번지	데크 플레이트, 철판 사탕, 철골	4
동명스틸(주)	오상근	포승면 만호리 584-1번지	냉연강판 가공	64
동명엔프라	박진화	고덕면 좌교리 439-1번지	VCR전자부품, 반도체부품	29
동명통산(주)	신달석	세교동 541번지	자동차 창 고무	32
동민전자	유연옥	서단면 수월암리 567-1번지	하네스(컴퓨터용)	21
동민특수가스(주)	김평호	청북면 고렘리 936-3번지	산업용가스	11
동방수출포장	박홍백	서단면 수월암리 1166-1번지	P.E 필름, 농업용, 공업용	6
동보정밀(주)	박종일	서단면 수월암리 250-4번지	자동차용품	29
동산기업	김경수	오성면 창내리 11-180번지	레프트트파우치	3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마루전자산업	배재철	고덕면 당현리 138-2번지	실크인쇄, FAX-MODEM, SOUND CARD 및 컴퓨터주	40
마이크로세일(주)	황규성	청북면 울북리 1027-1번지	반도체 소자	50
마포브리쉬	김영진	청북면 어연리 564번지	비 및 솔	15
메일유업(주)	김정완	진위면 가곡리 480번지	시유, 분유, 음료 등	534
명성철강(주)	심명종	세교동 536-5번지	도복장 강관, 이형관	20
목화법랑	김환순	세교동 536-2번지	가스렌지 범랑 가공, 오븐렌지 범랑 가공	54
미광개발산업	임정호	서탄면 사리 635번지	육조, 세면대	5
미래엔지니어링	이병목	서탄면 금암리 582-3번지	주문제작(접착테이프기계)	5
미진화학	김미란	세교동 538-2번지	플라스틱원료	10
발렉스코리아(주)	이재영	청북면 어연리 884번지	반도체용 EP배관소재	43
백남화학(주)	남국치 백정환	진위면 하북리 233-5번지	콘크리트호 혼화제	5
백산프라스틱공업사	임상돈	모곡동 449번지	프라스틱 자동차 부품	6
범종사	김정수	청북면 고잔리 1079-5번지	종, 불상, 민속공예품	5
벤티리(주)	이행우	칠괴동 585-2번지	김서림 방지제품, 코팅액, 화장품 원료추출	36
벽산개발(주)	정종득	진위면 가곡리 287-3번지	타워크레인	11
보라매연구상사	박동희	청북면 삼계리 599번지	유아완구	11
보람기업	김순희	팽성읍 신대리 214번지	VCR PCB ASSY 조립	44
보령기공	임성순	서탄면 수월암리 1148-5번지	수도계량기	10
보성전자(주)	구자인	팽성읍 추팔리 338-15번지	카세트라디오, 카스테레오	180
부산재활용사촌복지공장	백행문 등	팽성읍 안정리 82-8번지	방음벽	5
부영식품(주)	이석문	모곡동 437-4번지	카라멜당	7
비손텍스타일	박광근	팽성읍 남산리 315-28번지	섬유원단	5
산양전기(주)	윤병재	세교동 541-2번지	S/PCB, F/PCB	85
산풍산업(주)	박대하	모곡동 451-4번지	위생세제(세척제)	6
삼공물산(주)	이건	유천동 656-5번지	고무코팅 원단	46
삼공물산(주) 제1공장	이건	유천동 654-7번지	방독면, 고무보트	106
삼공물산(주) 제3공장	이건	유천동 470번지	방독면	120
삼광기업(주)	김광열	청북면 백봉리 176-14번지	자동차부품	27
삼능전기(주)	임홍찬	진위면 가곡리 385-9번지	계기용변성기	15
삼능화학(주)	유태식	동삭동 415-1번지	형광염료	18
삼덕산업(주)	박호전	세교동 538-8번지	아스콘, 레미콘	18
삼미금속	동경희	안중면 성해리 166-1번지	은괴	5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삼봉섬유	박추자	고덕면 율포리 3-7번지	실가공	20
삼성기업	백승기	팽성읍 본정리 258-3번지	목재주방용품, 싱크대나무BOX	12
삼성상용차(주)	김명한	모곡동 447번지	특장차	82
삼성종합샷다	김원일	칠원동 277-1번지	샷다, 방법창	3
삼신마그네틱스(주)	김동용	팽성읍 송화리 367-3번지	각종 자기 카드	6
삼신인터내셔널(주)	김영갑 변정구	서탄면 금암리 591번지	철재책상, 캐비닛	18
삼우산업사	김광기	서탄면 내천리 산 13번지	ps,sheet의 재활용원자재	1
삼우통신공업(주)	김규명	세교동 537-17번지	통신기기 및 동 부품 (반송장치,감시장치)	3
삼원과학산업(주)	유갑목	포송면 신영리 224번지	광학현미경 및 부속기구	4
삼원금형정공(주)	송용섭	세교동 541-1번지	세탁기부품(BALANCE)	45
삼원기업	이종근	청북면 어연리 655-1번지	전기밥솥부품	10
삼원실업(주)	김승취	모곡동 432번지	캔버스제품, 천막	39
삼원전선(주)	오연권	진위면 가곡리 385-8번지	전선	34
삼원전자	민병삼	진위면 청호리 267번지	컴퓨터용케이블렌조	10
삼일정밀	이강천	진위면 가곡리 129-1번지	금형주문제작	10
삼일정밀(주)	최성국	서탄면 사리 640-2번지	차량냉동부품(브라켓트)	50
삼진개발(주)	박노문	모곡동 440-3번지	염화메틸렌	4
삼진순약공업(주)	전석근	모곡동 440-3번지	에탄올, 아세톤	42
삼정필프공업(주)	양홍렬	고덕면 해창리 250번지	화장지	146
삼풍기업사	안영길	모곡동 440-5번지	자동차 도어 핸들, 자동차 램프	25
삼화니트	이재국	진위면 갈곶리 181-4번지	Polyester(망사)	7
삼화제관(주)	강병준	모곡동 445번지	금속포장용기(음료용 캔)	600
삼훈산업(주)	박세훈	고덕면 방축리 418-3번지	에어콘부품(코아, 케이스)	19
삼훈산업(주)	박세훈	현덕면 도대리 76-1번지	자동차에어컨부품	32
삼훈산업(주)	한창이	서탄면 내천리 6-1번지	비닐팩	25
삼흥씨엔티(주)	김성오	모곡동 449-7번지	화장비누,화장품 원료	32
상경물산(주)	이상현	서탄면 수월암리 275-2번지	P.S CUP	34
상신화학공업(주)	민병석	오성면 죽리 23-8번지	접착제	30
상전특장	심광식	안중면 덕우리 94-20번지	특수탑, 엠브런스, 텀버덕, 일반탑	7
세인물산	김재국	지계동 900번지	의류	0
샤샤코스메틱(주)	장길홍	모곡동 434-1번지	스킨 로션	20
서광산업	서도명	서탄면 수월암리 893-2번지	자동차용품사출	25
서광섬유	윤인상	진위면 은산리 411번지	벨벳, 벨보아	16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서보산업(주)	이장희	청북면 토진리 210-14번지	레이콘	53
서울경기양계축산업협동조	최준구	진위면 가곡리 547-5번지	액란	33
서울냉열(주)	배병균	포승면 원정리 9-33번지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알콜	14
서울제과	채정기	오성면 안화리 160-2번지	팝콘, 살로만, 옥수수과자	7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안태식	모곡동 451번지	배합사료	78
서울토건사	손정민	진위면 하북리 596-24번지	시멘트벽돌, ब्ल릭	2
서원TMR	박진현	청북면 한산리 393-7번지	섬유질가공사료	0
서일전자공업(주)	조태유	모곡동 433-12번지	콘넥터, 트랜스, 하네수, PCB ASSY	104
서일전자공업(주)	조태유	모곡동 432-2번지	PCB 조립품	104
서흥전자(주)	김영숙	도일동 997번지	컴퓨터조립(완제품)	18
선우정밀	권영관	고덕면 352-1번지	컴퓨터내장제	22
선일콘크리트(주)	정병찬	칠피동 25-3번지	레이콘	20
선한테크(주)	하광호	진위면 청호리 19-1번지	금형, 전자부품	73
선호통신	조찬문	진위면 갈곶리 90번지	동축케이블	5
설악식품	이재근	팽성읍 추팔리 294-1번지	면류 냉면	5
성다화성	이승희	모곡동 441-11번지	프라스틱 재생 원료	6
성문레진(주)	박중근	세교동 539-3번지	에폭시레진, 에폭시파우더, 콘덴서용 필름	56
성문전자(주)	윤영주 신동렬	세교동 539-4번지	금속 증착 필름	69
성신공업(주)	최병엽	모곡동 450-3번지	자동차용 연료탱크	80
성신FRP공업(주)	김성준	세교동 542-4번지	육조, 세면기	40
성우정밀	유국희	서탄면 수월암리 704-1번지	방송통신기	34
성운전선	염운성	모곡동 437-4번지	피복절연전선(용접용케이블)	4
성원산업	박정신등	청북면 고림리 37-3번지	알미늄접합	5
성원정공	조수원	서탄면 수월암리 851-2번지	자동차부품금형제품	2
성은화학	양진모	고덕면 두릉리 567-4번지	Poly Bag	10
성진공예사	송삼석	진위면 야막리 338-1번지	가구부품	18
성진산업(주)	박태근	서탄면 수월암리 651-3번지	냉열기및자판기부품	26
세광산업	신은철	서탄면 직봉리 383-2번지	동침, 폴리에스텔칩	5
세광특수산업사	송영진	고덕면 두릉리 419-1번지	애자핀, 서랍받침대	6
세광포장	이순예	독곡동 109-5번지	병아리안반용상자, 닭고기상자	11
세대산업사	이용노	진위면 가곡리 287-9번지	세멘트사이로, 백필터	5
세방포장	주재용	진위면 동천리 556-1번지	지관제조	4
세원섬유	박원일	진위면 야막리 166-3번지	원단	18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세원정공(주)	심우인	모곡동 450-4번지	자동차 부품 (RADLATOR CAP ASSY)	95
세이코스메틱(주)	도범석	진위면 청호리 44-9번지	화장품류 (크림, 로손, 화운데이션)	20
세진산업(주)	이춘희	진위면 갈곶리 90-4번지	도료표지도료용유리알	9
세진텔레콤(주)	김종길	세교동 432-19번지	CATV 증폭기, 분배기	12
세하전기	허건	모곡동 435-5번지	수배전반	6
송무포장	백운기	오성면 숙성리 42-20번지	종이박스	5
송탄농협협동조합	문창호	고덕면 동청리 118번지	지대미	5
수도기계공업(주)	송명호	진위면 갈곶리 95-1번지	수중모터펌프	8
승원공업(주)	유승조	모곡동 451-8번지	자동차 도어 핸들	74
승진공업사	임승안	팽성읍 두정리 163-74번지	가로등철전주	8
승진지관	정신진	서탄면 수월암리 1271-2번지	지관	15
신광산업	김남인	진위면 청호리 44-13번지	골판지박스	6
신광테크	손창기	서탄면 수월암리 941번지	캐빈(중장비운전석카바)	8
신덕산업(주)	최구화	포송면 만호리 50-3번지	종이포대	40
신성금고제작소	김현영	서탄면 수월암리 279-1번지	금고	38
신성산업	장정인	모곡동 438-9번지	전착	29
신성상사(주)	김원권	칠괴동 585번지	식품용기	14
신성전착산업	장정인	모곡동 438-1번지	전착	7
신양화학	노복순	진위면 봉남리 296번지	방습제	6
신영특장차(주)	김경환	모곡동 449-1번지	특장차	6
신우산업	최억	안중면 성해리 162번지	초코렛	13
신우산업	서진석	청북면 고령리 37-3번지	고무집면, 세라믹, 도포외	4
신원섬유	신광호	고덕면 좌교리 179-6번지	벨벳, 벨보아	15
신일기공	김진택	서탄면 수월암리 1030번지	유압브레이크부품	5
신일사	정경수	팽성읍 근내리 317-12번지	전자제품비닐카바, 일회용장갑, 일회용비닐	20
신일상사	신대기	서탄면 금암리 501번지	폴리에스터칩	3
신진전기공업(주)	박효성	칠괴동 575번지	TV브라운관제조기계 및 전구제조기계	52
신풍석재(주)	설영목	모곡동 436-4번지	석재	3
신풍제지(주)	정학현	고덕면 해창리 15번지	백판지	213
신한기연(주)	석병열	팽성읍 남산리 55-6번지	정전기 제어장비	12
신호제지(주)평택공장	이순국	진위면 하북리 205-1번지	인쇄용지, 과실봉지, 기타박엽지	120
신흥특수기계공업(주)	최병업	모곡동 441-7번지	압축 가스 운반 용기	122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신흥특수기계공업(주)	최병엽	세교동 544-1번지	연료탱크	0
쌍용양회공업(주)평택사업	명호근	오성면 양교리 137-7번지	레이콘	26
쌍용자동차(주)	소진관	칠피동 102-5번지	4륜구동차, 소형상용차	5673
씨모메트릭스코리아(주)	주영섭	청북면 한산리 837번지	자동차, 가전용 온도센서기	103
씨엔씨테크(주)	노무학	팽성읍 남산리 55-1번지	썬팅지, 대전방지판넬	11
아람사	박종구	신장동 361-11번지	티-셔츠(녹,백색)	3
아람산업	변정식	서탄면 수월암리 870-3번지	전자부품	40
아사들전자	윤재식	모곡동 437번지	리드와이어	3
아성엔지니어링	정태섭	서탄면 금암리 640-5번지	CD롬부분품 (메인베이스서브ASS'Y)	65
아스텍스코리아(주)	김완호	모곡동 430-3번지	오존시스템	12
아시아첨가제(주)	서상철 김형용	세교동 542-7번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첨가제	67
아주약품공업(주)	김중길	모곡동 439번지	에마롬(정), 소페너주사, 시티클린주사,알로	56
안국관유리	서요원	장당동 411-7번지	애플(주사제용기)	6
안중농업협동조합	신광수	안중면 금곡리 305번지	도정곡물(쌀)	4
안중농업협동조합	신광수	청북면 고잔리 1-130번지	비료, 퇴비	3
안중산소(주)	배성만	포승면 원정리 325-2번지	산소, 질소, 알곤, 이산화탄소	10
안진화성	김성준	서탄면 수월암리 704-4번지	일반플라스틱필름,시트	23
애쉬랜드에이씨테크코리아(주)	안성영	모곡동 440-4번지	포도레지스트 스트리퍼	15
에덴산업(주)	이혁훈	고덕면 방축리 57-2번지	종량제봉투, 쇼핑백	21
에스디씨스کم	한충세	모곡동 438-8번지	SMD	50
에스엔케이엘엠소프트(주)	선남기	모곡동 438-12번지	샤프트 및 레일	10
에스엔티(주)	이재홍	지산동 599-15번지	반도체부품	73
에스엔티(주)	이재홍	장당동 624번지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101
에이엔에스(주)	배경빈	모곡동 451-4번지	반도체장비, 전자장비 (박막증착기, 에바포레)	11
에이엔에스(주)	배경빈	모곡동 451-4번지	유기EL 제조 장비	16
에크로텍(주)	정민용	세교동 537-12번지	자동 다이알장치 외	18
연합식품	한용희	청북면 어소리 153번지	빵 및 떡제조업	25
영강정밀산업	마경희	모곡동 430-8번지	자동판매기 부품(판스프링)	10
영광산업사	이영길	진위면 가곡리 387-7번지	자동차부품	40
영농조합법인 무궁화농원	김종수	팽성읍 신궁리 193번지	별꽃, 생강제품	15
영농조합법인평택양계조합	이광식	팽성읍 대사리 산 1-1번지	유기질 비료	17
영농조합법인합박골	방형주	서탄면 수월암리 733번지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7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영동기업	김종철	서단면 수월암리 558번지	통신장비부품(그라스G830)	5
영상전자	이인영	청북면 고령리 451-4번지	에어콘 부품	3
영성산업(주)	조영수	진위면 동천리 613-6번지	선재,철망	38
영신정밀	최문희	진위면 은산리 860번지	에어컨케이스,철편	25
영지통상(주)	신동배	모곡동 446-3번지	저항기(REISTOR)	63
영진식품	이진섭	서단면 금각리 370-15번지	떡, 국수 등	5
영진약품공업(주)	김종인	진위면 갈곶리 239-3번지	원료의약품	71
영풍산업(주)	임재식	서단면 수월암리 1279-1번지	공예품, 주방용품	32
영풍제지(주)	이석진	진위면 견산리 571-6번지	라이나지,지관원지	192
에원 캐드캠 엔지니어링	조종영	청북면 백봉리 187번지	자동차금형, 사출금형, 시작판넬	7
오뚜기라면(주)	이중덕	안중면 용성리 123-6번지	라면, 프리믹스	550
오성산업(주)	권오성	동삭동 534-1번지	수문, 기계	6
옴토비전(주)	변호산	칠괴동 577-4번지	노트북도광판(L.G.P)	35
와브코코리아유한회사	전기우	청북면 어연리 884번지	에어컴프레샤, 에어드라이어	69
와이케이케이한국(주)	야마다미찌오	진위면 신리 383번지	지퍼	257
용성정미소	정인양	안중면 용성리 218-4번지	곡물 도정(쌀)	1
우명금속	황용하	서단면 내천리 206-1번지	알루미늄괴	4
우성세라믹스공업(주)	이용원	포송면 석정리 369-2번지	점토벽돌	45
우성전자	허금례	이충동 558-1번지	전화기부품	14
우신중공업(주)	김인식	모곡동 438-1번지	특장차, 살수차, 산업설비	14
우일기계	정진우	모곡동 433-5번지	에어콘케이스, 냉동냉장기기	30
우진섬유	김용평	고덕면 방축리 295-1번지	NYLON,STRETCH YARN	20
우진섬유제2공장	김용평	서단면 수월암리 290-1번지	연사	40
원샤프트정공(주)	이택원	고덕면 방축리 485번지	자동차부품(샤프스, 볼부쉬외)	30
원풍공사	박근배	안중면 덕우리 94-24번지	CLIP류, WASHER, SNAP RING, 기타	12
월드인코리아	홍순철	서단면 금암리 512-3번지	플라스틱박스, 플라스틱성형기	13
위스코가구산업	김종호	모곡동 441-9번지	책상,교구	4
위스코물산(주)	윤태환	모곡동 441-9번지	스프링, 사무용 가구(책상, 책장)	6
유림정공	손용욱	세교동 542-1번지	자동차 스피커 그릴	4
유원산업사	김충기	서단면 내천리 840-2번지	PE배수관	3
유진산업(주)	정형근	안중면 덕우리 83-14번지	RING GEAR	14
유진정공	유도진	서단면 수월암리 167번지	LX바란스,H카	5
유한정밀	김효석	도일동 996-7번지	컴퓨터조립(임가공)	20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윤성전자	윤시현	서정동 869-2번지	CONNECT ASS'Y	13
으뜸영농조합법인	임광규	진위면 건산리 547-3번지	배추, 무다듬질	5
으뜸종합식품	임종선	진위면 건산리 557-1번지	배추, 무다듬질 품	20
은하저수	이교행	고덕면 좌교리 646-6번지	자수임가공	2
이건설업(주)	김상한	칠괴동 585-1번지	콘크리트혼화제	45
이조식품	강용섭	팽성읍 근내리 46번지	냉면, 국수, 쫄면, 떡볶이용떡	8
이진산업	이제필	포승면 석정리 895-12번지	등카바	3
이튼오토모티브콘트롤스(주)	김창범	모곡동 446-5번지	자동차부품 (솔레노이드 밸브, 스위치류)	91
이한상사	방이한	청북면 토진리 632-4번지	변압기 코일	8
이행전자개발(주)	서대홍	모곡동 433-4번지	케이블TV용 콘넥터	35
이화종합식품영농조합법인	홍택선	청룡동 251-5번지	김치	53
이화주조장	고국원동	청룡동 73-4번지	탁주	4
익진산업(주)	이종찬	서단면 수월암리 449-4번지	산업플랜트, 철구조물, Platform	10
인터테크(주)	한갑희	포승면 만호리 581번지	알루미늄 표면처리 가공	16
일광석재	이경희	독곡동 154-2번지	상석, 비석	9
일삼건설공업(주)	정연기	서단면 수월암리 851-2번지	창호철물	4
일신산업	양상모	진위면 하북리 219-2번지	컨테이너	7
일신정밀	장재형	모곡동 450-8번지	금융기기 케이스, 통신장비케이스, 기계장비	61
일진다이아몬드(주)	김규섭	청북면 울북리 1032번지	TFT-LCD	200
일진산업	성태경	세교동 537-1번지	전착도장	18
일진전장(주)	박준동	고덕면 좌교리 197-1번지	자동차용전기배선장치	36
장안글로벌(주)	장진욱	진위면 가곡리 385번지	전기배선기구	15
장안전기	정근석	진위면 은산리 919-4번지	배전반, 자동제어반	5
재향군인회송탄공장	이상훈	장안동 235-4번지	랙크벤드, 지션벨트, 유몰트, 지션롯데	54
정명산업	최정기	오성면 양교리 186-13번지	목재상자, 목재칼판	6
정석산업	정재진	서단면 금암리 449번지	지함(포장용박스)	4
정원금속(주)	차재억 심재욱	모곡동 438-10번지	볼트, 너트	36
정원전자	박한주	진위면 갈곶리 56-2번지	웨어이트코리아	52
정일공업(주)	엄기철	고덕면 28-5번지	위털펌프, 오일펌프, 스키드로더, 전기라디에	126
정지관(주)	이석진	모곡동 441-6번지	지관	24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칠보산업(주)	백원홍	모곡동 435-3번지	에어콘부품도장, 콤팩인, 경운기부품	95
칠성고분자(주)	양수일	서탄면 금암리 27번지	유, 수성접착제	25
칠성기업	오진문	안중면 성해리 163번지	AI-도장제품	7
칠성엔지니어링	조경숙	고덕면 좌교리 317번지	자동제어반, 절전기	3
코리아우드그레인	최혁용	고덕면 문곡리 538번지	나무무늬목	4
코아텍(주)	문영환	모곡동 440-6번지	공해방지용 촉매 (칼슘약제, 철약제)	10
태경산업(주)	박춘석	모곡동 446번지	그라비아, 읍셋인쇄	0
태경전자부품(주)	김영수	진위면 갈곶리 312번지	스크류(카세트테이프)	14
태산엘시디(주)	최태현	지제동 24-24외번지	BACK, LIGHT,	320
태성연와(주)	최경숙	고덕면 좌교리 282-7번지	적연와(보통벽돌)	27
태영산업	이일춘	서탄면 수월암리 662-2번지	파라핀지	5
태영상사	김철수	모곡동 441-1번지	읍셋, 그라비아인쇄(팜프렛)	20
태우정밀	서두부	서탄면 수월암리 1096-2번지	전자부품(콜프터), 통신부품	16
태일알미늄(주)	박노옥	진위면 가곡리 139-3번지	식품, 제과·제약포장지제조	23
태진합성공업(주)	이태용	모곡동 440번지	ABS, PS칼라링	20
태흥산업	김태형	진위면 갈곶리 289번지	포장용종이박스	7
택산아이엔씨(주)	김창규	도일동 186-2번지	VGA-CARD, SVR, LCD-모터	222
택산전자(주)	김창규	도일동 186-2번지	컴퓨터주변기기(VGA CARD 등)	222
토소에스엠디코리아(주)	김석현 외	모곡동 433번지	스퍼트링 타겟	11
티에스후드서비스	정태영	고덕면 두릉리 107-5번지	피클, 파프리카당절임, 사우이크라우트	10
팔도백판흑판	장상돈	서탄면 수월암리 831번지	흑판	6
팽성농업협동조합	김학용	팽성읍 추팔리 228-4번지	쌀	7
평농산업	남상철	세교동 536번지	축산기계(부화기), 사료저장탱크	2
평농육가공	김옥년	지제동 233번지	우, 돈, 정육	9
평랑기공사	한석호	모곡동 437-6번지	자동차 부품(버너 커버), 보일러 부품(보일)	19
평원섬유	오근수	진위면 은산리 458번지	섬유(원단)	69
평택미곡종합처리장	유재호	이충동 65-10번지	쌀	6
평택산업(주)	김세광	오성면 죽리 27-3번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18
평택전통식품	김성종	안중면 안중리 196-18번지	한과류, 미식가루	2
평택중기공업사	김경준	지제동 841-1번지	중장비 정비	6
푸른전자(주)	김주림	모곡동 449-10번지	칼라 모니터	12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피에스케이테크(주)	박경수	모곡동 430-3번지	감광액 제거기	86
하나산업(주)	임창빈	서탄면 수월암리 251-1번지	주분레이저가공	6
하이산업(주)	김성주	서탄면 금암리 506-1번지	PEP필름	12
하이텍켄	양진모	서탄면 수월암리 1030-2번지	코팅밴드 외	4
한국니트옵티칼(주)	김홍인 외	청북면 율북리 1029번지	TFT-LCD편광필름	124
한국단자공업(주)	이창원	포승면 만호리 585번지	코넥타	13
한국도키멕유업(주)	조홍래	칠괴동 585-3번지	유압기기(펌프, 밸브, 모터 등)	13
한국로드(주)	최두원	고덕면 방축리 422-1번지	접착제(CHEMLOK)	9
한국바이린(주)	전기섭 외	청북면 토진리 417-7번지	부직포, 펠트	278
한국반도체산업	김재용	지제동 900번지	반도체용 GAS SCRUBBER	5
한국버그만(주)	이정창	서탄면 수월암리 539번지	MechanicalsealPacking, Expension Joint	26
한국베리안(주)	김용길	모곡동 433-1번지	이온주입기, 박막증착기	92
한국산노프코(주)	손진익	서탄면 수월암리 250-2번지	계면활성제	38
한국수지	김한구	서탄면 수월암리 296-1번지	PE정화조통	12
한국알박(주)	백충렬	청북면 한산리 837번지	TFT-LCD용 박막성막장치	35
한국오키쓰모(주)	정영철	청북면 율북리 1029번지	OK1-202 회석제, 불소도료외	5
한국콘트롤공업(주)	장병우	세교동 542-8번지	전자펌프	68
한국크노브레이크(주)	구창림	모곡동 450번지	철도차량부품(에어 브레이크)	6
한국테스큐유한회사	에드워드	청북면 어연리 884번지	가스압력조절기	5
한국폴리우레탄공업(주)	신소석	세교동 536-8번지	폴리우레탄 폼(스폰지)	71
한국프라스틱공업	양창국	칠괴동 371-4번지	P.V.C접착시트	8
한길정보통신(주)	유동찬	서탄면 수월암리 222-1번지	VCH, FAX외	219
한라공조(주)	신영주	포승면 만호리 344-1번지	컴프레사	500
한세로재광물(주)	이병규	청북면 백봉리 406-6번지	내화벽돌	12
한송통상(주)	구연원	모곡동 433-2번지	냉간단조품(리테이너, 붕싱)	85
한송통상(주)	구연원	칠괴동 577-3번지	자동차부품	10
한송건업(주)	김기수	모곡동 438번지	레미콘	12
한신물산(주)	김현택	진위면 가곡리 281-1번지	분유통뚜껑 및 스푼	19
한울섬유	김영철	진위면 야막리 166-3번지	망사, 스팬	14
한우물화학	최순	모곡동 451-4번지	표면광택제	4
한일개발(주)안중공장	김동문	안중면 금곡리 548-7번지	레미콘	12
한일공영(주)	최금숙	모곡동 451-7번지	금속제 조립식 울타리	10
한진전자공업(주)	이순종 이규한	모곡동 438-7번지	도어록	105
한트벳	조성호	죽백동 486-10번지	사료	3

회사명	대표자	공장주소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햇쌀마을영농조합법인	김기돈	팽성읍 석근리 114-3번지	미곡, 미강, 쇠미, 왕겨	0
해성공업사	박홍남	진위면 가곡리 412-9번지	석재건설용다이아몬드절삭공구	32
현대기업	박갑수	신장동 406-3번지	주방가구 및 불박이장	2
현대기업사	이종태	팽성읍 안정리 100-63번지	콘크리트 벽돌	8
현대정미소	염효선	고덕면 해창리 980번지	쌀(평택미)	2
현대철망	김혜용	팽성읍 남산리 42-1번지	능형그물망웬스, 웬스용후레임	7
현대웬스개발(주)	김혜용	팽성읍 추팔리 391-9번지	돌망태, 웬스자재, 능형망	10
현창공업	강창수	칠괴동 577-2번지	냉동고선반	8
현호산업(주)	이은형	고덕면 두릉리 225-11번지	인쇄 및 수성접착제	7
협진기술개발(주)	김태영	진위면 동천리 613-9번지	정수설비	10
협화전기공업(주)	한승천	모곡동 436-6번지	리액터, 방전코일	30
해성공업사제2공장	박홍남	진위면 가곡리 463번지	석재가공기계, 다이아몬드금형	0
해성산업	윤강환	서탄면 수월암리 263번지	골판지박스	0
홍원제지(주)	홍종화	진위면 하북리 74-14번지	인쇄용지, 아트지, 기타용지	400
화경물산(주)	이종환	팽성읍 추팔리 394-3번지	지미베이스, 치킨씨즈닝분말	12
화성기공	설진돌	진위면 하북리 281-3번지	산업기계 철구조물	2
화성기공	최성동	장당동 624-2번지	반도체 부품	10
화성통신공업(주)	이건종	모곡동 436-3번지	PCM 단국장치, POWER SUPPER	16
화인플라텍(주)	윤화식	청북면 현곡리 386-11번지	복합합성수지	6
화정두부	김현태 외	지제동 673-2번지	두부	5
후쏘코리아(주)	이병락	청북면 한산리 837번지	불소수지급속탱크	26
희승알루미늄공업(주)	허대경	고덕면 율포리 7-1번지	알루미늄 샷시	13
HD전자(주)	이원영	세교동 537-12번지	벨, 보안장치	25
LG전자(주)	구자홍	진위면 청호리 19-1번지	PC,CD-RDM, VCR, Audio	3500